



Karl Marx, Friedrich Engels, Vladimir Lenin, Joseph Stalin, Enver Hoxha

5 C l a s s i c s o f M a r x i s m

Comintern (Stalinist-Hoxhaists)

<http://ciml.250x.com>



GEORGIA

Georgian Section
www.joseph-stali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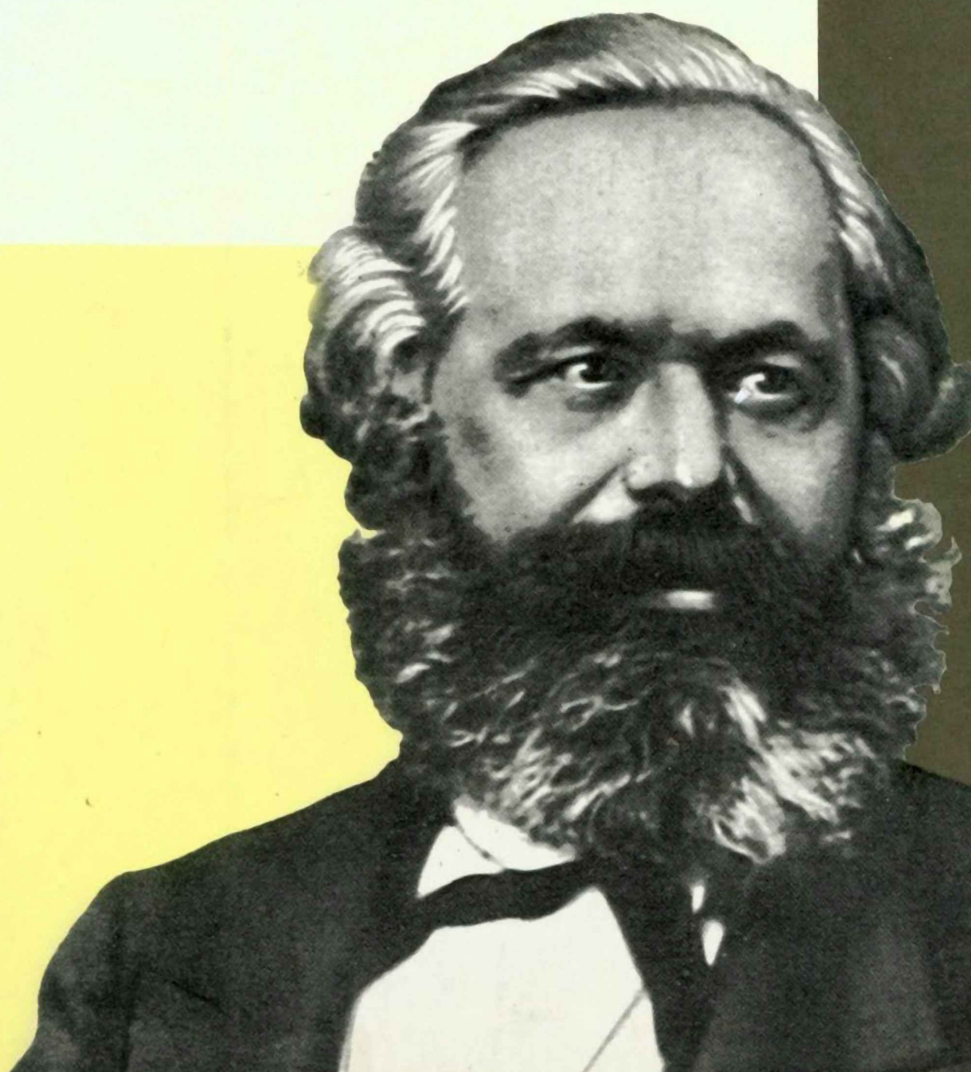
SHMG Press

Karl Marx Press of the Georgian section of
Comintern (SH) – Stalinist-Hoxhaists Movement of Georgia

칼 맑스 자본론

제Ⅱ권 (1)

서판 白衣



K. 맑스

자 본 론

정치경제학 비판

제 II 권 (1)

자본의 유통과정

F. 엥겔스 엮음

도서
출판

백의

일러두기

1. 이 판(版)은 ‘조선노동당출판사’ 간(刊) 『자본론』 제2권 (1957)을 일본 학우서방에서 번각한 것을 대본으로 삼았으며, 극히 일부만을 수정하여 편집·발행한 것이다.
2. 두음법칙은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예) 로동→노동, 년년(年年)→연년 등
3. 띄어쓰기는 새로 시행된 한글맞춤법개정안(89年 3月 1日 시행)을 위주로 하였다.
4. MEW(독일어판 맑스-엔겔스 전집, Dietz Verlag)에서 이탤릭체로 강조한 것은 조선노동당출판사간 『자본론』의 처리방법 그대로 살려 밑줄(一)로 처리하였다.
5. 〈 〉의 인용은 모두 “ ”로 바꿨으며, 〈 〉의 인용 중 문장이 긴 것은 1행을 띄고 글자의 크기를 작게 하였다.

차례/제Ⅱ권 (1) 자본의 유통과정

서문 · 9

제1편 자본의 형태변화와 그 순환	33
제1장 화폐자본의 순환	33
제1절 제1단계— $G-W$	34
제2절 제2단계—생산자본의 기능	43
제3절 제3단계— $W'-G'$	47
제4절 총순환	58
제2장 생산자본의 순환	71
제1절 단순재생산	72
제2절 축적과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	86
제3절 화폐의 축적	91
제4절 예비фон드	93
제3장 상품자본의 순환	97
제4장 순환과정의 세 형상	113
제5장 유통기간	135
제6장 유통비	143
제1절 순유통비	143
1) 구매기간 및 판매기간	
2) 부기	
3) 화폐	
제2절 보관비	151
1) 시장 형성 일반	
2) 고유한 의미에서의 상품저장	
제3절 운송비	164

제2편 자본의 회전	171
제7장 회전기간과 회전수	171
제8장 고정자본과 유동자본	175
제1절 형태상 차이	175
제2절 고정자본의 구성부분, 보상, 보수, 축적	187
제9장 전대자본의 총회전, 회전순환	203
제10장 고정자본 및 유동자본에 관한 제학설. 중농주의자들과 아담 스미드	211
제11장 고정자본 및 유동자본에 관한 제학설. 리카아도	239
제12장 노동기간	253
제13장 생산기간	265
제14장 유통기간	277
제15장 회전기간이 전대자본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	285
제1절 노동기간과 유통기간이 동등한 경우	294
제2절 노동기간이 유통기간보다 큰 경우	299
제3절 노동기간이 유통기간보다 작은 경우	304
제4절 결론	308
제5절 가격 변동의 영향	314
제16장 가변자본의 회전	325
제1절 잉여가치의 연율	325
제2절 개별적 가변자본의 회전	339
제3절 사회적으로 고찰한 가변자본의 회전	344
제17장 잉여가치의 유통	351
제1절 단순재생산	356
제2절 축적 및 확대재생산	377

차례/제Ⅱ권(2)

제3편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과 유통

제18장 서론

제1절 연구 대상

제2절 화폐자본의 역할

제19장 대상에 관한 종전의 제 서술

제1절 중농주의자

제2절 아담 스미드

1) 스미드의 일반적 관점

2) 스미드에 관한 교환가치의 $v+m$ 으로의 분해

3) 불변자본 부분

4) A. 스미드에 있어서의 자본과 소득

5) 결론

제3절 그후의 경제학자들

제20장 단순재생산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사회적 생산의 두 부류

제3절 양부류간의 전환, I ($v+m$) 대 II c

제4절 II 부류 내부에서의 전환.

필요생활수단과 사치품

제5절 화폐유통에 의한 전환의 매개

제6절 I 부류의 불변자본

제7절 양부류에서의 가변자본과 잉여가치

제8절 양부류에 있어서의 불변자본

제9절 A, 스미드, 슈토르흐 및 램제이에 대한 회고

제10절 자본과 소득, 가변자본과 노임

제11절 고정자본의 보상

- 1) 마멸가치 부분의 화폐형태로의 보상
- 2) 고정자본의 현물로의 보상
- 3) 결론

제12절 화폐재료의 재생산

제13절 데스튜트 드 트라시의 재생산론

제21장 축적과 확대재생산

제1절 I 부류에서의 축적

- 1) 화폐퇴장
- 2) 추가적 불변자본
- 3) 추가적 가변자본

제2절 II 부류에서의 축적

제3절 축적의 도식적 서술

- 1) 제1례
- 2) 제2례
- 3) 축적에 있어서의 II_c 의 전환

제4절 보유(補遺)

回 인명 색인

자본론 제Ⅱ권 (1)

자본의 유통과정

서 문

『자본론』 제2부를 인쇄에 붙일 수 있도록, 더욱이 그것이 일방으로는 연관성이 있으며 될 수 있는 대로 완결된 저작으로, 그러나 타방으로는 편집자의 저작이 아니라 오로지 저자의 저작으로 되도록 마련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대개는 단편으로 되어 있는 개작된 원고가 여러 개 있었다는 것이 작업을 어렵게 하였다. 그대로 인쇄에 회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되어 있었던 것은 겨우 하나(제4고) 뿐이었는데 그나마 대부분은 그후의 개수(改修)에 의하여 낡아진 것이었다. 자료의 주요 부분은 비록 그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완성되어 있었지만 문장상으로는 그렇지 못하였다. 즉 자료는 맑스가 발췌를 할 때에 항상 쓰던 말로 쓰여졌으며, 문체는 등한히 되어 있으며, 표현과 어법은 구술적이고 종종 지독하게 해학(諧謔)적이며, 슬어들이 영어와 불란서어로 되어 있으며 자주 구절 전체가 심지어는 수 페이지나 영어로 되어 있다. 요컨대 저자의 머리속에서 사상이 그때그때 전개되는 그대로 적어둔 것이다. 어떤 부분은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사에 그치고 말았다. 예증을 위한 실제 자료는 수집되어 있으나 추고는 고사하고 분류도 거의 되어 있지 않으며, 장(章)의 마지막에서는 다음 장으로 넘어 가려고 서두른 나머지 여기에서 사상의 전개를 다 마치지 않았다는 표시로서 종종 문맥이 닿지 않는 몇개 문구가 있을 뿐이며, 끝으로는 유명한 필적인데 이것은 저자 자신도 때로는 알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원고를 될 수 있는대로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다시 수록하고, 문체에 있어서는 맑스 자신도 변경하였으리라는 것만을 변경하고, 또 설명을 위한 중간 명제들과 연결구들은 그것이 절대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경우에만 삽입하는 것으로써 만족하였다. 해석에 있어서 조금이라고 의문이 있는 명제는 오히려 전부 한마디 한마

다 그대로 인쇄에 붙이기로 하였다. 내가 개수한 것과 삽입한 것은 전부 해서 인쇄물로 10페이지를 넘지 않으며 그것은 모두 형식적인 성질의 것 뿐이다.

맑스가 제2부를 위하여 남긴 자필로 된 자료를 열거하여 보기만 하여도 그가 자기의 경제학적 대발견들을 발표하기 전에 그것들을 완전무결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비할 바 없는 성실성과 얼마나 엄격한 자기비판으로써 노력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이 자기 비판이야말로 그로 하여금 서술을, 내용상으로나 형식상으로나 새로운 연구에 의하여 부단히 확대되는 자기 시야에 거의 적합시킬 수 없게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자료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정치경제학 비판」이라는, 1861년 8월부터 1863년 6월까지에 쓰여진, 23분책으로 된 4절판 1472페이지의 원고이다. 이것은 1859년에 베를린에서 발간된, 동일한 표제의 제1분책의 속고이다. 이것은 1~220페이지(제1~5분책)에서 그리고 또 1159~1472페이지(제9~23분책)에서, 「자본론」 제1부에서 연구된 제목들, 즉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화로부터 그 끝까지를 취급하고 있으며, 이 제목들에 대하여 현존하는 최초의 원고이다. 973~1158페이지(제16~18분책)에서는 자본과 이윤, 이윤을 및 상인자본과 화폐 자본이 즉 나중에 제3부를 위한 원고에서 전개되고 있는 제목들이 취급되고 있다. 그와는 반대로 제2부에서 취급된 제목들과 나중에 제3부에서 취급된 극히 많은 제목들은 여기에서는 아직 특별히 편성되어 있지 않다. 그것들은 특히 원고의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는 편 즉 220~972페이지의 잉여가치에 관한 제학설에서 부수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 편은 정치경제학의 핵심인 잉여가치학설의 상세한 비판적인 역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나중에 제2부 및 제3부를 위한 원고에서 특별히 그리고 논리적 연관하에서 연구된 점들을 선행자들에 대한 논전의 형태로 전개하고 있다. 나는 이 원고의 비판적 부분을, 제2부 및 제3부에서 이미 남김없이 해설된 다수의 개소들을 제외하고 「자본론」 제4부*로 발간하기 위하여 보류한다. 이 원고는 대단히 귀중한 것이지만 제2부의 본판에서는 거의 이용될 수 없었다.

* 엥겔스의 서거후 「잉여가치에 관한 제학설」제1권, 제2권, 제1부 및 제2부, 제3편의 명칭으로 발간되었다. — 편집자.

날짜로 보아 그 다음 가는 원고는 제3부의 그것이다. 이것은 적어도 대부분은 1864년과 1865년에 쓰인 것이다. 맑스는 이것을 본질적으로 완성한 다음에야 비로소 제1부 즉 1867년에 인쇄된 제1권의 추고에 착수하였다. 제3부의 이 원고는 인쇄에 붙이기 위하여 지금 내가 손을 대고 있다.

그 다음 기간 즉 제1부의 발간 후에 속하는 것으로는 맑스 자신이 제1~제4고라고 번호를 붙인, 2절판으로 된 4개의 원고를 제2부를 위하여 모은 것이 있다. 그 중 제1고(150페이지)는 아마도 1865년 또는 1867년에 쓰인 것으로서, 현재의 구분으로는 제2부를, 별개로 그러나 다소간 단편적으로 취급한 최초의 것이다. 이 원고 중에도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제3고는 부분적으로는 인용문들과 맑스의 발췌 책에 대한 참조문들—대개는 제2부의 제1편에 관한—을 모은 것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개별적 논점들을 취급한 것들 특히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에 관한 또 이윤의 원천에 관한 A. 스미드의 명제들의 비판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제3부에 속하는, 잉여가치율의 이윤율에 대한 관계의 서술이 있다. 그 참조문들은 새로운 것을 거의 주지 않았으며, 그 추고한 것들도 제2부에 대한 것이나 제3부에 대한 것이나 할 것 없이 그후에 개수한 것들이 우수하였으므로 대개는 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제4고는 제2부의 제1편과 제2편의 제1장을 인쇄에 붙일 수 있게 추고된 것으로서 해당한 곳에서 역시 이용되었다. 이것은 제2고보다 앞서 쓰여진 것이 분명하지만 형식에 있어서 보다 완성된 것이었으므로 제2부의 해당한 부분들을 위하여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었으며, 제2고로부터 약간의 추가를 함으로써 충분하였다. 마지막에 든 이 원고가 제2부의, 어느 정도로 완성된 유일한 추고로서 1870년의 것이다. 최종적 개수를 위한 비망록—이에 관하여는 곧 언급할 것—에는 제2차 추고를 기초로 할 것이라고 명백히 쓰여 있다.

1870년 이후 주로 맑스의 병상으로 말미암은 휴지기가 다시 나타났다. 관례에 따라 맑스는 이 시기를 제반 연구에 바쳤다. 농학, 아메리카와 특히 러시아의 토지관계, 화폐시장 및 은행제도, 끝으로 자연과학 즉 지질학과 생리학, 특히 독립적인 수학적 노작들은 이 시기의 맑스의 무수한 발췌 책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1877년 초에 그는 자기가 본래의 사업에 다시 착수할 수 있으리만큼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느꼈다. 제2부의 새 원

고의 기초로 된, 상술한 네 개의 수고로부터의 참조문들과 비망록들은 1877년 3월 말 이후의 것인데 그 새 원고의 처음 부분이 제5고(2절판, 56페이지)로 되어 있다. 이 제5고는 최초의 네 개 장을 포괄하고 있는데 아직 거의 완성되어 있지 않다. 본질적인 논점들이 본문 아래의 주에서 취급되고 있으며, 소재가 선별되어 있다기보다 수집된 대로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1편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의 최후의 완전한 서술이다. 이것을 가지고 인쇄에 붙일 수 있는 수고를 작성하려는 최초의 기도는 제6고(1877년 10월 이후이며 1878년 7월 이전의 것)인데, 이것은 제1장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으면서도 4절판 17페이지에 불과하며, 제2차 즉 최후의 기도는 1878년 7월 2일의 날짜의 제7고인데, 이것은 2절판 7페이지에 불과하다.

아마도 이 시기에 맑스는 자기의 건강상태에 완전한 변혁이 없이는 자기 자신 만족할 만한, 제2부와 제3부의 추고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듯하다. 그것을 말하는 듯이 제5~제8고에서는 침울한 병상과의 긴장된 투쟁의 흔적을 너무나 자주 볼 수 있다. 제1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제5고에서 다시 추고되어 있었다. 제1편의 나머지 와 제2편 전체(제17장을 제외하고)는 이론적으로 하등 어려운 점은 없었다. 그와는 반대로 제3편 즉 사회적 자본의 재생산과 유통은 개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그에게 생각된 듯하다. 그것은 제2고에서는 재생산이 처음에는 그것을 매개하는 화폐유통을 고려함이 없이 취급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이를 고려하면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거되어야 할 것이었으며 그리하여 전체 편이 전반에 걸쳐 저자의 확대된 시야에 상응하도록 개작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렇게 되어 나온 것이 제8고인데 이것은 4절판으로 불과 70페이지의 한 개 분책이다. 그러나 맑스가 이 지면에 얼마만한 것을 압축하여 넣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이것을 인쇄된 제3편에서, 제2고로부터 삽입한 개소들을 공제한 것과 대비하여 보면 알 수 있다.

이 제8고도 대상을 잠정적으로 취급한 것에 불과하며, 거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제2고에 없는 새로 얻은 관점들을 확정하고 전개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아무 것도 새로 말할 것이 없는 점들은 등한히 되어 있었다. 제2편 제17장의 중요한 한 부분은 본래 어느 정도 제3편에 저축되고 있는데 이것이 또다시 논구되었고 확대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논리적 연계가

종종 중단되어 있으며 서술에는 이곳저곳 빠진 것이 있으며, 특히 마지막에 가서는 아주 단편적이다. 그러나 맑스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여기에서 표명되어 있다.

이상이 제2부의 자료인데, 맑스가 서거하기 직전에 자기 딸 엘리노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고 만들어 내야 할 것이었다. 나는 이 위탁을 가장 좁은 한계에서 접수하였다. 어떻게든 가능한 한에서 나는 나의 할 바를 각이한 원고들 중에서 단순히 선택하는 것에 국한하였다. 그것도 언제나 원고들 중에서 최후의 것을 그전 것들과의 비교하에 기초로 삼으면서 그렇게 하였다. 그 경우에 현실적인 즉 단순히 기술적인 것과는 다른, 곤란을 준 것은 제1편과 제3편뿐이었는데 그러나 이것은 적은 곤란은 아니었다. 나는 그 곤란을 전혀 저자의 정신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나는 본문 중의 인용문은, 사실의 인증인 경우애나 또는 예컨대 A. 스미드로부터의 인용문에 있어서와 같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규명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원전이 입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개 번역하였다. 다만 제10장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였으니 왜냐하면 여기서는 영어 원문이 직접 비판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1부로부터의 인용문에는 제2판 즉 맑스 생전의 최종판의 페이지수를 적어 넣었다.

제3부에 대하여는 『정치경제학 비판』의 원고 중 최초로 쓴 것과 제3고 중 상술한 부분들과 또 발췌 책에 이곳저곳 산재하여 있는 짤막한 약간의 비망록 외에는 다만 제2부의 제2고와 거의 동일한 정도로 완전히 작성된, 상술한 1864~1865년의 2절판 원고와 끝으로 수학적으로(방정식으로) 전개된 잉여가치율의 이윤율에 대한 관계라는 1875년의 분책 하나가 있을 뿐이다. 이 제3부를 인쇄에 회부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내가 지금까지 판단할 수 있는 한에서는, 물론 극히 중요한 약간의 편들을 제외하고는 주로 다만 기술적 곤란이 있을 뿐일 것이다.

여기에서 맑스에 대한 비난의 하나를 논박해버리는 것이 좋겠다. 이 비난은 처음에는 소근소근 그리고 따로따로 일어나던 것인데 맑스의 사후인 오늘날에는 논의할 여지가 없는 사실로서 독일 강단파 사회주의자와 국가 사회주의자 및 그 추종자들에 의하여 마치도 맑스가 로드베르투스를 표절하였다는 듯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미 다른 장소에서 그

것에 관한 가장 긴급한 것은 말한 바 있으나,¹⁾ 여기에서 비로소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을 수 있다.

이 비난은 내가 아는 한에서는 R. 마이어의 『제4 신분의 해방투쟁』 34페이지 중에서 처음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 출판물들(30년대 후반기까지에 올라가는 로드베르투스의)로부터 맑스가 자기의 비판의 대부분을 흡취하였다는 것은 입증할 수 있는 바이다.”라고. 나는 그 이상의 입증이 없는 한 이 주장의 모든 입증가능성은 로드베르투스가 마이어 씨에게 이것을 확신시킨 데 있다고 인정해도 좋을 것이다. 1879년에는 로드베르투스 자신이 등장하여 자기의 저서 『우리 국가경제상태의 인식을 위하여』(1842년)에 관하여 J. 젤러에게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종합 국가학 잡지』 튀빙겐, 1879년, 219페이지). “당신은 그것(거기에서 전개된 사상)이 맑스에 의하여 아주 숨겨 있게…물론 나로부터 인용한다는 말도 없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유고의 편집자 T. 쿡작도 그의 말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로드베르투스 『자본론』 베를린, 서론, 별페이지 15). 끝으로 1881년 R. 마이어에 의하여 발행된 『로드베르투스-야게쾰브 박사의 서한 및 사회정책 논집』 중에서 로드베르투스는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나는 이제 쉘레와 맑스에 의하여 나의 이름도 들지 않고 약탈 당한 것을 알고 있다”(서한 제60호, 134페이지). 그리고 다른 곳에서 로드베르투스의 권리 주장은 더욱 명확한 모습을 띠고 있다. “자본가의 임여가치가 무엇에서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나는 나의 제3서한에서 본질적으로는 맑스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다른 점은 그보다 더 간단명료하게 제시하였다”(서한 제48호, 111페이지).

표절에 대한 이 모든 비난에 관하여 맑스는 전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의 장서인 『해방투쟁』에서 베여져 있던 것은 다만 인터내셔널에 관한 부분이었고 그 나머지는 그의 서거 후에 비로소 나 자신이 본 것이다. 그는 튀빙겐의 잡지를 본 일이 없었다. R. 마이어에의 『서한…집』도 또한 그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며, 약탈 운운에 관한 개소에 내가 주의를 돌리게 된 것도 1884년에 비로소 박사 마이어 씨 자신의 호의에 의해서였다. 그와는 반대로 서한 제48호는 맑스가 알고 있었다.

1) 칼 맑스의 『철학의 빈곤, 프루동의 빈곤의 철학에 대한 대답』(슈투트가르트, 1885년)의 서문에서 [K. 맑스, F. 엥겔스 전집, 러시아어판, 제5권].

그것은 마이어 씨가 친절히도 원문을 맑스의 막내딸에게 보내 주었기 때문이었다. 자기의 비판의 비밀의 원천이 로드베르투스에 있다고 하는 정체를 약간의 풍문을 물론 듣게 되었던 맑스는 그 서한을 나에게 보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기에서 자기는 드디어 로드베르투스 자신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았다. 그가 주장하는 것이 그 이상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자기에게는 아무 상관할 바 없다. 그리고 로드베르투스가 자기 자신의 서술을 보다 간단명료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만족해 하도록 내버려 두어도 좋다고, 사실 맑스는 로드베르투스의 이 서한으로써 문제는 전부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맑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으니 왜냐하면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는 자기 자신의 정치경제학 비판이 개요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극히 중요한 세목에 있어서도 완성되어 있었던 1859년경까지 로드베르투스의 전체 문필 활동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경제학적 연구를 1843년에 파리에서 위대한 영국인들과 불란서인들의 연구로부터 시작하였으며, 독일인들 중에서는 그는 라우와 리스트를 알고 있었을 뿐이고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맑스나 나나 1848년에 『신라인 신문』 지상에서 베를린 출신의 의원으로서의 로드베르투스의 연설과 대신으로서의 그의 행동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까지는 그의 존재에 관하여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도 갑자기 대신이 된 이 로드베르투스란 대체 어떤 인물인가 하고 라인출신의 의원들에게 물어보았을 만큼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로드베르투스의 경제학적 저술에 관하여서는 아무 것도 우리에게 들려 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맑스가 로드베르투스의 도움이 없이도 당시에 이미 자본가의 잉여가치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에서나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나 하는 것까지도 대단히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철학의 빈곤』(1847년)과 1847년에 브뤼셀에서 하였으며, 1849년에 『신라인 신문』 제264~269호에 발표된 고용노동과 자본에 관한 강연을 보면 알 수 있다. 맑스는 1859년경에 라살레를 통하여 비로소 로드베르투스라는 경제학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후에 그의 『제3사회 서한』을 대영박물관에서 발견하였다.

이상이 사실상의 경위이다. 그러면 맑스가 로드베르투스를 약탈하였다는 듯이 말하는 내용은 어떠한가? “자본가의 잉여가치가 무엇에서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하고 로드베르투스는 말한다—나는 나의 『제3사회 서

한」에서 맑스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다른 점은 보다 간단명료하게 제시하였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잉여가치학설이다. 또 사실상 그밖에 무엇이든 다른 것을 로드베르투스가 어떻게 해석든지 자기의 것이라고 맑스에게 청구할 수 있으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로드베르투스는 여기에서 자기의 잉여가치학설의 실제상의 창시자이며 맑스는 그것을 자기에게서 약탈하였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제3사회 서한」은 잉여가치의 발생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간단하다. 즉 그가 지대와 이윤을 총괄하여 부르고 있는 렌테(지대)라는 것은 상품가치에 대한 가치첨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임이 당하는 가치공제의 결과이다. 바꾸어 말하면 노임이 생산물가치의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노동생산능률이 충분한 경우에는 노임은 노동생산물의 자연적 교환가치와 동등함을 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자연적 교환가치 중에는 자본의 보상(!)과 렌테를 위한 나머지 부분이 더 남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의 보상 즉 원료와 도구 마멸의 보상을 위하여 아무 것도 남기지 않는 생산물의 자연적 교환가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지 않고 있다.

로드베르투스의 이 획기적 발견이 맑스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다행히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정치경제학 비판」 원고 제 10분책 445페이지 이하에 「기론(歧論), 로드르베투스 씨, 선지대 학설」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 관점에서만 「제3사회 서한」이 고찰되고 있다. 로드베르투스의 잉여가치학설 일반은 다음과 같은 비꼬는 말로 처리되고 있다. “로드베르투스 씨는 우선 토지소유와 자본소유가 분리되지 않은 나라에서 사태가 어떠한가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렌테(이 말로써 그는 전체 잉여가치를 의미한다)는 단순히 부지불노동 또는 부지불노동을 표시하는 생산물량과 동등하다는 중대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고.

그런데 자본주의하에서의 인류는 이미 수 세기 동안이나 잉여가치를 생산하여 왔으며 그리하여 점차 이것의 발생에 관하여 사색하게도 되었다. 최초의 견해는 직접적인 상인적 실천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서 즉 잉여가치는 생산물의 가치에 대한 첨가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중상주의자들간에서 지배하였으나 이미 S. J. 스튜어트는 그 경우에 일방이 얻는 것은 타방이 반드시 잃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통찰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해는 더 오래동안 특히 사회주의자들간에서 지속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A. 스미드에 의하여 고전과 과학으로부터 구축되었다.

그는 「국부론」 제1부, 제6장(131~132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본(stock)이 개개인의 수중에 축적되자마자 그중 일부 사람들은 자연 근면한 사람들을 일시키며 이들에게 원료와 생활수단을 제공하고 이들의 노동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노동이 원료에 첨가한 것에 의하여 이윤을 얻으려고 그 자본을 충용할 것이다.……이 경우에 노동자들이 원료에 첨가하는 가치는 두 부분으로 분해되는데, 그중 하나는 그들의 임금을 지불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주가 원료와 노임에 전대한 자본총액에 대한 고용주의 이윤을 지불하는 부분이다”(A. 스미드 「국부론」 러시아어판, 사회경제서적출판사, 1935년, 제1권, 46페이지)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말한다. “한 나라의 토지가 전부 사적 소유로 되자마자 토지소유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씨뿌리지 않은 곳에서 걷어들이기를 바라고 토지의 자연산물들에 대해서까지 지대를 요구한다.…… 노동자는 이제는 이것들을 수집하는 것을 허가하여준 댓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자기의 노동에 의하여 수집 또는 생산한 것의 한 몫을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몫 또는 같은 것이지만 이 몫의 가격은 지대를 이룬다”(동상서, 47페이지)고.

이 구절에 관하여 맑스는 상술한 「정치경제학 비판」 원고 253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A. 스미드는 잉여가치 즉 수행되어 상품에 대상화된 노동이 지불노동을 넘는, 따라서 임금으로서 자체의 동가를 받은 노동을 넘는, 초과분인 잉여노동을 일반적인 범주—고유한 의미에서의 이윤과 지대는 이것이 갈라진 것에 불과하다—로서 이해하고 있다”고.

또 A. 스미드는 제1부 제8장(172~173페이지)에서 말한다. “토지가 사적 소유로 되자마자 토지소유자는 노동자가 그 토지에서 생산 또는 수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생산물에서 한 몫을 요구한다, 그의 지대는 토지 경작에 충용되는 노동의 생산물 중에서 첫번째 공제를 이룬다. 그러나 토지의 경작자가 수확을 할 때까지 자기를 유지할 수단을 가지고 있는 일은 회귀하다. 그의 생활비는 보통 고용주 즉 차지농업가의 자본(stock)에서 전대되는데, 차지농업가는 노동자의 노동생산물 중에서 한 몫을 받지

않는다면, 또는 그의 자본이 약간의 이윤과 함께 보상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를 고용할 아무 관심도 없을 것이다. 이 이윤이 토지 경작에 충용된 노동의 생산물 중의 두번째 공제를 이룬다. 거의 모든 노동의 생산물은 이윤을 위한 동일한 공제를 당한다. 모든 산업부문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기들에게 노동이 완료될 때까지 원료와 노임과 생활수단을 전대하여 주는 고용주를 필요로 한다. 이 고용주는 그들의 노동생산물 중의 한 몫을 즉 그들의 노동이 가공되는 원료에 첨가하는 가치의 한 몫을 얻는데, 이 몫이 그의 이윤을 이룬다”(동상서, 제1부, 61페이지).

이에 대하여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원고, 256페이지). “그리하여 여기에서 A 스미드는 솔직하게 지대와 자본이윤을 노동자의 생산물에서의, 또는 그에 의하여 원료에 첨가되는 노동과 동등한 그의 생산물 가치에서의 단순한 공제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공제는 다만, A 스미드 자신이 앞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는데 불과한 또는 그의 임금의 등가를 제공하는 데 불과한 노동량을 초과해서 노동자가 원료에 첨가하는 노동부분으로만 즉 그의 노동의 부지불 부분인 잉여노동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따라서 A 스미드는 이미 자본가의 잉여가치가 무엇에서 발생하는가 또 그 외에 토지소유자의 잉여가치가 무엇에서 발생하는가를 알고 있었다. 맑스는 이 사실을 이미 1861년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로드베르투스 와 국가사회주의의 덕택으로 우후죽순처럼 번식한 그의 숭배자들의 무리는 아마도 그것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하고 맑스는 계속한다—스미드는 잉여가치로서의 잉여가치를 독특한 범주로서, 그것이 이윤과 지대로서 취하는 특수한 형태들로부터 분리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리카아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지만—연구에서 많은 오류와 결함이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지적은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로드베르투스에 해당한다. 그의 렌테란 지대와 이윤의 합계에 불과하다. 그는 지대에 관하여는 전혀 그릇된 이론을 작성하였으며 이윤에 관하여는 아무 검토도 없이 선행자들의 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맑스의 잉여가치는 등가 없이 생산수단의 소유자에 의하여 취득되는 가치총액의 일반적 형태이며, 이 가치총액은 맑스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견된, 전혀 독특한 법칙들에 따라 이윤과 지대라는 특수한, 전화된 형태들로 분열된다. 이 법칙들은 제3부에서 전개되

는데, 잉여가치 일반의 이해로부터 그것의, 이윤과 지대로의 전화의 이해에 즉 자본가계급 내부에서의 잉여가치의 분배의 법칙들의 이해에 도달하기 위하여서는 얼마나 많은 중간고리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거기에서 비로소 분명히 된다.

리카아도는 이미 A. 스미드보다 현저히 전진하고 있다. 그는 자기의 잉여가치관을, A. 스미드에게서 이미 맹아로서 현존하였으나 그 적용이 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거의 언제나 망각되고 있는 새로운 가치학설—이것은 그 후의 전체 경제과학의 출발점으로 되었다—위에 세우고 있다. 그는 상품가치를 상품에 실현된 노동량에 의하여 규정함으로써, 노동에 의하여 원료에 첨가된 가치량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 분배된다는 것, 노임과 이윤(즉 여기에서는 잉여가치)으로 분열된다는 것을 끌어내고 있다. 그는 상품의 가치는 이 두 개 부분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동하더라도 다름이 없다는 법칙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 법칙에 있어서 개별적인 예외들만 용인한다. 그는 비록 너무나 일반론적이기는 하지만 노임과 잉여가치(이윤의 형태로 파악되고 있는)의 호상관계에 관한 약간의 주요 법칙들을 확립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으며(맑스 『자본론』 제1부, 제15장, 제1절), 지대는 일정한 사정하에서 나오는 이윤을 넘는 초과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상의 어떤 점에서든 로드베르투스스는 리카아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리카아도 학파를 붕괴케 한 그의 학설의 내부적 모순들은 로드베르투스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를 오도하여 경제학적 해결 대신에 공상적 요구에 이르게 하였을 뿐이다(『우리 국가경제 상태의 인식을 위하여』, 130페이지).

그러나 가치 및 잉여가치에 관한 리카아도의 학설을 사회주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로드베르투스스의 「...인식을 위하여」를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자본론』(제2판) 제1권 609페이지[조선어 역, 제2분책, 294페이지]에는 「국민적 곤란의 원인과 구제책, J. 러셀 경에게 보내는 서한」(런던, 1821년)이라는 한 저술로부터 잉여생산물 즉 자본의 소유자(the possessors of surplus produce or capital)라는 말이 인용되어 있다. 잉여생산물 즉 자본이라는 표현 하나만 가지고도 이 저술의 의의에 대하여 주의를 돌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인데, 이 저술은 맑스에 의하여 망각으로부터 구출된 40페이지의 소책자로서, 거기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자본가에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되든간에(자본가의 입장에서는) 그는 언제나 노동자의 잉여노동(surplus labour)만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생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23페이지). 그러나 노동자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따라서 자본가에 의하여 취득되는 잉여노동이 얼마나 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극히 상대적이다. “만약 자본의 양이 증가함에 비례하여,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자본가는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최저한을 넘어서 매 노동시간의 생산물을 노동자에게서 강탈할 것이다…자본가는 결국 노동자에게: 너는 빵을 먹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탕무와 감자를 먹고 살 수 있으니까라고 말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다(24페이지). 만약 노동자로 하여금 빵 대신에 감자를 먹고 살아야 될 지경에 이르도록 할 수 있다면 그의 노동으로부터 더 많이 짜낼 수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옳은 말이다. 즉 만약 노동자가 빵을 먹고 살기 위하여서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월요일과 화요일의 노동을 자기 것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었다면 감자로 사는 경우에는 월요일의 절반만 자기 것으로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월요일의 나머지 절반과 온 화요일은 국가의 필요나 자본가를 위하여 해방된다(26페이지). 자본가에게 지불되는 이자(interest)는 그것의 형태가 지대이건 화폐이자이건 기업이윤이건간에 타인의 노동으로부터 지불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it is admitted)”(23페이지).

그리하여 여기에서 로드베르투스의 렌테라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을 보는데 다만 렌테라고 하지 않고 이자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정치경제학 비판』 원고, 852페이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소책자는 믿을 수 없는 구두수선공 맥컬릭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기 시작하던 때에 발간된 것인데 이것은 리카아도에 비하여 본질적인 전진을 포함하고 있다. 이 소책자는 잉여가치 또는 리카아도가 부르고 있는 바와 같은 이윤(profit)(종종 잉여생산물—surplus produce—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또는 이 소책자의 저자가 부르고 있는 바와 같은 이자(interest)를 직접 잉여노동(surplus labour)—노동자가 무상으로 수행하는 노동, 다시 말하면 그의 노동력의 가치를 보상하는 즉 그의 임금의 등가를 생산하는 노동량 이상으로 수행하는 노동—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가치를 노동으로 분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과 전혀 마찬가지로 잉여생산물(surplus produce)로 표시되는

잉여가치(surplus value)를 잉여노동(suplus labour)으로 분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사실상 A 스미드가 이미 말한 것이고 리카아도의 전개에 있어서 주요 계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 의하여서는 어디서도 절대적인 형태로 표명되고 확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 다음에 또 원고 859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밖에 저자는 자기의 선행자들에게서 발견한 경제학적 범주들에 사로잡혀 있다. 리카아도에 있어서 잉여가치와 이윤의 혼동이 불쾌한 모순에 이르게 한 것과 전혀 마찬가지로 그에 있어서도 잉여가치를 자본이자라고 명명함으로써 불쾌한 모순에 이르게 하였다. 물론 그는 처음으로 일체의 잉여가치를 잉여노동으로 환원하였다는 점과 또한 비록 잉여가치를 자본이자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동시에 자본이자(interest of capital)를 잉여노동의 일반적 형태로 이해하고 그것의 특수형태들인 지대, 화폐이자 및 기업이윤과 구별하였다는 점에서 리카아도보다 우월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이 특수한 형태들의 하나인 이자(interest)라는 명칭을 일반적인 형태의 명칭으로 쓰고 있다. 그리하여 그가 다시 경제학적 잡꼬대(원고에는 <slang>으로 되어 있다)에 빠지는 데는 이것으로써 충분하다.”

이 최후의 구절은 우리의 로드베르투스에게 그대로 들어 맞는다. 그도 또한 자기의 선행자들에게서 발견한 경제학적 범주들에 사로잡혀 있다. 그도 또한 잉여가치를 렌테(지대)라는, 잉여가치의 전화된 종속형태들의 하나의 명칭으로써, 더구나 그에 의하여 전혀 불명확한 것으로 되어진 명칭으로써 부르고 있다. 이 두 실책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 경제학적 잡꼬대에 빠지고 있으며, 비판을 통해서 리카아도보다 더욱 전진하고 있지 않으며 도리어 그릇되게도 자기의 미완성 이론을, 그것이 아직도 껍질을 벗기기도 전에 유토피아(공상)의 지반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유토피아에 있어서도 그는 언제나 그렇듯이 너무나 뒤늦었던 것이다. 상기 소책자로 말하면 1821년에 발간된 것으로서 로드베르투스의 1842년의 렌테(지대)론보다 이미 완전히 앞섰던 것이다.

상기 소책자는 20년대에 리카아도의 가치이론 및 잉여가치이론을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을 반대하는데 돌렸으며 부르주아지

자신의 무기로써 부르조아지를 격파한 전체 문헌의, 최선단의 전초(前哨)에 지나지 않는다. 오웬의 공산주의는 통털어 그것이 경제학적 논쟁에 등장하는 한 리카아도에 의거하고 있다. 그러나 리카아도 외에도 일련의 많은 저술가들이 있는데 맑스는 이미 1847년에 그 중에서 에드먼즈, 톰슨, 호지스킨 등등의 몇 명만을 프루동을 반대하여(『철학의 빈곤』, 49페이지) [맑스·엔겔스 전집, 러시아어 판, 제5권] 인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4페이지 분의 등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나는 이 무수한 저술들 중에서 딱치는대로 하나만을 들어 보겠다. 그것은 W. 톰슨 저 『인류의 행복에 가장 유익한 부의 분배에 관한 원리의 연구』(신폴, 런던, 1850)이다. 이 저술은 1822년에 집필된 것으로 1827년에 비로소 발간되었다. 여기에서도 도처에서, 비생산적 계급들에 의하여 취득되는 부는 노동자의 생산물로부터의 공제라고 특징지어져 있으며 그것도 상당히 강한 표현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그것의 부단한 노력은 사기가 아니면 설득으로써, 협박이 아니면 강제로써 생산적 노동자로 하여금 그 자신의 노동생산물 중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부분을 받고 노동을 수행하게 하는데 있다”(28페이지). “왜 노동자는 자기 노동의 생산물의 절대적 전체량을 받아서는 안되는가?”(32페이지) “자본가들이 노동자에게서 지대 또는 이윤의 명칭으로 강탈하는 이 보상은 토지 기타의 대상의 사용료로서 요구되는 것이다. 자기의 생산능력외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란 아무 것도 없는 무일물의 생산적 노동자가 이 생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 또는 수단으로 되는 모든 물질적 소재는 타인의 소유이며, 후자의 이해는 전자의 이해와 대립하며 또 후자의 승낙이 전자의 활동의 전제조건이므로—노동자 자신의 노동의 과실 중에서 얼마나 되는 부분을 자본가는 그 노동에 대한 배상으로써 그에게 주려 하는가 하는 것은 이 자본가의 자비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닌가 또 달리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125페이지)…보류되는 생산물, 이것을 조세라고 부르든, 이윤이라고 부르든 또는 훔친 것이라고 부르든간에 이것의 크기에 비례하여…이 감손(減損)”(126페이지) 운운.

나는 이 몇 줄의 글을 쓰면서 수치감을 금치 못한다는 것을 고백한다. 20년대와 30년대의 영국의 반(反)자본주의적 문헌들에 대하여서는 이미 맑스가 『철학의 빈곤』에서 직접 지적하였으며, 그중 적지 않은 것들—1821년의 소책자, 라벤스톤, 호지스킨 등등—은 『자본론』 제1권에서 여러 번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헌들이 독일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참을 만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 것도 배운 바가 없으며 죽을 힘을 다하여 로드베르투스스의 소매에 매달리는 속류저술가뿐만 아니라 학식을 뽐내는 당당한 학적을 가진 교수까지도 이미 A. 스미드와 리카아도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을 맑스가 로드베르투스스에게서 표절하였다고 정색하고 그를 비난할 정도를 자기의 고전경제학을 망각하였다는 데 이르러서는 오늘날 어용경제학이 얼마나 심히 타락하였는가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맑스가 잉여가치에 관하여 새로 말한 것은 무엇인가? 로드베르투스스를 포함한 맑스 이전의 모든 사회주의적 선행자들의 학설은 효과없이 사라지고 말았는데 맑스의 잉여가치학설은 청천의 벽력과 같이, 그것도 모든 문명국에 진동을 준 것은 어떻게 된 일이나?

화학의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일례로써 해명하여 줄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8세기 말에는 아직도 연소설(燃素說)이 지배하였는데 이 설에 의하면 모든 연소의 본질은 연소하는 물체로부터 다른 한 가설(假說)적인 물체 즉 연소(燃素)라는 명칭을 가진 한 절대적 가연물(可燃物)이 분리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 설은 때로는 무리한 적용이 없지 않았지만 당시에 알려진 대개의 화학적 현상들은 충분히 설명하였다. 그런데 1774년에 프리스틀리는 일종의 기체를 제시하였는데 그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보통 공기도 그것에 비하면 오히려 불순한 것으로 보였을 만큼 순수한 것 즉 연소(燃素)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이것을 탈연소(脫燃素) 기체라 불렀다. 그후 얼마 안가서 스웨덴의 쉐레는 동종의 기체를 제시하고 그것이 대기 속에 현존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는 또 이 기체는 그 속에서나 또는 보통의 공기 속에서 어떤 물체를 연소시킬 때 소멸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서 그것을 화기체(火氣體) (Feuerluft) 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로부터 그는 연소(燃素)와 공기 중의 한 성분과의 결합에 있어서(즉 연소할 때에 있어서) 발생하는 화합물은 불이나 열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며 이것은 유리를 통과하여 빠져 나간다는 결론을 끌어내었다.”²⁾

2) 로스코-쇼를렘 「상설 (詳說) 화학 교과서」브라운슈바이그, 1877년, 제 1권, 13, 18페이지.

프리스틀리나 쉘레나 산소를 제시하였던 것이나 그들의 수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그들은 그들의 선행자들에게서 발견한 연소설적 범주들에 사로잡혀 있었다. 전체 연소 관념을 전복하고 화학에 혁명을 일으키고야 말 원소(元素)가 그들의 수중에서는 결실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프리스틀리는 자기의 발견을 즉시로 파리에서 라보아지예에게 알렸으며, 그리하여 라보아지예는 이 새로운 사실에 근거하여 전체 연소(燃素) 화학을 재검토하고, 이 새로운 종류의 기체는 하나의 새로운 원소라는 것과, 연소(燃燒)에 있어서 신비로운 연소(燃素)가 연소하는 물체로부터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원소가 물체와 화합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와같이 하여 연소(燃素) 형태로서 거꾸로 서 있었던 전체 화학을 비로소 바로 세웠다. 그러므로 그가 나중에 주장하듯이 그는 다른 두 사람과 동시에 또 그들과 독립하여 산소를 발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는 산소를 제시하였을 뿐이고 자기들이 제시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도 알아 맞히지 못한 그 두 사람에 비하여 산소의 본래의 발견자이다.

잉여가치학설에 있어서 맑스의, 그 선행자들에 대한 관계를 라보아지예의, 프리스틀리와 쉘레에 대한 그것과 같다. 우리가 지금 잉여가치라고 부르는 생산물가치 부분의 존재는 맑스보다 오래 전에 확인되어 있었다. 또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 즉 그것의 취득자가 아무 등가도 지불하지 않고 얻은 노동의 생산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역시 정도의 차는 있으나 명료하게 진술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넘지는 않았다. 일방의 사람들 즉 고전과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은 기껏해야 노동 생산물이 노동자와 생산수단의 소유자간에 분배되는 양적 관계를 연구하였을 따름이다. 타방의 사람들 즉 사회주의자들은 이 분배가 부당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 부당성을 제거하려고 공상적 수단을 탐구하였다. 그리고 양자가 다 그들의 선행자들에게서 발견한 경제학적 범주들에 사로잡혀 있었다.

거기에 맑스가 나타났다. 그것도 그의 일체의 선행자들에 직접 대립하여서이다. 그의 선행자들이 해결을 본 곳에서 그는 다만 문제를 보았다. 그는 여기서 자기 앞에 있는 것은 탈연소 기체도 아니고 화기체도 아니며 산소라는 것, 여기에서 문제인 것은 하나의 경제학적 사실의 단순한 확인도 아니고 이 사실과 영원한 정의(正義) 및 진정한 도덕과의 충돌도

아니며, 전체 경제학을 변혁할 사명을 가졌으며, 또 전체 자본주의적 생산의 이해를 위한 열쇠를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하나의 사실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는 라보아지예가 산소에 근거하여 연소설 화학의 기존 범주들을 검토한 것처럼, 이 사실에 근거하여 일체의 기존 범주들을 검토하였다. 잉여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그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지 않으면 안되었다. 리아카도의 가치학설 그것이 우선 비판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렇게 하여 맑스는 노동을 그것의 가치형성의 속성으로부터 연구하였고 그리하여 처음으로 어떠한 노동이, 왜, 그리고 어떻게 가치를 형성하는가를 확정하였으며, 또 가치란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응결된 노동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였는데, 이것은 로드베르투스가 최후까지 이해 못한 점이다. 그 다음에 맑스는 상품과 화폐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상품 및 상품교환이 상품에 내재하는 가치 속성에 의하여 어떻게, 그리고 왜 상품과 화폐와의 대립을 낳지 않을 수 없는가를 논증하였다. 이에 기초한 그의 화폐이론은 최초의 완전무결한 것으로서 현재는 침묵 속에서 전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는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화를 연구하고, 그 전화가 노동력의 매매에 입각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가치창조적 속성인 노동력을 노동 대신에 농음으로써 리카아도학파의 붕괴의 원인으로 된 제 난관의 하나 즉 자본과 노동의 호상교환이라는 것과, 가치가 노동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하는 리카아도의 법칙과의 부합의 불가능성을 일거에 해결하였다. 그는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구별을 확정함으로써 처음으로 잉여가치의 형성과정의 현실적 행정을 가장 상세한 점에 이르기까지 그려 내었으며 그럼으로써 해명하는 데, 이르렀는데, 이것은 그의 선행자의 누구에 의해서도 달성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자본 자체내에 하나의 구별을 확정하였는데 그 구별은 로드베르투스도 부르쥔아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조금도 손을 댈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극히 착잡한 경제학적 문제들의 해결의 열쇠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여기에서 다시 제2부가—그리고 차후에 보는 바와 같이 제3부가 더 한층—가장 적절한 증거로 된다. 그는 더 나아가서 잉여가치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의 두 개 형태 즉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를 발견하였으며, 또 그것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역사적 발전에서 논, 서로 각이 하지만 그러나 두 가지가 다 결정적인 역할을 논증하였다. 그는 잉여가

치에 입각하여 우리가 비로소 갖게 된, 최초의 합리적인 노임이론을 전개하였으며, 처음으로 자본주의적 축적사의 개요(概要)와 그 축적의 역사적 경향의 서술을 주었다.

그러면 로드베르투스스는 어떠한가? 그는 이상의 모든 것을 읽은 다음에 경향(傾向)적 경제학자가 언제나 그렇듯이 거기에서 사회에 대한 침해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자신이 이미 잉여가치가 무엇에서 발생하는가를 훨씬, 보다 간단명료하게 말하였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며, 그리고 끝으로 그 모든 것은 물론 오늘의 자본형태 즉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본에는 적합하나 자본개념, 즉 자본에 관한 로드베르투스 씨의 공상적 표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다. 죽을 때까지 연소를 진정한 것이라고 믿고 산소에 관하여는 조금도 알려고 하지 않았던 노(老)프리스틀리와 꼭 같다. 다만 프리스틀리는 산소를 현실적으로 처음으로 제시하였는데 로드베르투스스는 그의 잉여가치 또는 오히려 그의 렌테(지대)에 있어서 진부한 문구를 재발견하였을 따름이며, 맑스는 라보아지에의 소행과는 반대로 자기가 잉여가치의 존재의 사실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을 따름이다.

그밖에 정치경제학에서 로드베르투스스가 해놓은 것도 동일한 수준의 것이다. 그가 잉여가치학설을 하나의 공상으로 조작해 낸 데 대하여서는 맑스에 의하여 「철학의 빈곤」에서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이미 함께 비판되었다. 이것에 관하여 그밖에 더 말하여야 할 것은 내가 상기 저술의 독일어역 서문에서 말하였다. 그는 상업공황을 노동자의 소비부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이미 시스몽디의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원리」 제4권, 제4장에 있다.³⁾ 다만 시스몽디는 그 경우에 항상 세계시장을 안중에 두고 있는데 로드베르투스스의 시야는 프로이센의 국경을 넘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다. 노임이 자본에서 나오느냐 소득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에 관한 그의 사변(思辯)은 변태철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자본론」

3) 그리하여 소수의 소유자들의 수중에 재산이 집적되는 결과 국내시장을 점점 더 축소되고 산업은 점점 더 국외시장에서의 판로를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보다 큰 변혁(즉 이 글에 끝이어서 서술되고 있는 1817년의 공황)이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원리」 1819판, 제1권, 336페이지.

의 이 제2부 제3편에 의하여 완전히 해결되고 있다. 그의 렌테(지대)설은 그의 독점적 소유물로 남아 있게 되는데 그것을 비판한 맑스의 원고가 발간될 때까지는 평온한 잠을 계속할 수 있다.* 끝으로 구 프로이센의 토지소유를 자본의 압박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그의 제안은 이것 역시 전혀 공상적이다. 왜냐하면 그 제안은 이 경우에 제기되는 유일한 실천적 문제 즉 구 프로이센의 융커가 매해 소득이 가령 2만 마르크이고 지출이 가령 3만 마르크인데 그러고도 어떻게 빚을 지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카아도학파는 1830년경에 잉여가치에 부딪치어 난파(難破)하였다. 그 학파가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은 그 후계자인 속류경제학으로서는 더구나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남았다. 리카아도학파를 붕괴케 한 것은 다음 두 가지 점이다.

첫째, 노동은 가치의 척도이다. 그런데 산 노동은 자본과의 교환에 있어서 대상화되는 노동—이것을 목적으로 그 산 노동이 교환된다—보다 가치가 적다. 산 노동의 일정량의 가치인 노임은 항상 이 동일한 양의 산 노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또는 이것이 표시되는, 생산물의 가치보다 적다고, 문제를 이렇게 이해하여서는 사실상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는 맑스에 의하여 옳게 설정되었으며 그림으로써 해답을 얻었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노동이 아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으로서 노동이 특수한 가치를 가질 수 없는 것은 무게가 특수한 중량을 가질 수 없으며, 열이 특수한 온도를 가질 수 없으며, 전기가 특수한 전류(電流)강도를 가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상품으로서 매매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노동력이다. 노동력이 상품이 되자마자 그것의 가치는 하나의 사회적 생산물로서의 노동력에 체화된 노동에 준거하게 되며, 노동력의 생산 및 재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과 동등하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력의 가치에 기초한, 노동력의 매매는 결코 경제학적 가치법칙과 모순되지 않는다.

둘째, 리카아도의 가치법칙에 의하면 동등하게 지불되는 동등한 양의 산 노동을 사용하는 두 개의 자본은 기타의 모든 사정이 동등하다면 동

*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맑스의 노작 「잉여가치에 관한 제학설」인데 이것은 1904년에 독일어로 처음 발간되었다. —편집자.

동한 시간에 동등한 가치의 생산물을 생산하며 또 동등한 크기의 잉여가치 또는 이윤을 생산한다. 그러나 그 자본들이 부동량의 산 노동을 사용한다면 그것들은 동등한 크기의 잉여가치 또는 리카아도학파가 말하는 이윤을 생산할 수 없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이다. 사실상으로는 동등한 자본들은 그것들에 의하여 사용되는 산 노동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동등한 시간에 평균적으로 동등한 이윤을 생산한다. 따라서 여기에 가치법칙과의 모순이 있는 것이며 이 모순을 리카아도는 벌써 발견하였지만 그의 학파도 역시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로드베르투스도 이 모순을 보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는 그것을 해결할 대신에 그것을 자기의 공상의 출발점의 하나로 삼았다(「인식을 위하여」 131페이지).

이 모순을 맑스는 이미 「정치경제학 비판」 원고에서 해결하였다. 「자본론」의 계획에 의하면 이 해결은 제3부에서 주어질 것이다. 제3부의 발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수개월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로드베르투스에게서 맑스의 학설의 비밀의 원천 및 그보다 탁월한 선행자를 발견하고자 하는 경제학자들에게는 여기에 로드베르투스의 경제학이 무엇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 줄 기회가 있다. 그들이 어떻게 가치법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입각하여 동등한 평균이윤율이 형성될 수 있으며 또 형성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논증한다면 그때에 우리는 서로 더 이야기하기로 하자. 여하간 그들이 빨리 해 주기를 바란다. 이 제2부의 빛나는 연구들과 거의 전인미답의 영역에 대한 그 연구들의 새로운 성과들은 제3부—여기에서는 자본주의적 기초 위에서의 사회적 재생산과정에 관한 맑스의 서술의 종국적인 결론들이 전개된다—의 내용에 대한 전체적 명제들에 불과하다. 이 제3부가 발간될 때에는 로드베르투스라는 경제학자는 더는 문제로 되지 않을 것이다.

「자본론」 제2부와 제3부는 맑스가 나에게 누차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부인에게 바치기로 되어 있었다.

1885년 5월 5일.

맑스의 탄생일에, 런던에서
F. 엥겔스

이 제2판은 대체로 제1판을 그대로 재인쇄한 것이다. 오шиб이 정정되었으며, 약간의 문체상 부주의가 제거되었으며, 약간의 잘못된 중복된 구절들이 삭제되었다.

제3부는 전혀 예기하지 않았던 난관들이 있었으나 이것도 거의 원고가 완성되어 있다. 나의 건강이 허락한다면 이 가을에는 인쇄에 붙일 수 있다.

1893년 7월 15일,

런던에서
F. 엥겔스

일람의 편리를 위하여 다음에 제2~제8고에서 취한 개소들의 간단한 목록을 적어 둔다.

제 1 편

- [제1장] 원문 23~24페이지 제2고에서
- 원문 24~34페이지 제7고에서
- 원문 34~38페이지 제6고에서
- 원문 38~58페이지 제5고에서
- [제2~4장] 원문 59~112페이지 제5고에서
- [제4장] 원문 112~115페이지 발췌 책 중에 있는 주
- [제5, 6장] 원문 115~146페이지 제4고에서(다만 다음의 삽입이 있다).
- 원문 123~125페이지 제8고에서의 개소
- 원문 128~135페이지의 주 제2고에서

제 2 편

- [제7, 8장] 원문 147~157페이지 제4고의 결말
- [제8~17장] 원문 157~351페이지 전부 제2고에서

제 3 편

[제18장] 원문 352~360페이지 제2고에서

[제19장]

제1, 2절 원문 360~392페이지 제8고에서

제3절 원문 392~394페이지 제2고에서

[제20장]

제1절 원문 395~398페이지 제2고에서, 결말의 구절만은 제8고에서

제2절 원문 398~401페이지 대체로 제2고에서

제3~5절 원문 401~425페이지 제8고에서

제6~9절 원문 425~441페이지 제2고에서

제10~12절 원문 441~485페이지 제8고에서

제13절 원문 485~494페이지 제2고에서

[제21장] 원문 494~529페이지 전부 제8고에서

제1편

자본의 형태변화와 그 순환

제1장 화폐자본의 순환

제2장 생산자본의 순환

제3장 상품자본의 순환

제4장 순환과정의 세 형상

제5장 유통기간

제6장 유통비

제1편 자본의 형태변화와 그 순환

제1장 화폐자본의 순환

자본의 순환과정은"세 개의 단계를 통과하는바 이 단계들은 제1권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순서를 이룬다.

제1단계 : 자본가는 구매자로서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에 나타난다. 그의 화폐는 상품으로 전환된다. 또는 $G-W$ 라는 유통행위를 통과한다.

제2단계 : 자본가에 의한 구매된 상품들의 생산적 소비. 자본가는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자로서 작용한다. 그의 자본은 생산과정을 통과한다. 결과는 그 생산 제 요소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상품이다.

제3단계 : 자본가는 판매자로서 시장에 돌아온다. 그의 상품은 화폐로 전환된다. 또는 $W-G$ 라는 유통행위를 통과한다.

따라서 화폐자본의 순환을 표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 $G-W \cdots P \cdots W'-G'$. 여기서 점선(點線)은 유통과정이 중단된 것을 표시하며 W' 및 G' 는 잉여가치에 의하여 증대된 W 및 G 를 표시한다.

제1단계 및 제3단계는 제1권에서는 다만 그것이 제2단계 즉 자본의 생산과정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한에 있어서만 연구되었다. 그러므로 거기서는 자본이 그 각이한 단계들에서 취하는, 그리하여 순환이 반복될 때 자본이 때로는 취하며 때로는 벗어버리는 각이한 형태들은 고려 밖에 있었다. 지금에 와서는 이 형태들이 당면한 연구대상을 이룬다.

이 형태들을 순수하게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형태들의 변화 및 형성 그 자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모든 계기들을 사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상품들이 그것들의 가치대로 판매된다고 가정할 뿐만 아니라 판매가 불변한 사정 밑에서 진행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순환과정이 진행되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가치의 변화는 도외시된다.

1) 제7고에서.

제1절 제1단계 $G-W^{2)}$

$G-W$ 는 일정액의 화폐의 일정액의 상품으로의 전환을 표시하며, 구매자에 있어서는 그의 화폐의 상품으로의 전환을, 판매자에 있어서는 그의 상품의 화폐로의 전환을 표시한다. 일반적 상품유통에 있어서는 이 행정을, 동시에 개별적 자본의 자립적 순환에 있어서 기능적으로 규정된 한 토막으로 만드는 것은 우선 이 행정의 형태가 아니라 그것의 소재적 내용, 화폐와 자리를 바꾸는 상품들의 소비의 특수한 성격이다. 이 상품들은 일방으로는 생산수단 타방으로는 노동력, 즉 상품생산의 물적 및 인적 요인들인데, 이 요인들의 특수한 성격은 물론 생산되어야 할 제품의 종류에 상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우리가 노동력을 A 라고 부르고 생산수단을 P_m 이라고 부른다면 자본가에 의하여 구매되어야 할 상품액 $W=A+P_m$ 이며 간단히 표시하면 $W < \frac{A}{P_m}$ 이다. 따라서 $G-W$ 는 그것의 내용상으로는 $G-W < \frac{A}{P_m}$ 을 표시한다. 즉 $G-W$ 는 $G-A$ 와 $G-P_m$ 으로 나뉘어지며, 화폐액 G 는 두 개의 부분으로 분열되고 그 중 일방은 노동력을, 타방은 생산수단을 구매한다. 이 두 계열의 구매는 전혀 각이한 시장들에 즉 일방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상품시장에, 타방은 노동시장에 속한다.

그러나 $G-W < \frac{A}{P_m}$ 은 G 가 전환되는 상품액의 이러한 질적인 분열 외에 극히 특징적인 양적 관계도 또한 표시한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노동력의 가치 따라서 가격은 노동력을 상품으로서 판매하는 노동력의 소유자에게 노임의 형태로 즉 잉여가치도 포함하는 일정량의 노동의 가격으로서 지불된다. 그리하여 만약 예컨대 노동력의 일(日)가치가 5시간 노동의 생산물인 3마르크와 같다면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계약에서 이 금액은 예컨대 10시간 노동에 대한 가격 또는 임금으로서 나타난다. 만약 그러한 계약이 예컨대 50명의 노동자들과 체결된

2) 이하는 1878년 7월 2일에 시작된 제7고.

다면 이 노동자들은 하루 동안에 도합 500노동시간을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중 절반인 250노동시간=25개의 10시간 노동일은 다만 잉여노동으로써 이루어진다. 구매하여야 할 생산수단들의 양과 규모는 이 노동량의 총용을 위하여 충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G-W < \frac{A}{P_m}$ 은 일정한 화폐액 예컨대 422파운드 스텔링이 서로 적응하는 생산수단과 노동력으로 전환된다는 질적 관계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노동력 A에 지출되는 화폐부분과 생산수단 P_m 에 지출되는 부분과의 양적 관계—일정한 수의 노동자들에 의하여 지출될 여분의 잉여노동량에 의하여 처음부터 규정되어 있는 관계도 표현된다.

따라서 예컨대 어떤 방적공장에서 50명의 노동자들의 주(週)임금이 50파운드 스텔링이라면, 3,000시간의 주노동—그중 1,500시간은 잉여노동이다—에 의하여 방사로 전화되는 생산수단의 가치를 372파운드 스텔링이라고 가정할 때 이 372파운드 스텔링이 생산수단에 지출되지 않으면 안된다.

각이한 산업부문들에서 추가적 노동의 총용을 위하여 생산수단의 형태로 추가적 가치지출이 얼마나 요구되는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전혀 상관이 없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어떤 사정하에서라도 생산수단에 지출되는 화폐부분— $G-P_m$ 이라는 행위에서 구매되는 생산수단—이 충분하여야 한다는 것 따라서 처음부터 계산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한 비율로 제공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뿐이다. 환언하면 생산수단의 양은 전체 노동량을 흡수할 만큼 즉 그 노동량에 의하여 생산물로 전화될 만큼 충분하여야 한다. 만약 충분한 생산수단이 현존하지 않는다면 구매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분의 노동은 이용될 수 없을 것이다. 이 노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의 권리는 아무런 소용도 없을 것이다. 만약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동보다 더 많은 생산수단이 현존한다면 그것은 노동에 의하여 포화(飽和)되지 않은 채로 남을 것이며 생산물로 전화되지 않을 것이다.

$G-W < \frac{A}{P_m}$ 이라는 행위가 완료될 때 구매자는 어떤 유용한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생산수단들과 노동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노동력의 가치를 보상하기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노동력을 유출시킬 수 있으며 또는 보다 더 많은 양의 노동을 마음

대로 할 수 있는 동시에 이 노동량의 실현 또는 대상화에 필요한 생산수단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그 생산 제 요소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는 제품의—즉 잉여가치를 포함하는 상품량의—생산제요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화폐형태로 전대한 가치는 이제 그것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상품의 형태로) 가치로서 실현될 수 있는 현물형태로 존재한다. 환언하면 그것은 가치 및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것으로서 기능하는 능력을 가진 생산자본의 상태 또는 형태로 존재한다. 이 형태로 있는 자본을 P라고 하자.

그런데 P의 가치 $= A + P_m$ 의 가치는 A 및 P_m 로 전환된 G와 동등하다. G는 P와 동일한 자본가치이며, 다만 그 존재방식이 다를 뿐이다. 즉 G는 화폐상태 또는 화폐형태로 있는 자본가치이며, 화폐자본이다.

그러므로 $G - W < \frac{A}{P_m}$ 이라는 행위 또는 그것의 일반적 형태로 보면 모든 상품 구매행위의 총화인 $G - W$ 는 일반적 상품유통의 행정인 동시에 자본의 자립적인 순환과정의 한 단계로서는 화폐형태로부터 생산형태로의 자본가치의 전화이며, 간단히 말하면 화폐자본의 생산자본으로의 전화이다. 따라서 여기서 우선 고찰되는 순환형태에서는 화폐는 자본가치의 최초의 담당자로서 나타나며, 그러므로 화폐자본은 화폐가 전대되는 형태로서 나타난다.

화폐자본으로서는 자본은 화폐기능들 예컨대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 구매수단의 기능 및 일반적 지불수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노동력은 그것이 우선 구매되나 그것이 작용한 후에야 비로소 지불되는 한 후자의 기능이 수행된다. 생산수단이 기성품으로서 시장에 현존하지 않고 그리하여 그것을 주문하여야 하는 한, 화폐는 $G - P_m$ 의 행위에서 역시 지불수단으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능력은 화폐자본이 자본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화폐이기 때문에 생긴다.

타방으로 화폐상태에 있는 자본가치는 또한 화폐의 기능들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어떠한 기능도 수행할 수 없다. 화폐의 기능들이 자본의 기능들로 되게 하는 것은, 자본의 운동에 있어서의 그 화폐의 기능들의 일정한 역할이며 따라서 화폐의 기능이 나타나는 단계와 자본순환의 다른 단계들과의 연계이다. 예컨대 우선 이 경우에 있어서 화폐는 상품들로 전환되는데 이 상품들의 결합은 생산자본의 현물형태를 이루는

것이며, 따라서 잠재적으로, 가능성으로서, 자체 속에 이미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G-W < \frac{A}{P_m}$ 에서 화폐자본의 기능을 수행하는 화폐부분은 이 유통 그 자체의 완료에 의하여 하나의 기능 즉 자본으로서의 그것의 성격이 소멸하고 화폐로서의 그것의 성격이 남는 기능의 수행으로 넘어간다. 화폐자본 G 의 유통은 $G-P_m$ 및 $G-A$ 로, 즉 생산수단의 구매 및 노동력의 구매로 나뉘어진다. 후자의 행정을 그 자체로서 고찰하여 보자. $G-A$ 는 자본가측에서 보면 노동력의 구매이며 노동력의 소유자인 노동자측에서 보면 그것은 노동력의 판매-노임형태가 이미 전제되어 있는만큼 여기에서는 노동의 판매라고 말할 수도 있다—이다. 구매자에게 있어서 $G-W$ ($=G-A$)인 것이 여기에서는 모든 구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자(노동자)에게 있어서는 $A-G$ ($=W-G$) 즉 그의 노동력의 판매이다. 이것은 상품의 첫번째 유통단계 또는 첫번째 형태변화(제1권 제3장 제2절 a)이다. 이것은 노동의 판매자측에서 보면 그의 상품의 화폐형태로의 전화이다. 그와 같이 하여 얻은 화폐를 노동자는 그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일정량의 상품들, 즉 소비품들로 점차 지출한다. 따라서 그의 상품의 유통 전체는 $A-G-W$ 즉 첫째로 $A-G$ ($=W-G$) 및 둘째로 $G-W$ 이라는 형태로 표시되며, 그리하여 그것은 화폐가 순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단순한 유통수단으로서, 상품 대 상품이라는 전환의 단순한 매개자로서 나타나는 단순한 상품유통의 일반적 형태인 $W-G-W$ 로 표시된다.

$G-A$ 는 화폐자본의 생산자본으로의 전화의 특징적 계기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화폐형태로 전대된 가치가 자본으로, 잉여가치를 낳는 가치로 현실적으로 전화하기 위한 본질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G-P_m$ 은 $G-A$ 에 의하여 구매된 노동량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이다. 그러므로 $G-A$ 는 제1부 제2편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화」에서 이 관점으로부터 서술되었다. 여기에서는 사태를 또 하나의 관점으로부터, 즉 특별히 자본의 현상 형태로서의 화폐자본과의 관련에서 고찰하여야 한다.

$G-A$ 라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특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렇게 간주되는 것은 노동력의 구매가 노동력의 가격인 노임의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노동의 제공을 가져오는, 따라서 전대된 가치의 자본화를 위하여 또는 같은 말이지만

잉여가치의 생산을 위하여 기본적 조건인 잉여노동의 제공을 가져오는, 구매계약이라는 상술한 이유에서는 결코 아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주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의 형태 때문이며 노임형태에서 노동이 화폐로써 구매되기 때문인데, 이것이 화폐경제의 표식으로 되는 것이다.

여기서 또한 특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형태의 불합리성이 아니다. 오히려 이 불합리성은 간과된다. 이 불합리성은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로서의 노동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데 따라서 또 일정량의 노동이 그 노동의 가격—일정량의 화폐와의 그 노동의 등가성—으로 표현되는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노임은 다만 가장된 형태에 지나지 않으며 이 형태에 있어서는 예컨대 노동력의 일(日)가격은 이 노동력에 의하여 하루 동안에 유출시켜지는 노동의 가격으로서 표시되며 그리하여 이 노동력에 의하여 예컨대 6노동 시간 동안에 생산되는 가치가 노동력의 12시간의 기능 또는 12시간 노동의 가치로서 표현된다.

G—A가 소위 화폐경제의 특징, 표식으로 간주되는 것은 노동이 여기서 그 소유자의 상품으로서 나타나며 따라서 화폐가 구매자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화폐관계(즉 인간활동의 매매) 때문이다. 그러나 G가 화폐자본으로 전화하지도 않았고 또는 경제의 일반적 성격이 변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폐는 이미 아주 일찍부터 소위 봉사의 구매자로 나타났다.

화폐가 어떤 종류의 상품으로 전화되는가 하는 것은 화폐에 대하여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화폐는 모든 상품들의 일반적 등가형태인데, 모든 상품들은 그 가격들으로써 이미, 그것들이 관념적으로 일정한 화폐액을 대표하며 화폐로의 자체의 전화를 대기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화폐와의 그것들의 위치변경에 의하여서만 자체의 소유자를 위한 사용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 형태를 얻는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일단 노동력이 그것의 소유자의 상품으로서 시장에 존재하며, 그리하여 이 상품의 판매가 노동에 대한 지불의 형태로, 노임의 모습으로 진행된다면 그것의 매매에는 모든 다른 상품의 매매에 비하여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 특징적인 것은 상품인 노동력이 구매될 수 있는 것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이 상품으로서 나타난다는 데 있다.

생산의 대상적 요인과 인적 요인이 상품들으로써 이루어지는 한, 자본가

는 이 요인들의 결합을 화폐자본의 생산자본으로의 전화인 $G-W < \frac{A}{P_m}$ 에 의하여 달성한다. 만약 화폐가 처음으로 생산자본으로 전화된다면 또는 처음으로 자체의 소유자를 위하여 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한다면, 그 소유자는 노동력을 구매하기 전에 우선 생산수단들 즉 작업용 건물, 기계 등등을 구매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력이 그의 지배하에 넘어가기 전에 그에게는 노동력을 노동력으로서 충용하기 위한 생산수단들이 현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가측으로 볼 때 사태는 이상과 같이 되어 있다.

노동자측으로 보면, 그의 노동력의 생산적 활동은 노동력의 판매의 결과 노동력이 생산수단들과 결합되는 순간부터 비로소 가능하다. 따라서 노동력은 판매 이전에는 그것의 활동의 대상적 제 조건인 생산수단들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한다. 이러한 분리상태에서는 노동력은 자체의 소유자를 위한 사용가치의 생산에도, 또는 그 소유자가 그것들을 판매하여야 생활할 수 있을 그러한 상품들의 생산에도 직접 이용될 수 없다. 그러나 노동력은 그것이 판매됨으로써 생산수단들과 결합되자마자, 생산수단들과 똑같이 그것의 구매자의 생산자본의 한 구성부분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G-A$ 라는 행위에서, 화폐소유자와 노동력소유자는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로서 서로 관계하며, 화폐소유자와 상품소유자로서 서로 대립하며 따라서 이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화폐관계에 서로 처해 있다 하더라도—그렇다 하더라도 구매자는 애당초부터 동시에, 노동력소유자에 의하여 노동력이 생산적으로 지출되는 대상적 조건들을 형성하는 생산수단들의 소유자로서 등장한다. 환언하면 이 생산수단들은 노동력의 소유자에게 타인의 소유로서 대립한다. 타방으로 노동의 판매자는 그것의 구매자에게 타인의 노동력으로서 대립하는데, 이 노동력은 구매자의 자본이 생산자본으로서 실지 기능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구매자의 지배하에 넘어가서, 그의 자본에 합체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자본가와 고용노동자가 $G-A$ (노동자측에서 볼 때에는 $A-G$)라는 행위에서 서로 대립하는 순간에, 자본가와 고용노동자간의 계급관계가 이미 현존하고 있으며 이미 전제되어 있다. 고찰되고 있는 행위는 구매와 판매이며 화폐관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매자로서는 자본가가, 판매자로서는 고용노동자가 전제되어 있는 그러한 구매와 판매이다. 따라서 소여의 관계는 노동력의 실

현을 위한 제 조건—생활수단 및 생산수단—이 타인의 소유로서 노동력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데로부터 나온다.

이 분리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문제로 되지 않는다. 이 분리는 $G-A$ 가 수행되자마자 존재한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이다. 즉 $G-A$ 는 화폐자본의 하나의 기능으로서 나타나지만 또는 화폐가 여기에서는 자본의 존재형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코 다만 화폐가 여기에서 유용효과를 가지는 인간활동에 대한, 봉사에 대한 지불수단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따라서 그것은 결코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화폐가 이 형태로 지출될 수 있는 것은 노동력이 생산수단(노동력 자체의 생산수단으로서의 생활수단도 포함하여)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며, 또 이 분리는 노동력이 생산수단의 소유자에게 판매되고 따라서 노동력의 유출—이것의 한계는 노동력 자체의 가격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의 한계와는 결코 합치하지 않는다—도 구매자에게 속함으로서만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관계가 생산과정에서 발현하는 것은 오직, 그 자체가 이미 유통행위 속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기본적인 경제적 조건들의 차이 속에, 그들의 계급적 관계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는 화폐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이 관계의 존재만이 단순한 화폐기능을 자본기능으로 전화시킬 수 있다.

화폐자본(그런데 우리는 당분간 이것이 여기에서 우리 앞에서 수행하는 일정한 기능의 한계내에서만 이것을 문제로 한다)의 이해에 있어서는 보통 두 개의 오류가 병행하든가 또는 엉키어 있다. 첫째로, 자본가치가 화폐자본으로서 수행하며 또 바로 그것이 화폐형태에 있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그릇되게도 자본가치의 자본으로서의 성격에서 끌어내는 것인데, 그러나 이 기능들은 다만 자본가치의 화폐상태에, 자본가치의 화폐로서의 현상형태에 기인하는 것이다. 둘째로, 그와는 거꾸로, 화폐기능을 동시에 자본기능으로 만드는 화폐기능의 특수한 내용을 화폐의 본성으로부터 끌어내는(그에 따라 화폐가 자본과 혼동된다) 것인데, 그러나 화폐자본의 기능은, 이 $G-A$ 의 수행에 있어서와 같이, 단순상품유통 및 이에 대응하는 화폐유통에서는 결코 부여되어 있지 않은 사회적 조건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노예의 매매도 그 형태로 보면 역시 상품의 매매이다. 그러나 노예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화폐는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노예제도가 존재하면 화폐는 노예의 구입에 지출될 수 있다. 거꾸로 화폐가 구매자의 수중에 있다는 그것만으로는 결코 노예제도를 가능하게 하지 않는다.

자기 노동력의 판매(자기 노동의 판매의 형태 또는 노임의 형태로서의)가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전체 사회에 자체의 낙인을 찍는 상품생산의 전제를 이룬다는 것, 따라서 화폐자본이 여기에서 고찰되는 $G-W < \overset{A}{P}_m$ 의 기능을 사회적 규모에서 수행한다는 것—이것은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본래의 결합을 해체시킨 역사적 제 과정을, 즉 그 결과로서 인민대중,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의 비소유자로서, 생산수단의 소유자로서의 비노동자와 대립하게 되는 제 과정을 내포한다. 이에 있어서 해체 이전의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결합이, 노동력 자체가 생산수단으로서 다른 생산수단들에 속하는 형태를 취하였는가 또는 노동자가 생산수단의 소유자였는가 하는 것은 사태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하여 $G-W < \overset{A}{P}_m$ 이라는 행위의 기초에 놓여 있는 사태의 본질은 분배이다. 그러나 소비수단의 분배라는 보통 의미에 있어서의 분배인 것이 아니라 생산 자체의 분배인데, 이 요소들 중 대상적 요인들은 일방에 집중되며 노동력은 타방에 그것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따라서 $G-A$ 라는 행위가 일반적인 사회적 행위로 될 수 있기 전에 생산자본의 대상적 부분인 생산수단들이 이미 그러한 것으로서, 자본으로서, 노동자에게 대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은 일단 확립되면 그것의 발전에서 이 분리를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무단히 더 큰 규모에서 확대하며 드디어 이 분리는 보편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적 상태로 된다. 그러나 사태에는 또 하나의 다른 측면이 있다. 자본이 형성되고 생산을 정복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상업의 일정한 발전단계, 따라서 상품유통 따라서 상품생산의 발전단계가 전제로 되어있다. 제품들은 그것들이 판매를 위하여, 따라서 상품으로서 생산되지 않는 한, 상품으로서 유통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상품생산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 비로소 생산의 정상적이며 지배적인 성격으로서 나타난다.

소위 농민해방의 결과 이제는 농업을 농노적 강제노동자들 대신에 고용노동자들로써 경영하고 있는 러시아의 토지소유자들은 두 가지 불평을 말하고 있다. 첫째로는 화폐자본의 부족에 대하여 그리하여 예컨대 그들은 수확물을 판매하기 전에 고용노동자들에게 비교적 다액의 지불을 하여야 하는데 그 경우에 첫째 조건인 현금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자본주의적으로 생산을 경영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노임지불을 위하여 화폐형태로서의 자본이 부단히 현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들은 이것에 관하여 근심할 필요가 없다. 시간이 가면 좋은 수가 있는 법이며 또 산업자본가는 이미 자기 자신의 화폐뿐만 아니라 타인의 화폐(l'argent des autres)도 마음대로 한다.

그런데 더 특징적인 것은 둘째 불평이니, 즉 화폐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때나 구매할 수 있는 노동력의 충분한 양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러시아의 농촌 노동자는 촌락공동체의 토지에 대한 공동소유로 말미암아 아직 자신의 생산수단으로부터 완전히는 분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는 아직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고용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유로운 고용노동자가 사회적 규모에서 현존한다는 것이 화폐의 상품으로의 전화인 $G-W$ 가 화폐자본의 생산자본으로의 전화로서 나타날 수 있기 위하여 불가결한 조건인 것이다.

그러므로 화폐자본의 순환을 표시하는 공식 $G-W \cdots P \cdots W' - G'$ 는 이미 발전된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만 자본순환의 자명한 형태인 것은 전혀 명백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적 규모에서의 고용노동자계급의 현존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상품과 잉여가치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고용노동자계급을, 그것도 부단히 확대되는 규모에서 재생산하며 또한 직접적 생산자들의 압도적 대다수를 고용노동자로 전화시킨다. 그러므로 $G-W \cdots P \cdots W' - G'$ 는 그것의 진행의 첫째 전제가 고용노동자계급의 부단한 현존이므로 이미 생산자본의 형태로서의 자본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또 생산자본의 순환형태도 전제로 하고 있다.

제2절 제2단계. 생산자본의 기능

여기에서 고찰하는 자본의 순환은 화폐의 상품으로의 전화인 $G-W$ 라는 유통행위 즉 구매로써 시작된다. 따라서 유통은 상품의 화폐로의 전화인 대립적인 형태변화 $W-G$, 즉 판매에 의하여 보충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G-W < \frac{A}{P_m}$ 의 직접적 결과는 화폐형태로서 전대된 자본가치의 유통의 중단이다. 화폐자본의 생산자본으로의 전화에 의하여 자본가치는 현물형태를 취하게 되는바 이 형태에서 자본가치는 유통을 계속할 수 없으며 소비로 즉 생산적 소비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력의 소비인 노동은 노동과정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자본가는 노동자를 상품으로서 다시 판매할 수 없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그의 노예가 아니며 또 그는 일정한 시간에 걸치는 노동자의 노동력의 이용 이상의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방으로 자본가는 노동력으로 하여금 생산수단들을 상품형성의 요소들로서 이용케 함으로써만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제1단계의 결과는 제2단계 즉 자본의 생산단계의 초입이다.

이 운동은 $G-W < \frac{A}{P_m} \dots P$ 로 표시되는바 이에 있어서 점선은, 자본의 유통은 중단되어 있으나 그것의 순환과정은 계속되고 있다는—자본이 상품유통의 분야로부터 생산분야로 들어감으로써—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1단계인 화폐자본의 생산자본으로의 전화는 제2단계인 생산자본의 기능의 선행단계 및 서막에 불과하다.

$G-W < \frac{A}{P_m}$ 은 이 행위를 수행하는 개인이 임의의 사용형태로 있는 가치들을 마음대로 할 뿐만 아니라 이 가치들을 화폐형태로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즉 그가 화폐소유자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행위는 바로 화폐의 교부에 귀착되는 바, 이 개인이 화폐소유자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교부행위 그 자체에 의하여 화폐가 그에게로 환류한다는 것이 함축되고 있는 한에서이다. 그런데 화폐는 상품의 판매에 의하여서만 그에게로 환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행위는 최초부터 이 개인이 상품생산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G—A. 고용노동자는 다만 노동력의 판매에 의하여서만 생활한다. 노동력의 유지—노동자의 자기 보존—는 하루 하루의 소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노동자에 대한 지불은 그가 그의 자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구입—A—G—W 또는 W—G—W라는 행위—을 반복할 수 있도록 부단히 짧은 기간마다 반복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대하여 부단히 화폐자본가로서 대립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의 자본은 화폐자본으로서 대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타방으로는 직접적 생산자들인 고용노동자 대중이 A—G—W라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생활수단들이 구매될 수 있는 형태로 즉 상품형태로 부단히 그들에게 대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는 이미 높은 정도의, 생산물의 상품으로서의 유통을, 따라서 또 상품생산의 광범한 규모를 요구한다. 고용노동에 의한 생산이 일반적으로 되면 상품생산이 생산의 일반적 형태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상품생산은, 그것이 일반적 성격을 갖는다고 전제하면, 그것은 그것으로서 사회적 분업의 부단한 장성 즉 일정한 자본가에 의하여 상품으로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특수화의 부단한 증대, 서로 보충하는 생산과정들의 자립적 과정들로의 분열의 부단한 증대를 조건짓는다. 그러므로 G—A가 발전하는 정도와 동일한 정도로 G—P_m도 발전한다. 즉 그와 동일한 정도로 생산수단의 생산은 그것을 생산수단으로 하는 상품의 생산으로부터 분리되며, 생산수단은 매개 상품생산자 자신에 대하여, 그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정한 생산과정을 위하여 그가 구매하는 상품으로서 대립한다. 생산수단은 매개 상품생산자의 생산부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자립적으로 경영되는 생산부문들로부터 나와서, 그의 생산부문에 상품으로서 들어간다. 그러므로 구매되지 않으면 안된다. 상품생산의 물적 조건들은 부단히 증대되는 규모로 매개 상품생산자에 대하여 다른 상품생산자들의 생산물로서, 즉 상품으로서 대립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와 동일한 규모로 자본가는 화폐자본가로서 등장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는 그의 자본이 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으면 안되는 규모가 확대된다.

타방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본적 조건—고용노동자계급의 존재—을 낳는 동일한 사정들이 전체 상품생산의,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으로의 이행을 촉진한다.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은 그것이 발전함에 따라 그보다 낡은 온갖 생산형태 즉 주로 자신의 직접적 소비를 목적으로 하며 과잉생산물

만을 상품으로 전화시키는 생산형태에 대하여 파괴적이며 분해적인 작용을 한다. 그것은 생산물의 판매를 주되는 관심사로 만드는바 우선은 생산방식 그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것같이 보이나, 예컨대 중국인, 인도인, 아랍인 등등과 같은 인민들에 대한 자본주의적 세계무역의 최초의 작용이 그리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이 뿌리를 박은 곳에서는 그것은 생산자 자신의 노동에 기초하거나 또는 파임생산물만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데 기초하는 모든 상품생산 형태들을 파괴한다. 그것은 처음에는 상품생산을 일반화하며 그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모든 상품생산을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으로 전화시킨다.³⁾

생산의 사회적 형태가 어떠한 간에 노동자와 생산수단은 언제나 생산의 요인들이다. 그러나 전자와 후자는 서로 분리된 상태에 있어서는 가능성으로 보아서만 그렇다. 무릇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그것들이 결합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결합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성격 및 방식에 의하여 사회구조의 각이한 경제적 시대들이 구별된다.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노동자의, 자신의 생산수단으로부터의 분리가 미리 주어진 출발점이며 그리하여 우리는 어떻게, 어떤 조건하에서 노동자와 생산수단이 자본가의 수중에서 결합되는가를—즉 그의 자본의 생산적 존재방식으로서 통합되는가를 이미 보았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통합된 상품형성의 인적 및 물적 요인들이 서로 들어서는 현실적 과정인 생산과정은 그 자체가 자본의 한 기능—자본주의적 생산과정으로 되는 바, 이것의 본성에 대하여서는 이 저작의 제1부에서 상세히 전개되었다.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은 동시에 노동력 착취의 기업으로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이 비로소 획기적인 착취방식으로 되는데, 이 착취 방식이야말로 자체의 계속적인 역사적 발전에서 노동과정의 조직과 기술의 거대한 발전에 의하여 사회의 전체 경제구조를 변혁하며 모든 선행 시기들을 비할 바 없이 능가한다.

생산수단과 노동력은 그것들이 전대된 자본가치의 존재형태인 한에 있어서는 생산과정 중에 가치의 조성 또 따라서 잉여가치의 조성에서 노는 각이한 역할들에 의하여 불변자본 및 가변자본으로서 구분된다. 그것들은 또한 생산자본의 각이한 구성 부분들로서는, 생산수단은 그것이 일단 자

3) 이상은 제7고에서, 이하는 제6고에서.

본가의 수중에 들어가면 생산과정 밖에서도 여전히 그의 자본이지만 노동력은 생산과정 내부에서만 개별적 자본의 존재형태로 된다는 점에 의하여 구별된다. 노동력은 그것의 판매자인 고용노동자의 수중에서만 상품이라면, 이와는 반대로 그것은 그것의 구매자 즉 그것의 일시적 사용을 획득하는 자본가의 수중에서만 자본으로 된다. 생산수단 그 자체는, 생산자본의 인적 존재형태로서의 노동력이 그것에 합체될 수 있는 것으로 된 그 순간으로부터만 생산자본의 대상적 모습 또는 생산자본으로 된다. 따라서 인간의 노동력이 본성에 있어서 자본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도 본성에서 자본인 것은 아니다. 생산수단이 이 특수한 사회적 성격을 얻는 것은 역사적으로 발전된 일정한 제 조건하에서만인데, 그것은 마치도 이러한 제 조건하에서만 귀금속이 화폐의 성격을 가지게 되며, 또는 화폐가 화폐자본의 성격을 얻는 것과 비슷하다.

생산자본은 그것이 기능함으로써 자기 자체의 구성부분들을 소비하며 그리하여 그것들을 보다 더 높은 가치의 생산물량으로 전환시킨다. 노동력은 생산자본의 기관(器官)들 중의 하나로서 작용할 따름이므로 노동력의 잉여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생산물가치중 생산자본의 형성요소들의 가치를 넘는 초과분도 자본의 과실(果實)이다. 노동력의 잉여노동은 자본에 대하여 무상노동이며 그러므로 그것은 자본가에게 잉여가치, 즉 자본가에게 아무런 등가도 들이게 하지 않는 가치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생산물은 상품일 뿐만 아니라, 잉여가치를 잉태하고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의 가치는 $P+M$, 즉 그것의 생산에 소비된 생산자본 P 에 이 생산자본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가치 M 을 가한 것과 같다. 이 상품이 10,000파운드의 방사로써 구성되었으며, 그것의 생산에 372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만큼의 생산수단과 5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만큼의 노동력이 소비되었다고 가정하자. 방적과정에서 방적공들은 그들의 노동에 의하여 소비된 372파운드 스텔링의 생산수단의 가치를 방사에 이전하였으며, 동시에 그들의 노동지출에 따라, 예컨대 128파운드 스텔링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냈다. 그러므로 10,000파운드의 방사는 5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의 담당자이다.

제3절 제3단계. $W'-G'$

상품은 이미 증식된 자본가치의, 생산과정 자체로부터 직접 발생한 기능적 존재형태로서는 상품자본으로 된다. 만약 상품생산이 그것의 전체 사회적 규모에서 자본주의적으로 운영된다면 모든 상품은 그것이 선철이든, 브뤼셀의 레이스이든, 유산(硫酸)이든, 또는 권련이든 간에 처음부터 상품자본의 요소일 것이다. 어떤 종류의 상품들이 그것들의 속성에 의하여 자본으로 되게 되어 있으며 어떤 상품들이 보통상품으로 복무하게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스콜라적 경제학이 스스로 만들어 낸 부질없는 난문의 하나이다.

자본은 상품형태로서는 상품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을 구성하며, 처음부터 시장을 위하여 생산된 물건들은 판매되고, 화폐로 전화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W-G$ 의 운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가의 상품이 10,000파운드의 방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자. 만약 방적과정에서 372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만큼의 생산수단이 소비되었으며, 128파운드 스텔링의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었다면 방사는 5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를 가지며, 그 가치는 동일명칭의 가격으로 표현된다. 이 가격은 판매인 $W-G$ 에 의하여 실현된다. 모든 상품유통의 이 단순한 행정을 동시에 자본의 기능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행정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변동도 아니니, 즉 상품의 사용상의 성격과 관련된 변동도 아니며—왜냐하면 사용대상으로서는 상품은 구매자에게로 이행하기 때문에—또 그것의 가치와 관련된 변동도 아니니—왜냐하면 이 가치는 양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며, 형태변화를 일으킬 뿐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가치는 방사 속에 존재하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화폐 속에 존재한다. 이 점에 최초 단계인 $G-W$ 와 최종 단계인 $W-G$ 간의 본질적 차이가 나타난다. 전자에 있어서는 전대된 화폐가 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한다. 왜냐하면 전대된 화폐는 유통에 의하여 매개되어 특수한 사용가치를 갖는 상품들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후자 즉 최종 단계인 $W-G$ 에 있어서는 상품은 그것의 유통이 시작되기 전에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이미 기성의

것으로서 생산과정으로부터 가지고 나오는 한에 있어서만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다. 방적과정에 있어서 방적공은 128파운드 스텔링 만큼의 방사 가치를 창조하였다. 그중에서 예컨대 50파운드 스텔링은 자본가로 보아 노동력에 대한 그의 지출의 등가를 형성할 뿐이며, 78파운드 스텔링은—노동력의 착취율은 156%로 된다—잉여가치를 형성한다. 따라서 10,000파운드의 방사의 가치는 첫째로 소비된 생산자본 P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 불변부분=372파운드 스텔링, 가변부분=50파운드 스텔링이며, 이것들의 합계=422파운드 스텔링=8,440파운드의 방사이다. 생산자본 P의 가치는 G—W의 단계에서 판매자들의 수중에 있는 상품으로서 자본가에게 대립하였던 생산자본의 형성요소들의 가치인 W와 동등하다. 그런데 둘째로 방사의 가치는 1,560파운드의 방사에 해당하는 78파운드 스텔링의 잉여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10,000파운드의 방사의 가치 표현으로서의 W는 $W + \Delta W$ 즉 W의 증가분(=78파운드 스텔링)을 가한 것과 동등한데, 이 후자를 우리는 w라고 부르자. 왜냐하면 소여의 '시기에 이것은 시초의 가치 W가 취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상품형태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00파운드의 방사의 가치=500스텔링, 따라서 $W + w = W'$ 이다. 10,000파운드의 방사의 가치 표현으로서의 W가 W'로 되게 하는 것은 그것의 가치의 절대적 크기(500파운드 스텔링)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가치가 절대적 크기는 어떤 다른 상품액의 가치 표현으로서의 다른 모든 W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상화된 노동의 크기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이다. W가 W'로 되게 하는 것은 그것의 가치의 상대적 크기 즉 W의 생산에 소비된 자본 P의 가치에 비한 W의 가치의 크기이다. W'속에는 이 자본 P의 가치에, 생산자본에 의하여 제공된 잉여가치를 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의 가치는 이 자본가치보다 이 잉여가치 W 만큼 더 크며, 이것을 초과한다. 10,000파운드의 방사는 증식된, 즉 잉여가치만큼 증대된 자본가치의 담당자이며, 또 그것이 그러한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생산물로서이다. W'는 하나의 가치관계를, 즉 상품생산에 지출된 자본의 가치에 대한, 상품생산물의 가치의 관계를, 따라서 상품생산물의 가치가 자본가치와 잉여가치로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10,000파운드의 방사는 생산자본 P의 전화된 형태로서만, 따라서 우선은 다만 이 개별적 자본의 순환 중에 존재하는 연관 속에서만, 또는 자기의 자본으로써 방사를 생산한 자본가에 대하여서만 상품자본

W'이다. 가치의 담당자로서의 이 10,000파운드의 방사를 상품자본으로 만드는 것은 말하자면 내적 관계에 불과하며 결코 어떠한 외적 관계가 아니다. 이 10,000파운드의 방사가 자본주의적 모반(母班)을 지니는 것은 그것의 가치의 절대적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의 상대적 크기, 즉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생산자본이 상품으로 전화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의 크기에 비한, 그 방사의 가치의 크기에 있다. 그러므로 10,000파운드의 방사가 5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그것의 가치대로 판매된다면 이 유통행위는 그 자체로서 보면 $W-G$ 이며, 동일 불변한 가치의 상품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의 단순한 전화이다. 그러나 개별적 자본의 순환에서의 특수한 단계로서는 이 동일한 행위는 상품이 지니고 있는 자본가치, 422파운드 스텔링과 동일한 상품이 지니고 있는 잉여가치, 78파운드 스텔링의 실현이며, 따라서 상품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의 상품자본의 전화인 $W'-G'$ 이다.⁴⁾

W'의 기능은 이제는 모든 상품생산물의 기능 즉 화폐로 전화되며, 판매되며, $W-G$ 라는 유통단계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제 증식된 자본이 상품자본의 형태로 머물러 있으며, 시장에 정제되어 있는 동안은 생산과정은 정지된다. 그 자본은 생산물 형성자로서도 가치형성자로서도 작용하지 않는다. 자본이 상품형태를 내던지고 화폐형태를 취하는 속도가 다름에 따라 즉 판매의 속도에 따라, 동일한 자본가치가 생산물형성자 및 가치형성자로서 복무하는 정도는 대단히 다를 것이며, 또 재생산의 규모는 확대되거나 또는 축소될 것이다. 제1부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소여자본의 작용정도는, 자본가치의 크기와는 어느 정도 독립한, 생산과정의 능력에 의하여 제약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자본의 활동 정도, 그것의 확대 및 축소를 제약하는, 그리고 자본가치의 크기와는 독립한, 새로운 가능성들이 유통과정에 의하여 발동하게 된다는 것이 명백하여진다.

또 증식된 자본의 담당자로서의 상품량 W'는 그것의 전체가 $W'-G'$ 라는 형태변화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는 판매된 것의 양이 본질적인 규정적 조건으로 된다. 개개의 상품은 총량을 이루는 부분으로서만 나타난다. 5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는 10,000파운드의 방사 속에 존재한다. 만약 자본가가 372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있는 7,440파운드만

4) 이상은 제6고에서, 이하는 제5고에서.

을 판매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기의 불변자본의 가치, 즉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만을 보상한 것으로 된다. 만약 8,440파운드를 판매할 수 있다면 전체 전대자본의 가치의 크기만을 보상한 것으로 된다. 그는 잉여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서는 더 많이 판매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 78파운드 스텔링(=1,560파운드의 방사)이라는 전체 잉여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10,000파운드의 방사를 판매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그가 받는 5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는 판매된 상품과 동등한 가치일 따름이다. 유통 내부에서의 그의 거래는 단순한 $W-G$ 이다. 만일 그가 자신의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50파운드 스텔링이 아니라 64파운드 스텔링을 지불하였다면, 그의 잉여가치는 78파운드 스텔링이 아니라 다만 64파운드 스텔링일 것이며, 착취도는 156%가 아니라 다만 100%일 것이나, 그러나 그의 방사의 가치는 여전히 불변인 채로 남아 있을 것이며, 다만 그 각이한 부분들의 비율만이 변할 것이다. 유통행위 $W-G$ 는 여전히 5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그것의 가치로서의 10,000파운드의 방사의 판매일 것이다.

$W' = W + w$ (=422파운드 스텔링 + 78파운드 스텔링). W 는 P 의 가치 즉 생산자본의 가치와 동등하고, 후자는 생산 제 요소의 구매인 $G-W$ 에 전대된 G 의 가치와 동등하며, 우리의 예에서는 422파운드 스텔링이다. 그 상품량이 그것의 가치대로 판매된다면, $W = 422$ 파운드 스텔링이며, $w = 78$ 파운드 스텔링, 즉 1,560파운드의 방사라는 잉여생산물의 가치이다. 화폐로 표현된 w 를 g 라고 표시한다면, $W' - G' = (W + w) - (G + g)$ 이며, 따라서 순환 $G-W \cdots P \cdots W' - G'$ 는 그것의 명세한 형태로서는 $G-W < \frac{A}{P_m} \cdots P \cdots (W + w) - (G + g)$ 로 표시된다.

제1단계에서 자본가는 소비대상을 고유한 의미에서의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으로부터 끌어 내고, 제3단계에서는 그는 상품을 다만 한 개의 시장에, 즉 고유한 의미에서의 상품시장에 도로 투입한다. 그런데 만약 그 후에 자본가가 최초로 투입한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자기의 상품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끌어낸다면, 그것은 오직 그가 최초로 끌어 낸 것보다 더 큰 상품가치를 시장에 투입하기 때문이다. 그는 전에 시장에 가치 G 를 투입하고 동등한 가치 W 를 끌어 냈다. 이제는 그는 시장에 $W + w$ 를 투입하고, 동등한 가치 $G + g$ 를 끌어 낸다. 우리의 예에서 G 는 8,440파운

드의 방사의 가치와 동등하였다. 그런데 그는 10,000파운드의 방사를 시장에 투입하며, 따라서 그가 시장으로부터 얻은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시장에 준다. 타방으로 그가 이 증대된 가치를 시장에 투입한 것은 오직 그가 생산과정에서 노동력의 착취에 의하여 잉여가치(생산물의 일정한 부분으로서의 잉여생산물에 표현된)를 생산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생산과정의 생산물로서만 상품량은 상품자본이며, 증대된 자본가치의 담당자이다. $W'-G'$ 의 수행에 의하여, 전대된 자본가치도, 잉여가치도 실현된다. 양자의 실현은 $W'-G'$ 에 의하여 표현되는, 전체 상품량의 일련의 판매들 또는 일괄적인 판매에서 동시에 수행된다. 그러나 동일한 유통 행정인 $W'-G'$ 도 자본가치와 잉여가치의 각자에게 대하여 그것들의 각이한 유통단계를 표현하는 한, 즉 그것들이 유통내부에서 통과하여야 할 형태변화의 계열에 있어서의 각이한 단계를 표현하는 한, 자본가치의 경우와 잉여가치의 경우에 있어서 각이하다. 잉여가치 w 는 생산과정 내부에서 비로소 세상에 나왔다. 따라서 그것은 처음으로 상품시장에 등장하며 그것도 바로 상품형태로서이다. 상품형태는 w 의 최초의 유통형태이다. 그러므로 $w-g$ 라는 행위도 w 의 최초의 유통행위 또는 최초의 형태변화이며 따라서 이것들은 대립되는 유통행위에 의하여 또는 거꾸로의 형태변화인 $g-w$ 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한다⁵⁾

자본가치 W 가 동일한 유통행위 $W'-G'$ 에서 수행하는 유통에 있어서는 사정이 다르다. 이 유통행위는 자본가치 W 에 대하여 유통행위 $W-G$ 이며, 여기에서는 W 는 P 와 동등하고, 최초로 전대된 G 와 동등하다. 자본가치는 G 로서, 화폐자본으로서 자체의 최초의 유통행위를 개시하였으며 $W-G$ 라는 행위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돌아간다. 따라서 그것은 1) $G-W$ 및 2) $W-G$ 라는 두 개의 대립되는 유통단계들을 통과하여 또 다시 동일한 순환과정을 새로 개시할 수 있는 형태로 있다. 잉여가치에 대하여서는 화폐형태로의 상품형태의 최초의 전화인 것이, 자본가치에 대하여서는 그것의 최초의 화폐형태로의 복귀 또는 재전화이다.

5) 이것은 자본가치와 잉여가치를 어떻게 구분하든 간에 타당하다. 10,000파운드의 방사에는 1,560파운드=78파운드 스텔링의 잉여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1파운드의 방사=1실링에는 역시 2,490온스=1,872펜스의 잉여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화폐 자본은 $G-W < \frac{A}{P_m}$ 에 의하여 동등한 가치액의 상품들인 A 및 P_m 으로 전환되었다. 이 상품들은 다시는 상품들로서, 판매대상으로서는 기능하지 않는다. 이것들의 가치는 이것들의 구매자인 자본가의 수중에서 그의 생산자본 P의 가치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P의 기능인 생산적 소비에서 이 상품들은 생산수단들과는 현물형태에 있어서 상이한 새로운 종류의 상품인 방사로 전화되며, 이 방사에 있어서 그 상품들의 가치가 보존될 뿐만 아니라 422파운드 스텔링으로부터 500파운드 스텔링으로 증대된다. 이 현실적인 형태변화에 의하여 최초의 단계 $G-W$ 에서 시장으로부터 끌어 내어진 상품들은 현물형태와 가치에 있어서 그것들과 다른 상품들—이제는 상품으로서 기능하며 화폐로 전화되며 또 판매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품들—에 의하여 보상된다. 그러므로 생산과정은 자본가치의 유통과정의 중단으로서만 나타나며, 이 유통과정 중에서 여기까지는 최초의 단계 $G-W$ 가 통과되고 있을 뿐이다. 자본가치는, W가 현물형태에 있어서와 가치에 있어서 변동된 후에야 둘째이며 마지막 단계인 $W-G$ 를 통과한다. 그러나 자본가치를 그 자체로서 고찰한다면 그것은 생산과정에서 그것의 소비형태상으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그것은 422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로서 A 및 P_m 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8440파운드의 방사의 가치인 422파운드 스텔링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잉여가치로부터 분리하여 생각한 자본가치의 유통과정의 두 단계만을 고찰한다면 자본가치는 1) $G-W$ 및 2) $W-G$ (이 경우에 둘째번 W는 첫째번 W에 비하여 소비형태는 변경되었지만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를 통과하며, 따라서 자본가치는 $G-W-G$ 를, 즉 화폐로부터 상품으로의 전화 및 상품으로부터 화폐로의 전화라는 반대방향으로의 상품의 두번에 걸치는 위치 변경에 의하여, 화폐형태로서 전대된 가치의 화폐로의 복귀—화폐의 재전화—를 필연적으로 조건짓는 유통형태를 통과한다.

화폐로 전대된 자본가치에 대하여서는 둘째이며 종결적인 형태변화이고 화폐형태로의 복귀인 동일한 유통행위 $W'-G'$ 는, 상품자본에 의하여 동시에 함께 지니어졌으며, 그 상품자본의 화폐형태로의 전화에 의하여 함께 실현되는 잉여가치에 대하여서는 최초의 형태변화이며 상품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의 전화 $W-G$ 이고, 최초의 유통단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두 가지 사정에 대하여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자본가치의 그것의 최초의 화폐형태로의 마지막 재전화는 상품자본의 기능이다. 둘째로, 이 기능은 잉여가치의, 그것의 최초의 상품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의 최초의 형태전화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화폐형태는 여기에서 이중의 역할을 논다. 즉 일방으로는 그것은 최초로 화폐로 전대된 가치의 복귀형태이고 따라서 과정을 개시한 가치형태로의 복귀이며, 타방으로는 그것은 처음으로 상품형태로써 유통에 들어가는 가치의 최초의 전화된 형태이다. 상품자본을 구성하는 상품들이 여기에서 전제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들의 가치대로 판매된다면 $W+w$ 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G+g$ 로 전환된다. 이 $G+g$ (422파운드 스텔링+78파운드 스텔링=500파운드 스텔링)라는 형태에 있어서 실현된 상품자본이 이제는 자본가의 수중에 존재한다. 자본가치와 잉여가치는 이제는 화폐로서, 따라서 일반적인 등가형태로서 현존하고 있다.

이와같이 과정의 종말에서 자본 가치는 그것이 과정에 들어간 때와 동일한 형태로 다시 있으며, 따라서 다시 새로 화폐자본으로서 과정을 개시하고 통과할 수 있다. 바로 과정의 출발 형태와 종말 형태가 화폐자본(G)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환과정의 이 형태를 화폐자본의 순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과정의 종말에서 변동되어 있는 것은 전대된 가치의 형태가 아니라 다만 그것의 크기이다.

$G+g$ 는 일정한 크기의, 우리 경우에 있어서는 5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액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자본의 순환의 결과로서는, 실현된 상품자본으로서, 이 화폐액은 자본가치와 잉여가치를 포함한다. 그나마 이 자본가치와 잉여가치는 이제는 더는 방사에서처럼 서로 유착되어 있지는 않다. 그것들은 이제는 병존하고 있다. 그것들의 실현은 그것들의 각자에게 자립적인 화폐형태를 주었다. 그 화폐액의 211/250은 422파운드 스텔링의 자본가치이며, 39/250은 78파운드 스텔링의 잉여가치이다. 상품자본의 실현에 의하여 야기된 이 분리는 그 내용으로 보아 형식적인 것만은 아니니, 이에 관하여는 곧 언급하게 될 것이다. 이 분리는 g 가 G 에 전부 첨가되는가, 부분적으로 첨가되는가, 또는 전혀 첨가되지 않는가에 따라, 따라서 g 가 전대 자본가치의 구성부분으로서 계속 기능하는가, 또는 안하는가에 따라, 자본의 재생산과정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g 와 G 의 유통은 또한 전혀 각이할 수 있다.

G' 에서 자본은 또다시 그것의 최초 형태인 G 로, 그것의 화폐형태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이 복귀는 자본이 자본으로서 실현되어 있다는 형태에 있어서이다.

여기에는 첫째로 양적 차이가 있다. 422파운드 스텔링의 G 가 있었다. 이제는 500파운드 스텔링의 G' 가 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양적으로 상이한, 순환의 양극인 $G \cdots G'$ 으로써 표현되고 있으며, 순환의 운동 그 자체는 다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G' > G$ 이며, $G' - G = M$, 즉 잉여가치이다. 그러나 이 순환 $G \cdots G'$ 의 결과로서 이제는 G' 가 존재할 따름이다. 이것은 그것의 형성과정이 소멸되어 있는 산물이다. G' 는 이제는 그것을 가져 온 운동으로부터 독립하여 자립적으로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운동은 지나갔으며 그 대신 G' 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G + g$ 로서의 G' 즉 422파운드 스텔링의 전대 자본에 그것의 증가분 78파운드 스텔링을 가한 것으로서의 500파운드 스텔링은 동시에 질적인 관계를 표시한다. 비록 이 질적 관계 자체는 동일한 금액의 부분들간의 관계로서만, 따라서 양적인 관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다시 그것의 최초의 형태(422파운드 스텔링)로 현존하고 있는 전대자본 G 는 현재에는 실현된 자본으로서 존재한다. 그것은 다만 보존되었을 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자체를 자본으로서 g (78파운드 스텔링)와 구별함으로써 자본으로서 실현되었는바, 이 g 에 대한 G 의 관계는 자체의 증가분, 자체의 열매에 대한, G 자체에 의하여 산생된 증가분에 대한 관계이다. 그것은 가치를 낳은 가치로서 실현되었기 때문에 자본으로서 실현되었다. G' 는 자본관계로서 존재하고 있다. G 는 이미 단순한 화폐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명확히 화폐자본으로서 놓여지며, 자체를 증식시킨 가치로서, 따라서 또 자체를 증식시키는 즉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낳은 속성을 가지는 가치로서 표현되고 있다. G 는, G 에 의하여 조성되었으며, G 를 원인으로 하여 산생된 것으로서의, G 를 근원으로 하는 G' 중의 다른 부분에 대한 자체의 관계에 의하여 자본으로 놓여지고 있다. 그리하여 결과로서의, G' 는 자체 속에서 분화된, 기능적으로(개념적으로) 그 자체 속에서 구별되는 가치액이며, 자본주의적 관계를 표현하는 가치액이다.

그러나 이 관계는 다만 결과로서 표현되고 있으며, 이 결과를 가져 온 과정의 매개없이 표현되어 있다.

가치의 부분들은, 그것들이 각이한 물품들, 구체적 물건들의 가치들로

서 나타나며, 따라서 각이한 사용형태들로, 그에 따라 각이한 상품체들의 가치들로서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체들로서는 질적으로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가치의 단순한 부분들로서의 그 부분들 자체로부터는 구별이 생기지 않는다. 화폐에 있어서는 상품들의 모든 차이가 소멸되어 있다. 왜냐하면 화폐는 바로 모든 상품들에 공통한 등가형태이기 때문이다. 5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액은 1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전혀 동일한 명칭의 요소들으로써 구성되어 있다. 이 화폐액의 단순한 존재에 있어서는 그것의 유래를 매개하는 환절이 사라졌으며 자본의 각이한 구성 부분들이 생산과정에서 가지는 특수한 차이들의 모든 흔적이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은 이제는 다만 본전(영어로는 principal)인 422파운드 스텔링의 전대자본과, 초과 가치액인 78파운드 스텔링이라는 개념적 형태로서만 존재한다. 예컨대 G' 는 110파운드 스텔링이며, 그중 100은 본전 G 이며, 10은 잉여가치 M 이라고 하자. 11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총액의 두 구성부분간에는 절대적 동종성, 따라서 개념상 무구별성이 지배한다. 임의의 10파운드 스텔링은, 이제 그것이 전대된 본전 100파운드 스텔링의 $1/10$ 이든, 또는 본전을 초과하는 10파운드 스텔링이든 간에 언제나 총액 110파운드 스텔링의 $1/11$ 이다. 그러므로 본전과 증가액, 자본과 잉여액은 총액의 분수(分數)부분들로서 표현될 수 있다. 우리 예에서는 $10/11$ 이 본전 또는 자본을 형성하며 $1/11$ 이 잉여액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실현된 자본이 자체의, 과정의 종말에서 얻는 화폐적 표현은 자본관계의 무개념적 표현이다.

이것은 사실 $W' (=W+w)$ 에 대하여서도 타당하다. 그러나 W' —이것에서 W 와 w 는 역시 동일한, 동종 상품량의 비례적 부분들을 표시할 따름이다—는 자체의 기원이 자체를 직접 생산한 P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유통으로부터 직접 나온 형태인 G' 에 있어서는 P 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가 소멸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G' 가 $G \cdots G'$ 라는 운동의 결과를 표현하는 한에 있어서, G' 에 포함되어 있는 본전과 증가액 간의 불합리한 차이는, G' 가 다시 화폐자본으로서 적극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하면, 따라서 거꾸로, 증식된 산업자본의 화폐적 표현으로서 고정되지 않는다면 즉시로 소멸한다. 화폐자본의 순환은 G' 로써는 결코 시작될 수 없으며(비록 G' 가 이제는 G 로서 기능한다 하더라도), G 로써만 시작될 수 있다. 즉 그것은 자본관계의 표현으로서는

결코 시작될 수 없으며, 자본가치의 전대형태로서만 시작될 수 있다. 500 파운드 스텔링이 새로 자기증식을 위하여 새로 자본으로서 전대된다면, 그것은 복귀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422파운드 스텔링의 자본 대신에 이제는 5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이 즉 이전보다 더 많은 화폐가, 더 많은 자본가치가 전대되어 있으나, 두 개 구성부분들 간의 관계는 소멸되어 있으며, 마치도 최초로 422파운드 스텔링이 아니라 500파운드 스텔링의 금액이 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것과 전혀 같다.

자본을 G' 로서 표시하는 것은 화폐자본의 적극적인 기능이 아니다. 자체를 G' 의 형태로 표시하는 것은 오히려 W' 의 기능이다. 이미 단순한 상품유통 1) W_2-G 2) $G-W_2$ 에 있어서도, G 는 둘째 행위 $G-W_2$ 에 있어서 비로소 적극적으로 기능한다. 그것이 G 의 형태로 표시되는 것은 첫째 행위—이것에 의하여 비로소 G 는 W_1 의 전화된 형태로서 나타난다—의 결과에 불과하다. G' 에 포함되는 자본관계 즉 자본가치로서의 G' 의 일부의, 그것의 가치 증가분으로서의 다른 부분에 대한 관계는, $G \cdots G'$ 라는 순환이 부단히 반복되는 경우에 G' 가 자본유통 및 잉여가치의 유통이라는 두 종류의 유통으로 분열되며 따라서 양 부분이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상이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한에 있어서는, 즉 G 가 g 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한에 있어서는 물론 기능적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 고찰한다면 $G \cdots G'$ 라는 형태는 자본가의 소비를 포함하지 않으며, 명확히 다만 자기증식과 축적—우선 부단히 새로 전대되는 화폐자본의 주기적인 증대로 표현되는 한에 있어서의 축적—을 포함한다.

$G'=G+g$ 는 비록 자본의 불합리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비로소 화폐를 낳은 화폐로서의, 실현된 형태로서의 화폐자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제1단계인 $G-W < \frac{A}{P_m}$ 에서의 화폐자본의 기능과 다른 점을 보아야 한다. 이 제1단계에서는 G 는 화폐로서 유통한다. G 가 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다만 그것이 화폐상태로서만 화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것에 상품으로서 대립하는 P 의 요소들인 A 및 P_m 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유통행위에서는 G 는 화폐로서만 기능한다. 그러나 이 행위는 자본가치의 운동과정에서의 제1단계이기 때문에, 구매되는 상품들인 A 와 P_m 의 특수한 소비형태의 덕택으로 그것은 동시에 화폐자본의 기능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가치 G 와 이것에 의하여 생산

된 잉여가치 g 로써 구성되는 G' 는 증식된 자본가치를, 자본의 총순환과정의 목적, 결과 및 기능을 표현한다. G' 가 이 결과를 화폐 형태로 실현된 화폐자본으로서 표현한다는 것은, 그 G' 가 자본의 화폐형태이며, 화폐자본이라는 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화폐자본이며, 화폐형태로서의 자본이라는 점에서 자본이 이 형태로서 과정을 개시하였으며, 화폐형태로 전대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온다. 이미 본 바와 같이 화폐형태로의 재전화는 상품자본 W' 의 기능이고, 화폐자본의 기능은 아니다. 그런데 G' 와 G 와의 차액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g)은 W 의 증가분인, w 의 화폐형태에 불과하다. 다만 $W' = W + w$ 였기 때문에 $G' = G + g$ 이다. 따라서 이 차액은, 그리고 자본가치의 그것에 의하여 산생된 잉여가치에 대한 관계는, 이 양가치가 G' 라는 하나의 화폐액—이에 있어서는 그 양가치 부분은 자립적으로 서로 대립하며, 이에 따라 또 서로 각이한 자립적인 기능들에 충용될 수 있다—으로 전화되기 전에 W' 속에 현존하고 있으며, 표현되고 있다.

G' 는 W' 의 실현의 결과에 불과하다. W' 와 G' 의 양자는 증식된 자본가치의 각이한 형태들인 상품형태 및 화폐형태에 불과하며, 증식된 자본가치라는 점은 이 양자에 공통하다. 양자가 다 실현된 자본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자본가치로서의 자본가치가, 그것과 다른, 그것에 의하여 획득된 과실로서의 잉여가치와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 관계는 동일한 화폐액 또는 동일한 상품가치의 두 부분간의 관계라는 무개념적 형태로서만 표현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자본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가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또 그것과 구별되는, 자본의 표현으로서는, 따라서 또 증식된 가치의 표현으로서는, G' 와 W' 는 동일한 것이며, 동일한 것을 다만 각이한 형태로서 표현한다. 그것들은 화폐자본 및 상품자본으로서 서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화폐 및 상품으로서 서로 구별된다. 그것들이 증식된 가치, 자본으로서 실증된 자본을 표시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것들은 생산자본의 기능—자본가치가 가치를 낳는 유일한 기능—의 결과를 표현할 뿐이다. 그것들의 공통점은 그것들 양자, 즉 화폐자본과 상품자본이 자본의 존재방식이라는 것이다(그것들 간의 차이점은 그것들이 자본의 각이한 존재방식이라는데 있다.)* 전자는 화폐형태로서의 자본이며 후자는 상품형태로서의 자본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구별하게 하는 특수한 기능상 차이는 화폐의 기능과 상품의 기능간의 차이 이외의

아무것일 수도 없다. 상품자본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직접적 생산물로서, 자체의 기원이 이 생산과정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따라서 화폐자본보다 그것의 형태에 있어서 보다 더 합리적이며, 그렇게 무개념적이지 않다. 화폐자본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화폐에 있어서 상품의 사용형태의 온갖 특수성이 소멸되어 있는 것처럼 생산과정의 온갖 흔적이 소멸되어 있다. 그러므로 G' 자체가 상품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만, 즉 G' 가 생산과정의 직접적 생산물이고 이 생산물의 전화된 형태가 아닌 경우에만, 따라서 화폐재료 자체의 생산에 있어서만이다. 예컨대, 금 생산에 있어서는 공식은 $G-W < \frac{A}{P_m} \cdots P \cdots G'(G+g)$ 일 것이며, 여기에서 G' 는 상품생산물로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P 는 최초의 화폐자본인 G 로서 금의 생산 요소들에 대하여 전대된 것보다 더 많은 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화폐액의 일부분이 동일한 화폐액의 다른 부분의 어머니로 나타나는 $G \cdots G'(G+g)$ 라는 표현의 불합리성이 소멸한다.

제4절 총 순 환

이미 본 바와 같이 유통과정은 그것의 제1단계인 $G-W < \frac{A}{P_m}$ 을 경과한 다음 P 에 의하여 중단되는바, 이 P 에서는 시장에서 구매된 상품 A 및 P_m 이 생산자본의 소재적 및 가치적 구성부분으로서 소비된다. 이 소비의 생산물은 소재적으로나 가치적으로나 변화된 새로운 상품 W' 이다. 중단된 유통과정 $G-W$ 는 $W-G$ 에 의하여 보충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유통의 이 둘째번이며, 마지막인 단계의 담당자로서 나타나는 것은 W' , 즉 최초의 W 와는 소재적으로나 가치적으로나 상이한 상품이다. 따라서 유통의 계열은 1) $G-W_1$; 2) W'_2-G 로서 표시되는바 제2단계에서 첫번째 상품 W_1 대신에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며 그것과 다른 사용형태를 가지는 다른 상품 W_2 가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P 의 기능에 의하여

*(<)괄호는 소련의 맑스 엥겔스 레닌 연구소에서 1893년 독일어 제2판과 엥겔스에 의하여 편집된 제2권 원고를 대조함으로써 복구 또는 수정한 개소를 표시한다. 이하 동단. —편집자.

야기된 중단기간에 즉 생산자본 P의 존재형태인 W의 요소들로부터 W'가 생산되는 기간에 발생한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이 우리 앞에 나타난 최초의 현상형태(제1부, 제4장, 제1절)인 $G-W-G'$ (이것은 1) $G-W$, 2) $W'-G'$ 로 분해된다)에서는 동일한 상품이 두 번 나타난다. 거기에서는 제1단계에서 화폐가 전화되는 상품과 제2단계에서 보다 더 많은 양의 화폐로 재전화되는 상품이 두 번 다 동일한 상품이다. 이러한 본질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1단계에서는 화폐가 상품으로 전화되며 제2단계에서는 상품이 화폐로 전화된다는 사실 따라서 제1단계에서 지출된 화폐가 제2단계에서 환류한다는 사실은 양 유통에 공통하다. 일방으로는 화폐가 그것의 출발점으로 환류한다는 점, 그리고 타방으로는 또 환류하는 화폐가 전대된 화폐보다 더 크다는 점이 양자에 공통하다. 그러한 한에 있어서 $G-W \cdots W'-G'$ 도 일반적 공식 $G-W-G'$ 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또 유통에 속하는 두 개의 형태변화인 $G-W$ 및 $W'-G'$ 에서는 동등한 크기의, 동시에 존재하는 두 개의 가치가 매번 서로 대립하고 서로 대체한다. 가치의 변화는 전적으로 P라는 형태변화 즉 생산과정에 속하며, 그리하여 생산과정은 유통이라는 단순한, 형식적인 형태변화와는 달라서 자본의 현실적인 형태변화로써 나타난다.

그러면 $G-W \cdots P \cdots W'-G'$ 라는 총운동 또는 그것의 명세한 형태인 $G-W < \frac{A}{P_m} \cdots P \cdots W'(W+w)-G'(G+g)$ 를 고찰하자. 여기에서 자본 가치는 서로 연결되었으며, 서로 제약하는 전화들의 순차적 계열, 형태변화들의 계열을 경과하는바, 이 형태변화들은 총과정에서의 그만큼 많은 수의 국면 또는 단계를 이룬다. 이 단계들 중 둘은 유통분야에 속하며, 하나는 생산분야에 속한다. 이 매개 단계에서 자본가치는 각이한 모습을 취하며, 이 모습에는 각이한 특수한 기능이 대응한다. 이 운동의 내부에서 전대된 가치는 보존될 뿐만 아니라 장성하며, 자체의 크기를 증대시킨다. 마지막으로 종말 단계에서 전대된 가치는 총과정의 시초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형태로 복귀한다. 이에 따라 이 총과정은 순환과정이다.

자본가치가 자체의 유통단계들에서 취하는 두 개의 형태는 화폐자본 및 상품자본의 형태들이며, 생산의 단계에 속하는 그것의 형태는 생산자본의 형태이다. 총순환 행정에서 이 형태들을 취하였다가 다시 벗어 버리며, 이 매개 형태들에서 그것들에 대응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은

산업자본이다. 여기에서 산업이라는 말은 자본주의적으로 경영되는 온갖 생산부문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화폐자본, 상품자본, 생산자본이라는 말은 자립적인 자본종류 즉 그 기능들이 역시 자립적이며 서로 분리된 사업부문들의 내용을 이루는 그러한 자립적 자본종류를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다만 산업자본의 특수한 기능형태들인바, 산업자본은 이 모든 세 형태들은 순차로 취하는 것이다.

자본의 순환은 그것의 각이한 단계들이 정체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조건하에서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자본이 제1단계 $G-W$ 에서 정체된다면 화폐자본은 마비되어 퇴장화폐로 된다. 자본이 생산단계에서 정체된다면 일방에 있어서는 생산수단들이 무기능상태에 놓여있게 되며 타방에 있어서는 노동력이 취업하지 못한 채로 남는다. 자본이 마지막 단계인 $W'-G$ 에서 정체된다면 팔리지 않고 쌓인 상품들이 유통의 흐름을 차단한다.

타방으로는 순환 자체가 순환의 개별적 단계들에서 일정한 기간 자본의 고정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사리에 당연한 일이다. 산업자본은 그 매개 단계에서 일정한 형태와—화폐자본, 생산자본, 상품자본으로서—결부되어 있다. 산업자본은 그때 그때에 그것이 취하고 있는 형태에 상응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음에만 새로운 전화 단계에 들어 갈 수 있는 형태를 획득한다. 이것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우리는 위의 예에서, 생산단계에서 창조된 상품량 중의 자본가치는 최초로 화폐로 전대된 가치총액과 동등하다고, 다시 말하면 화폐로서 전대된 전체 자본가치는 단번에 한 단계에서 그때 그때의 다음 단계로 들어 간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미 본 바와 같이(제1부, 제6장) 불변자본의 일부분인 고유한 의미에서의 노동수단들(예컨대 기계들)은 다소간에 수차 반복되는 동일한 생산과정들에서 복무하며, 그에 따라 또 그것들의 가치를 다만 부분적으로만 생산물에 교부한다. 이 사정이 어느 정도로 자본의 순환과정을 수정하는가 하는 것은 후에 고찰하기로 하자.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만을 지적해 둔다. 우리의 예에서 생산자본의 가치인 422파운드 스텔링은 공장건물, 기계 등등의 평균적인 마멸분만을, 따라서 그것들이 10,600파운드의 면화를 10,000파운드의 방사로 전화할 때에 후자에, 즉 60시간이라는 1주간 방적과정의 생산물에 이전하는 가치부분만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대된

불변자본 372파운드 스틸링이 전화되는 생산수단중에서 노동수단인 건물, 기계 등등은 마치도 그것들이 시장에서 매주 분할지불로 임차되는데 불과한 것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사태의 본질을 절대로 변경시키지 않는다. 1주일간에 생산되는 방사량 10,000파운드에다가 일정한 해(年)수 동안의 주수를 곱하기만 하면 구매되어 이 기간에 소비된 노동수단들의 전체 가치가 얼마만한 방사에 이전되는가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전대된 화폐자본은 생산자본 P로서 기능할 수 있기 전에 우선 이 노동수단들로 전화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제1단계 $G-W$ 를 거쳐나와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에서 생산과정중에 방사에 합체된, 422파운드 스틸링이라는 자본가치액은 방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10,000파운드의 방사의 가치 구성부분으로서 유통단계 $W'-G'$ 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방사는 그것이 방적되기 전에는 판매될 수 없다.

일반적 공식에서는 P의 생산물은 생산자본의 요소들과는 상이한 물질적인 물건으로서, 생산과정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를 가지며 생산요소들과는 상이한 사용형태를 갖는 대상으로서 고찰된다. 생산과정의 결과가 물건으로서 나타나는 모든 경우에, 심지어는 생산물의 일부분이 갱신되는 생산에 다시 요소로서 들어가는 경우에도 그렇게 고찰된다. 예컨대 곡물은 종자로서 곡물 자체의 생산에 복무한다. 그러나 생산물은 다만 곡물로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함께 적용된 다른 요소들인 노동력, 도구들, 비료와는 다른 모습을 갖는다. 그런데 생산과정의 생산물이 새로운 물질인 생산물이 아니며 상품이 아닌 자립적인 산업부문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문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통업—상품과 사람들을 수송하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운수업이든 또는 단순히 보도, 서신, 전보 등등의 전달업이든 간에—뿐이다.

이에 관하여 A. 추프로브⁶⁾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장주는 우선 제품을 생산하고 그후에 그것을 위한 소비자를 찾을 수 있다. (그의 생산물은 완성된 것으로서 생산과정으로부터 밀려 나온 후에 생산과정에서 분리된 상품으로서 유통으로 넘어간다). 그리하여 생산과 소비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분리된 두 개의 행위로서 나타난다. 어떠한 새로운 생산물도

6. A. 추프로브 「철도 경제」 모스크바, 1875년, 69~70페이지.

창조하지 않고 다만 사람들과 물건들을 이전시키는 운수업에서는 이 두 개의 행위가 일치한다. 철도의 봉사(장소변경)는 그것이 생산되는 동일한 순간에 소비된다. 그러므로 철도가 고객을 구할 수 있는 지역은 기껏해야 선로 양측 50웨르스타(53킬로미터)에 미칠 뿐이다.”

수송의 결과는—사람이 수송되든 상품이 수송되든 간에—그것들의 장소적 존재의 변경이다. 예컨대 방사가 그것이 생산된 곳인 영국이 아니라 이제는 인도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운수업이 판매하는 것은 장소변경 그 자체이다. 그것에 의하여 제공되는 유용효과는 운수과정 즉 운수업의 생산과정과 불가분리로 결부되어 있다. 사람과 상품은 운수수단과 함께 여행한다. 그리고 운수수단의 여행, 그것의 장소적 운동은 바로 운수수단에 의하여 야기되는 생산과정이다. 그 유용효과는 다만 생산과정 중에만 소비될 수 있다. 이 유용효과는 이 과정과 상이한 사용물—생산된 다음에야 비로소 거래의 대상으로서 기능하며 상품으로서 유통하는—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유용효과의 교환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의 교환가치와 마찬가지로 그것의 생산에 지출된 생산요소들(노동력 및 생산수단)의 가치에, 운수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잉여가치를 가한것에 의하여 규정된다. 운수업의 유용효과는 그것의 소비에 관하여도 다른 상품들의 소비와 전혀 마찬가지로 다르다. 그 유용효과가 개인적으로 소비된다면 그것의 가치는 소비와 함께 소멸되며, 그것이 생산적으로 소비된다면 즉 그 자체가 수송중에 있는 상품의 하나의 생산단계라면, 그것의 가치는 추가적 가치로서 상품 자체에 이전된다. 따라서 운수업에 있어서의 공식은 $G -$

$W < \frac{A}{P_m} \cdots P - G'$ 로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생산과정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생산물이 아니라 생산과정 그 자체가 지불되고 소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공식은 귀금속 생산을 위한 공식과 거의 아주 동일한 형태를 가지나 다만 이 경우의 G' 는 생산과정 중에서 조성된 유용효과의 전화된 형태이고, 생산과정 중에 채굴되어 이 과정으로부터 밀려나온 금 또는 은의 현물형태가 아니다.

산업자본은 잉여가치 또는 잉여생산물의 취득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의 창조가 자본의 기능인, 자본의 유일한 존재방식이다. 그러므로 산업자본은 생산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조건짓는다. 산업자본의 존재는 그

속에 자본가들과 고용노동자들 간의 계급적 대립의 존재를 내포한다. 산업자본이 사회적 생산을 지배하는 정도에 따라 노동과정의 기술 및 사회적 조직이 변혁되며 또 그와 동시에 사회의 경제적 역사적 형(型)도 변혁된다. 산업자본 이전에, 이미 지나간 또는 몰락하고 있는 사회적 생산상태들의 한 가운데 출현하였던 다른 종류의 자본들은 산업자본에 종속되고 그것들의 기능 기구(機構)에 있어서 산업자본에 적응하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만 산업자본의 기초 위에서만 운동하며 따라서 이 기초와 생산홍망의 운명을 같이 한다. 화폐자본 및 상품자본은 독자적인 사업부분의 담당자로서의 기능들을 가지고 산업자본과 나란히 등장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것들은 이제는 유통분야에서 산업자본이 때로는 취하고 때로는 벗어버리는 각이한 기능 형태들의 존재방식들—사회적 분업의 결과 자립화되고 일면적으로 발전한—에 지나지 않는다.

순환 $G \cdots G'$ 는 일방으로는 일반적인 상품 유통과 영키어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나와 그것으로 들어가며 그것의 일부분을 이룬다. 타방으로는 이것은 개별적 자본가에 있어서 자본가치의 하나의 독자적인 자립적 운동, 즉 일부는 일반적 상품유통의 내부에서 진행되며 일부는 그것의 외부에서 진행되는, 그러나 언제나 자체의 자립적 성격을 보존하는 하나의 운동을 이룬다. 그 이유는 첫째로, 유통분야에서 진행되는 이 운동의 두 단계 $G-W$ 및 $W'-G'$ 는 자본 운동의 두 단계로서 기능상 규정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G-W$ 에서 W 는 소재적으로 노동력 및 생산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W'-G'$ 에서는 자본가치+잉여가치가 실현된다. 둘째로는, 생산과정 P 는 '생산적 소비'를 포괄하기 때문이다. 세째로는 화폐의, 그 출발점으로의 복귀는 운동 $G \cdots G'$ 를 그 자체로서 종결되는 하나의 순환운동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방으로는 각개 자본은 그것의 두 개의 유통단계 $G-W$ 및 $W'-G'$ 에서 일반적 상품유통의 한 동인(動因)으로 되는데, 이 일반적 상품유통에서 그것은 때로는 화폐로서 때로는 상품으로서 기능하거나 또는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하여 각개 자본 자체는 상품세계의 전반적 형태변화 계열중 한 고리를 이룬다. 타방으로 그것은 일반적 유통의 내부에서 자기 자체의 자립적인 순환을 그리는바, 이 순환에서는 생산분야가 하나의 통과단계를 이루며 또 그것은 자체의 출발 당시와 동일한 형태로써 자체의 출발점으로 돌아온다. 그것은 생산과정에서의 현실적인 형태변

화를 포함하는 자기 자체의 순환의 내부에서 동시에 자체의 가치의 크기도 변화시킨다. 그것은 다만 화폐가치로서가 아니라 증대된, 장성한 화폐가치로서 돌아온다.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가 $G-W \cdots P \cdots W'-G'$ 를 후에 연구할, 자본순환과정의 다른 형태들과 함께 자본순환과정의 특수한 형태로서 고찰한다면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있다.

1) 이 순환은 화폐자본의 순환으로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산업자본은 자체의 화폐형태로서 즉 화폐자본으로서 자체의 화폐가 여기에서는 화폐로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전대되며, 따라서 자본의 화폐형태 즉 화폐자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다. 또 그것은 사용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가 운동을 규정하는 자체 목적이라는 것을 표현한다. 가치의 화폐형태는 가치의 자립적이며 감각할 수 있는 현상형태인 바로 그 때문에 현실적 화폐를 출발점 및 종결점으로 하는 $G \cdots G'$ 라는 유통형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추진적 동기인 돈벌이를 가장 명백하게 표현한다. 생산과정은 돈벌이를 위하여 불가피한 중간고리로서, 필요한 악(惡)으로서 나타날 따름이다(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가진 모든 민족들은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돈벌이를 하려는 망상에 주기적으로 빠진다).

2) 생산단계—P의 기능—은 이 순환에서 단순유통 $G-W-G'$ 의 매개에 불과한 $G-W \cdots W'-G'$ 라는 유통의 두 개 단계의 중단을 이룬다. 생산과정은 순환과정의 이 형태 자체에서 형식상 그리고 명확히, 그것이 자본주의적 생산방식하에서 그러한 것으로서 즉 전대가치의 증식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서 나타나며, 따라서 그와 같은 치부로서의 치부가 생산의 자체 목적으로서 나타난다.

3) 단계들의 순서가 $G-W$ 의 단계로써 개시되기 때문에 유통의 둘째 고리는 $W'-G'$ 이다. 따라서 출발점인 G는 증식되어야 할 화폐 자본이며, 종결점인 G'는 증식된 화폐자본 $G+g$ 인바, 여기에서 G는 실현된 자본으로서 자체의 새끼인 g와 함께 나타난다. 이것이 G의 순환을 다른 두 순환들인 P 및 W'의 순환으로부터 구별케 하는데, 그것도 이중의 방식으로서이다. 일방으로는 양극이 화폐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에 의하여 구별되는데, 화폐는 가치의 자립적인 감각할 수 있는 존재형식이며, 상품의 사용가치의 모든 흔적이 소멸되어 있는, 자립적 형태로서의 생산물가치이다. 타방으로는 $P \cdots P$ 라는 형태는 반드시 $P \cdots P' (P+p)$ 로 되는 것은 아니며

또 $W' \cdots W'$ 라는 형태에 있어서는 양극의 가치 사이에 전혀 어떠한 차이도 볼 수 없다. — 따라서 공식 $G \cdots G'$ 의 특징으로 되는 것은 일방으로는 자본가치가 출발점을 이루며, 증식된 자본가치가 종결점을 이룬다는 사정, 그리하여 자본가치의 전대가 수단이며 증식된 자본가치가 전체 조작의 목적으로서 나타난다는 사정이다. 타방으로는 이 관계가 자립적인 가치형태인 화폐형태로서 표현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화폐자본이 화폐를 낳는 화폐로서 표현되어 있다는 사정이다. 가치에 의한 잉여 가치의 창조는 과정의 알파 및 오메가로서 표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변칙거리는 화폐형태로서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다.

4) $G-W$ 를 보충하며 종결시키는 단계인 $W'-G'$ 의 결과로서의 G' 즉 실현된 화폐자본은 그것이 자체의 최초의 순환을 시작하였을 때와 전혀 동일한 형태로 있으므로 그것은 순환으로부터 나오자마자 증대된(축적된) 화폐자본 $G'=G+g$ 로서 동일한 순환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순환이 반복될 때 g 의 유통이 G 의 유통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적어도 공식 $G \cdots G'$ 에 있어서는 표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화폐자본의 순환은 그것을 한번만의 모습에서 고찰한다면 형태상으로는 가치증식과정 및 축적과정만을 표현한다. 여기에서 소비는 다만 생산적 소비로서 $G-W < \frac{A}{P_m}$ 에 의하여 표현되어 있으며, 개별적 자본의 이 순환 속에는 생산적 소비만이 포함되어 있다. $G-A$ 는 노동자 측에서 본다면 $A-G$ 또는 $W-G$ 이다. 따라서 그것은 노동자의 개인적 소비를 매개하는 유통인 $A-G-W$ (생활수단)의 첫째 단계이다. 둘째 단계인 $G-W$ 는 이미 개별적 자본의 순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자는 자본가가 착취할 수 있는 재료로서 언제나 시장에 존재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생활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개인적 소비에 의하여 자기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둘째 단계인 $G-W$ 는 개별적 자본의 순환을 발단으로 하는 것이며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소비 자체는 여기에서는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생산적 소비의 조건으로서만 따라서 또 노동자가 자기의 개인적 소비에 의하여 노동력으로서 자기를 유지하며 재생산하는 한에 있어서만 전제로 되어 있다. 순환에 들어가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상품인 P_m 은 다만 생산적 소비를 위한 재료에 지나지 않는다. $A-G$ 라는 행위는 노동자의 개인적 소비, 그의 혈육으로의 생활수단의 전화를 매개한다. 물론 자본가도 자본가로서 기능

하기 위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생활하고 소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는 그는 사실상 노동자로서만 소비를 하면 되며, 그 이상의 것은 유통과정의 이 형태에 있어서는 전제로 되어 있지 않다. 형식적으로는 그것조차도 표현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 공식은 G' 으로써, 즉 증대된 화폐자본으로서 다시 곧 기능할 수 있는 결과로써 종결되기 때문이다.

$W'-G'$ 에는 W' 의 판매가 직접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방에서의 판매인 $W'-G'$ 는 타방에서의 구매인 $G-W$ 이며, 또 상품은 중국적으로는 다만 그것의 사용가치 때문에 구매되어 소비—구매된 물품의 성질에 따라 개인적 소비이든 또는 생산적 소비이든 간에—과정으로 들어간다(중간 구매들을 도외시한다면). 그러나 이 소비는 W' 를 생산물로 하는 개별적 자본의 순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생산물은 바로 판매되어야 할 상품으로서 순환으로부터 밀려 나온다. W' 는 명백히 타인에 의하여 소비될 사명을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상주의(이것의 기초에는 $G-W \cdots P \cdots W'-G'$ 라는 공식이 놓여 있다)의 해석자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장황한 설교 즉 개별적 자본가는 노동자로서만 소비하지 않으면 안되며 자본주의적 국민은 그의 상품의 소비, 일반적으로 소비과정을 다른 우매한 국민들에게 맡기고 그 대신에 생산적 소비를 자기의 필생의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설교를 발견한다. 이러한 설교는 흔히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교부(敎父)들의 이와 유사한 금욕주의적 훈계를 상기시킨다.

따라서 자본의 순환과정은 유통과 생산의 통일이며 이 양자를 포함한다. $G-W$, $W'-G'$ 라는 두 단계가 유통행정인 한에서는 자본의 유통은 일반적 상품 유통의 일부분을 이룬다. 그러나 이 단계들은 유통분야에 뿐만 아니라 생산분야에도 속하는 자본순환에서의 기능적으로 규정된 마디들, 단계들인만큼, 자본은 일반적 상품유통의 내부에서 자체의 독자적 순환을 수행한다. 제1단계에서는 일반적 상품유통은 자본이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모습을 취하도록 자본에 복무하며, 제2단계에서는 자본이 자체의 순환을 갱신하는데 지장으로 되는 상품형태로부터 탈각하도록 복무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자본이 자체의 자본으로서의 독자적인 순환을 증식된 잉여가치의 유통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도록 복무한다.

그러므로 화폐자본의 순환은 산업자본의 순환의 가장 일면적이며, 그만큼 가장 적절하며, 또 가장 특징적인 현상형태인데, 여기에서는 산업자본의 목적이며 추진적 동기인 가치의 증식, 돈벌이 및 축적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되어 있다(보다 더 비싸게 팔기 위한 구매). 이 형태에서 제1단계가 $G-W$ 이라는 사정에 의하여 생산자본의 구성부분들이 상품시장에 유래한다는 사실, 또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이 유통, 상업에 의하여 제약된다는 사실이 또한 명백하여진다. 화폐자본의 순환—이것은 상품생산 뿐만이 아니다. 그 자체가 유통을 통하여서만 실현되며, 유통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유통에 속하는 형태인 G 가 전대된 자본가치의 최초의 순수한 형태로서 나타난다는 사실 속에 이미 들어있는 바, 다른 두 개의 순환형태들에서는 그렇지 않다.

화폐자본의 순환은 그것이 항상 자체 속에 전대된 가치의 증식을 포함하는 한, 항상 산업자본의 일반적 표현이다. 순환 $P \cdots P$ 에 있어서는 자본의 화폐적 표현은 생산요소들의 가격으로서만 나타나고 따라서 계산화폐로서 표현된 가치로서만 나타나며, 또 이 형태로 부기에서 기록된다.

새로 등장하는 자본이 처음에 화폐로서 전대되고 그 후에 동일한 화폐형태로서 회수되는 한—산업자본이 한 생산부문으로부터 다른 생산부문으로 이전되는 경우이든 또는 사업으로부터 철수되는 경우이든 간에— $G \cdots G'$ 는 산업자본의 순환의 특수한 형태로 된다. 이 형태는 처음에 화폐형태로 전대되는 잉여가치의 자본으로서의 기능도 포함하며, 또 잉여가치가 그것이 나온 사업 이외의 사업에서 기능하는 경우에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G \cdots G'$ 는 어떤 자본의 최초의 순환일 수도 있고 최종의 순환일 수도 있다. 그것은 사회적 총자본의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 그것은 새로 전대되는 자본—그것이 화폐형태로서 새로 축적된 자본이건 또는 한 생산부문으로부터 다른 생산부문으로 이전되기 위하여 전부 화폐로 전환된 낡은 자본이건 간에—의 형태이다.

화폐자본은 모든 순환에 항상 포함되는 형태로서, 자본중 바로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부분 즉 가변자본을 위하여도 이 순환을 수행한다. 노임전대의 정상적 형태는 화폐로써의 지불이다. 노동자는 그날 벌어들인 생활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짧은 기간마다 부단히 갱신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노동자에 대하여 자본가는 부단히 화폐자본가로서, 그의 자본은 화폐자본으로서 대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는 생산수단

의 구매 및 생산된 상품의 판매와는 달라서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결제(화폐자본의 대부분이 사실상 다만 상품형태로만 나타나며, 화폐는 계산화폐의 형태로만 나타나며 끝으로 현금은 차액을 결제하기 위하여서만 나타나는 것과 같은)는 실시될 수 없다. 타방으로 가변자본에서 발생하는 잉여가치의 일부분은 자본가에 의하여 그 자신의 사적 소비에 지출되는데 이 사적 소비는 소매상업의 분야에 속하며 우여곡절은 있다 하더라도 자본가는 이 부분을 결국 현금으로, 잉여가치의 화폐형태로 지출한다. 잉여가치의 이 부분의 대소 여하는 사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가변자본은 부단히 새로 노임으로 투하되는 화폐자본($G-A$)으로서 나타나며, g 는 자본가의 사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지출되는 잉여가치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전대된 가변자본의 가치로서의 G 와 그것의 증식된 부분인 g 는 양자가 다 반드시 화폐 형태로 지출되기 위하여 그 형태로 견지된다.

$G'=G+g$ 를 결과로 가지고 있는 $G-W\cdots P\cdots W'-G'$ 라는 공식은 그것의 형태에 있어서 기만을 내포하고 있으며 환상적 성격을 띠는바, 이 성격은 전대되어 증식된 가치가 그것의 등가형태인 화폐 속에 존재한다는 데로부터 나온다. 이 공식에서 역점(力點)은 가치의 증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의 화폐형태 있으며, 최초로 유통에 전대된 것보다 더 큰 가치가 결국 화폐형태로서 유통으로부터 끌려온다는 데 있으며, 따라서 자본가에 속하는 금, 은량의 증대에 있다. 소위 중금주의(重金主義)는 $G-W-G'$ 라는 무개념적 형태의 표현, 즉 오직 유통분야에서만 진행되는 운동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1) $G-W$ 2) $W-G'$ 라는 두 행위는 이 중금주의에 있어서는 둘째 행위에서의 W 가 그것의 가치 이상으로 판매되며, 그에 따라서 구매시에 유통에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화폐를 유통으로부터 끌어낸다는 것에 의하여서만 설명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상품유통뿐만 아니라 상품생산도 필연적 요소로서 나타나는 보다 발전된 중상주의의 기초에는 $G-W\cdots P\cdots W'-G'$ 가 유일한 형태로서 고정되어 놓여 있다.

$G-W\cdots P\cdots W'-G'$ 의 환상적 성격 및 이 성격에 대응하는 환상적 해석은 이 형태가 유동적이며, 부단히 갱신되는 형태로서가 아니라 한번만의 형태로서 고정되는 동안은 따라서 이 형태가 순환형태들의 하나로서가 아니라 순환의 배타적인 형태로 간주되는 동안은 존속한다. 그러나 이

형태는 그 자체가 다른 형태들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로, 이 순환 전체는 생산과정 자체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그 기초로서 그러한 생산과정과 함께 그것에 의하여 제약되는 특수한 사회상태를 전제로 한다. $G-W=G-W < \frac{A}{P_m}$ 이다. 그러나 $G-A$ 는 고용노동자의 존재를 전제하며, 그에 따라서 생산자본의 일부로서의 생산수단을, 따라서 또 노동과정 및 가치증식과정을, 이미 자본의 기능으로서의 생산과정을 전제한다.

둘째로, 만약 $G \cdots G'$ 라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화폐형태로의 복귀는 제1단계에서의 화폐형태와 마찬가지로 소멸적인 것으로서 나타난다. $G-W$ 는 소멸하여 P 에 자리를 내준다. 화폐로써의 부단한 재전대는 화폐로서의 그것의 부단한 복귀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오직 순환에서 소멸하는 계기들로서 나타난다.

세째로,

$G-W \cdots P \cdots W'-G', G-W \cdots P \cdots W'-G', G-W \cdots P \cdots$ 등등

이미 순환의 둘째번 반복에 있어서는 G 의 둘째번 순환이 끝나기 전에 $P \cdots W'-G', G-W \cdots P$ 라는 순환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어 G 의 그후의 모든 순환은 $P \cdots W'-G-W \cdots P$ 라는 형태하에서 고찰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최초의 순환의 첫째 단계로서의 $G-W$ 는 생산자본의 부단히 반복되는 순환의 소멸적인 준비에 불과하며, 또 실제로 처음으로 화폐자본의 형태로 투하되는 산업자본의 경우에 그러하다.

타방으로 P 의 둘째 번 순환이 끝나기 전에 상품자본의 순환인 $W'-G, G-W \cdots P \cdots W'$ (요약하면 $W'-W'$)의 최초의 순환이 그려져 있다. 그리하여 첫째 형태는 이미 다른 두 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화폐형태는 그것이 단순한 가치표현이 아니라 등가 형태로서의, 화폐로서의 가치표현인 한에 있어서는 소멸한다.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가 처음으로 순환 $G-W \cdots P \cdots W'-G'$ 를 그리는 새로 등장하는 개별적 자본을 들어 본다면, $G-W$ 는 이 개별적 자본이 통과하는 최초의 생산과정의 준비단계이며 선행자이다. 그러므로 이 $G-W$ 라는 단계는 생산과정에 의하여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의하여 놓여지며 또는 조건지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이 개별적

자본에 대하여서만 타당하다.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전제로 되어 있는 한,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회 상태하에서는, 산업자본순환의 일반적 형태는 화폐자본의 순환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이 선행자(prius)로서 전제되어 있으며, 비록 새로 투하되는 산업자본의 형태인 화폐자본의 첫번째 순환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이외에서는 그러하다.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부단한 존재는 부단히 갱신되는 순환 $P \cdots P$ 를 전제한다. 제1단계인 $G-W < \frac{A}{P_m}$ 내부에서 이미 이 전제 자체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 행위는 일방으로는 고용노동자 계급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며, 타방으로는 생산수단들의 구매자에게 있어서 제1단계 $G-W$ 인 것이 그것들의 판매자에게 있어서 $W'-G'$ 이며, 따라서 W' 는 상품자본을, 따라서 또 자본주의적 생산의 결과로서의 상품자본 자체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또 생산자본의 기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장 생산자본의 순환

생산자본의 순환의 일반적 공식은 다음과 같다. $P \cdots W' - G' - W \cdots P$. 이 순환은 생산자본의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기능을, 따라서 재생산 또는 가치의 증식과 관련된 재생산과정으로서의 생산자본의 생산과정을 의미하며, 한 번만 진행되는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기능으로서 생산적 형태로 있는 산업자본의 기능을 의미하며, 그리하여 재개시가 이미 출발점 자체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W' 의 일부분은(일정한 경우들에, 산업자본의 일정한 투하부문들에서) 그것이 상품으로서 나온 동일한 노동과정에 생산수단으로서 다시 직접 들어갈 수 있다. 이것에 의하여서는 그것의 가치의, 현실적 화폐 또는 화폐기호로의 전화가 생략될 뿐이다. 또는 그 전화는 계산화폐로서의 자립적 표현을 얻을 뿐이다. 이 가치부분은 유통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하여 유통과정에 들어가지 않는 가치가 생산과정에 들어간다. W' 중에서 자본가가 잉여생산물의 일부로서 현물로 소비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상의 사실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있어서는 그다지 문제로 되지 않으며, 그것은 기껏해야 농업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을 뿐이다.

이 형태에서 곧 눈에 띄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정이다

첫째, 제1형태 $G \cdots G'$ 에서는 P 의 기능인 생산과정은 화폐자본의 유통과정을 중단시키고 그것의 두 단계인 $G - W$ 및 $W' - G'$ 간의 매개자로서 나타날 뿐이라면 여기에서는 산업자본의 총유통과정, 유통단계 내부에서의 산업자본의 전체 운동은 최초의 극으로서 순환을 개시하는 생산자본과 최후의 극으로서 순환을 동일한 형태로 즉 순환의 개시의 형태로 종결시키는 생산자본가의 중단 따라서 또 매개를 이룰 뿐이다.

둘째, 총유통은 그것이 화폐자본의 순환에서 취하는 형태와는 반대되는 형태로 표시된다. 거기에서는 가치의 크기를 도외시하면 그 형태는 다음

과 같았다. $G-W-G$ ($G-W$, $W-G$). 여기에서는 역시 가치의 크기를 도외시하면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W-G-W$ ($W-G$, $G-W$), 즉 단순상품유통의 형태이다.

제1절 단순재생산

우선 양극 $P \cdots P$ 간의 유통분야에서 진행되는 과정인 $W'-G'-W$ 를 고찰하여 보자.

이 유통의 출발점은 상품자본 $W'=W+w=P+w$ 이다. 상품자본의 기능 $W'-G'$ (상품자본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제는 상품 W 의 구성부분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자본가치= P 의 실현, 그리고 상품자본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제는 동일한 상품량의 구성부분으로서 w 의 가치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잉여가치의 실현)는 순환의 제1형태에서 고찰되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이 기능은 중단된 유통의 둘째 단계 및 전체 순환의 종결 단계를 이루었다. 여기에서는 그것은 순환의 둘째 단계를, 그러나 유통의 첫째 단계를 이룬다. 제1의 순환은 G' 로써 끝났으며, G' 는 최초의 G 와 마찬가지로 화폐자본으로서 제2의 순환을 새로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G' 에 포함되어 있는 G 와 g (잉여가치)가 서로 계속 진로를 같이 하는가 달리 하는가 하는 것은 그 이상 더 고찰할 필요가 당분간 없었다. 이 고찰은 우리가 제1의 순환을 그것의 갱신에 있어서 더 추구하는 경우에만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생산자본의 순환이 문제로 되는 여기에서는 이 점이 결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이미 생산자본의 제1순환의 규정은 이 점에 의존하기 때문이며 또 생산자본의 순환에서는 $W'-G'$ 가 $G-W$ 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할 유통의 첫째 단계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공식이 단순재생산을 표시하는가 또는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을 표시하는가 하는 것은 이 결정에 의존한다. 그리하여 이 결정 여하에 따라서 순환의 성격이 달라진다.

그러면 우선 생산자본의 단순재생산을 들어보자. 이 경우에 제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정들은 불변이며 또 상품은 그것의 가치대로 매매된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전체 잉여가치는 자본가의 개인적 소비로 들어간다. 상품자본 W' 의 화폐로의 전화가 이루어지면 화폐액 중 자본

가치를 표시하는 부분은 계속 산업자본의 순환 속에서 유통하며, 화폐화된 잉여가치인 다른 부분은 일반적 상품 유통으로 들어가며, 이 유통은 자본가로부터 출발하는 화폐 유통을 이루지만 그것은 이미 그의 개별적 자본의 유통 밖에서 진행된다.

상술한 예에서 상품자본 W' 는 10,000파운드의 방사였으며 그것의 가치는 500파운드 스텔링이었다. 그중 422파운드 스텔링은 생산자본의 가치이며, 그것은 8,440파운드의 방사의 화폐형태로서, W' 에 의하여 개시된 자본 유통을 계속하지만, 78파운드 스텔링의 잉여가치 즉 상품생산물의 초과분인 1,560파운드의 방사의 화폐형태는 이 자본 유통으로부터 나가서 일반적 상품 유통 내부에서 별개의 진로를 밟게 된다.

$$W' \left(\begin{array}{c} W \\ + \\ w \end{array} \right) \begin{array}{c} \text{---} \\ \text{---} \\ \text{---} \end{array} G' \left(\begin{array}{c} G \\ + \\ g \end{array} \right) \begin{array}{c} \text{---} \\ \text{---} \\ \text{---} \end{array} W < \frac{A}{P_m} \quad \text{---} w$$

$g-w$ 는 자본가가 존귀한 본인 자신 또는 본인의 가족을 위하여 고유한 의미에서의 상품으로든, 봉사로서 지출하는 화폐에 의하여 매개되는 일련의 구매이다. 이 구매는 분산되어 있으며 상이한 시기들에 수행된다. 따라서 화폐는 일시는 일상적 소비를 위하여 예정된 화폐예비의 형태로 또는 퇴장화폐의 형태로—왜냐하면 유통이 중단된 화폐는 바로 퇴장화폐의 형태로 있기 때문이다—존재한다. 이 화폐의 유통수단—퇴장화폐로서의 일시적인 형태도 포함한다—으로서의 기능은 화폐형태 G 로서의 자본유통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기능은 개별적 자본의 순환으로부터 나오나, 그것에 다시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 경우에 화폐는 전대되지 않고 지출된다.

우리는 전대된 총자본이 항상 한 단계로부터 다른 단계로 전부 이행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도 우리는 P 의 상품생산물이 생산자본 P 의 총가치인 422파운드 스텔링+생산과정에서 창조된 잉여가치인 78파운드 스텔링을 담당한다고 전제한다. 분할할 수 있는 생산들을 문제화하는 상기 예에서는 잉여가치는 1,560파운드의 방사의 형태로 존재하며, 1파운드의 방사에 대하여 계산한다면 잉여가치는 상술한 바와 전혀 동일하게 2,496온스의 방사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와는 반대로 상품생산물이 예컨대 500파운드의 가치를 가지며 또한 동일한 가치구성을 가진 하나의

기계라고 한다면 이 기계가치의 일부분인 78파운드 스텔링은 잉여가치일 것이나 이 78파운드 스텔링은 총기계 속에만 존재할 것이다. 기계는 그 자체를 산산이 부숴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의 사용가치와 함께 그것의 가치도 파괴하지 않고서는 자본가치와 잉여가치로 나뉘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가치구성부분들은 관념적으로만 상품체의 구성부분들로서 표시될 수 있으며, 매 파운드의 방사가 10,000파운드의 상품의 분리될 수 있는 자립적인 요소들로 표시되는 것처럼 상품 W' 의 자립적인 요소들로 표시될 수는 없다. 기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g 가 자체의 특수한 유통을 개시하기 전에 총상품이, 상품자본이, 기계가 전체적으로 판매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는 반대로 만약 자본가가 8,440파운드의 방사를 판매한다면, 그 이상의 1,560파운드의 판매는 $w(1,560\text{파운드의 방사}) - g(78\text{파운드 스텔링}) - w(\text{소비품})$ 이라는 형태로서의 잉여가치의, 전혀 분리된 유통을 표시할 것이다. 그런데 10,000파운드의 생산물인 방사의 매개 부분의 가치 요소들도 총생산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생산물의 부분들로서 표시될 수 있다. 이 10,000파운드의 방사는 불변자본가치(C)인 372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를 갖는 7,440파운드의 방사와, 가변자본가치(V)인 5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를 갖는 1,000파운드의 방사와, 그리고 잉여가치(m)에 해당하는 78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를 갖는 1,560파운드의 방사로 나뉘어질 수 있듯이 매 파운드의 방사는 $C=8,928\text{펜스의 가치를 갖는 } 11,904\text{온스의 방사와, } V=1,200\text{펜스의 가치를 갖는 } 1,600\text{온스의 방사와, } m=1,872\text{펜스의 가치를 갖는 } 2,496\text{온스의 방사로 나뉘어질 수 있다. 자본가는 또한 } 10,000\text{파운드를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이 순차적인 부분들에 포함되어 있는 잉여가치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소비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 C+V\text{의 총액을 역시 순차적으로 실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이 조작도 } 10,000\text{파운드가 전부 판매되며, 따라서 또 } 8,440\text{파운드의 판매에 의하여 } C\text{ 및 } V\text{의 가치가 보상되는 것을 전제한다(제1부, 제7장, 제2절).}$

여하튼 간에 $W'-G'$ 라는 행위에 의하여 W' 에 포함되어 있는 자본가치도 잉여가치도 서로 분리될 수 있는 존재, 각이한 화폐액으로서의 존재를 획득하게 된다. 두 경우에 다 G 및 g 는 최초로 W' 속에서 다만 상품가격으로서 고유한 관념적인 것에 불과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가치와, 현실적으로 전화된 형태이다.

$w-g-w$ 는 단순상품유통이며, 이것의 제1단계 $w-g$ 는 상품자본의 유통. $W'-G'$ 에, 따라서 자본의 순환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는 반대로 그것의 보충적 단계인 $g-w$ 는 자본순환의 밖에 놓여 있으며 이것으로부터 분리된, 일반상품유통상의 행정으로서 수행된다. W' 의 G' 로의 전화 후에 W 및 w 즉 자본가치와 잉여가치의 유통은 분열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W'-G'=W'-(G+g)$ 라는 행위에 의하여 상품자본이 실현됨으로써, $W'-G'$ 에서는 아직 공통적이었으며, 동일한 상품량에 의하여 담당된 자본가치 및 잉여가치의 운동이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것은 양 가치가 이제는 개별적 화폐액으로서의 자립적 형태를 획득함으로써이다.

둘째, g 는 자본가의 소득으로서 지출되고 G 는 자본가치의 기능적 형태로서, 순환에 의하여 규정되는 자체의 진로를 계속 나감으로써 상술한 분열이 일어난다면, 제1행위 $W'-G'$ 는 후속하는 $G-W$ 및 $g-w$ 라는 행위들과의 관련에서 두 개의 각이한 유통 즉 $W-G-W$ 및 $w-g-w$ 로서 표시될 수 있다. 이 양자는 그 일반적 형태로 보면 보통의 상품유통에 속하는 계열들이다.

그런데 실천에서는 분할할 수 없는, 전일적인 상품체들이 문제로 될 때에는 가치의 구성부분들은 관념적으로 제각기 고립된다. 예컨대 그 대부분이 신용으로 경영되는 런던의 건축업에서는 건축기업가는 가옥 건축의 진척단계에 따라 대부를 받는다. 이 단계들은 어느 것이나 가옥은 아니며, 건설과정에 있는 장래 가옥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구성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의 현실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체 가옥의 관념적인 분수부분에 지나지 않으나, 그렇지만 그것은 추가적인 대부를 위한 담보로 복무할만큼 충분히 현실적이다(이 점에 관하여서는 후에 나오는 제12장을 참조하라).

셋째, 만약 W 및 G 에서는 아직 공통적이었던 자본가치와 잉여가치의 운동이 부분적으로만 분리되거나(그리하여 잉여가치의 일부분은 소득으로서 지출되지 않는다) 또는 전혀 분리되지 않는다면 자본가치 그 자체 내에서 벌써 그것의 순환 내부에서, 그 순환이 끝나기 전에 변화가 발생한다. 우리 예에서는 생산자본의 가치가 422파운드 스텔링이었다. 따라서 만약 자본이 $G-W$ 라는 운동을 이제는 예컨대 480파운드 스텔링 또는

500파운드 스텔링으로서 계속한다면 자본은 최초의 가치보다 58파운드 스텔링 또는 78파운드 스텔링만큼 더 큰 가치로서 순환의 마지막 단계를 통과하게 된다. 이것은 동시에 자본의 가치구성상 변동과 결부될 수도 있다.

제1순환($G \cdots G'$)에서는 유통의 둘째 단계이며 순환의 종결 단계인 $W' - G'$ 는 우리가 고찰하는 순환에서는 순환의 둘째 단계이며 상품유통의 첫째 단계이다. 따라서 유통이 문제로 되는 한 $W' - G'$ 는 $G' - W'$ 에 의하여 보충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W' - G'$ 는 이미 가치증식과정(여기에서는 제1단계인 P의 기능)을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결과인 상품생산물 W' 가 이미 실현되어 있다. 따라서 $W' - G'$ 는 자본의 가치증식과정과 함께 증식된 자본가치가 표시되어 있는 상품생산물의 실현을 종결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재생산을 즉 $g - w$ 가 $G - W$ 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고 전제하였다. $w - g - w$ 및 $W - G - W$ 라는 두 유통은 모두 그 일반적 형태로 보면 상품유통에 속한다(그러므로 양극간에는 가치상 어떠한 차이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속류경제학이 하듯이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을 어떤 종류의 소비에 예정된 상품, 사용가치의 단순한 생산으로서 보며, 속류경제학이 그릇되게도 주장하듯이 자본가가 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다만 그 상품을 다른 사용가치를 가진 상품과 교체 또는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쉽다.

W' 는 처음부터 상품자본으로서 등장한다. 그리하여 전체 과정의 목적인 치부(가치증식)는 잉여가치의(따라서 또 자본의) 크기에 따라 자본가의 개인적 소비의 증대를 배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포함한다.

자본가의 소득이 유통에 있어서 생산된 상품 w (또는 이에 관념적으로 대응하는, 상품생산물 W' 의 분수부분)는 사실상 이 소득을 우선 화폐로 전환시키며 그 다음에는 화폐로부터 사적 소비에 복무하는 일련의 다른 상품들로 전환시키는 데 복무할 뿐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사소한 일이지만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은 w 는 자본가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이게 하지 않은 상품가치, 즉 잉여노동의 체화물이며 따라서 그것은 최초에는 상품자본 W' 의 구성부분으로서 무대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w 자체는 이미 그것의 존재로 보아도, 자기의 과정을 수행하는 자본가치

의 순환과 결부되어 있으며, 만약 이 순환이 정체되거나 또는 그렇지 않고 교란된다면 w 의 소비는 제한되거나 또는 전혀 정지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에 따라 w 와 교체될 일련의 상품들의 판로가 제한되거나 또는 전혀 정지된다. $W'-G'$ 라는 행위가 실패하거나 또는 W' 의 일부분만이 판매될 때에도 동일한 사태에 이른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자본가의 소득의 유통으로서의 $w-g-w$ 는 w 가 상품자본이라는 기능형태에 있는 자본인 W' 의 가치의 일부분인 한에 있어서만 자본의 유통에 들어간다. 그러나 자본가의 소득의 유통에 $g-w$ 에 의하여 따라서 $w-g-w$ 라는 전체 형태에 있어서 자립화되자마자 그것은 자본가에 의하여 전대된 자본의 운동에는—비록 이 운동에서 나오기는 하나—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이 이 운동과 관련되는 것은 자본의 존재가 자본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자본가의 존재가 자본가의 잉여가치 소비에 의하여 조건지어지는 한에 있어서이다.

일반적 유통에서 W' 예컨대 방사는 다만 상품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자본유통의 한 계기로서는 W' 는 상품자본, 즉 자본가치가 번갈아 취하며 벗어버리는 모습들 중 하나로서 기능한다. 방사는 그것이 상인에게 판매된 후에는 그것을 생산한 자본의 순환과정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품으로서 일반적 유통의 영역내에 있다. 이 상품량의 유통은 방적업자의 자본의 자립적 순환에서 한 계기를 이루는 것을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계속된다. 그러므로 자본가에 의하여 유통에 투입된 상품량의 현실적인 최종적 형태변화인 $W-G$, 이 상품량의 소비분야로의 종국적 탈락은 이 상품량이 소여 자본가의 상품자본으로서 기능하는 형태변화로부터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 소여 자본의 유통의 분야에서는 이미 끝난 동일한 형태변화가 일반적 유통의 분야에서 앞으로도 수행되어야 한다.

방사가 다시 다른 산업자본의 순환에 들어가더라도 사태는 조금도 변화하지 않는다. 일반적 유통은 사회적 자본의 각이한 자립적 분수부분들의 호상 엉켜진 순환들 즉 개별적 자본들의 총체와 함께, 자본으로서 시장에 투하된 것이 아닌 가치 즉 개인적 소비분야에 들어가는 가치의 유통도 포괄한다.

또 일반적 유통의 일부분인 한에 있어서의 자본의 순환과 자립적인 순환의 한 개 고리인 한에 있어서의 자본의 순환과의 관계는 우리가 $G'=$

$G+g$ 의 유통을 고찰하면 명백하게 된다. G 는 화폐자본으로서 자본의 순환을 계속한다. g 는 소득의 지출($g-w$)로서 일반적 유통에 들어가나 그러나 자본의 순환으로부터는 떨어져 나간다. 추가적 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하는 부분만이 자본의 순환에 들어간다. $w-g-w$ 에서 화폐는 주화로서만 기능한다. 이 유통의 목적은 자본가의 개인적 소비이다. 자본의 순환에 들어가지 않는 이 유통—새로 창조된 가치중 소득으로서 소비되는 부분의 유통—을 자본의 특징적인 순환이라고 사칭하는 것은 천박한 속류경제학에 특징적이다.

제2단계인 $G-W$ 에서 자본가치 $G=P$ (여기에서 산업자본의 순환을 개시하는 생산자본의 가치)가 잉여가치로부터 분리되어, 따라서 화폐자본순환의 제1단계인 $G-W$ 에서와 동일한 가치의 크기로서 우리 앞에 또다시 나타난다. 위치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품자본이 전화되어 나온 화폐자본의 기능은 동일하니, 즉 생산수단 및 노동력인 P_m 및 A 로의 전화이다.

그리하여 자본가치는 상품자본의 기능인 $W'-G'$ 에서 $w-g$ 와 동시에 $W-G$ 라는 단계를 통과하였으며 이제는 보충적 단계인 $G-W < \frac{A}{P_m}$ 의 단계로 들어간다. 따라서 자본가치의 총유통은 $W-G-W < \frac{A}{P_m}$ 이다.

첫째로, 화폐자본 G 는 제1형태(순환 $G \cdots G'$)에서는 자본가치가 전대되는 최초의 형태로서 등장하였다. 여기에서는 그것이 처음부터 상품자본이 유통의 제1단계인 $W'-G'$ 에서 전화된 화폐액의 일부분으로서, 따라서 처음부터 생산자본 P 가 상품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화폐형태로 전화된 것으로서 등장한다. 화폐자본은 여기에서는 처음부터 자본가치의 최초의 형태도 아니며 종결적인 형태도 아닌 형태로서 존재한다. 왜냐하면 화폐 형태를 다시 한번 탈각함으로써만 $W-G$ 단계를 종결짓는 $G-W$ 라는 단계는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G-W$ 중에서 동시에 $G-A$ 인 부분도 이미 노동력의 구매에서 표현되는 단순한 화폐 전대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에 의하여 창조된 상품가치의 일부분인, 5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있는 1,000파운드의 방사가 노동력에 전대되는 그러한 화폐 전대로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노동자에게 전대되는 화폐는 노동자 자신에 의하여 창조된 상품가치의 일부의 전화된 등가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G-W$ 라는 행위는 그것이 $G-A$ 인 한에 있어

서는 결코 화폐형태로 있는 상품이, 사용형태로 있는 상품에 의한 교체
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일반적 상품유통 자체로부터 독립한 다른 요소
들을 포함하고 있다.

G' 는 그 자체가 P 의 과거의 기능, 과거의 생산과정의 산물인 W' 의
전화된 형태로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총화폐액 G' 는 과거노동의 화폐적
표현이다. 우리의 예에서는 방적과정의 생산물인 10,000파운드의 방사=5
00파운드 스텔링이며, 그중에서 7,440파운드의 방사=전대된 불변자본 C
=372파운드 스텔링이고, 1,000파운드의 방사=전대된 가변자본 V =50파
운드 스텔링이며 또 1,560파운드의 방사=잉여가치 m =78파운드 스텔링
이었다. 만약 G' 중에서 다만 최초의 자본=422파운드 스텔링만이 다시
전대되고 다른 조건들이 불변이라면, 다음 주에 $G-A$ 에 있어서 노동자에
게 전대되는 것은 이 주간에 생산된 10,000파운드의 방사의 일부분(바로
1,000파운드의 방사의 화폐가치)만일 것이다. $W-G$ 라는 행위의 결과로서
는 화폐는 항상 과거노동의 표현이다. 만약 보충적 행위인 $G-W$ 가 상품
시장에서 즉시 수행되고 따라서 G 가 존재하는 즉 시장에 있는 상품들로
전환된다면 이것도 역시 한 형태(화폐)로부터 다른 형태(상품)로의 과거
노동의 전환이다. 그러나 $G-W$ 는 $W-G$ 와는 시간상 다르다. 양자가 동
시적일 수 있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들 예컨대 $G-W$ 를 수행하는 자본가
와, 이 행위가 그에게 있어서 $W-G$ 인 자본가가 동시에 자기들의 상품을
서로 양도하고 그 후에 G 는 차액만을 결제(決濟)하는 경우이다. $W-G$ 의
수행과 $G-W$ 의 수행간의 시간상 차이는 큰 경우도 있고 그다지 크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W-G$ 라는 행위의 결과로서는 G 는 과거노동
을 대표하지만 $G-W$ 라는 행위에 있어서는 G 는 아직 시장에 없으며 다만
장래에만 시장에 있게 될 상품들의 전화형태일 수 있다. W 가 새로 생산
된 다음에야 비로서 $G-W$ 라는 행위가 수행되게 되는 경우에 그러하다.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G 는 이 G 를 화폐적 표현으로 하는 W 와 동시적으
로 생산되는 상품들을 대표할 수도 있다. 예컨대 $G-W$ 라는 전환(생산수
단의 구입)에서 석탄은 그것이 채굴되어 갱 밖에 나오기 전에 구매될
수 있다. 만약 g 가 소득으로서 지출되지 않고 화폐축적으로서 나타나면
그것은 다음 해에야 비로소 생산될 면화를 대표할 수 있다. 자본가의
소득의 지출인 $g-w$ 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노임 A =50파운드 스텔링
도 마찬가지인데, 이 화폐는 노동자의 과거노동의 화폐 표현일 뿐만 아

나라 동시에 그것은 이제 비로소 실현되거나 또는 장래에 실현되어야 할, 동시적인 또는 장래의 노동을 받을 수 있는 지도서(指圖書)이다. 노동자는 이 화폐로써 다음 주에야 비로소 제조될 상의(上衣)를 구매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생산되는 순간에 거의 곧 소비하지 않으면 못쓰게 되는 대단히 많은 수의 생활필수품들에 있어서 그러하다. 그리하여 노동자는 자기의 노임으로서 지불받는 화폐에 있어서 자기 자신 또는 다른 노동자들의 장래 노동의 전화된 형태를 받는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이 노동자의 과거노동의 일부분을 줌으로써 노동자에게 그 자신의 장래 노동을 받을 수 있는 지도서를 준다. 노동자 자신의 동시적인 또는 장래의 노동은 아직 현존하지 않는 저장(貯藏)을 이루며, 이 저장중에서 그의 과거노동이 지불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저장의 형성에 관한 표상은 전혀 소멸한다.

둘째로, $W-G-W < \frac{A}{P_m}$ 라는 유통에서는 동일한 화폐가 두 번 위치를 바꾼다. 자본가는 처음에 그것을 판매자로서 받고 그것을 구매자로서 주어버린다. 상품의 화폐형태로의 전화는 상품을 화폐형태로부터 다시 상품형태로 전화하기 위하여서만 복무한다. 그러므로 자본의 화폐형태, 화폐자본의 형태에 있어서의 자본의 존재는 이 운동에 있어서 소멸적인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환언하면 운동이 계속되는 한, 화폐자본은 그것이 구매수단으로서 복무할 때에는 유통수단으로서만 나타나며, 자본가들이 서로 상대방에게서 구매하며 그에 따라 지불차액만을 결제하게 될 때에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지불수단으로서 나타난다.

세째로, 화폐자본이 단순한 유통수단으로서 복무하든 또는 지불수단으로서 복무하든간에 화폐자본의 기능은 A 및 P_m 에 의한 W 의 보상을 즉 생산 제요소에 의한 생산자본의 결과(소득으로서 소비될 잉여가치를 제외한)로서의 상품생산물인 방사의 보상을 매개할 따름이다. 따라서 그것은 자본가치가 상품으로서의 자체의 형태로부터 이 상품의 형성 요소들로 재전화하는 것을 매개할 따름이다. 즉 그것은 결국은 상품자본의 생산자본으로의 재전화를 매개할 따름이다.

순환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위하여서는 W' 가 그 가치대로 판매되지 않으면 안되며 또 그 전체가 판매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 $W-G-W$ 는 한 상품의 다른 상품에 의한 보상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가치비

율로서의 보상을 포함한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보상이 진행되었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생산수단의 가치는 변동된다.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에는 그것의 특징으로 되는 노동생산능률의 부단한 변동에 의하여서도 가치비율의 부단한 변동이 고유하다. 이 생산요인들의 가치변동에 관하여는 여기에서 시사함에 그치고 후에 논구하기로 하자. 생산요소들의 상품생산물로의 전화, P의 W'로의 전화는 생산분야에서 W'의 P로의 재전화는 유통분야에서 진행된다. 이 재전화는 상품의 단순한 형태변화에 의하여 매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재전화의 내용은 전체로서 본 재생산과정의 한 계기이다. 자본유통의 형태로서의 W-G-W는 기능상 규정된 물질변환을 포함하고 있다. 또 W-G-W라는 전환은 W가 일정량의 상품 W'의 생산요소들과 동등하며 또한 이 요소들의 가치의 호상관계가 최초와 다름없기를 조건짓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상품들이 그것들의 가치대로 구매되고 판매된다고 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순환하는 동안에 어떠한 가치변화도 받지 않는다고 가정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G-G'에서는 G는 자본가치의 최초의 형태이며 이 형태는 다시 취하여지기 위하여 벗기어진다. P...W'-G'-W...P에서는 G는 과정 내부에서 취하여지는 형태에 불과하며, 이 형태는 이 과정 내부에서 다시 벗기어진다. 화폐형태는 여기에서는 자본가치의 지나가는 자립적 형태로서 나타날 뿐이다. 자본은 W'로서는 화폐형태를 취하려고 열망하는 바, 이것은 자본이 G'로서는—자본이 화폐형태로 용화(蛹化)되자마자—이 형태를 벗어버리고 다시 생산자본의 형태로 전환되기를 열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 자본은 화폐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동안은 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증식되지 않는다. 즉 자본은 유희상태에 놓이게 된다. G는 여기에서 유통수단으로서, 그러나 자본의 유통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자본가치의 화폐형태가 그것의(화폐자본의) 순환의 제1형태에서 가지는 외관상 자립성은 이 제2형태에서는 소멸한다. 그리하여 이 제2형태는 제1형태의 비판으로 되며 제1형태를 다만 특수한 한 형태로 귀착시킨다. 만약 둘째 형태변화인 G'-W가 장애에 부딪치면(예컨대 시장에 생산수단이 없으면) 순환—재생산과정의 흐름—은 자본이 상품자본의 형태에서 정체될 때와 마찬가지로 중단된다. 그러나 자본이 화폐형태에서는 덧없는 상품형태에서 보다 더 오래 견딜 수 있다는 차이가 있

다. 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아도 자본은 화폐이기를 멈추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 자본이 상품자본으로서의 기능에 너무 오래 정체되면 그것은 상품이기를 멈추며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가치이기를 멈춘다. 둘째로, 화폐형태로 있는 자본은 자체의 최초의 생산자본형태 대신에 다른 생산자본 형태를 취할 수 있으나 W' 의 형태로 있는 자본은 한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다.

$W'-G'-W$ 는 그것의 형태상으로는 W' 에 대하여서만 W' 의 재생산의 계기인 유통행위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W'-G'-W$ 가 수행되기 위하여서는 W' 가 전환되는 W 의 현실적 재생산이 필요하다. 이 재생산은 W' 로 표시되는 개별적 자본의 재생산과정 밖에 있는 재생산과정에 의하여 제약되어 있다.

제1형태에서는 $G-W < \frac{A}{P_m}$ 은 화폐자본의 생산자본으로의 첫번째 전화를 준비하지만, 제2형태에서는 상품자본으로부터 생산자본으로의 재전화를 준비한다. 따라서 그것은 산업자본의 투자가 이전과 동일한 한에 있어서 상품자본을 낳은 생산 제요소로의 상품자본의 재전화를 준비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제2형태에서는 제1형태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산과정의 준비단계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생산과정으로의 복귀로서, 생산과정의 갱신으로서, 그러므로 생산과정의 선행자로서 따라서 또 가치증식과정의 반복으로서 나타난다.

그런데 또한번 지적해 둘 것은 $G-A$ 라는 행위는 단순한 상품교환이 아니라 잉여가치생산에 복무하여야 할 상품 A 의 구매이며, $G-P_m$ 은 잉여가치생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재적으로 불가결한 소속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G 는 $G-W < \frac{A}{P_m}$ 의 수행에 따라 생산자본 P 로 재전화되며 순환이 새로 개시된다.

따라서 $P \cdots W'-G'-W \cdots P$ 의 명세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P \cdots W' \left(\begin{array}{c} W \\ + \\ w \end{array} \right) \text{ — } \left(\begin{array}{c} G \\ + \\ g \end{array} \right) \text{ — } W < \frac{A \cdots P - W}{P_m} < \frac{A}{P_m} \cdots P$$

화폐자본의 생산자본으로의 전화는 상품생산을 특히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을 목적으로 한 상품의 구매이다. 소비는 이러한 생산적 소비인 한에 있어서만 자본 자체의 순환에 들어간다. 생산적 소비의 조건은 생산적으로 소비되는 상품을 매개로 하여 잉여가치가 조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생산자의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과는 또 심지어는 그러한 상품생산과도 대단히 다른 것이다. 그와 같이 잉여가치 생산에 의하여 매개되는 생산물교환 그 자체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과잉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태를 같은 것으로 묘사한다.

A 및 P_m 으로 전화되는 G의 생산적 소비 외에 이 순환은 $G-A$ 라는 첫째 고리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A-G=W-G$ 이다. 노동자의 소비를 포함하는 그의 유통 $A-G-W$ 중에서 첫째 고리만이 $G-A$ 의 결과로서 자본의 순환에 들어간다. 둘째 행위 즉 $G-W$ 는 비록 그것이 개별적 자본의 유통에서 나오기는 하나 그것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을 위하여 노동자계급의 부단한 존재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또 $G-W$ 라는 행위에 의하여 매개되는 노동자의 소비도 필요하다.

$W'-G'$ 라는 행위는 자본가치의 순환의 계속을 위하여도 또 자본가에 의한 잉여가치의 소비를 위하여도 다만 W' 가 화폐로 전화되었으며 판매되었다는 것을 상정한다. 그것이 구매되는 것은 물론 다만 그 물품이 사용가치이며 따라서 생산적이든 개인적이든 간에 어떤 종류의 소비를 위하여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W' 가 예컨대 방사를 구매한 상인의 수중에서 더 유통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선은 방사를 생산하여 상인에게 판매한 개별적 자본의 순환의 계속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전체 과정이 계속 진행되며 또 그와 함께 그것에 의하여 조건지어지는 자본가 및 노동자의 개인적 소비도 계속 진행된다. 이것은 공황의 고찰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다.

즉 W' 가 판매되어 화폐로 전화되어 있으면 W' 는 노동과정 따라서 또 재생산과정의 현실적 요인들로 재전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W' 가 중국적인 소비자에 의하여 구매되었는가 또는 그것을 다시 판매하려고 하는 상인에 의하여 구매되었는가 하는 것은 사태를 직접적으로는 전혀 변경시키지 않는다. 자본주의적 생산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량의 규모는 이 생

산의 규모와 이것을 부단히 확대하려는 욕망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고, 수요 공급의 예정된 범위, 충족되어야 할 욕망의 예정된 범위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량생산은 자체의 직접적인 구매자로서 다른 산업자본가들 외에 도매상인들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재생산과정은 비록 그것으로부터 방출된 상품들이 현실적으로 개인적 또는 생산적 소비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한계내에서는 이전과 동일한 규모로 또는 심지어 확대된 규모로 진행될 수 있다. 상품의 소비는 그 상품이 나온 자본의 순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방사가 판매되면 방사로 표시된 자본가치의 순환은, 판매된 방사가 우선은 어떻게 되든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생산물이 판매되는 한, 자본주의적 생산자의 관점에서는 만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 자본주의적 생산자가 대표하는 자본가치의 순환은 중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과정이 확대된다면—이것은 생산수단의 생산적 소비의 확대를 포함한다—자본의 이러한 재생산은 노동자들의 개인적 소비의(따라서 수요의) 확대를 수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생산적 소비에 의하여 안내되며 매개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잉여가치의 생산 따라서 또 자본가의 개인적 소비도 증가되며, 전체 재생산과정이 최번영 상태에 있으나, 상품의 일대 부분이 외전상으로만 소비로 들어갔고 현실상으로는 재판매자의 수중에 판매되지 않고 쌓여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사실상 아직 시장에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상품의 흐름은 연달아 계속되며 그리하여 드디어 이전의 흐름은 다만 외전상으로만 소비에 의하여 삼켜졌다는 것이 명백하게 된다. 상품자본들은 시장에서 서로 자리를 다투게 된다. 후에 나타난 것들은 판매하기 위하여 가격 이하로 판매된다. 이전의 흐름들이 아직 판매되지 않았는데 그것들에 대한 지불기한이 도래한다.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지불불능을 선포하거나 또는 지불하기 위하여 어떤 가격으로든 판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판매는 수요의 현실적 상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은 지불을 구하는 수요자와만, 상품을 화폐로 전화시킬 절대적 필요성과만 관계가 있다. 이 때에 공황이 폭발한다. 공황은 소비적 수요, 개인적 소비를 위한 수요의 직접적 감소에서가 아니라 자본과 자본의 교환의 축소, 자본의 재생산과정의 축소에서 볼 수 있게 된다.

G가 화폐자본으로서의 자체의 기능, 생산자본으로 재전화할 사명을 가진 자본가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를 전화시키는 상품들인

P_m 및 A 가 각이한 기한에 구매되든가 또는 지불되어야 한다면, 따라서 $G-W$ 가 서로 순차로 진행되는 일련의 구매와 지불을 표시한다면, G 의 일부분은 $G-W$ 의 행위를 수행하지만 다른 부분은 아직 화폐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과정 자체의 조건들에 의하여 규정되는 어떤 시기에 비로소 일련의 동시적인 또는 순차적인 행위들인 $G-W$ 에 복무한다. 이 부분은 일정한 순간에 행동하기 시작하여 자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만 일시적으로 유통으로부터 끌려나와 있는 것이다. 그 경우에 이 부분이 저장된다는 그 자체가 그것의 유통에 의하여, 또 유통을 위하여 규정된 기능인 것이다. 그 경우에 구매 및 지불폰드로서의 그것의 존재, 그것의 운동의 정지, 그것의 중단된 유통상태는 화폐가 화폐자본으로서의 자체의 기능들 중의 하나를 수행하는 상태이다. 화폐자본으로서라고 말한 것은 이 경우에 일시적으로 휴식상태에 머물러 있는 화폐 자체는 화폐자본 G ($G' - g = G$)의 일부분이며, 상품자본의 가치중에서 순환의 출발점으로 되는 생산자본의 가치 P 와 동등한 가치부분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타방으로 유통으로부터 끌려나온 모든 화폐는 퇴장화폐의 형태로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화폐의 퇴장화폐형태가 화폐자본의 기능으로 되는바, 그것은 마치도 $G-W$ 에서 구매수단 또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이 화폐자본의 기능으로 되는 것과 전혀 마찬가지로이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것도 자본가치가 여기에서는 화폐형태로 존재하며, 화폐상태가 여기에서는 순환의 연관에 의하여 규정되는, 산업자본-순환단계들 중의 하나에 있는—의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화폐자본은 산업자본의 순환 내부에서 화폐기능들 이외의 다른 어떤 기능들도 수행하지 않으며 그리고 이 화폐기능들은 다만 이 순환의 다른 단계들과의 연계에 의하여서만 동시에 자본기능들로서의 의의를 가진다는 것이 또 동시에 증명된다.

g 의 G 에 대한 관계로서의, 자본관계로서의 G' 의 표시는 직접적으로는 화폐자본의 기능이 아니라 상품자본 W' 의 기능인바, 이 W' 자체는 w 및 W 의 관계로서 생산과정의 결과만을, 생산과정에서 수행된 자본가치의 자기증식의 결과만을 표현한다.

만약 유통과정의 진행이 장애에 부딪치고 그리하여 G 가 시장상태 등등과 같은 외적 사정들로 말미암아 자체의 $G-W$ 라는 기능을 정지하고 그 때문에 짧은 기간이건 오랜 기간이건 자체의 화폐상태에 머무르지 않을 수 없게 되면, 우리는 또 다시 퇴장화폐의 상태에 있는 화폐를 보게 된

다. 이러한 상태는 W-G의 G-W로의 이행이 외적 사정들에 의하여 중단되자마자 단순상품유통에서도 발생한다. 이것은 강요된 화폐퇴장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화폐는 유희상태에 있는 잠재적 화폐자본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는 당분간 이 이상 더 들어가지 않기로 하자.

그러나 두 경우에 다 화폐자본이 화폐상태에 머무는 것은 운동의 중단—이것이 합목적적이든 반(反)목적적이든 간에, 자원적이든 비자원적이든 간에, 자본의 기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든 또는 그것과 모순되는 것이든 간에—의 결과이다.

제2절 축적과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

생산과정을 확대하기 위한 균형은 자의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실현된 잉여가치는 비록 그것이 자본화될 것이라 하더라도 흔히 몇 번의 순환을 반복함으로써만 비로소 현실적으로 추가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즉 과정을 밟고 있는 자본가치의 순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크기에 달한다(따라서 그러한 크기에 달할 때까지 축적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잉여가치는 마비되어 퇴장화폐로 되며, 이 형태에서 잠재적 화폐자본을 이룬다. 잠재적(latent) 화폐자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화폐형태로 머물러 있는 동안은 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⁶⁻¹⁾ 그리하여 이 경우에 화폐퇴장은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에 포괄되며 그것에 수반되는, 그러나 동시에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계기이다. 구별된다고 말하는 것은 잠재적 화폐자본의 형성이 재생산과정 자체를 확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경우에 잠

6-1) 잠재적(latent)이라는 표현은 잠재열(熱)이라는 물리학적 표상으로부터 빌려 온 것이다. 그런데 이 표상은 현재 에네르기의 전환 이론에 의하여 거의 제거되고 있다. 그러므로 맑스는 제3편(나중에 편집한 것)에서는 그것 대신에 잠재적 에네르기라는 표상으로 부터 빌려온 잠재적(potentiellles) 자본 또는 달람베르의 잠재적 속도라는 말에 따라 잠재적 자본(virtuelles Kapit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F. 엥겔스.

재적 화폐자본이 형성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자가 자기의 생산규모를 직접 확대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자기의 잉여생산물을 새로운 금 또는 은을 유통에 투입하는 금 또는 은의 생산자에게 판매한다면, 또는 —동일한 것으로 귀착되지만—국민적 잉여생산물의 일정한 부분과 교환하여 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금 또는 은을 수입하는 상인에게 판매한다면, 그의 잠재적 화폐자본은 금 또는 은의 형태로 존재하는 국민적 퇴장화폐의 증가분을 이룬다. 다른 모든 경우들에는, 예컨대 구매자의 수증에서 유통수단이었던 78파운드 스텔링은 자본가의 수증에서 퇴장화폐의 형태를 취한 데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금 또는 은의 형태로 존재하는 국민적 퇴장화폐의 분배가 달라졌을 따름이다.

만약 화폐가 우리 자본가의 거래에서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한다면(상품의 댓가가 구매자에 의하여 장단간에 일정한 기간후에야만 지불되는 경우와 같이), 자본화되게 되어 있는 잉여생산물은 화폐로는 전화되지 않고, 채권으로—구매자에게 아마도 이미 있거나 또는 아마도 장차 있을 것이 예견되는 등가물에 대한 소유의 명의(名義)로—전화된다. 그것은 비록 다른 개별적 산업자본의 순환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이자부(利子附) 증권 등등에 투하된 화폐와 마찬가지로 소여의 순환에 속하는 재생산과정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체 성격은 전대자본 가치의 증식에 의하여 따라서 첫째로는 될 수 있는대로 보다 많은 잉여가치의 생산에 의하여 규정되며, 둘째로는(제1부, 제22장 참조) 자본의 생산에 의하여, 따라서 잉여가치의 자본으로의 전화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나 축적 또는 확대된 규모에서의 생산은 부단히 확장되는 잉여가치의 생산을 위한, 따라서 자본가의 치부를 위한 수단으로서, 자본가의 개인적 목적으로서 나타나며,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반적 경향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제1부에서 해명된 바와 같이, 그것의 발전에 의하여 매 개별적 자본가에 있어서 하나의 필연성으로 된다. 그의 자본의 부단한 증대는 그것의 유지의 조건으로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전에 전개한 문제로 이 이상 돌아갈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선 단순재생산을 고찰하였는바, 이에 있어서 전체 잉여가치가 소득으로서 지출된다고 상정하였다. 현실에 있어서는 정상적 조건하에서 잉여가치의 일부분은 언제나 소득으로서 지출되고 다른 일부분은 자본화

되지 않으면 안되는바, 이 경우에 일정한 기간내에서 생산된 잉여가치가 때로는 전부 소비되든, 때로는 전부 자본화되든 그것은 전혀 상관 없다. 운동의 평균으로는—그런데 일반적 공식은 이 평균만을 표시할 수 있다—양자가 다 진행된다. 그러나 공식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하여 전체 잉여가치가 축적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공식 $P \cdots W' - G' - W' < \overset{A}{P_m} \cdots P'$ 는 생산자본이 확대된 규모에서 그리고 보다 더 큰 가

치로써 재생산되며, 또 증대된 생산자본으로서 제2순환을 개시한다는 것, 또는 같은 말이지만 제1순환을 갱신한다는 것을 표현한다. 이 제2순환이 개시될 때 우리는 또다시 출발점으로서 P 를 갖는다. 그러나 다만 이 P 는 최초의 P 보다 더 큰 생산자본이다.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공식 $G \cdots G'$ 에서는 제2순환이 G' 로써 개시될 때 이 G' 는 G 로서, 일정한 크기의 전대된 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한다. G' 는 제1순환이 개시될 때의 화폐자본보다 더 큰 화폐자본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대된 화폐자본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자마자 그것이 잉여가치의 자본화에 의하여 증대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모든 관련이 소멸되어 있다. 이 기원은 순환을 개시하는 화폐자본의 형태에서는 해소되어 있다. P' 가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기능하자마자 P' 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우리가 $P \cdots P'$ 를 $G \cdots G'$ 즉 제1순환과 대비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이 결코 동일한 의의를 갖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G \cdots G'$ 는 그 자체를 단독적인 순환으로서 보면 다만 한 가지 사실을, 즉 화폐자본(또는 화폐자본으로서 순환중에 있는 산업자본) G 는 화폐를 낳는 화폐, 가치를 낳는 가치이며, 그것은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는 것을 표현할 따름이다. 이와는 반대로 P 의 순환에서는 가치증식과정 자체는 첫째 단계인 생산과정이 경과함에 따라 이미 완료되어 있고 둘째 단계 $W' - G'$ (유통의 첫 단계)의 통과 후에 자본가치+잉여가치는 이미 실현된 화폐자본으로서, 즉 제1순환에서는 마지막 극(極)으로서 나타났던 G' 로서 존재한다. 잉여가치가 생산되었다는 사실은 처음에 고찰된 $P \cdots P$ 라는 형태에서는 둘째 단계에서 자본의 유통 밖으로 떨어지고 소득으로서의 잉여가치의 유통을 표시하는 $w - g - w$ 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다(82페이지의 명세한 공식을 보라). 따라서 전체운동이 $P \cdots P$ 로 표시되며 이에 따라 양극점들간에 가치의 차이가 전혀 없는 이 형태에서도 $G \cdots G'$ 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대된 가치의 증식,

잉여가치의 생산이 표시되어 있다. 다만 $W'-G'$ 라는 행위가 $G\cdots G'$ 에서는 마지막 단계로서 나타나며 $P\cdots P$ 에서는 순환의 둘째 단계로서, 유통의 첫째 단계로서 나타날 따름이다.

$P\cdots P'$ 에서 P' 는 잉여가치가 생산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잉여가치가 자본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자본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 그러므로 P' 는 P 와는 달라서 최초의 자본가치에, 이것의 운동에 의하여 축적된 자본의 가치를 가한 것으로써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G\cdots G'$ 의 단순한 종결로서의 G' 나 또 이 모든 순환들에서의 W' 나 그 자체로서 보면 운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결과를 즉 상품형태 또는 화폐형태로서 실현된 자본가치의 증식을 표현하며, 따라서 $G+g$ 또는 $W+w$ 로서의 즉 자본가치의, 그 새끼인 잉여가치에 대한 관계로서의 자본가치를 표현한다. 그것들은 이 결과를 증식된 자본가치의 각이한 유통형태들로서 표현한다. 그러나 W' 의 형태에서나 또는 G' 의 형태에서나 수행된 가치증식 그 자체는 화폐자본 또는 상품자본의 기능이 아니다. 화폐자본 및 상품자본은 산업자본의 특수한 기능들에 대응하는 특수하며, 각이한 형태들, 존재방식들로서 화폐자본은 화폐기능들만을, 상품자본은 상품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것들간의 차이는 다만 화폐와 상품간의 차이에 불과하다.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은 생산자본으로서의 그것의 형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생산물을 창조하는 모든 노동과정에 들어가는 요소들만으로 즉 일방으로는 노동의 대상적 조건들(생산수단들), 그리고 타방으로는 생산적으로(합목적적으로) 기능하는 노동력만으로써 구성될 수 있다. 산업자본은 생산분야에서는 생산과정 일반에 따라서 또 비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도 상응하는 구성을 가진 때에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 제요소의 총화가 처음부터 생산자본으로서—자본가가 자기의 생산수단들을 다른 상품보유자들에게서 구매한 것과 전혀 마찬가지로 노동력이 그 자체의 보유자에게서 자본가가 구매한 타인의 노동력이라는 사실에 의하여—나타나듯이, 그러므로 생산과정 자체도 산업자본의 생산적 기능으로서 나타나듯이, 화폐와 상품은 동일한 산업자본의 유통형태들로서 나타나며 따라서 화폐와 상품의 기능들도, 생산자본의 기능들을 안내하든가 또는 이 생산자본의 기능들로부터 발생하는, 산업자본의 유통 기능들로서 나타난다. 화폐의 기능과 상품의 기능은 이 경우에 산업자본

이 그것의 순환과정의 각이한 단계들에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형태들로서 호상 관련되어 있음으로써만 동시에 화폐자본의 기능이며 상품자본의 기능이다. 따라서 화폐를 화폐로서 또 상품을 상품으로서 특징짓는 특수한 속성들과 기능들을 자본으로서의 그것들의 속성들로부터 끌어내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며, 또한 거꾸로 생산자본의 속성들을 생산수단으로서의 생산자본의 존재방식으로부터 끌어내는 것도 역시 옳지 않을 것이다.

G' 또는 W' 가 $G+g$, $W+w$ 로서 즉 자본가치의, 그것의 새끼로서의 잉여가치에 대한 관계로서 고정화되자, 이 관계는 한 번은 화폐형태로서 또 한 번은 상품형태로서라는 양형태로 표현되는바, 이것은 사태 자체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이 관계는 화폐로서의 화폐, 상품으로서의 상품에 내재하는 속성 및 기능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양 경우에 가치를 낳는 가치라는, 자본을, 특징짓는 속성은 다만 결과로서만 표현되어 있다. W' 는 항상 P 의 기능의 산물이며, G' 는 항상 산업자본의 순환에서 W' 의 전화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현된 화폐자본이 화폐자본으로서의 자체의 특수한 기능을 재개할 때에는 그것은 $G'=G+g$ 속에 포함되는 자본주의적 관계를 표현하지 않게 된다. $G \cdots G'$ 가 경과되고 G' 가 또다시 순환을 시작할 때 G' 는 G' 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G 로서 기능하는바, G' 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잉여가치가 자본화되는 경우에조차 그렇다. 우리의 예에서는 제2순환은 5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자본으로써 시작되는데, 제1순환은 422파운드 스텔링으로써 시작되었던 것이다. 순환을 시작하는 화폐자본은 이전보다 78파운드 스텔링만큼 더 크다. 이 차이는 한 순환을 다른 순환과 비교할 때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매 개별적 순환의 테두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전에 잉여가치로서 존재하던 78파운드 스텔링을 포함하는, 화폐자본으로서 전대된 500파운드 스텔링은 다른 어떤 자본가가 자기의 최초의 순환을 개시하는 데 투하하는 500파운드 스텔링과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생산자본의 순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중대된 P' 는 재개에 어서 단순재생산 $P \cdots P$ 에서의 P 와 마찬가지로 다만 P 로서 나타난 있다.

$G'-W' < \frac{A}{P_m}$ 의 단계에서는 증가된 크기는 다만 W' 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고 A' 또는 P_m' 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지 않다. W 는 A 및 P_m 의

합계이기 때문에 W' 는 이미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A 및 P_m 의 합계가 최초의 P 에 있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그 밖에도 A' 및 P_m' 의 기호는 잘못된 것이니,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자본의 증대에는 자본의 가치구성의 변동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며, 그 변동의 진전에 있어서 P_m 의 가치는 증대되며 A 의 가치는 언제나 상대적으로, 흔히 는 절대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이다.

제3절 화폐의 축적

화폐로 전화된 잉여가치 g 가 자체의 운동과정을 밟고 있는 자본가치에 즉시로 다시 추가되고 그리하여 자본 G 와 함께 G' 라는 크기로써 순환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g 의 단순한 존재와는 상관없는 사정들에 달려 있다. 만약 g 가 제1의 기업과 병설될, 새로운 독립한 기업에서의 화폐자본으로서 복무하여야 한다면 g 는 그러한 기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크기를 가질 때에만 그것이 충용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만약 g 가 최초의 기업의 확장에 사용되어야 한다면 해도 역시 P 의 소재적 요인들의 관계와 그것들의 가치관계가 g 의 일정한 최소한의 크기를 요구한다. 이 기업에서 작용하는 전체 생산수단들간에는 일정한 질적 호상관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일정한 양적 호상관계, 규모상의 일정한 균형이 존재한다. 생산자본에 들어가는 요인들의 이러한 소재적 제관계 및 이와 관련된 가치상 제관계는 g 가 생산자본의 증가분으로서의 추가적 생산수단 및 추가적 노동력 또는 전자만으로 전환할 수 있기 위하여 도달하지 않으면 안되는 최소한의 크기를 규정한다. 그리하여 방적업자는 자기의 방추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그러한 확대에 필요한 면화 및 노임에 대한 지출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동시에 반드시 해당한 수의 소면기(梳綿機) 및 소정기(梳淨機)를 획득하여야만 된다. 따라서 이렇게 기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잉여가치가 상당한 금액에 달하지 않으면 안된다(보통 방추 1개당 새로운 지출은 1파운드 스텔링으로 계산되어 있다). g 가 이 최소한의 크기에 도달하지 않는 한, 자본은 그것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생산되는 g 의 총액이 G 와 함께 따라서 G'

$-W' < \frac{A}{P_m}$ 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여러 번 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방적기에 있어서 다만 부분품이 변경되지만 하여도, 이 변경에 의하여 방적기계가 보다 생산적으로 되는 한, 방적재료, 소정기의 확장 등등에 대한 지출의 증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 동안은 g 는 적립되는바 그 적립은 g 자체의 기능이 아니라 $P \cdots P$ 의 반복의 결과이다. g 자체의 기능은 g 가 가치증식의 순환의 반복으로부터 따라서 외부로부터 충분한 추가를 받아서 자체의 적극적인 기능에 필요한 최소한의 크기- g 가 현실적으로 화폐자본으로서, 이 경우에는 기능중에 있는 화폐자본 G 의 축적된 부분으로서 함께 화폐자본의 기능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에 달할 때까지 화폐상태에 머물러 있는 일이다. 그 동안은 g 는 적립되며, 형성과정중에 있는, 장성중에 있는 퇴장화폐의 형태로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화폐의 축적, 퇴장화폐의 형성은 현실적인 축적, 산업자본이 작용하는 규모의 확대에 일시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이다. 일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퇴장화폐는 그것이 퇴장화폐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으며, 가치증식과정에 참가하지 않으며, 이것의 협력없이 얻어지는 화폐가 동일한 금고에 투입되기 때문에 만 장성하는 하나의 화폐액으로 남기 때문이다.

퇴장화폐의 형태는 유통의 내부에 있지 않는 화폐, 유통이 중단되어 있으며 그 때문에 화폐형태로 보존되는 화폐의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퇴장화폐의 형성과정 자체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모든 상품생산에 공통하며, 이것이 자체 목적으로서 역할을 노는 것은 다만 상품생산의, 발전되지 않은 전 자본주의적 형태들에서만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화폐가 여기에서 잠재적 화폐자본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또 그 한에 있어서만, 퇴장화폐는 화폐자본의 형태로서 나타나며, 화폐퇴장, 화폐형태로 현존하는 잉여가치의 퇴장화폐 상태는 잉여가치의 현실적으로 기능하는 자본으로의 전화를 위한, 자본의 순환 밖에서 진행되는 기능적으로 규정된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화폐퇴장은 자본의 축적에 일시적으로 수반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따라서 퇴장화폐는 이러한 그 자체의 사명에 의하여 잠재적 화폐자본이며, 그 때문에 또 그것이 과정에 들어서기 전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되는 규모도 생산자본의 그때그때의 가치구성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퇴장화폐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은 그것은 아직 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으며, 아직 유흯상태에 있는 화폐자본인바, 그것은 이전과 같이 그것의 기능이 중단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그것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화폐의 적립을 그것의 시초의 현실적 형태에서, 현실적인 퇴장화폐로서 문제로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W' 를 판매한 자본가의 단순한 대여금(貸與金), 채권의 형태로서도 수행될 수 있다. 이 잠재적 화폐자본이 중간에 화폐를 낳는 화폐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기타 형태들 예컨대 이자를 가져오는 어떤 은행저금, 어떤 종류이든 수형 또는 유가증권의 형태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러한 형태들은 여기에서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화폐로 실현된 잉여가치는 그것을 생산시킨 산업자본의 순환 밖에서 특수한 자본기능들을 수행하는바, 이 기능들은 첫째로 이 순환 자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둘째로, 산업자본의 기능들과는 구별되는 자본기능들—여기에서는 아직 연구되어 있지 않은—을 상징하는 것이다.

제4절 예비фон드

잉여가치의 존재형태인, 방금 고찰한 형태로서의 퇴장화폐는 화폐축적 фонд이며, 자본축적이 일시적으로 취하는 그리고 그 한에 있어서는 자본축적의 조건으로조차 되는 화폐형태이다. 그러나 이 축적фон드는 특수한 부차적 봉사도 할 수 있다. 즉 $P \cdots P'$ 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서 따라서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규모를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자본의 순환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

만약 $W' - G'$ 의 과정이 정상적인 길이 이상으로 오래 지속되며, 따라서 상품자본의 화폐형태로의 전화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된다면, 또는 만약 이 전화가 수행된 후에 예컨대 화폐자본이 전화되지 않으면 안될 생산수단의 가격이 순환의 개시 당시보다 등귀되어 있다면 축적фон드로서 기능하는 퇴장화폐는 화폐자본 또는 그것의 일부의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화폐축적фон드는 순환의 교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비фон드로서 복무할 수 있다.

그러한 예비фон드로서는 그것은 순환 $P \cdots P$ 에서 고찰된 구매수단 및 지

불수단폰드와는 다르다. 이 수단들은 기능하고 있는 화폐자본의 일부(따라서 과정중에 있는 자본가치 일반의 일부의 존재형태들)인바, 이 화폐자본의 부분들은 다만 각이한 시기들에 서로 전후해서 기능하기 시작한다. 생산과정의 계속중에 예비 화폐자본이 부단히 형성되는바, 왜냐하면 예컨대 지불을 받은 것은 오늘인데 지불하는 것은 후일일 수도 있으며 또는 다량의 상품을 판매한 것은 오늘인데 다량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수일 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이 동안에는 유통자본의 일부는 부단히 화폐형태로 존재한다. 이와 반대로 예비폰드는 이미 기능하고 있는 자본, 더 자세히 말해서 화폐자본의 구성부분인 것이 아니라, 축적의 전 단계에 있는 자본, 아직 능동적 자본으로 전화되지 않은 잉여가치의 구성부분인 것이다. 여하간 아주 자명한 일이지만 자본가는 궁하게 되면 그의 수중에 있는 화폐의 규정된 기능 여하에 불구하고 자기 자본의 순환과정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수중에 있는 무엇이고 충용한다. 그런데 우리의 예에서는 $G=422$ 파운드 스텔링, $G'=500$ 파운드 스텔링이다. 만약 422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자본의 일부분이 지불수단 및 구매수단의 폰드로서, 저장화폐로서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기타의 조건들이 불변이라면 전부 순환에 들어가며 또한 이를 위하여 충분하다고 가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비폰드는 78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잉여가치의 일부분인바, 이것이 422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있는 자본의 순환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만 이 순환이 변경된 조건들하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재생산 규모의 확대 없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화폐축적폰드는 이미 잠재적 화폐자본의 존재이며, 따라서 화폐의 화폐자본으로의 전화이다.

단순재생산과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을 포괄하는, 생산자본의 순환의 일반적 공식은 다음과 같다.

$$P \cdots W \xrightarrow{1} G' \cdot G \xrightarrow{2} W < \overset{A}{P}_m \cdots P(P')$$

만약 $P=P$ 이면, 2)의 $G=G'-g$ 이다. 만약 $P=P'$ 이면, 2)의 G 는 $G'-g$ 보다 더 크다. 즉 g 는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화폐자본으로 전화되어 있다.

생산자본의 순환은 고전경제학이 산업자본의 순환과정을 고찰하고 있는 형태이다.

제3장 상품자본의 순환

상품자본의 순환을 위한 일반적 공식은 다음과 같다.

$$W'-G'-W\cdots P\cdots W'$$

W' 는 상술한 두 순환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전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적어도 생산수단 자체의 일부가 순환중에 있는 다른 개별적 자본들의 상품생산물인 한에 있어서는, 한 자본에 있어서의 $G-W$ 는 이미 다른 자본에 있어서의 $W'-G'$ 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예에서는 예컨대 석탄, 기계 등등은 채탄업자, 자본주의적 기계 제작업자 등등의 상품자본이다. 또 제1장 제4절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G\cdots G'$ 가 처음으로 반복될 때 화폐자본의 이 둘째번 순환이 끝나기 전에 이미 $P\cdots P$ 라는 순환뿐만 아니라 $W'\cdots W'$ 라는 순환도 전제되어 있다.

만약 재생산이 확대된 규모에서 수행된다면 종결점 W' 는 출발점 W' 보다 더 크며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것을 W'' 로써 표시하여야 한다.

제3형태와 처음 두 형태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서 볼 수 있다. 첫째로, 이 제3형태에서는 순환이 대립하는 두 단계를 가진 총유통으로써 개시되는 I 형태에서는 유통이 생산과정에 의하여 중단되며 또 II 형태에서는 서로 보충하는 두 단계를 가진 총유통이 재생산과정을 매개할 뿐이며 따라서 그것은 $P\cdots P$ 간의 매개적 운동을 이룬다. $G\cdots G'$ 에서는 유통의 형태는 $G-W\cdots W'-G'=G-W-G$ 이다. $P\cdots P$ 에서는 유통의 형태는 그 거꾸로인 $W'-G', G-W=W-G-W$ 이다. $W'\cdots W'$ 에서도 유통형태는 역시 이 후자의 형태를 취한다.

둘째로, 순환 I 및 II의 반복에 있어서의 종결점들인 G' 및 P' 가 새로 시작되는 순환의 출발점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G' 및 P' 가 생산되던 형태는 소멸한다. $G'=G+g$, $P'=P+p$ 는 새로운 과정을 다시 G 및 P 로서 시작한다. 그러나 III형태에서는 심지어 순환이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갱신될 때에도 출발점 W 는 W' 로서 표시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것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I 형태에서는 G' 자체가 새로운 순환을 개시하자마자 그것은 화폐자본 G 로서, 증식되어야 할 자본가치의 화폐형태로의 전대로서 기능한다. 전대 화폐자본의 크기는 최초의 순환에서 실시된 축적에 의하여 장성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대 화폐자본의 크기가 422파운드 스텔링이든 또는 500파운드 스텔링이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단순한 자본가치로서 나타난다는 사정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는다. G' 는 이미 증식된, 또는 잉여가치를 잉태한 자본으로서, 자본주의적 관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정에서 비로소 앞으로 증대되어야 한다. 동일한 것을 $P \cdots P'$ 에 대하여서도 말할 수 있다. P' 는 부단히 P 로서, 잉여가치를 생산하여야 할 자본가치로서 다시 기능하고, 순환을 갱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는 반대로 상품자본의 순환은 다만 자본가치를 가지고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형태로 증가된 자본가치를 가지고 개시되며, 따라서 처음부터 상품형태로 현존하는 자본가치의 순환뿐만 아니라 잉여가치의 순환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이 형태에서 단순재생산이 진행된다면 종결점에서나 출발점에서나 동일한 크기를 가진 W' 가 나타난다. 만약 잉여가치의 일부가 자본의 순환에 들어간다면 물론 종결에는 W' 대신에 W'' 가, 보다 더 큰 W' 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다음 순환은 이전 순환에서보다 큰 W' 에 불과한 W' 를 가지고 개시되며, 자체의 새로운 순환을 보다 더 큰 축적된 자본가치를 가지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다 더 큰 새로 생산된 잉여가치를 가지고 개시한다. 어떤 경우에도 W' 는 항상 자본가치+잉여가치에 해당하는 상품자본으로서 순환을 개시한다.

W' 가 W 로서 한 개의 산업자본의 순환에서 나타날 때 그것은 이 자본의 형태로서가 아니라, 생산수단이 다른 산업자본의 생산물인 한에 있어서 이 다른 산업자본의 형태로서 나타난다. 제1의 자본의 $G-W$ (즉 $G-P_m$)라는 행위는 이 제2의 자본에 있어서는 $W'-G'$ 이다.

$G-W < \frac{A}{P_m}$ 이라는 유통행정에서 A 및 P_m 은 그것들이 그것들의 판매자들 즉 A 의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을 판매하는 노동자, P_m 의 경우에는 생산수단을 판매하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의 수중에 있는 상품인 한에 있어서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의 화폐가 이 경우에는 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구매자에게 있어서는 A 및 P_m 은 그것들이 아직 구매자에 의하여 구매되지 않은 동안은, 따라서 그것들이 타인에게 속하는 상품으로서 화폐형태로 존재하는 구매자의 자본에 대립하는 동안은, 다만 상품으로서 기능한다. P_m 과 A 가 여기에서 구별되는 것은 P_m 은 그것이 그것의 판매자의 자본의 상품형태인 때에는 그 판매자의 수중에서 W' 따라서 자본일 수 있는데, A 는 노동자에게 있어서 항상 상품에 불과하며 구매자의 수중에서 비로소 P 의 구성부분으로서 자본으로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W' 는 단순한 W 로서는, 자본가치의 단순한 상품형태로서는 결코 순환을 개시할 수 없다. 상품자본으로서 그것은 언제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사용가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P 의 기능의 생산물, 이 경우에는 방사이며, 이 방사의 요소들—상품으로서 유통에서 나오는—인 A 및 P_m 은 이 생산물의 형성요인들로서 기능하였을 따름이다. 둘째로, 가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자본가치 P 에, P 의 기능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가치 m 을 가한 것이다.

W' 자체의 순환에서만 그것의 일부인 $W=P$ =자본가치는 W' 중 잉여가치가 존재하는 부분으로부터, 잉여가치가 들어 있는 잉여생산물로부터 분리될 수 있으며 또 분리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자본가치가 존재하는 상품생산물은 잉여가치가 들어 있는 잉여생산물로부터 분리될 수 있으며 또 분리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양자가 방사의 경우에서와 같이 실지 분리될 수 있는가 또는 기계에서와 같이 실지 분리될 수 없는가 하는 것은 상관없다. W' 가 G' 로 전화되자마자 이 양자는 언제나 서로 분리될 수 있게 된다.

만약 전체 상품생산물이 예컨대 우리의 10,000파운드의 방사와 같이 자립적인 동종의 부분생산물들로 분리될 수 있다면, 따라서 또, 만약 $W'-G'$ 라는 행위가 순차로 수행되는 판매의 합계로서 표시될 수 있다면, 잉여가치가 실현되기 전에 따라서 전체로서의 W' 가 실현되기 전에 상품형태로서의 자본가치는 W 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W' 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500파운드 스텔링어치의 방사 10,000파운드 중에서 8,440파운드의 가치 = 422파운드 스텔링 = 자본가치는 잉여가치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만약 자본가가 우선 422파운드 스텔링을 받고 8,440파운드의 방사를 판매한다면 이 8,440파운드의 방사는 W 즉 상품형태로서의 자본가치를 표시한다.

그밖에 동일한 W' 에 포함되어 있는 1,560파운드의 방사=78파운드 스텔링의 잉여가치라는 잉여생산물은 나중에야 비로소 유통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가는 잉여생산물의 유통 $w-g-w$ 가 수행되기 전에 $W-G-W < \frac{A}{P_m}$ 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만약 그가 우선 372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있는 7,440파운드의 방사를 판매하고 그 다음에 5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있는 1,000파운드의 방사를 판매한다면, W 의 첫째 부분으로써는 생산수단(불변자본 부분 C)이 보상될 수 있을 것이며 W 의 둘째 부분으로써는 자본의 가변부분 v , 노동력이 보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상과 마찬가지로 지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순차적인 판매가 실시되고 순환의 제조조건이 이것을 허용한다면 자본가는 전체 W' 를 $c+v+m$ 으로 분할할 대신에 이 분할을 W' 의 임의의 부분에 대하여도 실시할 수 있다.

예컨대 W' (10,000파운드의 방사=500파운드 스텔링)의 일부분으로서 불변자본 부분을 대표하는 7,440파운드의 방사=372파운드 스텔링은 그 자체가 다시, 불변 부분만을 즉 7,440파운드의 방사생산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만을 보상하는, 276,768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있는 5,535,360파운드의 방사와, 가변자본만을 보상하는, 37,2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있는 744파운드의 방사와, 잉여생산물로서 잉여가치의 담당자인, 58,032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있는 1,160,640파운드의 방사로 분할될 수 있다. 따라서 7,440파운드를 판매함으로써, 자본가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본가치를, 313,968파운드 스텔링의 가격의 6,279,360파운드의 방사의 판매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으며 또 1,160,640파운드라는 잉여생산물의 가치=58,032파운드 스텔링을 소득으로서 지출할 수 있다.

자본가는 또 1,000파운드의 방사=50파운드 스텔링=가변자본가치를 역시 마찬가지로 분할하며 또 분할하여 판매할 수 있다. 37,2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있는 744파운드의 방사는 1,000파운드의 방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변자본가치이며, 5,0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를 가지는 100파운드의 방사는 동일한 1,000파운드의 방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본의 가변부분이며, 따라서 42,2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있는 844파운드의 방사가 1,000파운드의 방사에 포함되어 있는 자본가치의 보상으로 된다. 마지막

으로 7,8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있는 156파운드의 방사는 1,000파운드의 방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잉여생산물을 표시하며, 잉여생산물로서 소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판매할 수만 있다면 78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있는 나머지 1,560파운드의 방사를 분할하여 58,032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있는 1,160,640파운드의 방사를 판매함으로써 1,560파운드의 방사에 포함되어 있는 생산수단의 가치를 보상하고 7,8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있는 156파운드의 방사를 판매함으로써 가변자본의 가치를 보상할 수 있다. 그리하여 도합 1,316,640파운드의 방사= 65,832파운드 스텔링은 총자본가치를 보상한다. 마지막으로 잉여생산물인 243,360파운드=12,168파운드 스텔링이 지출될 수 있는 소득으로서 남는다.

방사에 포함되어 있는 매개 요소 C, V, m이 다시 동일한 구성부분들로 분할될 수 있듯이 1실링=12펜스의 가치가 있는 매 파운드의 방사도 이를 다음과 같이 분할될 수 있다.

$$\begin{array}{rcl}
 c=0.744\text{파운드의} & \text{방사}= & 8.928\text{펜스} \\
 v=0.100 & " & " = 1.200 " \\
 m=0.156 & " & " = 1.872 " \\
 \hline
 c+v+m=1\text{파운드의} & \text{방사}= & 12\text{펜스}
 \end{array}$$

만약 우리가 상술한 세 개의 부분적 판매의 결과를 합계한다면 10,000파운드의 방사를 단번에 판매하는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

불변자본에 있어서—

제1판매에 의하여 5,535,360파운드의 방사=276,768파운드 스텔링

제2판매에 의하여 744,000파운드의 방사=37,200파운드 스텔링

제3판매에 의하여 1,160,640파운드의 방사=58,032파운드 스텔링

합 계 7,440파운드의 방사=372파운드 스텔링

가변자본에 있어서—

제1판매에 의하여 744,000파운드의 방사=37,200파운드 스텔링

제2판매에 의하여 100,000파운드의 방사= 5,000파운드 스텔링

제3판매에 의하여	156,000파운드의 방사= 7,800파운드 스텔링
합 계	1,000파운드의 방사=50파운드 스텔링

잉여가치에 있어서—

제1판매에 의하여	1,160,640파운드의 방사=58,032파운드 스텔링
제2판매에 의하여	156,000파운드의 방사= 7,800파운드 스텔링
제3판매에 의하여	243,360파운드의 방사=12,168파운드 스텔링
합 계	1,560파운드의 방사=78파운드 스텔링

총계

불변자본	7,440파운드의 방사=372파운드 스텔링
가변자본	1,000파운드의 방사=50파운드 스텔링
잉여가치	1,560파운드의 방사=78파운드 스텔링
합 계	10,000파운드의 방사=500파운드 스텔링

W'-G'는 그 자체로서는 10,000파운드의 방사의 판매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10,000파운드의 방사는 다른 모든 방사와 같이 상품이다. 구매자에게는 1파운드에 대하여 1실링 또는 10,000파운드에 대하여 5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가격이 중요하다. 구매자는 거래에 있어서 가치구성을 운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교활한 의도에서 1파운드가 1실링 이하로 판매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더라도 판매자는 이득을 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이다. 그런데 그가 구매하는 상품의 양은 그의 수요에 의존한다. 그리하여 예컨대 그가 직조공장주라면 그가 구매하는 상품량은 직조공장에서 기능하는 그 자신의 자본의 구성에 의존하는 것이고 그에게 대한 판매자인 공장주-방직업자의 자본의 구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W'가 일방으로는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자본(또는 이것이 각이한 구성부분들)을 보상하며, 타방으로는 잉여생산물로서—잉여가치의 지출을 위하여서든 또는 자본 축적을 위하여서든간에—복무하여야 할 비율은 다만 10,000파운드의 방사를 상품형태로 하는 자본의 순환에만 존재한다. 이러한 비율은 판매 그 자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 밖에 여기에서는 W'가 그것의 가치대로 판매되며 따라서 상품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의 그것의 전화만이 문제로 되고 있다고 상정 되어 있다. W'는 이 개별적

자본의 순환에서의 기능형태이며 생산자본이 그것으로부터 보상되어야 하는만큼, W' 를 위하여서는 판매에 있어서 가치와 가격이 서로 배리되는가 또 어느 정도로 배리되는가 하는 것이 물론 결정적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형태상의 차이점들만이 고찰되고 있는만큼 이 문제에는 논급할 필요가 없다.

I 형태 $G \cdots G'$ 에서는 생산과정은 두 개의 서로 보충하며 서로 대립하는 자본유통단계들의 중간에서 진행된다. 그것은 종결단계인 $W' - G'$ 가 시작하기 전에 지나가고 있다. 화폐는 자본으로서 전대되어 우선 생산요소들로 전화되고 이 생산요소들로부터 상품생산물로 전화되며, 그리고 이 상품생산물은 다시 화폐로 전환된다. 이것은 완전히 종결된 사업순환이며, 이것의 결과는 무엇에나 또 누구에게나 사용될 수 있는 화폐이다. 그리하여 과정의 새로운 개시는 다만 가능성으로서만 주어져 있다. $G \cdots P \cdots G'$ 는 사업으로부터의 철수에 있어서는 개별적 자본의 기능을 종결하는 마지막 순환일 수도 있으며 새로 기능을 개시하는 개별적 자본의 첫번째 순환일 수도 있다. 일반적 운동은 여기에서는 $G \cdots G'$ 즉 일정한 금액의 화폐로부터 보다 더 큰 금액의 화폐로의 운동이다.

II 형태 $P \cdots W' - G' - W \cdots P(P')$ 에서는 총유통과정은 첫번째 P에 뒤따르며 둘째 P에 앞선다. 그러나 그것은 I 형태에서와는 반대되는 순서로서 진행된다. 첫번째 P는 생산자본이며 그것의 기능은 뒤따르는 유통과정의 전체조건으로서의 생산과정이다. 이와 반대로 마지막 P는 생산과정 이 아니다. 그것은 생산자본형태에의 산업자본의 재존재(再存在)에 불과하다. 그것도 그것이 그러한 것인 것은 유통의 마지막 단계에서 수행되는 전화-자본가치의 $A + P_m$ 즉 결합되어 생산자본의 존재형태를 이루는 주관적 및 객관적 요인들로의 전화-의 결과로서이다. 자본은 그것이 P 이든 또는 P' 이든간에 결국에 있어서는 다시, 새로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으면 안되며 생산과정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형태로 준비되어 있다. $P \cdots P$ 라는 일반적 운동형태는 재생산의 형태이며 그것은 $G \cdots G'$ 처럼 과정의 목적으로서의 증식을 표시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이 형태는 고전경제학이 생산과정의 일정한 자본주의적 형태를 무시하고 생산 그 자체를 과정의 목적으로서 묘사하며, 그리하여 부분적으로는 생산의 갱신을 위하여($G - W$) 부분적으로는 소비를 위하여($g - w$) 되도록 많이 그리고 되도록 싸게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물을 되도록 다방면의 다

른 생산물들과 교환하여야 한다고 묘사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G 와 g 는 여기에서 다만 순간적인 유통수단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화폐의 특성들도 화폐자본의 특성들도 간과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전체 과정이 단순히 그리고 자연적으로 나타난다. 즉 천박한 합리주의의 자연성을 띤다.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상품자본의 고찰에 있어서는 때때로 이윤이 망각되고 그리고 상품자본은 생산의 순환 전체가 문제로 될 때에는 다만 상품으로서 나타나며, 가치의 구성부분들이 문제로 될 때에는 상품자본으로서 나타난다. 축적은 물론 생산이 묘사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묘사된다.

Ⅲ형태 $W'-G'-W \cdots P \cdots W'$ 에서는 유통과정이 두 단계로써, 그것도 Ⅱ형태인 $P \cdots P$ 에서와 동일한 순서로 순환이 시작된다. 그 다음에 P 가 뒤따르는바, 그것도 Ⅰ형태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의 기능인 생산과정을 가지고서이다. 생산과정의 결과인 w' 로써 순환은 종결된다. Ⅱ형태에서 순환이 생산자본의 단순한 재존재(再存在)로서의 P 로써 종결되듯이 여기에서는 그것은 상품자본의 재존재로서의 W' 로써 종결된다. Ⅱ형태에서 자본이 그것의 종결형태인 P 에서 과정을 다시 생산과정으로서 개시하지 않으면 안되듯이 여기에서는 순환은 산업자본이 상품자본의 형태로서 재현(再現)함으로써, $W'-G'$ 라는 유통단계로써 새로 개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순환의 이 양형태는 미완성이니, 왜냐하면 그것들은 G' 로써, 즉 화폐로 재전화된 증식된 자본가치로써 종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양형태는 계속 더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러므로 자체 속에 재생산을 포함하고 있다. Ⅲ형태에서의 총순환은 $W' \cdots W'$ 이다.

Ⅲ형태를 처음의 두 형태로부터 구별케 하는 것은 이 순환에서만 앞으로 증식되어야 할 최초의 자본가치가 아니라 증식된 자본가치가 그것의 출발점으로서 나타난다는 사정이다. 자본주의적 관계로서의 W' 가 여기에서는 출발점이며, 그것은 그러한 것으로서 전체 순환에 대하여 규정적인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이 순환은 이미 그것의 최초의 단계에서 자본가치의 순환과 마찬가지로 잉여가치의 순환도 포함하고 있으며, 잉여가치는 비록 매 개별적 순환에서는 아니더라도 평균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소득으로서 지출되어 $w-g-w$ 라는 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며 부분적으로는 자본축적의 요소로서 기능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W' \cdots W'$ 라는 형태에서는 총상품생산물의 소비는 자본순환 자체의 정상

적 진행의 조건으로서 전제되어 있다. 전체 개인적 소비는 노동자의 개인적 소비와 잉여생산물 중 축적되지 않는 부분의 개인적 소비를 포괄한다. 따라서 총체로서 본—개인적 소비로서와 생산적 소비로서의—소비 W' 의 순환에 조건으로서 들어간다. 생산적 소비(여기에는 사실상 노동자의 개인적 소비도 속한다. 왜냐하면 노동력은 일정한 한계내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적 소비의 부단한 생산물이기 때문이다)는 매 개별적 자본 자체에 의하여 수행된다. 개인적 소비는 개별적 자본가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사회적 행위로서 상정되고 있으며, 결코 개별적 자본가의 행위로서는 상정되고 있지 않다.

I 및 II 형태들에서는 전체 운동은 전대될 자본가치의 운동으로서 표시된다. III 형태에서는 증식된 자본이 총상품생산물의 모습으로서 출발점을 이루며, 운동하는 자본, 상품자본의 형태를 취한다. 이 상품자본이 화폐로 전화된 후에야 비로소 이 운동은 자본의 운동과 소득의 운동으로 갈라진다. 이 형태에서는 전체 사회적 생산물의 분배와 온갖 개별적 상품자본에 대한 생산물의 특수한 분배—일방으로는 개인적 소비폰드로의, 타방으로는 재생산폰드로의—가 자본의 순환에 포함되어 있다.

$G \cdots G'$ 에서는 갱신되는 순환에 들어가는 g 의 크기에 따라 순환 확대의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P \cdots P$ 에서는 P 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아마도 그보다 더 적은 가치를 가지고도 새로운 순환을 개시할 수 있으며, 그러고도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을 표시할 수 있으니 예컨대 상품의 요소들이 노동생산능률의 제고의 결과 저렴해지는 경우에 그렇다. 거꾸로 이와 반대되는 경우에는 가치상으로는 증대된 생산자본이 소재상으로는 축소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을 표시할 수 있으니, 예컨대 생산요소들이 등귀되는 경우에 그렇다. 동일한 것을 $W' \cdots W'$ 에 대하여서도 말할 수 있다.

$W' \cdots W'$ 에서는 상품형태로 있는 자본이 생산의 전제로 되고 있다. 그것은 이 순환의 내부에서 제2의 W 에 있어서 또다시 전제로서 돌아온다. 만약 이 W 가 아직 생산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재생산되고 있지 않다면 순환은 지장을 받는다. 이 W 는 대부분이 어떤 다른 산업자본의 W' 로서 재생산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순환에서 W' 는 운동의 출발점, 통과점 및 종결점으로서 존재하며, 그러므로 항상 존재한다. 그것은 재생산과정의 부단한 조건이다.

$W' \cdots W'$ 는 또 하나의 계기에 의하여 I 및 II 형태들과 구별된다. 자본이 순환과정을 개시할 때의 형태는 종결할 때의 형태이며 그렇게 됨으로써 자본이 다시 동일한 순환을 개시하는 시초 형태로 있다는 점은 세 순환 전체에 공통하다. 시초 형태 G, P, W' 는 언제나 자본가치(III 형태에서는 증대된 잉여가치가 첨가되어 있는 자본가치)가 전대되는 형태이며, 따라서 순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본가치의 최초의 형태이다. 마지막 형태 G', P', W' 는 언제나 순환에서 선행하는, 최초의 형태가 아닌 기능형태들 중의 하나의 전화된 형태이다.

이와같이 하여 I에서의 G' 는 W' 의 전화된 형태이며, II에서의 마지막 P 는 G 의 전화된 형태이며(그런데 I과 II에서 이 전화는 상품유통이라는 단순한 행정에 의하여, 상품과 화폐의 형식상의 위치변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III에서의 W' 는 P 즉 생산자본의 전화된 형태이다. 그러나 이 III에서는 첫째로 전화가 자본의 기능형태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가치의 크기에도 관련된다. 그리고 둘째로 이 전화는 유통과정에 속하는 단순히 형식적인 위치변환의 결과인 것이 아니라 생산자본의 상품적 구성부분들의 사용형태 및 가치가 생산과정에서 수행한 현실적 전환의 결과이다.

시초의 극(極)의 형태인 G, P, W' 는 그때그때의 순환인 I, II 및 III에 대하여 전제로 되어 있다. 종결의 극에서 다시 돌아오는 형태는 순환 자체의 일련의 형태변화에 의하여 야기되었으며 따라서 또 조건지어져 있다. W' 는 개별적 산업자본순환의 종결점으로서, 이 W' 를 생산물로 하는 동일한 산업자본의, 유통에 속하지 않는 형태인 P 만을 전제로 한다. G' 는 I에서의 종결점으로서, W' 의 전화된 형태($W'-G'$)로서는, G 가 구매자의 수중에, 순환 $G \cdots G'$ 의 외부에 존재하며 W' 의 판매에 의하여 이 순환에 인입되어 이 순환 자체의 종결형태로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II에서는 종결점 P 는, A 및 $P_m(W)$ 이 외부에 존재하며 $G-W$ 에 의하여 종결형태로서의 그것에 합체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최종의 극(極)을 도외시하면 개별적 화폐자본의 순환은 화폐자본 일반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또 개별적 생산자본의 순환은 순환중에 있는 생산자본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I에서는 G 가, II에서는 P 가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는 최초의 화폐자본, 최초의 생산자본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III 즉

$$W' \left[\begin{array}{c} W - \\ -G' \\ w - \end{array} \right] \left[\begin{array}{c} G - W < \frac{A}{P_m} \dots P \dots W' \\ g - w \end{array} \right]$$

에서는 W 가 순환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두 번 전제되어 있다. 한 번은 순환 $W' - G' - W < \frac{A}{P_m}$ 에서이다. 이 W 는 그것이 P_m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 판매자의 수중에 있는 상품이다. 그것이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생산물인 한, 그 자체가 상품자본이다. 비록 그것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매자의 수중에서는 상품자본으로서 나타난다. 또 한번은 $w - g - w$ 에서의 제2의 w 에서이다. 이 w 도 역시 구매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상품으로서 현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쨌든 A 및 P_m 은 그것들이 상품자본이든 아니든간에 W' 와 마찬가지로 상품이며, 또 상품으로서 서로 관계한다. 그 $w - g - w$ 에서의 제2의 w 에 대하여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W' = W(A + P_m)$ 인 한, W 는 상품들을 그 자체의 형성요소들로 하고 있으며 유통에서 동등한 상품들으로써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w - g - w$ 에서도 제2의 w 는 유통에서 다른 동등한 상품들으로써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뿐만 아니라 지배적인 생산방식으로서의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기초 위에서는 판매자의 수중에 있는 모든 상품은 상품자본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상인의 수중에서 계속 상품자본이며 또는 아직 그것이 상품자본이 아니었다면 상인의 수중에서 상품자본으로 된다. 또는 그것은 최초의 상품자본을 보상하고 그리하여 이 상품자본에게 다만 다른 존재형태를 부여하는 그러한 상품, 예컨대 수입품이 아니면 안된다.

생산자본 P 를 구성하는 상품요소들인 A 및 P_m 은 P 의 존재형태로서는 그것들이 주위 모여진 각이한 상품시장들에서 취하던 것과 동일한 모습을 취하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이제는 통합되어 있으며 또 다만 그것들이 결합됨으로써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다만 이 III형태에서만 순환 자체의 내부에서 W 가 W 의 전제로서 나타난다는 사정은 순환의 출발점이 상품형태로서의 자본이라는 데 유래한다. 순환은 W' (잉여가치의 첨가에 의하여 증대되었건 안되었건간에 자본가치로서 기능하는 한)가 그것의 생산요소들을 형성하는 상품들로 전환됨으로

써 개시된다. 그러나 이 전환은 전체 유통과정 $W-G-W (=A+P_m)$ 를 포괄하며, 이 과정의 결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W 는 양극에 서 있으나, $G-W$ 의 행위에 의하여 외부의 상품시장으로부터 W 라는 형태를 얻는 제2의 극은 순환의 최종극이 아니고 유통과정을 포괄하는 순환의 최초의 두 단계의 최종극에 지나지 않는다. 이 유통과정의 결과는 P 이며, 이 P 의 기능인 생산과정이 그 다음에 시작된다. W' 는 유통과정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이 생산과정의 결과로서 비로소 순환의 종결로서 최초의 극 W' 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반대로 $G \cdots G'$, $P \cdots P$ 에서는 종결의 극들인 G' 및 P 는 유통과정의 직접적 결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다만 순환의 종결에 있어서만 타인의 수중에 있는, 첫째 경우에는 G' 가, 둘째 경우에는 P 가 전제로 되어 있다. 순환이 극들간에서 진행되는만큼 첫째 경우의 G' 도, 둘째 경우의 P 도—즉 타인의 화폐로서의 G 의 존재도, 타인의 생산과정으로서의 P 의 존재도—이 순환들의 전제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W' \cdots W'$ 는 타인의 수중에 있는 타인의 상품으로서의 $W (=A+P_m)$ 를 전제로 하며, 이 상품들은 안내의 역할을 하는 유통과정에 의하여 순환에 인입되어 생산자본으로 전화되고 이 생산자본의 기능의 결과로서 W' 는 다시 순환의 종결형태로 된다.

그러나 순환 $W' \cdots W'$ 는 그것의 행정의 내부에 $W (=A+P_m)$ 의 형태로서의 다른 산업자본을 전제로 하는(그리고 P_m 은 각이한 종류의 다른 자본들 예컨대 우리의 경우에는 기계, 석탄, 유류 등등을 포괄한다) 바로 그 때문에, 순환 $W' \cdots W'$ 그 자체는 다만 순환의 일반적 형태 즉 그 아래에서 매 개별적 산업자본(이것이 최초로 투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이 고찰될 수 있는 사회적 형태로서 고찰될 뿐만 아니라, 따라서 모든 개별적 산업자본들에 공통한 운동형태로서 고찰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개별적 자본들의 자본들의 총화 즉 자본가계급의 총자본의 운동형태로서, 매 개별적 산업자본의 운동이 다른 부분운동과 엉켜져 있으며, 이것에 의하여 제약되는 부분운동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운동으로서 고찰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예컨대 우리가 어떤 나라의 연 총상품생산물을 고찰하고 이 생산물의 일부가 모든 개별적 기업들에서의 생산자본을 보상하며 다른 부분이 각이한 계급들의 개인적 소비로 들어가는 운동을 분석한다면 우리는 $W' \cdots W'$ 를 사회적 자본 및 이것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가치 또는 잉여생산물의 운동형태로서 고찰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개별적 자본

들의 총화(여기에는 주식자본 또는 정부가 생산적 고용노동을 광산, 철도 등등에서 사용하며 산업자본가로서 기능하는 한, 국가자본이 포함된다)이며, 사회적 자본의 총운동=개별적 자본들의 운동의 대수학(代數學)적 총화라는 사정은 결코 다음과 같은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즉 고립적인 개별적 자본의 운동으로서의 이 운동은 사회적 자본의 총운동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즉 사회적 자본의 다른 부분들의 운동과의 관련에서 고찰될 때의 동일한 운동이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현상들을 보여준다는 것, 또 이 사회적 자본의 총운동은 동시에 제문제—개개의 개별적인 자본의 순환의 고찰에 있어서는 이미 해결된 것으로서 전제되지 않으면 안되고 그 고찰로부터 해결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님—을 해결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W' \cdots W'$ 는 최초로 전대된 자본가치가 운동을 개시하는 극(極)의 일부분만을 이루며, 또 운동이 처음부터 자체를 산업자본의 전체운동이라고 선포하며, 생산적 자본을 보상하는 생산물 부분뿐만 아니라, 잉여생산물을 이루는—그리고 평균적으로는 일부는 소득으로서 지출되며 일부는 축적의 요소로서 복무하여야 할—생산물 부분의 전체운동이라고 선포하는 유일한 순환이다. 소득으로서의 잉여가치의 지출이 이 순환에 포함되는 한, 개인적 소비도 이 순환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개인적 소비는 또한 출발점인 상품 W 가 어떤 것이든 임의의 소비품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정에 의하여서도 이 순환에 포함된다.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물품은 그것의 사용형태로 보아 생산적 소비용이거나 또는 개인적 소비용이거나 또는 이 양자용이거나 할 것 없이 상품자본이다. $G' \cdots G'$ 는 가치측면을 전체 과정의 목적으로서의 전대된 자본가치의 증식을 지시할 따름이며, $P \cdots P(P')$ 는 여전히 동등한 생산자본 또는 중대된 생산자본(축적)을 가진 재생산과정으로서의 자본의 생산과정을 지시한다. $W' \cdots W'$ 는 이미 그것의 시초의 극에서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의 모습으로서 자체를 선포하는데, 처음부터 생산적 소비와 개인적 소비를 포함한다. 생산적 소비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증식과 함께 이 형태에서 다만 운동의 일부로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W' 는 어떠한 생산과정에도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용형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물의 부분들로 표현되는 W' 의 각이한 가치구성 부분들은, $W' \cdots W'$ 가 사회적 총자본의 운동형태로서 타당한가 또는 개별적 산업자본의 자립적 운동으로서 타당한가에 따라서, 각이한 지위를 차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려져

있다. 이 순환은 이러한 그것의 특성들로 말미암아 단순한 개별적인 자본의 고립된 순환으로서의 그 자체 이상의 것임을 보여준다.

$W' \cdots W'$ 라는 형상에서는 상품자본 즉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되는 총생산물의 운동은 개별적 자본의 자립적 순환의 전제로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후자에 의하여 제약되는 것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만약 이 형상의 특성이 이해된다면 $W'-G'$ 및 $G-W$ 라는 형태변화가 일방으로는 자본의 형태변화에 있어서의 기능적으로 규정된 단계들이며 타방으로는 일반적인 상품유통의 고리들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미 불충분하다. 한 개별적 자본의 형태변화의, 다른 개별적 자본들의 형태변화와의 또 총생산물 중 개인적 소비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의 연결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별적 산업자본의 순환의 분석에 있어서는 우리는 주로 최초의 두 형태를 기초로 삼는다.

$W' \cdots W'$ 라는 순환이 개개의 개별적 자본의 형태로서 나타나는 것은, 예컨대 수확으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계산되는 농업에서이다. II형상에서는 파종이, III형상에서는 수확이 출발점이다. 또는 중농주의자들의 말대로 한다면 전자에서는 전대(avances)가, 후자에서는 회수(reprises)가 출발점이다. 자본가치의 운동은 III에서는 처음부터 일반적 생산물량의 운동의 일부분으로서 나타나는데 I 및 II에서는 W' 의 운동은 고립된 자본의 운동에 있어서의 한 계기를 이룰 뿐이다.

III형상에서는 시장에 있는 상품이 생산 및 재생산과정의 부단한 전제를 이룬다. 그러므로 이 형상에 주의를 집중시킨다면, 생산과정의 모든 요소들이 상품유통에 유래하는 듯이, 다만 상품들로만 구성되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일면적인 이해는 상품요소들과는 무관계한 생산요소들을 간과케 한다.

$W' \cdots W'$ 에서는 총생산물(총가치)이 출발점이므로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외국무역을 도외시한다면),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은 생산능력이 불변인 경우에 잉여생산물 중 자본화되어야 할 부분 속에 추가적 생산자본의 소재적 요소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어떤 해의 생산이 다음 해의 생산의 전제로 되는 한, 또는 이러한 일이 한 해 동안에 단순재생산 과정과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한, 잉여생산물은 그것이 추가적 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형태로 직접 생산된다는 것이다. 생산능력의 제고는 자본의 가치를 제고시킵이 없

이 자본의 소재만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능률의 제고는 가치증식을 위한 추가적 재료를 형성한다.

$W' \dots W'$ 는 껀네의 경제표(Tableau économique)의 기초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가 $G \dots G'$ 라는 형태(중상주의가 고립시켜 고집한 형태인)와 대립시켜 바로 이 형태를 선택하였고 $P \dots P$ 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의 위대하며 정확한 분별력을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제4장 순환과정의 세 형상

이로써 총유통과정을 표기한다면 세 형상(形象)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I. $G-W \cdots P' \cdots W'-G'$

II. $P \cdots Ck \cdots P$

III. $Ck \cdots P(W')$

만약 우리가 세 형태 전부를 총괄한다면 과정의 모든 전제들은 과정의 결과로서 과정 자체에 의하여 생산된 전제로서 나타난다. 또 과정의 모든 결과들은 과정의 전제들로서 나타난다. 매개 계기는 출발점, 통과점 및 복귀점으로서 나타난다. 총과정은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의 통일로서 표시되며, 생산과정은 유통과정의 매개자이며 또 그 거꾸로이기도 하다.

세 순환 전부에 공통한 것은 규정적 목적으로서의, 추진적 동기로서의 가치증식이다. I에서는 이것이 형태 자체에 표현되어 있다. II 형태는 P로써 즉 가치증식과정 그 자체로써 시작한다. III에서는 운동이 종전과 다름없는 규모로 반복될 때에도 순환은 증식된 가치로써 시작하며 또 새로 증식된 가치로써 종결한다.

$W-G$ 는 구매자에게 대하여서는 $G-W$ 이며 또 $G-W$ 는 판매자에게 대하여서는 $W-G$ 인만큼 자본의 유통은 상품의 보통의 형태변화를 표시할 따름이며, 상품의 형태변화의 개소에서(제1부, 제3장, 제2절) 전개된, 유통화폐량에 관한 법칙들이 여기서도 타당하다. 그러나 사물의 이러한 형식적 측면에 머물지 않고 각이한 개별적 자본들의 형태변화들간의 현실적 연계를, 따라서 사실상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과정의 부분운동들로서의 개별적 자본들의 순환의 연계를 고찰한다면, 이 연계는 화폐와 상품의 단순한 형태변환으로서는 설명될 수 없다.

부단히 회전하는 원에서는 모든 점이 동시에 출발점이며 복귀점이다.

회전이 중단되면 매개 출발점이 다 복귀점은 아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특수한 매개 순환은 다른 순환을(함축적으로)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한 형태에서의 순환의 반복은 다른 형태에서의 순환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같이 하여 모든 차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으로서 또는 단순히 주관적인, 관찰자에게만 존재하는 차이로서도 나타난다.

이 순환들의 각 개가 각이한 개별적 산업자본들이 취하는 특수한 운동 형태로서 고찰되는 한, 이 차이도 항상 개별적인 차이로서만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매 개별적 산업자본은 모든 세 순환에 동시에 존재한다. 세 순환, 자본의 세 모습의 재생산 형태들은 연속적으로 병행하여 진행된다. 그리하여 예컨대 지금 상품자본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자본가치의 일부는 화폐자본으로 전화되지만 동시에 다른 부분은 생산과정으로부터 나와 새로운 상품자본으로서 유통에 들어간다. 이와같이 하여 $W' \dots W'$ 의 원형이 부단히 그려진다. 다른 두 형태도 그와 마찬가지로이다. 매개 형태 또 매개 단계에서의 자본의 재생산은 이 형태들의 형태변화 및 세 단계를 통하는 순차적 진행과 마찬가지로 연속적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총순환은 그것의 세 형태의 현실적 통일이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자본가치는 그것의 총가치량이 전부 때로는 화폐자본으로서, 때로는 생산자본으로서, 또 때로는 상품자본으로서 등장한다고 상정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컨대 422파운드 스텔링이 처음에는 전부 화폐자본이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역시 그 전부가 생산자본으로 전화되었고 또 마지막으로 상품자본—500파운드 스텔링(그중 78파운드 스텔링은 잉여가치이다)의 가치가 있는 방사—으로 전화되었다고 하였다. 이 경우에는 각이한 단계들은 그만큼 많은 수의 중단을 이룬다. 예컨대 422파운드 스텔링이 계속 화폐형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즉 구매행위 $G-W(A+P_m)$ 가 수행되지 않은 동안은 총자본은 다만 화폐자본으로서 존재하며 기능한다. 그것이 생산자본으로 전화되자마자 그것은 화폐자본으로서도 또는 상품자본으로서도 기능하지 않는다. 그것의 총유통과정은 타방으로 그것이 G 의 형태로서이든, W' 의 형태로서이든 유통의 두 단계 중 하나에서 기능하자마자 그것의 총생산과정이 중단되듯이 중단된다. 따라서 순환 $P \dots P$ 는 생산자본의 주기적 갱신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유통과정이 지나갈 때까지 그것의 기능인 생산과정의 중단을 표시할 것이다. 그리하여 생산은 연속적으로가 아니라 단속적으로 될 것이며, 또 유

통과정의 두 단계가 얼마나 빠르게 또는 얼마나 더디게 경과하는가에 따라 일정치 않은 길이의 시간상 간격을 두고서야만 갱신될 것이다. 예컨대 다만 주문자들을 위하여서만 일하며 새로운 주문이 없는 동안은 생산과정을 중지하는 중국 수공업자의 경우에 그렇다.

실제로 상술한 것은 운동하고 있는 자본의 모든 개별적 부분들에 대하여 타당한 것으로 자본의 모든 부분은 이 운동을 순차로 통과한다. 예컨대 10,000파운드의 방사는 방적업자의 일주간 생산물이다. 이 10,000파운드 방사는 전부 생산과정으로부터 나와 유통과정으로 들어간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본가치는 전부 화폐자본으로 전화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리고 그것이 화폐자본의 형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그것은 다시 생산과정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미리 유통에 들어가서 생산자본의 요소들인 $A+P_m$ 으로 재전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의 순환과정은 부단한 중단, 한 단계로부터의 이탈, 그 다음 단계로의 전입, 한 형태의 탈각, 다른 형태에서의 존재이다. 이 단계들은 각각 다른 단계의 조건으로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을 배제한다.

그러나 부단성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특징적 표식이다. 그것은 비록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달성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술적 기초에 의하여 조건지어진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자. 예컨대 10,000파운드의 방사가 상품자본으로서 시장에 등장하여 화폐(이 화폐가 지불수단이든, 구매수단이든 또는 심지어 계산화폐에 불과하든간에)로의 전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생산과정에서는 방사 대신에 새로운 면화, 석탄 등등이 나타나며, 따라서 이미 화폐형태 및 상품형태로부터의 생산자본형태로의 재전화가 수행되었고 생산자본으로서의 기능이 개시된다. 제1의 10,000파운드의 방사가 화폐로 전화되는 동일한 시간에 그보다 앞서 생산된 10,000파운드의 방사는 이미 유통의 둘째 단계를 통과하고 그리하여 화폐로부터 생산자본의 요소들로 재전화된다. 자본의 모든 부분들은 순환과정을 순차로 통과하며 순환과정의 각이한 단계들에 동시에 존재한다. 이와같이 하여 산업자본은 자체의 순환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순환의 모든 단계에, 그리고 그 단계들에 상응하는 각이한 기능형태들로 동시에 존재한다. 처음으로 상품자본으로부터 화폐로 전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순환 $W' \cdots W'$ 가 시작되지만 운동하고 있는 전체로서의 산업자본에 있어서는 순환 $W' \cdots W'$ 는 이미 통과되어 있다.

한쪽 손으로는 화폐가 전대되며, 다른 쪽 손으로는 화폐가 취득된다. 한 점에서의 순환 $G \cdots G'$ 의 개시는 동시에 다른 한 점에서의 화폐의 복귀이다. 생산자본에 있어서도 사태는 동일하다.

그러므로 연속성에 있어서의 산업자본의 현실적 순환은 유통과정과 생산과정의 통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모든 세 순환들의 통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러한 통일로 될 수 있는 것은 다만 자본의 각이한 매개 부분이 서로 뒤따르는 순환단계들을 순차로 통과하여 한 단계로부터 다른 단계로, 한 기능형태로부터 다른 기능형태로 이행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만이며,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의 전체로서의 산업자본이 동시에 각이한 단계들과 기능들에 있으며 그리하여 동시에 모든 세 순환을 그리는 한에 있어서만이다. 매개 부분이 서로 뒤를 잇는 것은 여기에서는 부분들이 서로 나란히 있다는 것 즉 자본이 분할되어 있다는 것에 의하여 조건지어져 있다. 그리하여 예컨대 편제되어 있는 공장체계에서는 생산물이 부단히 그것의 형성과정의 각이한 단계들에 있으며 또 부단히 한 생산단계로부터 다른 생산단계로 이행한다. 개별적 산업자본은 자본가의 자력(資力)에 의존하는 일정한 크기를 표시하며 또 매개 산업부문마다 일정한 최소한도가 있으므로 그것의 분할에 있어서는 일정한 숫적 비례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현존하는 자본의 크기는 생산과정의 규모를 제약하며, 이 생산과정의 규모는 상품자본 및 화폐자본—이것들이 생산과정과 나란히 기능하는 한—의 규모를 규정한다. 그러나 자본의 각이한 부분들이 서로 나란히 있다는 것—이것은 생산의 연속성을 조건짓는다—은 자본의 부분들이 서로 뒤를 이어 순환의 각이한 단계들을 그리는 그것들의 운동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서로 나란히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서로 뒤를 잇는다는 것의 결과에 불과하다. 예컨대 어떤 부분에 대하여 $W' - G'$ 가 정체되고 상품이 판매될 수 없다면 이 부분의 순환은 중단되고 이 부분의 생산수단들에 의한 보상은 진행되지 않는다. 또 W' 로서 생산과정으로부터 나오는 후속 부분들의 기능의 변환은 그것들보다 선행하는 부분들에 의하여 저지당한다. 만약 이러한 상태가 얼마간 지속된다면 생산은 제한되며 전체 과정이 정지된다. 서로 뒤를 잇는 것이 정체될 때마다 서로 나란히 있는 것이 무질서하게 되며, 한 단계에서 정체될 때마다 정체된 자본부분의 총순환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개별적 총자본의 순환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정체가 일어난다.

과정이 취하는 바로 그 다음 형태는 단계들의 연속의 형태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단계로의 자본의 이행은 다른 단계로부터의 자본의 퇴거에 의하여 조건지어진다. 그러므로 매개 특수한 순환은 자본의 기능형태들의 하나를 출발점 및 복귀점으로 한다. 타방으로 총과정은 사실상, 각이한 형태들—이것들로 과정의 연속성이 표현된다—인 세 순환의 통일이다. 총순환은 자본의 매개 기능형태에 대하여서는 그 기능형태의 특수한 순환으로서 표시되며, 그리고 이 순환들의 하나 하나는 총과정의 연속성을 조건짓는다. 한 기능형태의 원형운동은 다른 기능형태들의 원형운동을 조건짓는다. 총생산과정이 동시에 재생산과정이며 따라서 또 그것의 매개 계기의 순환이라는 것은 총생산과정에 있어서, 특히 사회적 자본에 있어서 하나의 필연적 조건이다. 자본의 각이한 부분들은 각이한 단계들과 기능형태들을 순차로 통과한다. 이로 말미암아 매개 기능형태는 비록 그것으로 부단히 자본의 다른 어떤 부분이 표시된다 하더라도 다른 기능형태들과 동시에 그 자체의 순환을 통과한다. 자본의 한 부분—이것은 부단히 변동하고 부단히 재생산되는 것이지만—은 화폐로 전화되는 상품자본으로서 존재하며 다른 한 부분은 생산자본으로 전화되는 화폐자본으로서 존재하며 제3의 부분은 상품자본으로 전화되는 생산자본으로서 존재한다. 모든 세 형태들의 부단한 현존은 바로 이 세 단계를 통하는 총자본의 순환에 의하여 매개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로서의 자본은 그것의 각이한 단계들에 동시에 공간적으로 서로 나란히 있다. 그러나 매개 부분은 한 단계, 한 기능형태로부터 다른 단계, 다른 기능형태로 부단히 순차로 이행하며 그리하여 순차로 모든 단계, 모든 형태에서 기능한다. 이와같이 이 형태들은 흐르고 있는 형태들이며, 이것들의 동시성은 이것들이 서로 뒤를 잇는다는 것에 의하여 매개된다. 매개 형태는 다른 형태에 뒤따르며 또 다른 형태에 선행한다. 그리하여 자본의 한 부분의 한 형태로의 복귀는 다른 부분의 다른 형태로의 복귀에 의하여 조건지어진다. 매개 부분은 부단히 그 자체의 회전을 그러나, 그러나 이 형태로 있는 것은 언제나 자본의 다른 부분이며, 이 특수한 회전들은 총진행의 동시적이며 순차적인 계기들을 이루는데 지나지 않는다.

세 순환의 통일에 있어서만, 총과정의 상술한 바와 같은 중단이 아니라 연속성이 실현되고 있다. 사회적 총자본은 언제나 이러한 연속성을

가지며 이 총자본의 과정은 언제나 세 순환들의 통일을 갖는다.

개별적 자본들에 있어서는 재생산의 연속성이 때때로 다소간에 중단된다. 첫째로, 가치량들이 빈번히 각이한 시기들에 불균등한 분량들로 각이한 단계들과 기능형태들에 분배되어 있다. 둘째로, 이 분량들은 생산되어야 할 상품의 성격 여하에 따라, 따라서 자본이 투하되어 있는 생산분야의 특수성 여하에 따라 각이하게 분배될 수 있다. 셋째로, 연속성은 계절에 의존하는 생산부문들에서, 자연조건들의 결과이든(농업, 청어잡이 등등) 또는 예컨대 소위 계절노동에 있어서와 같이 관습적인 사정들의 결과이든간에 다소간에 중단될 수 있다. 가장 규칙적으로 또 가장 균일적으로 과정이 진행되는 것은 공장과 광업에서이다. 그러나 생산부문들의 이러한 차이로 말미암아서는 순환과정의 일반적 형태들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도 발생하지 않는다.

자기증식하는 가치로서의 자본은 다만 계급적 제관계를, 고용노동으로서의 노동의 존재에 기초하는 일정한 사회적 성격을 포괄할 뿐이 아니다. 자본은 하나의 운동이며, 상이한 단계들을 통과하는, 그리고 그 자체가 순환과정의 세 개의 각이한 형태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순환과정이다. 그러므로 자본은 다만 운동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으며 정지상태에 있는 물건으로서만 이해될 수 없다. 가치의 자립화를 단순한 추상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은 산업자본의 운동이 활동 중에 있는(in actu), 이 추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가치는 여기에서는 각이한 형태들, 각이한 운동들을 통과하는바, 이 운동들에서 가치는 보존되는 동시에 증식되고 증대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선 단순한 운동형태만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자본가치가 그것의 순환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변혁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치상의 모든 변혁들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생산은 자본가치가 증식되는 한에 있어서만, 즉 그것이 자립화된 가치로서 그것의 순환과정을 그리는 한에 있어서만, 따라서 가치상의 변혁들이 이렇게나 저렇게나 극복되고 상쇄되는 한에 있어서만 존재하며 또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자본의 운동들은 개별적 산업자본가의 행동들로서—그가 상품 및 노동의 구매자로서, 상품의 판매자로서 및 생산적 자본가로서 기능하며 따라서 자신의 활동으로써 순환을 매개하는 방식으로—나타난다. 사회적 자본가치가 가치상 변혁을 겪으면 소여 자본가의 개별적 자본은 그것이 이러한 가치운동의 조건들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변혁에 봉착하여 몰락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가치상의 변혁이 급격하며 빈번하면 할수록, 자립화된 가치의, 자동적인, 자연발생적 자연과정의 폭력으로써 작용하는 운동은 더욱더 개개 자본가의 예견과 계산을 물리치고 효과를 나타내며, 정상적 생산의 진행은 더욱더 비정상적인 투기에 종속되며, 개개 자본들의 존재는 더욱더 큰 위험성에 봉착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기적인 가치상의 변혁들은 아마도 그것들이 부정해야 할 듯한 것, 즉 자본으로서의 가치가 체험하며, 자체의 운동에 의하여 유지·강화되는 자립화를 확증한다.

과정중에 있는 자본의 형태변화들의 이 계열(系列)은 순환중에서 일어나는 자본가치량의 변동과 최초의 가치와의 부단한 대비를 내포하고 있다. 가치를 형성하는 힘인 노동력에 대립하는, 가치의 자립화는 $G-A$ (노동력의 구매)라는 행위에서 도입되고 노동력의 착취로서의 생산과정에서 실현된다면, 가치의 자립화는 이 순환—여기에서는 화폐, 상품, 생산요소들은 과정중에 있는 자본가치의 교체되는 형태들에 불과하며, 또 자본의 과거의 가치량은 자본의 현재의 변경된 가치량과 비교된다—에서는 재차 나타나지는 않는다.

데일리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특징짓는 가치의 자립화—그는 이것을 어떤 경제학자들의 환상이라고 취급하고 있다—에 반대하여 말한다. “가치란 동시에 존재하는(contemporary) 상품들간의 관계이다. 왜냐하면 다만 그러한 상품들만이 서로 교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각이한 시기들에 있어서의 상품가치들의 비교를 즉 매개 시기에 있어서 화폐가치가 일단 고정되어 있다면 동일한 종류의 상품생산을 위하여 각이한 시기들에 있어서 요구되는 노동지출을 비교하는 것을 의미할 따름인 비교를 반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견해는 교환가치는 가치와 같으며 가치형태는 가치 그 자체이며 따라서 또 만약 상품가치들이 교환가치로서 적극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즉 그것들이 실제로 서로 교환될 수 없다면 상품가치들은 더는 비교될 수 없다는 그의 일반적인 오해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그는 가치가 그것의 순환의 각이한 단계들—이 단계들은 결코 동시적인(contemporary) 것이 아니며 서로 뒤를 잇는 것이다—에서 그 자체와 동일하며 또 자기 자체와 비교되는 한에 있어서만 자본가치로서 또는 자본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순환의 공식을 순수히 고찰하기 위해서는 상품들이 그것들의 가치대로

판매된다고 상정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기타의 사정들도 불변인 조건하에서 그와 같은 판매가 실시된다고 상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P \cdots P$ 라는 형태를 취할 때 일정한 자본가의 생산자본을 감가시킬 수 있는 생산과정내에서의 모든 기술상 변혁을 도외시하자. 또한 생산자본의 가치요소들의 변동이 현존하는 상품자본의 가치—이것은 상품자본의 저장에 현존하면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다—에 미치는 모든 반작용을 도외시하자. W' 즉 10,000파운드의 방사가 5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가치대로 판매되고, 8,440파운드=422파운드 스텔링이 W' 에 포함되어 있는 자본가치를 보상한다고 하자. 그러나 만약 면화, 석탄 등등의 가치가 증가되면(우리는 여기에서 단순한 가격 동요를 도외시하므로) 아마도 이 422파운드 스텔링을 가지고는 생산자본의 요소들을 완전히 보상하는 데는 불충분할 것이다. 그리하여 추가적인 화폐자본이 필요하게 되며, 화폐자본은 구속된다. 만약 이 가격들이 하락된다면 그와는 거꾸로이며, 화폐자본은 해방된다. 가치의 제 관계가 그대로 불변인 경우에만 과정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사실상 과정은 순환의 반복중에 교란들이 상쇄되는 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교란들이 크면 클수록 상쇄되는 것을 기다릴 수 있기 위하여 산업자본가는 더욱더 큰 화폐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의 진행에 있어서는 매 개별적 생산과정의 규모는 확대되고 그에 따라 전대되어야 할 자본의 최저량도 증대되므로 이상과 같은 사정은 기타의 일련의 사정에 첨가되어 산업자본가의 기능을 개별적인 또는 결합된 대화폐자본가들의 독점으로 전화시킨다.

여기에서 기왕이니 지적하지만, 만약 생산요소들의 가치 변동이 일어나면 일방으로는 $G \cdots G'$ 타방으로 $P \cdots P$ 및 $W' \cdots W'$ 간의 차이가 분명하여진다.

우선 화폐자본으로서 등장하는 새로 투하되는 자본의 공식으로서의 $G \cdots G'$ 에서는 생산수단들, 예컨대 원재료 및 보조재료 등등의 가치가 하락되면 일정한 규모의 기업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화폐자본의 지출은 그 가치저락 전보다 더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과정의 규모(생산력의 발전이 그대로 불변이라면)는 소여 수의 노동력이 감당할 수 있는 생산수단의 양과 규모에 의존하는 것이고, 이 생산수단의 가치에도 노동력의 가치에도(이 후자는 가치증식의 크기에만 영향을 끼친다)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꾸로 만약 생산자본의 요소들을 형성하는 상품들의 생산요소들의 가치가 제고된다면 소여의 규모의 기업을 창설하기 위하여 더 많은 화폐자본이 필요하다. 두 경우에 다 새로 투하되어야 할 화폐자본의 양이 영향을 받을 뿐이다. 소여의 생산부문에서 새로운 개별적 산업자본의 장성이 보통 방식으로 진행되는 한, 첫째 경우에는 화폐자본이 과잉으로 되며 둘째 경우에는 화폐자본이 구속된다.

$P \cdots P$ 및 $W' \cdots W'$ 라는 순환은 P 및 W' 의 운동이 동시에 축적이며 따라서 추가적 화폐 G 가 화폐자본으로 전화되는 한에 있어서만 그 자체가 $G \cdots G'$ 로서 표시된다. 그러나 이 경우를 도외시한다면 그것들은 생산자본의 요소들의 가치변동에 의하여 $G \cdots G'$ 와는 다른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그러한 가치변동이 생산과정에 있는, 자본의 구성부분들에 대한 반작용을 도외시한다. 이 경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최초의 출자가 아니라, 재생산과정—첫째번 순환이 아니라—에 있는 산업자본이며, 따라서 $W' \cdots W' < \overset{A}{P}_m$ 즉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에서의 생산요소들의 상품자본의 재전화이다. 가치저락(따라서 가격저락)에 있어서는 세 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재생산과정이 동일한 규모에서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종래의 화폐자본의 일부가 해방되며 화폐자본의 적립이 진행된다. 그러나 현실적 축적(확대된 규모에서의 생산), 또는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에 수반되는 g (잉여가치)의 축적фон드로의 전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또는 기술적 균형들이 허용한다면 재생산과정은 종전의 조건하에서 진행되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확대된다. 또는 원재료 등등의 더 많은 저장품이 형성된다.

상품자본을 보상하는 요소들의 가치가 제고되는 경우에는 그와는 거꾸로이다. 이 경우에는 재생산은 이미 정상적인 규모에서는 진행되지 않는다(예컨대 조업시간이 단축된다). 또는 이전 규모대로 재생산을 계속하기 위하여서는 추가적인 화폐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되거나(화폐자본의 구속) 또는 화폐적 축적фон드가 현존한다면 그것이 생산과정의 확대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재생산과정을 종전의 규모대로 진행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복무한다. 이것도 역시 화폐자본의 구속인바, 다만 이 경우에는 추가적 화폐자본이 외부로부터, 화폐시장으로부터가 아니라 산업자본가 자신의 자금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P \cdots P$, $W' \cdots W'$ 에서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정들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만약 우리의 면방직업자가 다량의 면화 저장품을 가지고 있다면(즉 그의 생산자본의 현저한 부분이 면화 저장품의 형태로 존재한다면) 그의 생산자본의 일부분은 면화가격의 하락의 결과 감가되며, 이와는 반대로 만약 면화가격이 등귀하면 그의 생산자본의 이 부분의 가치는 증가된다. 타방으로 그가 다량의 가치를 상품자본의 형태로, 예컨대 면사로 고정시켰다면 면화가격의 하락의 경우에는 상품자본의 일부, 따라서 일반적으로 순환 중에 있는 그의 자본의 일부는 감가되며 면화가격의 등귀의 경우에는 그 거꾸로이다. 마지막으로 $W' - G - W < \frac{A}{P_m}$ 이라는

과정에서는, 만약 $W' - G$ 즉 상품자본의 실현이 W 의 요소들의 가치변동 이전에 있었다면, 자본은 다만 첫째 경우에 고찰한 방식대로 즉 유통의 둘째 행위 $G - W < \frac{A}{P_m}$ 에서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만약 $W' - G$ 의 수행 이전이라면 면화가격의 하락은 기타의 사정들이 그대로 불변인 조건 하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방사가격의 하락을 일으키며 또 이와는 거꾸로 면화가격의 등귀는 방사가격의 등귀를 일으킨다. 동일한 생산부문에 투하된 각이한 개별적 자본들에 대한 영향은 이 자본들이 처할 수 있는 각이한 사정들에 따라 극히 각이한 것일 수 있다. 화폐자본의 해방과 구속은 유통과정의 길이의 차이에 의하여, 따라서 유통속도의 차이에 의하여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회전의 고찰에 속한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사로 되는 것은 생산자본의 요소들의 가치변동에 관련하여 나타나는, $G \cdots G'$ 와 순환과정의 다른 두 형태간의 현실적 차이만이다.

이미 발전된, 따라서 지배적인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시기에는 $G - W < \frac{A}{P_m}$ 이라는 유통부분에서는 P_m 즉 생산수단을 구성하는 상품들의 대부분은 그 자체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타인의 상품자본일 것이다. 따라서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W' - G'$ 즉 상품자본의 화폐자본으로의 전화가 진행된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 의미는 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와는 거꾸로이다. 산업자본이 화폐로서 또는 상품으로서 기능하는 유통과정 내부에서는 화폐자본으로서이든 또는 상품자본으로서이든간에 산업자본의 순환은 극히 각이한 사회적 생산방식들에서 생산된—이 생산방식들이 동시에 상품생산인 한에 있어서—상품들의 유통과 교차된다. 상품들이

노예제도에 기초한 생산의 산물이든, 또는 농민(중국인, 인도의 라이오트) 또는 공동체(네덜란드령 동인도), 또는 국영생산(러시아 역사에서 이전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농노제에 기초한 그러한 것과 같은)의 산물이든 또는 반(半)미개의 수렵민들 등등의 산물이든간에, 그것들은 상품 및 화폐로서 산업자본이 나타나는 형태로 되는 화폐 및 상품들에 대립하며, 이 산업자본의 순환에도 들어가고 상품자본이 깊어지고 있는 잉여가치—이것이 소득으로서 지출되는 한—의 순환에도 들어간다. 따라서 그것들은 상품자본의 유통의 두 갈래에 다 들어간다. 그것들이 나오는 생산과정의 성격은 아무래도 좋다. 상품으로서 그것들은 시장에 기능하며 상품으로서 그것들은 산업자본의 순환 및 그것이 깊어지고 있는 잉여가치의 유통에 들어간다. 따라서 산업자본의 유통과정을 특징짓는 것은 상품들의 유래의 전면적 성격, 세계시장으로서의 시장의 존재이다. 외래의 상품들에 대하여 말한 것은 동일한 정도로 외래의 화폐에 대하여서도 타당하다. 상품자본이 외래의 화폐에 대하여 상품으로서만 기능하듯이 이 외래의 화폐는 상품자본에 대하여 화폐로서만 기능한다. 이 경우에 화폐는 세계화폐로서도 기능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두 가지 사정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상품들(P_m)은 $G-P_m$ 이라는 행위가 수행되자마자 상품이 아니게 되며 생산자본 P 로서의 기능형태를 취하는 산업자본의 존재방식 중의 하나로 된다. 그러나 이에 따라 그것들의 유래는 소멸되어 있다. 상품들은 산업자본의 존재형태로서만 계속 존재하며 산업자본에 합체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그것들의 보상을 위하여서는 그것들의 재생산이 필요하며 그 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자체와는 다른 발전단계에 있는 생산방식들에 의하여 조건지어진다는 점은 그대로 남는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경향은 될 수만 있으면 모든 생산을 상품생산으로 전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주요수단은 바로 그 모든 생산을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유통과정에 인입하는 그것이다. 그리고 발전된 상품생산은 그 자체가 이미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이다. 산업자본의 침투는 어디서나 이 전화를 촉진하는데, 그와 함께 모든 직접적 생산자들의 고용노동자로의 전화를 촉진한다.

둘째로, 산업자본의 유통과정에 들어가는 상품들(이것에는 가변자본이 노동자들에게 지불된 후 그것이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하여 전환되는 생활

필수품들도 들어간다)은 그것들의 유래, 그것들이 나오는 생산과정의 사회적 형태 여하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품자본의 형태, 상품거래자본 또는 상인자본의 형태로서 산업 자체에 대립한다. 상인자본은 그 본성으로 보아 온갖 생산방식하에서 생산된 상품들을 포괄한다.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은 대규모적인 생산을 전제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대규모적인 판매도 전제로 하며 따라서 상품들을 개별적인 소비자들에게가 아니라 상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소비자 자신이 생산적 소비자 즉 산업자본가인 한에 있어서는 따라서 한 생산부분의 산업자본이 다른 생산부분을 위하여 생산수단들을 제공하는 한에 있어서는 다른 한 산업자본가의, 다수의 다른 산업자본가들에 대한 직접적 판매도(주문의 형태 등등으로) 진행된다. 매개 산업자본가는 그 한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판매자이며 자신이 자기의 상인인바, 상인에게 대한 판매에 있어서도 그렇기는 하다.

상인자본의 기능으로서의 상품거래는 자본주의적 생산하에서 전제되어 있으며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 더욱 발전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주의적 유통과정의 개별적 측면들을 예증하기 위하여 때때로 상품거래를 상정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유통과정의 일반적 분석에 있어서는 우리는 상인의 개재없는 직접적 판매를 가정한다. 왜냐하면 상인의 개재는 운동의 여러 계기들을 은폐하기 때문이다.

사태를 약간 소박하게 묘사하는 시스몽디의 말을 들어보자.

“상업은 상당한 양의 자본을 충용하는바, 이 자본은 언뜻 보아서는 우리가 위에서 그 운동을 상세히 고찰한 자본의 구성 부분이 아닌 것같이 보인다. 나사 상인의 상점에 쌓여 있는 나사의 가치는 우선은 연 생산물 중에서 부자가 빈자를 일시키기 위하여 그에게 임금으로서 주는 부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런데 이 자본은 우리가 지금까지 논급한 자본을 대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부의 발전을 되도록 잘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를 그것의 창조의 순간으로부터 소비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추적하였다. 그 경우에 예컨대 나사 생산에 충용된 자본은 언제나 동일한 것처럼 보였다. 소비자의 소득과 교환됨으로써 그것은 두 부분으로 분할되었을 뿐이다. 일부분은 이윤형태로서 제조업자의 소득을 이루며, 다른 부분은 임금으로서 새로운 나사를 제조중에 있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어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자본의 각이한 부분들이 서로 대체되었다면, 그리하여 제조업자와 소비자간의 전체 유통을 실행하기 위하여 1만에이커로 충분하였다면, 이 1만에이커가 제조업자, 도매상인 및 소매상인간에 균등하게 분배되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이익이었을 것이다. 제조업자는 전에는 이 1만에이커 전액으로써 수행하였을 같은 일을 이제는 3분의 1로써 수행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제조가 끝난 순간에 구매자로서 전에는 소비자를 발견하였을 때보다도 훨씬 빨리 상인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도매상인의 자본도 훨씬 빨리 소매상인의 자본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전대된 임금액과 최종소비자가 지불하는 구매가격간의 차액이 이 자본들의 이윤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기능들이 분화된 이래 이 이윤은 제조업자, 도매상인 및 소매상인간에 분배되었다. 그리고 수행된 일은 한 사람과 한 자본 대신에 세 사람과 세 자본이 필요하였지만 동일하였다* (『신원리』 제1권, 139, 140페이지). 모든 사람들(상인들)은 모두 생산에 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 왜냐하면 생산은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생산물이 소비자의 수중에 들어오기 전에는 생산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동상서, 157페이지).

우리는 순환의 일반적 형태를 고찰함에 있어서 또 일반적으로 이 제2부 전체에서 화폐라고 말할 때 금속화폐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어떤 국가들의 특수한 것에 지나지 않는 단순한 가치기호인 상징적 화폐와 우리가 아직 전개하지 않은 신용화폐는 고려 밖에 두고 있다. 첫째로, 그렇게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역사적 행정에 합치한다. 신용화폐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초기에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거나 또는 미미한 역할을 할 뿐이다. 둘째로, 그렇게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필연성은 종래 신용화폐의 유통에 관하여 투크 및 기타에 의하여 전개된 일체의 비판적 연구는 그들로 하여금 순전한 금속유통의 기초 위에서는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고찰에로 언제나 되돌아 가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이론적으로도 증명되어 있다. 그러나 금속화폐는 구매수단으로도 지불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간단히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제2부에서는 금속화폐를 다만 첫째 기능형태로서만 취급한다.

산업자본의 개별적 순환과정의 일부를 이를 따름인 산업자본의 유통과정은 그것이 일반적 상품유통의 내부에서의 일련의 행정을 표시하는 데

지나지 않는 한, 이전(제1부, 제3장)에 전개된 일반적 법칙들에 의하여 규정된다. 화폐의 회전속도가 크면 클수록, 따라서 매개 자본이 그것의 상품형태변화 또는 화폐형태변화의 계열을 급속히 통과하면 할수록 예컨대 500파운드 스털링이라는 동일한 화폐가 연거푸 유통케 하는 산업자본은 더욱 많다. 따라서 화폐가 지불수단으로서 더 기능하면 할수록, 즉 예컨대 상품자본을 생산수단들에 의하여 보상함에 있어서 차액만을 더 지불되게 된다면 될수록, 또 예컨대 노임지불에 있어서 지불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동일한 양의 자본가치를 유통케 하기 위하여 필요한 화폐는 더욱더 적어진다. 타방으로 만약 유통속도와 기타 모든 사정들이 그대로 다름이 없다고 전제하면 화폐자본으로서 유통하지 않으면 안되는 화폐의 양은 상품가격의 총액(가격에 상품량을 곱한 것)에 의하여, 또는 만약 상품들의 양과 가치가 주어져 있다면 화폐 자체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나 일반적 상품유통의 법칙들은 다만 자본의 유통과정이 일련의 단순유통행정들을 형성하는 한에 있어서만 타당하며, 이 행정들이 개별적 산업자본들의 순환의, 기능적으로 규정된 단계들인 한에 있어서는 타당하지 않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서는 유통과정을 다음의 두 형태에서와 같은 중단이 없는 연계에서 고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text{II) } P \cdots W' \left[\begin{array}{c} W - \\ -G' \\ w - \\ W - \end{array} \right] \left[\begin{array}{c} G - W < \frac{A}{P_m} \cdots P(P') \\ g - w \end{array} \right]$$

$$\text{III) } W' \left[\begin{array}{c} W - \\ -G' \\ w - \end{array} \right] \left[\begin{array}{c} G - W < \frac{A}{P_m} \cdots P \cdots W' \\ g - w \end{array} \right]$$

유통과정(W—G—W로서이든, 또는 G—W—G로서이든 간에)은 일반적으로 유통행정의 계열로서는 상품의 형태변화들의 대립되는 두 개 계열을 표시할 따름인바, 상품의 이 형태변화들 중 각개는 다시 타인의 상품 또는 그 상품에 대립하는 타인의 화폐측에서의 대립되는 형태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상품소유자측의 W—G는 구매자측의 G—W이며, W—G에서의 상품의

첫째번 형태변화는 G로서 등장하는 상품의 둘째번 형태변화이다. G-W에서는 그와 거꾸로이다. 따라서 한 단계에서의 상품의 형태변화와 다른 단계에서의 다른 상품의 형태변화의 엉킴에 의하여 명백히 된 것은, 자본가가 상품의 구매자 및 판매자로서 기능하며 그에 따라 그의 자본이 화폐로서는 타인의 상품에 대립하든가 또는 상품으로서는 타인의 화폐에 대립하여 기능하는 한 자본유통에 대하여도 타당하다. 그러나 상품의 형태변화들의 이러한 엉킴이 동시에 자본의 형태변화들의 엉킴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G-W(P_m)$ 는 각이한 개별적 자본들의 형태변화의 엉킴을 표시할 수 있다. 예컨대 면방적업자의 상품자본인 방사는 부분적으로 석탄에 의하여 보상된다. 그의 자본의 일부는 화폐형태로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상품형태로 전환되는데 자본주의적 석탄생산자의 자본은 상품형태로 있으며 따라서 화폐형태로 전환된다. 이 경우에 동일한 유통행위가 두 개의(각이한 생산부문에 속하는) 산업자본들의 대립되는 형태변화들을 표시하며, 따라서 이 자본들의 형태변화의 계열들의 엉킴을 표시한다. 그러나 우리가 본 바와 같이 G가 전환되는 P_m 은 범주적 의미에서의 상품자본, 즉 산업자본의 기능형태임을 요하지 않으며, 자본가에 의하여 생산됨을 요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일방에서는 $G-W$, 타방에서는 $W-G$ 이나, 그러나 언제나 자본들의 형태변화의 엉킴은 아니다. 또 노동력의 구매인 $G-A$ 는 결코 자본의 형태변화들의 엉킴은 아니니, 왜냐하면 노동력도 물론 노동의 상품이기는 하나 그것이 자본가에게 판매될 때에 비로소 자본으로 되기 때문이다. 타방으로 $W'-G'$ 라는 과정에서는 G' 는 전화된 상품자본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것은 노동력인 상품의 화폐(노임)일 수 있으며 또는 자립적인 노동자, 노예, 농노, 공동체에 의하여 생산된 생산물의 화폐화일 수 있다.

그러나 둘째로, 어떤 개별적 자본의 유통과정 내부에서 일어나는 매개 형태변화가 노는, 기능적으로 규정된 역할에 대하여는 이 형태변화가 다른 자본의 순환에서의 대응하는 대립되는 형태변화를 표시한다고는—물론 세계시장의 총생산이 자본주의적으로 운영된다고 전제하더라도—말할 수 없다. 예컨대 순환 $P \cdots P$ 에서는 W' 를 화폐화하는 G' 는 구매자측에서는 다만 그의 잉여가치의 화폐화일 수 있다(상품이 소비품인 경우에). 또는

$G' - W' < \frac{A}{P_m}$ (따라서 자본이 이미 축적되어 들어가는 경우)에서는 G' 는 P_m 의 판매자에 있어서 다만 그의 전대자본의 보상으로 그의 자본유통에 들어 갈 수 있으며, 또는 G' 가 소득의 지출로 갈라지는 경우에는 다시는 그의 자본유통에 전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개별적 자본들을 다만 자립적으로 기능하는 구성부분들로 하는 사회적 총자본의 각이한 구성부분들이 유통과정에서 어떻게 서로 보상되는가 하는 문제는—자본에 관해서이든 잉여가치에 관해서이든 간에—자본유통의 행정들과 기타 모든 상품유통의 행정들에 공통적인 단순한, 상품유통의 형태변화들의 영킴을 연구하는 것으로써는 해결되지 않고 다른 연구방식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사람들은 종래, 더 자세히 분석하여 본다면 모든 상품유통에 고유한 형태변화들의 영킴에서 빌려온 것에 불과한 불명확한 표상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는 문구들로써 만족하여 왔다.

산업자본 따라서 또 자본주의적 생산의 순환과정의 가장 명료한 특성의 하나는 일방으로는 생산자본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상품시장에서 나오고 또 상품시장에 의하여 무단히 갱신, 즉 상품으로서 구매되지 않으면 안되며, 타방으로는 노동과정의 생산물이 상품으로서 이 과정으로부터 나가며 무단히 새로 상품으로서 판매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정이다. 예컨대 스코틀랜드 저지의 근대적 차지농업가와 대륙의 구식 소농민을 비교하여 보자. 전자는 그의 모든 생산물을 판매하며 그에 따라 그 생산물의 모든 요소들 심지어는 종자들까지도 시장에서 보상하여야 하는데, 후자는 자신의 생산물의 최대부분을 직접 소비하며, 매대는 되도록 적게 하고, 또 가능하기만 하면 도구, 의류 등등을 자신이 만든다.

이러한 데로부터 사람들은 자연경제, 화폐경제 및 신용경제를 사회적 생산의 세 개의 특징적인 경제적 운동형태들로서 서로 대치시켰던 것이다.

첫째로, 이 세 형태들은 대등한 발전단계들을 표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소위 신용경제 그 자체는 화폐경제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으니, 두 명칭이 다 생산자 자신들간의 교역(交易)기능 또는 교역방식을 표현하는 한 그렇다. 발전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화폐경제는 신용경제의 기

초로서 나타날 따름이다. 그리하여 화폐경제와 신용경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각이한 발전단계들에 대응할 뿐이고 자연경제에 대립되는 각이한 자립적인 교역형태들은 결코 아니다. 바로 그와 동일한 권리로써 자연경제의 극히 각이한 형태들은 대등한 것으로서 상기 양형태에 대치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로, 사람들이 화폐경제 및 신용경제라는 범주들에서 강조하고 또 특징적인 표식으로서 드는 것이 경제 즉 생산과정 자체가 아니라 경제에 대응하는, 각이한 생산행위자들 또는 생산자들간의 교역방식이므로 첫째 범주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경제가 아니라 교환경제일 것이다. 완전히 봉쇄된 자연경제, 예컨대 페루의 잉카 국가는 이 범주들이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세째로, 화폐경제는 모든 상품생산에 공통하며 그리고 생산물은 극히 각이한 사회적 생산유기체들에서 상품으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을 특징짓는 것은 생산물이 거래의 대상으로서, 상품으로서 생산되는 규모, 따라서 또 이 생산물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생산물의 출처인 그 경제에 거래의 대상으로서, 상품으로서 다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규모만일 것이다.

사실상 자본주의적 생산은 생산의 전반적 형태로 된 상품생산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러한 것은, 또 그것이 발전에 따라서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은 여기에서 노동 자체가 상품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며, 노동자가 노동 즉 자기 노동력의 기능을 판매하며 그것도 우리가 가정하고 있듯이 그것의 재생산비에 의하여 규정되는 그 가치대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노동이 고용노동으로 되는 정도에 따라 생산자는 산업자본가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생산(따라서 또 상품생산)은 직접적인 농촌생산자도 고용노동자로 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전체 규모로 나타난다. 자본가와 고용노동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화폐적 관계,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는 생산 자체에 내재적인 관계로 된다. 그러나 이 관계가 입각하고 있는 기초는 교역방식이 아니라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다. 오히려 교역방식이 생산의 사회적 성격으로부터 나온다. 여하튼 생산방식의 성격에서 그것에 대응하는 교역방식의 기초를 두지 않고 거꾸로 보는 것은 하찮은 장사가 온 머리속을 차지하고 있는 부르쵸아적 시야에 알맞는다.⁷⁾

자본가가 화폐의 형태로 유통에 투입하는 가치는 그가 유통으로부터 끌어내는 것보다 적으니, 왜냐하면 그가 상품의 형태로 유통에 투입하는 가치가 상품의 형태로 그가 유통으로부터 끌어내는 가치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가 다만 자본의 인격화로서, 산업자본가로서 기능하는 한, 그에 의한 상품가치의 공급은 상품가치에 대한 그의 수요보다 더 크다. 이 관계에서 만약 그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한다면 그것은 그의 자본이 증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의 자본은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았을 것이며, 생산자본은 잉여가치를 잉태하지 않은 상품자본으로 전화하였을 것이며, 그것은 생산과정중에 노동력으로부터 잉여가치를 상품형태로 끌어내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도대체 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본가는 사실상 구매하였을 때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을 매개로 하여 그가 구매한, 보다 더 염가인—왜냐하면 보다 더 가치가 적기 때문에—상품을 보다 더 가치가 많은, 따라서 보다 더 고가인 상품으로 전화하기 때문이다. 그가 더 고가로 판매하는 것은 그가 상품을 그것의 가치 이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상품의 생산요소들의 가치총액 이상의 가치를 가진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자본가가 그의 자본을 증식시키는 일은 그의 공급과 그의 수요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즉 그가 공급하는 상품가치가 그가 수요하는 상품가치를 더 초과하면 할수록 더 크다. 그의 목적은 수요와 공급의 일치가 아니라 될 수 있는대로의 불일치이며, 그의 공급이 그의 수요를 초과하는 것이다.

개별적 자본가에 대하여 타당한 것은 자본가계급에 대하여서도 타당하다.

자본가가 다만 산업자본의 인격화인 한, 그 자신의 수요는 생산수단과 노동력에 대한 수요만이다. 그의 P_m 에 대한 수요는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그의 전대자본보다 더 적다. 그는 생산수단을 그의 자본의 가치보다 더 적은 가치만큼 구매하며, 그러므로 그가 시장

7) 이상은 제5고에서, 이하 장말까지는 1877년 또는 1878년의 한 분책중에서 저서들로부터의 발췌문 사이에 있는 하나의 주다.

에 공급하는 상품자본의 가치보다 훨씬 더 적은 가치만큼 구매한다.

노동력에 대한 그의 수요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그의 가변자본의, 총자본에 대한 비율 즉 $v:C$ 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비율로 보면 생산수단에 대한 그의 수요보다 점점 더 적어진다. 자본가는 A 의 구매자로 되기 보다 부단히 증대되는 정도에서 P_m 의 구매자로 된다.

노동자는 자기의 임금을 주로 생활수단들로, 그것도 최대부분을 생활필수품들로 전환시키는 만큼 노동력에 대한 자본의 수요는 간접으로는 동시에 노동계급의 소비로 들어가는 소비수단들에 대한 수요이다. 그러나 이 수요는 v 와 동등하며, 그보다 추호도 더 크지는 않다(만약 노동자가 자기 임금 중에서 저축을 한다면—우리는 여기에서 온갖 신용관계는 도외시하지 않을 수 없다—이것은 그가 자기 임금의 일부를 퇴장화폐로 전화시키며 그 한에 있어서(pro tanto) 수요자로서는, 구매자로서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가의 최대한의 수요는 $C=c+v$ 이나, 그의 공급은 $c+v+m$ 이다. 따라서 만약 그의 상품자본의 구성이 $80c+20v+20m$ 이라면, 그의 수요는 $80c+20v$ 이며, 따라서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그의 공급보다 $1/5$ ($1/6$ —편집자) 더 적다. 그가 생산한 m 량의 백분율(이윤율)이 크면 클수록 그의 수요는 그의 공급에 비하여 더 적어진다. 자본가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 따라서 간접으로는 생활필수품들에 대한 수요는 생산의 진전에 따라 생산수단에 대한 그의 수요와 대비하여 점점 적어지지만, 타방으로 P_m 에 대한 그의 수요는 매일 계산하여 보면 그의 자본보다 언제나 더 적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생산수단에 대한 그의 수요는 그에게 이 생산수단들을 제공하며, 동등한 자본으로써 그리고 기타의 사정들이 동등한 조건하에서 사업하는 자본가의 상품생산물보다는 언제나 그 가치가 더 적지 않을 수 없다. 그에게 생산수단을 제공하는 자본가가 다수이고 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태에 아무 변동도 없다. 그의 자본은 1,000파운드 스텔링이며 그것의 불변부분은 800파운드 스텔링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 자본가들 전체에 대한 그의 수요는 800파운드 스텔링이다. 이 자본가들은 그들의 1,000파운드 스텔링(이 중에서 얼마가 그들의 매 개인에게 속하고 또 매 개인에게 속하는 분량이 그의 총자본의 얼마만한 부분을 이루든 간에)에 의하여, 이윤율이 동등하다면 도합 1,2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를 가진 생산수단들을 제공한다. 따라서 그의

수요는 이 자본가들의 공급의 불과 $2/3$ 이며, 그 자신의 총수요는 가치의 크기로 보아 그 자신의 공급의 $4/5$ 에 불과하다.

이제 또 우리는 기왕이니 앞질러서 자본의 회전을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여 자본가의 총자본은 5,000파운드 스텔링이며 그중 4,000파운드 스텔링은 고정자본이고 1,000파운드 스텔링은 유동자본이라고 하자. 위에서 서의 가정에 의하면 이 1,000은 $800c+200v$ 다. 그의 총자본이 연 1회전하자면 그의 유동자본은 연 5회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경우에 그의 상품생산물은 6,000파운드 스텔링이며, 따라서 그의 전대자본보다 1,000파운드 스텔링만큼 더 큰바, 그 결과 이 자본과 잉여가치의 비율은 위에서와 동일하게

$5,000C : 1,000m = 100(c+v) : 20m$ 이다. 따라서 이 회전은 그 자본가의 총공급에 대한 그의 총수요의 비율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으며, 후자는 전자보다 의연히 $1/5(1/6 - \text{편집자})$ 만큼 더 적다.

그의 고정자본이 10년마다 갱신되게 되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연 $1/10 = 400$ 파운드 스텔링을 상각(償却)한다. 이 결과 그는 이제는 고정자본으로 3,600파운드 스텔링과 화폐로 4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만약 보수가 필요하고 이 보수가 평균정도를 넘지 않는다면 그 보수비는 자본가가 다만 추후에 실시하는 자본투자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사태를 다음과 같이 간주할 수 있다. 즉 자본가는 연 상품생산물에 들어가는 한에 있어서 그의 투자자본의 가치를 평정함에 있어서 보수비를 처음부터 산입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이 보수비는 $1/10$ 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만약 사실상 그의 보수의 필요가 평균 이하이면 그것은 그에게 이득이며 만약 이상이면 손실이다. 그러나 동일한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전체 자본가계급에게 대하여서는 그러한 이득과 손실은 상쇄된다). 여하튼 그의 총자본이 연 1회전함에 있어서 자본가의 연 수요는 그대로 5,000파운드 스텔링, 즉 그의 최초의 전대자본가치와 동등하지만 이 수요는 자본의 유동부분에 관하여서는 증대되며 자본의 고정부분에 관하여서는 부단히 감소된다.

이제는 재생산으로 넘어가자. 자본가가 잉여가치 g 전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최초의 자본량 C 만을 생산자본으로 다시 전환한다고 하자. 그러한 경우에 자본가의 수요는 그 가치에 있어서 그의 공급과 동등하다. 그러나 그의 자본의 운동에 관하여서는 그렇지 않고, 자본가로서는 그는

자기 공급의 4/5(가치량으로 보아)에 해당하는 수요를 제기할 따름이다. 그는 1/5은 비자본가로서, 자본가로서의 그의 기능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 또는 향락을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의 계산은 백분율로는 다음과 같이 된다.

자본가로서의 수요=100,	공급=120
향락자로서의 수요=20,	공급=—
합계	수요=120, 공급=120

이 전제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또 산업자본가 자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와 같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추진적 동기로서 작용하는 것이 치부 그것이 아니라 향락이라는 전제에 의하여서는 이미 그 기초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자본가는 가격의 동요에 대비하고 매매를 위한 가장 유리한 시황(市況)을 기다릴 수 있기 위하여 예비자본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생산을 확대하고 자기의 생산유기체에 기술적 진보를 도입하기 위하여 자본을 축적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을 축적하기 위하여는 자본가는 우선 유통으로부터 그에게 흘러 오는 화폐형태로서의 잉여가치의 일부를 유통으로부터 끌어내며, 그것이 구기업의 확대, 또는 이와 더불어 신기업의 개설에 필요한 양에 달할 때까지 그것을 퇴장화폐로서 증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화폐퇴장이 계속 되는 동안은 그것은 자본가의 수요를 증대시키지 않는다. 화폐는 부동화(不動化)되어 있다. 이 화폐는 공급된 상품 대신으로 시장으로부터 끌어 낸 화폐등가와 교환으로 상품으로서의 어떠한 등가도 시장으로부터 끌어 내지 않는다.

신용은 여기에서 도외시한다. 그리고 예컨대 자본가가 화폐가 쌓임에 따라 그것을 이자를 위하여 시좌계시(예금자의 요구에 따라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는 예금)로 은행에 저금하는 경우는 신용의 영역에 속한다.

제5장 유통기간⁸⁾

생산분야와 유통분야의 두 단계를 통과하는 '자본의 운동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시간상으로 순서있게 진행된다. 자본의 생산기간에 머무르는 기간은 자본의 생산기간을 이루며 유통분야에 머무르는 기간은 자본의 유통기간을 이룬다. 그러므로 자본이 순환을 그리는 전체기간은 생산기간과 유통기간의 합계와 같다.

생산기간은 물론 노동과정의 기간을 포괄하나, 그러나 후자는 생산기간 전체를 포괄하지는 않는다. 우선 우리가 상기하듯이 불변자본의 일부는 기계, 건물 등등과 같은 노동수단으로 존재하는바 이것들은 수명을 다 마칠 때까지 부단히 새로 반복되는 동일한 노동과정에서 복무한다. 노동과정의 주기적인 중단 예컨대 야간에 있어서의 중단은 이 노동수단들의 기능을 중단시키지는 하지만 그것들이 생산 장소에 머무르는 것을 중단시키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기능할 때뿐만 아니라 기능하지 않을 때에도 생산 장소에 속한다. 타방으로 시장측으로부터의 나날의 공급에 있어서의 우연에 좌우됨이 없이, 생산과정이 얼마간 긴 기간 동안 예정된 규모로 수행되기 위하여서는 자본가는 원재료와 보조재료의 일정한 저장품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원료 등등의 이러한 저장품은 점차적으로만 생산적으로 소비된다. 이로부터 그것의 생산기간⁹⁾과 그것의 기능기간간의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생산수단의 생산기간은 일반적으로 1) 생산수단이 생산수단으로서 기능하는, 즉 생산과정에서 복무하는 기간, 2) 생산과정 따라서 또 그것에 합체된 생산수단의 기능이 중단되어 있는 기간, 3) 생산수단이 과정의 조건들로서 준비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미 생산자본을

8) 이하는 제4고에서.

9) 생산기간이란 말은 여기서 능동적인 의미로서 쓰이고 있다. 생산수단의 생산기간이란 여기에서는 그것들의 생산되는 기간이 아니라, 그것들이 상품생산물의 생산과정에 참가하는 기간이다. F. 엥겔스.

표시하나 아직 생산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기간을 포괄한다.

이상에서 고찰된 차이는 언제나 생산자본이 생산분야에 머무르는 기간과 그것이 생산과정에 머무르는 기간 사이의 차이이다. 그러나 생산과정 자체가 노동과정의, 따라서 또 노동기간의 중단—노동대상이 인간노동의 첨가없이 자연적 과정의 영향에 맡겨지는 중간기간—을 조건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노동과정 따라서 또 노동수단으로서의 생산수단의 기능은 중단되어 있지만, 생산과정 따라서 또 생산수단의 기능은 계속된다. 예컨대 파종되어 있는 곡물, 땅굴 속에서 발효하고 있는 포도주, 예컨대 유포업(鞣皮業)과 같은 다수의 제조업의 노동재료로서 화학적 과정에 맡겨져 있는 것들이 그렇다. 이러한 경우들에는 생산기간이 노동기간보다 더 크다. 양자의 차이는 노동기간을 넘는 생산기간의 초과분에 있다. 이 초과분은 언제나, 생산자본이 생산과정 자체에서는 기능함이 없이 생산분야에 잠재적으로 있다는 것, 또는 그것이 생산과정에서는 기능하지만 노동과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근거한다.

생산과정의 조건으로서 준비되어 있을 따름인 잠재적 생산자본 부분—방적업에서의 면화, 석탄 등등과 같은—은 생산물을 형성하는 요인으로서도,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으로서도 작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유희(遊休)자본이다. 비록 그것의 유희가 생산과정의 부단한 흐름을 위한 하나의 조건을 이루지만, 생산적 저장품(잠재적 자본)을 저장하기에 필요한 건물, 장치 등등은 생산과정의 조건들이며 따라서 전대된 생산자본의 구성부분을 이룬다. 그것들은 준비단계에 있는 생산자본의 구성부분들의 보관소로서의 자체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단계에서 노동과정이 필요한 한에 있어서 그 노동과정에 의하여 원재료 등등이 고가하게 되는데, 그 노동은 생산적 노동이며 잉여가치를 창조한다. 왜냐하면 기타의 모든 고용노동과 마찬가지로 이 노동의 일부는 지불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생산과정의 정상적인 중단들, 따라서 생산자본이 기능하지 않는 중간기간은 가치도 잉여가치도 생산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야간에도 작업시키려는 지향이 나온다(제1부, 제8장, 제4절). 노동대상이 생산기간 자체내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는, 노동기간에 있어서의 그러한 중간 기간들은 생산물의 창조를 촉진하며, 생산물이 생명의 일부분을 이루며, 생산물이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는 하나의 과정을 이룬다. 장치 등등의 가치는 그것들이 기능하는 전체기간에 비례하여 생산물로 이전된다. 생산물은 노동 자체에

의하여 이 단계에 놓여져 있는 것이며, 이 장치들의 사용은 생산물로 들어가지는 않으나 가치를 생산물로 이전하는 면화의 일부의 비산(飛散)과 마찬가지로 생산의 조건이다. 건물, 기계 등등과 같은 잠재적 자본의 다른 부분 즉 기능이 생산과정의 규칙적인 휴지에 의하여서만 중단되는—생산의 단축, 공황 등등의 결과로서의 불규칙적인 중단들은 순전한 손실이다—노동수단들은 생산물 형성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가치를 생산물에 첨가한다. 이 부분이 생산물에 첨가하는 총가치는 이 부분이 존재하는 기간의 평균적 길이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 부분은 그것이 기능하는 기간에나 기능하지 않는 기간에나 사용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가치를 상실한다.

마지막으로는 노동과정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생산과정에 계속 존재하는 불변자본 부분의 가치는 생산과정의 결과중에 다시 나타난다. 이 경우에 생산수단은 그것들이 스스로 일정한 자연적 과정들을 통과하며 그 결과로서 일정한 유용효과, 또는 그것들의 사용가치 형태의 변화가 발생하는 그러한 조건들 속에 노동 자체에 의하여 놓여진다. 노동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생산수단을 생산수단으로서 합목적적으로 소비하는 한, 언제나 그것들의 가치를 생산물로 이전시킨다. 노동이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노동수단을 매개로 하여 계속적으로 노동대상에 작용하지 않으면 안되든가, 또는 노동의 그 이상의 협조없이 생산수단이 스스로 자연과정의 결과로서 소기의 변화를 받는 그러한 조건들 속에 노동이 생산수단을 놓음으로써 노동은 다만 충격만을 주면 되든가 하는 것은 사태에 아무 변동도 일으키지 않는다.

노동기간을 넘는 생산기간의 초과분의 근거가 무엇이든 간에—생산수단이 다만 잠재적 생산자본을 이루며 따라서 아직 현실적 생산과정의 문턱에 놓여 있기 때문이든, 생산수단 자체의 기능이 생산과정내에서 이 과정의 휴지에 의하여 중단되기 때문이든, 또는 마지막으로 생산과정 자체가 노동과정의 중단을 조건짓기 때문이든—그 어느 한 경우에도 생산수단은 노동흡수자로서는 기능하지 않는다. 그것들이 노동을 흡수하지 않는다면 잉여노동도 흡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산기간중 노동기간을 넘는 초과분으로 되는 부분에 생산자본이 놓여 있는 동안은—가치증식 과정의 수행이 이 과정의 이러한 휴지들과 불가분리적이기는 하지만—생산자본의 가치증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생산기간과 노동기간이 일치하면 할수록 소

여 기간에 소여 생산자본의 생산능률과 가치증식은 더욱더 클 것은 명백하다. 노동기간을 넘는 생산기간의 초과분을 되도록 단축시키려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경향은 이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자본의 생산기간은 노동기간으로부터 배리될 수 있기는 하나, 전자는 후자를 언제나 포함하며 또 초과분 자체가 생산과정의 조건이다. 따라서 생산기간은 비록 자본이 잠재적 상태에 있거나 또는 자기증식을 하지 않고 생산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자본이 사용가치를 생산하며 자기 자체를 증식시키는, 즉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기간인 것이다.

유통분야내에서는 자본은 상품자본 및 화폐자본으로서 존재한다. 자본의 유통과정은 자본이 상품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 또 화폐형태로부터 상품형태로 전화되는 데 있다. 상품의 화폐로의 전화가 여기에서는 동시에 상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잉여가치의 실현이며 또 화폐의 상품으로의 전화가 동시에 생산요소들의 모습으로의 자본가치의 전화 또는 재전화라는 사정은 유통과정으로서의 이 과정들이 상품들의 단순한 형태변화의 과정들이라는 것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유통기간과 생산기간은 호상 배제한다. 자본은 그것의 유통기간중에는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으며, 따라서 상품도 잉여가치도 생산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순환을 총자본가치가 한 단계로부터 다른 단계로 매번 단번에 넘어가는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 고찰한다면, 생산과정 따라서 또 자본의 자기 증식은 자본의 유통과정이 계속되는 동안 중단되며, 또 유통기간의 길이에 따라 생산과정이 보다 더 급속히 또는 보다 더 완만히 갱신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와는 반대로 만약 자본의 각이한 부분들이 서로 뒤를 이어 순환을 수행하며 그리하여 총자본가치의 순환이 그것의 각이한 부분들의 순환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수행된다면, 자본가치의 구성부분들이 부단히 유통분야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생산분야에서 부단히 기능하는 자본가치 부분은 더욱 적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유통기간의 확대 및 단축은 생산기간의 단축 또는 확대에 대하여, 또는 소여의 크기의 자본이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하는 정도에 대하여 소극적인 제한으로서 작용한다. 자본유통의 형태변화들이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면 할수록, 즉 유통기간이 영(零)과 동등하거나 영에 접근하면 할수록 자본은 더욱 많이 기능할 것이며, 그것의 생산능률과 자기증식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예컨대 자본가가 주문을 받고 일

하고, 그리하여 생산물을 제공할 때에 지불을 받으며 또 그 지불은 그 자신의 생산수단으로써 실시된다면 유통기간은 영에 접근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의 유통기간은 일반적으로 그것의 생산기간을 제한하며, 따라서 또 그것의 증식과정을 제한한다. 그것도 유통기간의 길이에 비례하여 제한한다. 그런데 유통기간의 길이는 극히 각이하게 증감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자본의 생산기간을 극히 각이한 정도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이 보고 있는 것은 외적인 발현, 즉 자본의 증식과정 일반에 대한 유통기간의 작용이다. 정치경제학은 이 소극적인 작용을, 그것의 결과가 적극적인 때문에 적극적인 것으로 본다. 이러한 외관은 자본이 그것의 생산과정과 독립하여 있으며, 따라서 노동의 착취와 독립하여 있는 신비로운 원천을 가지고 있으며, 이 원천은 유통분야로부터 자본에게로 흘러온다는 증명을 제공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정치경제학은 이 외관에 더욱 집착하는 것이다. 우리는 나중에 과학적 경제학까지도 이 외관에 의하여 기만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외관은 역시 나중에 분명히 되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현상들에 의하여 확고하게 된다. 1) 자본주의적 이윤 계산방식인바, 이에 있어서는 유통기간이 각이할 뿐인 각이한 투하분야들에 있는 자본들에 있어서, 보다 더 긴 유통기간이 가격인상의 근거로서, 간단히 말하여 이윤균등화의 근거의 하나로서 작용함으로써 소극적 근거가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유통기간은 회전기간의 한 계기를 이루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후자는 생산기간 또는 재생산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은 생산기간 때문에 있게 되는 것이 유통기간 때문에 있게 되는 듯이 보인다. 3) 상품들의 가변자본(노임)으로의 전환은 상품들이 먼저 화폐로 전화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축적에 있어서 추가적인 가변자본으로의 전환은 유통분야에서 또는 유통기간중에 진행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진행되는 축적은 이 유통기간 때문에 있는 듯이 보인다.

유통분야 내부에서 자본은 어떤 순서로든간에 두 개의 대립되는 단계 $W-G$ 및 $G-W$ 를 통과한다. 따라서 자본의 유통기간도 두 개 부분으로 즉 자본이 상품으로부터 화폐로 전화되는 데 필요한 기간과, 자본이 화폐로부터 상품으로 전화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나뉘어진다. 단순상품 유통의 분석(제1부, 제3장)으로부터 이미 알고 있듯이 $W-G$ 즉 판매가 자본의 형태변화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그러므로 보통 조건하에서는

유통기간의 보다 더 큰 부분을 이룬다. 화폐에 체화되어 있는 가치는 언제나 다른 형태로 전화될 수 있는 형태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상품에 체화되어 있는 가치는 화폐로 전화됨으로써 비로소 직접적인 교환을 할 수 있는, 따라서 또 언제나 활동하기에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자본의 유통과정의 $G-W$ 단계에서의 소여 기업에서의 생산자본이 일정한 요소들인 상품들로의 자본의 전화가 문제로 된다. 생산수단들이 아마도 시장에 없어서 이제부터 생산되지 않으면 안 되든가, 또는 그것들을 멀리 떨어진 시장으로부터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는가, 또는 그것들의 일상적 공급의 두절, 가격의 변동 등등, 요컨대 단순한 형태변화 $G-W$ 에서는 볼 수 없으나 유통단계의 이 부분을 위하여 많은 적든 시간을 요구하는 많은 사정들이 발생할 수 있다. $W-G$ 와 $G-W$ 는 시간적으로 분리될 수 있듯이 공간적으로도 분리될 수 있다.

즉 구매시장과 판매시장은 공간적으로 각이한 시장일 수 있다. 심지어는 예컨대 공장들에서 구매담당자와 판매담당자가 흔히 한 사람일 수도 있다. 상품생산에서는 유통이 생산 자체와 마찬가지로 필요하며, 따라서 유통대리자도 생산대리자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재생산과정은 자본의 양기능을 포함하며 따라서 이 기능들이 자본가 자신에 의하여서나 또는 그의 대리자인 고용노동자에 의하여서나 대표될 필요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것은 유통대리자와 생산대리자를 혼동하거나 또는 상품자본 및 화폐자본의 기능들과 생산자본의 기능을 혼동하는 근거로는 전혀 될 수 없다. 유통대리자들은 생산대리자들에 의하여 지불되지 않으면 안된다. 서로 사고 팔고 하는 자본가들이 이 행위에 의하여 생산물도 가치도 창조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은, 그들의 기업의 규모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기능을 다른 사람에게 담당시킬 수 있으며, 또 담당시킬 필요가 있다 하여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기업들에서는 구매담당자와 판매담당자는 이윤배당에 의하여 지불된다. 그들이 소비자들에 의하여 지불된다고 하는 판에 박힌 말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이 생산대리자로서 등가물을 상품형태로 생산하거나, 또는 그것을 생산대리자로부터 어떠한 법률적 권리에 근거하여서든 (산업조합의 성원 등등으로서), 또는 개인적 봉사에 의하여서든 취득하는 한에 있어서이다.

$W-G$ 및 $G-W$ 간에는 상품 및 화폐의 형태상 차이와는 아무런 상관

도 없는, 그러나 생산의 자본주의적 성격으로부터 발생하는 하나의 차이가 있다. 그 자체로서는 $W-G$ 도 $G-W$ 도 소여 가치의 한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로의 단순한 전화이다. 그러나 $W'-G'$ 는 동시에 W'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잉여가치의 실현이다. $G-W$ 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판매는 구매보다 더 중요하다. $G-W$ 는 정상적 조건하에서는 G 로 표현되는 가치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이기는 하나 그것은 잉여가치의 실현은 아니다. 그것은 잉여가치 생산의 서막(序幕)이지 그것의 종막(終幕)은 아니다.

상품자본의 유통 $W'-G'$ 에 있어서는 상품의 존재형태 자체, 사용가치로서의 그것의 존재가 일정한 제한을 설정한다. 상품은 그 본성에 있어서 사멸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품들이 일정한 기간내에 그것들의 용도에 따라 생산적 또는 개인적 소비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환언하면 그것들이 일정한 기간내에 판매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사멸하며 자체의 사용가치와 함께 교환가치의 담당자라는 속성도 상실한다. 그것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본가치 또는 그것에 첨가되어 있는 잉여가치는 상실되고 만다. 사용가치들은 그것들이 동일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사용가치들에 의하여 부단히 갱신되고 재생산되는 한에 있어서만 영속적이며 자기 증식하는 자본가치의 담당자로 남는다. 그러나 사용가치들이 그것들의 기성의 상품형태로서 판매된다는 것, 그것들이 그 판매에 의하여 매개되어 생산적 또는 개인적 소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들의 재생산의, 부단히 갱신되는 조건이다. 상품들은 새로운 사용형태로 존재를 계속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기간내에 그것들의 낡은 사용형태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 교환가치는 자체의 물체의 이러한 부단한 갱신에 의하여서만 보존된다. 각이한 상품들의 사용가치들은 보다 급속히 또는 보다 완만히 사멸한다. 따라서 그것들의 생산과 소비간에는 각이한 기간이 경과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들은 멸망함이 없이 각이한 기간 동안 상품자본으로서 $W-G$ 라는 유통단계에 머무를 수 있으며, 상품으로서 각이한 길이의 유통기간을 견딜 수 있다. 상품체 자체의 사멸에 의하여 제약되는, 상품자본의 유통기간의 한계는 유통기간의 이 일부의, 또는 상품자본이 상품자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유통기간의 절대적 한계이다. 어떤 상품이 급속히 사멸하는 것이면 것일수록, 그러므로 그것이 생산된 직후에 소비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또 판매되지 않으면 안될수록 그것은 그것의 생산 장소로

부터 멀리 떨어질 수가 더욱 없게 되며, 따라서 그것의 공간적 유통분야는 더욱 협소하게 되며, 그것의 판매시장은 더욱 지방적 성격을 띤다. 그러므로 어떤 상품이 급속히 사멸하는 것이면 것일수록, 그것의 자연적 속성들에 의하여 상품으로서의 유통기간의 절대적 제한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대상으로 되기에 더욱 부적당하게 된다. 그러한 상품은 다만 인구가 조밀한 곳들에서만 도는 운수수단의 발전에 의하여 지방적 거리가 단축되는 데 따라 자본주의적 생산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자의 수중에서의 그리고 인구가 조밀한 곳에서의 어떠한 상품의 생산의 집중은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도 비교적 큰 시장을 조성할 수 있으니, 예컨대 대규모의 맥주양조업, 착유업(搾乳業) 등등의 경우에 그렇다.

제6장 유통비

제1절 순유통비

1. 구매기간 및 판매기간

상품으로부터 화폐로의 또 화폐로부터 상품으로의 자본의 형태전화는 동시에 자본가의 거래인 구매 및 판매행위이다. 자본의 이러한 형태전화가 수행되는 기간은 주관적으로는 즉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판매 및 구매기간 즉 자본가가 시장에서 판매자 및 구매자로서 기능하는 기간이다. 자본의 유통기간이 자본의 재생산기간의 필연적인 일부분을 이루듯이 자본가가 매매하는 기간, 그가 시장을 배회하는 기간은 그가 자본가로서 즉 인격화된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기간의 필연적인 일부분을 이룬다. 이 기간은 자본가의 영업시간의 일부를 이룬다.

{우리는 상품들이 그것들의 가치대로 매매된다고 가정한 만큼 이 행정들에 있어서 문제로 되는 것은 다만 동일한 가치의, 한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로의 전화—상품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의 그리고 화폐형태로부터 상품형태로의 전화—즉 상태의 변화만이다. 상품들이 그것들의 가치대로 판매된다면 가치의 크기는 구매자의 수중에서나 판매자의 수중에서나 그대로 불변이며 다만 그것의 존재형태만이 변동된 것이다. 상품들이 그것들의 가치대로 판매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환된 가치의 총액은 그대로 불변이다. 일방에 있어서의 플러스는 타방에 있어서의 마이너스이다.

그런데 W—G 및 G—W라는 형태변화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서 진행되는 거래이다. 그들의 거래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시간이 필요한바, 쌍방이 서로 속여 넘어뜨리려는 투쟁이 벌어지며, 희랍인과 희랍인이 만나면 격투가 벌어진다(When Greek meets Greek then comes the tug

of war)는 식으로 사업가들이 서로 대립하는 만큼 더욱 그렇다. 상태의 변화에는 시간과 노동력이 드는데 그것은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의 가치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이다. 이에 있어서 서로 초과되는 가치량을 이 기회에 취득하려고 애쓴다 해서 사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노동은 쌍방의 나쁜 의도로 말미암아 증대되지만 그것이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 것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지출되는 노동이 분쟁 목적물의 가치량을 증대시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다. 전체로서의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여기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은 유통도 포함하며 또는 유통에 의하여 포함된다—의 하나의 필연적 계기인 이 노동은 예컨대 열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소비되는 어떤 물질의 연소(燃燒)노동과 같다. 이러한 연소노동은 비록 그것이 연소과정의 하나의 필연적 계기이기는 하지만 열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석탄을 연료로서 소비하기 위하여는 그것을 산소와 결합시켜야 하며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석탄을 고체상태로부터 가스상태로 전화시켜야 하며(왜냐하면 연소의 결과인 탄산가스에 있어서는 석탄은 가스상태로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자연적 존재형태 또는 상태의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하나의 고체로 결합된 탄소분자들의 분리와 이 석탄분자 자체의, 개별적 원자로의 분열은 새로운 화합(化合)에 선행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에는 에너르기의 일정한 지출이 요구되는데 이 에너르기는 그렇게 됨으로써 열로 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로부터 소실된다. 그러므로 상품소유자들이 자본가가 아니라 자립적인 직접적 생산자들이라면 때때에 소비되는 시간은 그들의 노동시간에서의 공제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고대에 있어서나 중세기에 있어서나) 이러한 종류의 조작을 명절날에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자본가들의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상품들의 전환의 규모 여하가, 가치를 창조하지 않고 다만 가치형태의 변화를 매개하는 이러한 노동을, 가치를 창조하는 노동으로 전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동이 실체를 바꾼다는 기적은 위치를 바꾼다는 것에 의하여 즉 산업자본가들이 스스로 저 연소노동을 수행할 대신에 그것을 그들에 의하여 지불되는 제3자들의 전업으로 만든다는 것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없다. 물론 이 제3자들은 산업자본가들의 아름다운 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노동력을 그들의 처리에 맡기는 것은 아니다. 여하간

토지소유자의 지대징수자나 또는 은행의 심부름꾼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노동이 지대나 또는 자루에 넣어서 다른 은행으로 가져가는 금괴의 가치의 크기를 한 푼도 증대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좋은 일이다.} ¹⁰⁾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노동시키는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매매가 주요한 기능으로 된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생산물을 광범한 사회적 규모에서 취득하기 때문에 그는 또한 그와 같은 규모에서 이 생산물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후에 또다시 화폐로부터 생산요소들로 재전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구매기간 및 판매기간은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다. 상인자본의 기능에 의하여 하나의 환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문제에 더 자세히 들어가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극히 명백한 것은 그 자체로서 비생산적인, 그러나 재생산의 하나의 필연적 계기인 어떤 기능이 분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부차적 기능으로부터 약간의 사람들의 전문적 기능으로, 그들의 특수한 사업으로 전화되더라도, 기능의 성격 자체는 전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인(여기에서는 상품의 형태전환의 단순한 대리자로서, 단순한 구매자 및 판매자로서 간주되는)은 그의 조작들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매기간 및 판매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그는 무용한 에너지를 지출을 감소시키는, 또는 생산기간을 해방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기계라고 간주될 수 있다. ¹¹⁾

10) 괄호내의 것은 제8고의 끝에 있는 주로부터 취한 것이다.

11) “상업비는 비록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손실로 되는 지출로 보아야 한다”(케네「경제표의 분석」, 데르 편찬「중농주의자」 제1부, 파리, 1846년, 71페이지). 케네에 의하면 상인들 간의 경쟁에 의하여 초래되는 이득 즉 경쟁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보수 또는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제1차적 판매자 및 소비자인 구매자를 위한 손실의 경감(Privation de perte)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손실의 경감은 상업이 그 자체로서 수송비와 관계가 없는 단순한 교환으로 고찰하든 그렇지 않고 수송비와 결부시켜 고찰하든 간에 상업에 의하여 얻어지는 현실적 생산물 또는 부의 증대는 아닌 것이다”(145~146페이지). [케네「발췌」, 저작집, 러시아어 역, 1896년판, 「상업에 관하여」, 150페이지 참조]. “상업비는 만약 중개비가 들지 않는다면 구매자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하여(자본가로서의 상인과 상인자본은 나중에야 비로소 고찰할 것이므로) 우리는 구매 및 판매의 대리자가 자신의 노동을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하자. 그는 W-G 및 G-W라는 이 조작들에 자기의 노동력과 자기의 노동시간을 지출한다. 따라서 그가 이렇게 하여 살아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예컨대 방적 또는 환약 제조를 하여 살아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는 재생산과정에서 하나의 필요한 비록 비생산적이기는 하나 기능을 수행하는바, 그것은 재생산과정 자체가 비생산적 기능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노동하나 그의 노동의 내용은 가치도 생산물도 창조하지 않는다. 그 자신이 생산의 비생산적 비용(faux frais)에 속한다. 그의 효용(効用)은 그가 비생산적 기능을 생산적 기능으로 또는 비생산적 노동을 생산적 노동으로 전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이 기능을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이전시킴으로써 그러한 전화가 성취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기적일 것이다. 오히려 그의 효용은 그의 활동에 의하여 이 비생산적 기능에 지출되는 사회의 노동력과 노동시간의 부분이 감소되는데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그는 더 나은 지불을 받는다 하더라도 단순한 고용노동자라고 가정하자. 그가 받는 지불이 여하튼 간에 고용노동자로서의 그는 자기 시간의 일부를 무상으로 노동한다. 그는 아마도 하루에 8노동시간분의 새로 창조된 가치를 받고 10시간 동안 일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노동의 결과로 사회적 생산물의 일부가 그에게 넘어온다 하더라도 그의 8시간분의 필요노동과 마찬가지로 그가 수행하는 두 시간분의 잉여노동도 역시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 첫째로 사회적으로 고찰할 때 10시간분의 노동력이 단순한 이 유통기능에 소비된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는, 생산적 노동을 위해서는 소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둘째로 이 두 시간분의 잉여노동이 그것을 수행한 개인에 의하여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그것에 대하여 지불하지 않는다. 사회는 이것으로써 아무런 보충적 생산물 또는 보충적 가치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가 지불하는 가격 전체를 받게 될 생산물 판매자에 의하여 부담된다”(163페이지). 토지소유자들과 생산자들은 임금지불자(salariants)이며, 상인들은 임금수령자(salaries)이다(164페이지). 케네 『경제의 제문제』 데르 편찬 『중농주의자』 제1부, 파리, 1846년).

그러나 그에 의하여 대표되는 유통비는 5분의 1 만큼 즉 10시간분으로부터 8시간분으로 감소된다. 사회는 그를 대리자로 하는 이 현실적 유통기간의 5분의 1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등가도 지불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자본가가 이 대리자를 사용한다면 두 시간분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자본의 유통비—이것은 그의 소득의 공제분을 이룬다—는 감소된다. 자본가에 대하여 이것은 적극적인 이득으로 되는바, 왜냐하면 그의 자본 증식상의 소극적인 제한이 협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립적인 소상품생산자들이 그들 자신의 시간의 일부를 매매에 지출한다면 이 시간은 다만 그들의 생산적 기능의 중간에 지출되는 시간으로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생산기간으로부터 떼어내는 시간으로 된다.

여하튼 이에 지출되는 시간은 전환되는 가치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는 유통비이다. 이것은 가치를 상품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다.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자가 유통 대리자로서 나타나는 한, 그가 직접적인 상품생산자와 구별되는 점은 다만 그가 보다 더 큰 규모로 매매한다는 것 따라서 또 보다 더 큰 범위에서 유통대리자로서 기능한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의 기업의 범위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유통대리자를 고용노동자로서 구매(고용)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하더라도 또는 그렇게 할 수 있게 한다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사태의 본질은 변동되지 않는다. 노동력과 노동시간이 어느 정도까지는 유통과정(단순한 형태전화인 한에 있어서의)에 지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출이 추가적 자본투하로서 나타난다. 그리하여 가변자본의 일부분이 다만 유통에서 기능하는 이러한 노동력의 구입에 투하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자본 전대는 생산물도 가치도 창조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대자본이 생산적으로 기능하는 규모를 그만큼 축소시킨다. 이것은 생산물의 일부가 생산물의 나머지 부분을 매매하는 기계로 전화된 경우와 동일하게 된다. 이 기계는 생산물로부터의 공제분이다. 그것은 유통에 지출되는 노동력 동등을 감소시킬 수는 있다 하더라도 생산과정에서 협조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다만 유통비의 일부를 이룰 뿐이다.

2. 부 기

현실적 매매 외에 부기에서도 노동시간이 지출되는바, 이 부기에는 그

밖에 펜, 잉크, 종이, 사무책상, 사무실비 같은 대상화된 노동도 들어간다. 따라서 이 기능에는 일방으로 노동력이 지출되며 타방으로 노동수단이 지출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사정은 구매기간 및 판매기간의 경우와 전혀 마찬가지이다.

자본은 그것의 순환 내부에 있어서의 통일로서는, 운동 중에 있는 가치로서는, 그것이 생산분야에 있든 또는 유통분야의 두 단계에 있든 간에 다만 관념적으로만, 계산화폐의 모습으로서 우선 상품생산자 또는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자의 머리 속에 존재한다. 이 운동은 가격의 결정 또는 상품가격의 계산도 포함하는 부기에 의하여 결정되며 통제된다. 그리하여 생산의 운동 그리고 특히는 가치증식의 운동—이 경우에는 상품이 다만 가치의 담당자로서, 가치로서의 관념적 존재가 계산화폐로 확정되어 있는 물건들의 명칭으로서 나타난다—이 표상 속에 상징적으로 묘사된다. 개별적인 상품생산자가 다만 자기의 머리 속에서 부기계산을 하거나(예컨대 농민이 그렇다, 자본주의적 농업만이 비로소 기장을 하는 차지농업가를 낳는다) 또는 자기의 생산기간이 아닌 때에 다만 짬짬이 자기의 지출과 소득, 지불기한 등등을 기장하는 동안에는 그의 이 기능과 이 경우에 그가 소비하는 종이 등등과 같은 노동수단은 노동시간과 노동수단의 추가적 소비를 표시하며, 이것들은 필요하기는 하나 그러나 그가 생산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시간과 노동수단—현실적 생산과정에서 기능하고 생산물 및 가치의 형성에 들어가는—으로부터의 공제분을 이룬다는 것은 명백하다.¹²⁾ 이 기능 자체의 본성은 그것이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자의 수중에 집중되어 다수의 소상품생산자들의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자본

12) 중세기에는 농업부기가 수도원에만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본 바와 같이(제1부 조선어 역, 제1분책 514페이지) 이미 고대 인도의 공동체들에서는 농업부기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부기가 공동체 공무원의 전문적인 기능으로 자립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분업에 의하여 시간, 노동 및 비용이 절약된다. 그러나 생산과 생산에 관한 부기는 선하(船荷)와 선하증권이 서로 다르듯이 다른 문건이다. 부기원으로서 공동체 노동력의 일부가 생산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그의 기능과 관련된 비용들은 그 자신의 노동에 의하여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생산물로부터의 공제분으로써 보상된다. 자본가의 부기원에 있어서도 필요한 변경

가의 기능으로서, 대규모적 생산과정 내부에서의 기능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기능이 획득하는 규모로 말미암아 변경되는 것도 아니며, 이 기능이 부수적 사무로 되어 있었던 생산적 기능으로부터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변경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이 기능이 전적으로 위임되는 특수한 대리자의 기능으로서 자립화됨으로 말미암아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만약 어떤 기능이 그 자체로서 즉 그것이 자립화되기 이전에 생산물 및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분업 즉 기능의 자립화에 의하여 그 기능이 그러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새로 자기의 자본을 투하하는 자본가는 부기원 등등의 고용 및 부기수단들의 구입에 자본의 일부분을 투하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자본가의 자본이 이미 기능하고 있으며 자체의 부단한 재생산과정에 있다면 그는 상품생산물의 일부를, 화폐로의 전화에 의하여 부단히 부기원, 사무원 등등에 재전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의 이 부분은 생산과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유통비, 전체 수입으로부터의 공제분에 속한다(전문적으로 이 기능을 위하여 사용되는 노동력 그것에 관해서도 동일한 것을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방으로는 부기에서 발생하는 비용 즉 이것을 위한 노동시간의 비생산적 지출과 타방으로는 단순한 구매기간 및 판매기간의 그것과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후자는 다만 생산과정의 일정한 사회적 형태로부터 즉 그것이 상품의 생산과정이라는 데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과정의 통제 및 관념적 개괄의 수단으로서의 부기는 과정이 사회적 규모에서 수행되고 순전히 개인적인 성격을 상실하면 할수록 더욱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부기는 분산된 수공업생산 및 농민적 생산에 있어서 보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더 필요하며,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보다 공동체적 생산에서는 더 필요하다. 그러나 부기비용은 생산의 집적에 따라 감소되며, 부기가 사회적 부기로 전화되면 될수록 더욱 감소된다.

여기에서는 단순한 형태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유통비의 일반적 성격만이 문제로 되고 있다. 이 비용의 모든 세부형태들에 들어갈 필요는 여기에서는 없다. 그러나 가치의 순전한 형태전화의 영역에 속하며 따라서 생산과정의 일정한 사회적 형태로부터 나오는 이것들 기능들—개별적인 상

을 가하면 인도 공동체의 부기원에 있어서와 사정이 마찬가지로이다. (제2고에서).

품생산자에 있어서는 있을까 말까 한 것에 불과하며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계기들이며 그리고 그의 생산적 기능들과 함께 진행되거나 또는 그것들과 엉켜있는 기능들이 대량적인 유통비로서 사람들을 얼마나 놀라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 업무가 분리되어 은행 등등 또는 개별적 기업의 현금출납원의 전문적 기능으로서 거대한 규모로 집중되어 있을 때의 화폐의 단순한 수납과 지출의 예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유통비들은 그것들이 모습의 변경에 의해서는 성격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

3. 화 폐

어떤 생산물이 상품으로서 생산되든 또는 상품으로서 생산되지 않든 간에 그것은 항상 부의 소재적 모습이며, 개인적인 또는 생산적인 소비에 들어가게 될 사용가치이다. 상품으로서의 그것의 가치는 관념적으로 가격에 존재하는바, 가격은 상품의 현실적인 사용상 모습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금 은과 같은 일정한 상품들이 화폐로서 기능하며 또 그러한 것으로서 전혀 유통과정에만 머무른다는(그것들은 퇴장화폐, 예비금 등등으로서도 비록 잠재적이지만 유통분야에 머무른다) 사정은 순전히, 생산과정의 일정한 사회적 형태인 상품의 생산과정의 산물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상품이 생산물의 일반적 모습으로 되며, 생산물의 최대 분량이 상품으로서 생산되고 따라서 화폐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상품량 즉 사회적 부중에서 상품으로서 기능하는 부분이 부단히 장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유통수단, 지불수단, 예비금 등으로서 기능하는 금 은의 양도 증가한다. 화폐로서 기능하는 이 상품들은 개인적 소비에도 생산적 소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화폐는 다만 유통을 위한 기계로서만 복무하는 형태로 고정된 사회적 노동이다. 사회적 부의 일부분이 이 비생산적인 형태로 구속되는 외에도 화폐의 마멸은 그것의 부단한 보상을, 또는 생산물형태로서의 보다 더 많은 사회적 노동을 보다 더 많은 금과 은으로 전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자본주의적으로 발전된 민족들에서는 부중에서 화폐형태로 구속되어 있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막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에 드는 비용이 상당한 규모에 달한다. 화폐상품으로서의 금과 은은 사회에 대해서는 다만 생산의 사회

적 형태로부터 발생하는 유통비를 이룬다. 그것은 상품생산 일반의 비생산적 비용 (faux frais)이며, 상품생산 특히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 증대된다. 그것은 유통과정에 희생으로 바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 부의 일부분이다.¹³⁾

제2절 보관비

가치의 단순한 형태변화, 순수히 고찰된 유통에서 발생하는 유통비는 상품의 가치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와 같이 하여 지출되는 자본부분은 우리가 자본가를 염두에 두는 한, 생산적으로 지출되는 자본으로부터의 단순한 공제분이며, 그리고 우리가 전체 사회를 고찰한다면 비생산적으로 지출된 노동력이다. 지금 우리가 고찰하는 유통비는 그 본성이 다른 것이다. 그것은 유통에서 지속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생산과정—따라서 그 생산적 성격이 유통형태에 의하여 은폐되어 있을 따름인—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타방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산 노동이든 대상화된 노동이든 간에 노동의 단순한 비용이며 비생산적인 지출일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 자본가에 있어서는 가치창조적으로 작용하며 그들의 상품의 판매가격에 대한 첨가분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이 비용이 생산분야가 다름에 따라 다르며 또 동일한 생산분야내에서도 개별적 자본이 다름에 따라 종종 다르다는 데로부터 나온다. 이 비용은 상품가격에 첨가됨으로써 그것이 개별적 자본가들에게 부담되는 정도에 상응하여 분배된다. 그러나 가치를 첨가하는 모든 노동은 잉여가치도 첨가할 수 있으며 또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항상 잉여가치를 첨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노동에 의하여 창조되는 가치는 그 노

13)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는 화폐는 나라의 자본의 일정한 부분으로서 그것의 나머지 부분의 생산성을 용이하게 하든가 증대시키기 위하여 생산적 목적으로부터 완전히 유리된 것이다. 따라서 금을 유통수단으로서 취하기 위하여 부의 일정한 분량이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생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계를 만들기 위하여 부의 일정한 분량이 필요한 것과 같다”(『이코노미스트』 제5권, 519페이지).

동 자체의 크기에 의존하는데 그것에 의하여 창조되는 잉여가치는 자본가가 그 노동에 대하여 지불하는 정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하여 상품의 사용가치에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으면서 상품을 고가하게 만드는, 따라서 사회적으로 보면 생산상의 비생산적 비용(faux frais)에 속하는 비용들이 개별적 자본가들에 있어서는 치부의 원천으로 될 수 있다. 타방으로 이러한 유통비에 의하여 상품가격에 첨가되는 증가분이 이 비용을 고르게 분배할 따름이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비용의 비생산적인 성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예컨대 보험회사들은 개별적 자본가들의 손실을 전체 자본가계급간에 분배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와 같이 하여 균등화되는 손실이 사회적 총자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의연히 손실이라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1. 저장 형성 일반

생산물이 상품자본으로서 존재하는 동안 또는 시장에 머물러 있는 동안, 즉 생산물이 나오는 생산과정과 그것이 들어가는 소비과정간의 중간기간에 그것이 있는 한에서는 생산물은 상품저장을 형성한다. 시장에 있는 따라서 저장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상품으로서는 상품자본은 매개순환에서 2중으로 나타난다. 즉 한 번은 그 순환이 고찰되고 있는, 과정중에 있는 자본 자체의 상품생산물로서이며 다른 한 번은 이와는 반대로 구매되어 생산자본으로 전화되기 위하여 시장에 있지 않으면 안되는 다른 어떤 자본의 상품생산물로서이다. 물론 이 후자의 상품자본이 다만 주문에 의하여 비로소 생산되는 수도 있다. 그 때에는 그것이 생산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중단이 생긴다. 그러나 생산 및 재생산과정의 흐름은 일정한 양의 상품(생산수단)이 부단히 시장에 있으며 따라서 저장을 형성할 것을 요구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생산자본은 노동력의 구입을 포괄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화폐형태는 노동자가 시장에서 그 대부분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생활수단들의 가치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절(節)의 진행에 따라 우리는 이 문제에 더 자세히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미 다음과 같이 점이 명백하다. 만약 상품생산물로 전화되었으며 그리하여 이제는 판매 즉 화폐로 재전화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또 이제는 상품자본으로서 시장에서 기능하는 과정중에 있는 자본가치의 입

장에서 본다면 상품자본이 저장을 형성하는 상태는 목적에 어그러지며 본의가 아닌 시장체류이다. 보다 급속히 판매되면 될수록 재생산과정도 그만큼 원활하다. $W'-G'$ 라는 형태전화에서의 지체는 자본의 순환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적인 물질변환을 방해하며 자본이 앞으로 더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방해한다. 타방으로 $G-W$ 에 있어서는 시장에서의 상품의 부단한 현존 즉 상품저장이 재생산과정과 새로운 또는 추가적 자본의 투하를 원활히 하는 조건으로서 나타난다.

상품자본이 상품저장으로서 시장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각종 건축물 즉 상점, 상품저장소, 상품창고들이 필요하며 따라서 불변자본의 지출이 필요하다. 또한 상품들을 저장소에 입고하기 위한 노동력에 대하여 지불이 필요하다. 그 밖에 상품들은 손상되며 유해로운 자연적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들로부터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추가적인 자본이 일부는 노동수단 즉 대상적 형태로, 일부는 노동력으로 지출되지 않으면 안된다.¹⁴⁾

이와같이 상품자본 형태 따라서 또 상품저장 형태로의 자본의 체류는 생산분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유통비로 인정되는 비용들을 발생시킨다. 이 유통비는 그것이 일정한 정도까지 상품가치에 들어가며 따라서 상품가격을 등귀시킨다는 점에서 제1절에서 서술한 유통비와 구별된다. 여하간에 상품저장을 유지하며 보관하는 데 복무하는 자본과 노동력은 직접적인 생산과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타방으로 여기에 충용되는 자본들은, 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의 노동력도 포함하여 사회적 생산물로부터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그것들의 지출은 노동생산력의 감소와 마찬가지로 작용하며 그리하여 일정한 유용효과를

14) 코베트가 1841년에 계산한 9개월 동안의 소맥 저장비는 감모량 1/2%, 소맥가격에 대한 이자 3%, 창고 임차료 2%, 선별 및 운반요금 1%, 인도작업비 1/2%, 도합 7%, 즉 1쿼터당 소맥가격 50실링에 대하여 3실링 6펜스이다(T. 코베트 『개인의 부의 원인과 양식에 관한 연구...』 런던, 1841년 [140페이지]), 철도위원회 앞에서 한 리버풀 상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곡물저장의 (순)비생산적 비용은 1865년에 쿼터당(월 2펜스 또는 톤당 9~10펜스였다(『칙명 철도위원회』 1867년, 증언록, 19페이지, 제331호)).

얻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량이 증대된다. 이것은 비생산적 비용(unkosten)이다.

이제 상품저장의 형성에 의하여 조건지어지는 유통비가 다만 현존하는 가치가 상품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 전화되는 기간이 긴 데로부터, 따라서 다만 생산과정의 일정한 사회적 형태로부터(다만 생산물이 상품으로서 생산되며 그러므로 화폐로의 전화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데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것은 그 성격에 있어서 제1절에서 든 유통비들과 전혀 마찬가지로 상품 가치의 이 경우에 보존 또는 증대되는 것은 사용가치인 생산물 자체가 자본의 지출을 필요로 하는 일정한 대상적 조건하에 옮겨지며 추가적 노동을 사용가치에 작용시키는 조작들을 받기 때문임에 불과하다. 이와 반대로 상품가치의 계산, 이 과정에 관한 부기, 매매 거래는 상품가치가 존재하는 사용가치에 작용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다만 상품가치의 형태와 관계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전제로 된 경우에 있어서 비록 저장 형성(이것은 이 경우에는 본의가 아닌 것이다)과 관련된 이 비생산적 비용들이 다만 형태전화의 지체로부터, 그리고 이 형태전화의 필요성으로부터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들은 그것들의 목적 자체가 가치형태의 전화가 아니라, 가치-사용가치인 생산물들로서 상품 속에 존재하며, 그러므로 다만 사용가치인 생산물 자체의 보존에 의해서만 보존될 수 있는—의 보존이라는 점에서 제1절에서 고찰한 비생산적 비용들과 구별된다. 사용가치는 이 경우에 제고되지도 않고 증대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감소된다. 그러나 그것의 감소는 제한되며 그리하여 사용가치는 보존되는 것이다. 상품 속에 존재하는 전대된 가치 역시 제고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에 새로운 대상화된 노동과 산 노동이 첨가된다.

그러면 더 나아가 연구하여야 할 것은 이 비생산적 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상품생산 일반과, 전반적이며 절대적인 형태로서의 상품생산 즉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의 독특한 성격에서 발생하는가 하는 것이며, 타방으로는 그것들이 어느 정도로 온갖 사회적 생산에 공통하며 다만 이 자본주의적 생산 내부에서는 특수한 모습, 특수한 현상형태를 취하는가 하는 것이다.

A. 스미드는 저장 형성이 자본주의적 생산에 독특한 현상이라는 부당한 관점에 서고 있었다.¹⁵⁾ 보다 최근의 경제학자들 예컨대 레일러는 거

꾸로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 저장 형성이 감소된다고 주장한다. 시스몽디는 이것을 자본주의적 생산의 부정적 측면이라고까지 보고 있다.

사실에 있어서는 저장은 세 개의 형태로 즉 생산자본의 형태, 개인적 소비фон드의 형태 및 상품저장 또는 상품자본의 형태로 존재한다. 저장은 비록 그것의 절대적 크기에 있어서는 세 개의 모든 형태에서 동시에 장성할 수 있지만 한 형태의 저장이 증대될 때에는 다른 형태의 그것은 상대적으로 감소된다.

생산이 직접 자체 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고 소부분만이 교환 또는 판매를 위하여 생산되며, 따라서 사회적 생산물이 전혀 상품형태를 취하지 않거나 또는 소부분만이 상품형태를 취하는 곳에서는 상품형태로서의 저장 또는 상품저장이 부의 다만 적은, 얼마 안되는 부분만을 이룬다는 것은 처음부터 명백하다. 그러나 소비фон드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크며 특히 본래의 생활수단фон드는 그러하다. 옛날과 같은 농민정리를 상기하기만 하여도 충분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생산물의 압도적 부분이 직접 상품저장을 형성함이 없이—그것이 그것의 소유자의 수중에 남는 바로 그 때문에—저장적인 생산수단 또는 생활수단으로 전화된다. 그것은 상품저장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바, 스미드의 견해에 의하면 바로 이 때문에 그러한 생산방식에 기초한 사회들에서는 어떠한 저장도 없다는 것이다. A. 스미드는 저장의 형태와 저장 자체를 혼동하고 있으며, 사회는 종래에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았으며 내일의 일은 요행에 맡기었다고 생각한다.¹⁶⁾ 이것은 유치한 오해이다.

15) 『국부론』 제2편 서론.

16) A. 스미드는 저장 형성이 생산물의, 상품으로의 전화에서 그리고 소비적 저장의, 상품적 저장으로의 전화에서 비로소 발생한다고 망상하고 있다. 그런데 실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러한 형태변화는 자체 수요를 위한 생산으로부터 상품생산으로의 이행기에 생산자들의 경리에서 격심하기 짝이 없는 공황을 일으킨다. 예컨대 인도에서는 극히 최근까지 남아 넘치는 해에는 교환대상이 거의 없었던 곡물을 대량적으로 저장하는 관습이 보존되어 있었다. (『보고, 벵갈 및 오릿사의 기근』 하원, 1867년, 제1부, 230페이지 제74호). 미국의 남북전쟁의 결과 돌연히 증대된 면화, 황마 등등에 대한 수요는 인도의 많은 지방들에서 미국생산의 격심

생산자본의 형태로서의 저장은 이미 생산과정에 있거나 또는 적어도 생산자의 수중에 있는 즉 잠재적으로 이미 생산과정에 있는 생산수단들의 형태로서 존재한다. 우리가 전에 본 바와 같이 노동생산능률의 발전에 따라, 따라서 또 이전의 모든 생산방식들보다 노동생산력을 보다 더 발전시키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발전에 따라, 노동수단의 형태로서 생산과정에 종국적으로 합체되고 말며 그 과정에서 다소간에 오랜 기간 부단히 반복 기능하는 생산수단들(건물, 기계 등등)의 양은 부단히 증가되며, 또한 이 증가는 사회적 노동생산력의 발전의 결과인 동시에 전제이다. 이 형태로서의 부가 절대적으로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도 장성하는 것이 (제1부, 제23장, 제2절 참조)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특징이다. 그런데 불변자본의 소재적 존재형태인 생산수단은 비단 이러한 종류의 노동수단들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극히 각이한 가공단계들에 있는 노동재료들과 보조재료들로 되어 있다. 생산의 규모와 협업, 분업, 기계의 적용 등등에 의한 노동생산력의 제고에 따라 나날의 재생산과정에 들어가는 원재료, 보조재료 등등의 양도 증가한다. 이 요소들은 생산장소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와 같이 하여 생산자본의 형태로 존재하는 이러한 저장의 규모는 절대적으로 증가한다. 생산과정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이 저장이 매일 갱신되는가 '또는 다만 일정한 기간을 두고 갱신되는가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예컨대 매일 또는 매주일 소비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원료 등등이 언제나 생산장소에 쌓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과정의 부단성은 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의 존재가 매일의 구입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중단들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또 상품생산물이 매일 또는 매주 판매되어 그 결과로서 불규칙적으로만 그것의 생산요소들로 재전화될 수 있다는 사정에도 의존

한 축소, 미가의 등귀 및 생산자들의 개의, 저장 미곡의 판매를 일으켰다. 설상가상으로 1861~186년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마다가스카르 등등으로의 미중유의 미곡수출이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1866년의, 참예한 성격의 기근이 일어났는데 이 기근은 오릿사 지방에서만도 100만명의 인명을 휩쓸어 갔다(동상지, 174, 175, 213, 214페이지 및 제3부 「베침즈하르에서의 기근에 관한 문제」 32, 33페이지. 여기에서는 기근의 원인중에 낡은 저장의 고갈이 강조되어 있다(제2고에서).

하지 양기를 요구한다. 여하튼 생산자본이 극히 각이한 규모에서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 즉 저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예컨대 방적업자가 면화 또는 석탄을 준비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3개월이나 또는 1개월이나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저장은 비록 그것이 절대적으로는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는 감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각이한 조건들에 의존하는바 이 조건들은 모두 그 본질에 있어서 생산과정에서의 중단이 결코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양의 원료가 공급될 수 있는 속도, 규칙성 및 확실성의 증대에 귀착된다. 이러한 조건들이 적게 충족되면 될수록 즉 공급의 확실성, 규칙성 및 속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생산자본의 잠재적 부분 즉 생산자의 수중에서 아직 가공을 기다리고 있는 원료 등등의 저장이 더욱 크지 않으면 안된다. 이 조건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수준, 따라서 사회적 노동생산력의 발전수준에 역비례한다. 따라서 이 형태로서의 저장도 그렇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장의 감소로서 나타나는 것은(예컨대 레일러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상품자본의 형태로서의 저장 또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상품저장의 감소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동일한 저장의 형태변화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소여의 나라 자체에서 매일 생산되는 석탄량이 크며 따라서 석탄생산의 규모와 정력(精力)이 크다면 방적업자는 자기 생산의 부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큰 석탄저장을 가질 필요가 없다. 석탄공급의 부단하고 확실한 갱신은 이것을 불필요하게 한다. 둘째로 한 과정의 생산물이 생산수단으로서 다른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속도는 운수 및 교통수단의 발전에 의존한다. 운수의 저렴성은 이 경우에 큰 역할을 논다. 예컨대 탄광으로부터 방적공장으로의 석탄의, 부단히 갱신되는 운수는 비교적 저렴한 운수에 의하여 보다 더 장기간용으로 보다 더 다량의 석탄을 준비하는 것보다 고가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이 두 사정은 생산과정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다. 세째로 신용제도의 발전이 영향을 준다. 방적업자가 면화, 석탄 등등의 자기의 저장의 갱신에 있어서 자기의 방사의 직접적인 판매에 의존함이 적으면 적을수록—신용제도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러한 직접적 의존성은 더 적어진다—방사 판매의 유행에 의존하지 않고 소여 규모로 부단한 방사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저장의 상대적 크기가 더욱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네째로 많은 종류의 원

료, 반제품 등등은 생산에 보다 장기간을 요하는데 이것은 특히 농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원료들에 있어서 그러하다. 따라서 생산과정의 중단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물이 낡은 생산물을 교체할 수 있을 때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한 그러한 것들의 일정한 저장에 있어야 한다. 만약 산업자본가의 수중에 있는 이러한 저장이 감소된다면 이것은 그러한 저장이 상인의 수중에서, 상품저장의 형태로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예컨대 운수수단의 발전은 수입항에 놓여있는 면화를 리버풀로부터 맨체스터로 급속히 운반할 수 있게 하며, 그리하여 공장주는 수요에 따라 자기의 면화저장을 비교적 조금씩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신 동일한 면화가 그만큼 더 많은 양으로 리버풀의 상인들의 수중에 상품저장으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저장의 단순한 형태 변화인데 이것을 레일리 등등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 사회적 자본을 고찰한다면 이 경우에도 여전히 동일한 양의 생산물이 저장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개별적 나라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는 예컨대 1년간에 필요한 양의 규모는 운수수단의 발전에 따라 감소된다. 만약 아메리카와 영국간에 많은 수의 기선들과 범선들이 항행한다면 영국에서는 면화저장을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며 따라서 영국에 평균적으로 있지 않으면 안되는 면화저장량은 감소될 것이다. 세계시장의 발전 및 그것과 관련된, 동일한 물품의 획득 원천의 다양화도 바로 동일하게 영향을 준다. 물품은 조금씩 상이한 나라들로부터 상이한 시기에 공급된다.

2. 고유한 의미에서의 상품저장

이미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상품은 생산물의 일반적 형태로 되며 또 자본주의적 생산이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 그렇게 된다. 따라서 생산의 범위가 동등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전의 생산방식들에 비교하든 또는 발전정도가 보다 낮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비교하든 생산물 중 비할 수 없으리 만큼 큰 부분이 상품으로서 존재한다. 그런데 모든 상품—따라서 또 상품에 지나지 않지만 자본가치의 존재형태로서의 상품인 모든 상품자본—은 그것이 생산분야로부터 직접 생산적 또는 개인적 소비로 들어가지 않고 따라서 그 동안에 시장에 있는 한, 상품저장의 요소를 이룬다. 그러므로 생산의 범위가 그

대로 불변이더라도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 상품저장(즉 생산물의 상품형태의 이 자립화 및 고정화)은 그 자체로서 증가한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이것은 저장의 형태변화에 지나지 않는다. 즉 일방에 있어서 상품형태로서의 저장이 증가하는 것은 다만 타방에 있어서 생산 및 소비를 위한 직접적 저장형태로서의 그것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저장의 사회적 형태의 변화에 불과하다. 만약 사회적 총생산물에 비한 상품저장의 상대적 크기뿐만 아니라 그것의 절대적 크기도 동시에 증가한다면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 총생산물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 생산의 규모는 생산물에 대한 직접적 수요에 의해서는 점점 더 적은 정도로 규정되며, 개별적 자본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본의 크기에 의하여, 그의 자본의 증식 충동과 그의 생산과정의 연속 및 확대의 필요성에 의하여 점점 더 큰 정도로 규정된다. 그와 함께 매 개별적 생산분야에서 상품으로서 시장에 있든가 또는 판로를 찾고 있는 생산물량이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상품자본의 형태로 다소간 오랜 기간 고정되는 자본의 양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상품저장은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최대 부분이 고용노동자로, 그날 벌어들인 그날 살아가며 자기의 임금을 매주 받아 매일 지출하는, 따라서 생활수단을 저장형태로서 발견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들로 전화된다. 이 저장의 개개의 요소들이 아무리 심히 유동한다 하더라도 전체 저장이 항상 유동중에 있기 위해서는 그 요소들의 일부가 항상 정체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 모든 계기들은 생산의 형태와 그것에 의하여 전제되는 형태전환—생산물이 유통과정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는—로부터 나온다.

생산물저장의 사회적 형태가 어떠한 간에 그것의 보관은 비용을—생산물의 저장소인 건물, 용기 등등과 또한 생산물의 본성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유해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되지 않으면 안되는 노동 및 생산수단들을—요구한다. 저장이 사회적으로 집중되면 될수록 이 지출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이 지출은 대상화된 형태이든 또는 산 형태이든 간에 사회적 노동의 일부분을 이루며, 따라서 자본주의적 형태에 있어서는 자본의 지출을 이루는바, 그것은 생산물의 형성 그것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따라서 생산물로부터의 공제분을 이룬다. 이 지

출들은 필요하며, 사회적 부의 비생산적 비용이다. 그것들은 사회적 생산물의 보존비인바, 상품저장의 요소로서의 사회적 생산물의 존재가 단순히 생산의 사회적 형태 따라서 상품형태 및 그 형태의 전화로부터 발생하는 또는 우리가 상품저장을 다만 생산물저장—비록 상품저장의 형태, 유통과정에 속하는 생산물저장의 이 형태로서는 아니더라도 모든 사회에 공통적인—의 하나의 특수한 형태로서 고찰하든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비용들이 어느 정도로 상품가치에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자본가가 생산수단 및 노동력에 전대한 그의 자본을 생산물로 판매되어야 할 일정한 양의 기성 상품으로 전화시켰는데 이것이 판매되지 않고 저장된다면 이 기간 중 그의 자본의 증식과정이 정체될 뿐만이 아니다. 이 저장을 건물에 보관하는 비용, 추가적인 노동에 대한 비용 등등은 직접적인 손실을 이룬다. 만약 자본가가, 나의 상품은 6개월간이나 판매될 수 없었으며 그리하여 이 6개월간 그것을 보관하는 데 이러 이러한 액수의 자본을 늘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x 액의 비생산적 비용을 들였다고 말한다면 결국 나타난 구매자는 그를 비웃을 것이다. 구매자는 말할 것이다. 그것은 더욱 안되었는데요(Tant pis pour vous), 당신의 곁에 다른 판매자가 있는데 그의 상품은 바로 엇그제 만든 것이다. 당신의 상품은 팔다 남은 것이고 아마도 만든 지가 오래 되었으므로 다소나마 손상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의 경쟁자보다 더 늦게 팔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상품의 생활조건들은 상품생산자가 자기 상품의 현실적 생산자인가 또는 그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자 즉 사실상 그것의 현실적 생산자들의 대표자에 불과한가 하는 것에 의하여는 하등 변화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물건을 화폐로 전화시켜야 한다. 그 물건이 상품형태로 고정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비생산적 비용들은 그의 개인적인 모험에 속하며 이것은 그의 구매자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구매자는 그에게 그의 상품의 유통기간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또는 예측되는 가치변혁의 시기에 자본가가 자기 상품을 고의로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가 추가적인 비생산적 비용을 실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다만 가치변혁이 일어나는가 않는가, 그의 투기가 적중하는가 안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가치변혁은 그의 비생산적 비용의 결과가 아니다. 그리하여 저장의 형성이 유통의 정체를 초래하는 한, 이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비용은 상품에 어떠한 가치도 첨가하지 않는다. 타방으로 자본이 유통분야에 체류함이 없이는, 얼마동안 상품형태로 머무름이 없이는 어떠한 저장도 현존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유통의 정체가 없이는 어떠한 저장도 현존할 수 없으니, 이것은 마치도 화폐예비의 형성이 없이는 어떠한 화폐 유통도 현존할 수 없는 것과 전혀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상품저장이 없이는 어떠한 상품유통도 현존할 수 없다. 상품저장의 이 필연성이 자본가에게 $W'-G'$ 에서는 부닥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G-W$ 에서는 그에게 부닥치며, 그의 상품자본에 대하여서는 부닥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를 위한 생산수단들과 그의 노동자들을 위한 생활수단들을 생산하는 다른 자본가들의 상품자본에 대해서는 부닥친다.

저장의 형성이 자유의사에서 나오는 것인가 또는 자유의사에서 나오지 않는 것인가 즉 상품생산자가 고의로 저장을 보유하는가 또는 유통과정 자체의 사정들로 말미암아 상품판매가 부닥치는 방해의 결과로서 그의 상품이 저장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변경시키지 못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유의사에서 나오는 저장형성과 자유의사에서 나오지 않는 그것과를 구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유익하다. 자유의사에서 나오지 않는 저장의 형성은 상품생산자의 지식 여하에 의존하지 않으며 그의 의사에 어그러지는 유통의 정체에서 발생하든가 또는 유통의 정체와 동일한 것이다. 자유의사에서 나오는 저장 형성을 특징짓는 것은 무엇인가? 판매자는 여전히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자기의 상품을 팔아버리려고 한다. 그는 부단히 생산물을 상품으로서 팔려고 내놓는다. 만약 그가 판매를 보류한다면 생산물은 상품저장의 다만 가능한 요소를 이룰 뿐이고 현실적인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상품으로서의 상품은 여전히 그것의 교환가치의 담당자일 따름이고 상품이 그러한 것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이 상품형태를 벗어버리고 화폐형태를 취함으로써이며 또 그 이후이다.

상품저장은 그것이 소여의 기간 중 수요의 크기에 대하여 충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 경우에 구매자의 범위의 부단한 확대가 고려된다. 예컨대 하루 동안 충분하려면 시장에 있는 상품의 일부분이 유동하여 화폐로 전화되는 동안에 다른 일부분은 부단히 상품형태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일부분이 유동하고 있는 동안에 정제하는 부분은 물론 저장 자체의 크기가 감소하는 데 따라 부

단히 감소하여 결국에는 전부 판매되고 만다. 따라서 이 경우에 상품의 정체는 상품판매의 필요조건으로 인정된다. 또 그것의 크기는 판매의 평균적 크기 또는 수요의 평균적 크기보다 더 크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평균적 크기 이상의 수요는 충족될 수 없을 것이다. 타방으로 저장은 그것이 부단히 해소되기 때문에 부단히 갱신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갱신은 결국에 있어서 다만 생산으로부터, 상품의 공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이 공급이 외국으로부터 오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사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이 갱신은 상품의 재생산에 필요한 기간에 의존한다. 상품저장은 이 기간 중에 충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품저장이 최초의 생산자들의 수중에 남지 않고 도매상인으로부터 소매상인에 이르는 각이한 저장소를 통과한다는 사정은 현상을 변경시킬 뿐이고 사태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사회적으로 보면 상품이 생산적 또는 개인적 소비로 들어가 버리고 있지 않은 한, 자본의 일부는 여전히 상품저장의 형태로 있다. 생산자 자신이 생산에 직접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고정적인 범위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평균적인 수요에 상응하는 저장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생산기간에 상응하여 구매기간이 형성되며 상품은 그것이 동일 종류의 신문에 의하여 교체될 수 있을 때까지 다소간의 기간 동안 저장을 형성한다. 이러한 저장 형성에 의해서만 유통과정 따라서 또 유통과정을 포함하는 재생산과정의 부단성과 연속성이 보장된다.

비록 W 는 아직 시장에 있더라도 $W'-G'$ 가 W 의 생산자에 대해서는 이미 완수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만약 생산자 자신이 자기 자신의 상품을 종국적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저장하려고 한다면 그는 2중의 자본을 운동케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즉 하나는 상품생산자로서이며 다른 하나는 상인으로서이다. 상품 자체에 대해서는—그것을 개개의 상품으로서 고찰하든 또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고찰하든간에—저장 형성의 비용이 상품생산자의 부담으로 되든가 또는 A 로부터 Z 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상인들의 부담으로 되든가 하는 것은 사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상품저장이 저장—소여 규모의 사회적 생산에서, 상품저장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생산적 저장(잠재적 생산фон드) 또는 소비фон드(소비수단의 예비)로서 존재하게 될—의 상품형태에 지나지 않는 한, 저장의 보

관에 필요한 비용 따라서 저장형성의 비용 즉 이 목적에 소비되는 대상화된 노동 또는 산 노동은, 사회적 생산폰드이든 또는 사회적 소비폰드이든 간에 그것의 보관비용의 일정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 비용으로 말미암은 상품가치의 제고는 이 비용을 각이한 상품들 간에 비례적으로만 분배하는바, 왜냐하면 이 비용들은 각이한 종류의 상품들에 있어서 각이하기 때문이다. 저장형성의 비용은 그것이 사회적 부의 존재조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부로부터의 공제분이다.

상품저장이 상품유통의 조건이며, 그리고 심지어는 상품유통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형태인 한에 있어서, 따라서 이 외관상의 정체가 유통 자체의 형태인 한에 있어서—화폐예비의 형성이 화폐유통의 조건인 것과 마찬가지로—오직 이 한에 있어서만 이 정체는 정상적이다. 이와는 반대로 유통의 저수지에 머무르고 있는 상품들이 뒤이어 닥쳐오는 생산의 파도에 자리를 내주지 않으며 그리하여 저수지가 가득차게 되는 경우에는 상품저장은—마치도 화폐유통이 정체할 때 퇴장화폐가 증대되는 것과 전혀 마찬가지로—유통의 정체의 결과로 확대된다. 이 경우에 이 정체가 산업자본가의 창고에서 발생하는가 또는 상인의 창고에서 발생하는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그 경우에는 상품저장은 중단되지 않는 판매의 조건인 것이 아니라 상품이 판매되지 않는 결과이다. 비용은 동일하지만, 이제는 그 비용이 순전히 형태로부터, 즉 상품을 화폐로 전화시킬 필요성으로부터 그리고 이 형태변화의 곤란성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품의 가치에 들어가지 않고 가치실현에 있어서의 공제분을, 가치손실을 이룬다. 저장의 정상적 형태와 비정상적 형태는 형태상으로는 구별되지 않고 양자가 다 유통의 정체이기 때문에 이 현상들은 혼동될 수 있으며, 더구나 생산행위자들 자신을 용이하게 속일 수 있는바, 왜냐하면 생산자들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수중으로 넘어간 그의 상품들의 유통과정이 정체한다 하더라도 그의 자본의 유통과정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과 소비의 규모가 증대되면, 기타의 조건들이 그대로 불변이라면 상품저장도 증대된다. 그것은 종전의 속도로써 갱신되며 흡수되나, 그것의 규모는 더 커진다. 그리하여 유통의 정체로 말미암아 팽창되고 있는, 상품저장의 규모는 재생산과정의 확대의 징후로 오인될 수 있으며, 특히 신용체계의 발전에 따라 현실적 운동이 신비화될 수 있게 되자 그렇다.

저장 형성의 비용은 1) 생산물량의 양적인 감소(예컨대 곡분의 저장에 서와 같이) 2) 질의 손상 3) 저장의 보존에 필요한 대상화된 노동과 산 노동으로써 구성된다.

제3절 운 수 비

여기에서 유통비의 모든 세목들 예컨대 포장, 품별(品別) 등등과 같은 것들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일반적인 법칙은 다만 상품의 형태전화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유통비는 상품에 어떠한 가치도 첨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또는 가치를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비용에 지나지 않는다. 이 비용에 지출되는 자본(자본에 의하여 지휘되는 노동도 포함하여)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비생산적 비용(faux frais)에 속한다. 이 비용의 보상은 잉여생산물로부터 실시되지 않으면 안되며, 전체 자본가계급을 고찰한다면 잉여가치 또는 잉여생산물로부터의 공제분을 이루는바, 이것은 마치도 노동자가 생활수단의 구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상실된 시간인 것과 전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운수비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노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단히나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자본의 순환 또 이 순환의 일부분을 이루는 상품의 형태변화의 내부에서는 사회적 노동의 물질변환이 진행된다. 이 물질변환은 생산물들의 공간변환,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의 생산물들의 현실적인 운동을 조건짓는다. 그러나 상품의 유통은 생산물의 물리적 운동이 없이도 진행될 수 있으며 생산물의 운수는 상품의 유통이 없이, 심지어는 생산물의 직접적인 교환이 없이도 진행될 수 있다. 값이 울에게 판매하는 가옥은 상품으로서 유통하나, 그러나 그것은 한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 면화나 선철같은 가동적인 상품가치들도 그것들이 수십개의 유통과정을 통과하며 투기자들에 의하여 구매되고 다시 판매되는 그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상품창고에 앉아 있다.¹⁷⁾ 이 경우에 현실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물건에 대한 소유명의이다. 타방으로 예컨대 잉카국(國)에서는 사

17) 슈또르호는 그러한 유통을 인공적인(factice) 유통이라고 부르고 있다.

회적 생산물이 상품으로서 유통하지도 않았으며 또 교환거래를 통하여 분배되지도 않았으나 운수업이 거대한 역할을 놀았다.

그러므로 운수업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유통비의 원인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수한 현상형태는 사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생산물의 양은 그것의 운수에 의하여 증가하지 않는다. 또 운수로 말미암아 생산물의 자연적 속성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변화는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기도되는 유용효과가 아니라 불가피한 해악(害惡)이다. 그러나 물건들의 사용가치는 그것들의 소비에 있어서만 실현되며 그것들의 소비는 그것들의 장소 변동 따라서 운수업이라는 추가적인 생산과정을 필요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따라서 운수업에 투하된 생산자본은 수송되는 생산물에 가치를 첨가하는바, 그것은 일부분은 운수수단으로부터의 가치 이전에 의해서이며, 일부분은 운수노동에 의한 가치첨가에 의해서이다. 이 후자의 가치첨가분은 모든 자본주의적 생산에서처럼 노임의 보상과 잉여가치로 분할된다.

매개 생산과정 내부에서는 노동대상의 장소이동과 이에 필요한 노동수단들과 노동력은 큰 역할을 논다. 예컨대 면화가 소면실로부터 정방실로 옮겨지며, 석탄이 갱내로부터 지상으로 끌어올려지는 경우에 그렇다. 완성된 상품으로서의 완성된 생산물이 자립적인 한 생산장소로부터 이 장소와 공간적으로 떨어진 다른 생산장소로 이동될 때에도 동일한 현상—다만 더 큰 규모에서의—을 볼 수 있다. 한 생산장소로부터 다른 생산장소의 생산물의 운수에 이어 또한 생산분야로부터 소비분야로의 완성된 생산물의 운수가 진행된다. 생산물이 이러한 운동을 완료할 때 비로소 그것은 소비를 위하여 준비된 것으로 된다.

전에 해명한 바와 같이 노동생산능률은 노동에 의하여 창조되는 가치와 역비례한다는 것은 상품생산의 일반적 법칙이다. 이 법칙은 다른 모든 산업에 타당하듯이 운수업에도 타당하다. 상품을 소여 거리만큼 수송하는 데 드는 죽은 노동과 산 노동의 분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노동생산력은 더 크며 또 거꾸로의 경우에는 그 거꾸로이다.¹⁸⁾

18) 리카아도는 상업이 운수비에 의하여 생산물을 고가하게 또는 생산물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것을 상업의 혜택이라고 보는 세이를 인용하고 있다.

운수에 의하여 상품에 첨가되는 가치의 절대적 크기는 기타의 조건들이 불변이라면 운수업의 생산력에 역비례하고 운반되어야 할 거리에 정비례한다.

기타의 조건들이 불변이라면 운수비가 상품의 가격에 첨가하는 가치의 상대적 부분은 상품의 용적과 중량에 정비례하며 상품의 가치에 역비례한다. 그러나 이것을 수정하는 사정들이 많이 있다. 예컨대 물품의 상대적인 취약성(脆弱性), 부패성, 폭발성에 따라 운수는 다소간의 예방책을, 따라서 다소간의, 노동 및 노동수단의 지출을 필요로 한다. 이 영역에서 대철도업자들은 환상적으로 종류(種類)를 만들어 냄에 있어서 식물학자나 동물학자들보다도 더 큰 천재를 발휘한다. 예컨대 영국의 철도에서의 화물 분류는 수권의 책에 가득하며, 또한 일반적 원칙으로서는 화물들의 가지각색의 자연적 속성들을 그만큼 많은 수의 운수상 결합들로 그리고 사취를 위한 면할 수 없는 구실들로 삼으려는 경향에 기초하고 있다.

“전에는 크레이트(일정한 용량의 한 상자) 당 11파운드 스텔링하던 유리는 산업의 발전과 유리세(稅)의 폐지로 말미암아 현재는 겨우 2파운드 스텔링밖에 안한다. 그러나 운수비는 종전과 다름없이 높으며 수상운수에서는 종전보다도 더 높다. 종전에는 연(鉛) 세공을 위한 유리 및 유리제품은 버밍검으로부터

“상업은—하고 세이는 말한다—상품을 원산지에서 입수하고 그것을 소비지로 수송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상업은 원생산지에서의 가격과 소비지에서의 가격과의 전체 차액만큼 상품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게 한다”(세이, 제2부, 458페이지). 리카아도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과연 그렇다. 그러나 추가적 가치는 어떻게 하여 첨가되는가? 생산비에 대하여 첫째로는 운수비를 첨가하고 둘째로는 상인이 투하한 자본에 대한 이윤을 첨가함으로써이다. 따라서 이 상품이 보다 많은 가치가 있는 것은 다만, 그것이 소비자에 의하여 구매되기 전에 그것의 생산과 운수에 보다 많은 노동이 지출되기 때문이라는, 다른 모든 상품이 보다 많은 가치를 갖게 되는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이다. 그리하여 이것을 상업의 우월성의 하나라고 말하여서는 안된다”(리카아도 『정치경제학 원리』 3판, 런던, 1821년, 309~310페이지)[러시아어판, 사회경제서적 출판사, 1935년, 165페이지].

50마일 이내에서는 톤당 10실링으로 운반되었다. 현재는 운임이 상품의 취약성으로 인한 위험을 구실로 3배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철도경영자는 실지 부서진 것을 변상하지 않는다.”¹⁹⁾

또 운수비가 상품에 첨가하는 가치의 상대적 부분은 상품의 가치에 역비례한다는 사정은 대철도업자들에게 있어서 상품들의 운임을 그것의 가치에 정비례하여 부과하는 특수한 이유로 된다. 이 점에 대한 산업가들과 상인들의 불평은 여기에서 인용한 보고서 중의 증언들의 매 페이지에 반복되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은 운수 및 교통수단들의 발전에 의하여 또 운수의 집중—규모의 증대—에 의하여 개개의 상품들에 대한 운수비를 감소시킨다.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은 사회적 노동—산 노동 및 대상화된 노동—중 상품의 운수에 지출되는 부분을 증대시키는데, 첫째로는 모든 생산물들의 대다수를 상품으로 전화시킴으로써이며 둘째로는 지방적 시장들을 원거리의 시장들로써 교체함으로써이다.

공간에서의 상품들의 유통 즉 사실상의 이동은 상품들의 운수에 의하여 실현된다. 운수업은 일방으로는 자립적인 생산부문을 이루며, 그러므로 생산적 자본의 특수한 투하 분야를 이룬다. 타방으로는 그것은 유통과정의 내부에서의 그리고 유통과정을 위한 생산과정의 계속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에 의하여 구별된다.

19) 「칙명 철도위원회」 31페이지, 체630호.

제2편

자본의 회전

제7장 회전기간과 회전수

제8장 고정자본과 유동자본

제9장 전대자본의 총회전, 회전순환

제10장 고정자본 및 유동자본에 관한 제학설

중농주의자들과 아담 스미드

제11장 고정자본 및 유동자본에 관한 제학설

리카아도

제12장 노동기간

제13장 생산기간

제14장 유통기간

제15장 회전기간이 전대자본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

제16장 가변자본의 회전

제17장 잉여가치의 유통

제2편 자본의 회전

제7장 회전기간과 회전수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소여자본의 총유통기간은 그 자본의 유통기간과 생산기간을 합한 것과 같다. 그것은 일정한 형태로서의 자본가치의 전대의 순간으로부터, 과정을 밟고 있는 자본가치의, 동일한 형태로서의 복귀까지의 기간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규정적 목적은 언제나 전대된 가치의 증식인바, 이 가치가 자립적 형태로 즉 화폐형태로 전대되어 있든, 또는 상품으로서 전대되어 있어서 그것의 가치형태가 전대된 상품의 가격에서 관념적인 자립성만을 갖게 되든간에 그렇다. 어느 경우에도 이 자본가치는 자체의 순환중에 각이한 존재형태들을 통과한다. 이 자본가치의 자체 동일성은 자본가의 장부에서 또는 계산화폐의 형태에서 확인된다.

$G \cdots G'$ 라는 형태를 보든 $P \cdots P$ 라는 형태를 보든간에 어느 형태도 1) 전대된 가치가 자본가치로서 기능하여 자체를 증식시켰다는 것 2) 이 가치는 과정을 밟은 후에, 과정을 개시하였던 당시의 형태로 복귀하였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전대된 가치 G 의 증식과 동시에 자본의 이 형태(화폐형태)로의 복귀는 $G \cdots G'$ 에서는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제2의 형태에서도 일어난다. 왜냐하면 P 의 출발점은 일정한 가치를 가진 생산 제요소, 상품들의 현존이기 때문이다. 이 형태는 이 가치의 증식을 포함하고 있으며(W' 와 G') 또 최초의 형태로의 복귀를 포함하고 있는바, 왜냐하면 제2의 P 에 있어서는 전대된 가치는 그것이 최초로 전대되었던 당시의 생산 제요소의 형태를 다시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생산이 자본주의적 형태를 취한다면 재생산도 같은 형태를 취한다. 자본주의적 생산방식하에서는 노동과정이 가치증식과정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생산도 또한 전대된 가치를 자본으로서 즉 증식하는 가치로서 재생산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제1부, 제21장)[조선어 역, 제1권, 제2분책, 263~264페이지].

세 형태들 I) $G \cdots G'$ II) $P \cdots P$ III) $W' \cdots W'$ 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서 즉 II 형태($P \cdots P$)에서는 과정의 갱신인 재생산과정이 현실적인 것으로서 표현되고 있으나 I 형태에서는 가능한 것으로서만 표현되고 있다는 것으로서 구별된다. 그러나 이 양 형태는 전대된 자본가치가—화폐형태로서이든 소재적 생산 제요소의 모습으로서이든 간에—출발점이 되며 따라서 또 복귀점으로 된다는 것으로서 제3형태와 구별된다. $G \cdots G'$ 에서는 복귀는 $G' = G + g$ 로 표현된다. 만약 과정이 종전의 규모로 갱신된다면 G 는 재차 출발점으로 되며 g 는 과정에는 들어가지 않고 다만 G 는 자본으로서 자기증식하였으며 따라서 잉여가치 g 를 낳았으나 이것을 자기로부터 밀어내던졌다는 것을 보여 줄 뿐이다. $P \cdots P$ 의 형태에서는 생산 제요소 P 라는 형태로 전대된 자본가치가 역시 출발점이 된다. 이 형태는 전대된 자본가치의 증식을 포함하고 있다. 단순재생산이 진행된다면 동일한 자본가치가 P 라는 동일한 형태로 자체의 과정을 새로 개시한다. 축적이 진행된다면 이제는 P' (가치의 크기로서는 $= G' = W'$)가 증대된 자본가치로서 과정을 개시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비록 이전보다 더 큰 자본가치를 가지고 개시된다 하더라도 시초 형태로서의 전대된 자본가치를 가지고 다시 개시된다. 이와는 반대로 III 형태에서는 자본가치는 전대된 것으로서 과정을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증식된 것으로서, 전대된 자본가치는 그 일부분에 불과한, 상품형태로 있는 부 전체로서 과정을 개시한다. 최후의 형태는 개별적 자본들의 운동이 사회적 총자본의 운동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되는 제3편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본의 회전—이것은 항상, 화폐형태로서이든 상품형태로서이든 간에 자본가치의 전대로써 개시되고 또 항상 순환하는 자본가치의, 전대되던 당시의 형태로서의, 복귀를 조건짓는다—의 연구에 있어서는 이용될 수 없는 것이다. I 및 II의 순환중에서, 잉여가치형성에 대한 회전의 영향이 주로 주목의 대상으로 되는 한 전자가, 생산물 형성에 대한 회전의 영향이 주로 주목의 대상으로 되는 한 후자가 건지되어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순환의 각이한 형태들 간에 계선을 긋지도 않았으며 이 형태들을 자본회전에 관련시켜 따로따로 고찰하지도 않았다. 보통은 $G \cdots G'$ 의 형태가 취하여지는데, 왜냐하면 이 형태는 개별적 자본가를 지배하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화폐가 다만 계산화폐의 모습으로서만 출발점을

이루는 경우에도 그의 계산에 있어서 그에게 복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경제학자들은 생산 제요소의 형태로서의 출자로부터 출발하여 회수에 이르기까지의 운동을 고찰하는 데 이 경우에 그 회수의 형태-상품으로서인가 또는 화폐로서인가-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예컨대 “경제순환……즉 출자될 때부터 회수될 때까지의 생산의 전행정. 농업에서는 파종시기는 경제순환의 개시이며 수확은 그것의 종결이다(Economic cycle, …the whole course of production, from the time that outlays are made till returns are received. In agriculture seedtime is its commencement, and harvesting its ending” (S.P. 뉴만 『정치경제학 요론』 앤도버 및 뉴욕, 81페이지). 다른 경제학자들은 W'(III 형태)로부터 시작한다.

“생산교역의 세계는 원형(圓形)을 이루면서 순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우리는 이것을 경제순환이라고 부르고자 하며 여기에서는 기업이 자체의 순차적인 거래들을 수행한 후에 그 기업이 출발 당시의 점으로 다시 도달하자마자 매개 회전은 완료된 것이다. 개시는 자본가가 수입금을 받음으로써 그의 자본이 그에게로 환류하는 점부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으로부터 착수하여 자본가는 새로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노임으로서 생존수단을, 또는 오히려 이 생존수단을 얻는 힘을 나누어 주며, 그가 거래하는 물품을 그들로 하여금 제조케 하고 이 물품을 시장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판매하고 상품 매상금으로 자기의 전자본지출의 보상을 받음으로써 이 일련의 운동의 순환을 끝마친다.” (T. 찰머스 『정치경제학에 관하여』 제2판, 런던, 1832년, 84페이지 이하).

개별적 자본가에 의하여 임의의 생산부문에 투자된 총자본가치가 자체의 운동의 순환을 완수하면 그것은 다시 자체의 개시형태로 있으며 이제 다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 이 자본가치는 가치가 자본가치로서 영원한 것으로 되고 증식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다. 개개의 순환은 자본의 생애에서 부단히 반복되는 한 절(節), 따라서 한 기간을 이룰 따름이다. $G \cdots G'$ 라는 기간이 끝나면 자본은 다시 화폐자본의 형태로 있으며 이 화폐자본은 자본의 생산과정 또는 증식과정도 포함하는 일련의 형태전화를 새로 통과한다. $P \cdots P'$ 라는 기간이 끝나면 자본은 다시 자체의 순환의 갱신을 위한 전제를 이루는 생산 제요소의

형태로 있다. 자본의 순환은 개개의 행정으로서가 아니고 주기적인 과정으로서 규정되면 자본의 회전이라고 불리운다. 이 회전의 길이는 자본의 생산기간과 유통기간의 합계로써 주어져 있다. 이 기간들의 합계가 자본의 회전기간을 이룬다. 따라서 그것은 총자본가치의 한 순환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순환기간에 이르는 기간을 포괄하며, 자본의 생활과정에서의 주기성, 또는 동일한 자본가치의 증식과정, 또는 생산과정의 갱신, 반복의 기간—이라고 말하고자 한다면—을 계량(計量)하는 것이다.

만약 개개의 자본을 위하여 회전기간을 촉진하거나 또는 단축할 수 있는 개별적 모험을 도외시한다면 제 자본의 회전기간은 그것들의 투자분야가 각이함에 따라 각이하다.

노동일이 노동력의 기능의 자연적 측정단위인 것과 마찬가지로 1년은 과정중에 있는 자본 회전의 자연적 측정단위이다. 이 측정단위의 자연적 기초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모국(母國)인 온대(溫帶)의 가장 주요한 토지 결실들이 연 1회의 생산물들이라는 것이다.

회전기간의 측정단위로서의 1년을 U 로, 일정한 자본의 회전기간을 u 로, 그 자본의 회전수를 n 으로 표시한다면 $n=U/u$ 이다. 따라서 예컨대 회전기간 u 가 3개월이라면 $n=12/3=4$ 이며, 자본은 연간에 4회전을 수행한다. 또는 네 번 회전한다. u 가 18개월이라면 $n=12/18=2/3$ 로 되며 자본은 연간에 자체의 회전기간의 $2/3$ 만을 경과한다. 만약 자본의 회전기간이 몇 년에 이룬다면 그것은 1년을 몇 배한 것으로 계산된다.

자본가에 있어서 그의 자본의 회전기간은 그가 자기의 자본을 증식하고 최초의 모습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자기 자본을 전대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간이다.

회전이 생산과정 및 가치증식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연구하기 전에, 유통과정으로부터 자본에 부착하여 그것의 회전형태에 영향을 주는 두 개의 새로운 형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제8장 고정자본과 유동자본

제1절 형태상 차이

제1부 제6장에서 본 바와 같이 불변자본의 일부분은 그것이 생산과정에 들어갈 때의 일정한 사용형태를, 그것의 기여에 의하여 형성되는 생산물에 대립하여 유지한다. 따라서 그것은 장단간의 기간중 부단히 반복되는 노동과정에서 부단히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예컨대 노동용 건물, 기계 등등 간단히 말하여 우리가 노동수단이라는 명칭으로 총괄하는 모든 것이 그렇다. 불변자본의 이 부분은 그 자체의 사용가치와 함께 그 자체의 교환가치를 상실하는 데 비례하여 생산물에 가치를 교부한다. 이 가치교부 또는 그와 같은 생산수단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되는 생산물로의 그것의 가치의 이 이행은 평균계산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것은 생산수단이 생산과정에 들어가는 순간으로부터, 그것이 완전히 소모되어 못쓰게 되며 동종의 신제품에 의하여 대체 또는 재생산되지 않으면 안되는 순간까지의 그것의 기능의 평균길이에 의하여 측정된다.

따라서 불변자본의 이 부분—고유한 의미에서의 노동수단—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자본의 일부분은 불변자본 즉 생산수단의 형태로 전대되어 있는바, 이 생산수단은 그것이 노동과정에 들어가는 당시의 자립적인 사용모습을 보존하는 동안 노동과정의 요인으로서 기능한다. 완성생산물 따라서 또 생산물로 전화된 한에 있어서의 생산물 형성의 제요인은 생산과정으로부터 밀려나와 상품으로서 생산분야로부터 유통분야로 넘어 간다. 이와는 반대로 노동수단은 일단 생산분야로 들어간 다음에는 결코 여기를 떠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그것들의 기능에 의하여 생산분야에 결박된다. 전대된 자본가치의 일부분은 생산과정내에서의 노동수단의 기능에 의하여 규정되는 이 형태에 고정된다. 노동수단의 기능 따라서 또 그것의 소모에 따라

그것의 가치의 일부분은 생산물로 이행하며 다른 부분은 노동수단에, 따라서 또 생산과정에 고정된 채로 남는다. 이와같이 고정된 가치는 노동수단이 퇴역(退役)할 때까지 부단히 감소되며, 따라서 또 그것의 가치는 장기간 또는 단기간에 걸쳐, 부단히 반복되는 일련의 노동과정으로부터 나오는 생산물량에 분배된다. 그러나 노동수단이 아직도 노동수단으로서 작용하며 따라서 아직도 동종의 신함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아도 좋은 동안에는 불변자본 가치는 언제나 노동수단에 고정된 채로 남아 있는바, 최초에 노동수단에 고정된 가치의 다른 부분은 생산물로 이행하고 따라서 상품저장의 구성부분으로서 유통한다. 노동수단의 수명이 길면 길수록, 그것의 마멸이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불변자본 가치는 더 오래 이 사용형태에 고정된 채로 남는다. 그러나 노동수단의 수명 정도가 어떠한간에 노동수단이 가치를 교부하는 비율은 항상 그 노동수단이 기능하는 총기간에 역비례한다. 동등한 가치를 가진 두 개의 기계 중에서 하나는 5년간에 마멸되고 다른 하나는 10년간에 마멸된다면, 동일한 기간에 전자는 후자보다 2배 만큼 많은 가치를 교부한다.

자본가치 중 노동수단에 고정된 이 부분도 다른 모든 부분과 마찬가지로 유통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 바와 같이 총자본가치는 부단한 유통중에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는 모든 자본이 유통하고 있는 자본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고찰되는 자본부분의 유통은 독특하다. 첫째로, 이 부분은 자체의 사용형태로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가치만이 유통하는 것이며, 그것도 그 가치가 노동수단으로부터 상품으로서 유통하는 생산물로 이행하는 정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부분적으로 유통하는 것이다. 노동수단이 기능하는 전기간에 그것의 가치의 일부분은 이 노동수단의 협력으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하여 자립성을 보존하면서 항상 이 노동수단에 고정된 채로 남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불변자본의 이 부분은 고정자본(fixes Kapital)의 형태를 얻는다. 그와는 반대로 생산과정에 전대된 자본의 기타 모든 소재적 구성부분은 이에 대립하여 유동자본(zirkulierendes oder flüssiges Kapital)을 형성한다.

생산수단의 일부분 즉 증기기관에 의하여 소비되는 석탄과 같이 노동수단이 기능하는 동안에 노동수단 자체에 의하여 소비되거나 또는 조명용 가스 등등과 같이 행정을 지지할 따름인 그러한 보조재료는 소재적으로는 생산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그것들의 가치는 생산물 가치의 일부분

을 이룬다. 생산물은 자기 자체의 유통으로 이러한 생산수단의 가치도 유통시킨다. 이 점에 있어서 이러한 생산수단은 고정자본과 공통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수단이 들어가는 모든 노동과정에서 이것들은 전적으로 소비되며, 따라서 새로운 노동과정마다 동종의 신제품에 의하여 전적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들은 기능하는 동안 자체의 자립적인 사용 모습을 보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또 그것들이 기능하는 동안 자본 가치의 어떠한 부분도 그것들의 종전의 사용 모습에, 그것들의 현물 형태에 고정된 채로 남아 있지 않는다. 이 보조재료 부분이 소재적으로는 생산물에 들어가지 않고 자체의 가치상으로서만 가치부분으로서 생산물 가치에 들어가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 보조재료의 기능이 생산분야에 결박되어 있다는 사정은 예컨대 램제이와 같은 일부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그릇되게도(고정자본과 불변자본을 혼동함과 동시에) 보조재료를 고정자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생산수단 중 소재적으로 생산물에 들어가는 부분 즉 원료 등등은 그렇게 됨으로써 부분적으로는 후에 소비수단으로서 개인적 소비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를 얻는다. 고정자본의 소재적 담당자인 고유한 의미에서의 노동수단은 생산적으로만 소비되며 개인적 소비에 들어갈 수 없는바,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것들의 도움으로 형성되는 생산물 또는 사용가치에는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것에 대립하여 그것들이 완전히 마멸될 때까지 자체의 자립적 모습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운수수단은 예외이다. 운수수단이 자체의 생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따라서 생산분야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가져오는 유효효과인 장소 변경은 동시에 예컨대 여객의 개인적 소비에도 들어간다. 이 경우에 여객은 다른 소비수단의 사용에 대하여 댓가를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에 대한 댓가를 지불한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원재료와 보조재료는 예컨대 화학공업에서와 같이 서로 구별이 안되는 수가 있다. 노동수단, 보조재료 및 원재료도 그와 같이 구별이 안되는 수가 있다. 예컨대 농경에서는 토양을 개량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물질은 부분적으로 생산물 형성의 요인으로서 생산물에 들어간다. 타방으로 그 물질의 작용은 장기간 예컨대 4~5년에 걸쳐 분배된다. 그러므로 그것의 일부분은 소재적으로 생산물에 들어가며 그럼으로써 동시에 자체의 가치를 생산물로 이전하는 데, 다른 부분은 종래의 사용형태대로 자체의 가치도 고정시킨다. 이 부분은 생산수단으로서 존속

하며 따라서 고정자본의 형태를 얻는다. 황소는 역축(役畜)으로서는 고정자본이다. 그러나 그것이 식용으로 된다면 노동수단으로서는 따라서 고정자본으로서는 기능하지 않는다.

생산수단에 지출된 자본가치 부분에 고정자본의 성격을 부여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이 자본부분의 유통의 독특한 방식에 있다. 유통의 이러한 독특한 방식은 노동수단이 자체의 가치를 생산물에 교부하는 독특한 방식에서, 또는 노동수단이 생산과정중 가치형성의 요인으로서 노는 독특한 방식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 후자의 방식 자체는 또한 노동과정에서의 각이한 노동수단의 기능의 특성에서 나온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어떤 한 노동과정으로부터 생산물로서 나오는 동일한 사용가치는 생산수단으로서 다른 노동과정에 들어간다. 어떤 생산물을 고정자본으로 만드는 것은 생산과정에서의 노동수단으로서의 그것의 기능에 불과하다. 이와는 반대로 생산물, 그것이 과정에서 갓 나오는 한에서는 그것은 결코 고정자본이 아니다. 예컨대 기계제조 공장주의 생산물 또는 상품으로서의 기계는 그의 상품자본에 속한다. 기계가 고정자본으로 되는 것은 비로소 이것을 생산적으로 적용하는 자본가인 그것의 구매자의 수중에서이다.

기타의 모든 조건이 동등하다면 노동수단의 고정성의 정도는 그것의 수명에 따라 증진한다. 즉 노동수단에 고정된 자본가치와, 이 가치량 중 노동수단이 반복되는 노동과정에서 생산물에 교부하는 부분간의 차(差)의 크기는 노동수단의 수명에 의존한다. 이 가치교부가 완만히 진행되면—그리하여 가치는 동일한 노동과정이 반복될 때마다 노동수단으로부터 교부된다—될수록 고정된 자본은, 더욱 크며, 생산과정에서 적용되는 자본과 거기에서 소비되는 자본간의 차이는 더욱 크다. 이 차이가 소멸될 때 노동수단은 수명을 다 살았으며, 자체의 사용가치와 함께 자체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그것은 가치의 담당자가 아니게 된 것이다. 노동수단은 불변자본의 다른 모든 소재적 담당자와 마찬가지로 자체의 사용가치와 함께 자체의 가치를 상실하는 정도에 따라서만 가치를 생산물에 교부하므로 노동수단의 사용가치가 완만히 상실되면 될수록, 노동수단이 생산과정에서 오래 견디어내면 될수록 불변자본 가치가 노동수단에 고정된 채로 남는 기간은 더욱 길어진다는 것이 분명하다.

만약 고유한 의미에서의 노동수단이 아닌 생산수단 예컨대 보조재료,

원재료, 반제품 등등이 가치교부에 관하여, 따라서 자체의 가치의 유통방식에 관하여 노동수단과 다른없는 처지에 있다면 그 생산수단도 역시 고정자본의 소재적 담당자이며 존재형태이다. 많은 생산기간들 또는 많은 해에 걸쳐서 작용하는 화학적 성분을 토양에 추가하는 상술한 토양개량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 경우에는 가치의 일부분은 아직 자체의 자립적 형태로 즉 고정자본의 모습으로 생산물과 나란히 존재를 계속하는데, 가치의 다른 부분은 생산물에 교부되고 따라서 생산물과 함께 유통한다. 이 경우에는 비단 고정자본의 가치부분뿐만 아니라 이 가치부분이 존재하는 실체(實體)인 사용가치도 생산물로 들어간다.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범주를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범주와 혼동한 기본적인 오류는 도외시하더라도 경제학자들에 있어서의 종래의 개념규정상 혼란은 우선 다음과 같은 점들에 기인한다.

사람들은 노동수단이 소재상으로 갖는 일정한 속성들 예컨대 물리적 부동성—가속과 같은 것의—을 고정자본의 직접적인 속성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노동수단으로서는 역시 고정자본인 다른 노동수단이 반대의 속성 예컨대 물리적 가동성(可動性)—선박과 같은 것의—을 갖는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언제나 용이하다.

또는 사람들은 가치의 유통에서 나오는 형태의 경제적 규정성(規定性)을 물적 속성과 혼동한다—마치도 그 자체로서는 결코 자본이 아니고 일정한 사회적 제관계에서만 자본으로 되는 물건이 그 자체로서 및 그 천성으로 이러저러한 형태의 자본, 고정자본 또는 유동자본일 수 있는 것처럼 혼동한다. 우리가 제1부 제5장에서 본 바와 같이 모든 노동과정에 있는 생산수단은, 그 노동과정이 어떠한 사회적 조건하에서 진행되든간에 노동수단과 노동대상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이 양자는 오직 자본주의적 생산방식 내부에서만 자본으로, 그것도 전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생산자본으로 된다. 그와 함께 노동과정의 본성에서 나오는, 노동수단과 노동대상과의 구별은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구별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반영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비로소 노동수단으로서 기능하는 물건은 고정자본이 된다. 만약 그 물건이 자체의 소재적 속성들에 의하여 노동수단의 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으로도 복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체의 기능의 차이에 따라서 고정자본이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가축은 역축으로서는 고정자본이지만, 비육(肥育)가축으로서는 그것은 결국 생산물로서

유통에 들어가는 원료이며, 따라서 그것은 고정자본이 아니고 유동자본이다.

어떤 생산수단이 반복되는 노동과정들—그러나 연결되어 있으며, 연속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생산기간 즉 생산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생산기간을 이루고 있는—에 비교적 장기간 고정되어 있다는 그것만으로써는, 고정자본과 전혀 마찬가지로 자본가로 하여금 다소간의 오랜 기간에 걸친 전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나, 그러나 그의 자본의 해당부분을 고정자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종자는 결코 고정자본은 아니고 거의 한 해에 걸쳐 생산과정에 고정되어 있는 원료일 따름이다. 일체의 자본은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하는 동안은 생산과정에 고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생산자본의 모든 요소들도 그것들의 소재적 모습, 그것들의 기능, 그것들의 가치의 유통방식이 어떠한간에 역시 생산과정에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생산과정의 종류 또는 소기(所期)의 유용효과 여하에 따라서 지속의 장단은 있으나, 그 때문에 고정자본과 유동자본간의 구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²⁰⁾

일반적 노동 제 조건도 포함하는 노동수단의 일부분은 예컨대 기계와 같이 그것이 노동수단으로서 생산과정에 들어오게 되자 또는 생산적 기능을 위하여 준비되자 일정한 장소에 고착되든가, 또는 처음부터 예컨대 토지개량, 공장건물, 용광로, 운하, 철도 등등과 같이 부동산적이며, 장소에 결박된 형태로 생산된다. 노동수단이, 그것이 기능하여야 되는 생산과정에 부단히 결박되어 있는 것은 이 경우에는 동시에 그것의 감성적(感性的)인 존재방식에 의하여 조건지어지는 것이다. 타방으로 어떤 노동수단은 예컨대 기관차, 선박, 역축 등등과 같이 생산과정에 부단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부단히 장소를 변경하며 운동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 부동산성(不動性)이 노동수단에 고정자본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며, 후자의 경우에 가동성(可動性)이 그것으로부터 이 성격을 박탈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노동수단들이 장소상으로 고정되고

20)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을 규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로렌츠 슈타인 씨는 이 구별은 다만 서술을 더 쉽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독특한 역할을 할당한다. 그 노동수단은 외국으로 보내어질 수 없으며 상품으로서 세계시장에서 유통할 수 없다. 이 고정자본에 대한 소유명의(所有名義)는 변경될 수 있고 매매될 수 있으며 그 한에 있어서 관념적으로 유통할 수 있다. 이 소유명의는 예컨대 주식(株式)의 형태로 외국시장들에서조차 유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고정자본의 소유자인 인물의 교체로 말미암아 일정한 나라에 있는 부(富) 중 가동적인 부분에 대한 부동적이며 물질적으로 고정된 부분의 비율은 변경되지 않는다.²¹⁾

고정자본의 독특한 유통으로부터 독특한 회전이 나온다. 현물형태로서의 고정자본의 소멸로 말미암아 상실하는 가치부분은 생산물 가치부분으로서 유통한다. 생산물은 자체의 유통에 의하여 상품으로부터 화폐로 전화되며 따라서 생산물에 의하여 유통되는 노동수단의 가치부분도 화폐로 전화되는데, 그것도 노동수단이 생산과정에서 가치의 감당자가 아니게 되는 동일한 비율로 그것의 가치는 유통과정에서 화폐로서 한 방울씩 떨어진다. 따라서 노동수단의 가치는 이제는 이중적 존재를 얻게 된다. 그것의 일부분은 생산과정에 속하는 노동수단의 사용형태 또는 현물형태에 구속된 채로 남으며, 다른 부분은 이 형태로부터 화폐로서 분리된다. 노동수단의 기능행정에서 현물형태로 존재하는, 그것의 가치부분은 부단히 감소되는데 화폐형태로 전환되는, 그것의 가치부분은 부단히 증가하여, 노동수단은 드디어 수명을 다 살고 그것의 총가치는 노동수단의 시체(屍體)로부터 분리되어 화폐로 전화된다. 이 점에서 생산자본의 이 요소의 회전상의 특성을 볼 수 있다. 이 요소의 가치의 화폐로의 전화는 그것의 담당자인 상품의 화폐화와 보조를 같이 한다. 그러나 화폐형태로부터 사용형태로의 이 요소의 재전화는, 기타의 생산 제 요소로의 상품의 재전화로부터 분리되며 오히려 노동수단 자체의 재생산기간 즉 노동수단이 노쇠하여져서 동종의 다른 것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으면 안되는 기간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만약 10,0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를 가진 어떤 기계의 기능기간이 예컨대 10년이라면 최초로 그 기간에 전대된 가치의 회전기간은 10년이다. 이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기계는 갱신될 필요가 없으며 자체의 현물형태로서 작용을 계속한다. 그런데 그 기계의 가

21) 이상은 제4고에서, 이하는 제2고에서.

치는 그 사이에 기계의 복무에 의하여 계속 생산되는 상품의 가치부분으로서 일부분씩 유통하며 그리하여 점차 화폐로 전환되어 드디어 10년이 경과하면 전부 화폐로 전화되고 화폐로부터 기계로 재전화되며 따라서 자체의 회전을 완료한다. 이 재생산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기계의 가치는 우선 점차 화폐 예비фон드의 형태로 축적된다.

생산자본의 나머지 요소들은 일부분은 보조재료 및 원료로 존재하는 불변자본의 요소들과, 일부분은 노동력에 지출된 가변자본으로써 이루어진다.

노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의 분석(제1부 5장)은 생산자본의 각이한 구성부분들이 생산물형성 및 가치형성 요인으로서 전혀 각이한 역할을 논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불변자본중 보조재료와 원료로 이루어지는 부분의 가치는 노동수단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의 가치와 전혀 마찬가지로 순전히 이전된 가치로서 생산물의 가치로 다시 나타나는데 노동력은 노동과정을 통하여 자기 가치의 등가를 생산물에 첨가한다. 또는 자기 가치를 현실적으로 재생산한다. 또 보조재료의 일부분인, 연료용 석탄, 조명용 가스 등등은 소재적으로 생산물에 들어가지 않고 노동과정에서 소비되는데 그것의 다른 부분은 물체적으로 생산물에 들어가며 이것의 실체(實體)의 재료를 이룬다. 그러나 이 모든 차이는 유통에는, 따라서 또 회전방식에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보조재료와 원료가 일정한 생산물형성에 있어서 전부 소비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것들은 그것들의 전체 가치를 생산물로 이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는 생산물에 의하여 전부 유통되며 화폐로 전화되고 화폐로부터 상품의 생산요소들로 재전화된다. 그것의 회전은 고정자본의 회전과 같이 중단되지 않고 부단히 그것의 제형태의 전체 순환을 통과하며; 그리하여 생산자본의 이 요소들은 부단히 현물로 갱신된다.

생산자본중 노동력에 지출되는 가변적 구성부분에 관하여 말한다면 노동력은 일정한 기간에 대하여 구매된다. 자본가가 노동력을 구매하여 생산과정에 합체하자 마자 노동력은 그의 자본의 구성부분을, 그것도 그의 자본의 가변적 구성부분을 이룬다. 노동력은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작용하며 그 동안에 그것은 자체의 일(日)가치 전부 뿐만 아니라 또한 일정한 추가적인 잉여가치—이것은 여기에서는 당분간 도외시한다—를 생산물에 첨가한다. 노동력이 예컨대 1주일간에 대하여 구매되어 작용한 다음

에는 그 구매는 관례로 되고 있는 기간을 두고 부단히 갱신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력이 기능하는 동안에 노동력에 의하여 부단히 생산물에 첨가되며, 생산물의 유통에 따라 화폐로 전화되는, 노동력의 가치의 등가는, 계속적인 생산의 순환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화폐로부터 노동력으로 부단히 재전화되지 않으면 안되며, 또는 부단히 자체의 제형태의 완전한 순환을 그리지 않으면 즉 회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생산자본중 노동력에 전대된 가치부분은 전부 생산물로 이전하며(여기에서는 계속 잉여가치는 도외시한다) 유통분야에 속하는 두 개의 형태변화를 생산물과 함께 그리며, 이 부단한 갱신에 의하여 언제나 생산과정에 합체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은 다른 점에서는 즉 가치형성에 관하여서는 불변자본중 고정자본을 형성하지 않는 구성부분들과 여하히 다르다 하더라도 자체의 가치회전의 방식에 있어서는 노동력은 이러한 구성부분들과 공통하며 고정자본과 대립한다. 생산자본중 이 구성부분들—생산자본중 노동력과, 고정자본을 이루지 않는 생산수단들로 지출된 가치부분들—은 그것들의 회전의 성격에서의 이러한 공통성에 의하여 유동자본으로서 고정자본과 대립한다.

우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본가가 노동력의 소비의 댓가로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화폐는 사실은 노동자의 필요 생활수단의 일반적 등가형태일 따름이다. 그 한에 있어서 가변자본은 소재적으로는 생활수단으로써 구성된다. 그러나 회전이 고찰되는 여기에서는 형태가 문제이다. 자본가가 구매하는 것은 생활수단이 아니라 그의 노동력 자체이다. 그의 자본의 가변부분을 형성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활수단이 아니라 활동하는 노동력이다. 자본가가 노동과정에서 생산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노동력 자체이고 노동자의 생활수단은 아니다. 자기 노동력의 댓가로 받은 화폐를 생활수단으로 전환하며 이 생활수단은 노동력으로 재전화하고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는 것은 노동자 자신인바, 이것은 예컨대 자본가가 화폐를 받고 판매하는 상품중의 잉여가치의 일부분을 자기 자신을 위한 생활수단으로 전환하는 것과—그렇다고 하여 그 자본가의 상품의 구매자가 그에게 생활수단으로써 지불한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전혀 마찬가지로, 노임의 일부분이 노동자에게 생활수단으로써 즉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은 오늘날은 제2차적인 거래이다. 노동자는 일정한 가격으로 자기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이며 상기 경우에는 이 가격의 일부분을

노동자가 생활수단으로써 받는다는 것이 협정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변경되는 것은 다만 지불형태이고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그의 노동력이라는 사실은 아니다. 이것은 이미 노동자와 자본가간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구매자로서의 노동자와 상품판매자로서의 자본가간에 진행되는 제2차적 거래이다. 그런데 제1차적 거래에 있어서는 노동자는 상품(자기의 노동력)의 판매자이고 자본가는 그것의 구매자이다. 이것은 자본가가 자기의 상품을 상품에 의하여, 예컨대 그가 제철소에 판매하는 기계를 철에 의하여 보상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고정자본에 대립하는 유동자본이라는 규정성을 받는 것은 노동자의 생활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노동력도 아니고, 생산자본중 노동력에 지출된 가치부분—그것의 회전의 형태에 의하여, 불변자본 부분중 일부 구성부분과는 공통적으로 또 다른 부분들과는 대립하여 이 성격을 얻는—이다.

노동력과 생산수단으로 있는 유동자본의 가치는 고정자본의 양에 의하여 규정되는 생산규모 여하에 따라, 생산물이 완성되는 기간에 걸쳐서만 전대된다. 이 가치는 전부 생산물로 들어가며 따라서 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다시 전부 유통으로부터 복귀하여 새로 전대될 수 있다. 자본의 유동적 구성부분의 존재형태인 노동력과 생산수단은 완성 생산물의 형성과 판매에 필요한 범위에서 유통으로부터 끌려 나오나 그러나 그것들은 재구매에 의하여, 화폐형태로부터 생산 제요소로의 재전화에 의하여 부단히 보상되며 갱신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들이 단번에 시장으로부터 끌려 나오는 양은 고정자본의 제요소보다는 적지만 그러나 그만큼 빈번히 그것들은 반복하여 끌려 나오지 않으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지출되는 자본의 전대는 비교적 짧은 기간을 두고 갱신된다. 이 부단한 갱신은 그것들의 총가치를 유통시키는 생산물의 부단한 전환에 의하여 매개되어 있다. 끝으로 그것들은 자체의 가치상으로뿐만 아니라 자체의 소재적 형태로도 형태변화의 전체 순환을 부단히 진행한다. 그것들은 상품으로부터 동일한 상품의 생산 제요소로 부단히 재전환된다.

노동력은 자기 자신의 가치와 함께 부지불노동의 체화(體化)인 잉여가치를 부단히 생산물에 첨가한다. 따라서 잉여가치는 완성 생산물의 기타의 가치요소들과 마찬가지로 부단히 완성 생산물에 의하여 유통시키려고 화폐로 전환된다. 그러나 당분간 잉여가치를 도외시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선 문제로 되는 것이 자본가치의 회전이고 자본가치와 동시에 회전하는

잉여가치의 회전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1)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이라는 형태의 규정성(規定性)은 생산과정에서 기능하는 자본가치 또는 생산자본의 회전상 차이에서만 나온다. 이 회전상 차이는 이번에는 생산자본의 각이한 구성부분들이 생산물에 자체의 가치를 이전하는 방식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들이 생산물가치의 생산에 참여함에 있어서의 차이 또는 가치 증식과정에서의 그것들의 역할의 특성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끝으로 생산물에 가치를 교부함에 있어서의 차이, 따라서 또 이 가치가 생산물에 의하여 유통되며 그것의 형태변화에 의하여 자체의 최초의 현물형태로 갱신되는 방식의 차이, 이러한 차이들은 생산자본이 존재하는 소재적 모습의 차이에서, 생산자본의 일부분은 개개의 생산물의 형성중에 전부 소비되며 다른 부분은 점차적으로만 이용된다는 차이에서 나온다. 따라서 생산자본만이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으로 분리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대립은 산업자본의 다른 두 존재방식에 있어서는 따라서 상품자본에 있어서도 화폐자본에 있어서도 존재하지 않으며, 생산자본에 대한 이 양자본의 대립으로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립은 다만 생산자본에 있어서만 그리고 그 한계내에서만 존재한다. 화폐자본과 상품자본은 자본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며 얼마나 유동적으로 유통하더라도 그것들이 생산자본의 유동적 구성부분으로 전화되는 조건에서만 고정자본에 대립하는 유동자본으로 될 수 있다. 그런데 자본의 이 양형태가 유통분야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후에 보겠지만 A 스미드 이래의 경제학은 그릇되게도 그것들을 생산자본의 유동적 부분과 뒤섞어 유동자본의 범주에 집어 넣었다. 사실은 화폐자본과 상품자본은 생산자본에 대립하는 유동자본이며 고정자본에 대립하는 유동자본은 아니다.

2) 자본의 고정적 구성부분의 회전 따라서 또 그에 필요한 회전기간은 자본의 유동적 구성부분의 몇 개 회전을 포괄한다. 고정자본이 한 번 회전하는 동일한 기간에 유동자본은 여러 번 회전한다. 생산자본의 가치 구성부분의 하나가 고정자본이라는 규정성을 얻는 것은 그 부분이 존재하는 생산수단이, 생산물이 완성되어 상품으로서 생산과정으로부터 밀려 나가는 기간중에 전적으로 소모되지 않는 한에서 만이다. 고정자본의 가치의 일부분은 지속되는 종래의 사용형태에 구속된 채로 남지 않으면 안되

고, 다른 부분은 완성 생산물에 의하여 유통시켜지는데, 자본의 고정적 구성부분과는 반대로 이 생산물의 유통은 동시에 자본의 유동적 구성부분의 추가치를 유통시킨다.

3) 생산자본의 가치중 고정자본에 지출된 부분은 생산수단중 고정자본을 구성하는 부분의 전체 기능기간에 걸쳐 전부 한꺼번에 전대된다. 따라서 이 가치는 자본가에 의하여 한꺼번에 유통에 투입된다. 그러나 그것은 고정자본에 의하여 상품에 일부분씩 첨가되는 가치부분의 실현을 통하여 일부분씩 그리고 점차적으로만 유통으로부터 다시 끌려 나온다. 타방으로 생산자본의 한 구성부분이 고정되어 있는 생산수단 자체는 유통으로부터 한꺼번에 끌려나와 자체의 전체 기능기간에 걸쳐서 생산과정에 합체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동일한 기간내에서는 동종의 상품에 의한 보상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재생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자기 자체의 갱신의 제요소를 유통으로부터 끌어내지 않고서 유통에 투입되는 상품의 형성에 장기간 또는 단기간 계속 기여한다. 따라서 또 그것들은 이번에는 그 기간중에는 자본가측으로부터의 전대의 어떠한 갱신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끝으로 고정자본에 지출된 자본가치는 그것이 존재하는 생산수단이 기능하는 동안 소재적으로가 아니라 그것의 가치에 있어서만 그것의 제형태의 순환을 통과하는바, 부분적으로만 그리고 점차적으로만 그렇다. 즉 고정자본의 가치의 일부분은 상품의 가치부분으로서 부단히 유통시켜져 화폐로 전화되지만 화폐로부터 자체의 최초의 현물형태로 재전화되지는 않는다. 생산수단의 현물형태로의 화폐의 이 재전화는 생산수단의 기능기간 (회전기간)의 종말에, 생산수단이 완전히 소모되었을 때 비로소 일어난다.

4) 생산과정이 부단히 진행되기 위하여 유동자본의 제요소도 고정자본의 제요소와 마찬가지로 생산과정에 부단히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고정된 전자의 세 요소는 부단히 현물로 갱신된다(생산수단은 동종의 신상품에 의하여, 노동력은 부단히 갱신되는 구매에 의하여). 그런데 고정자본의 제요소에 있어서는 그것들의 존속중에 그것들 자체가 갱신되지도 않으며 그것들의 구매가 갱신될 필요도 없다. 생산과정에는 부단히 원료와 보조재료가 있으나 그러나 낡은 것이 완성 생산물의 형성에 소비된 다음에 항상 동종의 신상품이 있는 것이다. 노동력과 역시 생산과정에는 부단히 존재하나 그러나 그것의 구매의 부단한 갱신에 의하여서만 또

종종 인물의 교체를 수반하면서 존재한다. 이와는 반대로 동일한 건물, 기계 등등은 반복되는 동일한 생산과정에서, 유동자본이 회전을 반복하는 동안 기능을 계속한다.

제2절 고정자본의 구성부분, 보상, 보수, 축적

동일한 자본투하에 있어서도 고정자본의 개개의 요소들의 수명(壽命)은 각이하며 따라서 또 회전기간도 각이하다. 예컨대 철도에서는 레일, 침목, 흙일, 정거장건물, 교량, 터널, 기관차, 차량의 기능기간과 재생산기간은 각이하며 따라서 또 그것들에 전대된 자본부분의 회전기간도 각이하다. 건물, 플랫폼, 급수탑(給水塔), 구름다리(高架橋), 터널, 절토(切土)와 성토(盛土) 및 둑(堤防)—간단히 말하여 영국의 철도경영에서 기술시설(works of art)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다년간에 걸쳐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장 많이 마멸되는 것은 궤도와 운전재(rolling stock)이다.

근대적 철도가 부설되던 당시 시초에는 가장 탁월한, 실제 경험있는 기사들이 가지고 있던 지배적 견해에 의하면 철도의 수명은 세기적(世紀的)이며 선로의 마멸은 전혀 보잘 것 없어서 사업의 재정적 및 실제적 측면에서는 무시하여도 좋았다. 좋은 레일의 수명은 100년 내지 150년이라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레일의 수명—이것은 물론 기관차의 속력, 열차의 중량 및 수, 레일 자체의 두께 기타 많은 부수적 사정에 의존한다—은 평균하여 20년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교통의 대중심지들인 개별적 정거장들에서는 레일은 심지어 매년 마멸된다. 1867년 경에 강제(鋼製)레일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바 이것은 철제보다 거의 두 배만큼이나 비용이 들었으나 그 대신 수명은 두 배 이상 길었다. 침목의 수명은 12~15년이었다. 운전재에 있어서는 화차는 객차보다 마멸이 현저히 크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기관차의 수명은 1867년에는 10~12년으로 계산되었다.

마멸은 첫째로 사용 그 자체에 의하여 생긴다. 일반적으로 레일은 열차수에 비례하여 마멸된다(R. C. 제17, 645호)²²⁾ 속력이 증대되면 마멸은 속력의 자승(自乘)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 증대하였다. 즉 열차의 속력이 2배가 되면 마멸은 4배 이상 제고되었다(R. C. 제17, 046호). 그 다음 마멸

은 자연력의 영향에 의하여 생긴다. 예컨대 침묵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마멸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부식에 의하여서도 상한다.

“철도의 유지비는 열차운행에 수반하는 마멸보다도 오히려 대기(大氣)의 작용을 받고 있는 재목, 철 및 벽재(壁材)의 품질에 더 좌우된다. 엄동의 1개월은 노반(路盤)에 대하여 온 1년의 철도운행보다도 더 큰 손해를 줄 것이다(R. P. 윌리엄즈 「궤도의 유지에 관하여」 1867년 가을, 토목기사협회에서의 보고).

끝으로 대산업에서는 도처에서 그러하듯이 여기에서도 도덕적 마멸이 역시 자기 역할을 논다. 종전에는 40,000파운드 스텔링이 들었던 동일한 분량의 차량과 기관차가 10년이 지나서는 보통 30,000파운드 스텔링으로 살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비록 사용가치는 조금도 감소되지 않더라도 시장가격의 25%의 감가를 계산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드너 「철도경제」).

“관형(管形)교량은 그것의 현재의 형태로는 갱신되지 않을 것이다(왜냐하면 현재는 그러한 교량의 형태가 개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의 보통의 보수, 개개의 부분의 제거 및 보상은 실시될 수 없다”(W·P·아담스 「도로와 레일」 런던, 1862년).

노동수단은 대부분 산업의 진보에 의하여 부단히 변혁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시초 형태로 보상되지 않고 변혁된 형태로 보상된다. 일방으로는 대량의 고정자본이 일정한 현물형태로 사업에 투하되어 있어서 그 형태로 일정한 평균수명을 지속해내야만 한다는 사정은 새로운 기계 등등이 점차적으로밖에 도입되지 않는 원인으로 되며 따라서 개량된 노동수단의 신속하고 전면적인 도입을 방해하는 하나의 지장으로 된다. 그러나 타방으로는 경쟁전이 특히 결정적인 변혁의 시기에 낡은 노동수단을 그것의 자연적 사멸 전에 새로운 노동수단으로써 대체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광범한 사회적 규모로서의 기업소 설비의 그와 같은 초기(早期)의 갱신을

22) R. C. 라는 기호가 붙은 인용문은 「칙명 철도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진술한 증언록, 양원에 제출」(런던, 1867년)에서 취한 것이다. 문답은 번호가 붙어 있으며 그 번호를 여기에서 들고 있다.

강요하는 것은 주로 공황이라는 파국이다.

마멸(도덕적 마멸은 도외시하고)이란 고정자본이 그것의 소모에 의하여, 자체의 사용가치를 상실하는 평균 정도로, 점차적으로 생산물에 교부하는 가치부분이다.

이 소모는 부분적인 것으로서 고정자본은 일정한 평균수명을 갖는다. 고정자본은 이 기간에 걸쳐 전적으로 전대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전적으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산 노동수단 예컨대 말에 있어서는 재생산기간은 자연 자체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다. 노동수단으로서의 그것들의 평균수명은 자연법칙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이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노폐한 것은 새것으로써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말은 부분적으로는 보상될 수 없으며 새말로써만 보상될 수 있다.

고정자본의 다른 요소들은 주기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부분적 또는 주기적 보상과 기업경영의 점차적 확대와를 구별하여야 한다.

고정자본의 일부분은 동등한 종류의 구성부분들—그러나 존속기간은 동등하지 않고 각이한 기간을 두고 일부분씩 갱신되는—로써 구성된다. 예컨대 정거장의 레일은 다른 노반의 것보다 더 자주 갱신되지 않으면 안된다. 침목도 마찬가지로 라드너에 의하면 벨기에의 철도에서는 50년대에는 매년 침목의 8% 따라서 12년 동안에는 전체 침목이 갱신되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태는 다음과 같다. 즉 일정한 금액이 일정한 종류의 고정자본으로 예컨대 10년간 전대된다. 이 지출은 한꺼번에 실시된다. 그러나 이 고정자본의 일정한 부분 즉 그것의 가치가 생산물의 가치에 들어가서 생산물과 함께 화폐로 전환되어 있는 부분은 매년 현물로 보상되는데, 다른 부분은 자체의 최초의 현물형태로 계속 존재한다. 고정자본으로서의 이 자본을 유동자본과 구별케 하는 것은 한꺼번에 지출되고 일부분씩으로만 현물형태로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고정자본의 다른 부분은 부동등한 구성부분들—부동등한 기간에 소모되고 따라서 또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는—로써 구성된다. 기계의 경우에 특히 그렇다. 고정자본의 각이한 구성부분의 각이한 수명에 관하여 방금 말한 것은 이 경우에 이 고정자본의 부분으로서 나타나는 동일한 기계의 각이한 구성부분들의 수명에 대하여서도 타당하다.

부분적인 갱신의 진행중에 기업이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경우에 관해서

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한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고정자본은 현물로 생산과정에서 계속 작용한다 하더라도, 그 가치의 일부분은 평균적 마멸에 따라 생산물과 함께 유통하며 화폐로 전화되어 있으며, 그것이 현물로 재생산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자본을 보상하기 위한 화폐 예비фон드의 요소를 이룬다. 고정자본의 가치중 이와같이 하여 화폐로 전화된 이 부분은 기업을 확장하거나 기계를 개량하여 그것의 효력을 증가시키는 데 복무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만간에 재생산이 수행되는데, 그것도 사회적 관점에서 고찰하면 확대된 규모로서의 재생산이—생산면이 확대된다면 외연적(外延的)으로, 생산수단이 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된다면 집약적(集約的)으로—수행된다. 확대된 규모에서의 이 재생산은 축적—잉여가치의 자본으로의 전화—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자본의 체구로부터 갈라져서 화폐형태로 분리된 가치의, 새로운 추가적이거나 더욱 효과적인 동종의 고정자본으로의 재전화에서 발생한다. 어느 정도로 또 어떠한 범위에서 기업경영이 이러한 점차적인 추가를 할 수 있으나 하는 것, 따라서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어떠한 범위에서 예비фон드가 적립되지 않으면 안되는가 또 어떠한 기간에 이 투자가 실시될 수 있으나 하는 것은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 기업경영의 특성에 의존한다. 타방으로 어느 정도로 현존 기계의 세부적인 개량이 실시될 수 있으나 하는 것은 물론 개량의 본성과 기계 자체의 구조에 의존한다. 그런데 예컨대 철도부설에 있어서 이 점이 얼마나 처음부터 주목의 대상으로 되는가 하는 것을 아담스는 다음과 같이 증명하고 있다.

“전체 구조는 벌집(蜂集)에서 지배하는 원리—무제한한 확장의 가능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너무나 견고하고 처음부터 균형이 잡힌 구조물들은 모두 나쁘다. 확장의 경우에 그것들은 부식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123페이지).

이것은 대부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에 의존한다. 일부 건축물에서는 위로 계층을 증축할 수 있으며 다른 것에서는 측면확대가 따라서 더 많은 지면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부에서는 기업을 점차적으로 확장하는 경우에 일방으로는 많은 자금이 낭비되며 타방으로는 이러한 종류의 부정당한 측면확장(부분적으로는 노동력에 유해하게)이 많이 실시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만사가 사회적 계획에 의하여 실시되지

않고 개개의 자본가가 타산하는 무한히 각이한 사정들과 자금 등등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생산력의 거대한 낭비가 생긴다.

화폐 예비фон드(예컨대 고정자본중 화폐로 재전화된 부분)의 일부분씩으로 되는 이러한 재투자자는 농업에서 가장 용이하다. 여기에서는 공간적으로 구획(區劃)되어 있는 생산의 전야(田野)가 자본을 전차적으로 가장 잘 흡수(吸收)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축산에서와 같이 자연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고정자본은 특수한 보존비를 필요하게 한다. 보존의 일부는 노동과정 자체에 의하여 실시된다. 고정자본은 노동과정에서 기능하지 않으면 손상을 입게 된다(제1부, 제6장 및 제13장. 기계의 불사용에서 발생하는 그것의 마멸 참조).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법률은 또한 명백히, 임차된 지면이 나라의 관례적인 방식에 의하여 경작되지 않으면 훼손(Waste)이라고 간주하고 있다(변호사 W. A. 홀스워드 『지주 및 차지인에 관한 법률』 런던, 1857년, 96페이지). 노동과정에서의 사용에서 나오는 이러한 보존은 산 노동의 천성이 가져다주는 무상(無償)의 선물이다. 그것도 노동의 이러한 보존력에는 2중적 성격이 있다. 일방으로는 노동은 노동재료의 가치를 생산물에 이전함으로써 그것을 보존하며 타방으로는 노동은 노동수단의 가치를 생산물에 이전하지 않는 한에서, 생산과정에서의 자체의 행동에 의하여 그것들의 사용가치를 보존함으로써 그것들의 가치를 보존한다.

그러나 고정자본은 그것의 정비를 위하여 직접적인 노동지출도 요구한다. 기계는 수시로 청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문제로 되는 것은 그것이 없이는 기계가 사용될 수 없게 되는 추가노동—생산과정과 분리될 수 없는 자연력의 유해로운 영향을 단순히 방지하기 위한, 따라서 기계를 문자 그대로 작업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이다. 고정자본의 정상적인 수명은 이 기간중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조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에 입각하여 계산된다는 것은 자명한바, 그것은 마치도 인간이 평균 30년 산다고 할 때에는 그가 목욕도 한다는 것을 상정하는 것과 전혀 마찬가지이다. 또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기계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의 보상이 아니라 기계의 사용에 의하여 필요하게 되는 부단한 추가노동이다. 문제로 되는 것은 기계가 수행하는 노동이 아니라 기계에서 수행되는 노동이며 이 점에서는 기계는 생산행위자가 아니라 원재료이다. 이 노동에 지출되는 자본은, 비록 고유한 의미에서의

노동과정—이것의 덕택으로 생산물이 생산되어 나오는—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유동자본에 속한다. 이러한 노동은 부단히 생산에 지출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또 그것의 가치는 생산물의 가치에 의해서 부단히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노동에 지출되는 자본은 유동자본중, 일반적인 비생산적 비용을 지변하여야 하며 또 연 평균계산에 따라 새로 창조된 가치에 분배되어야 하는 부분에 속한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고유한 의미에서의 공업에서는 이러한 청소노동은 노동자에 의하여 무료로 휴식 중에 수행되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 생산과정 자체의 시간중에 수행되는 일이 매우 빈번한바, 대부분의 재해의 근원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노동은 생산물의 가격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비자는 그것을 무상으로 받는다. 타방으로 그렇게 되어 자본가는 자기 기계의 보존비를 절약한다. 노동자 자신이 스스로 지불하는 것이니, 여기에 사실상 기계에 대한 노동자의 법률적 청구권을 형성하며, 부르쥬아적 법률의 입장에서조차 노동자를 기계의 공동소유자로 만드는, 자본의 자기 보존의 비밀의 하나가 있다. 그러나 기계가 청소를 위하여 생산과정에서 격리되지 않으면 안 되며 따라서 청소가 내부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각이한 생산부문들에서는—예컨대 기관차의 경우—이 보존 노동은 경상비로, 따라서 유동자본의 요소로서 계산된다. 기관차는 기껏하여 3일간 작업한 다음에는 차고로 가서 거기에서 청소되지 않으면 안 된다. 기관을 상하지 않게 씻기 위하여는 우선 그것을 냉각하지 않으면 안된다(R. C. 제 17, 823호).

고유한 의미에서의 보수 또는 수리작업은 자본과 노동의 지출을 필요로 하는바, 이것들은 최초로 전대된 자본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또 고정자본의 점차적인 가치보상에 의하여서는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보상되고 지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고정자본의 가치는 10,000파운드 스텔링이며 그 총수명은 10년이라면, 10년 후에 전부 화폐로 전환된 이 10,000파운드 스텔링은 최초로 투하된 자본만을 보상하고, 그 동안에 보수에 새로 첨가된 자본이나 노동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것은 추가적 가치구성부분으로서 이 부분도 한꺼번에 전대되지는 않고 필요에 따라서 전대되며 그것의 각이한 전대기간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연적이다. 일체의 고정자본은 노동수단과 노동력에 대한 이러한 추후적이며 부분적인 추가 자본지출을 필요로 한다.

기계 등등의 개개의 부분들이 입는 손상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연적이며, 따라서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되는 보수도 우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들 중에는 두 종류의 보수작업이 분리되는바, 그것들은 다소간에 고정적인 성격을 가지며 고정자본의 수명의 각이한 시기에 속하는 것들—즉 유년기의 고장과 중년기를 넘어서의 극히 수많은 고장이다. 예컨대 아무리 완성된 구조의 기계라 하더라도 생산과정에 들어가면 실지 사용되는 경우에 결함이 발견되는데, 이 결함은 추가적 노동으로써 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타방으로 기계가 자기의 중년기를 넘어서면 설수록, 따라서 정상적인 마멸이 누적되어 기계의 구성재료가 소모되고 노쇠하여지면 질수록, 기계의 평균수명의 마지막까지 기계를 산 채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은 더욱 수가 많아지고 상당한 것으로 된다. 이것은 노인이 때아닌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혈기 왕성한 청년보다 의료상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것과 전혀 마찬가지로, 따라서 보수작업은 그것이 우연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고정자본의 각이한 존속기간에 불균등하게 분배된다.

이 점과 기계에 대한 보수작업의 기타의 우연적인 성격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일방으로 보수작업을 위한, 노동력과 노동수단에 대한 현실적 지출은 그 보수를 필요하게 한 사정 자체와 마찬가지로 우연적이다. 필요한 보수의 규모는 고정자본의 수명의 각이한 시기에 각이하게 분배된다. 타방으로 고정자본의 평균수명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는 청소(장소의 청소도 이에 속한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는 필요한 때마다 실시되는 보수에 의하여 고정자본이 활동할 수 있는 상태에 부단히 유지된다는 것이 상정되어 있다. 고정자본의 마멸에 의한 가치이전은 그것의 평균수명에 기초하여 계산되고 있지만 이 평균수명 자체는 고정자본의 정비에 필요한 추가자본이 부단히 전대된다는 것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타방으로 자본과 노동의 이 추가지출로 말미암아 첨가되는 가치는 그 현실적인 지출과 동시에 상품가격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도 역시 명백하다. 예컨대 방직업자가 금주(今週)에 치륜(齒輪)이 부서졌다고든가 피대(皮帶)가 끊어졌다고 하여 자기의 방사를 전주(前週)보다 비싸게 판매할 수는 없다. 방직업의 일반적 비용은 개별적 공장에서의 이러한 재난에 의해서는 조금도 변경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가치가 규정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균이 규정한다. 일정한 생산부문에 투자된 고정자본의 평균 수명중에 있어서의 그러한 사고와 보조작업 및 보수작업의 평균 규모는 경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 평균지출은 평균수명에 분배되며 해당한 부분이 생산물 가격에 첨가되며 따라서 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보상된다.

이와 같이 보상되는 추가자본은 비록 지출의 방식이 비규칙적이라 하더라도 유동자본에 속한다. 기계의 고장이 있을 때마다 즉시 수리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큰 공장마다 고유한 의미에서의 공장 노동자들과 아울러 기사, 목공, 기계공, 야장공 등등의 특수한 인원이 존재한다. 그들의 임금은 가변자본의 일부분을 이루며 그들의 노동의 가치는 생산물에 분배된다. 타방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필요한 지출은, 실제로 불규칙적인 기간에 전대되며 따라서 또 불규칙적인 기간에 생산물 또는 고정자본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평균계산에 의하여 규정되며 이 계산에 따라 부단히 생산물의 가치부분을 이룬다. 고유한 의미에서의 보수에 지출되는 이 자본은 몇 가지 점에서 독특한 종류의 자본—유동자본에도 넣을 수 없고 고정자본에도 넣을 수 없는, 그러나 경상비에 속하는 것으로서 어느 편이나 하면 전자에 넣을 수 있는—을 형성한다.

부기의 방식은 물론, 부기의 대상으로 되는 사물의 현실적 관련을 조금도 변경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생산부문들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수비를 고정자본의 현실적 마멸과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 관례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대된 고정자본이 10,000파운드 스텔링이고, 그것의 수명이 15년이라면, 이 경우에 연년의 마멸은 666⅔파운드 스텔링이다. 그런데 마멸은 불과 10년에 대하여 계산된다. 즉 생산되는 상품의 가격에는 고정자본의 소모분으로서 연 666⅔파운드 스텔링이 아니고 1,000파운드 스텔링이 첨가된다. 즉 보수작업 등등을 위하여 333⅓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예비가 조성된다(10이나 15라는 숫자는 예로서 든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정자본이 15년 지속하기 위하여는 보수에 평균 그만큼 지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계산은 물론 고정자본과 보수에 지출되는 추가자본이 각이한 범주를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러한 계산방식에 기초하여 예컨대 기선(汽船)의 보존 및 보상을 위한 최저 비용의 예산은 연 15%이며 따라서 재생산기간은 6⅔년이라고 보았다. 60년대에 영국 정부는 이에 대하여 페닐술라 앤드 오리엔탈 회사에 연

16%를 보상하였는바, 이렇게 되면 재생산기간은 $6\frac{1}{2}$ ($6\frac{1}{4}$ —편집자)년에 해당한다. 칠도에서는 기관차의 평균수명은 10년인데, 보수를 계산에 넣어서 마멸을 $12\frac{1}{2}\%$ 로 보며, 이에 따라서 수명은 8년으로 저하된다. 객차와 화차에 있어서는 마멸을 9%로 계산하며, 따라서 수명은 11과 $1/9$ 년으로 본다.

소유자에게 있어서는 고정자본이며 그에 의하여 고정자본으로서 임대되는 가옥 기타 물건의 임대 계약에 있어서 입법(立法)은 시간, 자연적 영향, 그리고 정상적 사용 자체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정상적 마멸과, 가옥의 정상적 수명 및 그것의 정상적 이용기간 중의 정비를 위하여 수시로 요구되는 우연적 보수간에 어디서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통례로 첫째 종류의 보수는 소유자의 부담이며 둘째 종류의 보수는 임차인의 부담이다. 보수는 또 보통보수와 대보수로 구분된다. 후자는 고정자본의 현물형태로서의 부분적인 갱신이며, 계약에서 반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소유자의 부담으로 된다. 예컨대 영국의 법률에 의하면

“임차인은 그해 그해에, 대보수없이 실시할 수 있는 한에서 풍우를 막도록 건물을 보존하고, 일반적으로 보통보수라고 부를 수 있는 보수에만 배려를 돌릴 의무가 있을 뿐이다. 또 이 점에 있어서도 임차인이 인수한 당시의 건물의 해당 부분의 연령과 일반적 상태를 고려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낡아지고 마멸된 재료를 새 것으로 보상할 의무도, 시간의 경과와 규칙적인 사용의 결과 발생하는 불가피한 감가를 보상할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홀즈워드 『지주와 차지인에 관한 법률』 90, 91페이지)

비상한 자연재해들, 화재, 홍수 등등에 의한 파괴와 관련된 보험은 마멸의 보상이나 보존 및 보수작업과 전혀 다른 것이다. 보험은 잉여 가치에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것으로부터의 공제를 이룬다. 즉 문제를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우연과 자연력에 의하여 야기되는 비상한 파괴를 보상하기 위한 생산수단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부당한 추가생산 즉 현존하는 부의 단순한 보상과 재생산에 필요한 것보다 더 큰 규모에서의 생산이—인구의 증가는 전혀 도외시하더라도—일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실제로는 보상에 필요한 자본의 극소부분만이 화폐 예비фон드로 존재한

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산규모의 확장 그 자체 속에 존재하는 바, 이 확장은 부분적으로는 현실적인 확장이며, 부분적으로는 고정자본을 생산하는 생산부문들에서 생산의 정상적인 규모의 필수조건이다. 그리하여 예컨대 기계제작공장은 연년 자기의 고객인 공장들이 확장된다는 것과 또한 이 공장들의 일부분이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재생산을 부단히 요구한다는 데 대응하여 준비되고 있다.

사회적 평균에 의하여 마멸과 보수비를 규정하는 경우에 동일한 생산부분에서의, 동등한 크기의 또 그뿐만 아니라 동등한 제사정하에 있는 자본투하에 있어서조차 필연적으로 큰 차이가 생긴다. 실제로 있어서는 기계 등등이 어떤 자본가에 있어서는 평균기간을 초과하여 지속하는데 다른 자본가에 있어서는 그만큼 오래 지속하지는 않는다. 일방의 보수비는 평균 이상이고 타방의 그것은 평균 이하이다 등등. 그런데 마멸에 의하여서와 보수비에 의하여 규정되는, 상품가격의 첨가분은 동일하며 평균에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이 가격첨가로 말미암아 일방의 자본가는 그가 실제로 첨가한 것보다 더 많이 받으며 타방의 자본가는 보다 적게 받는다. 이것은 동일한 생산부문에서 노동력의 착취가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각이한 자본가의 이득을 각이하게 만드는 기타의 모든 사정들과 마찬가지로 잉여가치의 진정한 본성의 이해를 곤란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고유한 의미에서의 보수와 보상간의, 보존비와 갱신비간의 한계는 많거나 적거나 간에 조건적이다. 일정한 지출이 보수인가 또는 보상인가, 그것은 경상비에서 충당되어야 할 것인가 또는 고정자본에서 충당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예컨대 철도사업 영역에서의 끊임없는 논쟁은 여기에 유래한다. 보수비를 소득계시가 아니고 자본계시에 포함시키는 것은 철도관리자들이 자기들의 배당금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는, 주지되어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이 점에서도 경험은 이미 가장 본질적인 거점(據點)을 제공하였다. 예컨대 철도의 유년기의 추가노동은

“결코 보수가 아니고 철도부설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으로서 간주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자본계시로 기입되어야 할 것인바, 왜냐하면 그것은 마멸이나 운행의 정상적 작용에 의하여 야기되는 것이 아니고 철도부설의 시초의 불가피한 미완성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드너 동상서, 40페이지). “이와는 반대로 매해의 소득을 얻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가치감소를 매해의 소득

에 부담시키는 것이,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든 안되든간에, 유일하게 정당한 방법이다”(피즈모리스 대령 『칼레도니아, 철도조사위원회』 『머니마켓 리뷰』지 [1867년]에 게재된 것).

농업에서는 고정자본의 보상과 보존의 분간은 적어도 거기에서 아직 증기(蒸氣)력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한, 실제로 불가능하며 또 쓸데없는 일이다.

“재산목록상의 비품(온갖 종류의 필요한 농구, 기타 노동도구 및 경리용품)이 과다하지 않지만 충분히 있는 경우에 대체로, 그 비품의 연 소모와 보존비는 목전의 사정들이 다름에 따라서 시초 자본의 15~25%로 보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다”(키르호호프 『농업경영학 편람』 베를린, 1852년, 137페이지).

철도의 운전재에 있어서는 보수와 보상을 분간하기는 전혀 불가능하다.

“우리는 운전재를 그 수 그대로 보존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관차의 수가 얼마나 되든 우리는 이 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만약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한 대의 기관차가 못쓰게 되고 그리하여 새 것을 건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우리는 수입을 희생으로 하고 이것을 건조하는데, 이에 있어서 우리는 낡은 차에서 남는 자재의 가치를 물론 수입의 정방에 기입한다…언제나 상당히 많은 것이 남는다…차륜, 차축(車軸), 기관(汽罐) 등등 간단히 말하여 낡은 기관차의 상당한 부분이 남는다”(그레이트 웨스턴 철도회사) 사장, T. 구츠 R. C., 제17, 327~29호). “보수한다는 것은 갱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에게서는 보상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철도회사가 차량이나 기관차를 일단 구입한 이상은 그것들이 영구히 달릴 수 있도록 보수하여야 한다”(제17, 784호). “우리는 기관차에 대한 비용을 영국의 열차 마일당 8½펜스로 계산하고 있다. 이 8½펜스로써 우리는 기관차를 영구히 보존한다. 우리는 우리의 차를 갱신하는 것이다. 당신이 만약 차를 새로 사려고 한다면 당신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화폐를 지출하는 것이다. …낡은 차에는 언제나 몇 개의 차륜이나 차축 또는 기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이것들으로써 새 것과 전혀 다른없는 훌륭한 차를 염가로 만들 수 있다”(제17, 790호). “현재 나는 매주 새 기관차를 즉 새 것과 다른없는—왜냐하면 기관, 실린더, 차체는 새 것이기 때문에—기관

차를 생산한다”(제17, 823호, 『그레이트 노던 철도』의 기관차 부장 아치볼드 스티록크, R.C., 1867년). 차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관차와 차량의 저장은 부단히 갱신된다. 어느 때는 새 차륜이 끼워지며 어느 때는 새 차대가 만들어진다. 운전의 기초가 되며 가장 많이 마멸을 당하는 부분들이 점차로 갱신된다. 그리하여 기관차와 차량은, 그것들 중에서 많은 것이 낡은 자재의 흔적도 남기지 않은 그러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것들이 전혀 보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조차 낡은 차량이나 기관차로부터 개별적인 부분들이 수집되며 그리하여 그것들은 철도에서 결코 완전히 없어지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가동적인 자본은 부단한 재생산의 상태에 있다. 노반(路盤)에 있어서는 철도 전체가 새로 부설될 때에 일정한 시기에 한꺼번에 실시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운전재에 있어서는 연년 점차적으로 실시된다. 그것의 존재는 영구하며 부단히 젊어지고 있다.”(라드너, 115~116페이지).

여기에서 라드너가 철도에 관하여 서술한 바와 같은 이 과정은 개별적인 공장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어떠한 생산부분 전체의 내부에서의, 또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모에서 고찰되는 총생산의 내부에서의 고정자본의 부단한, 부분적인, 보수와 교차되어 진행되는 재생산의 형상으로서는 적합하다.

여기에 노련한 관리자들이 배당금을 얻으려고 얼마나 광범한 한계내에서 보수와 보상이라는 개념으로써 농간할 수 있는가 하는 증거가 있다. 위에서 인용한 R.P. 윌리엄스의 보고에 의하면 각이한 영국 철도회사들은 몇 해 동안을 평균하여 다음과 같은 금액을 노반과 건물의 보수 및 보존비로서 소득계시에 기입하였다(선로 1영국 마일당 연액).

런던 앤드 노쓰웨스턴	370파운드 스텔링
미드랜드	225파운드 스텔링
런던 앤드 사우쓰 웨스턴	257파운드 스텔링
그레이트 노던	360파운드 스텔링
랭카셔 앤드 요크셔	377파운드 스텔링
사우쓰 이스턴	263파운드 스텔링

브라이튼

266파운드 스텔링

맨체스터 앤드 셰필드 200파운드 스텔링

이 차이들 중에서 현실적인 지출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것은 극소부분에 불과하다. 차이들은 거의 전적으로, 지출항목들을 자본계시에 부담시키는가 또는 소득계시에 부담시키는가 하는 계산방식에서 발생한다. 월리엄스는 솔직하게 말한다. “보다 적게 부담시키게 되는 것은 좋은 배당금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며, 보다 많이 부담시키게 되는 것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다액의 소득이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경우에는 마멸, 따라서 또 그것의 보상은 실제상으로 보잘 것 없는 크기이며 그렇기 때문에 보수비만이 계산된다.

라드너가 철도에서의 기술시설(works of art)에 관하여 아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운하, 독크, 철교 및 석교(石橋) 등등과 같은 오래 견딜 수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서도 타당하다.

“견고한 건축물에 있어서 시간의 완만한 작용의 결과 생기는 마멸은 단기간에는 거의 눈에 띄이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간 예컨대 수백년이 경과하면 극히 견고한 건축물에 있어서도 마멸로 말미암아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갱신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눈에 띄이지 않는 마멸과 철도의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의 보다 더 감축할 수 있는 마멸과의 비교는 천체(天體)운동에서의 영구편차와 주기편차에 비교될 수 있다. 교량, 터널, 구름다리 등등과 같은 철도의 육중한 건축물들에 미치는 시간의 작용은 영구마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실례를 제공한다. 보다 짧은 기간에 보수와 보상에 의하여 매꾸어지는 보다 신속하고 눈에 띄이는 가치감소는 주기편차와 유사한 것이다. 비교적 견고한 건축물에 있어서도 그 외면이 수시로 입게되는 우연한 손상의 보상 역시 연년의 보수비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와는 상관없다 하더라도 시간은 그것들에 아무 자취도 남기지 않고 흘러가는 것은 아니어서 결국에 가서는 그 건축물들의 상태가 새로운 건축을 요구하게 되는 계기가,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닥쳐 오고야 만다. 재정적 및 경제적인 점에서는, 확실히 이 시간은 실제 계산에 넣기에는 너무나 요원한 것일 수 있다”(라드너, 동상서, 38, 39페이지).

이것은 영구적인 견고성을 가진 모든 건축물들—즉 그것들에 전대된

자본을, 그것들의 마멸에 따라 점차적으로 보상할 필요는 없고, 다만 보존과 보수에 연 평균비용을 생산물의 가격에 이전하면 좋은 그러한 구축물들에 관하여 타당하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연년에 또는 심지어는 그보다 단기간에 고정자본의 마멸의 보상을 위해서 환류하는 화폐의 보다 많은 부분은 다시 그것의 현물형태로 재전화한다 하더라도 매 개별적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고정자본중, 수년 후에야만 한꺼번에 재생산기간에 달하여 그 때에 전부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을 위하여 감가상각기금이 필요하다. 고정자본의 상당한 구성부분은 자체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일부분씩의 재생산을 배제한다. 그 밖에도 가치가 감소한 것에도가 짧은 기간을 두고 새 가치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재생산이, 일부분씩 실시되는 경우에는 이 보상이 실시될 수 있기 전에 생산부문의 특수한 성격에 따라 다소간의 규모의 화폐축적이 미리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어떠한 임의의 화폐액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일정한 규모의 화폐액이 요구된다.

만약 우리가 후에야 비로소 전개하게 될 신용체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만 단순화폐유통이라는 전제하에 이상의 것을 고찰한다면 운동의 기구(機構)는 다음과 같다. 제1부(제3장, 제3절 a)에서 분명히 된 바와 같이 한 사회에 현존하는 화폐의 일부분은 언제나 퇴장화폐로서 유평상태에 놓여있고, 다른 부분은 유통수단으로서 또는 직접 유통하고 있는 화폐의 직접적인 예비폰드로서 기능한다고 하면, 총화폐량이 퇴장화폐와 유통수단으로 분할되는 비율은 부단히 변동된다. 우리의 실례에서는 비교적 큰 자본가의 수중에서 비교적 큰 규모로 퇴장화폐로서 적립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화폐는 이제는 고정자본의 구입에 있어서 한꺼번에 유통에 투입된다. 이 화폐 자체는 사회에서 유통수단과 퇴장화폐로 다시 분할된다. 고정자본의 마멸에 따라 그것의 가치를 출발점으로 환류케 하는 감가상각기금으로 말미암아 유통하는 화폐의 일부분은, 고정자본의 구입에 있어서 자기의 퇴장화폐를 유통수단으로 전화시켰으며 자기로부터 떠나 보낸 바로 그 동일한 자본가의 수중에서 장기간이건 단기간이건간에 재차 퇴장화폐를 형성한다.

이는 사회에 존재하는 퇴장화폐의, 부단히 변경되는 분배인 바, 이 퇴장화폐는 변갈아, 유통수단으로서 기능하는가 하면 다음에는 퇴장화폐로서 또 다시 유통하는 화폐량으로부터 분리된다. 대산업 및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과 필연적으로 병행하는 신용체계의 발전에 따라 이 화폐는 이제는 퇴장화폐로서가 아니라 자본으로서, 그러나 그것의 소유자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다른 자본가의 수준에서 기능한다.

제9장 전대자본의 총회전. 회전순환

이상에서 우리는, 생산자본의 고정적 구성부분과 유동적 구성부분은 회전방식과 회전기간이 각각 다르며 또 동일한 기업에서의 고정자본의 각이한 구성부분들도 역시 그것들의 수명, 따라서 재생산기간이 다름에 따라 회전기간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보았다(동일한 기업에서의 유동자본의 각이한 구성부분들의 회전의 현실적 또는 외관적 차이에 관해서는 본 장 마지막 제6항 참조).

1. 전대자본의 총회전은 이 자본의 각이한 구성부분들의 평균회전이다. 계산방법에 관해서는 후에 서술할 것이다. 기간의 상이만이 문제로 되는 한, 물론 그것의 평균을 내는 것보다 더 단순한 것은 없다. 그러나

2. 여기에서는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있는 것이다.

생산과정으로 들어가는 유동자본은 그것의 가치 전부를 생산물에 이전하며, 따라서 그것은 생산과정을 중단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현물로 부단히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생산과정으로 들어가는 고정자본은 그것의 가치의 일부(마멸분)만을 생산물에 이전하며, 마멸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산과정에서 기능한다. 따라서 그것은 장단간에 중간기간을 두고 비로소 현물로 보상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어쨌든 유동자본처럼 빈번히 보상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 보상의 필요성 즉 재생산기간은 고정자본의 각이한 구성부분들에 있어서 양적 차이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수명이 보다 오랜, 다년성 고정자본의 일부는 매년 또는 그보다도 짧은 기간을 두고 보상되어 구(舊)고정자본에 현물로 첨가될 수 있는데, 다른 속성을 가진 고정자본에 있어서는 오직 그것의 수명이 끝난 후에 한꺼번에 보상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자본의 각이한 부분의 특수회전들을 동종의 회전형태로 환원하여 그것들이 양적으로만, 회전의 길이로 보아서만 차이가 있

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질적 동일성은 연속적 생산과정의 형태인 $P \cdots P$ 를 출발점으로 삼을 경우에는 없다. 왜냐하면 P 의 일정한 제요소는 무단히 현물로 보상되어야 하는데 다른 제 요소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G \cdots G'$ 의 형태는 확실히 회전의 이러한 동일성을 준다. 예컨대 10,0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를 가진 한 기계가 그 수명이 10년이고 따라서 이 가치의 $1/10$ 즉 1,000파운드 스텔링이 매년 화폐로 재전화된다고 하자. 이 1,000파운드 스텔링은 1년 동안에 화폐자본으로부터 생산자본, 그 다음에는 상품자본으로 전화하며 이 상품자본으로부터 화폐자본으로 재전화하였다. 그것은 이 형태에 있어서 고찰된 경우의 유동자본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화폐형태로 복귀한 것인데, 이 경우에 1,0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화폐자본이 연말에 가서 다시 어떤 기계의 현물형태로 재전화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다. 그러므로 전대된 생산자본의 총회전의 계산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 자본의 모든 요소들을 화폐형태로 고정시켜 그리하여 화폐형태로의 복귀가 회전의 종결로 되도록 한다. 우리는 가치를 언제나 화폐로 전대된 것으로—가치의 이 화폐형태가 계산화폐의 형태에 불과한 연속적 생산과정의 경우에 있어서까지도—간주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평균치를 낼 수 있다.

3. 이하하여 전대된 생산자본의 압도적 부분이 고정자본—이것의 재생산기간 따라서 또 회전기간이 다년간에 걸치는 순환을 포괄하는—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까지도 연간에 회전한 자본가치가 그 연간의 유동자본의 회전의 반복의 결과로 전대자본의 총가치보다 더 클 수 있게 된다.

고정자본은 80,000파운드 스텔링이고 그것의 재생산기간은 10년, 따라서 매년 그중 8,000파운드 스텔링이 화폐형태로 복귀한다고, 또는 고정자본의 회전의 10분의 1이 수행된다고 하자. 유동자본은 20,000파운드 스텔링이며 연 5회전 한다고 하자. 그 경우에는 총자본은 100,000파운드 스텔링이고 회전한 고정자본은 8,000파운드 스텔링, 회전한 유동자본은 $20,000 \times 5 = 100,000$ 파운드 스텔링이다. 따라서 연간에 회전한 자본은 108,000파운드 스텔링이어서 전대자본보다 8,000파운드 스텔링이 더 많다. 자본의 $1 + 2/25$ 가 회전한 것으로 된다.

4. 따라서 전대자본의 가치회전은 이 자본의 현실적인 재생산 또는 그

구성부분들의 현실적인 회전으로부터 시간상으로 분리된다. 예컨대 4,0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이 연5회전한다고 하자. 그 경우에는 회전한 자본은 $4,000 \times 5 = 20,000$ 파운드 스텔링이다. 그러나 매개 회전의 마지막에 복귀되어 다시 전대되는 것은 최초에 전대된 자본 4,000파운드 스텔링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의 크기는 이 자본이 자본으로서 새로 기능하는 회전기간의 수에 의하여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잉여가치는 도외시한다).

그리하여 상기 3에서 든 예에서의 전제에 의하면 연말에 자본가의 수중으로 복귀한 것은 (a) 그가 자본의 유동적 구성부분들에 다시 지출하게 될 20,0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액과, (b) 마멸로 말미암아 전대된 고정자본의 가치로부터 분리된 8,000파운드 스텔링의 금액이다. 그밖에 생산과정에는 종전과 동일한 고정자본이 계속 존재하나 80,000파운드 스텔링이 아니라 72,0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감소된 가치로서이다. 따라서 전대된 고정자본이 자기 수명을 다 살고 생산물 및 가치의 창조자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보상되지 않으면 안될때까지는 아직도 생산과정의 9년간의 계속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전대된 자본가치는 회전들으로써 이루어지는 1순환을, 예컨대 상술한 경우에는 10년간의 회전들으로써 이루어지는 1순환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이 순환은 총용된 고정자본의 수명, 따라서 재생산기간 또는 회전기간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발전과 함께 총용되는 고정자본의 가치량과 수명이 증대함에 따라 그만큼, 특수한 각 투자부문에서의 산업 및 산업자본의 생애는 다년간의 생애로, 예컨대 평균하여 10년간의 생애로 발전하여 간다. 일방으로 고정자본의 발전이 이 생애를 연장한다면 타방으로는 그 역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발전과 함께 부단히 증대되는, 생산수단의 부단한 변혁으로 말미암아 이 생애는 단축된다.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발전과 함께 생산수단의 교체의 필요성도, 그리고 생산수단이 물리적으로 수명을 다 살기 오래 전에 도덕적 마멸의 결과로 그것들을 부단히 보상할 필요성도 증대된다. 대산업의 가장 결정적인 부문들에서는 지금 이 생애의 순환이 평균하여 10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한 일정한 수는 문제로 되지 않는다. 하여튼 이것만은 명백하다. 즉 호상 연관되어 있는 회전들—자본이 그것의 고정적 구성부분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 있는—으로써 이루어지는, 수년간에 걸치는 순환에 의하여 주기적 공황의 물질적 기초가 생기는바, 이 주기적 공황의 행정에서 기

업은 침체, 중위의 활기, 격동, 공황의 순차적 시기들을 통과한다. 물론 자본이 투하되는 기간들은 극히 각이하며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황은 언제나 새로운 대규모의 투자의 출발점을 이룬다. 따라서 또 사회 전체를 고찰한다면 공황은 다소간에, 다음에 올 회전순환을 위한 새로운 물질적 기초를 이룬다.²²⁻¹⁾

5. 회전의 계산방식에 관해서는 아메리카의 한 경제학자의 말을 빌기로 하자.

“약간의 생산부문에 있어서는 전대자본 전체가 1년 동안에 여러 번 회전 또는 유통한다. 또 약간의 다른 부문에 있어서는 일부는 1년에 1회 이상 회전하는데 다른 일부는 그렇게 빈번히는 회전하지 않는다. 자본가의 이윤계산의 기준으로 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그의 전체 자본이 그의 수중을 통과 또는 한 번 회전함에 필요한 평균기간이다. 어떤 사람이 일정한 기업에 자기의 자본의 절반은 10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건물과 기계에, 그 4분의 1은 2년에 한번씩 갱신되는 도구 등등에,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1년 2회전하는 노임과 원료에 지출한다고 하자. 그의 총자본은 50,000달러라고 하자. 그 경우에는 그의 연 지출은 다음과 같이 된다.

$$10\text{년간에 } \frac{50,000}{2} = 25,000\text{달러. } 1\text{년간에 } 2,500\text{달러}$$

$$10\text{년간에 } \frac{50,000}{4} = 12,500\text{달러. } 1\text{년간에 } 6,250\text{달러}$$

$$1/2\text{년간에 } \frac{50,000}{4} = 12,500\text{달러. } 1\text{년간에 } 25,000\text{달러}$$

$$1\text{년간에 } 33,750\text{달러}$$

따라서 그의 전체 자본이 1회전하는 평균기간은 16개월이다……또 하나의 경우를 들어 보자. 50,000달러의 총자본중 4분의 1은 10년에, 다른 4분의 1은 1년에, 나머지 절반은 1년에 2회 회전한다고 하자. 이 경우에

22-1) “도시에서의 생산은 몇 날을 포괄하는 회전과 관련되어 있는데, 농촌에서의 생산은 그와 반대로 몇 해를 포괄하는 회전과 관련되어 있다”(A. H. 윌러 「정치요론」 베를린, 1809년, 제3권, 178페이지). 이것은 공업 및 농업에 관한 낭만파의 소박한 표상이다.

는 연 지출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begin{array}{r} \frac{12,500}{10} = 1,250\text{달러} \\ 12,500 = 12,500\text{달러} \\ \hline 25,000 \times 2 = 50,000\text{달러} \\ \hline \text{1년간 회전액 } 63,750\text{달러} \end{array}$$

(스크로프 「정치경제학」 알론조 포터 편찬, 뉴욕 1841년, 142, 143페이지.)

6. 자본의 각이한 부분들의 회전에 있어서의 현실적 및 외관적 차이.
상술한 스크로프는 같은 개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장주나 농장주 또는 상인이 노임지불에 지출하는 자본은 가장 급속히 유통한다. 왜냐하면 그의 노동자들에게 매주 지불한다면 이 자본은 그의 판매 또는 지불계시로부터의 주(週) 수입에 의하여 아마 매주 1회 회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원료 또는 완성 저장품에 지출된 자본은 그렇게 급속하게 유통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원료구입과 완성 저장품의 판매 사이에 소비되는 시간에 따라서—그가 동등한 신용기간으로 매매한다고 전제하고—1년에 2회 또는 4회 회전할 수 있다. 도구와 기계에 포함되어 있는 자본은 더 완만하게 유통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균하여 아마도 5년 또는 10년에 겨우 1회 회전할 것, 즉 소비되고 갱신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몇 차례 안되는 조작들로 소모되어 버리는 도구들도 많지만, 건축물들 예컨대 공장, 점포, 창고, 곡창과 도로, 관계시설 등등에 지출된 자본은 무릇 거의 전혀 유통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실은 이 투자물도 역시 상술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에 기여하는 동안에 완전히 소모되어 버리며, 생산자가 그의 조작들을 계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재생산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그것들은 다른 것들보다 완만하게 소비되며 재생산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것들에 투하된 자본은 아마도 20년 또는 50년만에야 회전할 것이다” [141~142페이지].

스크로프는 여기에서 개별적 자본가에게 있어서 지불기한과 신용관계에 의하여 조건지어지는, 유동자본의 일정한 부분의 운동상의 차이와, 자본의 본성에 기인하는 제 회전의 차이와를 혼동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노임은 지불된 판매 또는 지불계시로부터의 주 수입에 의하여 매주 지불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로, 노임 그 자체에 관하여 지불기한의 장단, 다시 말하면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신용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간의 장단 여하에 따라서, 즉 임금지불기한이 1주일인가, 1개월인가, 3개월인가, 반년인가 하는 등등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위에서 서술한 법칙 즉 지불수단(즉 단번에 전대되어야 할 화폐자본)의 필요량은 지불기간의 장단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이 적용된다(제1권, 제3장, 제3절)〔조선어역, 제1권, 제1분책, 199페이지〕.

둘째로, 주(週) 생산물에는 그것의 생산에 있어서 주 노동에 의하여 첨가되는 새로운 가치의 총량 뿐만 아니라 그 주 생산물에 소비된 원료 및 보조재료의 가치도 들어간다. 생산물과 함께 생산물에 포함된 이 가치도 유통하는 것이다. 이 가치는 이 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화폐형태를 취하며 새로 동일한 생산 제 요소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노동력에 대해서도 원료 및 보조재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제6장, 제2절, 1) 생산을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저장에 필요한바, 이 저장은 생산부문이 다름에 따라 다르며 또 동일한 생산부문에 있어서도 이 유동자본요소의 구성부분들이 다름에 따라, 예컨대 석탄인가 면화인가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비록 이 재료들은 무단히 현물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들을 무단히 새로 구매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구매가 얼마나 자주 갱신되는가 하는 것은 준비된 저장의 크기에, 그것이 떨어질 때까지 얼마나 오래 지속하는가에 의존한다. 노동력에 있어서는 그러한 저장은 형성되지 않는다. 노동에 지출된 자본부분의 화폐로의 재전화는 보조재료와 원료에 지출된 부분의 재전화와 나란히 진행된다. 그러나 일방으로는 노동력과 타방으로는 원료로의 화폐의 재전화는 서로 분리되어 진행된다. 왜냐하면 이 두 구성부분은 구매 및 지불기한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그 중의 일방은 생산적 저장으로서 비교적 오랜 기한을 두고 구매되는데 타방 즉 노동력은 비교적 짧은 기한, 예컨대 주(週)마다 구매되는 것이다. 타방으로 자본가는 생산적 저장 이외에 또한 완성 상품의 저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없다. 판매난 등등은 도외시하더라도 예컨대 일정한 양의 주문품이 생산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주문품의 최종 부분이 생산되는 동안 이미 완성된 부분은 주문이 완전히 수행될 수

있을 때까지 창고에서 기다린다. 유동자본의 회전상의 다른 차이는 이 자본의 일부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하여 더 오랫동안 생산과정의 준비단계(목재의 건조 등등)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 생긴다.

스크로프가 여기에서 들고 있는 신용제도도 상업자본과 마찬가지로 개별적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회전을 수정한다. 사회적 규모에 있어서는 신용제도는 그것이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까지도 촉진시키는 한에 있어서만 회전을 수정한다.

제10장 고정자본 및 유동자본에 관한 제학설. 중농주의자들과 아담 스미드

깨네에게 있어서는 고정자본과 유동자본간의 구별이 시초의 전대(*avances primitives*)와 연년의 전대(*avances annuelles*)간의 구별로서 나타나고 있다. 그는 이 구별을 정당하게도 생산자본 즉 직접적 생산과정에 합체된 자본의 내부에만 존재하는 구별로서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농업에 충용되는 자본 즉 차지농업가의 자본이 유일한 현실적 생산자본이므로 이 구별도 또한 차지농업가의 자본에 있어서만 생긴다. 그가 자본의 일부분의 회전기간은 1년이고 다른 부분의 그것은 1년 이상(10년)이라고 보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으로써 설명된다. 기왕이니 말하지만 중농주의자들은 그들의 학설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이 구별을 다른 종류의 자본에도, 산업자본 일반에도 적용시키게 되었다. 연년의 전대와 다년성 전대간의 구별은 사회에 대하여는 극히 중요한 것으로서 많은 경제학자들이—A. 스미드 이후에 있어서도—이 규정에 되돌아 오고 있다.

두 종류의 전대간의 구별은 전대된 화폐가 생산자본의 제 요소로 전화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이 구별은 오로지 생산자본의 내부에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폐를 시초의 전대나 연년의 전대에 산입한다는 것은 깨네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생산을 위한 전대로서는—즉 생산자본으로서—두 종류의 전대는 화폐에도, 시장에 있는 상품에도 대립한다. 그리고 또 깨네에게 있어서는 생산자본의 이 두 요소간의 구별이 정당하게도, 이 요소들이 완성 생산물의 가치 속에 들어가는 방식의 차이로, 따라서 그것들의 가치가 생산물의 가치와 함께 유통하는 방식의 차이로, 따라서 또 그것들의 보상 또는 그것들의 재생산의 방식의 차이로—일방의 요소의 가치는 연년이 그 전부가 보상되는데 타방의 요소의 가치는 '보다' 장기간에 걸쳐 일부분씩 보상되므로—귀착되고 있다.²³⁾

이 문제에서 A. 스미드가 달성한 유일한 진보는 상술한 제 범주를 일

반화하였다는 데 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 범주들이 이미 자본의 특수한 한 형태인 차지농업가의 자본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생산자본에 관련되고 있다. 이로부터 자연, 농업에서 취하고 있는, 1년간 회전과 다년간 회전간의 구별 대신에 각이한 기간을 가진 제 회전의 일반적 구별이 나타나며, 그리하여 유동자본의 회전기간에는 관계없이 즉 그 기간이 1년이건, 1년 이상이건 또는 1년 이하이건 할 것 없이 고정자본의 1회전은 언제나 유동자본의 1회전 이상을 포함하게 된다. 그리하여 스미드는 연년의 전대는 유동자본으로, 시초의 전대는 고정자본으로 전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의 진보는 이러한 제 범주의 일반화에만 국한되어 있다. 설명에 이르러서는 그는 껀네보다 훨씬 뒤떨어지고 있다.

스미스가 그 연구에 착수하자 곧 그 천박한 경험적 수법이 불명료성을 끌어 들이고 있다.

“자본이 그 충용자에게 소득 또는 이윤을 가져 오도록 충용될 수 있는 두 가지 각이한 방식이 있다.”(『국부론』 제2권, 제1장, 189페이지, 버딘판, 1848년)〔러시아어 역, 사회경제서적 출판사, 1935년 231페이지〕.

-
- 23) 껀네 『경제표의 분석』(『중농주의자들』 데르 편찬, 제1부, 파리, 1846년) 참조. 여기에서는 예컨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연년의 전대란 매년 경작 작업에 실시되는 제 지출이다. 이 전대는 농업 설비폰드를 형성하는 시초의 전대와 구별되어야 한다”(59페이지). 보다 후기의 중농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왕왕 전대가 직접 자본으로 불리우고 있다. 즉 듀퐁 드 네무르는 그의 저서 『신과학의 기원과 진보』(1767년, 데르 편찬, 제1부, 291페이지)에서 자본 즉 전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 르트로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다소간 오래 존속하는 노동생산물의 형태로 국민은 그 연년의 재생산과는 관계없는 부의 다액의 폰드를 가지고 있다. 이 폰드는 오랫동안 축적된 자본을 이루며 원래는 제 생산물으로써 지불된 것이며 또 부단히 갱신되며 증식된다”(데르 편찬, 제2부, 928페이지). 튀르고에 이르러서는 벌써 전대라는 말 대신에 자본이라는 말을 상례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제조업자의 전대를 차지농업가의 그것과 동일시하고 있다(튀르고, 『부의 형성과 분배에 관한 고찰』 1766년).

가치가 자본으로서 기능하도록, 그것의 소유자에게 잉여가치를 가져오도록 투하될 수 있는 방식은 자본투하 분야와 마찬가지로 각이하고 다양하다. 이것은 자본이 투하될 수 있는 각이한 생산부문에 관한 문제이다. 그렇게 정식화하면 문제는 더 광범해진다. 그것은 가치가 생산자본으로서 투하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것이 어떻게 하여 그 소유자를 위하여 자본으로서, 예컨대 이자부 자본, 상인자본 등등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포함한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이미 우리는 분석의 현실적 대상인 다음과 같은 문제로부터 한없이 멀리 물러서게 된다. 즉 생산자본의 그 각이한 요소로의 분할은—그 자본의 투하분야의 차이에는 관계없이—그 요소들의 회전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A. 스미드는 그 뒤에 곧이어 말하고 있다.

“첫째로 자본은 재물을 낳든가, 가공하든가 또는 구매하고 다시 그것에 이윤을 붙여서 판매하는 데 충용될 수 있다.” [「국부론」 러시아어판, 사회경제서적출판사, 1935년, 231페이지]

A. 스미드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본은 농업, 제조업 및 상업에 충용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는 자본의 각이한 투하분야에 관하여 말하고 있을 따름이며, 상업에 있어서와 같이 자본이 직접적 생산과정에 합체되지 않고 따라서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는 그러한 분야에 관하여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미, 중농주의자들이 생산자본의 개별적 부분들의 구별과, 회전에 대한 그것들의 영향을 서술한 그 기초를 포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생산물 및 가치의 형성과정에 있어서의 생산자본의 부분들의 구별—이 구별 자체는 또 생산자본의 회전과 그것의 재생산에 있어서의 구별을 낳는다—만이 취급되고 있는 어떤 문제에서 즉시에 상인자본을 실례로서 들고 있다.

그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충용되는 자본은 그것이 그 충용자의 수중에 남아 있거나 또는 동일한 형태로 존속하는 동안은 그에게 소득 또는 이윤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국부론』 러시아어판, 사회경제서적출판사, 1935년, 231페이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용되는 자본! 그러나 스미드는 농업 또는 공업에 투하되어 있는 자본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며, 또 후에 와서는 이와같이 투하된 자본은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으로 분할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의 자본의 투하는 자본을 고정자본으로도 유동자본으로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상품을 생산하고 이 상품을 이윤을 붙여서 판매하기 위하여 총용된 자본은, 그것이 상품으로 전화된 후 판매되며 이 판매에 의하여 첫째로 판매자의 소유로부터 구매자의 소유로 넘어가야 하며 둘째로는 상품으로서의 그것의 현물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 전화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그 자본은 그것이 그 소유자의 수중에 남아 있거나 또는—그에게 있어서—동일한 형태로 남아있는 동안은, 그에게는 무용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겠는가? 그러나 그렇다면 사태는 다음과 같은 데 귀착된다. 즉 종전에, 생산과정에 속하는 형태인 생산자본의 형태로 기능하였던 동일한 자본가치는 이제는 유통과정에 속하는 형태인 상품자본 및 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하며 따라서 이미 고정자본도 유동자본도 아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원료 및 보조재료에 의하여, 따라서 유동자본에 의하여 첨가되는 가치요소에 대해서도, 노동수단의 소모에 의하여, 따라서 고정자본에 의하여 첨가되는 가치요소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이 우리는 여기에서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구별의 해명에 일보도 접근하지 못하였다.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상인의 재물은 그가 그것을 판매하여 화폐와 바꿀 때까지는 그에게 소득 또는 이윤을 가져다 주지 않으며, 또 화폐도 역시 그것이 다시 재물과 교환될 때까지는 그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의 자본은 부단히 한 형태로 그로부터 떠나서 다른 형태로 그에게로 복귀하는 것이며, 그것이 그에게 어떤 이윤이든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와 같은 유통 또는 순차적 교환에 의해서만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본은 극히 적절하게도 유동자본(circulating capital)이라고 불리울 수 있다.”〔『국부론』 러시아어판, 사회경제서적출판사, 1935년, 231페이지〕

A 스미드가 여기에서 유동자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내가 유통자본 (Zirkulationskapital) 이라고 부르려고 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 유동자본이란 유통과정에, 교환에 의하여 매개되는 형태변환(물질변환 및 소유자 변환)에 속하는 형태로서의 자본이다. 즉 생산과정에 속하는 자본형태인 생산자본과 대립되는 상품자본 및 화폐자본을 말하는 것이다. 이 자본형태들은 산업자본가가 그의 자본을 분할하는 특수한 종류들이 아니라 동일한 전대자본가치가 자체의 생애에 있어서 서로 뒤를 이어 부단히 새로 취하였다가 벗어버리는 각이한 형태들이다. A 스미드는 이것을, 자본가치가 생산자본의 형태로 있는 동안에 자체의 순환의 순차적 단계를 통과하는 자본가치의 유통의 내부에서 발생하는—그것도 생산자본의 각이한 요소들이 가치형성과정에 참가하여 그것들의 가치를 생산물에 이전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형태상의 차이와 혼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농주의자들에 비한 A 스미드의 일대 퇴보가 있는 것이다. 일방으로는 생산자본과 유통분야에 있는 자본(상품자본 및 화폐자본)과의, 타방으로는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이 근본적인 혼동의 결과를 후에 고찰할 것이다. 고정자본으로 전대된 자본가치도 유동자본으로 전대된 자본가치와 마찬가지로 생산물을 통하여 유통시켜지며 전자나 후자나 할 것 없이 상품자본의 유통에 의하여 화폐자본으로 전화된다. 차이는 다만 고정자본의 가치는 일부분씩 유통하며, 따라서 또 장·단간의 기간에 걸쳐 일부분씩 보상되며 현물형태로 재생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생긴다.

A 스미드가 여기에서 유동자본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유통자본 즉 유통과정에 속하는 제 형태로 있는 자본가치(상품자본 및 화폐자본)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가 특히 서투르게 선택한 예가 증명하여 준다. 그가 예로서 들고 있는 것은 생산과정에는 전혀 속하지 않고 오로지 유통분야에만 존재하며 다만 유동자본으로만 구성되는 그러한 종류의 자본 즉 상인자본이다.

자본이 무릇 생산자본으로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예로써 설명을 개시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가 하는 것은 그 자신이 바로 그 다음에 말하고 있다—상인의 자본은 그 전부가 유동자본이다. 그러나 유동자본과 고정자본간의 구별은,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듯이, 생산자본 그 자체의 내부에서의 본질적 구별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A 스미드는 일방으로는 중농주의자들이 설정한 구별을, 타방으로는 자본가치가 그 순

환과정에서 취하게 되는 형태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하여 이 양자가 서로 뒤섞여 있다.

그러나 화폐와 상품의 형태변환의 결과, 이 두 형태 중의 하나로부터 다른 하나로의 가치의 단순한 전화의 결과, 이윤이 어떻게 하여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절대로 이해되고 있지 않다. 또 이 경우에는 그 설명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니, 왜냐하면 스미드는 유통분야에서만 운동하는 상인자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는 후에 다시 돌아 가기로 하고, 우선 고정자본에 관하여 그가 말하고 있는 바를 들어보자.

“둘째로 그것(자본)은 토지개량에, 유용한 기계 및 노동도구의 구입에, 또는 소유자의 변경이나 그 이상의 유통없이 소득 또는 이윤을 가져다 주는 이와 유사한 물건들의 구입에 충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본은 극히 정당하게도 고정자본이라고 불릴 수 있다. 직업이 다름에 따라 거기에 충용되는 고정자본과 유동자본간의 비례는 극히 각이함을 요한다.……매개 수공업 장주(匠主)나 공장주의 자본의 일부는 그의 노동도구에 고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어떤 직업에 있어서는 극히 작으며 다른 직업에 있어서는 대단히 크다.……그러나 그러한 모든 수공업 장주들(재봉사, 제화장, 직조장과 같은)의 자본의 태반은 그들의 장공들의 노임으로든가 또는 그들의 자재의 가격으로 유통하고 제품의 가격에 의하여 이윤과 함께 상환되게 되어 있다.”(『국부론』, 러시아어판 사회경제서적 출판사, 1935년, 232페이지)

이윤의 원천에 관한 유치한 규정은 고사하고라도 약점과 혼란은 곧 다음과 같은 점에 나타나고 있다—예컨대 기계 제작업자에게 대하여는 기계는 상품자본으로서 유통하는 생산물, 즉 A 스미드의 말대로 하면 수중을 떠나서 소유주를 변경하며 다시 더 유통하는 생산물이다. 따라서 그 자신의 규정에 의하면 기계는 고정자본이 아니라 유동자본일 것이다. 이 혼란은 또, 스미드가 생산자본의 각이한 요소들의 각이한 유통방식에서 나오는 고정자본과 유동자본간의 구별과, 동일한 자본이 생산과정의 내부에서는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하고 이와는 반대로 유통분야에서는 유통자본으로서 즉 상품자본 또는 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하는 한에 있어서 그것이 통과하는 형태상의 차이와를 혼동하고 있는 데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A 스미드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본의 생활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 여하에 따라 고정자본으로서(노동수단, 생산자본의 제 요소로서) 기능할 수도 있고 유동자본, 상품자본으로서(생산분야로부터 유통분야로 밀려 나오는 생산물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A 스미드는 갑자기 자본 구분의 전체 기초 자체를 변경하여 그가 몇 줄 앞에서 전체 연구를 개시한 그것과 모순에 빠지고 있다. 이것은 특히 다음과 같은 명제에 있어서 그렇다. “자본이 그것의 총용자에게 소득 또는 이윤을 가져오도록 총용될 수 있는 두 개의 각이한 방식이 있다.” 즉 유동자본으로서이든가 또는 고정자본으로서이라고, 따라서 이 명제에 의하면, 자본이 예컨대 공업이든가 농업에 총용될 수 있듯이 호상 독립한 각이한 제 자본의 각이한 총용방식이 문제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말하기를—“직업이 다름에 따라 거기에 총용되는 고정자본과 유동자본간의 비례는 극히 각이함을 요한다”고, 이제는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이 벌써 각이한 독립적인 자본투자가 아니라 동일한 생산자본의 각이한 부분들—각이한 투자분야에서 이 자본의 총가치의 각이한 몫을 이르고 있는—이다. 따라서 이 양자간의 구별은 생산자본 자체의 해당한 분할에 기인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자본에 대해서만 타당한 구별이다. 그러나 또다시 이와 모순되게 상업자본이 단순한 유동자본으로서 고정자본에 대립시켜지고 있다. 왜냐하면 스미드 자신이 상인의 자본은 그 전부가 유동자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상업자본은 유통분야의 내부에서만 기능하는 자본이며 그러한 자본으로서 생산과정에 합체된 자본 일반인 생산자본과 대립되나,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생산자본의 유동적 구성부분으로서 생산자본의 고정적 구성부분에 대립할 수는 없는 것이다.

스미드는 그가 제시하고 있는 예에서 노동도구를 고정자본으로 규정하고 노임과 또 보조재료를 포함한 원료(제품의 가격에 의하여 이윤과 함께 상환되는)에 투하된 자본부분을 유동자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스미드가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다만 일방으로는 노동력(노동)과 원료, 타방으로는 노동도구인, 노동과정의 각이한 구성부분들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자본의 구성부분인 것은 자본으로서 기능해야 할 일정한 가치액이 그것들에 지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에 있어서 그것들은 생산자본 즉 생산과정에서 기능하는 자본의 소재적 요소이

며 존재방식이다. 그러면 왜 그것들의 일부는 고정적이라고 불리우는가? 그것은 자본의 일부는 노동도구에 고정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부분도 노임 및 원료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런데도 기계 및 “노동도구……소유자의 변경이나 그 이상의 유통 없이 소득 또는 이윤을 가져다 주는 이와 유사한 물건들……. 그러므로 이러한 자본은 극히 정당하게도 고정자본이라고 불리울 수 있다.”

광업을 예로 들어보자. 여기에서는 원료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노동대상 예컨대 동(銅)은 노동에 의하여 앞으로 취득되어야 할 자연생산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취득되어야 할 동은 나중에 그것이 상품 또는 상품자본으로서 유통하는, 과정의 생산물로서 생산자본의 어떤 요소도 이루지 않는다. 그것에는 생산자본의 가치의 어떠한 부분도 지출되어 있지 않다. 타방으로 생산과정의 다른 요소들인 노동력과 석탄, 물 등등과 같은 보조재료도 소재적으로는 생산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석탄은 전부 소비되고 그것의 가치만이 생산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기계 등등의 가치의 일부가 생산물에 들어가는 것과 꼭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는 기계와 마찬가지로 자립적으로 생산물인 동에 대립한다. 다만 그의 노동에 의하여 생산된 가치가 이제 동 가치의 구성부분일 따름이다. 따라서 이 예에 있어서는 생산자본의 어떠한 한 구성부분도 소유자를 변경하지 않으며 어떠한 구성부분도 다시 더 유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의 어떠한 구성부분도 소재적으로 생산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유동자본이 차지할 자리가 어디에 남겠는가? A 스미드 자신의 규정에 의하면 동광업에 충용되는 전체 자본이 고정자본으로써만 구성될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이번에는 생산물의 실체를 이루는 원료와, 또 가치상으로만—예컨대 연료용 석탄과 같이—아니라 물체적으로 생산물에 들어가는 보조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한 산업을 들어보자. 생산물, 예컨대 방사와 함께 방사를 구성하고 있는 원료인 면화도 소유자를 변경하며 생산과정으로부터 소비과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면화가 생산자본의 요소로서 기능하는 동안은 소유자는 그것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가공하여 그것에서 방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는 면화를 자기 수중에서 내놓는 것이 아니다. 또는 A 스미드의 대단히 그릇되고 진부한 표현을 빌어 말한다면 그 소유자는 그것을 자기 수중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그것의 소

유자를 변경함으로써 또는 그것을 유통케 함으로써 이윤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기의 기계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재료도 유통시키지 않는다. 그의 재료는 방적기계나 공장건물과 전혀 마찬가지로 생산과정에 고정되어 있다. 사실, 생산자본의 일부는 노동수단의 형태에 부단히 고정되지 않으면 안되듯이 석탄, 면화 등등의 형태에 부단히 고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이 다를 뿐이다. 즉 방사의 예컨대 1주간 생산에 필요한 면화, 석탄 등등은 전부 주생산물의 생산에 부단히 소비되며 따라서 면화, 석탄 등등의 신품에 의하여 부단히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이 생산자본의 이 요소들은 그 종류로 보아서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부단히 동종의 신품들로써 구성되는데, 동일한 개별적 방적기계, 동일한 개별적 공장건물은 동종의 신품에 의하여 보상됨이 없이 전일련의 주생산에 계속 협력한다. 생산자본의 요소로서는 이 자본의 모든 구성부분들이 부단히 생산과정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니, 왜냐하면 생산과정은 이 요소들 없이는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산자본의 모든 요소는 고정적인 것이거나 유동적인 것이거나 할 것 없이 생산자본으로서 동등하게 유통자본 즉 상품자본 및 화폐자본에 대립된다.

노동력에 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이다. 생산자본의 일부는 부단히 노동력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며, 그리고 같은 동일한 노동력이—동일한 기계와 마찬가지로—동일한 자본가에 의하여 언제나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사용된다. 노동력과 기계와의 구별은 이 경우에는, 기계는 단번에 구매되고 마는 데(기계가 예컨대 분할 지불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반하여 노동력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지출하는 노동은 전부 생산물의 가치에 들어가는 데 반하여 기계의 가치는 일부분씩만 들어간다는 데 있다.

스미드는 고정자본과 대립되는 유동자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때 그는 각이한 규정들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충용되는 자본은 그것이 그 충용자의 수중에 남아 있거나 또는 동일한 모습을 지속하는 동안은 그에게 소득 또는 이윤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는 상품의 순전히 형식적인 형태변화—상품자본인 생산물이 유통분야에서 통과하는, 또 상품의 소유자 변경을 매개하는—와, 생산자본의 각이한 요소들이 생산과정 중에서 통과하는 물체적인 형태변화를 동렬(同列)에 놓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상품의 화폐로의 전화와 화폐의 상품으로의

전화 즉 구매와 판매를 별로 분별함이 없이 생산 제 요소의 생산물로의 전화와 혼동하고 있다. 그가 유동자본의 예로써 들고 있는 것은 상품으로부터 화폐로, 화폐로부터 상품으로 전화하는 상인자본이며, 상품유통에 속하는 형태변환인 W-G-W이다. 그러나 유통과정 내부에서의 이 형태변환이 이 기능하고 있는 산업자본에 대하여 갖는 의의는 화폐가 재전화되는 상품이 생산요소들(노동수단 및 노동력)이라는 것, 따라서 이 형태변환은 산업자본의 연속성을 매개하며 연속적인 것으로서의 또는 재생산과정으로서의 생산과정을 매개한다는 것이다. 이 형태변환은 그 전체가 유통에서 진행된다. 바로 이 형태변환이 한 사람의 수중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의 상품의 현실적 이행을 매개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생산자본이 생산과정의 내부에서 통과하는 형태변화는 생산 제 요소를 소기의 생산물로 전화하는 데 필요한, 노동과정에 속하는 형태변화이다. A. 스미드는, 생산수단의 일부(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노동수단)는 자체의 현물형태를 변화하지 않고 다만 점차적으로만 소모됨으로써 노동과정에서 복무하는데(이것을 그는 그릇되게도 그 소유자에게 이윤을 가져다 준다고 표현하고 있다) 한편 생산수단의 다른 부분 즉 재료는 자체의 현물형태를 변화하여 또 바로 자체의 변화로 말미암아 생산수단으로서의 자체의 사명을 수행한다는 점에 매달린다. 그러나 생산자본의 제 요소가 노동과정에서 수행하는 이 각이한 역할은 고정자본과 비고정자본간의 구별의 출발점을 이를 뿐이고 이 구별자체를 이루는 것은 아니니, 이것은 이 구별이 모든 생산방식에 있어서—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든 비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든—동등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이미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각이한 소재적 역할에는 생산물로의 가치교부의 각이한 방식이 대응하며 그리고 이 후자에는 또 생산물의 판매에 의한 가치보상의 각이한 방식이 대응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사실들이 비로소 문제로 되고 있는 구별인 것이다. 따라서 자본이 고정자본으로 되는 것은 그것이 노동수단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수단에 투하된 자본가치의 일부는 생산물가치의 구성부분으로서 유통하는데 그 가치의 다른 부분은 의연히 노동수단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래의 이윤획득을 위하여 그것(자본)이 충용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그(충용자)의 수중에 머물러 있든가 또는 그의 수중으로부터 떠남으로써 이 이윤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것은 고정자본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그것은 유동자본이다.” (189페이지) [『국부론』 러시아어 판, 사회경제서적 출판사, 1935년, 237페이지]

여기에서 우선 눈에 띄이는 것은 보통의 자본가들 가운데서 통용되고 있는 견해를 반영하는, 이윤에 관한 천박한 경험적 표상으로서, 이 표상은 A 스미드의 우수한 과학적인 견해와 완전히 모순되고 있다. 생산물의 가격에 있어서 재료 및 노동력의 가격이 보상되고 있으나 또한 노동도구로부터 마멸에 의하여 생산물에 이전된 가치부분도 보상되고 있다. 이 보상으로부터는 결코 이윤이 생긔아 나지 않는다. 생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전대된 가치가 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전부 보상되는가 또는 일부분씩 보상되는가, 한꺼번에 보상되는가 점차적으로 보상되는가 하는 것은 다만 보상의 방식과 시간을 변경시킬 수 있을 따름이고, 결코 이 두 경우에 공통적인 것—가치보상—을 잉여가치의 창조로 전환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초에 놓여 있는 것은 잉여가치는 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유통에 의하여 비로소 실현되기 때문에 잉여가치는 오직 판매에서, 유통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속견이다. 사실상 이 경우에 이윤발생의 각이한 방식이라는 것은, 생산자본의 각이한 요소들은 각이한 역할을 놀며, 생산요소로서 노동과정에서 각이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그릇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결국 이 구별은 노동과정 또는 가치증식 과정에서, 생산자본 자체의 기능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개별적 자본가에 대해서—그에게 있어서는 자본의 한 부분은 이 방식으로, 다른 부분은 저 방식으로 유용한 것이다—타당할 뿐으로 된다.

이와는 반대로 껀네는 이 구별을 재생산과정과 그것의 필연성 자체로부터 도출하였다. 이 과정이 부단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연 생산물의 가치에서 연년의 전대의 가치는 전부 연년이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와 반대로 설비자본의 가치는 일부분씩 보상되어 수년 예컨대 10년 후에 비로소 전부 보상되며 따라서 또 전부 재생산(동종의 신 제품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같이 A 스미드는 껀네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

그리하여 A 스미드에 있어서 고정자본의 규정을 위하여 남는 것은, 노동수단—이것의 협력에 의하여 창조되는 생산물에 대립하여 생산과정에서

자체의 모습을 변경하지 않고 소모되고 말 때까지 계속 생산에 복무하는—은 고정자본이라는 것 이외에 전혀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망각되고 있는 것은 생산자본의 모든 요소들은 부단히 그 현물형태에 있어서 (노동수단, 재료 및 노동력으로서) 생산물에—상품으로 유통하는 생산물에—대립한다는 것. 또한 재료 및 노동력으로써 구성되는 부분과 노동수단으로써 구성되는 부분간의 구별은 다음과 같은 점에만 있다는 것 즉 노동력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부단히 새로 구매된다(노동수단처럼 그것이 지속되는 기간을 두고 구매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 재료에 관하여 말한다면 같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동종의 부단히 새로운 것이 노동과정에서 기능한다는 점이다. 그와 동시에 마치도 고정자본의 가치는 유통하지 않는 듯한 환상이 조성되고 있다. 비록 A 스미드는 물론 종전에 고정자본의 마멸분을 생산물가격의 일부로서 전개하였지만,

유동자본을 고정자본에 대립시킴에 있어서 A 스미드는, 유동자본은 생산자본중 생산물의 가치에서 전부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또 생산물의 형태변화에 전부 참가하지 않으면 안되는—고정자본은 그렇지 않은데—구성부분으로서 그렇게 대립시켜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는 유동자본과, 자본이 생산분야로부터 유통분야로 이행함에 있어서 취하는, 상품자본 및 화폐자본으로서의 모습과를 혼동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자본 및 화폐자본이라는 양형태는 생산자본의 유동적 구성부분의 가치의 담당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고정적 구성부분의 가치의 담당자이기도 하다. 이 양형태는 생산자본에 대립하는 유동자본인 것이고, 고정자본에 대립하는 유동자본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자본에 의하여 이윤을 얻는 것은 그것이 생산과정에서 머무름으로써이며 유동자본에 의하여 이윤을 얻는 것은 그것이 생산과정을 떠나서 유통함으로써이라는 전혀 부당한 전개의 결과로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중의 유동적 구성부분이 회전에서 취하는 동일한 형태 때문에 가치증식과정 및 잉여가치의 형성에 있어서의 이 양자간의 본질적 구별이 은폐되며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체 비밀이 더욱 더 애매하게 된다. 유동자본이라는 공통적인 명칭에 의하여 이 본질적 구별이 폐절된다. 보다 후기의 경제학은 이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바, 그것은 불변자본과 가변자본간의 대립이 아니라 고정자본과 유동자본간의 대립이 본질적인 것으로서, 구별을 짓는 유일한 것으로서 고집됨으로써였다.

A 스미드는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을, 각각 그 자체로서 보아 이윤을 가져오는 자본투하의 각이한 두 방식이라고 지적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떠한 고정자본도 유동자본의 협력없이 어떠한 소득도 가져올 수 없다. 아무리 유용한 기계나 노동도구라 하더라도 그것들에 의하여 가공될 재료와 그것들을 사용할 노동자의 생활수단을 공급하는 유동자본 없이는 아무 것도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188페이지)〔『국부론』 러시아어 판, 사회경제서적 출판사, 1935년, 235페이지〕

여기에서 소득을 가져온다, 이윤을 얻는다 운운이라는 상술한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명백하여진다. 즉 그것은 이 양(兩)자본부분은 다같이 생산물의 형성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A 스미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차지농업가의 자본중, 농구에 충용되는 부분은 고정자본이고 노동자의 노임과 생활수단에 충용되는 부분은 유동자본이다(따라서 여기에서는 고정자본과 유동자본간의 구별이 정당하게도 생산자본의 각이한 구성부분들의 각이한 유통, 각이한 회전에만 관련되고 있다). 그는 고정자본으로부터는 그것을 자기 소유로 보유함으로써 이윤을 얻으며 유동자본으로부터는 그것을 자기 수중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이윤을 얻는다. 그의 역축(役蓄)의 가격 또는 가치는 농구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고정자본이다(여기에서 역시 정당하게도 그는 구별을 소재적 요소가 아니라 가치에 관련시키고 있다. 그것들의(역축의) 생활수단은 노동자의 생활수단과 마찬가지로 유동자본이다. 차지농업가는 역축을 보유함으로써 이윤을 얻으며, 또 그것들의 생활수단을 자기 수중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이윤을 얻는다(차지농업가는 가축의 사료를 보유하고 판매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바로 가축의 사료로서 소비하는데 가축 자체는 노동도구로서 소비한다. 구별은 다만, 역축의 유지를 위하여 들어가는 가축의 사료는 그 전부가 소비되고 농산물 중에서 또는 농산물의 판매에서 나오는 새로운 가축의 사료에 의하여 부단히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가축의 사료 자체는 매개 두수가 순차로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에 따라서만 보상된다는 점 뿐이다). 역축으로서가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되고 비육(肥育)되는 가축의 가격과 생활수단은 유동자본이다. 차지농업가는 그 가축을 수중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이윤을 얻는다(모든 상품생산자는 따라서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자도 자기의 생산과정의 결

과인 자기의 생산물을 판매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생산물이 그의 생산자본의 고정적 구성부분으로도 유동적 구성부분으로도 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그의 생산물은 이제는 생산과정에서 밀려나와 상품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태에 있는 것이다. 비육가축은 생산과정에서 원료로서 기능하며 역축처럼 노동도구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그것은 실체로서 생산물에 들어가며 그리하여 그것의 가치도 전부 보조재료(사료)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생산물에 들어간다. 비육가축이 생산자본의 유동부분인 것은 바로 이때문이고, 결코 판매되는 생산물—비육가축—이 이 경우에 원료 즉 아직 비육되지 않은 가축과 동일한 현물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일은 우연이다. 그러나 동시에 스미드는 이 예에서 생산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가 고정적인 것인가 또는 유동적인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생산요소의 이런 또는 저런 물적 모습이 아니라 생산과정 내부에서의 생산요소의 기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종자의 전 가치도 역시 원래 고정자본이다. 종자는 토지와 곡물창고 사이를 왕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소유자를 변경하지 않으며 따라서 고유한 의미에서 유통하지 않는다. 차지농업가는 그것의 판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증가에 의하여 이윤을 얻는다.”

여기에서 스미드의 구별의 모든 불합리성이 특히 명료하게 발로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종자는 소유주가 변경되지 않을 때 즉 그 종자가 직접 연(年) 생산물 중에서 보상되며 직접 생산물 중에서 공제될 때에는 고정자본일 것이고, 그와 반대로 생산물 전체가 판매되어 그 가치의 일부에 의하여 타인의 종곡이 구매될 때에는 유동자본일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변경되고 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스미드는 여기에서도 또 유동자본과 상품자본을 혼동하고 있다. 생산물은 상품자본의 소재적 담당자이다. 그러나 생산물중 이러한 담당자로 되는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유통에 들어가고, 생산물로서 그것이 나온 그 생산과정에 다시 직접 들어가지 않는 부분만이다.

종자가 직접 생산물의 일부로서 생산물에서 공제되든, 또는 생산물 전체가 판매되어 그 가치의 일부가 타인의 종자의 구입에 전환되든, 두 경우에 다 가치의 보상이 실시될 뿐이고, 이러한 보상에 의해서는 여하한 이윤도 얻어지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에는 종자는 생산물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상품으로서 유통에 들어가며 전자의 경우에는 그것은 부기상으로만 전대자본가치의 구성부분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나

그것은 의연 생산자본의 유동적 구성부분이다. 그것은 생산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전부 소비되며 또 그것은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생산물 중에서 전부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원료와 보조재료는 그것들이 사용가치로서 노동과정에 들어가는 당시의 독자적인 모습을 상실하게 된다. 고유한 의미에서의 노동수단은 이와 다르다. 기구, 기계, 공장, 건물, 용기(容器) 등등은 오직 그것들이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여 내일도 어제와 꼭 같은 형태로 다시 노동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때까지만 노동과정에서 복무한다. 그것들은 그 생존 중에 즉 노동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생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독자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사후(死後)에도 또한 그 모습을 유지한다. 기계, 도구, 노동용 건물 등등의 시체는 그것들의 방조 밑에 형성된 생산물과는 별개로 의연히 계속 존재한다.”(『자본론』 제1권, 제6장) (조선어 역, 제1권, 제1분책, 287~288페이지)

생산물의 형성을 위하여 생산수단이 이용되는 이 각이한 방식 즉 일방의 생산수단은 생산물에 대하여 자체의 독자적인 모습을 유지하는데 타방의 생산수단은 그것을 변경하거나 또는 전혀 상실한다는 이 차이, —노동과정 자체에 속하는 이 구별을, 따라서 어떠한 교환도 없고, 상품생산도 없이 예컨대 가부장적 가족의 단순한 자가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진행되는 노동과정에도 적합한 이 구별을 A. 스미드는 왜곡하고 있는 바, 그것은 첫째로 일방의 생산수단은 자체의 모습을 유지함으로써 타방의 생산수단은 그것을 상실함으로써 그 소유자에게 이윤을 가져온다고 하는, 여기에는 전혀 당치도 않은 이윤 규정을 끌어들이므로써이며, 둘째로는 생산요소의 일부가 노동과정에서 받는 변화와, 생산물교환, 상품유통(매매)에 속하는 형태변환—이것은 동시에 유통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의 이동을 포함한다—을 혼동함으로써이다.

회전은 유통에 의하여 즉 생산물의 판매, 생산물의 화폐로의 전화와 화폐로부터 생산 제요소로의 재전화에 의하여 매개되는 것으로서의 재생산을 상징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자 자신의 생산물의 일부가 그 자신에게 직접 생산수단으로서 복무하는 한, 생산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것의 판매자로서 나타나며 또 그의 무기상에 사태가 그렇게 반영된다.

그 경우에 재생산의 이 부분은 유통에 의하여 매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생산물 중 생산수단으로서 다시 복무하는 부분은, 1) 그것의 가치가 전부 생산물에 들어가며 또 2) 그 자체가 현물로 전부 새로운 생산물에서 신품으로써 보상되고 있는 한, 고정자본이 아니라 유동자본을 보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A. 스미드는 유동자본과 고정자본이 무엇으로써 구성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는 고정자본을 형성하는 물건들, 소재적 요소들과 유동자본을 형성하는 그것들을—마치도 이 규정성은 소재적으로, 천연적으로 그것들에 붙는 것이고 도리어 자본주의적 생산과정 내부에서의 그것들의 일정한 기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듯이—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같은 장(제2편, 1장)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예컨대 주택과 같이 직접적 소비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정한 물건은

“그 소유자에게 소득을 가져 올 수 있으며 따라서 자본의 기능에 있어서 그에게 복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에는 하등의 소득도 가져 올 수 없고 자본의 기능에 있어서 사회에 복무할 수도 없으며, 인민 전체의 소득은 그것에 의하여서는 조금도 증가될 수 없다”(186페이지)〔『국부론』 러시아어판, 사회경제 출판사, 1935년, 233페이지〕

따라서 여기에서 A. 스미드는 자본이라는 속성은 물건으로서의—그리고 어떠한 사정하에서도—물건에 붙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사정 여하에 따라서 수행하기도 하고 수행하지 않기도 하는 한 기능이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 일반에 대해서 타당한 것은 그것은 소부류에 대해서도 타당한 것이다.

동일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노동과정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다름에 따라서 유동자본의 구성부분으로도 되고 고정자본의 구성부분으로도 된다. 예컨대 가축은 역축(노동수단)으로서는 차지농업가의 고정자본의 소재적 존재방식이지만 비육가축(원료)으로서는 그의 유동자본의 구성부분이다. 타방으로 동일한 물건이 때로는 생산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기능하고 때로는 직접적 소비фон드에 속하는 수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가옥은 그것이 작업장으로서 기능할 때는 생산자본의 고정부분이지만 주택으

로서 기능할 때는 전혀 어떠한 자본형태도 아니다. 동일한 노동수단이 때로는 생산수단으로서 기능하고 때로는 소비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정자본 및 유동자본의 성격을 물건에 붙어있는 성격으로서 보고 있는 것은 스미드의 이해로부터 나오는 오류의 하나였다. 동일한 물건이 노동과정에서 노는 역할이 다름에 따라 노동수단, 노동재료, 생산물이라는 규정들이 어떻게 변경되는가. 하는 것은 이미 노동과정의 분석(『자본론』 제1부, 제5장)에서 명시되었다. 그런데 고정자본과 비고정자본이라는 규정들도 또한 이 요소들이 노동과정, 따라서 또 가치창조과정에서 노는 일정한 역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둘째로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을 구성하는 물건들을 열거함에 있어서 여실히 발로되고 있는 것은 스미드가 생산자본(생산적 형태로 있는 자본)에 관하여서만 타당하고 의의가 있는, 생산자본의 고정적 구성부분과 유동적 구성부분간의 구별을, 생산자본과 유통과정에 있는 자본에 속하는 형태들인 상품자본 및 화폐자본간의 구별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같은 개소에서(187, 188페이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유동자본은 ……해당한 판매자의 수중에 있는 식량, 재료 및 온갖 종류의 완제품과 그리고 그것들의 유통과 분배에 필요한 화폐로써 구성된다……”. 사실 더 자세히 주의해 보면 여기에서 또 다시 위에서 말한 것과는 상반되게도 유동자본은 상품자본과 화폐자본 즉 생산과정에서는 전혀 속하지 않으며, 고정자본에 대립하는 유동자본이 아니라 생산자본에 대립하는 유동자본을 이루는 두 자본형태와 동등시되고 있다. 그 다음에 오직 이 자본형태들에 첨부해서만 재료(원료 또는 반제품)에 전대되고 현실적으로 생산과정에 합체된, 생산자본의 구성부분들은 다시 나타난다. 그는 말한다.

“……사회의 총자본(stock)이 자연적으로 분할되는 세 부분 중의 제3의, 그리고 최후의 부분은 유동자본인바 이것은 유통함으로써만 또는 소유자를 변경함으로써만 소득을 가져온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 자본도 또한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즉 첫째는 화폐…(그러나 화폐는 결코 생산과정에서 기능하는 생산자본의 한 형태는 아니다). 둘째는 도살업자, 축산업자, 차지농업가의 소유로 있는……그것의 판매에 의하여 그들이 이윤을 획득할 것을 기대하는 식량

의 저장(stock)이다……그리고 세째는 의류, 가구, 건물의 재료—전혀 미가공인 것이든 다소간 가공된 것이든간에, 이상의 세 모습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고 농업가, 제조업자, 견직물 및 포복상, 목재상, 목공 및 가구사, 벽돌제조업자 등등의 수중에 남아있는—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째는 이미 제조되고 완성 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상인 또는 제조업자의 수중에 있는 제품이다.”(『국부론』 러시아어 판, 사회경제서적 출판사, 1935년, 235페이지).

둘째 조항과 네째 조항은 생산물로서 생산과정에서 밀려나와 판매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간단히 말하면 이제는 상품으로서 따라서 또 상품자본으로서 기능하며 따라서 그것의 중국적 사명은 어떠한간에—즉 그것의 목적(사용가치)으로 보아 중국적으로 개인적 소비에 들어가야 할 것이든, 생산적 소비에 들어가야 할 것이든간에—그것이 생산자본의 요소를 형성하지 않는 형태를 취하며 또 과정상의 위치를 차지하는 생산물이다. 이 생산물들은 둘째 조항에 있어서는 급양수단이며 네째 조항에 있어서는 기타의 모든 완성 생산물로서 따라서 이것은 또 완성된 노동수단 또는 완성된 소비수단 (둘째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급양수단 이외의)으로써 구성되는 것이다.

스미드가 그 경우에 상인에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의 혼란을 보여 준다. 생산자가 자기의 생산물을 상인에게 판매한 한에서는 그 생산물은 벌써 결코 그의 자본의 어떠한 형태도 이루지 않는다. 물론 사회적으로 보면 그것은 생산자 이외의 사람의 수중에 있다 하더라도 의연히 상품자본이다. 그러나 그것은 상품자본이기 때문해야말로 고정자본도 아니며 유동자본도 아니다.

생산자의 직접적인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생산에 있어서는 생산물은 이윤을 얻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생산자가 무릇 생활할 수 있기 위하여 상품으로서 유통하지 않으면 즉 판매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에 있어서는 이외에 또 상품의 판매에 따라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잉여가치도 실현된다는 사정이 더 첨가된다. 생산물은 상품으로서 생산과정에서 나오며, 따라서 그것은 이 생산과정의 고정적 요소도 아니며 유동적 요소도 아니다.

여하간 스미드는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반박하고 있다. 완성 생산물은 그것이 소재적 형태 또는 그것의 사용가치, 그것의 유용효과가 어떠한

간에 여기에서는 모두 상품자본, 즉 유통과정에 속하는 한 형태에 있는 자본이다. 이 형태에 있는 것으로서는 완성 생산물은 그것의 소유자의 생산자본의 어떠한 구성부분도 이루지 않는다. 이것은 물론 완성 생산물이 판매되자마자 그것이 구매자의 수중에서 생산자본의 구성부분—유동적 부분이든 고정적 부분이든간에—으로 되는 것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명백한 것은 생산자본에 대립되는 상품자본으로서 어떤 시기에 시장에 등장하는 동일한 물건이 시장에서 끌려나오자 생산자본의 유동적 구성부분 또는 고정적 구성부분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고 기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면방적업자의 생산물인 방사는 그의 자본의 상품형태이며 그에게 있어서는 상품자본이다. 그것은 노동재료로서도 노동수단으로서도 그의 생산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다시 기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방사를 구매하는 직조업자의 수중에서는 그것은 그의 생산자본의 유동적 구성부분의 하나로서 그의 생산자본에 합체된다. 그런데 면방적업자에게 있어서는 그 방사는 그의 고정자본 및 유동자본의 일부의 가치(잉여가치는 도외시하고)의 담당자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계 제작업자의 생산물로서의 기계는 그의 자본의 상품형태이며 그에게 있어서는 상품자본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 형태에 머물러 있는 한, 그것은 유동자본도 아니며 고정자본도 아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는 어떤 공장주에게 판매하면 그것은 생산자본의 고정적 구성부분으로 된다. 생산물이 그것의 사용형태로 보아 부분적으로 그것이 나온 과정에 다시 생산수단으로서 들어 갈 수 있는—예컨대 석탄이 석탄생산에 들어 갈 수 있듯이—경우에도 생산된 석탄중 판매에 예정된 바로 그 부분은 유동자본도 고정자본도 아니고 상품자본을 대표한다.

타방으로는 생산물은 그 사용형태로 보아 노동재료로서이든 노동수단으로서이든 생산자본의 어떠한 요소도 전혀 이를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일부 생활수단이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것의 생산자에게 있어서는 상품자본이며 고정자본 및 유동자본의 가치의 담당자이다. 그리고 그것이 고정자본의 가치를 담당하는가, 유동자본의 가치를 담당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의 생산에 충용된 자본이 전부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는가 부분적으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는가에 따라서, 이 자본의 가치가 전부 생산물로 이전되었는가 부분적으로 이전되었는가에 따라서 규정된다.

스미드에게 있어서 세째 조항에서는 재료(원료, 반제품, 보조재료)가 일방적으로는 이미 생산자본에 합체된 구성부분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다만 사회적 생산물 일반을 구성하는 제 사용가치—둘째 조항과 네째 조항에 열거된, 사회적 생산물의 기타의 소재적 제요소, 생활수단 등등과 함께 존재하는 상품들—중의 특별한 한 종류로서만 나타나고 있다. 타방으로는 재료가 확실히 생산자본에 합체된 것으로서 따라서 또 생산자의 수중에 있는 생산자본의 요소로서 열거되고 있다. 혼란은, 재료가 일방으로는 생산자의 수중에서(농업가, 제조업자 등등의 수중에서) 기능하는 것으로서 파악되고, 타방으로는 상인(견직물상, 포복상, 목재상등등)의 수중에서—여기에서의 재료는 단순한 상품자본이고 생산자본의 구성부분이 아니다—기능하는 것으로서 파악되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A. 스미드는 여기에서 유동자본의 제요소를 열거함에 있어서, 생산자본에 관해서만 타당한, 고정자본과 유동자본간의 구별을 망각하고 있다. 오히려 그는 상품자본과 화폐자본 즉 유통과정에 속하는 양자본형태를 생산자본에 대립시키고 있으나 그것도 다만 무의식적으로이다.

마지막으로 주목되는 것은 A. 스미드가 유동자본의 구성부분을 열거함에 있어서 노동력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이중의 이유에서이다.

바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화폐자본을 도외시한다면 스미드에게 있어서 유동자본이란 상품자본의 별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력은 그것이 시장에서 유통하는 한, 자본이 아니며 어떠한 형태의 상품자본도 아니다. 노동력은 일반적으로 자본이 아니며, 노동자는 하나의 상품을 즉 자기 자신의 가족을 시장에 내는 다 하더라도 자본가는 아니다. 노동력은 그것이 판매되어 생산과정에 합체될 때에, 따라서 그것이 상품으로서 유통하지 않게 된 후에야 비로소 생산자본의 구성부분으로, 즉 잉여가치의 원천으로서의 가변자본으로 되며, 노동력의 구매에 지출된 자본가치의 회전에 관련되어서는 생산자본의 유동적 구성부분으로 된다. 이 경우에 스미드는 유동자본과 상품자본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유동자본이라는 항목에 노동력을 끌어들이 수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변자본은 이 경우에 노동자가 자기 노임으로써 구매하는 상품인 생활수단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형태로서는 노임에 지출된 자본가치는 유동자

본에 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산과정에 합체되는 것은 노동력이며 노동자 자신이고 노동자의 생존을 유지하는 생활수단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제1부, 제21장) 사회적으로 보면 노동자의 개인적 소비에 의한 그 자신의 재생산도 사회적 자본의 재생산과정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고찰되고 있는, 개개의, 폐쇄되어 있는 생산과정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 스미드가 고정자본의 항목에 넣고 있는 습득된 유용한 제능력(acquired and useful abilities) (187페이지)이란 그것이 고용노동자의 제능력이며 또 고용노동자가 자기의 노동을 그의 제 능력과 함께 판매한 한에서는 반대로 유동자본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이다.

스미드가 전체 사회적 부를 (1) 직접적 소비фон드, (2) 고정자본, (3) 유동자본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그의 일대 오류이다. 이에 의하면 부는 (1) 기능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어떠한 부분도 이루지 않는 소비фон드—비록 이것의 부분들은 부단히 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하더라도—와 (2) 자본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하면 부의 일부분은 자본으로서 기능하고 다른 부분은 비자본 또는 소비фон드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웅(雌雄)의 어느 하나로 되는 것이 포유(哺乳) 동물에 있어서 자연적 필연성인 것처럼 고정자본 또는 유동자본의 그 어느 하나로 되는 것이 모든 자본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필연성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고정자본과 유동자본간의 대립은 오직 생산자본의 제요소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 밖에도 또 고정자본이나 유동자본일 수 없는 형태로 있는 극히 다량의 자본—상품자본 및 화폐자본—이 존재하는 것이다.

생산물중, 개별적인 자본가적 생산자가 매매에 의하지 않고 직접 현물 형태대로 생산수단으로서 다시 이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자본주의적 기초 위에서는 사회적 생산물의 총량이 상품자본으로서 시장에서 유통하기 때문에, 생산자본의 고정적 요소 및 유동적 요소는 물론이고 소비фон드의 모든 요소까지도 상품자본 중에서 끌어내어진다는 것은 명백하다. 사실상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 생산수단과 소비수단이 우선은 상품자본으로서 나타난다는 것—비록 후에 가서 그것들이 생산수단 또는 소비수단으로서 복무할 사명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이외의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노동력 자체도 비록 상품자본으로서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품으로서 시장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A 스미드에게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혼란이 일어난다. 그는 말한다.

“이 네 부분(유동자본(circulating capital) 즉 상품자본 및 화폐자본이라는, 유통과정에 속하는 형태로 있는 자본을 의미한다. 스미드는 상품자본의 구성부분들을 다시 소재적으로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자본부분이 네 부분으로 전화된다)중 세 부분—식량과 재료와 완제품—은 연년이 또는, 그 이상 또는 그 이하의 기간을 두고 규칙적으로 유동자본으로부터 끌려나와 고정자본이나 또는 직접적 소비를 위하여 보유되는 저장으로 편입된다. 어떠한 고정자본도 다 본래는 유동자본에 유래한 것이며, 또 부단히 유동자본에 의하여 보충될 것을 요구한다. 모든 유용한 기계와 노동도구들은 본래 유동자본에 유래한 것인바, 이 유동자본은 그것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와 그것들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생활수단을 공급한다. 그것들은 또 부단한 보수를 받기 위하여 동종의 자본을 요구한다.” (188페이지) [『국부론』 러시아어판, 사회경제서적 출판사, 1935년, 235페이지]

생산물중 생산자가 직접 생산수단으로서 재소비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자본주의적 생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명제가 타당하다. 즉 모든 생산물이 그것의 현물형태, 그것의 사용가치로 보아 생산자본의(생산과정의) 요소로서, 생산수단으로서 따라서 또 생산자본의 고정적 요소 또는 유동적 요소로서 기능하지 않으면 안되든 또는 기능할 수 있든, 그렇지 않고 그것이 생산적 소비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 소비의 수단으로서만 복무할 수 있든 그것에는 관계없이 이 모든 생산물은 상품으로서 시장에 나타나며 따라서 자본가에 대하여는 그의 자본의 상품형태로서, 상품자본으로서 유통한다. 모든 생산물은 상품으로서 시장에 내던져진다. 따라서 모든 생산수단 및 소비수단 즉 생산적 소비 및 개인적 소비의 모든 요소는 구매를 통하여 상품으로서 다시 시장에서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 자명한 이치(truism)는 물론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생산자본의 고정적 요소에도 유동적 요소에도, 여하한 형태의 노동수단이나 노동재료에도 다 같이 타당하다(이 경우에 스미드가 또 망각하고 있는 것은 자연 자체에 의하여 주어진, 따라서 생산물이 아닌 그러한 생산자본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기계는 면화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서 구매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온갖 고정자본이 본래 유동자본으로부터 생긴다고 하는 결론은 결코 나오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은 오직 스미드가 유통자본과 유동자본 즉 비고정자본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스미드는 자기 자신을 반박하고 있다. 그 자신에 의한다면 상품으로서의 기계는 유동자본의 네째 조항의 일부를 이룬다. 그러므로 기계가 유동자본에서 나온다는 것은 기계는 그것이 기계로서 기능하기 이전에 상품자본으로서 기능하였다는 것, 그러나 기계는 소재적으로는 그 자체에서 나온다—방적업자의 자본의 유동적 요소로서의 면화가 시장의 면화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는 것을 의미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스미드는 그 후의 설명에서 기계를 만드는 데는 노동과 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고정자본을 유동자본에서 이끌어내고 있는데, 첫째로 기계를 만드는 데는 또 노동수단 따라서 고정자본이 필요하며 둘째로는 원료를 만드는 데도 또한 고정자본 즉 기계 등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생산자본에는 언제나 노동수단이 포함되나 노동재료는 언제나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스미드 자신도 그 뒤에 곧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토지, 광산 및 어장은 이것들을 이용하기 위한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두 가지를 다 요구한다(즉 그는 원료를 생산하는 데는 유동자본뿐만 아니라 고정자본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여기에 또 새로운 오류가 있다) 그것들의 생산물은 그 자본들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타 모든 자본도 이윤을 붙여서 보상한다”(188페이지)〔『국부론』 러시아어판, 사회경제서적 출판사, 1935년, 236페이지〕

이것은 전혀 그릇된 것이다. 그것들의 생산물은 기타의 모든 산업부문을 위한 원료, 보조재료 등등을 공급한다. 그러나 이것들의 가치는 기타의 모든 사회적 자본의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자체의 자본가치(+잉여가치)를 보상하는 데 불과하다. 여기에서 A 스미드에게 있어서의 중농주의자들의 영향이 또 나타나고 있다.

상품자본중, 노동수단으로서만 복무할 수 있는 제생산물으로써 구성되는 부분은 그것이 무릇 쓸모없이 생산되지 않고, 판매될 수 없는 것이 아닌 이상 조만간에 역시 노동수단으로서 기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즉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그것들이 상품이 아니게 되자마자, 이미 미리부터 예상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생산자본의 고정부분의 현실적인 요소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옳다.

여기에는 생산물의 현물형태에서 생기는 구별이 있다.

예컨대 방적기계가 방적에 이용되지 않는다면 즉 생산요소로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따라서 자본주의적 입장에서는 생산자본의 고정적 구성부분으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용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방적기계는 가동적인 것이다. 그것은 그것이 생산된 나라에서 수출되어 타국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원료 등등이나 또는 삼페인[酒]와 교환으로 판매될 수 있다. 그 경우에 방적기계가 생산된 나라에서는 그것은 상품자본으로서만 기능한 것이고 결코—그것의 판매 후에 있어서조차—고정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토지와 합체됨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고 따라서 또 일정한 장소를 떠나서는 이용될 수 없는 제생산물—예컨대 공장건물, 철도, 교량, 터널, 도크(船渠) 등등과 토지개량 등등—은 물체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수출될 수 없다. 그것들은 가동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면 판매되자마자 그것들이 생산된 나라에서 고정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으면 안된다. 판매하기 위하여 투기적으로 공장을 세우거나 또는 토지를 개량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자에게 있어서는 (또는 영업적으로 철도와 교량을 구축하는 청부업자에게 있어서는)—이 물건들은 그의 상품자본의 형태 즉 A. 스미드에 의하면 유동자본의 형태인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면 이 물건들은—그것들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기 위하여는—결국 자국내에서, 그것들이 존재하는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생산과정에서 고정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적인 물건들은 부동적인 물건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곧 고정자본인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들은 주택 등등으로서는 소비фон드에 속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적 부—자본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의 한 요소이기는 하나 결코 사회적 자본에 속하지 않는다. 스미드의 표현을 빌어 말한다면 이 물건들의 생산자는 그것들을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얻는다. 따라서 유동자본이다! 그것들의 이용자, 그것들의 종국적 구매자는 그것들을 생산과정에서 적용함으로써만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정자본이다

예컨대 철도와 같은 것의 소유명의는 매일같이 이 사람의 손에서 저 사람의 손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의 소유자는 이 명의를 외국에까지도 판매하여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리하여 철도 자체는 수출될 수 없으나 그 소유명의는 수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들은 그것들의 소재지인 나라 자체에서 유희상태에 놓여 있지 않다면 생산자본의 고정적 구성부분으로서 기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장주 A는 자기의 공장을 공장주 B에게 판매하여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실은 그 공장이 종전과 같이 고정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으며, 토지와 불가분리적인 노동수단은 그것의 생산자에게 있어서는 상품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고 그의 고정자본의 어떠한 요소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그의 고정자본은 그에게 있어서는 건물, 철도 등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로 하는 노동수단으로써 구성된다) 그러나 자국내에서는 필연적으로 미리 예상된 대로 고정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고정자본은 필연적으로 부동산적 물건들으로써 구성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선박이나 기관차는 그것들의 운동에 의하여서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생산자에게 있어서는 아니지만 그것들의 이용자에게 있어서는 고정자본으로서 기능한다. 타방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생산과정에 고정되어 거기에서 전 생애를 마치며 또 일단 거기에 들어간 다음에는 결코 거기를 다시는 떠나지 않는 물건들에도 생산자본의 유동적 구성부분으로 되는 것이 있다. 예컨대 생산과정에서 기계의 운전을 위하여 소비되는 석탄, 공장건물의 조명을 위하여 소비되는 가스 등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물건들이 유동적인 것은 그것들이 생산물과 함께 물체적으로 생산과정을 떠나 상품으로서 유통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의 가치가 전부 그것들의 협력하에 생산된 상품의 가치로 들어가며 따라서 또 전부 상품의 판매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최후에 인용한 A 스미드의 말 가운데서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유동자본은……그것들을(기계 등등) 만드는 노동자들의 생활수단을 공급한다.”

중농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노임으로 전대된 자본부분이 정당하게도 최초의 전대와 대립하는 연년의 전대 중에 나타나고 있다. 타방으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차지농업가에 의하여 충용되는 생산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노동력 자체가 아니라 농촌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수단(스미드가 말하는 the maintenance of the workmen)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독특한 교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는 노동에 의하여 생산물에 첨가되는 가치부분은(원료, 노동도구 등등, 간단히 말하면 불변자본의 소재적 구성부분에 의하여 생산물에 첨가되는 가치부분과 전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또 노동력으로의 그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소비되어야 할 생활수단의 가치와 동등할 따름이다.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구별을 발견한다는 것은 중농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교리 자체에 의하여 거부되어 있다. 노동이 그 자체의 가치를 재생산하는 이외에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면 노동은 농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업에서도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그러나 중농주의적 체계에 의하면 노동은 오직 농업이라는 한 생산부문에서만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에 잉여가치는 노동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생산부문에 있어서의 자연의 특수한 활동(협조)으로부터 생긴다. 그리고 오직 그 때문에만 그들은 농업노동을 기타 종류의 노동들과 구별하여 생산적 노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A. 스미드는 노동자들의 생활수단을 고정자본과 대립되는 유동자본으로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1. 그가 고정자본과 대립되는 유동자본을 유통분야에 속하는 자본형태인 유동자본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혼동은 스미드 이후의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무비판적으로 계승되어 왔다—그렇기 때문에 그는 상품자본과, 생산자본의 유동적 구성부분을 혼동하고 있는데, 사회적 생산물이 상품형태를 취하는 곳에서는 노동자의 생활수단이나, 비노동자의 생활수단이나, 노동재료나, 노동수단 그 자체나 상품자본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2. 그러나 스미드에게 있어서는 중농주의적 표상(表象)도 혼입되고 있다. 비록 이 표상은 스미드 자신의 전개(展開)의 비전적(秘傳的)인—현실적으로 과학적인—부분과 모순되는 것이지만.

전대자본은 일반적으로 생산자본으로 전환된다. 즉 그것은 생산 제요소

—이것들 자체가 선행 노동의 생산물이다—의 모습을 취한다(노동력도 그 중에 포함된다). 오직 이 형태로서만 전대자본은 생산과정에서 기능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자본의 가변부분이 전환되는 노동력 그 자체 대신에 노동자의 생활수단을 놓는다면 이 생활수단은 그 자체로서는 가치형성에 관련되어 생산자본의 기타 요소들 즉 원료나 역축의 생활수단과 구별되지 않는다—그 때문에 스미드는 중농주의자들의 전례에 따라 위에서 인용한 개소에서 이 역축의 생활수단과 노동자의 생활수단을 동렬에 놓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생활수단은 스스로 자체의 가치를 증식시킬 수 없다. 즉 그것에다 잉여가치를 첨가할 수 없는 것이다. 생활수단의 가치는 생산자본의 다른 요소들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다만 생산물의 가치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을 따름이다. 생활수단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상의 가치를 생산물에 첨가할 수는 없다. 그것은 원료나 반제품 등등과 마찬가지로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만 노동수단으로써 구성되는 고정자본과 구별된다. 즉 생활수단은(적어도 이것을 지불하는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들어감으로써 형성되는 생산물에 있어서 전부 소비되며 따라서 그것의 가치는 전부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한편 고정자본에 있어서는 이것들이 점차적으로 일부분씩만 진행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생산자본중 노동력(또는 노동자의 생활수단)에 전대된 부분은 이제는 생산자본의 기타 소재적 요소들과, 노동과정 및 가치증식과정에 관련되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소재적으로만 구별된다. 이 자본부분은 생산물을 형성하는 객관적 요인들 중 고정자본의 범주에 속하는 부분에 대립하는 다른 부분(스미드가 일반적으로 재료—materials—라고 말하는)과 함께 유동자본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만 구별되는 것이다.

노임으로 지출되는 자본부분이 생산자본의 유동부분에 속하며, 생산자본의 고정적 구성부분과 대립하여 생산물을 형성하는 대상적 요인의 일부인 원료 등등과 공통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사정은 자본의 이 가변부분이 불변부분에 대립하여 가치증식과정에서 노는 역할과는 절대로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 사정은 다만 전대자본가치의 이 부분이 유통을 통하여 생산물의 가치중에서 어떻게 보상되며, 갹신 따라서 재생산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 것에만 관계가 있다. 노동력의 반복 구매는 유통과정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력에 지출되는 가치는(노동자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자본가에게 있어서) 생산과정에서 비로소 일정한

불변량으로부터 가변량으로 전환되며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비로소 전대가치는 자본가치로, 자본으로, 자체 증식을 하는 가치로 전화된 다. 그러나 스미드에게 있어서처럼 노동력에 지출되는 가치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수단에 지출되는 가치를 생산자본의 유동적 구성부분이라고 규정한다면 가변자본과 불변자본간의 구별에 대한 이해, 따라서 또 자본주의적 생산과정 일반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한 것으로 된다. 이 자본부분이 생산물 형성의 대상적 요인들에 지출되는 불변자본과 대립되는 가변자본이라고 하는 규정은 노동력에 지출되는 자본부분이 회전에 관련되어서는 생산자본의 유동부분에 속한다고 하는 규정하에 매몰된다. 이 매몰은 노동력 대신에 노동자의 생활수단을 생산자본의 요소로서 들므로써 완성된다. 노동력의 가치가 화폐로 전대되느냐 또는 직접 생활수단으로 전대되느냐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다. 물론 이 후자의 경우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예외일 수 있을 따름이지만.²⁴⁾

이와같이 A. 스미드는 유동자본에 대한 규정을 노동력에 지출되는 자본가치에 대해서 결정적인 것으로서 고정시켰는데 이것—중농주의자들의 전제없는 중농주의적 규정—으로써 스미드는 성과있게도 그 후계자들이 노동력에 지출되는 자본부분을 가변자본으로서 인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스미드 자신이 다른 개소에서 전개한 보다 심오하고 정확한 사상은 승리하지 못하였으며 승리한 것은 그의 이 오류이다. 뿐만 아니라 후대의 저술가들은 더 나아가고 있어서, 그들은 고정자본에 대립하는 유동자본이라는 것을 노동력에 지출되는 자본부분의 결정적 규정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생활수단에 지출된다는 것을 유동자본의 본질적 규정으로 삼았다. 그 결과로 자연, 생활필수품으로써 구성되는 노동фон드의 크기는 고정적인 것으로서, 이 크기는 일방으로는 사회적 생산물에 대한 노동자의 몫의 한계를 물리적으로 제한하지만 타방으로는 그것의 전부가 노동력의 구입에 지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확설이 나왔다.

24) 노동력이 가치증식과정에서 노는 역할의 이해에 도달하는 길을 A. 스미드 자신이 얼마나 폐쇄하였는가는 그가 중농주의적 방식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을 역축의 노동과 동렬에 놓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구에 의하여 증명된다. “그(차지농업가)의 노동자—labouring servants—뿐만 아니라 그의 역축도 또한 생산적 노동자이다”(제2편, 제5장, 243페이지) [『국부론』 러시아어판, 사회경제서적 출판사, 1935년, 307페이지].

제11장 고정자본 및 유동자본에 관한 제학설. 리카아도

리카아도가 고정자본과 유동자본간의 구별을 내세우는 것은 다만 가치법칙의 예외, 즉 노임율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서술하기 위해 서만이다. 이에 관하여는 제3부에 가서야 비로소 언급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 불명료성은 벌써 다음과 같은 대비 가운데서 처음부터 나타나고 있다. “고정자본의 내구(耐久) 정도상의 이 차이와, 그리고 두 종류의 자본이 배합될 수 있는 비율의 이 다양성.”²⁵⁾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자본이란 어떤 것인가 하고 우리가 물으면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노동을 유지하여야 할 자본과, 도구, 기계 및 건물에 투하되는 자본이 배합될 수 있는 비율도 다양할 수 있다”²⁶⁾고. 따라서 고정자본은 노동수단과 같으며 유동자본은 노동에 지출되어 있는 자본과 같다. 노동을 유지하여야 할 자본이라는 것이 벌써, A 스미드로부터 물려받은 어리석은 표현이다. 여기서는 일방으로는 유동자본이 가변자본 즉 생산자본중 노동에 지출된 부분과 혼동되고 있다. 그런데 타방으로는 대립이 가치증식과정으로부터 끌어내어진 것—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이 아니라 유통과정으로부터 끌어내어진 것(구래의 스미드의 혼란)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그릇된 규정이 나온다.

첫째로 여기에서는 고정자본의 내구 정도상의 차이와,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써 이루어지는 자본 구성상의 다양성이 동등한 것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차이는 잉여가치의 생산상의 차이를 규정하는데 반하여 전자의 차이는 가치증식과정이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는 생산수단의 소여의 가치가 생산물에 이전되는 방식에 대해서만 관계되는 것이며,

25) 리카아도, 『정치경제학 원리』, 25페이지

26) 동상.

유통과정이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는 투하자본의 갱신기간 즉 환원하면 자본이 전대되어 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관계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내부적 운동을 구명하지 않고 기성의 현상만을 고찰한다면 이 차이들은 사실상 합치한다. 각이한 생산부분에 투하된 제 자본간의, 사회적 잉여가치의 분배에 있어서는 자본의 전대기간에 있어서의 차이(따라서 예컨대 고정자본에 있어서는 각이한 수명)와 자본의 유기적 구성상의 차이(따라서 또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유통상의 차이)가 다같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전자와 후자가 다같이 일반적 이윤율의 균등화와 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화에 있어서 균등하게 작용한다.

둘째로, 유통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한편에는 노동수단 즉 고정자본이 있고 다른 편에는 노동재료와 노임 즉 유동자본이 있다. 이와 반대로 노동과정 및 가치증식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한편에는 생산수단(노동수단과 노동재료) 즉 불변자본이 있고 다른 편에는 노동력, 즉 가변자본이 있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자본론』 제1권, 제23장, 제2절)에 있어서는 동일한 가치량의 불변자본이 다량의 노동수단과 소량의 노동재료로 구성되고 있는가 또는 다량의 노동재료와 소량의 노동수단으로 구성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전혀 아무래도 좋은 것이며, 모든 것은 생산수단에 투하된 자본과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간의 비례에 의존한다. 그와는 거꾸로 유통과정의 관점, 고정자본과 유동자본간의 구별의 관점에서 보면 소여의 가치량의 유동자본이 어떠한 비례로 노동재료와 노임으로 분할되는가 하는 것은 역시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 일방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재료는 노동수단과 같은 범주에 속하여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가치에 대립한다. 타방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부분은 노동재료에 투하된 자본부분과 같은 부류가 되어 노동수단에 투하된 자본부분에 대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리카아도에게 있어서는 노동재료(원료 및 보조재료)에 투하된 자본가치부분은 어느 편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아주 사라진다. 즉 이 가치부분은 고정자본의 편에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의 유통방식에 있어서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부분과 전혀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타방으로 유동자본의 편에 소속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대립과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대립의 동일시—A. 스미드로부터 물려받았으며 암암리에 일관하고 있는—는 스스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리카아도는 강

한 논리적 본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실을 감득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부분은 그에게서 완전히 사라진다.

여기서 지적할 것은 정치경제학의 표현에 의한다면 자본가가 노임으로 투하되는 자본을 전대하는 기간은, 그가 이 노임을 예컨대 매주 지불하는가, 매월 지불하는가 또는 매 3개월에 지불하는가에 따라서 각이하다는 것이다. 사실상으로는 사태는 거꾸로이다. 노동자는 그가 지불을 받는 것이 매주인가, 매월인가 또는 매 3개월인가에 따라서 자본가에게 자기의 노동을 1주간, 1개월간 또는 3개월간 전대하는 것이다. 만약 자본가가 노임을 후불(後拂)할 대신에 노동력을 구매한다고 하면 즉 그가 1일분, 1주간분, 1개월분 또는 3개월분의 노임을 노동자에게 전불(前拂)한다고 하면 이 기간들에 대한 전대를 운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노동을 구매하고 노동이 계속되어야 할 기간에 대하여 지불할 대신에 노동이 이미 수일간, 수주간 또는 수개월간 계속된 후에 지불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본주의적 전도(顛倒)이며, 노동자가 노동으로 자본가에게 제공하는 전대는 자본가가 화폐로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전대로 전화된다. 자본가가 생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시간이 각이함에 따라 또는 생산물의 유통에 필요한 시간이 각이함에 따라 장·단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서 생산물 자체나 또는 그것의 가치를(그것에 함체되어 있는 잉여가치와 함께) 유통으로부터 회수 또는 실현한다는 것에 의하여서는 사태에 아무 변동도 없다. 상품의 구매자가 그 상품을 어떻게 처분하려 하는가 하는 것은 판매자에게는 아무래도 전혀 좋은 일이다. 기계의 가치는 다만 점차적으로 또 일부분씩 유통으로부터 자본가에게로 환류하는데 그는 그것의 전체 가치를 한꺼번에 전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그가 그 기계를 보다 더 저렴하게 입수하는 것은 아니다. 또 면화의 가치는 면화로써 제조되는 생산물의 가치에 전부 들어가며 따라서 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전부 한꺼번에 보상된다고 하여 자본가가 면화의 값을 더 비싸게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

리카아도에게로 돌아가자.

1. 가변자본의 특징은 자본의 일정한 소여의(따라서 그러한 것으로서 불변적인) 부분 즉 소여의 가치액(이것은 노동력의 가치와 동등하다고 가정한다. 노임이 노동력의 가치와 동등한가 또는 그보다 더 큰가 작은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것이지만)이 자기 증식적이며

가치 창조적인 힘인 노동력—이것은 자본가에 의하여 지불되는 자체의 가치를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잉여가치 즉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여하한 등가물으로써도 구득되는 것이 아닌 가치도 생산한다—과 교환된다는 것이다. 노임으로 투하되는 자본부분의 이 특성—이 자본부분을 가변자본으로서 불변자본과 전면적으로 구별하게 하는—은 노임으로 투하되는 자본부분이 단순히 유통과정의 관점에서 고찰되고 그리하여 유동자본으로서 노동수단에 투하되는 고정자본과 대립하여 나타나자마자 소멸된다. 이러한 것은 벌써, 노동력에 투하되는 자본부분이 이 경우에 불변자본중 노동재료에 투하되는 구성부분과 함께 한 항목—유동자본이라는 항목—에 들어 불변자본중 노동수단에 투하되는 다른 구성부분에 대립시켜진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이 경우에 잉여가치, 따라서 투하되는 가치액을 자본으로 전화하는 바로 그 사정은 전혀 도외시된다. 노임으로 투하되는 자본에 의하여 생산물에 첨가되는 가치부분은 새로 생산되는 것(따라서 또 현실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인데 원료에 의하여 생산물에 첨가되는 가치부분은 새로 생산되는 것, 현실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생산물의 가치 가운데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이며 따라서 생산물의 가치구성부분으로서 재현하는 데 불과하다는 사실도 또한 도외시된다. 유동자본과 고정자본간의 대립의 관점에서 이제 나타나는 구별은 다만 다음과 같은 데 있을 뿐이다. 즉 상품의 생산에 총용된 노동수단의 가치는 부분적으로만 상품의 가치에 들어가며 따라서 또 부분적으로만 상품의 판매에 의하여 보상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만 일부분씩 또는 점차적으로만 보상되는데, 타방으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노동력 및 노동대상(원료 등등)의 가치는 전부 그 상품에 들어가며 따라서 전부 그 상품의 판매에 의하여 보상된다. 이 한에 있어서 유통과정에 관하여는 자본의 일부는 고정자본으로 나타나며 다른 일부는 유동자본으로서 나타난다. 두 경우에 다 문제인 것은 소여의 전대된 가치의 생산물로의 이전이며, 생산물의 판매에 의한 그것의 재보상이다. 구별은 이제는 다만 가치이전 따라서 또 가치보상이 일부분씩 점차적으로 수행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수행되는가 하는 점에만 있다. 이에 따라 가변자본과 불변자본간의, 일체 규정적인 구별이 말살되어 있으며 따라서 잉여가치의 형성 및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체 비밀……일정한 가치의 그것이 표시되는 물건을 자본으로 전화하는 제조건—이 말살되어 있다. 자본의 모든 구성부분

은 다만 그 유통방식에 의해서만 구별된다(그리고 상품의 유통은 물론 소여의 기존 가치와만 관계가 있다). 그리고 노임으로 투하되는 자본과, 원료, 반제품, 보조재료에 투하되는 자본부분에는 노동수단에 투하되는 자본부분에 대립하여 하나의 특수한 유통방식이 공통하다.

이로부터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이 무엇 때문에 A. 스미드의 불변자본 및 가변자본의 범주 고정자본 및 유동자본의 범주와의 혼동을 본능적으로 고집하고 무비판적으로 한 세기 동안이나 대대로 되풀이하여 왔겠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에 있어서는 노임에 투하되는 자본부분은 원료에 투하되는 자본부분과는 벌써 전혀 구별되지 않고 있으며, 불변자본과는 형식적으로만 즉 그것이 생산물에 의하여 일부분씩 유통되는가 또는 전부 유통되는가 하는 점에서만 구별된다. 그에 따라 자본주의적 생산의, 따라서 또 자본주의적 착취의 현실적 운동을 이해함에 필요한 근거가 일거에 허물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문제로 되는 것은 다만 전대가치의 재현이다.

스미드의 혼란의 무비판적 채용은 리카아도가 자기의 이론을 철저히 발전시키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것은 리카아도에게 있어서는 후대의 변호론자들—이들에게 있어서는 개념의 혼란이 오히려 그들의 목적에 부합되었다—에 있어서보다 더 방해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A. 스미드 자신에게 있어서보다 더 방해물이었다. 왜냐하면 리카아도는 A. 스미드보다 더 철저하게 또 보다 더 날카롭게 가치와 잉여가치를 전개하고 있으며, 사실상 피상적인(exoterisch) A. 스미드를 반대하여 심오한(esoterisch) A. 스미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농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혼란은 조금도 없다. 연년의 전대와 시초의 전대간의 구별은 다만 자본, 특히 농업자본의 각이한 구성부분의 각이한 재생산기간에만 관련되고 있다. 그런데 한편 잉여가치의 생산에 관한 그들의 견해는 그들의 학설중 이러한 구별에는 의존하지 않는 한 부분을, 그것도 그들이 이론의 요점으로서 내놓고 있는 부분을 이룬다. 잉여가치의 형성은 자본으로서의 자본으로부터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일정한 한 생산분야인 농업에서만 있는 것으로 되고 있다.

2. 가변자본의 규정에 있어서—따라서 또 임의의 가치액의 자본으로의 전화에 있어서—본질적인 것은 자본가가 일정한 소여의(또 이러한 의미에서 불변적인) 가치량을 가치 창조적인 힘 노동력과, 하나의 가치량을 가

치생산, 자기 증식과 교환한다는 것이다.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화폐로써 지불하는가 또는 생활수단으로써 지불하는가 하는 것은 이 본질적인 규정에 대해서 하등의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다만 자본가에 의하여 전대되는 가치의 존재방식이 변화될 뿐으로, 그것은 전자의 경우에는 화폐의 형태로 존재하여 그 화폐로써 노동자는 자기 자신이 시장에서 자기의 생활수단을 구매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생활수단의 형태로 존재하여 노동자는 이 생활수단을 직접 소비한다. 발전된 자본주의적 생산은 노동자가 화폐로써 지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유통과정에 의하여 매개되는 생산과정을, 따라서 화폐경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잉여가치의 창조—따라서 또 전대된 가치액의 자본화—는 노임 또는 노동력의 구입에 지출된 자본의 화폐형태에도 현물형태에도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치와 가치 창조적인 힘과의 교환에, 불변량의 가변량으로의 전환에 기인한다.

노동수단의 고정성의 다소는 그것의 내구성의 정도 여하에 즉 물리적 속성 여하에 의존한다. 노동수단은 기타의 조건들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것의 내구성의 정도 여하에 따라서 보다 급속히 또는 보다 완만히 마멸하며 따라서 보다 장기간 또는 보다 단기간 고정자본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노동수단은 단순히 내구성이라는 이 물리적 속성 때문에만 고정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금속공장에서의 원료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와 마찬가지로 내구성이 있으며, 이 기계의 일부 구성부분들—피혁, 목재, 등등—보다는 더 내구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료로서 복무하는 금속은 유동자본의 일부를 이루며, 아마도 동일한 금속으로 만들어졌을 것인 기능하는 노동수단은 고정자본의 일부를 이룬다. 따라서 동일한 금속이 한 경우에는 고정자본의 항목에 속하고 다른 경우에는 유동자본의 항목에 속하는 것은 소재상의 물리적 본성 때문이 아니며, 그 금속의 마멸성이 많고 적기 때문이 아니다. 이 구별은 오히려 그 금속이 생산과정에서 노는—한 경우에는 노동대상으로서 다른 경우에는 노동수단으로서—역할에서 생기는 것이다.

생산과정에서의 노동수단의 기능은 대체로 말해서 노동수단이 장·단간의 기간에 반복되는 노동과정에서 부단히 새로 복무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노동수단의 기능에 의하여 그 노동수단의 소재의 내구성의 다소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수단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소재의 내구

성은 그 자체로서는 노동수단을 고정자본으로 만들지 않는다. 동일한 소재도 원료로서는 유동자본으로 된다. 그리고 상품자본과 생산자본의 구별과, 유동자본과 고정자본의 구별을 혼동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소재, 동일한 기계가 생산물로서는 유동자본이며 노동수단으로서는 고정자본이다.

그런데 노동수단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내구성이 있는 소재가 노동수단을 고정자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노동수단으로서의 그것의 역할은 노동수단이 비교적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써 구성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노동수단의 소재의 내구성은 노동수단으로서의 그것의 기능의 한 조건이며 따라서, 또 노동수단을 고정자본으로 만드는 유통방식의 물질적 기초이다. 기타의 조건들이 동일한 경우에는 노동수단은 그것의 소재의 마멸성의 다소에 따라 보다 적거나 또는 보다 많은 고정성의 표식을 얻게 되며 따라서 그 소재의 마멸성의 다소는 고정자본으로서의 노동수단의 자격과 불가분리로 엉키어 있다.

그런데 만약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부분이 오로지 유동자본의 관점에서 즉 고정자본에 대립시켜 고찰된다면, 따라서 또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구별과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구별과를 혼동한다면, 노동수단의 소재적 현실성이 고정자본으로서의 그것의 성격의 본질적 기초를 이루듯이, 이제 는 고정자본에 대립시켜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의 소재적 현실성으로부터 유동자본으로서의 그것의 성격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변자본의 소재적 현실성에 의하여 유동자본을 규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노임으로 투하된 자본의 현실적 소재는 노동 그 자체, 작용하는 가치창조적인 노동력, 산 노동인바, 자본가는 이것과 죽은 대상화된 노동을 교환하여 이것을 자기의 자본에 합체시켰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그의 수중에 있는 가치는 자기 증식적인 가치로 전화한다. 그러나 자본가는 이 자기 증식력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자기증식력은 그의 노동수단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그의 생산자본의 구성부분을 이를 따름이며, 예컨대 그가 판매하는 완성생산물과 같이 그의 상품자본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생산과정 내부에서는, 생산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노동수단은 고정자본으로서 노동력에 대립하는 것이 아닌바, 이것은 노동재료와 보조재료가 유동자본으로서 노동력과 일치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상의 양자는 물질적 요인들인데 노동력은 인적

요인으로서 이 양자에 대립한다—이는 노동과정의 관점에서 그렇다. 그런데 이 양자는 또 불변자본으로서 가변자본인 노동력에 대립한다—이는 가치증식과정의 관점에서 그렇다. 또는 여기에서 유통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에 있어서의 소재적 차이가 문제라고 한다면 문제는 다만 다음과 같이 된다—즉 대상화된 노동에 불과한 가치의 본성으로부터와, 대상화되고 있는 노동에 불과한, 작용하고 있는 노동력의 본성으로부터 말할 수 있는 것은 노동력이라는 그것의 기능기간중 부단히 가치와 잉여가치를 창조한다는 것, 노동력의 편에서는 운동으로서, 가치의 창조로서 나타나는 것이 그의 생산물의 편에서는 정적(靜的) 형태로, 창조된 가치로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노동력이 작용을 끝마쳤다면 자본은 벌써 일방으로는 노동력, 타방으로는 생산수단으로써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가치는 이제는 생산물에(잉여가치와 함께) 첨가된 가치이다. 과정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생산물을 판매하여 거기에서 얻은 화폐로써 부단히 새로 노동력을 구매하며 그것을 생산자본에 합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되면 그 경우에는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부분은 노동재료 등등에 투하된 자본부분과 마찬가지로 노동수단에 고정되어 남아 있는 자본에 대립하여 유동자본의 성격을 띠게 된다.

타방으로 만약 유동자본이라는, 불변자본의 일부(원료 및 보조재료)와 공통되는, 제2차적 규정이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부분의 본질적 규정으로 된다면—즉 노동력에 투하된 가치는 이 노동력의 소비에 의하여 생산된 생산물에 전부 이전하는 것이고 고정자본에 있어서처럼 점차적으로 또 일부분씩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또 이 가치는 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전부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면—노임으로 투하된 자본부분도 또한 소재적으로는 작용하고 있는 노동력으로써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자기의 노임으로 구매하는 소재적 요소들으로써, 따라서 사회적 상품자본중 노동자의 소비로 들어가는 부분인 생활수단으로써 구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는 고정자본은 비교적 완만히 마멸되는, 따라서 비교적 완만히 보상되어야 할 노동수단으로써 구성되며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은 보다 수명이 짧은, 따라서 보다 급속히 보상되어야 할 생활수단으로써 구성된다.

그러나 마멸의 급속 또는 완만이라는 한계는 사라지고 만다.

“노동자가 소비하는 식료와 의복, 그가 일하는 건물, 그의 노동을 돕는 도구는 모두 마멸성을 가진 것들이다. 그러나 이 각이한 자본들이 지탱하는 시간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다. 즉 중기기관은 선박보다 오래 지속하며 선박은 노동자의 의복보다, 노동자의 의복은 또 그가 소비하는 식료보다 오래 지속할 것이다.”²⁷⁾

리카아도는 이 경우에 노동자가 거주하는 가옥, 그의 가구 그리고 나이프, 포크, 접시 등등과 같은, 그의 소비 기구류를 잊어버리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노동수단과 동일한 내구성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물건들, 동일한 부류의 물건들이 어떤 경우에는 소비수단으로서 나타나며 또 어떤 경우에는 노동수단으로서 나타난다.

리카아도가 말하는 구별이란 다음과 같다.

“자본이 급속히 마멸하는 것이어서 번번히 재생산될 것을 요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완만하게 소비되는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은 유동자본 또는 고정자본의 항목으로 분류된다.”²⁸⁾

그는 여기에다 다음과 같은 주를 달고 있다

“본질적이 아닌 분류이며, 그나마 거기에서는 분계선이 정확히 그어질 수 없다.”²⁹⁾

그리하여 우리는 다행히도 중농주의자들의 입장에 다시 도달하였는바 그들에게 있어서는 연년의 전대와 시초의 전대간의 구별은 총유자본의 소비 기간상의, 따라서 또 각이한 재생산 기간상의 구별이었던 것이다. 다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생산에 대하여 중요한 현상을 표현하며 또 『경제표』에서는 유통과정과의 관련하여서도 서술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는 하나의 주관적인, 또 리카아도 자신의 말대로 하면 쓸데없는 구

27) 리카아도, 『정치경제학 원리』, 27페이지.

28) 리카아도, 동상서, 26페이지.

29) [리카아도, 동상서, 26페이지].

별로 될 따름이다.

만약 노동에 투하된 자본부분이 그것의 재생산기간 따라서 또 그것의 유통기간에 의해서만 노동수단에 투하된 자본부분과 구별된다면, 그리하여 자본의 한 부분은 생활수단으로써 구성되고 다른 부분은 노동수단으로써 구성되어 이 후자가 다만 내구 정도에 의해서만 전자와 구별되며 거기에는 이 전자 자체가 내구 정도에 있어서 각이하다면,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과 생산수단에 투하된 자본간의 일체의 특징적인 구별(differentia specifica)이 말살되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가치에 관한 리카아도의 학설 및 그의 이윤론(이것은 사실상 잉여가치론이다)과 완전히 모순된다. 그가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구별을 고찰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이한 생산부문에 있어서 제자본의 크기가 동등한 경우에 양자본의 각이한 비율이 가치법칙에 영향을 주는 한에 있어서만이며, 그것도 이러한 사정의 결과로서의 노임의 등락이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한에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한된 연구의 범위내에서조차 그는 고정자본 및 유동자본을 불변자본 및 가변자본과 혼동함으로써 극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또 사실상 그 연구에 있어서 전혀 그릇된 기초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즉 1)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가치부분이 유동자본의 항목에 포괄되게 되어 있는 한에서는 유동자본 자체의 규정이 그릇되게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노동에 투하된 자본부분을 이 항목에 포괄시키는 제 사정이 그릇되게 전개하고 있다. 2) 노동에 투하된 자본부분은 가변자본이라고 하는 규정과 이 자본부분은 고정자본에 대립되는 유동자본이라고 하는 규정과를 혼동하고 있다.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을 유동자본이라고 하는 규정은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이 자본의 특징적인 구별을 말살하고 있는 제2차적 규정이라는 것은 애당초부터 명백하다. 왜냐하면 이 규정에 있어서는 일방으로는 노동에 투하된 자본과 원료 등등에 투하된 자본이 동등한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불변자본의 일부를 가변자본과 동일시하는 이 분류는 불변자본에 대립하는 가변자본의 특징적 구별을 전혀 무시하는 것이다. 타방으로는 노동에 투하된 자본부분과 노동수단에 투하된 자본부분이 호상 대립시켜 지기는 하나 그러나 이는 결코 양자본부분이 전혀 각이한 방식으로 가치의 생산에 들어간다는 것에 관련하여서가 아니라 이 양자본부분의 소여의 가치가 오직 각이한 기간에만 생산물에 이전된다는 것에 관련하여서이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문제로 되는 것은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지출된
 소녀의 가치—그것이 노임이건, 원료의 가격이건 또는 노동수단의 가격이
 건간에—가 어떻게 생산물에 이전되며 따라서 또 생산물을 통하여 유통하
 며 또 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출발점으로 복귀하는가 또는 보상되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유일한 구별은 이 어떻게 라는데 즉 그 가치가
 이전하는, 따라서 유통하는 특수한 방식에 있는 것이다.

여하간 계약에 의하여 미리 규정된 노동력의 가격이 화폐로써 지불되
 느나 생활수단으로써 지불되느냐 하는 것은 일정한 소녀의 가격이라는
 이 가격의 성격에는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화폐로써 지
 불되는 노임의 경우에는 화폐 그 자체가 생산수단—이것은 가치뿐만 아니
 라 소재로 생산과정에 들어간다—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산과정에 들어가
 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만약 노동자가 자기의 노임으로써
 구매하는 생활수단이 직접 유동자본의 소재적 모습으로서 원료 등등과
 함께 동일한 항목에 놓여지고 그리하여 노동수단에 대치시켜진다면 이로
 말미암아 사태는 다른 외관을 띤다. 어떤 물건—생산수단—의 가치는 노
 동과정에서 생산물에 이전된다면 다른 물건—생활수단—의 가치는 그것을
 소비하는 노동력에 재현하고 이 노동력의 활동에 의하여 역시 생산물에
 이전된다. 이 두 경우에 동등하게 문제로 되는 것은 생산기간중에 전대
 된 가치의, 생산물로의 단순한 재현이다(중농주의자들은 이것을 중대시하
 고 따라서 공업노동이 잉여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을 부인하였다). 예컨대
 웨일랜드는 위에서 인용한 개소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자본이 여
 하한 형태로 재현하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인간의 생존과 복리
 에 필요한 각종 의식주도 또한 변화된다. 그것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소비되며 그것들의 가치는 재현된다. 운운”(『정치경제학 요론』 31, 32페
 이지). 생산수단 및 생활수단의 모습으로 생산에 전대된 자본가치들은
 여기에서는 동등하게 생산의 가치에 재현한다. 그렇게 됨으로써 자본주의
 적 생산과정의 완전한 신비화가 성공리에 완성되고 생산물중에 현존하는
 잉여가치의 기원은 완전히 감추어진다.

또 그렇게 됨으로써 물건들이 사회적 생산과정에서 낙인을 받아 얻게
 되는 사회적, 경제적 성격을, 이 물건들이 소재적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
 적 성격으로 전화시키는 부르쥬아 정치경제학에 고유한 물신숭배가 완성
 된다. 예컨대 노동수단은 고정자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과 혼란을 초

래하는 스콜라 철학적 규정이다. 노동과정의 연구에 있어서 (『자본론』 제1권, 제5장) 증명된 바와 같이, 대상적 구성부분들이 기능하는 것이 노동수단으로서이나 노동재료로서이나 또는 생산물로서이나 하는 것은 그것들이 일정한 노동과정에서 노는 그때 그때의 역할에, 그것들의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인데, 이와 꼭 마찬가지로 노동수단이 고정자본인 것은 첫째로 생산과정이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이며 따라서 또 생산수단이 일반적으로 자본이고, 자본이라는 경제적 규정성, 사회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만이다. 또 둘째로 노동수단이 고정자본인 것은 노동수단이 자체의 가치를 특수한 방식으로 생산물로 이전하는 경우만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수단은 그대로 노동수단이고 고정자본은 아니다. 비료와 같은 보조재료도, 비록 그것이 어떠한 노동수단도 아니지만 대부분의 노동수단과 동일한 특수한 방식으로 가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고정자본으로 된다. 이 경우에 문제는 물건들을 포괄하는 정의(正義)가 아니다. 문제는 일정한 범주로 표현되는 일정한 기능이다.

노임에 투하되는 자본인 것이 여하한 사정하에서도 생활수단 자체에 속하는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노동을 유지한다는”(to support labour) (리카아도, 25페이지) 것은 또 이 유동자본의 성격으로 된다. 따라서 생활수단이 자본이 아니라면 노동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자본으로서의 생활수단의 성격은 생활수단에다가 바로 타인의 노동에 의하여 자본을 유지한다는 속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 생활수단 그 자체가 유동자본이라고 한다면, 이 유동자본이 노임으로 전환된 후에 노임의 크기는 유동자본의 소여량에 대한 노동자수의 비율에 의존한다—이것은 경제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명제이지만—는 것으로 되나 그러나 실은, 노동자가 시장에서 끌어내는 생활수단의 양과 자본가가 자기의 소비를 위하여 마음대로 하는 생활수단의 양은 노동의 가격과 잉여가치의 비율에 의존한다.

리카아도는 바튼²⁹⁻¹⁾과 마찬가지로 도처에서 가변자본 대 불변자본의 비율과 유동자본 대 고정자본의 비율과를 혼동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29-1) 『사회의 노동계급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제조건의 고찰』, 런던, 1817년. 해당한 개소는 제1권, 655페이지, 주79에 인용되어 있다[조선어 역, 제1권, 제2분책, 353페이지, 주79].

이윤들에 관한 그의 연구가 얼마나 잠탕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후에 보게 될 것이다.

리카아도는 또 고정자본과 유동자본간의 구별과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회전에서 생기는 제 구별과 전자의 구별을 동등시하고 있다.

“유동자본이라는 것은, 극히 부동등한 기간 동안 유통하며 또는 그것의 충용자에게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지적해야 할 것이다. 차지 농업가가 파종하기 위하여 구매한 소맥은 빵 제조업자가 빵을 만들기 위하여 구매한 소맥에 비하면 하나의 고정자본이다. 전자는 소맥을 땅속에 두고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것을 회수할 수 없는데 후자는 소맥을 가루로 만들게 하여 빵으로서 고객에게 판매하고 그리하여 1주일 동안에 그의 자본을 해방시켜 동일한 사업을 갱신하거나 다른 어떤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³⁰⁾

이 경우에 특징적인 것은 소맥은 종곡으로서 비록 생활수단이 아니라 원료로서 복무한다 하더라도 첫째로 그 자체로서 생활수단이기 때문에 유동자본이며 둘째로는 그것의 환류가 1년이나 걸치기 때문에 고정자본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어떤 생산수단을 고정자본으로 되게 하는 것은 그 환류의 완급(緩急)일 뿐만 아니라 생산물로의 가치교부의 일정한 방식이다.

그리하여 A. 스미드에 의하여 야기된 혼란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1. 고정자본과 유동자본간의 구별은 생산자본과 상품자본간의 구별과 혼동되고 있다. 예컨대 동일한 기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으로서 시장에 있을 경우에는 유동자본이며 그것이 생산과정에 합체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정자본이다. 그렇다면 일정한 종류의 자본이 다른 모든 종류의 자본에 비하여 왜 더 고정적인가 또는 유동적인가 하는 것은 절대로 알 수 없다.

2. 일체의 유동자본이 노임으로 지출되었거나 또는 지출되지 않으면 안될 자본과 동일시되고 있다. 예컨대 J. S. 밀 기타에 있어서 그렇다.

30) 리카아도 『정치경제학 원리』, 26, 27페이지.

3. 이 가변자본과 불변자본간의 구별—이것은 이미 바튼, 리카아도 기타에 있어서는 유동자본과 고정자본간의 구별과 혼동되고 있다—은 이제 드디어 이 후자로 완전히 귀착되고 만다. 예컨대 램제이에 있어서 그러하였는데 그에 있어서는 생산수단, 원료 등등이 노동수단과 마찬가지로 고정자본이고, 다만 노임으로 지출되는 자본만이 유동자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로 귀착되기 때문에 불변자본과 가변자본간의 현실적인 구별은 이해되지 않는다.

4. 모든 문제를 말할 수 없이 험악한, 은행사무원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는, 매클러드, 패터슨 기타와 같은 영국의, 특히 스코틀랜드의 최근 경제학자들은 고정자본과 유동자본간의 구별을 money at call과 money not at call(예고없이 찾을 수 있는 무통지예금과 예고 후에만 찾을 수 있는 통지예금)간의 구별로 전화시키고 있다.

제12장 노동기간

노동일의 길이가 동등한, 예컨대 노동과정이 10시간 계속되는 두 생산 부문 예컨대 면방직업과 기관차 제작업을 들어보자. 전자의 부문에서는 매일, 매주 일정한 양의 완성생산물인 면방사가 제공되는데 후자의 부문에서는 완성생산물인 한 대의 기관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과정이 아마도 3개월 동안 반복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일방의 경우에는 생산물은 분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며, 동일한 노동이 매일 또는 매주 새로 개시된다. 타방의 경우에는 노동과정은 연속적인 것이며, 다소간에 상당한 수의 일(日)노동과정에 걸쳐는 것이고, 이 일노동과정들이 결합되고 그것들의 작업이 연속됨으로써 다소간에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의 완성생산자물이 제공된다. 이 경우에 일노동과정의 길이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생산행위의 길이에 있어서는 즉 완성생산물을 제공하고 그것을 상품으로서 시장에 보내고 따라서 그것을 생산자본으로부터 상품자본으로 전화시키는 데 필요한, 반복되는 노동과정들의 길이에 있어서는 극히 큰 차이가 있다. 고정자본과 유동자본간의 구별은 이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상술한 차이는 두 생산부문에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이 전혀 동일한 비율로 충용될 경우에도 존속될 것이다.

생산행위의 길이에 있어서는 이 차이는 각이한 생산분야들간에서만 아니라 동일한 생산분야내에서도 제공되어야 할 생산물의 규모 여하에 따라서 생긴다. 보통의 주택은 대공장보다는 단기간에 건축되며 따라서 보다 적은 수의 연속적인 노동과정들을 요구한다. 한 대의 기관차를 제작하는 데는 3개월이 요구되지만 한 척의 철갑선을 건조하는 데는 1년 또는 수년이 요구된다. 곡물의 생산에는 거의 1년이 요구되고, 유각 가축의 생산에는 수년이 요구되며, 조림(造林)에는 12년 내지 100년이 요구될 수 있다. 육로(陸路)는 아마도 2~3개월이면 되지만 철도 부설에는 수년이 요구된다. 보통의 용단은 아마도 1주간이면 되지만 고블랑(불란서에서 짜는

그림을 넣은 정교한 용단]은 수년을 요구한다 등등. 이와같이 생산행위의 길이에 있어서의 차이는 무한히 다양하다.

생산행위의 길이에 있어서의 차이는 투자액이 동등한 경우에 있어서의 회전속도의 차이, 즉 소여의 자본의 전대기간의 차이를 생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제 기계 방적공장과 기관차 제작공장에 충용된 자본이 동등하며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분할과 또 고정적 구성부분과 유동적 구성부분의 분할도 각각 동일하고, 마지막으로 노동일의 길어도 동등하고 또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으로의 노동일의 분할도 동일하다고 하자. 그리고 또 유통과정으로부터 생기며, 이 경우와는 관계가 없는 모든 사정을 제거하기 위하여 방사와 기관차가 주문에 의하여 제조되며 완성생산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불된다고 가정하자. 1주간 후에 방적공장주는(이 경우에 잉여가치는 도외시한다) 완성된 방사의 인도와 동시에 투하된 유동자본을 회수하고 방사의 가치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자본의 마멸분도 또한 회수한다. 따라서 그는 동일한 자본을 가지고 동일한 순환을 새로 반복할 수 있다. 이 자본은 자체의 회전을 완수한 것이다. 그런데 기관차 공장주는 3개월 동안 매주 부단히 새로운 자본을 노임과 원료에 투입하지 않으면 안되며, 3개월이 지나서 기관차를 인도한 후에야 비로소 이 기간에 동일한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동일한 생산행위에 점차적으로 투하된 유동자본은 다시, 자체의 순환을 새로 개시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한다. 마찬가지로 이 3개월간의 기계의 마멸분도 이제야 비로소 그에게 보상된다. 전자의 투자는 1주간 투자인데 후자의 투자는 1주간 투자의 12배이다. 기타의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전제한다면 후자는 전자보다 12배나 많은 유동자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으면 안된다.

매주 전대되는 자본들이 동등하다는 사정은 이 경우에 아무런 의의도 가지지 않는다. 전대된 자본의 크기가 여하튼간에 전자의 경우에는 자본은 다만 1주간, 후자의 경우에는 12주간 전대되어 있으며, 이 기간들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 자본을 가지고 동일한 조작을 반복하든가 또는 다른 종류의 어떤 조작을 개시함으로써 새로 조작할 수 있다.

회전속도의 차이 또는 동일한 자본가치가 새로운 노동과정이나 새로운 가치증식과정에 복무할 수 있기 전에 개개의 자본이 전대되지 않으면 안되는 기간의 차이는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부터 발생한다.

기관차 또는 어떤 것이든 다른 기계를 제작하는 데 100노동일이 든다

고 가정하자. 방적업이나 기계 제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하여는 이 100노동일은 동등하게 비연속적인(분할할 수 있는) 크기를 이루며, 상기가정에 의하면 계기(繼起)적이며 개별적인 100개의 10시간 노동과정으로 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생산물인 기계에 대하여는 이 100노동일은 연속적인 크기를, 1,000노동시간으로 이루어지는 1노동일을, 단일한 연결된 생산행위를 이룬다. 다소간에 다수 연결된 노동일의 계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1노동일을 나는 노동기간이라고 칭한다. 노동일이라고 말할 때에는 노동자가 하루에 자기의 노동력을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즉 하루에 노동하지 않으면 안되는 노동시간의 길이를 의미한다. 그런데 노동기간이라고 말할 때에는 일정한 생산부문에서 완성생산물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연결된 일정한 수의 노동일을 의미한다. 매개 노동일의 생산물은 이 경우에는 부분 생산물에 불과한 것으로 이 부분 생산물이 매일 매일 더 가공되어 다소간에 오랜 기간의 노동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완성된 모습을 취하며 완성된 하나의 사용가치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공황에 의한 사회적 생산과정의 중단, 교란은 성질상 분할될 수 있는 노동생산물에 미치는 영향과, 생산상 비교적 긴, 연결된 기간을 요하는 생산물에 미치는 영향과는 극히 각이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양의 방사, 석탄 등등의 오늘의 생산에 이어 내일에는 방사, 석탄 등등의 새로운 생산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박, 건물, 철도 등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태가 다르다. 이 경우에는 노동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연결된 생산행위가 중단된다. 작업이 더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의 생산에 이미 소비된 생산수단과 노동은 무용하게 지출되어 있다. 작업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중단기간에는 불가피적으로 언제나 약간의 손상이 발생한다.

생산물이 완성될 때까지 고정자본이 매일 생산물에 교부하는 가치부분은 노동기간이 지속되는 전체기간에 층층이 누적된다. 그리고 동시에 이 점에 고정자본과 유동자본간의 구별의 실제상의 중요성이 나타난다. 고정자본은 비교적 장기간 생산과정에 전대되어 있고 아마도 수년에 걸칠 이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갱신될 필요가 없다. 증기기관이 그것의 가치를 매일 일부분씩 분할될 수 있는 노동과정의 생산물인 방사에다 교부하는가 또는 3개월 동안에 걸쳐 연속적인 한 생산행위의 생산물인 기관차에다 교부하는가 하는 사정은 증기기관의 구입에 필요한 자본의 지출에는 아무

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증기기관의 가치는 전자의 경우에는 소량으로 예컨대 매주 환류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보다 대량으로 예컨대 3개월만에 환류한다. 그러나 증기기관의 갱신은 두 경우에 다 아마도 20년 후에 비로소 있을 것이다. 증기기관의 가치가 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일부분씩 환류하는 때 개별적 기간이 증기기관 그 자체의 생존기관보다 짧은 한에 있어서는 동일한 증기기관은 일련의 노동기간에 걸쳐 생산과정에서 기능을 계속한다.

그런데 전대자본의 유동적 구성부분에 있어서는 사태가 다르다. 금주(今週)를 위하여 구매된 노동력은 금주 중에 지출되어 생산물에 대상화된다. 이 노동력은 금주 말에 지불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노동력에 대한 이 자본투하는 3개월 동안 매주 반복되는바, 이에 있어서 금주의 이 자본부분의 지출이 자본가로 하여금 내주의 노동구입을 지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력에 대한 지불에 매주 새로운 추가자본이 지출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리고 모든 신용관계를 도외시한다면 자본가는 노임을 일주분씩 지불할 따름이지만 3개월 동안 노임을 투하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유동자본의 다른 부분인 원료와 보조재료에 대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노동은 층층이 생산물에 누적된다. 지출된 노동력의 가치뿐만 아니라 잉여가치도 노동과정중에 부단히 생산물에—그러나 아직 완성된 상품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으며, 따라서 아직 유통능력이 없는 미완성 생산물에—이전된다. 이 점은 원료 및 보조재료로서 층층이 생산물에 이전되는 자본가치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생산물 또는 소기의 유용효과의 특수한 본성에 의하여 그것의 생산에 요구되는 노동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유동자본(노임, 원료 및 보조재료)의 부단한 추가지출이 필요한바, 이러한 유동자본은 그 어느 한 부분도 유통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하지 않으며 따라서 또 동일한 조작의 갱신에 복무할 수 없는 것이다. 도리어 그 각 부분은 형성되고 있는 생산물의 구성부분으로서 생산분야내에 축차적으로(차레대로) 고착되며 생산자본의 형태로 구속되어 있다. 그런데 회전기간은 자본의 생산기간과 유통기간의 합계와 같다. 그러므로 생산기간의 연장은 유통기간의 연장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회전속도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첫째로, 생산분야에 있어서의 체류의 연장, 예컨대 최초의 한 주일 동

안에 노동과 원료 등등에 전대된 자본은 고정자본으로부터 생산물에 교부된 가치부분과 마찬가지로 3개월이라는 전기간에 걸쳐 생산분야에 얹매어 있으며, 겨우 형성되고 있으나 아직 미완성인 생산물에 합체되어 있고, 상품으로서 유통에 들어갈 수는 없다.

둘째로, 생산행위에 필요한 노동기간은 3개월간 지속되고 사실상 다만 하나의 연결된 노동과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부단히 매주 유동자본의 새로운 분량이 선행의 분량에 추가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축차적으로 전대된 추가자본의 양은 노동기간의 길이에 따라 증대한다.

우리는 위에서 면방직업과 기계 제작업에 투하되어 있는 자본은 동등한 양이고 또 이 자본들은 동등한 비율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 또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으로 분할되어 있고 또 노동일의 길어도 역시 동등하다고, 간단히 말하여 노동기간의 길이 이외의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상정하였다. 최초의 한 주일 동안에는 투자의 크기는 양자에 있어서 다 동등하나, 방직업자의 생산물은 판매될 수 있으며 그 대금으로써 새로운 노동력과 새로운 원료 등등이 구매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동일한 규모로 생산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계 제작업자는 3개월이 경과하여 그의 생산물이 완성된 후에야 비로소 최초의 한 주일 동안에 지출된 유동자본을 화폐로 재전화시켜 그것으로써 새로 조작할 수 있다. 따라서 첫째로는 동일한 양의 투하자본의 환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둘째로는 3개월 동안 방직업과 기계 제작업에 총용된 생산자본의 크기는 동등하지만 그러나 자본투하의 크기는 방직업자와 기계제작업자에 있어서 전혀 각이한 것이니,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자본이 급속히 갱신되며 따라서 또 동일한 조작이 새로 반복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완만하게 갱신되며 따라서 또 그것이 갱신될 때까지는 부단히 새로운 자본량이 구래의 자본량에 추가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의 일정한 부분들이 갱신되는 기간의 길이, 또는 자본이 전대되는 기간의 길이가 각이하며(매일 또는 매주 총용되는 자본의 크기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노동과정의 길이에 따라서 전대되지 않으면 안되는 자본량도 각이하다. 이 사정은 다음 장에서 고찰된 경우들에서와 같이 자본의 전대기간의 길이는 증대하더라도 그 때문에 전대되어야 할 자본의 분량은 이 기간의 길이에 비례하여 증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목을 요한다. 자본은 보다 더 오랜 기간 전대되지 않으면 안되며, 보다

더 다량의 자본이 생산자본의 형태로 구속되어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덜 발전한 단계에서는 긴 노동기간, 따라서 또 장기간에 걸치는 다액의 투자를 요하는 기업들은, 특히 이러한 기업들이 거대한 규모로서가 아니면 수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혀 자본주의적으로 경영되지 않았으니, 예컨대 공동체 또는 국가비용으로써(노동력이 문제로 되는 한 옛날에는 대개 강제노동에 의하여) 되는 도로, 운하 등등이 그러하였다. 또는 제조에 비교적 긴 노동기간을 요하는 생산물은 극히 적은 부분만이 자본가 자신의 자력(資力)에 의하여 제조된다. 예컨대 가옥 건축에 있어서 그 가옥의 소유자로 될 사인(私人)은 건축기업가에게 일부분씩 전부를 한다. 그러므로 사실상 그는 가옥의 생산과정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그것의 댓가를 일부분씩 지불하는 것이다. 그런데 발전된 자본주의 시대—일방으로는 거액의 자본이 개개인의 수중에 집적되어 있고 타방으로는 개개의 자본가들과 함께, 결합된 자본가(주식회사)가 출현하며 동시에 신용제도가 발전되고 있는 시대—에는 자본주의적 건축기업가가 개개의 사인의 주문에 의하여 건축한다는 것은 벌써 예외에 불과하다. 그는 시장을 목표로, 연줄을 지은 다수의 가옥들과 도시의 전 구역들을 건축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바, 이는 개개의 자본가가 청부업자로서 철도를 부설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런던의 가옥건축에 어떠한 변혁을 일으켰는가 하는 것은 1857년의 은행위원회에서 한 어떤 건축기업가의 진술에서 알 수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가 아직 젊었을 때에는 가옥은 대개 주문에 의하여 건축되었고 그 금액은 건축 중에 건축의 일정한 단계들이 완료됨에 따라 기업가에게 분할 지불되었다. 투기적으로 건축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기업가에게 간혹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로 자기의 노동자들을 규칙적으로 취업시키며 그리하여 그들의 이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 최근 40년이래 모든 것이 일변하였다. 주문에 의한 건축은 거의 볼 수 없다. 새 가옥이 필요한 사람은 투기적으로 건축된 것 또는 아직 건축중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것을 구한다. 기업가는 이제는 벌써 고객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을 위해서 일한다. 다른 모든 산업가와 전혀 마찬가지로 그도 시장에서 완성된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종래에는 기업가는 아마도 3, 4동의 가옥을 동시에 투기적으로 건축하였는데 이제는 그는 광대한 지면을 구매하고(즉 대륙적 표현

방식대로 한다면 대개 99년을 기한으로 임차하고) 거기에다 100동 내지 200동에 이르기까지의 가옥을 건축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리하여 자기 자력의 20배 내지 50배나 되는 기업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된다. 자금은 저당설정에 의하여 조달되며, 개개의 가옥의 건축이 진척되는 정도에 따라 돈이 기업가의 처리에 맡겨진다. 거기에다 공황이 닥쳐와서 전대금의 불입이 정체되면 전체 기업이 파탄되는 것이 보통이다. 최선의 경우라도 가옥은 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미완성인 채로 남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경매에 붙여져 잔액으로 방매된다. 투기적인, 그것도 대규모적인 건축이 아니고서는 오늘날은 여하한 기업가도 해나갈 수 없다. 건축 그 자체로부터의 이윤은 극히 보잘 것 없는 것이며, 주되는 이득은 지대의 등귀, 대지의 교묘한 선택 및 이용에 있는 것이다. 벨그라비아 및 타이버니아의 거의 전체 가옥과 런던 주변의, 몇 천개가 되는지 모르는 별장은 가옥에 대한 수요를 예상한 이와 같은 투기에 의하여 건설되었다(『은행법에 관한 특별위원회 보고서』 제1부, 1857년, 증언록, 질문 제5, 413~5, 418호, 제5, 435~5, 436호로부터의 요약).

노동기간이 매우 길고 그 규모가 큰 사업의 수행이 완전히 이미 자본주의적 생산에 속하게 되는 것은 비로소, 자본의 집적이 이미 매우 현저하고 타방으로는 신용제도의 발전이 자본가에게 편리한 방책을 제공하여 자기 자신의 자본이 아니라 타인의 자본을 전대하고, 따라서 또 타인의 자본을 걸고 해 볼 수 있는 때의 일이다. 그러나 생산에 전대되는 자본이 그것의 총용자의 것이냐 아니냐 하는 사정은 자본의 회전속도 및 회전기간에 대하여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협업, 분업, 기계사용과 같이 개개의 노동일의 생산물을 증대시키는 제조조건은 동시에 또 연결된 생산행위하에서의 노동기간을 단축시킨다. 예컨대 기계는 가옥, 교량 등등의 축조기간을 단축시키며 수확기, 탈곡기 등등은 성숙한 곡물을 완성상품으로 전화시키는 데 필요한 노동기간을 단축시킨다. 조선의 개량은 선박의 속력을 증대시킴으로써 항해업에 투하된 자본의 회전기간을 단축시킨다. 그러나 노동기간, 따라서 또 유동자본이 전대되지 않으면 안되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이러한 개량들은 대개 고정자본의 투하의 증가와 결부되어 있다. 타방으로는 일정한 생산부문에 있어서의 노동기간은 협업의 확대만으로써 단축될 수 있다. 예컨대 철도의 완성은 대군의 노동자를 동원하여 여러 지점에서 일시에 공사에 착수

케 함으로써 단축된다. 이 경우에 회전기간은 전대자본의 증대에 의하여 단축된다. 보다 더 많은 생산수단과 보다 더 많은 노동력이 자본가의 지휘하에 결합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이 노동기간의 단축은 대개 보다 단기간 전대되는 자본의 증대와 결부되어 있으며 그리하여 자본의 전대기간이 단축되는 정도에 따라 전대자본의 양은 증대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상기하여야 할 것은 사회적 자본의 현존량을 도외시한다면 문제는 생산수단과 생활수단 또는 그것들에 대한 지배가 어느 정도로 분산되어 있는가 또는 어느 정도로 개별적 자본가의 수중에 결합되어 있는가—따라서 자본의 집적이 이미 어떠한 규모에 달하였는가 하는 데 귀착된다는 것이다. 신용이 일부 자본가들의 수중에서의 자본의 집적을 매개하며, 촉진시키며, 높이는 한에 있어서 그것은 노동기간 따라서 또 회전기간의 단축에 기여한다.

노동기간이 연속적인 것이건 중단되는 것이건간에 그것이 일정한 자연적 제조건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는 생산부문들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은 수단으로써는 어떠한 단축도 생길 수 없다.

“보다 급속한 회전이라는 말은 곡물수확에는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연 1회전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축산업에 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간단히 다음과 같이 묻고 싶다—2,3년생의 양과 4,5년생의 황소의 회전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가라고”(W. 윌터 군 『정치, 농업 및 상업상의 오류』 런던, 1866년, 325페이지).

보다 일찍 현금을 얻어야 할 필요성(예컨대 조세, 지대 등등과 같은 고정되어 있는 지불을 위한)은 가축이 경제적 표준연령에 달하기 전에 그것을 예컨대 판매하며 도살함으로써—농업에 큰 손해를 꾸면서—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는 또 결국에 가서는 육류 가격의 등귀를 초래한다.

“종전에 주로 여름에는 중부 제 주의 목장에, 그리고 겨울에는 동부 제 주의 축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던 사람들은……곡물가격의 변동과 저락으로 말미암아 대단히 영락하였기 때문에 버터와 치즈의 높은 가격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기뻐한다. 그들은 경상비를 지변하기 위하여 버터를 매주 시장에 가지고 간다. 또 치즈에 대해서는 그들은 중매인(仲買人)으로부터

전대를 받는다. 중매인은 치즈가 운반될 수 있게 되자마자 가져가며 또 가격은 물론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이러한 이유에서—또 농업은 정치경제학상의 제 원칙에 의하여 규제되므로—종전에는 사육을 위하여 낙농(酪農) 지방으로부터 남부로 이송되었던 송아지들은 지금은 버밍검, 맨체스터, 리버풀 기타 인접 대도시들의 도살장에서 대량적으로 도살되는데 그중에는 생후 8일, 내지 10일 밖에 안되는 송아지도 왕왕 있다. 그런데 만약 맥아(麥芽)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더라면 차지농업가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고 그리하여 그들의 유축(幼畜)이 더욱 나이를 먹고 체중이 증대될 때까지 그것을 계속 보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젖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송아지를 기르는데 젖 대신에 맥아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리하여 현재의 놀랄만한 유축 결핍은 대부분 면하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들 소차지농업가에게 송아지를 기를 것을 권고한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젖을 가지고 기르면 수지가 맞는다는 것은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자면 첫째로 돈을 지출해야 할 터인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둘째로 우리는 이 돈을 회수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는데, 낙농업에 있어서는 그것이 곧 회수된다고”(동상서, 11, 12페이지).

회전의 연장이 이미 영국의 소차지농업가들에게서 이와 같은 후과〔뒤에 나타나는 좋지못한 결과나 영향〕를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이 대륙의 소농민들에게서 여하한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가는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

노동기간, 따라서 또 유통이 가능한 상품의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의 길이에 상응하여 고정자본으로부터 충충이 생산물에 교부되는 가치부분은 누적되며 또 이 가치부분의 환류는 지연된다. 그러나 이 지연은 고정자본의 새로운 투하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기계는 그 마멸의 보상분이 화폐형태로 환류하는 것이 완만하든 급속하든간에 생산과정에서 계속 작용한다. 그러나 유동자본의 경우에는 사태가 다르다. 이 경우에는 자본이 노동기간의 길이에 비례하여 장기간 고착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자본이 노임, 원료 및 보조재료로 부단히 전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이 환류의 지연은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에 대하여 각이한 영향을 미친다. 고정자본은 환류가 완만하든 급속하든간에 계속 작용한다. 그런데 유동자본은 그것이 미판매 또는 미완성이어서 아직 판매할 수 없는 생산물의 형태로 고착되어 있고 또 그것을 현물형태로 갹

신하기 위한 추가자본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류의 지연에 의하여 가능할 수 없게 된다.

“농민은 굶주리고 있는데 그의 가축은 살찌고 있다. 비가 많이 와서 목초는 무성하게 자랐다. 인도의 농민은 자기의 살찐 황소 곁에서 굶어죽을 것이다. 미신의 가르침은 개개인에 대해서는 가혹하나 사회를 보존하는 것이다. 역축의 보존은 농경의 진행을 보장하며 따라서 또 미래의 생계와 부의 원천을 보장한다. 인도에서는 황소를 교체하기보다 사람을 교체하기가 더 쉽다고 하는 말은 가혹하고 비참하게 들릴지 모르나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보고 동인도 마드라스 및 오릿사의 기근』 제4호, 44페이지). 이것을 「마누법전」(인도 고대의 법전) 중의 다음과 같은 한 구절과 비교해보라 “승려나 암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보수없이 생명을 바치는 것은……천하게 태어난 이 종족의 명복(冥福)을 보장할 수 있다”(제10장, 62절).

5년이 지나기 전에는 5년생 동물을 시장에 공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일정한 한계내에서는 취급방식을 변경함으로써 동물을 보다 단기간에 그것의 용도에 따라 길러낼 수 있다. 이것은 특히 베크웰에 의하여 달성되었던 것이다. 종래 영국의 양은—불란서의 양이 1855년에 아직도 그러하였듯이—4, 5세기를 넘기 전에는 도살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베크웰의 방법에 의하면 1년생의 양도 비대하게 될 수 있고 아무튼 2년 안에는 완전히 성숙한다. 디슬리 그렌지의 한 차지농업가였던 베크웰은 세심한 도태에 의하여 양의 골격을 그것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시키었다. 그의 양은 뉴 리스트즈라고 불리었다.

“사양자는, 종전에 1두의 양을 길러낸 동일한 기간에 이제는 3두의 양을 시장에 제공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살이 가장 많이 붙는 부분이 보다 더 퍼지고 보다 더 둥글고 보다 더 크게 발달된 그런 양이다. 그것의 거의 전체 중량이 고기덩어리이다”(라베르뉴 『영국의 농촌경제』 1855년, 20 페이지).

노동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들이 각이한 산업부문에 적용될 수 있는 정도는 극히 각이할 따름이며, 이 방법들에 의하여 각이한 노동기간의 길이에 있어서의 차이가 균등화되지는 않는다. 상술한 예로서 보면 새로운 작업기의 적용에 의하여 1대의 기관차의 제조에 필요한 노동기간은

절대적으로는 단축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방적업에서의 과정들의 개량에 의하여 매일 또는 매주 생산되는 완성생산물이 비할 수 없이 더 빨리 증대된다면 기관차 제작업에서의 노동기간의 길이는 역시 상대적으로는, 즉 방적업의 그것과 비교해서는 증대된 셈이다

제13장 생산기간

노동기간은 언제나 생산기간, 즉 자본이 생산분야에 매어 있는 기간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자본이 생산과정에 있는 모든 기간이 반드시 노동기간인 것은 아니다.

노동력 자체의 자연적 제한에 의하여 조건지워져 있는 노동과정의 중단은 여기에서 문제가 아니다. 하기는 노동과정의 중단시에 고정자본인 공장건물, 기계 등등이 유향상태에 있다는 단순한 사정이 얼마나 노동과정의 부자연한 연장과 주야 노동의 동기의 하나로 되는가 하는 것은 이미 본 바이다. 여기에서 문제인 것은 노동과정의 길이에겐 의존하지 않으며, 생산물과 그것의 생산 자체의 본성에 의하여 조건지워지는 중단인바, 이 동안에 노동대상은 다소간에 지속되는 자연과정에 내맡겨져서 물리적, 화학적, 생리적 제변화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며, 이 동안에 노동과정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되어 있다.

예컨대 포도주를 일정한 정도로 완성하는 데 이르기 위해서는 짜낸 포도즙(汁)은 우선 얼마 동안 발효를 거친 다음에 다시 얼마 동안 그대로 두지 않으면 안된다. 제도업(製陶業)에서와 같이 생산물이 건조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생산부문, 또는 표백업에서와 같이 생산물의 화학적 속성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생산물이 일정한 상태에 내놓여지지 않으면 안되는 생산부문도 허다하다. 추파(秋播) 소맥이 성숙하기까지에는 9개월이나 요구된다. 파종기와 수확기 사이에는 노동과정은 거의 전적으로 중단된다. 임업에서는 파종과 그에 필요한 준비노동이 끝난 후 종자가 완성생산물로 전화되기까지에는 아마도 100년이나 요구될 것이다. 이 전 기간을 통하여 종자가 노동의 작용을 요하는 것은 비교적 극소할 뿐이다.

이 모든 경우에 생산기간의 대부분을 통하여 다만 때때로 추가노동이 첨가될 뿐이다. 이미 생산과정에 고착되어 있는 자본에 추가자본 및 추가노동이 첨가되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전장(前章)에서 서술한 조건들은

여기에서는 다만 장단간의 중단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전대자본의 생산기간은 두 기간으로 구성된다. 즉 하나는 자본이 노동과정에 있는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의 존재형태—미완성 생산물의 형태—가 노동과정에는 있지 않고 자연과정의 지배에 맡겨져 있는 기간이다. 이 양기간이 때때로 교차되어 서로 사이에 끼이든 말든 그것은 사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이 경우에 노동기간과 생산기간은 일치하지 않는다. 생산기간은 노동기간보다 더 길다. 그러나 생산기간이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생산물은 완성되고 성숙되며 따라서 생산자본의 형태로부터 상품자본의 형태로 전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기간중 노동과정이 아닌 부분의 길이가 연장됨에 따라 자본의 회전기간도 연장된다. 노동기간을 초과하는 생산기간이 곡물의 성숙, 참나무의 성장 등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자연법칙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회전기간은 왕왕 생산기간의 인위적 단축에 의하여 다소간에 단축될 수 있다. 예컨대 옥외(屋外) 표백 대신에 화학적 표백에 의하여, 건조과정에 있어서의 보다 효과있는 건조장치에 의하여서이다. 또 유피업에서는 가죽에 탄닌산(酸)을 침투시키는 데 낡은 방법에 의하면 6~18개월이 필요하였는데, 공기펌프를 적용하는 새로운 방법에 의하면 불과 1개월 반 내지 2개월이 필요하다(J. G. 쿠르셀-스누이유 『공업기업의 이론 및 실천』 파리, 1857년 제2판.) 자연과정에 의하여서만 충만한 생산기간의 인공적인 단축의 가장 적절한 실례를 제공하는 것은 철 생산의 역사, 특히 1780년에 발명된 제련법으로부터 근대의 베세머법과 그 이후에 도입된 최신식 처리방법들에 이르기까지의 최근 100년간에 있어서의, 선철의 강철로의 전화이다. 생산기간은 비상이 단축되었지만 그러나 그와 동일한 정도로 고정자본의 투하액도 증대하였다.

생산기간과 노동기간의 배리의 독특한 실례를 제공하는 것은 아메리카의 구두형(型) 제조이다. 여기에서는 완성된 형이 후에 비틀어져 변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를 18개월이나 건조시켜 두지 않으면 안되는 데로부터 추가적 비용의 상당한 부분이 든다. 이 기간중 목재는 다른 어떠한 노동과정도 거치지 않는다. 그리하여 투하자본의 회전기간은 형제조 자체에 필요한 시간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자본이 건조중에 있는 목재로 유평상태에 있는 시간에 의해서도 규정되어 있다. 목재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노동과정에 들어갈 수 있기 전에 18개월 동안 생산과정에 있다. 이 실례는 동시에 또 유통분야에서가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일어나는 제사정의 결과로 총유동자본의 각이한 부분들의 회전기간이 얼마나 각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 준다.

생산기간과 노동기간간의 차이가 특히 명료하게 나타나는 것은 농업에서이다. 우리의 온대지방에서는 토지는 연 1회 곡물을 낸다. 생산기간(추파 작물에 있어서는 평균 9개월)의 단축 또는 연장은 그 자체가 또한 연사(年事)가 잘 돌아가는가 못돌아가는가에 의존하며 따라서 고유한 의미에서의 공업에서처럼 미리 정확히 규정되고 제어될 수는 없다. 다만 우유, 치즈 등등과 같은 부산물만이 계속적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생산되어 판매될 수 있다. 그런데 노동기간은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이 된다.

“독일의 각 지방에서는 기후 기타 영향력이 있는 제조건을 고려할 때 세계의 주요 노동기간의 노동일수는 평균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3월 중순 또는 4월 상순부터 5월 중순에 이르는 춘기에는 50 내지 60노동일, 6월 상순부터 8월 하순에 이르는 하기에는 65 내지 80노동일, 9월 상순부터 10월 하순 또는 11월 중순 내지 하순에 이르는 추기에는 50 내지 75노동일. 동기에는 비료, 목재, 시장 매매품, 건축용재의 운반 등등과 같은 이 계절에 수행되어야 할 노동만이라고 말할 수 있다”(F. 키르호프 「농업경영학 편람」 드레스덴, 1852년, 160페이지).

때문에 기후가 불리하면 할수록 농업에서의 노동기간, 따라서 또 자본과 노동이 투하되는 기간은 더욱 압축된다. 예컨대 러시아가 그러하다. 이 나라의 일부 북부지방들에서는 1년중 전야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30 내지 150일에 불과하다. 일체의 전야 작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6개월 내지 8개월의 겨울 동안에는 러시아의 구라파 부분의 인구 6,500만 중 5,000만명이 취업하지 않고 있다면 러시아가 당하는 손실이 어떤 것일 것인가 하는 것을 알만하다. 러시아에는 10,500의 공장에서 노동하는 20만명의 농민이 있으며 이밖에 농촌에는 도처에 독자적인 가내공업이 발전되고 있다. 전체 농민이 대대로 직포업자, 유피업자, 제화업자, 대장장이, 칼 단야공 등등인 그러한 농촌도 있다. 이것은 특히 모스크바 주, 올라지미르 주, 깔루가 주, 꼬쓰트로마 주 및 페제르브르그 주에서 그렇다. 기왕이니 말하거니와 이 가내공업은 벌써 점점 더 자본주의적 생산

에 봉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다. 예컨대 직포업자에게로는 경사(經絲)와 위사(緯絲)가 상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중개업자의 매개를 통하여 제공된다(『영국 대공사관 서기관들의...상공업에 관한 보고』 제8호 1865년, 86, 87페이지의 요약).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기간과 그 일부에 불과한 노동기간의 불일치는 농업을 농촌부업과 결합시키는 자연적 기초를 이루며, 타방으로는 이 농촌부업은 또, 우선은 상인으로서 농촌에 침입하는 자본가들의 거점으로 된다. 그 후에 자본주의적 생산이 매뉴팩처와 농업의 분리를 완성할 때 농촌노동자는 점점 더, 다만 우연적인 부업에 의존하게 되며 또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처지는 악화된다. 자본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듯이, 회전상의 모든 차이는 균등화된다.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광업, 운수 등등과 같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공업의 대다수 부문에서는 생산은 균등한 것이며, 노동기간도 매년 균등하며 또—가격의 변동, 사업상 혼란 등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중단을 도외시한다면—매일의 유통과정에 들어가는 자본을 위한 지출도 시간상으로 균등하게 배분된다. 또한 기타의 시장 체관계에 변동이 없다면 유동자본의 환류 또는 그것의 갱신도 1년을 통하여 균등한 기간에 배분된다. 그런데 노동기간이 생산기간의 일부에 불과한 그러한 투자부문에 있어서는 1년간의 각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에 유동자본의 투하액에 있어서는 극히 심한 불균등이 발생하는데, 자본의 환류는 자연조건에 의하여 고정된 시기에 한꺼번에 수행될 따름이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가 동등하더라도 즉 전대되는 유동자본의 크기가 동등하더라도 유동자본은 연속적인 노동기간을 가진 기업에 비하여 대량적으로, 한꺼번에 또 장기간에 걸쳐 전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정자본의 수명과 그것이 현실적으로 생산적으로 기능하는 기간과의 차이도 보다 더 현저하다. 노동기간과 생산기간의 사이에 차이가 있음에 따라, 물론 총용된 고정자본의 사용기간도 장단간의 기간에 부단히 중단되는데 예컨대 농경에 있어서 역축, 농구 및 기계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 고정자본이 역축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한, 역축이 작업하는 기간이나 작업하지 않을 기간이나 사료 등등에 대하여 동일한 또는 거의 동일한 지출이 부단히 요구된다. 죽은 노동수단에 있어서는 불사용에 의하여서도 약간의 가치감소가 발생한다. 따라서 생산물은 일반적으로 비싸진다. 왜냐하면 생산물로의 가치교부는 고정자본이 기능하는 기간에 의하

여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치를 상실하는 기간에 의하여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산부문에 있어서는 고정자본의 유희상태는 그 때문에 경상비를 요하든 않든간에 고정자본이 정상적 충용의 조건을 이루는데, 이것은 예컨대 방적업에 있어서 일정한 양의 면화손실이 그러한 조건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또한 매개 노동과정에서 정당한 기술적 조건하에서 비생산적으로, 그러나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노동력은 생산적인 노동력과 전혀 마찬가지로 계산된다. 노동수단, 원료 및 노동력의 비생산적 지출을 감소시키는 일체의 개량은 생산물의 가치도 감소시킨다.

농업에서는 노동기간이 비교적 길다는 것과, 노동기간과 생산기간과의 차이가 크다는 것, 이 양자가 한데 결합되고 있다. 호지스킨은 이에 관하여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농업생산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하기는, 이 경우에 그는 노동기간과 생산기간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과 다른 노동 제부문에서 필요한 기간과의 차이는 농민의 심한 예측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다. 농민은 1년 이내의 단기간에는 그의 상품을 시장에 가지고 갈 수가 없다. 이 전체기간에 걸쳐 그는 제화업자, 재봉업자, 대장장이, 마차 제조업자 및 기타 각종 생산자들로부터 자기에게 필요하며 또 수일이나 수주일이면 만들 수 있는 생산물을 외상으로 사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자연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른 노동부문들에서의 보다 급속한 부의 증가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들은 전국의 토지를 독점하고 게다가 또 입법상의 독점권까지 장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 및 그들의 종복과 차지농업가들을 국내에서 가장 예측적인 사람들로 될 운명으로부터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다. (토마스 호지스킨 『통속정치경제학』 런던, 1827년, 147페이지, 주)

보다 더 다종다양한 생산물을 심고 그리하여 연중을 통하여 각종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함으로써, 일방으로는 농업에서의 노임과 노동수단에 대한 지출을 온 1년에 걸쳐 보다 더 균등하게 배분케 하며 타방으로는 회전기간을 단축시키는 일체의 방법은, 생산에 전대되며 노임, 비료, 종자 등등에 지출되는 유동자본의 증대를 요구한다. 휴경지를 두는 3포농법으로부터 휴경지를 두지 않는 윤작농법으로의 이행의 경우가 그렇다. 또한 플랑드르에서의 간작(間作—culture dérobée)의 경우도 그렇다.

“간작에 있어서는, 근과류(根果類)가 재배된다. 동일한 밭에 처음에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곡물, 아마, 채종을 심고 그것을 수확한 후에는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근과류를 심는다. 이 방법에 의하면 유각 가축을 축사에게 두어 둘 수 있으며, 다량의 퇴비를 얻게 된다. 따라서 이 방법은 윤작농법의 기초로 된다. 사토(砂土) 지방들에서는 경작면적의 3분의 1 이상에 이 간작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마치도 경지면적이 3분의 1이나 확대된 듯한 결과가 초래된다.” 근과류 이외에도 클로버 기타 사료 작물들도 이 목적을 위하여 이용된다. “농경이 이와같이 원예로 이행할 정도로 추진된다면 비교적 다액의 투자를 요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영국에서는 헥터당 투자가 250프랑으로 계산되고 있다. 그런데 플랑드르에서는 우리 농민들은 헥터당 500프랑의 투자도 아마 과소하다고 생각할 것이다(에밀 드 라블레 「벨기에 농촌경제론」 파리, 1863년, 45, 46, 48페이지).

마지막으로는 조림업을 들어보자.

“목재 생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타 대다수의 생산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즉 목재 생산에 있어서는 자연력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며 또 천연적 육성의 경우에는 인간력과 자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삼림이 인공적으로 육성되는 경우에까지도 인간력과 자본력의 적용은 자연력의 작용에 비하면 근소한 것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곡식이 되지 않든가 또는 되어도 수지가 맞지 않는 그러한 토지와 장소에서도 삼림은 잘 자랄 수 있다. 그러나 조림은 또 경영을 제대로 하자면 곡물재배보다도 더 큰 면적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영세한 면적에서는 임업적인 벌목은 실시될 수 없으며, 부수입은 거의 상실되며, 삼림을 보호하기가 곤란하다는 등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생산과정은 극히 장기간에 걸치는 것으로서, 사적 경영의 계획 한계를 넘으며, 인간의 일생을 넘는 경우까지 있다. 즉 임산지를 얻기 위하여 투하되는 자본은(사회적 생산에 있어서는 이 자본은 불필요하며 다만 사회가 조림을 위하여 얼마만한 토지를 농경지 및 목축지로부터 떼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만이 문제로 된다) 장구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렇다 할만한 결실을 가져오며 또 그 회전은 다만 부분적으로 진행되며 많은 종류의 수목에 있어서는 완전한 회전이 150년에 이르는 것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적인 목재 생산 그 자체가 매년 이용하는 목재의 10배 내지 40배에 달하는 입목(立木)의 저장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다른 소득이 없고 또 광대한 면적의

삼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삼림 경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키르흐호프, 동상서, 58페이지).

생산기간(이 생산기간은 상대적으로 다만 근소한 노동기간을 포함한다)이 길고 이와 관련하여 회전기간이 길다는 사정은 조림을 사적 경영, 따라서 자본주의적 경영—이것은 개별적 자본가 대신에 결합된 자본가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사적 생산이다—에 대해서 불리한 부문으로 만든다. 문화 및 산업 일반의 발전은 오래 전부터 삼림을 파괴하는 작용을 하여 왔는데, 이에 비하면 그 발전이 거꾸로 삼림의 보존 및 생산에 이바지한 일체의 공헌은 전혀 아무 것도 아니다.

키르흐호프로부터의 상기 인용문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뿐만 아니라 지구적인 목재 생산 그 자체가 매년 이용하는 목재의 10배 내지 40배에 달하는 입목의 저장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10년 내지 40년 또 그 이상의 기간에 1회의 회전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축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축군(가축저장)의 일부는 연 생산물로서 판매되는데 다른 부분은 생산과정에 남아 있다. 이 경우에 연년 회전하는 것은 자본의 일부에 불과한바, 이것은 고정자본인 기계, 역축 등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꼭 마찬가지이다. 이 자본은 장기간 생산 과정에 고정되어 있는 자본이며 따라서 또 총자본의 회전을 지연시키는 것이지만 그것은 범주상 의미에 있어서의 고정자본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저장이라고 부르는 것—일정한 양의 입목 또는 가축—은 상대적 의미에서는 생산과정에 존재한다(동시에 노동수단으로서와 노동재료로서). 이것의 재생산의 자연적 조건에 따라 규칙적인 경영에 있어서는 현저한 부분이 이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회전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영향을 주는 다른 종류의 저장도 있는데 그것은 잠재적 생산자본을 이를 따름이나, 그것이 적극적인 생산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다만 점차적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경영의 성질상 다소간 대량적으로 퇴적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또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생산에 전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속하는 것은 예컨대 전야에 반출되기 전의 비료이며, 또 가축의 생산에 들어가는 곡물, 건초 등등과 같은 생활수단 저장품이다.

“기업자본의 현저한 부분은 그 경영의 저장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후자는 그 보존에 필요한 예방대책을 응당하게 실시하지 않는 한, 다소간에 그 가치를 상실할 수가 있다. 심지어는 관리, 그것의 결여로 말미암아 경영을 위한 생산물 저장의 일부가 완전히 상실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특히 창고, 사료간, 곡창 및 움에 대한 주도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며 또 저장소는 언제나 응당히 폐쇄하여 두지만 동시에 그 청결, 환기, 등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곡물 및 기타 저장되어 있는 작물들은 때때로 적당히 뒤섞으며, 마령서와 무우는 냉해나 물 및 부패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 (키르호호프, 동상서, 292페이지). “자가 수요, 특히 가축 사양을 위한 자가 수요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경우에 배분은 수확물과 목적 여하에 따라서 실시되어야 한다—소여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을 고려에 넣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불의의 경우를 위하여 상당한 예비를 남겨 둘 것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만약 자기 자신의 생산물로써는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다른 생산물(대용품)로써 이 부족되는 것을 메꿀 수 없겠는가 또는 적어도 이 부족되는 것 대신에 다른 생산물을 더 염가로 구입할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건초가 부족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근과류에다 짚(藁)을 섞은 것으로써 메꿀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각종 생산물의 실제 가치와 시장가격을 항상 고려하고 이에 따라서 소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귀밀은 비싼데 원두와 호밀이 비교적 싸다면 귀밀의 일부 대신에 원두 또는 호밀을 말에게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는 귀밀을 판매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동상서, 300페이지).

저장 형성의 고찰에 있어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다소간에 일정한 양의 잠재적 생산자본, 즉 생산과정에 점차적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다소간의 양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는, 생산을 위하여 예정된 생산수단이 필요하다. 그때에 지적한 바와 같이 소여의 기업 또는 일정한 규모의 자본주의적 생산에 있어서 이 생산적 저장의 크기는 그것의 갱신의 곤란의 대소, 구입 시장의 상대적 거리, 운수교통수단의 발전 등등의 여하에 의존한다. 이 모든 사정은 생산적 저장의 형태로 현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본의 최한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또 자본이 전대되지 않으면 안되는 기간에 대하여, 그리고 한꺼번에 전대되어야 할 자본량의 크기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 이와같이 회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이 자본량의 크기는 유동자본이 생산적 저장의 형태로 단순히 잠재적 생산자본으로서 고착되어 있는 기간의 장단에 의하여 제약된다. 타방으로는 이러한 정체가 급속한 보상의 가능성의 대소, 시장관계 등등에 의존하는 한, 이 정체 자체는 또한 유통기간에 의하여 유통분야에 속하는 제사정에 의하여 제약된다.

“또 수공도구, 체(篩), 광주리, 밧줄, 차바퀴, 기름, 못 등등과 같은 모든 비품 또는 부속품들은 가까운 곳에서 신속히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면 적을수록 필요한 경우에 즉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만큼 더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매년 겨울에는 모든 도구 비품을 면밀히 검사하고, 이때에 필요하게 되는 보충과 수리에 대하여 즉시로 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품의 수요에 대하여 보유하여야 할 저장의 대소는 주로 지방 사정에 의존한다. 수공업자나 상점이 부근에 없는 곳에서는 그러한 수공업자나 상점이 같은 장소에 있거나 또는 이, 주 부근에 있는 그러한 곳에 비하여 더 많은 저장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타의 사정들이 동등한 경우에 필요한 저장을 한꺼번에 비교적 대량으로 구입한다면—적당한 구입시기를 선택하기만 하였다면—보통 염가로 구입한다는 이득을 본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물론 그만큼 큰 금액이 기업의 유동자본에서 끌려나가는데, 경영상 그 금액이 없이 언제나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키르호프, 동상서, 301페이지).

생산기간과 노동기간의 차이는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극히 각이한 경우에 생길 수 있다. 유동자본은 그것이 고유한 의미에서의 노동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생산기간에 있을 수 있으며(구두형 제조), 또는 그것이 고유한 의미에서의 노동과정을 통과한 후에 생산기간에 있을 수도 있으며(포도주, 종곡), 또는 생산기간이 여기저기 노동기간에 의하여 중단되는 수도 있으며(농경, 조림업), 유통할 수 있는 생산물의 대부분이 적극적인 생산과정에 합체되어 있고, 그보다 훨씬 적은 부분이 매년 유통에 들어가기도 한다(조림업 및 축산업). 또는 유동자본이 잠재적 생산자본의 형태로 투하되어야 할 기간의 대소, 따라서 또 이 자본이 한꺼번에 투하되지 않으면 안되는 양의 다소는 부분적으로는 생산과정의 종류에 의하여 제약되며(농업) 부분적으로는 시장의 접근 여하 등등, 간단히 말하면 유통분야에 속하는 제사정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기간과 배리하는 생산기간을 노동기간과 동일시하려는 시도—이 시도 자체는 또한 가치이론의 그릇된 적용으로부터 나온다—가 맥켈로크, 제임스 밀 등등에 있어서 얼마나 불합리한 이론을 낳게 하였는가 하는 것은 후에(제3부)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고찰한 회전순환은 생산과정에 전대된 고정자본의 지속의 길이에 의하여 주어진다. 그런데 이 회전순환은 다소간에 일련의 연수를 포괄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또 고정자본의 일련의 연회전들 또는 1년간에 반복되는 회전들을 포괄한다.

농업에서는 이러한 회전순환은 윤작식 영농방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임차기간의 길이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나 채용되고 있는 윤작식 영농법에 해당하는 회전기간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3포농법의 경우에는 언제나 3년, 6년, 9년 등등으로 된다. 그러나 순전한 휴경지를 두는 3포농법을 가정한다면 경지는 6년 동안에 다만 4회 경작되며, 경작 연도에는 동작(冬作)곡물과 하작(夏作)곡물이 윤작되고 또 토양의 성질상 필요하거나 허용되는 경우에는 밀과 호밀, 보리와 귀밀이 윤작된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곡물이든 동일한 토지 위에서도 다른 종류의 곡물보다 수확을 더 내기도 하고 덜 내기도 하며, 가치가 각각 다르며, 또 판매되는 가격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경지의 수익은 매개 경작연도에 따라 다르며 또 회전의 전반(최초의 3개년)에서와 후반에서 다르다. 회전기간의 평균수익까지도 한 회전기간과 다른 회전기간에 동등하지 않으니, 왜냐하면 풍흉(豐凶)은 토질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그 해의 일기에도 의존하는 것이며 또 가격이 다종다양한 조건들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6개년에 걸치는 전 회전기간의 평균 연수확고와 그것의 평균가격에 따라 경지의 수익을 계산하면, 제1회전 기간이나 제2회전 기간에 있어서의 연 총수익을 알아낸다. 그러나 만약 수익을 회전기간의 절반 즉 3개년만에 대하여만 계산한다면 그렇게는 되지 않으니, 왜냐하면 그때에는 총수익이 일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3포농법의 경우에는 임차기간의 길이가 적어도 6개년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차지농업가와 지주를 위하여 훨씬 더 요망될 만한 것은 임차기간을 임차기간*{원문대로다

*명백히 키르흐호프의 잘못이다. 회전기간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편집자.

/—F. 엥겔스}의 수배로 되게 하는 것, 즉 3포농법의 경우에는 6개년이 아니고 12개년, 18개년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하는 것, 또 7포농법의 경우에는 7개년이 아니고 14개년, 28개년으로 정하는 것이다”(키르호호프, 동상서, 117, 118페이지).

(원고에는 여기에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다. “영국의 윤작농법, 여기에 주를 달 것”).

제14장 유통기간

각이한 생산부문에 투하된 각이한 자본들의 회전기간, 따라서 또 자본이 전대되지 않으면 안되는 기간에 차이를 남게 하는, 이상에서 고찰한 모든 사정은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차이, 노동기간의 차이 등등과 마찬가지로 생산과정 자체내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자본의 회전기간은 그것의 생산기간과 유통기간을 합한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간의 길이가 다르면 회전시간, 따라서 또 회전기간의 길이가 다르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 사실은 회전에 변화를 일으키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다만 유통기간만이 다른 두 개의 각이한 투자를 대비하든가 또는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으로써 이루어지는 구성과 노동기간 등등이 주어진 소여의 자본을 취하여 다만 그 유통기간만을 가령 변화시키든가 하여 보면 가장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유통기간의 한 부분—상대적으로 가장 결정적인—은 판매기간 즉 자본이 상품자본의 상태로 있는 기간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기간의 상대적 크기 여하에 따라서 유통기간 따라서 또 회전기간 일반이 연장되기도 하고 단축되기도 한다. 또한 보관비 등등으로 인하여 자본의 추가지출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처음부터 명백한 것이지만, 완성상품의 판매에 필요한 기간은 동일한 생산부문의 개개의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극히 각이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각이한 생산부문에 투하된 자본량들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또한 사실상 동일한 생산분야에 투하된 총자본의 자립적인 부분에 불과한 각이한 자립적 자본들에 있어서도 극히 각이할 수 있는 것이다. 기타의 조건들이 동등하다면, 동일한 개별적 자본에 있어서의 판매기간은 시장 관계의 일반적 변동 또는 특수한 생산부문에 있어서의 그것의 변동에 따라서 변동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점에 이 이상 머무르지 않겠다. 다만 다음과 같은 단순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즉 각이한 생산부문에 투하된 자본들의 회전기간에 일반적으로 차

이를 낳게 하는 모든 사정은 그것들이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예컨대 어떤 자본가가 그의 경쟁자보다 더 빨리 판매할 기회를 얻을 경우, 한 자본가가 노동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다른 자본가보다 많이 채용할 경우 등등)에는, 동일한 생산부문에 존재하는 각이한 개개의 자본들의 회전상의 차이도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판매기간, 따라서 또 회전기간 일반에 차이를 낳게 하는 데 부단히 작용하는 한 원인은 상품이 판매되는 시장과 상품의 생산지와의 거리이다. 자본은 그것이 시장까지 여행하는 전 기간 동안 상품자본의 상태에 구속되어 있다. 상품이 주문에 의하여 생산되는 경우에는 인도의 순간까지 그러하며, 주문에 의하여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까지 여행하는 기간 이외에, 상품이 판매될 때까지 시장에 있는 기간이 더 첨가된다. 교통 및 운수수단의 개량은 상품의 이동기간을 절대적으로는 단축시키지만, 그러나 각이한 상품자본의 유통기간 또는 심지어 동일한 상품자본의 각이한 부분들—각이한 시장으로 이동하는—의 유통기간상의, 이동으로부터 나오는 상대적 차이를 폐절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개량된 범선이나 기선은 여행을 단축시키는데 항구가 가깝든 멀든 마찬가지로 단축시킨다. 상대적 차이는 흔히 감소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의연히 남는다. 그러나 운수 및 교통수단의 발전의 결과 상대적 차이는 자연적 거리에는 상응하지 않게 변화할 수 있다. 예컨대 생산지로부터 국내의 주요 인구중심지로 통하는 철도는 국내의 보다 가까우며, 철도가 통하지 않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자연적으로는 더 먼 지점까지의 거리에 비하여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대판매 시장으로부터 생산지까지의 상대적 거리 자체도 변화될 수 있으니, 이 사실에 의하여 운수 및 교통수단의 변화에 따른 구생산중심지의 몰락과 신생산중심지의 융성이 설명된다(이밖에 또 장거리에 있어서는 단거리에 있어서보다 운수비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염가하다는 사정이 있다). 운수수단의 발전과 동시에 공간운동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 공간적 거리가 시간적으로 단축될 뿐만이 아니다. 교통수단의 양이 증가하고 그리하여 예컨대 많은 배가 동시에 동일한 항구를 향하여 출발하며 또는 몇 개의 열차가 동시에 동일한 두 지점간의 각이한 선로를 달리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컨대 1주일 중에 연일 화물선이 리버풀로부터 뉴욕을 향하여 항행하며 또는 동일한 날의 각이한 시간에 화물열차가 맨체스

터로부터 런던을 향하여 달린다. 이 마지막 사정으로 말미암아 절대적 속도—따라서 유통기간의 해당하는 부분—가 운수수단의 수송능력이 주어진 경우에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연속적인 상품량이 현실적으로 발송될 때까지 대량으로 잠세적 상품자본으로서 퇴적되지 않고, 연속적인 보다 짧은 기간에 발송되며 그리하여 연속적으로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환류도 또한 보다 짧은 연속적인 기간들에 배분되며 그리하여 한 부분이 상품자본으로서 유통하고 있을 때에 다른 부분은 부단히 화폐자본으로 전화되어 있다. 몇 개의 연속적인 기간들로의, 환류의 이 배분에 의하여 총유통기간 따라서 또 회전이 단축된다. 일방으로는 생산지가 생산을 더 많이 하고 보다 더 큰 생산중심지로 되는 정도에 따라서, 우선 운수수단의 기능의 빈도(頻度) 예컨대 철도의 열차수가 다 소간에 증대되는바, 기존 판매시장의 방향으로 따라서 또 대생산 및 인구중심지, 수출항 등등을 향해서 증대된다. 그러나 타방으로는 거꾸로 교통이 이와같이 특별히 용이하게 되고 또 그 때문에 자본의 회전(이것이 유통기간에 의하여 제약되는 한에 있어서)이 촉진되는 결과, 한 편으로는 생산중심지와 다른 편으로는 그것의 시장지의 집중이 촉진되게 된다. 소여의 지점들로의 대량의 인구 및 자본의 집중이 이와같이 촉진됨에 따라, 이 대량의 자본의 소수자의 수중으로의 집중도 또한 증대된다. 동시에 교통수단의 변동에 따른 상대적 위치의 변동의 결과로 생산지 및 시장지의 이동 및 위치변환이 다시 일어난다. 과거에는 국도(國道) 또는 운하의 연선에 위치함으로써 특수한 위치상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던 생산지가 이제는 비교적 드문드문 열차가 통할 따름인 유일한 지선의 연변에 있는데, 종래에는 주요 교통로로부터 전혀 떨어져 있던 다른 장소가 이제는 여러 개 철도의 교차점에 놓여 있다. 둘째 장소는 융성하고 첫째 장소는 쇠퇴한다. 따라서 운수수단의 변화에 의하여 상품의 유통기간, 매매의 기회 등등에 있어서 장소적 차이가 생기며 또는 기존의 장소적 차이가 달리 배분된다. 자본의 회전에 대한 이 사정의 중요성은 각 지방의 상공업 대표자들과 철도 경영자들간의 논쟁을 보면 알 수 있다(예컨대 위에서 인용한 철도위원회의 청서를 참조하라).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양조업과 같이 생산물의 성질상 주로 지방적 판로에 의거하는 모든 생산부문은 주요 인구중심지에서 최대범위의 발전을 보게 된다. 이 경우에는 여러 생산 제 조건—건축 기지 등등—의 가격이

등귀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자본의 보다 급속한 회전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상쇄된다.

일방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진보에 따라 운수 및 교통수단의 발전이 소여의 상품량의 유통기간을 단축시킨다면 이 동일한 진보와 그리고 운수 및 교통수단의 발전에 따라 주어진 가능성은 거꾸로 점점 더 원거리의 시장,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시장을 상대로 사업할 필연성을 야기한다. 여행중에 있으며 원거리의 지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상품의 양은 비상히 증가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 중, 장기간 부단히 상품자본의 단계에, 유통기간내에 있는 부분도 또한 절대적 및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 부(富) 중, 직접적인 생산수단으로서 복무할 대신에 운수 및 교통수단과 그리고 그것의 운영에 필요한 고정자본 및 유동자본에 투하되는 부분도 또한 증가한다.

생산지로부터 판매지로의 상품의 여행의, 단순히 상대적인 길이만에 의하여서도 유통기간의 제1부분인 판매기간에 차이가 생길 뿐만 아니라 유통기간의 제2부분 즉 화폐가 생산자본의 제 요소로 재전화하는 기간인 구매기간에도 또한 차이가 생긴다. 예컨대 상품이 인도로 보내진다고 하자. 이에는 예컨대 4개월이 걸린다고 하자. 판매기간은 영(零)이라고, 즉 상품은 주문에 의하여 발송되고 인도될 때에 생산자의 대리인에게 지불된다고 하자. 화폐의 반송에도(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반송되는가 하는 것은 이 경우에 아무래도 좋다) 역시 4개월이 걸린다고 하자. 그러면 동일한 자본이 다시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따라서 또 동일한 조작이 갱신될 수 있기까지에는 모두 해서 8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초래된 회전상의 차이는 신용기간의 차이의 물질적 기초의 하나를 이룬다—예컨대 베네치아와 제노바에서의 해외무역이 일반적으로 본래의 신용제도의 한 원천을 이루고 있듯이.

“1847년 공황은 당시의 은행업과 상업으로 하여금 인도 및 중국의 관습(거기와 구라파 간의 수형의 유효기간에 대한)을 일부후(日附後) 10개월로부터 일람후(一覽後) 6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그 후 20년이 경과한 오늘에 와서는 항행이 빨라지고 전신이 설치됨에 따라 일람후 6개월로부터 일부후 4개월로—일람후 4개월로 이행하기 위한 제1보로서—더욱 단축할 필요가 있다. 캘커타로부터 희망봉을 돌아 런던으로 오는 범선의 항행에는 평균 90일

미만이 걸린다. 일람후 4개월이라는 관습은 대략 150일의 유효기간과 동등할 것이다. 일람후 6개월이라는 현행 관습은 대략 210일의 유효기간에 해당한다.”(『런던 이코노미스트』 1866년 6월 16일호). 그런데 “브라질의 관습은 아직도 의연 일람후 2개월과 3개월로 되어 있으며 안드워프로부터의(런던 향) 수형은 일람후 3개월로 발행되며 맨체스터와 브렛포드에서 런던 향으로 발행되는 것까지도 일람후 3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다. 그리하여 상인은 암암리의 합의에 의하여 자기의 상품을, 그것에 대하여 발행된 수형이 만기가 되기 이전에는 물론 아니지만 만기가 될 무렵에는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얻는다. 그러므로 인도(印渡) 수형의 관습은 과도한 것이 아니다. 인도의 생산물—런던에서는 대개 3개월의 지불기한으로 판매된다—은 판매를 위한 약간의 기간을 삽입한다면 5개월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실현될 수는 없고, 또 인도에서의 구입과 영국의 창고에서의 인도(引渡) 사이에는 평균 5개월이 더 걸린다. 그러면 10개월이라는 기간이 되는데 상품에 대하여 발행되는 수형의 지불기한은 7개월을 넘지 않고 있다”(동상, 1866년 6월 30일호). “1866년 7월 2일에, 주로 인도 및 중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 런던의 5대 은행과 파리의 수형 할인 은행은, 1867년 1월 1일 이후에는 동양에 있는 그들의 지점 은행 및 대리점은 일람후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수형만을 매매할 것이라고 통고하였다”(동상, 1866년 7월 7일호).

그러나 이 단축은 실패하였으며 다시 폐지되지 않으면 안되었다(그 후 스에즈 운하는 이 모든 것에 혁명을 일으켰다).

상품의 유통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판매시장에서의 가격변동의 위험이 증대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왜냐하면 가격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즉시에 지불되지 않는 경우에 유통기간상의 차이는—부분적으로는 동일한 생산부문의 각이한 개개의 자본간에서 개별적으로, 부분적으로는 각이한 생산부문간에서 관습의 차이에 의하여—매매에 있어서의 지불기한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 이 점은 신용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것에 이 이상 머물지 않겠다.

회전기간상의 차이는 또한 납품(納品)계약의 범위—이것은 또 자본주의적 생산의 범위 및 규모에 따라 증대한다—로부터도 발생한다.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로서의 납품계약은 시장 즉 유통분야에 속하는 한 조작이다. 따라서 이것으로부터 생기는 회전상의 차이는 유통분야로부터 발생하

는 것이나 그러나 그것은 생산분야에 직접 반작용한다. 그것도 일체의 지불기한 및 신용 제 관계를 도외시하더라도 즉 현금지불인 경우에도 그렇다. 예컨대 석탄, 면화, 방사 등등은 분할될 수 있는 생산물이다. 매일 일정한 양의 완성생산물이 생산된다. 그런데 만약 방적업자나 탄광주가 예컨대 4주간 또는 6주간 연속하는 노동일을 요하는 생산물량을 납품할 것을 맡았다고 하면, 그것은 자본이 전대되어 있는 기간에 관하여서는 마치 4주 또는 6주에 걸치는 연속적인 노동기간이 이 노동과정에 도입된 것과 전혀 동일한 것이다. 이 경우에 물론 주문받은 생산물의 전체량은 한꺼번에 납품되어야 하며, 또는 적어도 그것이 전부 납품된 후에야 비로소 지불된다고 전제한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고찰하면 매일 일정한 양의 완성생산물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이 완성된 양은 언제나 계약에 의하여 납품되어야 할 양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이 경우에 주문받은 상품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은 벌써 생산과정에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어쨌든 다만 잠세적인 자본으로서 참고에 놓여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유통기간의 제2부분인 구매기간 또는 자본이 화폐형태로부터 생산자본의 제 요소로 재전화되는 기간으로 넘어가자. 이 기간중에는 자본은 장단간의 기간 화폐자본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총전대자본의 일정한 부분은 부단히 화폐자본의 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비록 이 부분은 부단히 교체되는 요소들로서 구성되기는 하지만, 예컨대 일정한 기업에서 총전대자본 중 100파운드 스텔링 $\times n$ 이라는 금액이 화폐자본의 형태로 현존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리하여 이 100파운드 스텔링 $\times n$ 의 모든 구성부분은 부단히 생산자본으로 전화하지만 그러나 이 금액은 유통으로부터의, 즉 실현된 상품자본으로부터의 유입에 의하여 역시 부단히 새로 보충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대자본 가치의 일정한 부분은 부단히 화폐자본의 상태에, 즉 생산분야에가 아니라 유통분야에 속하는 형태로 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자본이 상품자본 형태에 구속되어 있는 기간이 시장이 멀기 때문에 연장된다는 것은 직접화폐의 환류를 지연시키며, 따라서 또 화폐자본으로부터 생산자본으로의 자본의 전화에 지장을 준다.

또 이미 본 바와 같이(제6장) 상품의 구입에 관하여 말한다면, 구매기간—원료 구입의 주요 원천지로부터 다소간에 먼 사정—은 비교적 장기간분의 원료를 구입하여 생산적 저장의 형태로 즉 잠재적(latent) 또는 잠재

적(potentiell) 생산자본의 형태로 소비할 수 있도록 보유해 둘 필요를 받게 하며, 따라서 그것은 생산의 규모가 동등하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전대되지 않으면 안되는 자본량과 그것이 전대되지 않으면 안되는 기간을 증대시킨다.

비교적 대량의 원료가 시장에 방출되는 제 기간—장단간의—도 각이한 기업부문들에서 동일한 작용을 한다. 예컨대 런던에서는 3개월마다 대규모의 양모 경매가 진행되는데 이것이 양모시장을 좌우한다. 그런데 면화 시장은 언제나 균등하지는 않지만 수확기로부터 수확기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연속적으로 갱신되고 있다. 이러한 기간은 이 원료들의 주요 구입기를 규정하며 또 특히 이러한 생산 제 요소에 대한 장단간의 기간의 전대를 조건짓는 투기적 구입에도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생산된 상품의 본성이 생산물을 투기적으로, 고의로, 장단간의 기간, 잠재적 상품자본의 형태로 억류하는 데 대하여 영향을 주는 것과 전혀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농업가도 역시 일정한 정도까지는 투기업자가 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렇기 때문에 사정 여하에 따라서는 생산물의 판매를 억류하지 않으면 안된다…계속하여 약간의 일반적 원칙…

“그러나 생산물의 판매에 있어서는 가장 주요한 것은 역시 사람이고, 생산물 자체이고, 장소이다. 농숙과 행운(!)에 의하여 충분한 경영자본을 얻고 있는 사람은 가격이 비상히 저렴한 경우에 자기가 거둔 수확물을 1년 동안이나 팔지 않고 두어도 비난할 바가 아닐 것이다. 반대로 자본이 없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투기심이 없는 사람은 현행 평균가격을 얻으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 또 생길 때마다 판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양모를 1년 이상 팔지 않고 둔다면 거의 언제나 손해를 볼 따름이지만, 곡물과 채종은 속성과 품질에 하등의 손해도 받지 않고 수년간 보존될 수 있다. 보통 그 가격이 단기간내에 심한 변동을 입는, 예컨대 채종, 호프, 산토끼꽃 등등과 같은 생산물은 그 가격이 생산가격보다 훨씬 이하일 경우에는 몇 해라도 팔지 않고 두는 것이 옳을 것이다. 비육가축과 같이 매일 유지비를 요하는 것들, 또는 과일, 감자 등등과 같이 썩을 염려가 있는 것들은 판매를 가장 주저하여서는 안될 것들이다. 일부 지방들에서는 생산물의 가격이 일정한 계절에는 평균하여 가장 낮으며 다른 계절에는 가장 높다. 예컨대 일부 지방들에선 성마틴 제(祭) 때의 곡물가격은 평균하여 크리스마스와 부활제 사이에 있어서보다 낮다. 또한 일부 지방들에서는 일부 생산물들이 일정한 시기가 아니고서는

잘 팔리지 않는다. 예컨대 다른 때에는 양모 거래가 보통 정제되는 지방들에서 양모 정기시(定期市)에서의 양모가 그러하다 운운”(키르호프, 동상서, 302페이지).

유통기간의 후반—화폐가 생산자본의 제 요소로 재전화되는—의 고찰에 있어서 문제인 것은 그 자체로서 고찰된 이 전화 자체만이 아니다. 즉 생산물이 판매되는 시장의 거리에 따라서 화폐가 환류하는 기간만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또 문제인 것은 전대자본의 일부가 부단히 화폐형태, 화폐자본의 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되는 그 범위이다.

일체의 투기를 도외시한다면 생산적 저장으로서 부단히 현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품의 구입범위는 이 저장의 갱신기간에 의존하며, 따라서 그 역시 시장관계에 의존하고, 그러므로 원료 등등이 다름에 따라 각이한 제 사정에 의존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때때로 비교적 대량의 화폐가 한꺼번에 전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화폐는 자본의 회전에 따라 때로는 급속히 때로는 완만하게, 그러나 언제나 일부분씩 환류한다. 그것의 일부 즉 노임으로 재전화되는 부분은 역시 부단히 단기간에 재지출된다. 그러나 다른 부분 즉 원료 등등으로 재전화되어야 할 부분은 구매를 위해서든 지불을 위해서든 예비фон드로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퇴적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화폐자본의 형태로 존재한다. 비록 그것이 이러한 화폐자본으로서 존재하는 범위는 변동하더라도.

우리는 다음 장에서 다른 제 사정—그것이 생산과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든 또는 유통과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든 간에—에 의해서도 전대자본의 일정한 부분이 이와같이 화폐형태로 현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기업에 필요한 자본의 일부는 부단히 화폐자본, 생산자본 및 상품자본의 세 형태를 번갈아 통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각이한 부분들이, 그 상대적 크기는 부단히 변동한다 하더라도 부단히 서로 나란히 이 형태들을 취한다는 사실을 경제학자들은 자주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경제학자들이 망각하는 것은 부단히 화폐자본으로서 현존하는 부분이다. 이 사정이야말로 부르쥬아 경제의 이해를 위하여 극히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실천에 있어서도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지만.

제15장 회전기간이 전대자본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

본장 및 다음 제16장에서는 회전기간이 자본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취급한다.

예컨대 9주간으로써 이루어지는 1노동기간의 생산물인 상품자본을 들어 보자. 생산물의 가치 중 고정자본의 평균적 마멸에 의하여 그것에 첨가되어 있는 부분과, 생산과정중에 그것에 첨가된 잉여가치를 당분간 도외시한다면, 이 생산물의 가치는 그것의 생산을 위하여 전대된 유동자본 즉 노임과 그리고 그것의 생산에 소비된 원료 및 보조재료의 가치와 동등하다. 이 가치는 900파운드 스텔링이며 따라서 매주의 지출은 100파운드 스텔링이라고 하자. 이 경우에 주기적 생산기간은 노동기간과 일치하고 따라서 9주간이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이 분할될 수 없는 생산물을 위한 1노동기간이라고 가정하든, 그렇지 않고 분할될 수 있는 생산물을 위한 연속적인 1노동기간이라고—다만 한꺼번에 시장에 제공되는 분할될 수 있는 생산물의 양이 9주간의 노동을 요하는 한에 있어서는—가정하든 그것은 이 경우에 아무래도 좋다. 유통기간은 3주간이라고 하자. 따라서 전 회전기간은 12주간이라고 하자. 9주간이 경과하면 전대된 생산자본은 상품자본으로 전화되어 있으나 그것은 이제는 3주간 동안 유통기간내에 체류한다. 따라서 새로운 생산기간은 제13주(週)의 초에 가서야 비로소 다시 개시될 수 있으며, 생산은 3주간 즉 전 회전기간의 1/4만큼 정지하게 될 것이다. 상품이 판매될 때까지 평균 3주간이 요구된다고 전제하든, 그렇지 않고 이 3주간이 시장의 거리 또는 판매된 상품의 지불기한에 의하여 제약된다고 전제하든, 이것 역시 아무래도 좋다. 생산은 매 3개월 중에 3주간, 즉 1년 중에 $4 \times 3 = 12$ 주간 = 3개월 = 연회전기간의 1/4 정지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이 연속적이고 또 매주 동일한 규모로 진행되려면 오직 두 가지 방식만이 가능하다.

그 하나는 생산의 규모가 축소되고 그리하여 900파운드 스텔링으로써 제1회전의 노동기간 및 유통기간중에 노동의 진행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는 제10주 초부터 즉 제1회전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2노동기간, 따라서 또 제2회전기간이 개시된다. 왜냐하면 회전기간은 12주간이고 노동기간은 9주간이기 때문이다. 900파운드 스텔링을 12주간에 배분한다면 매주 75파운드 스텔링으로 된다. 우선 명백한 것은 기업규모의 이와 같은 축소는 고정자본의 크기의 변동,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의 축소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다음에는 도대체 이와 같은 축소가 실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왜냐하면 각이한 기업에서 생산이 발전함에 따라 투자의 표준적 최저한이 생겨 그 이하로서는 개개의 기업은 경쟁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 표준적 최저한 자체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과 함께 부단히 증대되는 것이며 따라서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때그때에 주어지는 표준적 최저한과 부단히 확대되고 있는 표준적 최저한 사이에는 허다한 중간단계 즉 극히 각이한 정도의 투자를 허용하는 중간이 생긴다. 그 때문에 이 중간의 한계내에서는 역시 축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 축소의 한계는 그때그때의 표준적 최저한 자체이다. 생산의 고장, 시장의 과만, 원료의 등귀 등등의 경우에는 노동시간을 제한하여 예컨대 작업을 반일 동안만 수행함으로써 주어진 고정자본의 기초 위에서 유동자본의 표준적 지출의 축소가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번영기에는 부분적으로는 노동시간의 연장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는 또 노동강도의 강화에 의하여 주어진 고정자본의 기초 위에서 유동자본의 비상한 확대가 일어난다. 이와 같은 변동이 있을 것을 처음부터 타산하고 있는 기업들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상술한 수단에 의거하며, 부분적으로는 예컨대 철도에서의 예비기관차 등등과 같은 예비 고정자본의 충용과 결부된, 보다 많은 수의 노동자의 사용에 의지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정상적인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만큼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변동은 고려에 넣지 않기로 한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 생산을 연속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동일한 유동자본의 지출이 보다 장기간에 즉 9주간 대신에 12주간에 배분되어 있다. 따라서 소여의 매 기간에는 축소된 생산자본이 기능한다. 생산자본의 유동부분은 100파운드 스텔링으로부터 75파운드 스텔링으로, 즉 4분의 1만큼 축소되어 있다. 9주간이라는 노동기간중에 기능하는 생산자본이 축소

되는 총액은 $25 \times 9 = 225$ 파운드 스텔링 즉 900파운드 스텔링의 4분의 1이다. 그런데 회전기간에 대한 유통기간의 비율도 역시 $3/12 = 1/4$ 이다. 그러므로 상품자본으로 전화된 생산자본의 유통기간중에 생산이 중단되지 않으려면, 생산이 연속적으로 매주 계속되려면, 그리고 이를 위하여 특별한 유동자본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이것은 오직 생산을 감소시킴으로써만, 기능하는 생산자본의 유동적 구성부분을 축소시킴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이 유통기간중의 생산을 위하여 유리된 유동자본 부분의, 전대된 총유동자본에 대한 비례는 유통기간의 회전기간에 대한 비례와 같다. 위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이것은 노동과정이 매주 동일한 규모로 수행되는 생산부문, 따라서 농업에서와 같이 각이한 노동기간에 각이한 양의 자본이 투하되어서는 안되는 생산부문에 대해서만 타당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기업의 성질상 생산의 규모, 따라서 또 매주 전대되는 유동자본의 크기를 축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생산의 연속성은 오직 유동자본의 추가—상술한 예에 있어서라면 300파운드 스텔링의 1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12주간이라는 회전기간중에는 1,200파운드 스텔링이 순차로 전대될 것이고 300파운드 스텔링은 그것의 4분의 1에 해당하는바, 이것은 3주간이 12주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9주간이라는 노동기간 후에는 9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자본가치는 생산자본의 형태로부터 상품자본의 형태로 전화되어 있다. 이 자본가치의 노동기간은 끝났으나 그러나 이 기간은 동일한 자본으로써는 갱신될 수 없다. 이 자본은 그것이 유통분야에 체류하고 상품자본으로서 기능하는 3주간은, 생산과정에 대하여는 마치도 그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상태에 있다. 여기서는 일체의 신용관계를 도외시하며, 따라서 자본가는 자기 자신의 자본만을 가지고 경영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제1 노동기간에 전대된 자본이 생산과정을 끝마친 후에 3주 동안 유통과정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3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추가적으로 투하된 자본이 기능하며 그리하여 생산의 연속성은 중단되지 않는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최초에 전대된 자본 900파운드 스텔링의 노동기간은 9주간 후면 끝나고 있으나 그러나 이 자본은 3주간이 더 경과하기 전에는, 즉 제13주 초가 아니면 환류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노동기간은 추가

자본 300파운드 스텔링을 가지고 즉시 개시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생산의 연속성은 유지되어 있다.

둘째로, 최초의 자본 900파운드 스텔링의 기능과, 9주간이라는 제1노동기간의 종말에 가서 새로이 추가된 자본 300파운드 스텔링—제1노동기간이 끝나자 중단 없이 제2노동기간을 개시하는 자본—의 기능과는 제1회전기간에는 호상 확연히 구별되어 있으며, 또는 적어도 구별될 수 있는 것인데 제2회전기간 중에는 그것들은 호상 교착된다.

사태를 더욱 명료하게 표시하여 보자.

제1회전기간은 12주간, 제1노동기간은 9주간, 이에 전대된 자본의 회전은 제13주 초에 끝났다. 최종 3주간에는 추가자본 300파운드 스텔링이 기능하며 9주간이라는 제2노동기간을 개시한다.

제2회전기간, 제13주 초에는 900파운드 스텔링이 환류하고 있으며 새로운 회전을 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제2노동기간은 이미 추가된 300파운드 스텔링에 의하여 제10주에 개시되어 있다. 제13주 초에는 동일한 300파운드 스텔링에 의하여 이미 노동기간의 3분의 1이 끝나고 있으며 300파운드 스텔링은 생산자본으로부터 생산물로 전화되고 있다. 제2노동기간을 끝마치는 데는 6주간만 더 필요할 따름이므로 제2노동기간의 생산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9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환류한 자본의 3의 2 즉 600파운드 스텔링에 불과하다. 최초의 900파운드 스텔링 중에서 300파운드 스텔링이 유리되어 추가자본 300파운드 스텔링이 제1노동기간 중에 논 것과 동일한 역할을 논다. 제2회전기간의 제6주 말에 가서는 제2노동기간이 끝나고 있다. 이 노동기간에 투하된 자본 900파운드 스텔링은 3주간 후에 즉 12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2회전기간의 제9주 말에 환류한다. 이 자본의 유통기간인 3주간에는 유리되었던 자본 300파운드 스텔링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제2회전기간의 제7주 즉 그 연도의 제19주에 가서 자본 900파운드 스텔링의 제3노동기간이 개시된다.

제3회전기간, 제2회전기간의 제9주 말에 900파운드 스텔링이 새로 환류한다. 그러나 제3노동기간은 벌써 선행 회전기간의 제7주에 개시하였으며 이미 6주간을 경과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될 기간은 3주간밖에 남지 않는다. 따라서 환류한 900파운드 스텔링 중에서 생산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300파운드 스텔링에 불과하다. 제4노동기간은 이 회전기간의 나머지 6주간을 차지한다. 그리하여 그 연도의 제37주부터 제4회전기간과

제5노동기간이 동시에 개시된다.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하여 노동기간이 5주간, 유통기간이 5주간, 따라서 회전기간이 10주간이고, 1년을 50주라고 보고 매주의 투자를 100파운드 스텔링이라고 가정하자. 따라서 노동기간은 500파운드 스텔링의 유통자본을 요구하며 유통기간은 새로운 500파운드 스텔링의 추가자본을 요구한다. 이 경우에는 노동기간과 회전기간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제1노동기간	제1~5주 (5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	제10주 말에 환류
제2노동기간	제6~10주 (5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	제15주 말에 환류
제3노동기간	제11~15주 (5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	제20주 말에 환류
제4노동기간	제16~20주 (5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	제25주 말에 환류
제5노동기간	제21~25주 (5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	제30주 말에 환류

동등

만약 유통기간이 영(零)이며 따라서 회전기간이 노동기간과 동등하다고 한다면 1년간의 회전수는 노동기간의 수와 동등하다. 따라서 노동기간이 5주간인 경우에는 1년간의 회전수는 $50\text{주}/5\text{주}=10$ 으로 될 것이며 회전한 자본의 가치는 $500 \times 10 = 5,000$ 으로 될 것이다. 유통기간을 5주간이라고 가정한 상기 표에서도, 매년 생산되는 상품의 가치는 역시 5,000파운드 스텔링이나, 그중 $1/10 = 500$ 파운드 스텔링은 언제나 상품자본의 모습으로 있으며 5주간 후에야 비로소 환류한다. 이 경우에는 제10노동기간(제46~50노동 주)의 생산물은 연도 말에 회전기간을 절반밖에 끝마치지 않고 있으니, 왜냐하면 그것의 유통기간은 다음 연도의 최초의 5주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노동기간이 6주간, 유통기간이 3주간, 노동과정에 있어서의 매주 전대액이 100파운드 스텔링인 제3의 예를 들어 보자.

제1노동기간 : 제1~6주. 제6주 말에는 6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자본. 제9주 말에 환류.

제2노동기간 : 제7~12주. 제7~9주간에 300파운드 스텔링의 추가자본이 전대된다. 제9주 말에는 600파운드 스텔링의 환류. 그중 300파운드 스텔링은 제10~12주간에 전대된다. 따라서 제12주 말에는 현금으로 300파운드 스텔링, 상품자본으로 600파운드 스텔링이 현존하는데, 이것은 제15주

말에 환류한다.

제3노동기간 : 제13~18주. 제13~15주간에 상기 300파운드 스텔링이 전대되며 그 다음에 600파운드 스텔링이 환류하는데 그중 300파운드 스텔링은 제16~18주간에 전대된다. 제18주 말에는 유리된 300파운드 스텔링이 현금으로, 600파운드 스텔링이 상품자본으로 현존하는데 이것은 제21주 말에 환류한다(이 경우의 보다 상세한 설명은 이하의 제2절을 참조하라).

이상의 세 개 예를 비교하여 보면 첫째로 발견되는 것은, 5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 I 과 역시 500파운드 스텔링의 추가자본 II 의 순차적인 교대가 수행되어 이 두 자본 부분이 서로 따로따로 운동하는 것은 제2의 예에 있어서만이며, 그것도 제2의 예에서는 노동기간과 유통기간이 각각 회전기간의 동등한 반복이라고 하는 전혀 예외적인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경우에는 회전기간중의 양기간간에 여하한 차이가 존재하든 간에 이 두 자본의 운동은 제1 및 제3의 예에 있어서와 같이 벌써 제2회전기간으로부터 호상 교착된다. 이 경우에 추가자본 II 는 자본 I 의 일부와 함께, 제2회전기간에 기능하는 자본을 형성하고 한편 자본 I 의 나머지 부분은 자본 II 의 최초의 기능을 위하여 유리된다. 이 경우에 상품자본의 유통기간중에 작용하는 자본은 최초에 이 목적을 위하여 전대된 자본 II 와 동일한 것은 아니나 그 가치는 동등한 것으로 총전대자본의 동일한 부분을 이룬다.

둘째로, 노동기간중에 기능하여 온 자본은 유통기간중에는 유평상태에 놓여진다. 제2의 예에서 자본은 5주간의 노동기간중에는 유평상태에 놓여진다. 따라서 이 경우에 1년간에 자본 I 이 유평상태에 놓여지는 총기간은 반년에 달한다. 그리하여 이 기간중에 추가자본 II 가 등장하는데 이 추가자본 자체도 또 제2의 예에서는 반년 동안 유평상태에 놓여진다. 그러나 유평기간중에 생산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함에 필요한 추가자본은 1년 동안의 유평기간들의 총범위 즉 합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회전기간에 대한 유평기간이 비율에 의해서만 규정된다(여기서는 물론 모든 회전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진행된다고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제2의 예에서는 필요한 추가자본은 500파운드 스텔링이고 2,500파운드 스텔링은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가자본은 최초에 전대되는 자본과 마찬가지로 회전에 들어가며, 따라서 또 이 후자와 전혀 마찬가지로 자체의 분량을 자체의 회전수로써 보충한다는 데서 나온다.

세째로, 생산기간이 노동기간보다 더 길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기에서 고찰되고 있는 제 사정에는 하등의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 때문에 총회전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물론이나, 그러나 회전이 이렇게 연장된다고 해서 노동과정을 위하여 추가자본이 요구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추가자본은 유통기간으로 말미암아 노동과정에 형성되는 빈틈을 채운다는 목적을 가졌을 뿐이다. 따라서 그것은 유통기간에서 발생하는 교란들로부터 생산을 보호하기만 하면 된다. 생산에 고유한 제 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교란들은 여기에서 고찰할 것이 아닌 다른 방식에 의하여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작업이 주문에 의해서 단속(斷續)적으로만 진행되며, 따라서 노동기간과 노동기간간에 중단이 생길 수 있는 기업이 있다. 이러한 기업에서는 그 한에 있어서 추가자본의 필요가 없어진다. 타방으로 계절노동의 대다수의 경우에도 자본의 환류기간에 일정한 한계가 주어지고 있다. 동일한 노동이 동일한 자본으로써 다음해에 갱신된다는 것은 그 사이에 이 자본의 유통기간이 끝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와는 반대로 유통기간은 한 생산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생산기간까지의 중간기간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자본은 이 중간기간에 다른 방면에 충용되지 않는 한 유휴상태에 놓여진다.

네째로, 노동기간에 전대되는 자본 예컨대 상기 제3의 예에서의 600파운드 스틸링은 부분적으로는 원료 및 보조재료, 생산적 저장 즉 불변적 유동자본에 투하되며, 부분적으로는 가변적 유동자본 즉 노동 자체에 대한 지불에 투하된다. 불변적 유동자본에 투하되는 부분이 생산적 저장의 형태로 존재하는 기간은 동일하지 않다. 예컨대 원료는 전체 노동기간 놓여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석탄은 매 2주일만에만 납품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신용은 아직 전제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 부분은 그것이 생산적 저장의 형태로 마음대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화폐형태로 마음대로 처리될 수 있어서 필요에 따라 생산적 저장으로 전화될 수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6주일 동안에 전대되는 불변적 유동자본의 가치 크기에는 하등의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위한 화폐저장 즉 혼란을 제거하기 위한 본래의 예비фон드를 도외시한다면 — 노임은 보다 단기간으로 대개는 매주 지불된다. 따라서 자본가가 노동자로 하여금 그의 노동을 보다 장기간에 걸쳐 자기에게 전대하지 않을 수 없게 하지 않는 한, 노임을 위해서 필

요한 자본은 화폐형태로 현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자본이 환류될 때 그 일부는 생산적 저장으로 전화될 수 있는데 다른 일부는 노동에 대한 지불을 위한 화폐형태로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추가자본은 최초의 자본과 전혀 마찬가지로 분할된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자본 I 과 구별된다. 즉(신용관계는 도외시하고) 추가자본은 그 자체의 노동기간에 마음대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기 위해서는 자본 I 의 제1노동기간—그것이 들어가지 않는—의 전체 지속중에 이미 전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기간중에 벌써 추가자본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전 회전기간을 위하여 전대되어 있는 불변적 유동자본으로 전화될 수 있다. 추가자본이 어느 정도로 이 형태를 취하는가, 또는 그것이 이 전화가 필요하게 될 때까지 어느 정도로 추가적 화폐자본의 형태로 머무르는가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일정한 생산부문의 특수한 생산 제 조건에 의존하며, 부분적으로는 지방적 제 사정에, 부분적으로는 또 원료 등등의 가격변동에 의존한다. 사회적 총자본을 고찰하여 보면 이러한 추가자본의 다소간에 현저한 부분은 언제나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화폐자본의 상태에 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 II 중에서 노임으로 전대되는 부분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비교적 짧은 노동기간이 경과하여 지불되는 정도에 따라 다만, 점차적으로 노동력으로 전화된다. 따라서 자본 II 의 이 부분은 그것이 노동력으로의 전화에 의하여 생산자본의 기능을 하게 될 때까지 노동기간의 전체 지속중 화폐자본의 형태로 현존한다.

따라서 자본 I 의 유통기간을 생산기간으로 전화시킴에 필요한 추가자본의 이러한 인입은 다만 전대자본의 크기와 그리고 총자본이 필연적으로 전대되는 기간의 길이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특수하게는 전대자본 중 화폐저장으로서 존재하며 따라서 화폐자본의 상태에 있으며 잠재적 화폐자본의 형태를 취하는 부분도 증대시킨다.

유통기간에 의하여 필요하게 되는 자본의, 두 부분 즉 제1노동기간을 위한 자본과 유통기간중에 그것을 대신하는 자본으로의 분할이 투하자본의 증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규모의 축소에 의해서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상과 같은 것은—생산적 저장의 형태로서의 전대에 관해서도 화폐저장의 형태로서의 전대에 관해서도—마찬가지로 일어난다. 이 경우에 생산 규모에 비하여 화폐형태로 구속되는 자본의 증대가 오히려 더 앞선다.

최초의 생산자본과 추가자본으로의, 자본의 이러한 분할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노동기간들의 중단없는 연속성이 달성되며, 전대자본 중 크기가 동일한 부분의 생산자본으로서의 부단한 기능이 달성된다.

상기 제2의 예를 주시하여 보자. 부단히 생산과정에 있는 자본은 500파운드 스텔링이다. 노동기간은 5주간이므로 이 자본은 50주간(1년으로서 가정된)에는 10회 기능한다. 따라서 또 그 생산물은 잉여가치를 도외시킨다면 $500 \times 10 = 5,000$ 파운드 스텔링으로 된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또 중단없이 생산과정에서 기능하는 자본—5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가치의—의 관점에서 보면 유통기간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 같다. 회전기간은 노동기간과 일치하며 유통기간은 영(零)과 같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만약 자본 500파운드 스텔링이 그것의 생산활동을 5주간이라는 유통기간 때문에 규칙적으로 방해되어 그것이 10주간이라는 전 회전기간의 종료 후에야 비로소 생산활동을 다시 할 수 있다면, 1년의 50주간 중에는 각각 10주간에 걸치는 회전이 5회 진행될 것이다. 그 중에는 각각 5주간에 걸치는 5개의 생산기간, 따라서 도합 25생산주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생산물은 $500 \times 5 = 2,500$ 파운드 스텔링일 것이며, 그밖에 각각 5주간에 걸치는 5개의 유통기간, 따라서 역시 25주간의 총유통기간이 포함될 것이다. 이 경우에 5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이 1년 동안에 5회 회전하였다고 말한다면 이 자본 500파운드 스텔링이 매개 회전기간의 반 분 동안에는 전혀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총화하면 이 자본은 반년 동안만 기능하고 다른 반년 동안은 전혀 기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지극히 명백하다.

우리는 예에서는 이 5개의 유통기간 지속중에 추가자본 500파운드 스텔링이 들어오며 그 때문에 회전되는 것은 2,500파운드 스텔링으로부터 5,000파운드 스텔링으로 제고된다. 그러나 전대자본도 이제는 500파운드 스텔링이 아니라 1,000파운드 스텔링이다. 5,000을 1,000으로 나누면 5이다. 즉 회전은 10회가 아니고 5회이다. 현실에 있어서도 이렇게 계산된다. 그러나 그때에 1,0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이 1년 동안에 5회 회전하였다고 말함으로써 자본가의 공허한 머리속에서는 유통기간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고 마치 이 자본의 5개의 순차적인 회전중에 부단히 생산과정에서 기능하였다는 듯한 혼란된 표상이 형성된다. 그러나 우리가 1,0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이 5회 회전하였다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생산기간과 마찬가지로

지로 유통기간도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만약 1,000파운드 스텔링이 현실적으로 생산과정에서 부단히 활동하였다고 하면 생산물은 우리의 전제하에서는 5,000파운드 스텔링이 아니라 10,000파운드 스텔링으로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생산과정에 1,000파운드 스텔링이 부단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결국 2,000파운드 스텔링이 전대되어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경제학자들에게서는 일반적으로 회전기구에 관련하여 명확한 아무 것도 찾아볼 수 없는데, 그들은 생산이 중단없이 진행되기 위하여 사실상 언제나 다만 산업자본의 일부만이 생산과정에 종사할 수 있다는 이 주요계기를 항상 간과하고 있다. 한 부분이 생산기간중에 있을 때 다른 일부는 항상 유통기간중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부분은 다른 부분이 상품자본 또는 화폐의 자본의 형태로 고유한 의미에서의 생산으로부터 끌어내어져 있는 조건하에서만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것이 간과됨으로써 결국 일반적으로 화폐자본의 의의와 역할이 간과된다.

이제 우리는 회전기간의 두 부분 — 노동기간과 유통기간 — 이 호상 동등한가 또는 노동기간이 유통기간보다 큰가 작은가 하는 데 따라서 회전상에 여하한 차이가 생기는가 하는 것과, 또 다음에는 이 사실이 화폐자본의 형태로서의 자본의 구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매주 전대되어야 할 자본은 어느 경우에도 100파운드 스텔링이며 회전기간은 9주간이며 따라서 매개 회전기간에 전대되어야 할 자본은 900파운드 스텔링이라고 가정하자.

제1절 노동기간과 유통기간이 동등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현실에 있어서는 우연적 예외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연구의 출발점으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제 관계가 가장 단순하고 가장 명료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두 자본(제1노동기간에 전대되는 자본 I과 자본 I의 유통기간중에 기능하는 추가자본 II)은 그것들의 운동에 있어서 교착됨이 없이 교대한다. 따라서 제1기간을 제외한다면 이 두 자본은 각각 그 자체의 회전기

간을 위해서만 전대되어 있다. 회전기간은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9주간, 따라서 노동기간과 유통기간은 각각 4½주간이라고 하자. 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연도(年度) 도식이 얻어진다.

〈표 I〉

자본 I

회전기간(주)	노동기간(주)	전 대 (파운드스털링)	유통기간(주)
I. 제 1~ 9	제1~4½	450	제 4½~ 9
II. 제10~18	제10~13½	450	제13½~18
III. 제19~27	제19~22½	450	제22½~27
IV. 제28~36	제28~31½	450	제31½~36
V. 제37~45	제37~40½	450	제40½~45
VI. 제46~(54)	제46~49½	450	제49½~54 ³¹⁾

자본 II

회전기간(주)	노동기간(주)	전 대 (파운드스털링)	유통기간(주)
I. 제 4½~13½	제 4½~9	450	제10~13½
II. 제13½~22½	제13½~18	450	제19~22½
III. 제22½~31½	제22½~27	450	제28~31½
IV. 제31½~40½	제31½~36	450	제37~40½
V. 제40½~49½	제40½~45	450	제46~49½
VI. 제49½~(58½)	제49½~(54)	450	제(55~58½)

여기서 우리가 1년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51주간에 자본 I 은 6개의 운

31). 제2회전 연도에 속하는 주는 괄호 안에 넣어주고 있다.

전한 노동기간을 끝내고 $450 \times 6 = 2,700$ 파운드 스텔링의 상품을 생산하였다. 그밖에 자본 II는 연도의 마지막 1½주(제50주의 절반으로부터 제51주의 마지막까지)에 150파운드 스텔링만큼을 더 생산하였다. 그리하여 51주간의 총생산물은 5,100파운드 스텔링에 해당한다. 따라서 잉여가치—이것은 노동기간중에만 생산된다—의 직접적 생산에 관하여 말한다면 총자본 900파운드 스텔링은 5총회 회전한 것으로 될 것이다($900 \times 5\text{총} = 5,100$ 파운드 스텔링). 그러나 현실적 회전을 고찰하면 자본 I은 5총회 회전하였으니, 왜냐하면 제51주 말에 아직도 제6회전기간중의 3주를 더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즉 $450 \times 5\text{총} = 2,550$ 파운드 스텔링. 또 자본 II는 5½회 회전하였으니, 왜냐하면 그것은 제6회전기간중 1½주를 겨우 끝냈으며 따라서 나머지 7½주는 다음 연도에 속하기 때문이다—즉 $450 \times 5\frac{1}{2} = 2,325$. 그리하여 현실적인 총회전액은 4,875파운드 스텔링이다.

자본 I과 자본 II를 호상 완전히 자립적인 두 자본으로서 고찰하여 보자. 이 두 자본은 그것들의 운동에 있어서 완전히 자립적이다. 그것들의 운동이 서로 보충하는 것은 다만 그것들의 노동기간과 유통기간이 서로 직접 교대하기 때문이다. 이 두 자본은 각이한 자본가들에 속하는 완전히 독립한 두 자본으로서 고찰될 수 있다.

자본 I은 5개의 온전한 회전기간과 제6회전기간의 3분의 2를 경과하였다. 연도 말에 가서 그것은 정상적인 실현을 위해서 아직 3주간이 더 요구되는 상품자본 형태로 있다. 이 기간중에는 그것은 생산과정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상품자본으로서 기능 즉 유통한다. 그것은 그 마지막 회전기간 중 2/3를 경과하였을 따름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자본 I은 2/3회만 회전하였으며, 그것의 총가치의 2/3만이 온전한 1회전을 경과하였다고, 우리는 말한다. 450파운드 스텔링은 9주일 동안에 그것의 회전을 경과하며, 따라서 300파운드 스텔링은 6주일 동안에 그것의 회전을 경과한다고, 이와 같은 표현방식은 회전기간의 특수하게 각이한 두 구성부분간의 유기적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다. 전대자본 450파운드 스텔링이 5총회의 회전을 하였다고 하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이 자본이 5회의 완전한 회전과 그리고 제6회전의 2/3만을 경과하였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는 반대로 회전한 자본이 전대자본의 5총배이고 따라서 상기 예에서는 $450\text{파운드 스텔링} \times 5\text{총} = 2,550\text{파운드 스텔링}$ 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이 자본 450파운드 스텔링이 다른 자본 450파운드 스텔링에

의하여 보충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자본의 일부는 생산과정에 있고 다른 일부는 유통과정에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옳은 점이 있다. 만약 회전기간을 회전자본의 양으로써 표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현존 가치(사실상은 완성생산물)의 양으로써만 표현될 수 있다. 전대자본이 생산과정을 새로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는 사정은 전대자본의 일부만이 생산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에 의하여, 또는 자본이 연속적인 생산의 상태에 있으려면 생산기간 대 유통기간의 호상 비례에 따라서 이 자본이 부단히 생산기간중에 있을 한 부분과, 부단히 유통기간중에 있을 다른 부분으로 분할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에 의하여 표현된다. 이것은 부단히 기능하는 생산자본의 양은 회전기간에 대한 유통기간의 비례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하는 동일한 법칙이다.

자본 II 중 150파운드 스텔링은 우리가 여기에서 연도 말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제51주 말에는 미완성 생산물의 생산에 전대되어 있다. 또 일부분은 유동적 불변자본—원료 등등—의 형태로, 즉 그것이 생산자본으로서 생산과정에서 기능할 수 있는 형태로 있다. 그러나 제3부분은 화폐형태로 있다. 즉 적어도 노동기간의 남은 부분(3주간)을 위한 노임액—그러나 이것은 매주 말에 가서야 비로소 지불된—만은 그러하다. 이 자본부분은 새 해의, 따라서 새로운 회전순환의 초기에는 생산자본의 형태로 있지 않고 생산과정에 들어갈 수 없는 화폐자본의 형태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회전이 개시되자마자 유동적 가변자본 즉 산 노동력은 벌써 생산과정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현상은 노동력은 물론 노동기간의 초기에 예컨대 1주마다 구매되고 소비되지만 그러나 주말에 가서야 비로소 지불된다는 데 유래한다. 이 경우에 화폐는 지불수단으로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일방으로는 화폐로서 아직 자본가의 수중에 있는데 타방으로는 또 그것이 전화되는 상품인 노동력은 벌써 생산과정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동일한 자본가치가 이중으로 나타난다. 다만 노동기간만을 고찰한다면

자본 I 은 $450 \times 6 = 2,700$ 파운드 스텔링을 생산하고

자본 II 는 $450 \times 5\frac{1}{3} = 2,400$ 파운드 스텔링을 생산한다.

따라서 합계…… $900 \times 5\frac{2}{3} = 5,100$ 파운드 스텔링이다.

즉 총전대자본 900파운드 스텔링은 1년에 5총회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하였다. 서로 번갈아 450파운드 스텔링은 부단히 생산과정에서 기능하고 450파운드 스텔링은 부단히 유통과정에서 기능하든, 그렇지 않고 900파운드 스텔링이 4½주간에는 생산과정에서 기능하고 다음 4½주간에는 유통과정에서 기능하든 임여가치의 생산에 있어서는 매한가지이다.

이와 반대로 회전기간을 고찰한다면 다음과 같다.

자본 I $450 \times 5\text{총} = 2,550\text{파운드 스텔링}$

자본 II $450 \times 5\frac{1}{2} = 2,325\text{파운드 스텔링}$

따라서 총자본의 회전액…… $900 \times 5 \frac{5}{12} = 4,875\text{파운드 스텔링}$

이것은 총자본의 회전수가 자본 I과 자본 II의 회전액을 자본 I과 자본 II의 합계로 나눈 것과 동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것은 가령 자본 I과 자본 II가 호상 자립적이라 하더라도 이 두 자본은 동일한 생산분야에 전대된 사회적 자본의 각 이한 자립적인, 부분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생산분야내의 사회적 자본이 오직 자본 I과 자본 II로써만 구성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동일한 사적 자본의 두 구성부분인 I과 II에 대해서 타당한 동일한 계산은 이 분야의 사회적 자본의 회전에 대해서도 타당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말한다면 사회적 총자본 중 특수한 생산분야에 투하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사회적 총자본의 회전수는 각이한 생산분야들에서 회전한 자본의 총액을 이 생산분야들에 전대된 자본의 총액으로 나눈 것과 동등하다.

다음으로 또 지적해야 할 것은 이 경우에 동일한 사적 기업에서 자본 I과 II가 엄밀하게 말하면 각이한 회전년도를 가지고 있듯이(왜냐하면 자본 II의 회전순환은 자본 I의 회전순환보다 4½주간 후에 개시되며 따라서 자본 I의 회전년도는 자본 II의 회전년도보다 4½주 더 빨리 끝나기 때문이다), 동일한 생산분야의 각이한 사적 자본들도 역시 전혀 각이한 시기에 영업을 개시하며, 따라서 또 연도내의 각이한 시기에 자체의 연(年) 회전을 끝마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자본 I과 II에 대하여 적용할 동일한 평균계산은 이 경우에도 사회적 자본의 각이한 자립적 부분들의 회전년도를 하나의 통일적 회전년도에 귀착시킴에 충분하다.

제2절 노동기간이 유통기간보다 큰 경우

자본 I 과 II 의 노동기간과 회전기간은 서로 교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착된다. 이 경우에는 자본의 유리가 동시에 생기는데 이것은 이상에서 고찰된 경우에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1) 총전대자본의 노동기간수는 양전대자본 부분의 연 생산물의 가치총액을 총전대자본으로 나눈 것과 동등하다는 것 2) 총자본의 회전수는 양회전액을 양전대자본의 총액으로 제한 것과 동등하다는 것은 상기 사실에 의해서 하등의 변화도 받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역시 우리는 양자본 부분을 마치도 그것들이 서로 완전히 독립한 회전운동을 수행하는 것처럼 고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매주 100파운드 스텔링이 노동과정에 전대된다고 가정하자. 노동기간은 6주간이며 따라서 그것은 매번 600파운드 스텔링의 전대(자본 I)를 요한다고 하자. 유통기간은 3주간이며 따라서 회전기간은 상기 경우와 마찬가지로 9주간이라고 하자. 3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 II는 3주간에 걸치는, 자본 I의 유통기간 중에 들어온다고 하자. 이 양자본을 서로 독립한 자본으로서 고찰한다면 연 회전의 도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표 II〉

자본 I, 600파운드 스텔링

회전기간(주)	노동기간(주)	전 대 (파운드스텔링)	유통기간(주)
I. 제 1~9	제 1~6	600	제 7~9
II. 제 10~18	제 10~15	600	제 16~18
III. 제 19~27	제 19~24	600	제 25~27
IV. 제 28~36	제 28~33	600	제 34~36
V. 제 37~45	제 37~42	600	제 43~45
VI. 제 46~(54)	제 46~51	600	제 (52~54)

추가자본 II, 300파운드 스텔링

회전기간(주)	노동기간(주)	전 대 (파운드스털링)	유통기간(주)
I. 제 7~15	제 7~9	300	제10~15
II. 제16~24	제16~18	300	제19~24
III. 제25~33	제25~27	300	제28~33
IV. 제34~42	제34~36	300	제37~42
V. 제43~51	제43~45	300	제46~51

생산과정은 연중 중단없이 동일한 규모로 진행된다. 양자본 I 과 II는 전혀 분리된 대로 있다. 그러나 이 양자본을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현실적인 교착과 엉킴을 분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회전수도 변경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즉 상기표에 의하면 회전액은 다음과 같다.

자본 I $600 \times 5 = 3,400$ 파운드 스텔링

자본 II $300 \times 5 = 1,500$ 파운드 스텔링

따라서 총자본…… $900 \times 5 \frac{4}{9} = 4,900$ 파운드 스텔링

그러나 이것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보듯이 현실적인 생산기간 및 유통기간은 상기표—여기에서는 주로 양자본 I 과 II를 서로 독립한 것으로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의 그것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현실에 있어서는 자본 II는 자본 I의 노동기간 및 유통기간으로부터 분리된 어떠한 특수한 노동기간 및 유통기간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기간은 6주간이고 유통기간은 3주간이다. 자본 II는 300파운드 스텔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1노동기간의 일부를 충족시킬 수 있을 따름이다. 현실은 바로 이러하다. 제6주 말에 600파운드 스텔링의 생산물 가치가 유통에 들어가서 제9주 말에는 화폐로서 환류한다. 그와 함께 제7주 초에는 자본 II가 활동을 개시하여 제7~9주간의 다음 노동기간의 수요를 충족시킨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 의하면 제9주 말에는 노동기간은 절반 밖에 끝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10주 초에는 방금 환류한 600파운

드 스틸링의 자본 I 이 다시 활동을 개시하여 300파운드 스틸링으로써 제10~12주간을 위한 전대의 필요에 충당한다. 그리하여 제2노동기간은 끝났다. 600파운드 스틸링의 생산물 가치가 유통에 있고 제15주 말에 환류할 것이다. 그러나 그밖에 또 최초의 자본 II의 금액인 300파운드 스틸링이 유리되어 있으며 다음 노동기간의 전반 즉 제13~15주에 기능할 수 있다. 그 다음 이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600파운드 스틸링은 환류한다. 그중 300파운드 스틸링이면 이 노동기간이 끝날 때까지 충분할 것이며 300파운드 스틸링은 다음 노동기간을 위하여 유리된 대로 있다.

따라서 사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I. 회전기간: 제1~9주

제1노동기간: 제1~6주. 자본 I 600파운드 스틸링이 기능한다.

제1유통기간: 제7~9주. 제9주 말에 600파운드 스틸링이 환류한다.

II. 회전기간: 제7~15주.

제2노동기간: 제7~12주.

전반: 제7~9주. 자본 II 300파운드 스틸링이 기능한다. 제9주 말에 600파운드 스틸링이 화폐로 환류한다(자본 I).

후반: 제10~12주. 자본 I 중의 300파운드 스틸링이 기능한다.

자본 I의 나머지 300파운드 스틸링은 유리된 대로 있다.

제2유통기간: 제13~15주.

제15주 말에 600파운드 스틸링(반은 자본 I로 형성되고 반은 자본 II로 형성된)이 화폐로 환류한다.

III. 회전기간: 제13~21주.

제3노동기간: 제13~18주.

전반: 제13~15주. 유리된 300파운드 스틸링이 기능을 개시한다.

제15주 말에 600파운드 스틸링이 화폐로 환류한다.

후반: 제16~18주. 환류한 600파운드 스틸링 중에서 300파운드 스틸링은 기능하고 나머지 300파운드 스틸링은 다시 유리된 대로 있다.

제3유통기간: 제19~21주. 제21주 말에 600파운드 스틸링이 재차 화폐로서 환류한다. 이 600파운드 스틸링에 있어서는 자본 I과 II가 이제는 구별할 수 없게 융합되어 있

이와같이 하여 제51주 말에 이르기까지 6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자본의 8개의 온전한 회전기간이 이루어진다(I : 제1~9주, II : 제7~15주, III : 제13~21주, IV : 제19~27주, V : 제25~33주, VI : 제31~39주, VII : 제37~45주, VIII : 제43~51주). 그러나 제 49~51주는 제8유통기간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에는 유리된 자본 300파운드 스텔링이 들어와서 생산을 진행케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연도말에 회전은 다음과 같이 된다. 즉 600파운드 스텔링은 그것의 순환을 8회 완료하여 합계 4,800파운드 스텔링이 회전한 것으로 된다. 그밖에 또 마지막 3주간(제49~51주)의 생산물이 있으나 이것은 9주간이라는 자체의 순환의 3분의 1을 끝냈을 따름이며, 따라서 그것의 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파운드 스텔링만을 회전액에 가산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51주간의 연 생산물은 5,100파운드 스텔링이지만 회전한 자본은 $4,800 + 100 = 4,900$ 파운드 스텔링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전대자본 900파운드 스텔링은 $5\frac{2}{3}$ 회 즉 제1절의 경우에 있어서보다 조금 더 많이 회전하였다.

이 예에서는 노동기간이 회전기간의 $\frac{2}{3}$ 이고 유통기간이 회전기간의 $\frac{1}{3}$ 인 경우, 즉 노동기간이 유통기간의 단순배수(倍數)인 경우가 가정되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은 자본 유리가 생기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노동기간은 5주간, 유통기간은 4주간이고 매주의 자본전대는 100파운드 스텔링이라고 가정하자.

I. 회전기간 : 제1~9주.

제1노동기간 : 제1~5주. 5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 I 이 기능한다.

제1유통기간 : 제6~9주. 제9주 말에는 500파운드 스텔링이 화폐로 환류한다.

II. 회전기간 : 제6~14주.

제2노동기간 : 제6~10주.

제1부분 : 제6~9주. 4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 II 가 기능한다. 제9주 말에는 5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 I 이 화폐로 환류한다.

제2부분 : 제10주. 환류한 500파운드 스텔링 중에서 100파운드 스텔링이 기능한다. 나머지 400파운드 스텔링은 다음 노동기간을 위하여 유리된 대로 있다.

제2유통기간 : 제11~14주, 제14주 말에 500파운드 스텔링이 화폐로 환류한다.

제14주 말에 이르기까지에는(제11~14주) 앞서 유리된 400파운드 스텔링이 기능한다. 여기에서 환류한 500파운드 스텔링 중 100파운드 스텔링은 제3노동기간(제11~15주)의 수요에 대한 부족을 보충한다. 그리하여 다시금 400파운드 스텔링이 제4노동기간을 위하여 유리된다. 동일한 현상이 매개 노동기간에 반복된다. 매개 노동기간의 시초에는 첫 4주간을 위하여 충분한 400파운드 스텔링이 존재한다. 제4주 말에는 500파운드 스텔링이 화폐로 환류하는데 그중 100파운드 스텔링만이 최종 주간을 위하여 필요하며 나머지 400파운드 스텔링은 그 다음 노동기간을 위하여 유리된 대로 있다.

다음에 또 노동기간은 7주간이고 자본 I은 700파운드 스텔링이며, 유통기간은 2주간이고 자본 II는 200파운드 스텔링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는 제1회전기간은 제1~9주이며 그중 제1노동기간은 제1~7주이고 700파운드 스텔링의 전대를 요하며, 제1유통기간은 제8~9주이다. 제9주 말에는 700파운드 스텔링이 화폐로 환류한다.

제2회전기간인 제8~16주는 제2노동기간인 제8~14주를 포함한다. 그중 제8주 및 제9주를 위한 수요는 자본 II에 의하여 충족된다. 제9주 말에는 상기 700파운드 스텔링이 환류한다. 그중 500파운드 스텔링이 이 노동기간의 말까지(제10~14주) 소비된다. 200파운드 스텔링은 다음 노동기간을 위하여 유리된 대로 있다. 제2유통기간은 제15~16주이며, 제16주 말에 다시 700파운드 스텔링이 환류한다. 그 후는 매개 노동기간에 동일한 현상이 반복된다. 첫 두 주일 동안의 자본수요는 선행 노동기간의 종말에 유리된 200파운드 스텔링에 의하여 충족된다. 제2주 말에는 700파운드 스텔링이 환류한다. 그러나 노동기간은 앞으로 5주간만이 있으며 그리하여 소비할 수 있는 것은 500파운드 스텔링에 불과하다. 따라서 항상 200파운드 스텔링은 다음 노동기간을 위하여 유리된 대로 있다.

따라서 노동기간이 유통기간보다 크다고 가정한 이 경우에는 어떠한 사정하에서도 매개 노동기간의 종말에는, 유통기간을 위하여 전대된 자본 II와 동등한 크기의 화폐자본이 유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술한 세 개 예에서 자본 II는 제1 예에서는 300파운드 스텔링, 제2 예에서는 400파운드 스텔링, 제3 예에서는 200파운드 스텔링이었다. 이에 상응

하여 노동기간의 종말에 유리된 자본은 각각 300파운드 스텔링, 400파운드 스텔링, 200파운드 스텔링이었다.

제3절 노동기간이 유통기간보다 작은 경우

우선 이 경우에도 역시 회전기간은 9주간, 그중 3주간은 노동기간이고 이 기간에 쓰일 자본 I은 300파운드 스텔링이라고 가정하자. 유통기간은 6주간이라고 하자. 이 6주간을 위해서는 600파운드 스텔링의 추가자본이 필요한데, 이 추가자본은 또 각각 300파운드 스텔링씩인 두 자본으로 분할될 수 있고 이 각개는 1노동기간을 충당한다. 그러면 각각 300파운드 스텔링씩의 세 자본이 있게 되는데 이 자본중 300파운드 스텔링은 언제나 생산에 종사하며 600파운드 스텔링은 유통하고 있다.

〈표 III〉

자본 I

회전기간(주)	노동기간(주)	유통기간(주)
I. 제 1~9	제 1~ 3	제 4~ 9
II. 제10~18	제10~12	제13~18
III. 제19~27	제19~21	제22~27
IV. 제28~36	제28~30	제31~36
V. 제37~45	제37~39	제40~45
VI. 제46~(54)	제46~48	제49~(54)

자본 II

회전기간(주)	노동기간(주)	유통기간(주)
I. 제 4~12	제 4~ 6	제 7~12
II. 제13~21	제13~15	제16~21
III. 제22~30	제22~24	제25~30
IV. 제31~39	제31~33	제34~39
V. 제40~48	제40~42	제43~48
VI. 제49~(57)	제49~51	제(52~57)

자본 III

회전기간(주)	노동기간(주)	유통기간(주)
I. 제 7~15	제 7~ 9	제10~15
II. 제16~24	제16~18	제19~24
III. 제25~33	제25~27	제28~33
IV. 제34~42	제34~36	제37~42
V. 제43~51	제43~45	제46~51

여기에서는 제1절의 경우와 좋은 대조를 볼 수 있는데, 다만 다른 점은 이제는 두 개의 자본이 아니라 세 개의 자본이 서로 교대한다는 것이다. 자본들의 교착 또는 엉킴은 생기지 않는다. 매개 자본은 연도 말까지 따로따로 추적될 수 있다. 따라서 제1절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노동기간의 종말에 자본의 유리가 생기지 않는다. 자본 I은 제3주 말에는 완전히 투하되며 제9주 말에는 완전히 환류하고 제10주 초에는 다시 기능을 개시한다. 자본 II와 III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규칙적이며 완전한 교대에 의하여 일체의 자본 유리는 배제된다.

총회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자본 I $300\text{파운드 스텔링} \times 5\frac{1}{2} = 1,700\text{파운드 스텔링}$

자본 II $300\text{파운드 스텔링} \times 5\frac{1}{2} = 1,600\text{파운드 스텔링}$

자본 III $300\text{파운드 스텔링} \times 5 = 1,500\text{파운드 스텔링}$

총자본 $900\text{파운드 스텔링} \times 5\frac{1}{2} = 4,800\text{파운드 스텔링}$

이 번에는 또 유통기간이 노동기간의 엄밀한 배수가 아닌 예를 들어 보자. 예컨대 노동기간이 4주간이고 유통기간이 5주간이라고 하자. 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자본액은 자본 I = 400파운드 스텔링, 자본 II = 400파운드 스텔링, 자본 III = 100파운드 스텔링일 것이다. 최초의 3회전만을 표시한다.

〈표 IV〉

자본 I

회전기간(주)	노동기간(주)	유통기간(주)
I. 제 1~9	제 1~ 4	제 5~ 9
II. 제 9~17	제 9, 10~12	제13~17
III. 제17~25	제17, 18~20	제21~25

자본 II

회전기간(주)	노동기간(주)	유통기간(주)
I. 제 5~13	제 5~ 8	제 9~13
II. 제13~21	제13, 14~16	제17~21
III. 제21~29	제21, 22~24	제25~29

자본 III

회전기간(주)	노동기간(주)	유통기간(주)
I. 제 9~17	제 9	제10~17
II. 제17~21	제17	제18~25
III. 제25~33	제25	제26~33

이 경우에 자본들의 영킹이 생기는 것은 다만 자본 III—이것은 불과 I주간을 충당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자립적인 노동기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의 노동기간이 자본 I의 첫 노동주기와 일치하는 한에 있어서만이다. 그러나 그대신 자본 I의 경우에도 자본 II의 경우에도 노동기간의 종말에는 자본 III과 동등한 금액 100파운드 스텔링이 유리되게 된다. 즉 자본 III이 자본 I의 제2노동기간 및 그 이하의 모든 노동기간의 제1주를 충족시키고 또 이 제1주 말에 4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자본 I의 전부가 환류한다면 자본 I의 노동기간의 나머지 부분은 3주간의 기간과 이에 상응한 3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자본투하만이다. 이렇게 유리된 100파

운드 스텔링은 그후에 곧 계속되는 자본 II의 노동기간의 제1주를 위하여 충분하다. 이 주간의 종말에는 4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자본 II의 전부가 환류한다. 그러나 이미 개시된 노동기간은 앞으로 300파운드 스텔링 밖에 더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의 종말에는 다시 100파운드 스텔링이 유리된 대로 있다. 이하 마찬가지다. 따라서 유통기간이 노동기간의 단순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기간의 종말에 자본의 유리가 생기는데, 그것도 이 유리된 자본은 1노동기간 또는 노동기간의 배수를 넘는 유통기간의 초과분을 충당할 자본부분과 동등하다.

이상에서 연구한 모든 경우에 노동기간과 유통기간은 여기에서 고찰되는 임의의 기업에서 온 1년을 통하여 동일한 대로라고 가정되었다. 이 전제는 회전과 자본 전대에 대한 유통기간의 영향을 해명하려고 한 이상 필요한 것이다. 이 전제가 현실에 있어서는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타당하는 것은 아니며, 또 흔히는 전혀 타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본 장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유동자본의 회전만을 고찰하고 고정자본의 회전은 고찰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 것은 본 장에서 취급하는 문제가 고정자본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다는 단순한 이유에서이다. 생산과정에서 충용되는 노동수단 등등이 고정자본을 형성하는 것은 다만 그것들의 사용기간이 유동자본의 회전기간보다 더 오래 지속하는 한에 있어서만이며, 이 노동수단이 부단히 반복되는 노동과정에서 계속 복무하는 기간이 유동자본의 회전기간보다 더 큰, 따라서 유동자본의 회전기간의 n 배인 한에 있어서만이다. 유동자본의 이 n 회전기간으로 이루어지는 총기간이 길든 짧은 간에 생산자본 중 이 기간에 고정자본으로 전대된 부분은 동일한 기간내에서는 새로 전대되지 않는다. 그것은 종전의 사용형태대로 기능을 계속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유동자본의 각 회전기간중의 개개의 노동기간의 길이가 다름에 따라서 고정자본이 자체의 원 가치 중에서 이 노동기간의 생산물에 교부하는 부분에도 대소의 차가 생기며 또 각 회전기간중의 유통기간의 길이 여하에 따라서 고정자본의 가치 중에서 생산물에 교부된 이 부분이 화폐형태로 환류하는 속도에도 완급의 차가 생긴다는 점이 그것이다. 본 장에서 취급되고 있는 대상—생산자본의 유동부분의 회전—의 본성은 이 자본부분 자체의 본성에서 나온다. 한 노동기간에 충용된 유동자본은 그것이 자체의 회전을 완료하

기 전에는 즉 그것이 상품자본으로 전화하고 상품자본으로부터 화폐자본으로 전화하고 또 이 후자로부터 다시 생산자본으로 전화하기 전에는 새로운 노동기간에 충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제1노동기간이 곧 제2노동기간에 의하여 계속되기 위하여는 새로 자본이 전대되어 생산자본의 유동적 요소들로 전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도 제1노동기간을 위하여 전대된 유동자본의 유통기간에 의하여 생기는 빈틈을 채우기에 충분한 양으로서이다. 유동자본의 노동기간의 길이가 소여 생산에서의 노동과정의 규모에 대하여, 전대자본의 분할에 대하여 따라서 새로운 자본부분의 추가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본장에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제4절 결 론

이상의 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A. 자본의 일부가 유통기간에 있는데 다른 일부가 부단히 노동기간에 있을 수 있기 위하여 자본은 각이한 부분들로 분할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 각이한 부분들은 다음과 같은 두 경우에는 각이한 자립적인 사적 자본들과 마찬가지로 서로 교대한다. 1) 노동기간이 유통기간과 동등하고 따라서 회전기간이 동등한 두 부분으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 2) 유통기간이 노동기간보다 길기는 하나 동시에 노동기간의 단순배수(倍數)이며 그리하여 $1\text{유통기간} = n\text{노동기간}$ 인 경우에 n 은 정수(整數)가 아니면 안된다—인 경우. 이 경우들에 있어서는 순차로 전대되는 자본의 여하한 부분도 유리되지 않는다.

B. 이와는 반대로 1) 유통기간이 노동기간보다 크지만 그것의 단순 배수가 아닌 경우와, 2) 노동기간이 유통기간보다 큰 경우에 있어서는 언제나 제2회전 이후의 각 노동기간의 종말에는 총유동자본의 일부가 부단히 주기적으로 유리된다. 그것도 이 유리된 자본은 노동기간이 유통기간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본 중 유통기간을 위해서 전대된 부분과 동등하며 또 유통기간이 노동기간보다 큰 경우에는 1노동기간 또는 노동기간의 배수를 넘는, 유통기간의 초과분을 충당하여야 할 자본부분과 동등하다.

C. 이로부터 사회적 총자본에 있어서는, 그것의 유동적 부분에 대하여

보면, 자본의 유리가 통례로 되고 생산과정에서 순차로 기능하는 자본부분들의 단순한 교대는 예외가 아니면 안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노동기간과 유통기간이 동등한 것, 또는 유통기간이 노동기간의 단순배수와 동등한 것, 즉 회전기간의 두 구성부분의 이러한 규칙적인 비례성(比例性)이란 사태의 본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대체로 예외적으로만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년 동안에 수회 회전하는 사회적 유동자본의 극히 현저한 부분은 연년의 회전순환중에 주기적으로 유리된 자본의 형태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기타의 모든 사정이 불변이라고 한다면 이 유리되는 자본의 크기는 노동과정의 범위 또는 생산의 규모와 함께,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과 함께 증대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것이 증대하는 것은 상기 B. 2)의 경우에는 총전대자본이 증대하기 때문이며, B. 1)의 경우에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과 함께 유통기간의 길이가 증대하며, 따라서 또 노동기간과 유통기간간에 정확한 비례가 없이 노동기간이 유통기간보다 작은 경우에는 회전기간도 증대하기 때문이다.

제1의 경우에는 매주 예컨대 100파운드 스텔링을 투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6주간의 노동기간에 600파운드 스텔링, 3주간의 유통기간에 300파운드 스텔링, 합계 900파운드 스텔링. 이 경우에는 부단히 300파운드 스텔링이 유리될 것이다. 그런데 매주 투하되는 금액이 300파운드 스텔링이라면 노동기간에는 1,800파운드 스텔링, 유통기간에는 900파운드 스텔링이 투하될 것이며 따라서 또 300파운드 스텔링이 아니라 900파운드 스텔링이 주기적으로 유리된다.

D. 총자본 예컨대 900파운드 스텔링은 두 부분으로, 상례에 있어서와 같이 노동기간을 위한 600파운드 스텔링과 유통기간을 위한 300파운드 스텔링으로 분할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노동과정에 투하되는 부분은 3분의 1만큼 감소되어 900파운드 스텔링으로부터 600파운드 스텔링으로 되며, 따라서 생산의 규모도 3분의 1만큼 축소된다. 타방으로 300파운드 스텔링은 노동기간을 연속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연중 매주 100파운드 스텔링이 노동과정에 투하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만 기능한다.

추상적으로 보면 600파운드 스텔링이 $8 \times 6 = 48$ 주간(생산물=4,800파운드 스텔링) 작용하던, 그렇지 않고 전 자본 900파운드 스텔링이 6주간은 노

동과정에 투하되고 그 후 3주간의 유통기간 중에는 유평상태에 있는가 하던 그것은 동일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 자본은 48주간 중에 $5\text{창} \times 6 = 32$ 주간(생산물은 $900 \times 5\text{창} = 4,800$ 파운드 스텔링)은 작용하고 16주간은 유평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16주간의 유평중의 고정자본의 비교적 큰 손상과 노동의 등귀—노동 1년 중의 일부 밖에 작용하지 않지만 온 1년 간에 걸쳐 지불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도외시하더라도 생산과정의 이와 같은 규칙적인 중단은 근대적 대공업의 경영과는 전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연속성 그 자체가 하나의 노동생산력이다.

이제 유리된 자본—사실상으로는 그 활동이 중지되고 있는 자본—을 좀 더 자세히 고찰한다면 그것의 현저한 부분은 부단히 화폐자본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상례에 따라 노동기간은 6주간, 유통기간은 3주간, 매주의 투자는 100파운드 스텔링이라고 하자. 제2노동기간의 중간 즉 제9주 말에는 600파운드 스텔링이 환류하는데, 그중 노동기간의 나머지 기간에 투하되어야 할 것은 300파운드 스텔링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2노동기간의 종말에는 그중 300파운드 스텔링이 유리된다. 이 300파운드 스텔링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제 노임으로 1/3 원료 및 보조재료로 2/3가 지출되어야 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환류한 600파운드 스텔링 중에서 노임으로는 200파운드 스텔링이 화폐형태로 있고 생산적 저장의 형태 즉 불변적, 유동적 생산자본의 요소들의 형태로는 400파운드 스텔링이 있다. 그러나 제2노동기간의 후반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이 생산적 저장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절반은 3주일간은 과잉한 즉 1노동기간에 대하여는 과잉한 생산적 저장의 형태로 있다. 그러나 자본가는 환류하는 자본의 이 부분(400파운드 스텔링) 중 당면한 노동기간에 필요한 것은 그 절반=200파운드 스텔링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그가 이 나머지 200파운드 스텔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과잉한 생산적 저장으로 전화시키는가, 그렇지 않으면 보다 유리한 시장관계를 기대하고 그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폐자본으로서 보유하는가 하는 것은 시장관계 여하에 의존한다. 타방으로 노임으로 투하되어야 할 부분인 200파운드 스텔링이 화폐형태로 보유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자본가는 노동력을 구매한 다음에 그것을 원료처럼 창고에 맡겨둘 수는 없다. 그는 이 노동력을 생산과정에 합체시키지 않으면 안되며, 주말에 그것에 대하여 지불한다. 따라서 유리된 자본 300파운드 스텔링 중

이 100파운드 스텔링은 여하한 경우에도 유리된 화폐자본 즉 그 노동기간에는 필요하지 않은 화폐자본의 형태를 취할 것이다. 따라서 화폐자본의 형태로 유리되는 자본은 적어도, 노임으로 투하되는 가변자본부분과 동등하지 않으면 안되며, 최대한으로는 그것은 유리되는 자본 전부를 포괄할 수 있다. 현실에 있어서는 그것은 이 최소한과 최대한의 사이를 부단히 동요한다.

이와같이 단순한 회전운동의 기구에 의하여 유리되는 화폐자본은(고정자본의 순차적 환류에 의하여 형성되는 화폐자본 및 각 노동과정에서 가변자본을 위하여 필요한 화폐자본과 함께) 신용제도가 발전하면 현저한 역할을 놀지 않으면 안되는 동시에 또 신용제도의 기초의 하나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예에 있어서 유통기간이 3주간으로부터 2주간으로 단축된다고 가정하자.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고 예컨대 경기의 호전, 지불기한의 단축 등등의 결과라고 하자. 노동기간중에 투하된 자본 600파운드 스텔링은 필요한 것보다 1주간 더 일찍 환류하며, 따라서 그것은 이 1주간 중 유리되어 있다. 그리고 또 종래와 마찬가지로 노동기간의 중간에 300파운드 스텔링(위의 600파운드 스텔링의 일부)이 유리되는데, 그러나 3주간이 아니라 4주간 만큼 유리된다. 따라서 화폐시장에는 600파운드 스텔링이 1주간 있으며 또 300파운드 스텔링이 3주간이 아니라 4주간 있다. 이 사실은 한 자본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자본가들에게 있는 것이며 또 각이한 시기에 각이한 생산부문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시장에는 보다 많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화폐자본이 출현한다. 이러한 상태가 비교적 장기간 지속된다면 생산은 사정이 허락하는 곳에서는 확대된다. 또 차입자본을 가지고 사업하는 자본가들은 화폐시장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나, 이로 말미암아 화폐시장의 형편은 화폐공급이 증대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완화된다고. 또는 마지막으로 유통의 기구상 과잉으로 되어 있는 화폐액은 결정적으로 화폐시장에 방출될 것이다.

유통기간이 3주간으로부터 2주간으로, 따라서 또 회전기간이 9주간으로부터 8주간으로 단축된 결과 총전대자본의 1/9은 과잉으로 된다. 종전에 900파운드 스텔링을 가지고 중단없이 진행되어 온 6주간의 노동기간은 이제는 800파운드 스텔링을 가지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중단없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자본가치의 일부인 100파운드 스텔링은 일단

화폐로 전화되면 화폐자본으로서의 이 상태에 머물러 있고 더는 생산과정을 위하여 전대되는 자본의 일부로서는 기능하지 않는다. 생산이 종전대로의 규모로 또 기타 종전대로의 조건—물가 등등과 같은—하에서 계속되는 동안은 전대자본의 가치총액은 900파운드 스텔링으로부터 800파운드 스텔링으로 감소된다. 최초로 전대된 가치의 잔액 100파운드 스텔링은 화폐자본의 형태로 갈려 나온다. 그것은 화폐자본으로서 화폐시장에 들어가 거기에 기능하는 제 자본의 추가적 부분을 형성한다.

여기로부터 화폐자본의 과잉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여기서 화폐자본의 과잉이라는 것은 화폐자본의 수요보다도 크다는 의미에서만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과잉은 언제나 상대적인 과잉—예컨대 공황 후에 개시될 새로운 순환의 기점으로 되는 우울기(憂鬱期)에 생기는—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화폐자본의 과잉이란 사회적 총재생산과정(유통과정도 포함한)의 운영상 전대자본가치의 일정한 부분이 과잉으로 되며, 따라서 화폐자본의 형태로 갈려 나와 있다는 의미에서의 과잉이다. 즉 종전대로의 생산규모와 종전대로의 물가의 조건하에서 유통기간의 단축과 따라서 그에 상응한 회전기간의 단축의 결과 발생하는 과잉이다. 유통에 있는 화폐의 양의 다소는 이 과잉에는 추호도 영향이 없었다.

거꾸로 유통기간이 연장되어 예컨대 3주간으로부터 5주간으로 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는 벌써 다음 회전에 있어서 전대자본의 환류가 2주간 만큼 늦게 생긴다. 이 노동기간에 있어서의 생산과정의 마지막 부분은 전대자본의 자체의 회전의 기구(機構)에 의해서는 더 수행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상기 경우에 있어서는 생산과정—생산과정이 운영되는 범위—이 확대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그것이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산과정을 동일한 규모로 계속하기 위하여는 전대자본이 유통기간의 이 연장의 전체기간을 위하여 $2/9=200$ 파운드 스텔링만큼 증대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추가자본은 화폐시장에서만 취해질 수 있다. 만일 유통기간의 연장이 1개 또는 수 개의 대기업부분에서 생긴다면, 이 연장은 그 작용이 다른 측면으로부터의 반대작용에 의하여 상쇄되지 않는 경우에는 화폐시장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이 압박은, 상술한 과잉이 그러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품가격의 변동이나 현존 유통수단의 양의 변동과는 추호도 관계가 없다

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본장을 인쇄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는 적지 않은 곤란이 있었다. 맑스는 대수(代數)학에는 매우 능숙하였지만 숫자 계산, 특히 상업상의 숫자 계산에는 익숙하지 못하였다. 하기는 한몽팅이의 잡기장이 있고 거기에서는 그는 손수 수다한 실례에 의하여 온갖 상업상 계산방식을 이리저리 다하여 보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개개의 계산방식을 안다는 것과 상인들의 일상적인 실제 계산에 수련된다는 것과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 그리하여 맑스는 회전의 계산에서 혼란을 일으켜, 미완료의 것과 함께 드디어 많은 부정확한 것과 모순되는 것이 나왔다. 나는 이상의 인쇄된 표들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수학상 정확한 것만을 보존하였는데, 그것도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 수고스러운 계산의 불확실한 결과 때문에 맑스는 하나의-내가 보기에는-사실상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정에다 부당한 의의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그가 화폐자본의 유리라고 칭하는 그것이다. 위에서 가정한 전제하에서의 현실의 사태는 다음과 같다.

노동기간과 유통기간과의 양적 비율 따라서 또 자본 I의 자본 II에 대한 양적 비율이 여하간에 제1회전이 끝난 후에는 노동기간과 동일한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1노동기간에 필요한 자본-즉 자본 I과 동등한 금액-이 화폐형태로 자본가에게 복귀한다.

노동기간=5주간, 유통기간=4주간, 자본 I=500파운드 스텔링이라고 한다면 제9주, 제14주, 제19주, 제24주, 제29주 등등의 종말엔 매년 5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액이 환류한다.

노동기간=6주간, 유통기간=3주간, 자본 I=600파운드 스텔링이라고 한다면 제9주, 제15주, 제21주, 제27주, 제33주 등등의 종말에는 600파운드 스텔링씩 환류한다.

마지막으로, 노동기간=4주간, 유통기간=5주간, 자본 I=400파운드 스텔링이라고 한다면 제9주, 제13주, 제17주, 제21주, 제25주 등등의 종말에는 400파운드 스텔링씩 환류한다.

이 환류한 화폐가 당면한 노동기간에 대해서 과잉인가, 즉 유리되어 있는가 아닌가, 또 그 환류한 화폐 중 얼마가 그러한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혀 좋은 것이다. 생산은 중단없이 동일한 규모로 진행된다고 전제되며, 그렇게 되려면 화폐가 현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유리되든 안

되든 간에 환류하지 않으면 안된다. 생산이 중단되면 유리도 머무른다.

다시 말하면, 물론 화폐의 유리, 따라서 화폐형태로서의 잠재적인, 오직 잠재적인 자본의 형성이 생기는 것은 하나, 그러나 그것은 여하한 사정 하에서도 생기는 것이며 본문 중에서 상세히 논술한 특수한 제조건하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문 중에서 가정한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생긴다. 유동자본 I에 관하여서는 산업자본가는 매개 회전의 종말에 있어서 기업개시 당시와 전혀 동일한 형편에 있다. 즉 그는 이 자본을 다시 전부 그리고 한꺼번에 화폐자본으로 수중에 넣고 있으며, 다만 점차적으로만 그것을 다시 생산자본으로 전화할 수 있다.

본문 중에서 주요한 점은 일방으로는 산업자본의 현저한 부분이 부단히 화폐형태로 현존하지 않으면 안되며 타방으로는 그보다 더 현저한 부분이 때때로 화폐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의 논증이다. 나의 이 추기(追記)는 다만 이 논증을 강화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F. 엥겔스

제5절 가격변동의 영향

이상에서 우리는 일방으로는 가격 및 생산규모가 불변이고 타방으로는 유통기간이 신축한다고 상정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전기간의 크기가 불변이고 또 생산규모도 불변이나 타방 가격이 변동한다고 즉 생산자본의 유동적 요소의 가격 즉 원료와 보조재료 및 노동의 가격 또는 이 요소들 중의 첫 2요소의 가격이 등락한다고 상정하자. 원료 및 보조재료의 가격과 그리고 노임이 2분의 1만큼 저락한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의 예에 있어서 매주 100파운드 스텔링이 아니라 50파운드 스텔링의, 9주간의 회전기간에는 900파운드 스텔링이 아니라 450파운드 스텔링의 전대자본이 필요할 것이다. 전대자본 가치 중에서 우선 450파운드 스텔링이 화폐자본으로서 갈려 나가나, 그러나 생산과정은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동일한 회전기간과 이 회전기간의 동일한 분할을 가지고 지속될 것이다. 1년간의 생산물량도 역시 종전과 동일한 것이나, 그것의 가치는 2분의 1만큼 감소되어 있다. 이 변동—이것은 또 화폐자본의 수요공급에 있어서의 변동을 수반한다—을 야기한 것은 유통화폐의 유통속도의 증진도 아니며 그것의 양의 변동도 아니다. 거꾸로이다. 생산자본의 요소들의 가치 또는 가격이

2분의 1만큼 저락한 결과로, 우선 종전과 동등한 규모로 계속되는 X라는 기업에 전대되는 자본가치가 2분의 1만큼 감소될 것이고 따라서 또 기업 X측으로부터 시장에 투입되는 화폐도—기업 X는 이 자본가치를 우선 화폐형태로 즉 화폐자본으로서 전대하므로—2분의 1에 불과할 것이다. 유통에 방출된 화폐량이 감소한 것은 생산 제 요소의 가격이 저락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첫째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둘째로, 최초로 전대된 자본가치 900파운드 스텔링의 2분의 1인 450파운드 스텔링은 a) 번갈아 화폐자본, 생산자본 및 상품자본의 형태를 통과하였으며 b) 동시에 부단히 일부는 화폐자본의 형태, 일부는 생산자본의 형태, 일부는 상품자본의 형태로 병존하였던 것인데, 이 450파운드 스텔링이 기업 X의 순환으로부터 갈려 나갈 것이며 따라서 추가적 화폐자본으로서 화폐시장에 등장한 후 추가적 구성부분으로서 이 화폐시장에 작용할 것이다. 이 유리된 화폐 450파운드 스텔링이 화폐자본으로서 작용하는 것은 그것이 기업 X의 운영상 과잉하게 된 화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원 자본가치의 구성부분이며 따라서 자본으로서 계속 작용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유통수단으로서 지출되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유리된 화폐를 자본으로서 작용하게 하는 가장 손쉬운 형식은 그것을 화폐자본으로서 화폐시장에 방출하는 것이다. 타방으로는 생산의 규모가 (고정자본을 도외시하면) 2배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는 9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동일한 전대자본을 가지고 생산과정이 2배의 규모로 운영될 것이다.

타방 이번에는 생산자본의 유동적 요소들의 가격이 2분의 1만큼 등귀한다면 매주 100파운드 스텔링이 아니라 150파운드 스텔링의, 따라서 900파운드 스텔링이 아니라 1,350파운드 스텔링의 전대자본이 필요할 것이다.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450파운드 스텔링의 추가자본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그 한에 있어서 화폐시장의 정형 여하에 따라서 다소간의 압박을 화폐시장에 가할 것이다. 시장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본에 대한 격렬한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또 만약 이 자본의 일부가 유희상태에 있다면 그 부분은 그 한에 있어서 활동시켜질 것이다.

그러나 또 세째로, 생산의 규모가 주어지고, 회전속도가 불변이며, 유동적 생산자본의 요소들의 가격도 불변인 경우에 기업 X의 생산물의 가격이 등락할 수 있다. 만약 기업 X에서 제공되는 상품의 가격이 저락한

다면 이 기업이 부단히 유통에 투입한 6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자본의 가격은 예컨대 500파운드 스텔링으로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전대자본가치의 6분의 1은 유통과정으로부터 환류하지 않는다(상품자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잉여가치는 이 경우에 고려하지 않는다). 그것은 유통과정에서 상실된다. 그러나 생산 제 요소의 가치 따라서 가격이 동일한 대로이므로 이 500파운드 스텔링의 환류는 부단히 생산과정에 종사하고 있는 6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자본의 5/6를 보상할 만한 것일 따름이다. 따라서 생산을 동일한 규모로 계속하기 위하여는 100파운드 스텔링의 추가적 화폐자본이 지출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거꾸로 만약 기업 X의 생산물의 가격이 등귀한다면 상품자본의 가격은 600파운드 스텔링으로부터 예컨대 700파운드 스텔링으로 등귀할 것이다. 이 가격의 7분의 1=100파운드 스텔링은 생산과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에 전대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유통과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 제 요소를 보상하는 데는 600파운드 스텔링밖에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100파운드 스텔링이 유리된다.

상기 첫째 경우에는 왜 회전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되며, 둘째 경우에는 왜 원료 및 노동의 가격이 등락하며, 세째 경우에는 왜 제공된 생산물의 가격이 등락하는가 하는 원인의 연구는 이때까지의 연구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에 속하는 것은 물론 다음과 같은 사항이다.

I. 생산규모가 불변이고, 생산 제 요소 및 생산물의 가격도 불변인데, 유통기간 따라서 또 회전기간이 변동하는 경우.

우리의 예의 전제에 의하면 유통기간이 단축된 결과 총전대자본은 1/9만큼 적게 필요하며, 따라서 총전대자본은 900파운드 스텔링으로부터 800파운드 스텔링으로 축소되어 1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자본이 갈려 나간다.

기업 X는 여전히 6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동일한 가치를 가진, 동일한 6주간의 생산물을 제공한다. 그리고 작업은 연중 중단없이 진행되므로 이 기업은 51주간에 5,1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를 가진, 동일한 양의 생산물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기업에 의하여 유통에 투입되는 생산물의 양과 가격에 관하여 하등의 변동이 생기지 않으며 또 이 기업이 생산물

을 시장에 방출하는 기한에 관하여도 하등의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파운드 스텔링이 갈려 나가고 있는 것은 유통기간이 단축된 결과 종전에 900파운드 스텔링의 전대자본으로써 만족되었던 생산 과정이 이제는 다만 800파운드 스텔링으로써 만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100파운드 스텔링의 갈려 나간 자본은 화폐자본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전대자본 중 부단히 화폐자본의 형태로 기능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6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전대 유동자본 I 중 $4/5=480$ 파운드 스텔링은 부단히 생산재료에 지출되며, $1/5=120$ 파운드 스텔링은 노임으로 투하된다고 상정하자. 따라서 매주 80파운드 스텔링은 생산재료에, 20파운드 스텔링은 노임에 투하된다. 따라서 자본 II = 300파운드 스텔링도 역시 생산재료를 위한 $4/5=240$ 파운드 스텔링과 노임을 위한 $1/5=60$ 파운드 스텔링으로 분할되지 않으면 안된다. 노임에 투하되는 자본은 항상 화폐형태로 전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6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액을 가진 상품생산물이 판매되어 화폐형태로 재전화되자마자 그중 480파운드 스텔링은 생산재료(생산적 저장)로 전화될 수 있으나 120파운드 스텔링은 6주간분의 노임지불에 복무하기 위하여 화폐형태를 보존한다. 이 120파운드 스텔링은 600파운드 스텔링의 환류자본 중 항상 화폐자본의 형태로 갱신되며 보상되지 않으면 안되는, 따라서 또 항상 전대자본 중 화폐형태로 기능하는 부분으로서 현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최소한이다.

이제 주기적으로 3주간 유리되는 300파운드 스텔링—역시 생산적 저장을 위한 240파운드 스텔링과 노임을 위한 60파운드 스텔링으로 분할될 수 있는—중에서 회전기간의 단축으로 말미암아 100파운드 스텔링이 화폐자본의 형태로 갈려 나가 회전의 기구(機構)로부터 완전히 내던져진다고 하면 이 1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자본을 위한 화폐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의 5분의 1만은 회전의 내부에서 주기적으로 유리되는 화폐자본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4/5=80$ 파운드 스텔링은 동일한 가치의 추가적인 생산적 저장에 의하여 이미 보상되고 있다. 이 추가적인 생산적 저장은 어떠한 방식으로 화폐로 전화되며, 또 이 전환을 위한 화폐는 어디에서 오는가?

유통기간이 일단 단축된다면 상기 600파운드 스텔링 중 생산적 저장으로 재전화되는 것은 480파운드 스텔링이 아니라 다만 400파운드 스텔링으

로 된다. 나머지 80파운드 스텔링은 화폐형태로 유지되어 노임지불을 위한 상기 20파운드 스텔링과 함께 갈려 나가는 자본 100파운드 스텔링을 이룬다. 이 100파운드 스텔링은 6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자본의 구매를 통하여 유통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것이 노임과 생산 제 요소로 재투하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유통으로부터 끌려나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100파운드 스텔링은 화폐형태로서는 그것이 최초에 유통에 투입된 때와 동일한 형태로 다시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9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가 생산적 저장과 노임에 투하되었다. 동일한 생산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제는 800파운드 스텔링밖에 필요하지 않다. 이에 따라 화폐형태로 갈려 나간 100파운드 스텔링은 이제는 투자처를 구하고 있는 새로운 화폐자본을, 화폐시장의 새로운 구성부분을 이룬다. 이 100파운드 스텔링은 물론 종전에도 이미 주기적으로, 유리된 화폐자본의 형태 및 추가적 생산자본의 형태로 있었으나, 그러나 이 잠재적 상태 그 자체는 생산과정의 수행의 조건—왜냐하면 생산과정의 연속성의 조건이기 때문에—이었다. 이제는 이 100파운드 스텔링은 생산과정의 수행을 위하여는 더는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새로운 화폐자본을 이루고, 화폐시장의 한 구성부분을 이룬다—비록 그것이 결코 현존하는 사회적 화폐시장의 추가적 요소를 이루지도 않으며(왜냐하면 그것은 기업 개시 당시에 존재하였으며 기업에 의하여 유통에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 축적된 퇴장화폐를 이루지도 않지만.

이 100파운드 스텔링은 그것이 전대화폐자본 중 더는 동일한 기업에서 충용되지 않는 일부인 한, 이제는 사실상 유통으로부터 끌려나와 있다. 그러나 이렇게 끌려나올 수 있는 것은 다만, 상품자본의 화폐로의 전화, 화폐의 생산자본으로의 전화 즉 $W'-G-W$ 가 1주간만큼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100파운드 스텔링이 유통으로부터 끌려나오는 것은 그것이 자본 X의 회전을 위하여는 더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전대자본이 그것의 충용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가정되고 있다. 이 자본이 차입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태는 조금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유통기간의 단축에 따라 그는 900파운드 스텔링이 아니라 이제는 다만 800파운드 스텔링의 차입자본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하여 100파운드 스텔링이 대부자에게 반환되면 그것은 상기 경우와 마찬가지로 100파운드 스텔링의 새로운 화폐자본을 형성하나, 다만 X의 수중에서가

아니라 Y의 수중에서이다. 또 자본가 X가 48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를 가진 생산재료를 외상으로 얻고 그리하여 그 자신이 화폐로 전대하여야 할 것은 노임을 위한 120파운드 스텔링뿐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가 외상으로 구입하여야 할 생산재료는 80파운드 스텔링만큼 적을 것이며, 따라서 이 80파운드 스텔링만큼의 생산재료는 외상을 주는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잉여 상품자본을 이루는 것인데 한편 자본가 X는 20파운드 스텔링을 화폐로서 갈려 나가게 할 것이다.

이제는 추가적인 생산적 저장은 1/3만큼 감소되었다. 그것은 종전에는 추가자본 II 300파운드 스텔링의 $4/5=240$ 파운드 스텔링이었는데 지금은 160파운드 스텔링에 불과하다. 즉 3주간분이 아니라 2주간분의 추가적 저장이다. 그것은 이제는 3주간마다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2주간마다 갱신되며, 그것도 3주간분이 아니라 다만 2주간분이 갱신된다. 따라서 예컨대 면화시장에서의 구입이 보다 빈번히 또 보다 소량으로 반복된다. 생산물의 양은 종전과 같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면화가 시장에서 끌려나간다. 그러나 끌려나가는 시기상 배경이 다르게 되며 또 자주 끌려 나간다. 예컨대 3개월만애와 2개월만에 거래가 진행되고 1년간의 면화소비는 1,200곤(捆)이라고 가정하자. 3개월의 경우에는

1월 1일 판매량	300곤,	재고량	900곤
4월 1일 판매량	300곤,	재고량	600곤
7월 1일 판매량	300곤,	재고량	300곤
10월 1일 판매량	300곤,	재고량	0곤

그런데 2개월의 경우에는

1월 1일 판매량	200곤,	재고량	1,000곤
3월 1일 판매량	200곤,	재고량	800곤
5월 1일 판매량	200곤,	재고량	600곤
7월 1일 판매량	200곤,	재고량	400곤
9월 1일 판매량	200곤,	재고량	200곤
11월 1일 판매량	200곤,	재고량	0곤

따라서 면화에 투하된 화폐는 1개월 늦어서 즉 10월이 아니라 11월에야 비로소 완전히 환류한다. 그리하여 만약 유통기간, 따라서 또 회전기간이 단축된 결과 전대자본의 $1/9=100$ 파운드 스텔링이 화폐자본의 형태로 갈려 나간다고 하면 또 이 100파운드 스텔링이 주(週) 임금지불에 사용될, 주기적으로 과잉으로 되는 화폐자본 20파운드 스텔링과, 주기적으로 과잉으로 1주간분의 생산적 저장으로서 존재하였던 80파운드 스텔링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이 80파운드 스텔링에 관하여 말한다면 공장주측에서의 과잉의 생산적 저장의 감소에, 면화상인측에서의 상품저장의 증대가 상응한다. 동일한 면화가 생산적 저장으로서 공장주의 창고에 놓여 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그만큼 그것이 상품으로서 면화상인의 창고에 놓여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기업 X에서의 유통기간의 단축은 X가 그의 상품을 보다 빨리 판매하는 또는 지불을 받는 결과이거나 또는 외상판매인 경우에는 지불기한이 단축되는 결과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이 단축은 상품 판매의 단축, 상품자본의 화폐자본으로의 전화 즉 유통과정의 제1단계인 $W'-G$ 의 단축에 유래하고 있다. 이 단축은 또 유통과정의 제2단계인 $G-W$ 에서도, 따라서 또 자본가 X에게 그의 유동자본의 생산 제 요소를 제공하는 Y, Z 등등의 자본의 노동기간이나 유통기간에서의 동시적인 변동에서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면화, 석탄 등등이 그것의 생산지 또는 집산지(集產地)로부터 자본가 X의 생산 소재지까지의 여행에 낡은 운수에 의하면 3주간이 걸린다고 하면 새로운 생산적 저장이 도착할 때까지 X의 생산적 저장의 최소한은 적어도 3주간분 있지 않으면 안된다. 면화 및 석탄은 그것들이 여행중에 있는 동안은 생산수단으로서 복무할 수 없다. 그 동안은 그것들은 오히려 운수업과 이 운수업에 충용되고 있는 자본의 노동대상이며 또 석탄생산자 또는 면화판매업자에 있어서는 유통중에 있는 상품자본이다. 개량된 운수에 의하여 여행이 2주간으로 단축된다고 하자. 그러면 생산적 저장은 3주간분으로부터 2주간분으로 될 수 있다. 그에 따라 이것을 위하여 전대된 80파운드 스텔링의 추가자본이 유리되며 또한 노임을 위한 20파운드 스텔링의 추가자본도 유리된다. 왜냐하면 600파운드 스텔링의 회전자본이 1주간 더 일찍 환류하기 때문이다.

타방으로는 예컨대 원료를 제공하는 자본의 노동기간이 단축된다면(이

토지소유자의 지대징수자나 또는 은행의 심부름꾼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노동이 지대나 또는 자루에 넣어서 다른 은행으로 가져가는 금괴의 가치의 크기를 한 푼도 증대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좋은 일이다.)¹⁰⁾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노동시키는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매매가 주요한 기능으로 된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생산물을 광범한 사회적 규모에서 취득하기 때문에 그는 또한 그와 같은 규모에서 이 생산물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후에 또다시 화폐로부터 생산요소들로 재전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구매기간 및 판매기간은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다. 상인자본의 기능에 의하여 하나의 환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문제에 더 자세히 들어가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극히 명백한 것은 그 자체로서 비생산적인, 그러나 재생산의 하나의 필연적 계기인 어떤 기능이 분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부차적 기능으로부터 약간의 사람들의 전문적 기능으로, 그들의 특수한 사업으로 전화되더라도, 기능의 성격 자체는 전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인(여기에서는 상품의 형태전화의 단순한 대리자로서, 단순한 구매자 및 판매자로서 간주되는)은 그의 조작들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매기간 및 판매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그는 무용한 에너지를 지출을 감소시키는, 또는 생산기간을 해방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기계라고 간주될 수 있다.¹¹⁾

10) 괄호내의 것은 제8고의 끝에 있는 주로부터 취한 것이다.

11) “상업비는 비록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손실로 되는 지출로 보아야 한다”(케네「경제표의 분석」, 데르 편찬「중농주의자」 제1부, 파리, 1846년, 71페이지). 케네에 의하면 상인들 간의 경쟁에 의하여 초래되는 이득 즉 경쟁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보수 또는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제1차적 판매자 및 소비자인 구매자를 위한 손실의 경감(Privation de perte)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손실의 경감은 상업이 그 자체로서 수송비와 관계가 없는 단순한 교환으로 고찰하든 그렇지 않고 수송비와 결부시켜 고찰하든 간에 상업에 의하여 얻어지는 현실적 생산물 또는 부의 증대는 아닌 것이다”(145~146페이지). [케네「발췌」, 저작집, 러시아어 역, 1896년판, 「상업에 관하여」 150페이지 참조]. “상업비는 만약 중개비가 들지 않는다면 구매자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하여(자본가로서의 상인과 상인자본은 나중에서야 비로소 고찰할 것이므로) 우리는 구매 및 판매의 대리자가 자신의 노동을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하자. 그는 W-G 및 G-W라는 이 조작들에 자기의 노동력과 자기의 노동시간을 지출한다. 따라서 그가 이렇게 하여 살아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예컨대 방적 또는 환약 제조를 하여 살아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는 재생산과정에서 하나의 필요한 비록 비생산적이기는 하나 기능을 수행하는바, 그것은 재생산과정 자체가 비생산적 기능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노동하나 그의 노동의 내용은 가치도 생산물도 창조하지 않는다. 그 자신이 생산의 비생산적 비용(*faux frais*)에 속한다. 그의 효용(効用)은 그가 비생산적 기능을 생산적 기능으로 또는 비생산적 노동을 생산적 노동으로 전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이 기능을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이전시킴으로써 그러한 전화가 성취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기적일 것이다. 오히려 그의 효용은 그의 활동에 의하여 이 비생산적 기능에 지출되는 사회의 노동력과 노동시간의 부분이 감소되는데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그는 더 나은 지불을 받는다 하더라도 단순한 고용노동자라고 가정하자. 그가 받는 지불이 여하튼 간에 고용노동자로서의 그는 자기 시간의 일부를 무상으로 노동한다. 그는 아마도 하루에 8노동시간분의 새로 창조된 가치를 받고 10시간 동안 일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노동의 결과로 사회적 생산물의 일부가 그에게 넘어온다 하더라도 그의 8시간분의 필요노동과 마찬가지로 그가 수행하는 두 시간분의 잉여노동도 역시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 첫째로 사회적으로 고찰할 때 10시간분의 노동력이 단순한 이 유통기능에 소비된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는, 생산적 노동을 위해서는 소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둘째로 이 두 시간분의 잉여노동이 그것을 수행한 개인에 의하여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그것에 대하여 지불하지 않는다. 사회는 이것으로써 아무런 보충적 생산물 또는 보충적 가치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가 지불하는 가격 전체를 받게 될 생산물 판매자에 의하여 부담된다”(163페이지). 토지소유자들과 생산자들은 임금지불자(*salarants*)이며, 상인들은 임금수령자(*salaries*)이다(164페이지). 케네 「경제의 제문제」 데르 편찬 「중농주의자」 제1부, 파리, 1846년).

그러나 그에 의하여 대표되는 유통비는 5분의 1 만큼 즉 10시간분으로부터 8시간분으로 감소된다. 사회는 그를 대리자로 하는 이 현실적 유통기간의 5분의 1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등가도 지불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자본가가 이 대리자를 사용한다면 두 시간분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자본의 유통비—이것은 그의 소득의 공제분을 이룬다—는 감소된다. 자본가에 대하여 이것은 적극적인 이득으로 되는바, 왜냐하면 그의 자본 증식상의 소극적인 제한이 협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립적인 소상품생산자들이 그들 자신의 시간의 일부를 매매에 지출한다면 이 시간은 다만 그들의 생산적 기능의 중간에 지출되는 시간으로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생산기간으로부터 떼어내는 시간으로 된다.

여하튼 이에 지출되는 시간은 전환되는 가치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는 유통비이다. 이것은 가치를 상품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다.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자가 유통 대리자로서 나타나는 한, 그가 직접적인 상품생산자와 구별되는 점은 다만 그가 보다 더 큰 규모로 매매한다는 것 따라서 또 보다 더 큰 범위에서 유통대리자로서 기능한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의 기업의 범위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유통대리자를 고용노동자로서 구매(고용)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하더라도 또는 그렇게 할 수 있게 한다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사태의 본질은 변동되지 않는다. 노동력과 노동시간이 어느 정도까지는 유통과정(단순한 형태전화인 한에 있어서의)에 지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출이 추가적 자본투하로서 나타난다. 그리하여 가변자본의 일부분이 다만 유통에서 기능하는 이러한 노동력의 구입에 투하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자본 전대는 생산물도 가치도 창조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대자본이 생산적으로 기능하는 규모를 그만큼 축소시킨다. 이것은 생산물의 일부가 생산물의 나머지 부분을 매매하는 기계로 전화된 경우와 동일하게 된다. 이 기계는 생산물로부터의 공제분이다. 그것은 유통에 지출되는 노동력 등등을 감소시킬 수는 있다 하더라도 생산과정에서 협조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다만 유통비의 일부를 이룰 뿐이다.

2. 부 기

현실적 매매 외에 부기에서도 노동시간이 지출되는바, 이 부기에는 그

밖에 펜, 잉크, 종이, 사무책상, 사무실비 같은 대상화된 노동도 들어간다. 따라서 이 기능에는 일방으로 노동력이 지출되며 타방으로 노동수단이 지출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사정은 구매기간 및 판매기간의 경우와 전혀 마찬가지이다.

자본은 그것의 순환 내부에 있어서의 통일로서는, 운동 중에 있는 가치로서는, 그것이 생산분야에 있든 또는 유통분야의 두 단계에 있든 간에 다만 관념적으로만, 계산화폐의 모습으로서 우선 상품생산자 또는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자의 머리 속에 존재한다. 이 운동은 가격의 결정 또는 상품가격의 계산도 포함하는 부기에 의하여 확정되며 통제된다. 그리하여 생산의 운동 그리고 특히는 가치증식의 운동—이 경우에는 상품이 다만 가치의 담당자로서, 가치로서의 관념적 존재가 계산화폐로 확정되어 있는 물건들의 명칭으로서 나타난다—이 표상 속에 상징적으로 묘사된다. 개별적인 상품생산자가 다만 자기의 머리 속에서 부기계산을 하거나(예컨대 농민이 그렇다. 자본주의적 농업만이 비로소 기장을 하는 차지농업가를 낳는다) 또는 자기의 생산기간이 아닌 때에 다만 찡찡이 자기의 지출과 소득, 지불기한 등등을 기장하는 동안에는 그의 이 기능과 이 경우에 그가 소비하는 종이 등등과 같은 노동수단은 노동시간과 노동수단의 추가적 소비를 표시하며, 이것들은 필요하기는 하나 그러나 그가 생산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시간과 노동수단—현실적 생산과정에서 기능하고 생산물 및 가치의 형성에 들어가는—으로부터의 공제분을 이룬다는 것은 명백하다.¹²⁾ 이 기능 자체의 본성은 그것이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자의 수중에 집중되어 다수의 소상품생산자들의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자본

-
- 12) 중세기에는 농업부기가 수도원에만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본 바와 같이(제1부 조선어 역, 제1분책 514페이지) 이미 고대 인도의 공동체들에서는 농업부기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부기가 공동체 공무원의 전문적인 기능으로 자립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분업에 의하여 시간, 노동 및 비용이 절약된다. 그러나 생산과 생산에 관한 부기는 선하(船荷)와 선하증권이 서로 다르듯이 다른 문건이다. 부기원으로서 공동체 노동력의 일부가 생산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그의 기능과 관련된 비용들은 그 자신의 노동에 의하여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생산물로부터의 공제분으로써 보상된다. 자본가의 부기원에 있어서도 필요한 변경

가의 기능으로서, 대규모적 생산과정 내부에서의 기능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기능이 획득하는 규모로 말미암아 변경되는 것도 아니며, 이 기능이 부수적 사무로 되어 있었던 생산적 기능으로부터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변경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이 기능이 전적으로 위임되는 특수한 대리자의 기능으로서 자립화됨으로 말미암아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만약 어떤 기능이 그 자체로서 즉 그것이 자립화되기 이전에 생산물 및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분업 즉 기능의 자립화에 의하여 그 기능이 그러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새로 자기의 자본을 투하하는 자본가는 부기원 등등의 고용 및 부기수단들의 구입에 자본의 일부분을 투하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자본가의 자본이 이미 기능하고 있으며 자체의 부단한 재생산과정에 있다면 그는 상품생산물의 일부를, 화폐로의 전화에 의하여 부단히 부기원, 사무원 등등에 재전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의 이 부분은 생산과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유통비, 전체 수입으로부터의 공제분에 속한다(전문적으로 이 기능을 위하여 사용되는 노동력 그것에 관해서도 동일한 것을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방으로는 부기에서 발생하는 비용 즉 이것을 위한 노동시간의 비생산적 지출과 타방으로는 단순한 구매기간 및 판매기간의 그것과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후자는 다만 생산과정의 일정한 사회적 형태로부터 즉 그것이 상품의 생산과정이라는 데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과정의 통제 및 관념적 개괄의 수단으로서의 부기는 과정이 사회적 규모에서 수행되고 순전히 개인적인 성격을 상실하면 할수록 더욱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부기는 분산된 수공업생산 및 농민적 생산에 있어서 보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더 필요하며,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보다 공동체적 생산에서는 더 필요하다. 그러나 부기비용은 생산의 집적에 따라 감소되며, 부기가 사회적 부기로 전화되면 될수록 더욱 감소된다.

여기에서는 단순한 형태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유통비의 일반적 성격만이 문제로 되고 있다. 이 비용의 모든 세부형태들에 들어갈 필요는 여기에서는 없다. 그러나 가치의 순전한 형태전화의 영역에 속하며 따라서 생산과정의 일정한 사회적 형태로부터 나오는 이것들 기능들—개별적인 상

을 가하면 인도 공동체의 부기원에 있어서와 사정이 마찬가지로이다. (제2고에서).

품생산자에 있어서는 있을까 말까 한 것에 불과하며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계기들이며 그리고 그의 생산적 기능들과 함께 진행되거나 또는 그것들과 엉켜있는 기능들이 대량적인 유통비로서 사람들을 얼마나 놀라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 업무가 분리되어 은행 등등 또는 개별적 기업의 현금출납원의 전문적 기능으로서 거대한 규모로 집중되어 있을 때의 화폐의 단순한 수납과 지출의 예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유통비들은 그것들이 모습의 변경에 의해서는 성격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

3. 화 폐

어떤 생산물이 상품으로서 생산되든 또는 상품으로서 생산되지 않든 간에 그것은 항상 부의 소재적 모습이며, 개인적인 또는 생산적인 소비에 들어가게 될 사용가치이다. 상품으로서의 그것의 가치는 관념적으로 가격에 존재하는바, 가격은 상품의 현실적인 사용상 모습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금 은과 같은 일정한 상품들이 화폐로서 기능하며 또 그러한 것으로서 전혀 유통과정에만 머무른다는(그것들은 퇴장화폐, 예비금 등등으로서도 비록 잠재적이지만 유통분야에 머무른다) 사정은 순전히, 생산과정의 일정한 사회적 형태인 상품의 생산과정의 산물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상품이 생산물의 일반적 모습으로 되며, 생산물의 최대 분량이 상품으로서 생산되고 따라서 화폐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상품량 즉 사회적 부중에서 상품으로서 기능하는 부분이 부단히 장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유통수단, 지불수단, 예비금 등으로서 기능하는 금 은의 양도 증가한다. 화폐로서 기능하는 이 상품들은 개인적 소비에도 생산적 소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화폐는 다만 유통을 위한 기계로서만 복무하는 형태로 고정된 사회적 노동이다. 사회적 부의 일부분이 이 비생산적인 형태로 구속되는 외에도 화폐의 마멸은 그것의 부단한 보상을, 또는 생산물형태로서의 보다 더 많은 사회적 노동을 보다 더 많은 금과 은으로 전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자본주의적으로 발전된 민족들에서는 부중에서 화폐형태로 구속되어 있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막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에 드는 비용이 상당한 규모에 달한다. 화폐상품으로서의 금과 은은 사회에 대해서는 다만 생산의 사회

적 형태로부터 발생하는 유통비를 이룬다. 그것은 상품생산 일반의 비생산적 비용 (faux frais)이며, 상품생산 특히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 증대된다. 그것은 유통과정에 희생으로 바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 부의 일부분이다.¹³⁾

제2절 보관비

가치의 단순한 형태변화, 순수히 고찰된 유통에서 발생하는 유통비는 상품의 가치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와 같이 하여 지출되는 자본부분은 우리가 자본가를 염두에 두는 한, 생산적으로 지출되는 자본으로부터의 단순한 공제분이며, 그리고 우리가 전체 사회를 고찰한다면 비생산적으로 지출된 노동력이다. 지금 우리가 고찰하는 유통비는 그 본성이 다른 것이다. 그것은 유통에서 지속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생산과정—따라서 그 생산적 성격이 유통형태에 의하여 은폐되어 있을 따름인—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타방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산 노동이든 대상화된 노동이든 간에 노동의 단순한 비용이며 비생산적인 지출일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 자본가에 있어서는 가치창조적으로 작용하며 그들의 상품의 판매가격에 대한 첨가분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이 비용이 생산분야가 다름에 따라 다르며 또 동일한 생산분야내에서도 개별적 자본이 다름에 따라 종종 다르다는 데로부터 나온다. 이 비용은 상품가격에 첨가됨으로써 그것이 개별적 자본가들에게 부담되는 정도에 상응하여 분배된다. 그러나 가치를 첨가하는 모든 노동은 잉여가치도 첨가할 수 있으며 또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항상 잉여가치를 첨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노동에 의하여 창조되는 가치는 그 노

13)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는 화폐는 나라의 자본의 일정한 부분으로서 그것의 나머지 부분의 생산성을 용이하게 하든가 증대시키기 위하여 생산적 목적으로부터 완전히 유리된 것이다. 따라서 금을 유통수단으로서 취하기 위하여 부의 일정한 분량이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생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계를 만들기 위하여 부의 일정한 분량이 필요한 것과 같다”(『이코노미스트』 제5권, 519페이지).

동 자체의 크기에 의존하는데 그것에 의하여 창조되는 잉여가치는 자본가가 그 노동에 대하여 지불하는 정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하여 상품의 사용가치에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으면서 상품을 고가하게 만드는, 따라서 사회적으로 보면 생산상의 비생산적 비용 (faux frais)에 속하는 비용들이 개별적 자본가들에 있어서는 치부의 원천으로 될 수 있다. 타방으로 이러한 유통비에 의하여 상품가격에 첨가되는 증가분이 이 비용을 고르게 분배할 따름이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비용의 비생산적인 성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예컨대 보험회사들은 개별적 자본가들의 손실을 전체 자본가계급간에 분배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와 같이 하여 균등화되는 손실이 사회적 총자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의연히 손실이라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1. 저장 형성 일반

생산물이 상품자본으로서 존재하는 동안 또는 시장에 머물러 있는 동안, 즉 생산물이 나오는 생산과정과 그것이 들어가는 소비과정간의 중간기간에 그것이 있는 한에서는 생산물은 상품저장을 형성한다. 시장에 있는 따라서 저장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상품으로서는 상품자본은 매개순환에서 2중으로 나타난다. 즉 한 번은 그 순환이 고찰되고 있는, 과정중에 있는 자본 자체의 상품생산물로서이며 다른 한 번은 이와는 반대로 구매되어 생산자본으로 전화되기 위하여 시장에 있지 않으면 안되는 다른 어떤 자본의 상품생산물로서이다. 물론 이 후자의 상품자본이 다만 주문에 의하여 비로소 생산되는 수도 있다. 그 때에는 그것이 생산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중단이 생긴다. 그러나 생산 및 재생산과정의 흐름은 일정한 양의 상품(생산수단)이 부단히 시장에 있으며 따라서 저장을 형성할 것을 요구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생산자본은 노동력의 구입을 포괄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화폐형태는 노동자가 시장에서 그 대부분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생활수단들의 가치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절(節)의 진행에 따라 우리는 이 문제에 더 자세히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미 다음과 같이 점이 명백하다. 만약 상품생산물로 전화되었으며 그리하여 이제는 판매 즉 화폐로 재전화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또 이제는 상품자본으로서 시장에서 기능하는 과정중에 있는 자본가치의 입

장에서 본다면 상품자본이 저장을 형성하는 상태는 목적에 어그러지며 본의가 아닌 시장채류이다. 보다 급속히 판매되면 될수록 재생산과정도 그만큼 원활하다. $W'-G'$ 라는 형태전화에서의 지체는 자본의 순환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적인 물질변환을 방해하며 자본이 앞으로 더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방해한다. 타방으로 $G-W$ 에 있어서는 시장에서의 상품의 부단한 현존 즉 상품저장이 재생산과정과 새로운 또는 추가적 자본의 투하를 원활히 하는 조건으로서 나타난다.

상품자본이 상품저장으로서 시장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각종 건축물 즉 상점, 상품저장소, 상품창고들이 필요하며 따라서 불변자본의 지출이 필요하다. 또한 상품들을 저장소에 입고하기 위한 노동력에 대하여 지불이 필요하다. 그 밖에 상품들은 손상되며 유해로운 자연적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들로부터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추가적인 자본이 일부는 노동수단 즉 대상적 형태로, 일부는 노동력으로 지출되지 않으면 안된다.¹⁴⁾

이와같이 상품자본 형태 따라서 또 상품저장 형태로의 자본의 채류는 생산분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유통비로 인정되는 비용들을 발생시킨다. 이 유통비는 그것이 일정한 정도까지 상품가치에 들어가며 따라서 상품가격을 등귀시킨다는 점에서 제1절에서 서술한 유통비와 구별된다. 여하간에 상품저장을 유지하며 보관하는 데 복무하는 자본과 노동력은 직접적인 생산과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타방으로 여기에 충용되는 자본들은, 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의 노동력도 포함하여 사회적 생산물로부터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그것들의 지출은 노동생산력의 감소와 마찬가지로 작용하며 그리하여 일정한 유용효과를

14) 코베트가 1841년에 계산한 9개월 동안의 소맥 저장비는 감모량 1/2%, 소맥가격에 대한 이자 3%, 창고 임차료 2%, 선별 및 운반요금 1%, 인도작업비 1/2%, 도합 7%, 즉 1쿼터당 소맥가격 50실링에 대하여 3실링 6펜스이다(T. 코베트 「개인의 부의 원인과 양식에 관한 연구…」 런던, 1841년 [140페이지]). 철도위원회 앞에서 한 리버풀 상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곡물저장의 (순)비생산적 비용은 1865년에 쿼터당 월 2펜스 또는 톤당 9~10펜스였다(『칙명 철도위원회』 1867년, 증언록, 19페이지, 제331호).

얻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량이 증대된다. 이것은 비생산적 비용(unkosten)이다.

이제 상품저장의 형성에 의하여 조건지어지는 유통비가 다만 현존하는 가치가 상품형태로부터 화폐형태로 전화되는 기간이 긴 데로부터, 따라서 다만 생산과정의 일정한 사회적 형태로부터(다만 생산물이 상품으로서 생산되며 그러므로 화폐로의 전화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데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것은 그 성격에 있어서 제1절에서 든 유통비들과 전혀 마찬가지로 다르다. 타방으로 상품의 가치가 이 경우에 보존 또는 증대되는 것은 사용가치인 생산물 자체가 자본의 지출을 필요로 하는 일정한 대상적 조건하에 옮겨지며 추가적 노동을 사용가치에 작용시키는 조작들을 받기 때문임에 불과하다. 이와 반대로 상품가치의 계산, 이 과정에 관한 부기, 매매 거래는 상품가치가 존재하는 사용가치에 작용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다만 상품가치의 형태와 관계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전제로 된 경우에 있어서 비록 저장 형성(이것은 이 경우에는 본의가 아닌 것이다)과 관련된 이 비생산적 비용들이 다만 형태전화의 지체로부터, 그리고 이 형태전화의 필요성으로부터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들은 그것들의 목적 자체가 가치형태의 전화가 아니라, 가치-사용가치인 생산물들로서 상품 속에 존재하며, 그러므로 다만 사용가치인 생산물 자체의 보존에 의해서만 보존될 수 있는—의 보존이라는 점에서 제1절에서 고찰한 비생산적 비용들과 구별된다. 사용가치는 이 경우에 제고되지도 않고 증대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감소된다. 그러나 그것의 감소는 제한되며 그리하여 사용가치는 보존되는 것이다. 상품 속에 존재하는 전대된 가치 역시 제고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에 새로운 대상화된 노동과 산 노동이 첨가된다.

그러면 더 나아가 연구하여야 할 것은 이 비생산적 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상품생산 일반과, 전반적이며 절대적인 형태로서의 상품생산 즉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의 독특한 성격에서 발생하는가 하는 것이며, 타방으로는 그것들이 어느 정도로 온갖 사회적 생산에 공통하며 다만 이 자본주의적 생산 내부에서는 특수한 모습, 특수한 현상형태를 취하는가 하는 것이다.

A. 스미드는 저장 형성이 자본주의적 생산에 독특한 현상이라는 부당한 관점에 서고 있었다.¹⁵⁾ 보다 최근의 경제학자들 예컨대 레일러는 거

꾸로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 저장 형성이 감소된다고 주장한다. 시스몽디는 이것을 자본주의적 생산의 부정적 측면이라고까지 보고 있다.

사실에 있어서는 저장은 세 개의 형태로 즉 생산자본의 형태, 개인적 소비фон드의 형태 및 상품저장 또는 상품자본의 형태로 존재한다. 저장은 비록 그것의 절대적 크기에 있어서는 세 개의 모든 형태에서 동시에 장성할 수 있지만 한 형태의 저장이 증대될 때에는 다른 형태의 그것은 상대적으로 감소된다.

생산이 직접 자체 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고 소부분만이 교환 또는 판매를 위하여 생산되며, 따라서 사회적 생산물이 전혀 상품형태를 취하지 않거나 또는 소부분만이 상품형태를 취하는 곳에서는 상품형태로서의 저장 또는 상품저장이 부의 다만 적은, 얼마 안되는 부분만을 이룬다는 것은 처음부터 명백하다. 그러나 소비фон드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크며 특히 본래의 생활수단фон드는 그러하다. 옛날과 같은 농민경제를 상기하기만 하여도 충분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생산물의 압도적 부분이 직접 상품저장을 형성함이 없이—그것이 그것의 소유자의 수중에 남는 바로 그 때문에—저장적인 생산수단 또는 생활수단으로 전화된다. 그것은 상품저장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바, 스미드의 견해에 의하면 바로 이 때문에 그러한 생산방식에 기초한 사회들에서는 어떠한 저장도 없다는 것이다. A. 스미드는 저장의 형태와 저장 자체를 혼동하고 있으며, 사회는 종래에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았으며 내일의 일은 요행에 맡기었다고 생각한다.¹⁶⁾ 이것은 유치한 오해이다.

15) [「국부론」] 제2편 서론.

16) A. 스미드는 저장 형성이 생산물의, 상품으로의 전화에서 그리고 소비적 저장의, 상품적 저장으로의 전화에서 비로소 발생한다고 망상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있어서는 오히려 이러한 형태변화는 자체 수요를 위한 생산으로부터 상품생산으로의 이행기에 생산자들의 경제에서 격심하기 짝이 없는 공황을 일으킨다. 예컨대 인도에서는 극히 최근까지 남아 넘치는 해에는 교환대상이 거의 없었던 곡물을 대량적으로 저장하는 관습이 보존되어 있었다. (『보고, 벵갈 및 오릿사의 기근』 하원, 1867년, 제1부, 230페이지 제74호). 미국의 남북전쟁의 결과 돌연히 증대된 면화, 황마 등등에 대한 수요는 인도의 많은 지방들에서 미국생산의 격심

생산자본의 형태로서의 저장은 이미 생산과정에 있거나 또는 적어도 생산자의 수중에 있는 즉 잠재적으로 이미 생산과정에 있는 생산수단들의 형태로서 존재한다. 우리가 전에 본 바와 같이 노동생산능률의 발전에 따라, 따라서 또 이전의 모든 생산방식들보다 노동생산력을 보다 더 발전시키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발전에 따라, 노동수단의 형태로서 생산과정에 종국적으로 합체되고 말며 그 과정에서 다소간에 오랜 기간 부단히 반복 기능하는 생산수단들(건물, 기계 등등)의 양은 부단히 증가되며, 또한 이 증가는 사회적 노동생산력의 발전의 결과인 동시에 전제이다. 이 형태로서의 부가 절대적으로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도 장성하는 것이 (제1부, 제23장, 제2절 참조)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특징이다. 그런데 불변자본의 소재적 존재형태인 생산수단은 비단 이러한 종류의 노동수단들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극히 각이한 가공단계들에 있는 노동재료들과 보조재료들로 되어 있다. 생산의 규모와 협업, 분업, 기계의 적용 등등에 의한 노동생산력의 제고에 따라 나날의 재생산과정에 들어가는 원재료, 보조재료 등등의 양도 증가한다. 이 요소들은 생산장소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와 같이 하여 생산자본의 형태로 존재하는 이러한 저장의 규모는 절대적으로 증가한다. 생산과정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이 저장이 매일 갱신되는가 또는 다만 일정한 기간을 두고 갱신되는가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예컨대 매일 또는 매주일 소비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원료 등등이 언제나 생산장소에 쌓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과정의 부단성은 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의 존재가 매일의 구입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중단들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또 상품생산물이 매일 또는 매주 판매되어 그 결과로서 불규칙적으로만 그것의 생산요소들로 재전화될 수 있다는 사정에도 의존

한 축소, 미가의 등귀 및 생산자들의 개의, 저장 미곡의 판매를 일으켰다. 설상가상으로 1861~186년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마다가스카르 등등으로의 미증유의 미곡수출이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1866년의, 참예한 성격의 기근이 일어났는데 이 기근은 오릿사 지방에서만도 100만명의 인명을 휩쓸어 갔다(동상지, 174, 175, 213, 214페이지 및 제3부 「베힘즈하르에서의 기근에 관한 문제」 32, 33페이지. 여기에서는 기근의 원인중에 낡은 저장의 고갈이 강조되어 있다(제2고에서).

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여하튼 생산자본이 극히 각이한 규모에서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 즉 저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예컨대 방적업자가 면화 또는 석탄을 준비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3개월이나 또는 1개월이나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저장은 비록 그것이 절대적으로는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는 감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각이한 조건들에 의존하는바 이 조건들은 모두 그 본질에 있어서 생산과정에서의 중단이 결코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양의 원료가 공급될 수 있는 속도, 규칙성 및 확실성의 증대에 귀착된다. 이러한 조건들이 적게 충족되면 될수록 즉 공급의 확실성, 규칙성 및 속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생산자본의 잠재적 부분 즉 생산자의 수중에서 아직 가공을 기다리고 있는 원료 등등의 저장이 더욱 크지 않으면 안된다. 이 조건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수준, 따라서 사회적 노동생산력의 발전수준에 역비례한다. 따라서 이 형태로서의 저장도 그렇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장의 감소로서 나타나는 것은(예컨대 레일리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상품자본의 형태로서의 저장 또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상품저장의 감소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동일한 저장의 형태변화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소여의 나라 자체에서 매일 생산되는 석탄량이 크며 따라서 석탄생산의 규모와 정력(精力)이 크다면 방적업자는 자기 생산의 부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큰 석탄저장을 가질 필요가 없다. 석탄공급의 부단하고 확실한 갱신은 이것을 불필요하게 한다. 둘째로 한 과정의 생산물이 생산수단으로서 다른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속도는 운수 및 교통수단의 발전에 의존한다. 운수의 저렴성은 이 경우에 큰 역할을 논다. 예컨대 탄광으로부터 방적공장으로의 석탄의, 부단히 갱신되는 운수는 비교적 저렴한 운수에 의하여 보다 더 장기간용으로 보다 더 다량의 석탄을 준비하는 것보다 고가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이 두 사정은 생산과정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다. 세째로 신용제도의 발전이 영향을 준다. 방적업자가 면화, 석탄 등등의 자기의 저장의 갱신에 있어서 자기의 방사의 직접적인 판매에 의존함이 적으면 적을수록—신용제도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러한 직접적 의존성은 더 적어진다—방사 판매의 요행에 의존하지 않고 소여 규모로 부단한 방사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저장의 상대적 크기가 더욱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네째로 많은 종류의 원

료, 반제품 등등은 생산에 보다 장기간을 요하는데 이것은 특히 농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원료들에 있어서 그러하다. 따라서 생산과정의 중단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물이 낡은 생산물을 교체할 수 있을 때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한 그러한 것들의 일정한 저장이 있어야 한다. 만약 산업자본가의 수중에 있는 이러한 저장이 감소된다면 이것은 그러한 저장이 상인의 수중에서, 상품저장의 형태로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예컨대 운수수단의 발전은 수입항에 놓여있는 면화를 리버풀로부터 맨체스터로 급속히 운반할 수 있게 하며, 그리하여 공장주는 수요에 따라 자기의 면화저장을 비교적 조금씩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신 동일한 면화가 그만큼 더 많은 양으로 리버풀의 상인들의 수중에 상품저장으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저장의 단순한 형태 변화인데 이것을 레일러 등등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 사회적 자본을 고찰한다면 이 경우에도 여전히 동일한 양의 생산물이 저장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개별적 나라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는 예컨대 1년간에 필요한 양의 규모는 운수수단의 발전에 따라 감소된다. 만약 아메리카와 영국간에 많은 수의 기선들과 범선들이 항행한다면 영국에서는 면화저장을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며 따라서 영국에 평균적으로 있지 않으면 안되는 면화저장량은 감소될 것이다. 세계시장의 발전 및 그것과 관련된, 동일한 물품의 획득 원천의 다양화도 바로 동일하게 영향을 준다. 물품은 조금씩 상이한 나라들로부터 상이한 시기에 공급된다.

2. 고유한 의미에서의 상품저장

이미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상품은 생산물의 일반적 형태로 되며 또 자본주의적 생산이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 그렇게 된다. 따라서 생산의 범위가 동등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전의 생산방식들에 비교하든 또는 발전정도가 보다 낮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비교하든 생산물 중 비할 수 없으리 만큼 큰 부분이 상품으로서 존재한다. 그런데 모든 상품—따라서 또 상품에 지나지 않지만 자본가치의 존재형태로서의 상품인 모든 상품자본—은 그것이 생산분야로부터 직접 생산적 또는 개인적 소비로 들어가지 않고 따라서 그 동안에 시장에 있는 한, 상품저장의 요소를 이룬다. 그러므로 생산의 범위가 그

대로 불변이더라도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 상품저장(즉 생산물의 상품형태의 이 자립화 및 고정화)은 그 자체로서 증가한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이것은 저장의 형태변화에 지나지 않는다. 즉 일방에 있어서 상품형태로서의 저장이 증가하는 것은 다만 타방에 있어서 생산 및 소비를 위한 직접적 저장형태로서의 그것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저장의 사회적 형태의 변화에 불과하다. 만약 사회적 총생산물에 비한 상품저장의 상대적 크기뿐만 아니라 그것의 절대적 크기도 동시에 증가한다면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 총생산물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 생산의 규모는 생산물에 대한 직접적 수요에 의해서는 점점 더 적은 정도로 규정되며, 개별적 자본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본의 크기에 의하여, 그의 자본의 증식 충동과 그의 생산과정의 연속 및 확대의 필요성에 의하여 점점 더 큰 정도로 규정된다. 그와 함께 매 개별적 생산분야에서 상품으로서 시장에 있든가 또는 판로를 찾고 있는 생산물량이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상품자본의 형태로 다소간 오랜 기간 고정되는 자본의 양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상품저장은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최대 부분이 고용노동자로, 그날 벌어들인 그날 살아가며 자기의 임금을 매주 받아 매일 지출하는, 따라서 생활수단을 저장형태로서 발견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들로 전화된다. 이 저장의 개개의 요소들이 아무리 심히 유동한다 하더라도 전체 저장이 항상 유동중에 있기 위해서는 그 요소들의 일부가 항상 정체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 모든 계기들은 생산의 형태와 그것에 의하여 전제되는 형태전환—생산물이 유통과정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는—로부터 나온다.

생산물저장의 사회적 형태가 어떠한 간에 그것의 보관은 비용을—생산물의 저장소인 건물, 용기 등등과 또한 생산물의 본성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유해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되지 않으면 안되는 노동 및 생산수단들을—요구한다. 저장이 사회적으로 집중되면 될수록 이 지출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이 지출은 대상화된 형태이든 또는 산 형태이든 간에 사회적 노동의 일부분을 이루며, 따라서 자본주의적 형태에 있어서는 자본의 지출을 이루는바, 그것은 생산물의 형성 그것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따라서 생산물로부터의 공제분을 이룬다. 이 지

출들은 필요하며, 사회적 부의 비생산적 비용이다. 그것들은 사회적 생산물의 보존비인바, 상품저장의 요소로서의 사회적 생산물의 존재가 단순히 생산의 사회적 형태 따라서 상품형태 및 그 형태의 전화로부터 발생하든 또는 우리가 상품저장을 다만 생산물저장—비록 상품저장의 형태, 유통과정에 속하는 생산물저장의 이 형태로서는 아니더라도 모든 사회에 공통적인—의 하나의 특수한 형태로서 고찰하든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비용들이 어느 정도로 상품가치에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자본가가 생산수단 및 노동력에 전대한 그의 자본을 생산물로, 판매되어야 할 일정한 양의 기성 상품으로 전화시켰는데 이것이 판매되지 않고 저장된다면 이 기간 중 그의 자본의 증식과정이 정체될 뿐만이 아니다. 이 저장을 건물에 보관하는 비용, 추가적인 노동에 대한 비용 등등은 직접적인 손실을 이룬다. 만약 자본가가, 나의 상품은 6개월간이나 판매될 수 없었으며 그리하여 이 6개월간 그것을 보관하는 데 이러 이러한 액수의 자본을 늘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x 액의 비생산적 비용을 들였다고 말한다면 결국 나타난 구매자는 그를 비웃을 것이다. 구매자는 말할 것이다. 그것은 더욱 안되었는데요(Tant pis pour vous), 당신의 곁에 다른 판매자가 있는데 그의 상품은 바로 엇그제 만든 것이다. 당신의 상품은 팔다 남은 것이고 아마도 만든 지가 오래 되었으므로 다소나마 손상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의 경쟁자보다 더 늦게 팔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라고. 상품의 생활조건들은 상품생산자가 자기 상품의 현실적 생산자인가 또는 그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자 즉 사실상 그것의 현실적 생산자들의 대표자에 불과한가 하는 것에 의하여는 하등 변화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물건을 화폐로 전화시켜야 한다. 그 물건이 상품형태로 고정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비생산적 비용들은 그의 개인적인 모험에 속하며 이것은 그의 구매자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구매자는 그에게 그의 상품의 유통기간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또는 예측되는 가치변혁의 시기에 자본가가 자기 상품을 고의로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가 추가적인 비생산적 비용을 실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다만 가치변혁이 일어나는가 아닌가, 그의 투기가 적중하는가 안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가치변혁은 그의 비생산적 비용의 결과가 아니다. 그리하여 저장의 형성이 유통의 정체를 초래하는 한, 이로

1/10년이다. 따라서 그것의 회전기간의 역수는 $10/1=10$ 이다)고.

다음에 또 $n=1$ 이라고 하면 $M'=m'$ 이며 또 n 이 1보다 크다고 하면 즉 전대자본이 연 1회 이상 회전한다고 하면 또는 회전자본이 전대자본보다 크다고 하면, M' 은 m' 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n 이 1보다 작다고 하면 즉 1년 동안에 회전한 자본이 전대자본의 일부에 불과하며 따라서 회전기간이 1년 이상에 걸친다고 하면 M' 은 m' 보다 작다.

이 마지막 경우를 잠깐 고찰하여 보자.

전례의 모든 전제를 그대로 두고 다만 회전기간만이 55주간으로 연장된다고 하자. 노동과정은 매주 100파운드 스텔링의 가변자본을, 따라서 회전기간중에는 5,500파운드 스텔링을 요하며 매주 100m를 생산하고, 따라서 m' 은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100%이다. 이 경우에 회전기간은 $1+1/10$ 년(1년을 50주간이라고 하고) $=11/10$ 년이기 때문에 회전수 n 은 $50/55=10/11$ 이다.

$M'=100\% \times 5,500 \times \frac{10}{11} / 5,500 = 100 \times 10/11 = 1,000/11 = 90 \frac{10}{11} \%$ 이며 따라서 100%보다 작다. 실제로, 잉여가치의 연율이 100%라면 5,500v는 1년간에 5,500m를 생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11/10$ 년이 요구된다. 이 5,500v는 1년 동안에 5,000m를 생산하는데 불과하며 따라서 잉여가치의 연율은 $5,000m/5,500v = 10/11 = 90 \frac{10}{11} \%$ 이다.

그러므로 잉여가치의 연율 즉 1년간에 생산된 잉여가치와 전대된 가변자본 전체(1년간에 회전한 가변자본과 구별되는)와의 비교는 단순히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자본의 현실적 운동 자체가 이러한 대비를 낳게 하는 것이다. 연도말에 자본 A의 소유자에게 있어서는 그가 전대한 500파운드 스텔링의 가변자본이 환류하여 있고 그 외에 5,000파운드 스텔링의 잉여가치가 있다. 그의 전대자본의 크기를 표현하는 것은 그가 1년간에 총용한 자본량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의 수중으로 환류하는 자본량이다. 연도 말에 자본이 일부는 생산적 저장으로서 존재하고 일부는 상품자본 또는 화폐자본으로서 존재하는가 안하는가 또 이 자본이 여하한 비율로써 이 각이한 부분들로 분할되는가 하는 것은 본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다. 자본 B의 소유자에게 있어서는 그의 전대자본 5,000파운드 스텔링이 환류하여 있고 그밖에 또 5,000파운드 스텔링의 잉여가치가 있다. 자본 C(마지막에 고찰한 5,500파운드 스텔링)의 소유자에게

있어서는 1년간에 5,000파운드 스텔링의 잉여가치가 생산되어 있으나(5,000파운드 스텔링이 투하되고 잉여가치율은 100%인 경우에) 그러나 그의 전대자본은 아직 환류하여 있지 않으며 생산된 그의 잉여가치도 마찬가지로 환류하여 있지 않다.

$M' = m'n$ 이 표현하는 것은 1회전기간 중에 충용된 가변자본에 타당하는 잉여가치율 즉 1회전기간 중에 생산된 잉여가치/1회전기간 중에 충용된 가변자본에, 전대된 가변자본의 회전기간 또 재생산기간의 수를, 또는 전대된 가변자본이 자체의 순환을 갱신하는 기간의 수를 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1부 제4장(「화폐의 자본으로서의 전화」)과 다음에는 제1부 제21장(「단순재생산」)에서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자본가치는 일반적으로 전대되는 것이고 지출되는 것이 아니니, 왜냐하면 이 가치는 그것이 자체의 순환의 각이한 단계들을 통과한 후에 다시 자체의 출발점으로—그것도 잉여가치만큼 증식되어—복귀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대된 것으로서의 자본가치를 특징짓는다. 자본가치의 출발점으로부터 그것의 복귀점에 이르는 기간은 바로 자본가치가 전대되어 있는 기간이다. 자본가치가 통과하는 전체 순환은 자본가치의 전대로부터 그것의 환류에 이르는 기간에 의하여 측정되는데 그것은 자본가치의 회전을 이루며, 이 회전의 지속기간은 회전기간을 이룬다. 이 기간이 경과하고 순환이 종결되면 동일한 자본가치는 동일한 순환을 새로 개시하며 따라서 또 새로 자기증식을 하고 잉여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 A에 있어서와 같이 가변자본이 1년에 10회 회전한다면 1년간에 동일한 전대자본에 의하여 1회전기간에 해당하는 잉여가치량이 10회 생산된다.

우리는 전대의 본성을 자본주의 사회의 관점에서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1년 동안에 10회 회전하는 자본 A는 1년 동안에 10회 전대된다. 그것은 새로운 회전기간마다 새로이 전대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A는 1년을 통하여 동일한 자본가치 500파운드 스텔링 이상을 전대하는 일은 결코 없으며, 또 사실상 우리의 고찰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생산과정을 통하여 500파운드 스텔링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500파운드 스텔링이 1순환을 완료하자마자 A는 이 500파운드 스텔링으로 하여금 다시 동일한 순환을 개시하게 한다. 자본이 그 본성으로

보아 자본인 성격을 보존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반복되는 생산과정에서 부단히 자본으로서 기능함으로써만이다. 또 이 자본은 5주간 이상은 결코 전대되지 않는다. 회전이 보다 오래 지속되면 이 자본으로써는 부족하다. 회전기간이 단축되면 자본의 일부는 과잉으로 된다. 5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 10개가 전대되는 것이 아니라 5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 1개가 순차적인 기간들에 10회 전대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가치의 연율은 10회 전대되는 5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 즉 5,000파운드 스텔링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1회 전대되는 5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에 대하여 계산된다. 이는 마치도 1탈러가 10회 유통할 때 그것이 10탈러의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언제나 유통 중에 있는 단 1탈러를 표시함에 불과한 것과 전혀 마찬가지로, 사람의 손을 바꿀 때마다 1탈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중에서는 그것은 여전히 1탈러라는 동일한 가치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본 A는 그것이 환류할 때마다 그리고 또 연도 말에 환류할 때에 그 소유자가 언제나 5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동일한 자본가치를 가지고 조작하는 데 불과하다는 것을 표시한다. 따라서 또 그의 수중으로 매번 환류하는 것은 500파운드 스텔링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의 전대자본이 500파운드 스텔링 이상인 일은 결코 없다. 그러므로 이 전대자본 500파운드 스텔링은 잉여가치의 연율을 표현하는 분수의 분모를 이룬다. 잉여가치의 연율을 표시하는 상기 공식은 $M' = m'vn/v = m'n$ 였다. 현실적인 잉여가치율 m' 는 m/v 즉 잉여가치량을 생산한 가변자본으로서 이 잉여가치량을 나눈 것과 동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m'n$ 에 있어서 m' 의 치(値) 즉 m/v 를 놓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면 다른 공식 $M' = mn/v$ 을 얻는다.

그러나 5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은 그것이 10회 회전함으로써 따라서 또 그것의 전대가 10회 갱신됨으로써 10배나 큰 자본 즉 5,0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는 마치도 1년에 10회 유통하는 500개의 탈러 주화가 1년에 1회밖에 회전하지 않는 5,000개의 탈러 주화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전혀 마찬가지로.

제2절 개별적 가변자본의 회전

“생산과정은 그 사회적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연속적인 것이

아니면 안된다. 즉 주기적으로 동일한 제 단계를 계속 부절히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때문에 어떠한 사회적 생산과정도 그것을 부단한 연관과 갱신의 끊임 없는 흐름에서 고찰할 때에는 그것은 동시에 재생산과정이다……자본가치의 주기적 증식물 즉 기능자본의 주기적 과실로서는 잉여가치는 자본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의 형태를 취한다”(제1권, 제21장)[조선어 역, 제1권, 제2분책, 263~264페이지].

자본 A의 경우에는 5주간의 회전기간이 10개 있다. 제1회전기간에는 500파운드 스텔링의 가변자본이 전대된다. 즉 매주 100파운드 스텔링이 노동력으로 전환되어 제1회전기간의 종말에는 500파운드 스텔링이 노동력에 지출되어 있다. 본래는 총전대자본의 일부였던 이 500파운드 스텔링은 자본이 아니게 되었다. 그것은 노임으로 지불되고 말았다. 노동자는 또 이 500파운드 스텔링을 생활수단의 구입에 지불해버리며 그리하여 5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만큼의 생활수단을 소비한다. 따라서 이 가치액만큼의 상품량이 소멸된다(노동자가 예컨대 화폐 등등으로서 저축하는 것도 역시 자본이 아니다). 이 상품량은 자본가의 불가결한 도구인 노동자의 노동력을 작용능력 있는 상태로 유지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비생산적으로 소비된다. 그러나 다음으로 이 500파운드 스텔링은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가치(따라서 가격) 만큼의 노동력으로 전환된다. 노동력은 노동과정에서 자본가에 의하여 생산적으로 소비된다. 그리하여 제5주 말에는 1,000파운드 스텔링의 새로 창조된 가치가 나온다. 그것의 절반인 500파운드 스텔링은 노임지불에 지출된 가변자본의 재생산된 가치이다. 나머지 절반인 500파운드 스텔링은 새로 생산된 잉여가치이다. 그러나 5주간분의 노동력—이것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자본의 일부가 가변자본으로 전화되었다—이 생산적으로이기는 하지만 역시 지출되며 소비된다. 어제 활동한 노동은 오늘 활동한 것과 동일한 노동이 아니다. 어제 활동한 노동의 가치는 그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잉여가치와 함께 지금은 노동력 자체와는 구별되는 물건인 생산물의 가치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생산물이 화폐로 전화됨으로써 그 생산물의 가치 중 전대된 가변자본의 가치와 동등한 부분은 새로 노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따라서 또 새로 가변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재생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폐형태로 재전화된 자본가치로써 동일한 노동자들 즉 노동력의 동일한 담당자들이

고용된다고는 하는 사정은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 자본가는 제2회전기간에는 종래의 노동자들 대신에 새로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5주간으로 되는 10개의 회전기간에 순차로 노임으로 지출되는 것은—이 노임은 다시 노동자들에 의하여 생활수단으로 지출된다—5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이 아니라 5,0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이다. 이렇게 전대된 자본 5,000파운드 스텔링은 소비된다. 그것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타방으로는 또 500파운드 스텔링이 아니라 5,0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만큼의 노동력이 순차로 생산과정에 합체되고 5,000파운드 스텔링에 해당하는 그 자체의 가치를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분으로 5,000파운드 스텔링의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제2회전기간에 전대되는 가변자본 500파운드 스텔링은 제1회전기간에 전대된 자본 500파운드 스텔링과 동일하지 않다. 이 후자는 소비되고 노임으로 지출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제1회전기간에 상품형태로 생산되고 화폐형태로 재전화된 새로운 가변자본 500파운드 스텔링에 의하여 보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새로운 화폐자본 500파운드 스텔링은 제1회전기간에 새로 생산된 상품량의 화폐형태이다. 자본가의 수중에 동일한 화폐액 500파운드 스텔링, 즉 잉여가치를 도외시한다면 그가 최초로 전대한 바로 그만큼의 화폐자본이 다시 있다는 사정은 그가 운용하는 것이 새로 생산된 자본이라는 사실을 은폐한다(상품자본의 가치 중 불변자본부분들을 보상하는 기타의 구성부분들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들의 가치는 새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가 존재하는 형태가 변화할 따름이다). 제3회전기간을 들어보자. 이 경우에 명백한 것은 세번째 전대된 자본 500파운드 스텔링은 종래의 자본이 아니라 새로 생산된 자본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 자본은 제1회전기간이 아니라 제2회전기간에 생산된 상품량의 화폐형태 즉 이 상품량 중 전대된 가변자본의 가치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 부분의 화폐형태이기 때문이다. 제1회전기간에 생산된 상품량은 이미 판매되었다. 이 상품량의 가치 중 전대자본가치의 가변부분과 동등한 부분은 제2회전기간의 새로운 노동력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상품량을 생산하였으며, 이 새로운 상품량이 다시 판매되었고, 그것의 가치의 일부가 제3회전기간에 전대되는 자본 500파운드 스텔링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10개의 회전기간을 통하여 진행된다. 즉 이 기간

중 5주간마다 새로 생산된 상품량(이것의 가치는 또한 그것이 가변자본을 보상하는 한, 새로 생산되는 것이고, 불변적 유동자본부분에 있어서와 같이 다만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은 새로운 노동력을 부단히 생산과정에 합체시키기 위하여 시장에 내던져진다.

따라서 전대된 가변자본 500파운드 스텔링의 10회의 회전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은 이 자본 500파운드 스텔링이 10회에 걸쳐 생산적으로 소비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며, 또 5주간분의 가변자본이 50주간에 걸쳐 충용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가변자본 500파운드 스텔링의 10배가 50주간에 충용되며, 5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은 언제나 5주간분에 불과하며 5주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 생산된 5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일은 자본 A의 경우에도 자본 B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 그러나 여기에서 양자의 차이가 시작된다. 제1기간 5주간의 종말에는 B에 의하여서도 A에 의하여서와 마찬가지로 가변자본 500파운드 스텔링이 전대되어 있으며 지출되어 있다. B에 의하여서도 A에 의하여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의 가치는 노동력으로 전환되었으며 또 이 노동력에 의하여 새로 생산된 생산물 가치 중 전대된 가변자본 5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와 동등한 부분에 의하여 보상되고 있다. B에 있어서도 A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은 지출된 가변자본의 가치 500파운드 스텔링을 동액의 새로운 가치로써 보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잉여가치—전제에 의하면 지출된 가변자본과 동일한 크기의 잉여가치—를 첨가하였다.

그러나 B의 경우에는 전대된 가변자본을 보상하며 또 그것의 가치에 잉여가치를 첨가하는 새로 창조된 가치는 그것이 새로 생산자본으로서 따라서 또 가변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형태로는 있지 않다. 그런데 A의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그러한 형태로 있다. 그리고 B에 의하여 최초의 5주간에 그리고 그 후 순차로 5주간마다 지출된 가변자본—이것이 비록 새로 생산된 가치 및 잉여가치에 의하여 보상되기는 하나—은 연도 말까지는 그것이 새로 생산자본으로서 따라서 또 가변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하지는 않는다. 그것의 가치가 새로운 가치에 의하여 보상되며 따라서 갱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그것의 가치형태(이 경우에는 절대적인 가치형태, 그것의 화폐형태)는 갱신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2기간 5주간(그리하여 또 순차로 1년간의 각 5주간)에 있어서 제1기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500파운드 스텔링이 더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신용관계를 도외시한다면 연초에 5,000파운드 스텔링이 저장되어 잠재적 전대화폐자본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비록 이 5,000파운드 스텔링은 1년 동안 다만 조금씩 현실적으로 지출되어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것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A의 경우에는 최초의 5주간이 경과한 후에는 전대자본의 순환, 회전이 끝나기 때문에 가치보상분은 이미 그것이 5주간분의 새로운 노동력을 운동시킬 수 있는 형태, 즉 그것의 최초의 화폐형태로 있다.

제2기간인 5주간에는 A의 경우에도 B의 경우에도 새로운 노동력이 소비되며 이 노동력에 대한 지불에 500파운드 스텔링의 새로운 자본이 지출된다. 최초의 500파운드 스텔링으로써 지불된 노동자의 생활수단은 이미 없어졌으며,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그만큼의 가치는 자본가의 수중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제2의 500파운드 스텔링으로써 새로운 노동력이 구매되며 새로운 생활수단이 시장으로부터 끌려나온다. 요컨대 구자본이 아니라 신자본 500파운드 스텔링이 지출된다. 그러나 A의 경우에는 이 신자본 500파운드 스텔링은 종전에 지출된 500파운드 스텔링을 보상하는 새로 생산된 가치의 화폐형태이다. 그런데 B의 경우에는 이 가치보상분은 가변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없는 형태로 있다. 그것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가변자본의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5주간에 생산과정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500파운드 스텔링의 추가자본이 이 경우에 불가피한 화폐형태로서 현존하며 또 전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A에 의하여도 B에 의하여도 50주간에는 동등한 크기의 가변자본이 지출되며 동등한 양의 노동력이 지불되고 소비된다. 그러나 B에 의하여는 이 노동력이 그것의 총가치=5,000파운드 스텔링과 동등한 전대자본으로써 지불되지 않으면 안된다. A에 의하여는 그것이 5주간마다 전대되는 자본 500파운드 스텔링을 보상하는 매 5주간 동안에 생산되는 가치의 부단히 갱신되는 화폐형태에 의하여 순차로 지불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5주간분 이상의, 즉 최초의 5주간에 전대된 500파운드 스텔링 이상의 화폐자본이 전대되는 일은 결코 없다. 이 500파운드 스텔링으로 온 1년중 충분하다. 그러므로 노동의 착취정도가 동등하고 현실적인 잉여가치율이

동등한 경우에는 A와 B의 잉여가치의 연율은 1년간에 동일한 양의 노동력을 운동시키기 위하여 전대되지 않으면 안되는 가변적 화폐자본의 크기에 역비례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A의 경우에는 $5,000m/500v=1,000\%$ 이고 B의 경우는 $5000m/5,000v=100\%$ 이다. 그런데 $500v : 5,000v=1 : 10=100\% : 1,000\%$ 이다.

이 차이는 회전기간—즉 일정한 기간 중에 충용된 가변자본을 보상하는 가치가 새로 자본으로서, 따라서 새로운 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기간—의 상이에서 나온다. B에 있어서나 A에 있어서나 동일한 기간 중에 충용된 가변자본에 대한 동일한 가치보상이 일어난다. 또 동일한 기간에 잉여가치의 동일한 증식도 일어난다. 그러나 B에 있어서는 5주간마다 5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보상분과 500파운드 스텔링의 잉여가치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가치보상분은 그것이 화폐형태로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새로운 자본을 이루지 않는다. 그런데 A에 있어서는 구자본 가치는 신자본 가치에 의하여 보상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은 자체의 화폐형태를 회복하고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기능할 수 있는 자본으로서 보상되고 있다.

가치보상분의, 화폐로의 따라서 또 가변자본이 전대되는 형태의 전화가 이른가 늦은가 하는 것은 명백히 잉여가치의 생산 자체에 대하여는 전혀 아무래도 좋은 사정이다. 잉여가치의 생산은 충용되는 가변자본의 크기와 노동의 착취정도에 의존한다. 그러나 상기 사정은 1년간에 일정한 양의 노동력을 운동시키기 위하여 전대되지 않으면 안되는 화폐자본의 크기를 변경시키며 따라서 잉여가치의 연율을 규정한다.

제3절 사회적으로 고찰한 가변자본의 회전

문제를 사회적 관점에서 잠시 고찰하자. 1명의 노동자에 매주 1파운드 스텔링의 비용이 걸리며 노동일은 10시간이라고 하자. A의 경우에도 B의 경우에도 1년간에 100명의 노동자가 고용되며(노동자 100명이면 1주간에는 100파운드 스텔링, 5주간에는 500파운드 스텔링, 50주간에는 5,000파운드 스텔링이 된다) 이들은 매주 6일간, 매 개인이 60노동시간씩 노동한다. 따라서 100명의 노동자는 매주 6,000노동시간, 50주간에는 300,000노동시

간 노동한다. 이 노동력은 A에 의하여도 B에 의하여도 얼마어 있으며 따라서 사회에 의하여 다른 어떤 목적에도 지출될 수 없다. 따라서 그 한에 있어서는 사태는 사회적으로 A의 경우나 B의 경우나 동일하다. 그리고 또 A의 경우에도 B의 경우에도 각각 100명의 노동자는 매년 5,000 파운드 스텔링(따라서 도합 200명의 노동자는 10,000파운드 스텔링)의 임금을 받으며 이 금액만큼 생활수단을 사회로부터 끌어낸다. 그 한에 있어서 사태는 또다시 사회적으로 A의 경우나 B의 경우나 동일하다. 어느 경우에도 노동자는 매주 지불을 받으므로 그들은 매주 사회로부터 생활수단을 끌어내며, 그 대신에 그들은 역시 어느 경우에도 화폐등가를 매주 유통에 투입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양자의 차이가 시작된다.

첫째로 A의 노동자가 유통에 투입하는 화폐는 B의 노동자에 있어서처럼 다만 그의 노동력의 가치에 대한 화폐형태(사실상으로는 이미 수행된 노동에 대한 지불수단)일 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기업개시 후 제2회전기간으로부터 벌써 제1회전기간에 그 자신에 의하여 새로 창조된 가치(=노동력의 가격+잉여가치)의 화폐형태이며 이것으로써 제2회전기간에 있어서의 그의 노동이 지불되는 것이다. 그런데 B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경우에도 노동자에 관하여는 화폐는 물론 그가 이미 수행한 노동에 대한 지불수단이나, 그러나 이 수행된 노동은 그 자신에 의하여 새로 창조되어 화폐화된 가치(이 노동 자체에 의하여 생산된 가치의 화폐형태)로써 지불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비로소 제2년도부터이며, 그때에 B의 노동자는 지난 해에 그에 의하여 생산되어 화폐로 전화된 가치에 의하여 지불을 받는다.

자본의 회전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따라서 또 연도내에 자본의 재생산기간이 갱신되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최초에 자본가가 화폐형태로 전대한 가변자본부분은 노동자가 이 가변자본의 보상으로 새로 창조한 가치(이것은 그밖의 잉여가치를 포함한다)의 화폐형태로 더욱 신속히 전화하며, 따라서 또 자본가가 그 자신의 폰드 중에서 화폐를 전대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간은 더욱 단축되며 또 그가 일반적으로 전대하는 자본은 소여의 생산규모에 비하여 더욱 적어진다. 그러나 그것에 비하여, 잉여가치율이 주어진 경우에는 그가 1년間に 짜내는 잉여가치량은 더욱 커진다. 왜냐하면 자본가는 그만큼 더욱 빈번히 노동자 자신에 의하여 새로 창조된 가치의 화폐형태를 가지고 노동자를 무단히 새로 구매하여 그

의 노동을 운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의 규모가 주어진 경우에는 회전기간이 단축되는 데 비례하여 전 대되는 가변적 화폐자본(및 유동자본 일반)의 절대적 크기는 감소되며 잉여가치의 연율은 증대된다. 재생산기간이 단축되는 결과 생기는 잉여가치의 연율의 증대와 동시에, 전대자본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에는 생산의 규모가 확대되며, 따라서 잉여가치율이 주어진 경우에는 1회전기간내에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절대량이 증대된다. 일반적으로 이상의 연구로부터, 노동의 착취정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양의 생산적 유동자본과 동일한 양의 노동을 운동시키기 위하여 전대되지 않으면 안되는 화폐자본의 크기는 회전기간의 크기가 다름에 따라서 극히 각이하다는 것을 알았다.

둘째로—그런데 이것은 첫째 차이와 관련된 것이다—B의 노동자도 A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그가 구매하는 생활수단에 대하여 그의 수중에서 유통수단으로 전화된 가변자본으로써 지불한다. 그는 예컨대 시장으로부터 소맥을 끌어낼 뿐만 아니라 또한 화폐로서의 등가에 의하여 그것을 보상한다. 그러나 B의 노동자가 시장에서 끌어내는 자기의 생활수단에 대하여 지불하는 화폐는 A의 노동자에 있어서처럼 연도내에 그가 시장에 투입한 새로 창조된 가치의 화폐형태는 아니므로, B의 노동자는 그의 생활수단의 판매자에게 화폐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그 판매자가 입수한 화폐를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어떠한 상품—생산수단이든 생활수단이든 간에—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 점은 A의 노동자의 경우와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으로부터는 노동력이라든가, 이 노동력을 위한 생활수단이라든가, B에 의하여 채용되는 노동수단의 형태로서의 고정자본이라든가 또 생산재료라든가가 끌려 나오고 그것들의 보상으로서 화폐로서의 등가가 시장에 투입된다. 그러나 시장으로부터 끌려나온 생산자본의 소재적 제 요소를 보상하기 위한 어떠한 생산물도 연도내에 시장으로 투입되지 않는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를 생각하여 본다면 우선 화폐자본이 완전히 소멸되며, 따라서 화폐자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거래상의 가장(假裝)들도 소멸된다. 그리하여 사태는 단순히 다음과 같이 귀착된다. 즉 예컨대 철도의 부설과 같이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동안 생산수단도 생활수단도 제공하지 않으며 또 어떠한 유용효과도 제공하지 않으나, 그리고도 연 총생산 중에서 노동과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을 끌어내는 기업부문에 대하여, 사회가 아무런 파탄

도 없이 얼마만한 노동과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을 돌릴 수 있는가를 사회는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적 오성(悟性)이 언제나 사후(事後)에야 비로소 그 힘을 나타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단히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또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일방으로는 화폐시장이 웅색하게 되는데 거꾸로 화폐시장의 완화는 또 그러한 기업들을 대량으로 일으키며, 따라서 후에 가서 화폐시장의 팽박을 일으킬 바로 그 조건이 조성된다. 화폐시장이 웅색하게 되는 것은 이 경우에는 대규모의 화폐자본의 전대가 부단히 장기간에 걸쳐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업자본가와 상인들이 그들 자신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화폐자본을 철도 투기 등등에 투입하고 이것을 화폐시장에서의 차입에 의하여 메꾼다는 사실은 전혀 도외시한다. 타방으로는 사회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산자본이 웅색하게 된다. 생산자본의 제 요소는 부단히 시장으로부터 끌려나오며 그대신 화폐등가만이 시장에 투입되므로, 지불능력 있는 수요가 그 자체로부터는 어떠한 공급요소도 제공함이 없이 장성한다. 이로부터 생활수단 및 생산재료의 가격이 등귀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기에는 정해 놓고 투기가 성행하며 자본의 대이동이 생긴다. 한 떼의 투기사, 청부업자, 기사, 변호사 등등이 치부한다. 그들은 시장에서 강렬한 소비적 수요를 일으키며 동시에 노임을 등귀시킨다. 식료품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농업도 강한 자극을 받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식료품은 1년내에 갑자기 증가될 리도 없기 때문에, 그것의 수입이 증가하며, 일반적으로 외국산 식료품(커피, 사탕, 포도주, 등등)과 사치품의 수입이 증가한다. 그 결과 수입업의 이 부분에서 수입초과와 투기가 생긴다. 타방으로는 생산을 급속히 증가시킬 수 있는 산업부문들(고유한 의미에서의 제조업, 광업 등등)에서는 가격의 등귀로 인하여 돌연한 확대가 일어나며 이에 이어서 곧 붕괴가 닥친다. 동일한 작용은 노동시장에서도 생기어, 대량의 잠재적인 상대적 과잉인구와 심지어는 취업노동자들까지도 새로 기업부문으로 끌어당긴다. 일반적으로 철도와 같은 대규모 기업은 노동시장으로부터 일정한 수량의 노동력을 끌어내는데, 이 노동력은 힘센 젊은이들만이 사용되는 농업과 같은 약간의 부문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노동력이다. 이러한 일은 새로운 기업들이 이미 상설적인 경영부문으로 되고 따라서 이 기업들에 필요한 유량 노동자층이 이미 형성된 후에도 일어난다. 이것은 예컨대 철도 부설이 일시 평균수준이상

의 대규모로 진행되는 경우에 그렇다. 그러한 경우에는 노동자 예비군—압박을 가하여 임금을 저하시켜 온—의 일부가 흡수된다. 임금이 일반적으로 등귀한다. 심지어는 이제까지 취업상태가 좋았던 노동시장부분에 있어서까지도 그러하다. 이는 불가피한 파국으로 인하여 노동자예비군이 다시 유리되어 임금이 다시 최저한으로 또 그 이하로 인하될 때까지 지속된다.³²⁾

회전기간의 장단은 그것이 고유한 의미에서의 노동기간 즉 시장을 위한 생산물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기간에 의존하는 한, 각종 투자의 제각기 주어진 물적 생산 제 조건에 입각하고 있다. 이 생산 제 조건은 농업에서는 자연적 생산 제 조건의 성격을 더 띠며, 제조업과 대부분의 채취공업에서는 생산과정 자체의 사회적 발전에 따라 변동한다.

노동기간의 길이가, 제공되는 상품량의 크기(생산물이 보통 상품으로서 시장에 투입되는 양적 범위)에 입각하는 한, 이것은 관습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이 관습 자체는 생산의 규모를 물질적 기초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이 우연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고찰되는 경우에 있어서만이다.

마지막으로 회전기간의 길이가 유통기간의 길이에 의존하는 한,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시황(市況)의 부단한 변동, 판매의 난이(難易),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생산물을 부분적으로 보다 가까운 시장 또는 보다 먼 시장에 방출할 필요에 의하여 제약된다. 수요 일반의 규모를 도외시하면 가

32) 원고에는 여기에 추후의 부연을 위한 다음과 같은 주가 삽입되어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있어서의 모순. —상품의 구매자로서의 노동자는 시장을 위하여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의 상품—노동력—의 판매자로서는 자본주의 사회는 그것의 가격을 최저한으로 제한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의 모순. —자본주의적 생산이 그의 있는 힘을 다 내고있는 시기는 정해 놓고 과잉생산의 시기라는 것을 알수 있다. 왜냐하면 생산상의 있는 힘들이 암만 충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됨으로써 더 많은 가치가 생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실현될 수 있게까지는 결코 충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품의 판매, 상품자본 따라서 또 잉여가치의 실현은 사회 일반의 소비욕망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원의 대다수가 항상 빈궁하고 또 항상 빈궁한 채로 있지 않을 수 없는 사회의 소비욕망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음 편(編)에 들어가서 비로소 취급될 것이다”

격의 운동은 이 경우에 주요한 역할을 논다. 왜냐하면 가격이 저락하는 경우에는 생산은 여전히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판매는 고의로 제한되며, 반대로 가격이 등귀하는 경우에는 생산과 판매는 보조가 일치되거나 또는 판매가 생산보다 앞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유한 의미에서의 물질적 기초로 간주해야 할 것은 생산지와 판매시장간의 현실적인 거리이다.

예컨대 영국의 면직물 또는 방사는 인도로 판매된다. 수출상인이 영국의 면방적 공장주에게 지불을 한다고 하자(수출업자는 화폐시장의 상태가 좋은 경우에만 즐겨 이렇게 한다. 그러나 공장주 자신이 신용조작에 의하여 그의 화폐자본을 보상하자마자 사태는 이미 들어진다). 수출업자는 자기의 면방적 상품을 나중에 인도시장에 판매하며, 여기로부터 그의 전대자본이 그의 수중으로 반송된다. 이 환류가 있을 때까지는 사태는 노동 과정이 연장되면 소여의 규모에서의 생산과정의 진행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화폐자본의 전대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와 전혀 마찬가지로이다. 공장주가 그의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며 또한 그의 유동자본의 기타 요소들을 갹신하는 데 충용하는 화폐자본은 그들에 의하여 생산된 방사의 화폐형태가 아니다. 이 방사의 가치가 화폐 또는 생산물로서 영국으로 환류한 때 비로소 그러할 수 있다. 이 화폐자본은 상술한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추가적 화폐자본이다. 다만 다른 것은 공장주가 아니라 상인이 그것을 전대한다는 점인데, 아마 이 상인 자신도 역시 신용조작에 의하여 이 화폐자본을 얻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또 이 화폐가 시장에 투입되기 전에는 또는 그와 때를 같이 해서는 이 화폐로써 구매되며 생산적 또는 개인적 소비로 들어갈 수 있는 추가적 생산물은 영국 시장에 투입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비교적 대규모로 일어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술한 노동기간 연장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인도 자체에서도 또한 방사가 신용으로 판매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신용으로써 인도에서 생산물이 구매되어 대충(對充)상품으로서 영국으로 보내어지거나 또는 그 금액만큼의 수형이 반송된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인도의 화폐시장이 웅색하게 되고, 영국에 대한 그 반작용은 영국에서 공황을 일으킬 수 있다. 타방 이 공황은 또 그것이 인도로의 귀금속 수출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까지도 인도에서 새로운

공황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인도의 은행들에서 신용을 받고 있던 영국의 상사들과 인도에 있는 그 지점들의 파산 때문이다. 그리하여 무역차액이 부방인 시장에서도, 정방인 시장에서도 때를 같이 하여 공황이 일어난다. 이 현상은 더 한층 복잡한 것일 수 있다. 예컨대 영국이 지은(地銀)을 인도로 보낸 다음에 인도에 대한 영국의 채권자들이 자기들의 채권을 독촉한다면 인도는 얼마 안가서 후에 지은을 영국으로 반송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도로부터의 수입무역은(면화의 등귀 등등과 같은 특수사정을 제외한다면) 그것의 규모로 보아 인도로의 수출무역에 의하여 규정되며 자극되는 것이지만 후자와 전자는 거의 균형을 이루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영국과 인도간의 무역차액은 균형을 이루는 것같이 보이거나 또는 어느 한편으로의 극히 미미한 동요밖에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 공황이 발발하자마자 인도의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면방적 상품이 쌓이게 되며(따라서 상품자본으로부터 화폐자본으로 전화되지 않았다—이 면에서 보면 과잉생산이다) 타방으로는 또 영국에서는 인도 생산물의, 팔리지 않은 저장품이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되어 소비된 저장품의 대부분도 아직 전혀 지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시장에서 공황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은 생산과정 및 재생산과정 자체내의 이상(異常)을 표현하는 것이다.

세째로, 충용된 유동자본(가변적 및 불변적) 자체에 관하여 말한다면 회전기간의 길이는, 그것이 노동기간의 길이에 의존하는 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낳는다. 즉 1년간에 수차 회전하는 경우에는 가변적 또는 불변적 유동자본의 어떤 요소는 석탄생산, 기성복 제조 등등에 있어서와 같이 이 자본 자체의 생산물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일이 적어도 연도내에는 불가능하다.

제17장 잉여가치의 유통

이미 본 바와 같이 1년간에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양이 불변인 경우에도 회전기간에서의 차이는 잉여가치 연율에 있어서의 차이를 낳는다.

그런데 또 잉여가치의 자본화 즉 축적에서 필연적으로 차이가 생기며 그 한에 있어서는—잉여가치율이 불변인 경우에도—1년간에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양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그런데 우선 지적하지만, 자본 A(전장의 예에서의)는 연속적인 주기적인 소득을 가지며 따라서 기업개시 당초의 회전기간을 제외한다면 자본가는 연도내의 자기 자신의 소비를 그의 생산된 잉여가치로부터 치변하는 것이고 자기의 본전(фонд)으로부터 선불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자본 B의 경우에는 이러한 선불이 실시된다. 그는 동일한 기간내에 A와 같은 양의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잉여가치는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그리하여 개인적으로도 생산적으로도 소비될 수 없다. 개인적 소비가 문제로 되는 한 잉여가치는 앞당기어 취하여진다. 그리기 위하여는 본전이 선불되지 않으면 안된다.

생산자본중 일정한 항목에 넣기 어려운 부분 즉 고정자본의 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추가적 자본도 이제는 새로운 조명(照明) 속에 나타난다.

A의 경우에는 생산의 개시에 있어서 이 자본부분은 전혀 또는 대부분 전대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일 필요도 없으며 심지어는 현존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잉여가치를 자본으로서 직접 전화시킴으로써, 즉 잉여가치를 자본으로서 직접 충용함으로써 기업 그 자체로부터 나온다. 연도내에 주기적으로 생산될 뿐만 아니라 실현되기도 하는 잉여가치의 일부분이 보수 등등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될 수 있다. 그리하여 최초의 규모에서의, 기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본의 일부분은 잉여가치의 일부를 자본화함으로써 기업의 진행중에 기업 자체에 의하여 조성된다. 이러한 것은 자본가 B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다. 문제로 되고 있는

자본부분은 그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대되는 자본의 일부분을 이루지 않을 수 없다. 두 경우에 다 이 자본부분은 자본가의 장부에서는 전대자본으로서 나타날 것이며, 실지로도 전대자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 의한다면 소여의 규모에서의, 기업의 수행에 필요한 생산자본의 일부분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폰드로부터 전대되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지대한 차이가 있다. B의 경우에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최초로 전대되야 할 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보유되어야 할 자본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A의 경우에는 그것은 잉여가치 중에서 자본으로서 충용되는 일부분이다. 이 후자의 경우를 보면 축적된 자본뿐만 아니라 최초로 전대되는 자본의 일부분도 자본화된 잉여가치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용의 발전이 개입하게 되면 최초로 전대된 자본과 자본화된 잉여가치간의 관계는 더욱더 복잡하게 된다. 예컨대 A는 기업을 개시하거나 또는 기업을 1년간 계속하기 위한 생산자본의 일부분을 은행가 C로부터 채용한다. 그는 기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자기의 자본을 처음부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은행가 C는 자기에게 예탁한, 산업가 D, E, F 등등의 잉여가치로써만 이루어진 금액을 A에게 대부한다. A의 입장에서는 축적된 자본이라는 것은 아직 문제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상 D, E, F 등등에 대하여서는 A는 그들에 의하여 취득된 잉여가치를 자본화하는 대리인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이미 제1부, 제2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축적 즉 잉여가치의 자본으로의 전화는 그것의 현실적 내용으로 보면 확대된 규모에서의—이 확대가 외연적으로 즉 새로운 공장들이 낡은 공장들에 첨가되는 모습으로 표현되든 또는 종래의 생산규모의 집약적인 확대로서 표현되든—재생산과정이다.

생산규모의 확대는 잉여가치의 일부가 개량들—이것들은 적용되는 노동의 생산력을 제고시킬 뿐인 것도 있고 또는 동시에 노동을 더 집약적으로 착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다—에 사용됨으로써 조금씩 수행될 수 있다. 혹은 또 노동일이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지 않은 곳에서는 고정자본의 확대없이 유동자본의 추가지출(생산재료와 노임으로) 만으로도 생산규모가 확대되는데, 이 경우에는 고정자본의 나날의 사용시간이 연장될 뿐이며 그것의 회전기간은 그에 따라 단축된다. 또는 자본화된 잉여가치는 시황(市況)이 유리한 경우에는 원료에 대한 투기라든가, 최초의 전대

자본으로서는 충분치 않았을 조작들이라든가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명백히 회전기간의 회수가 증가하여 연도내에 잉여가치의 실현이 더 빈번하게 되는 경우에는 노동일을 연장할 수도 없고 개별적인 개량을 실시할 수도 없는 시기들이 시작될 것인데, 타방으로 전체 기업의 균형적인 확대는 넓은 좁든간에 일정한 한계—부분적으로는 기업시설 예컨대 건물의 일반적 성격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는 농업에서와 같이 경작되는 전야의 규모에 의하여 제약되는—내에서만 가능하며,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는 다년에 걸쳐는 잉여가치의 축적에 의하여만 제공될 수 있는 상당히 큰 추가적 자본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현실적 축적 즉 생산자본으로의 잉여가치의 전화(및 이에 대응하는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와 병행하여, 화폐의 축적—즉 나중에 가서 일정한 크기에 달할 때에야 비로소 추가적인 능동적 자본으로서 기능하게 될 잠재적 화폐자본으로서의 잉여가치의 일부를 끌어 모으는 것—이 진행된다.

개별적 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면 사태는 이러하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 동시에 신용제도가 발전한다. 한 자본가가 아직 자기 자신의 기업에서 충용할 수 없는 화폐자본이 다른 자본가에 의하여 충용되며 그대신에 전자는 후자에게서 이자를 받는다. 이 자본은 전자에 있어서는 특수한 의미에서의 화폐자본으로서, 생산자본과 구별되는 특수한 종류의 자본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자본가의 수중에서 자본으로 기능한다. 잉여가치가 더욱 빈번히 실현되며 그것이 생산되는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서 새로운 화폐자본 또는 자본으로서의 화폐가 화폐시장에 내던져지는—그리고 여기로부터 적어도 그 대부분이 확대생산을 위하여 다시 흡수되는—비율이 증대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 추가적인 잠재적 화폐자본이 표시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는 퇴장화폐의 형태이다. 이 퇴장화폐는 귀금속을 생산하는 나라들과의 교환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획득된 추가적인 금 또는 은일 수 있다. 그리고 다만 그러한 방식으로만 국내의 퇴장화폐는 절대적으로 증대한다. 타방으로—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만—이 퇴장화폐가 국내의 유통으로부터 끌려나와 개별적 자본가들의 수중에서 퇴장화폐의 형태를 취한 화폐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이 잠재적 화폐자본이 가치기호에 지나지 않든가—우리는 여기에서는 아직 신용화폐를 도외시킨다—또

는 법적 문건들에 의하여 확인된, 제3자에 대한 자본가의 단순한 청구권(Rechtstitel)일 수도 있다. 이 모든 경우들에 이 추가적 화폐자본은, 그것의 '존재형태가 어떠하든간에, 그것이 앞으로(in spe) 자본인 한에 있어서는 사회의 장래의 추가적 연생산에 대한 자본가의 추가적인 예비로서 보유되는, 청구권 이외의 아무 것도 대표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현실적으로 축적된 부의 양이란, 그것의 크기로 보아서…그 부가 속하는 사회—이 사회가 어떤 문명단계에 처해 있든간에—의 생산력들과 비교하면 전혀 보잘 것 없다. 또는 동일한 사회의 불과 수년간의 현실적 소비와 비교하더라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입법자들 및 경제학자들이 주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은 생산력들과 그것들의 장래의 자유로운 발전에 대하여서이고 종래와 같이 사람의 눈을 놀라게 하는 축적된 부에 대하여서가 아니다. 소위 축적된 부의 거의 대부분은 다만 명목적인 것이며 선박, 가옥, 면제품, 토지개량과 같은 현실적인 물건들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장래에 있어서의 연년의 생산력들에 대한 단순한 청구권들—불안정한 상태에 고유한 방책들 또는 제도들에 의하여 생산되었고 영구화된 청구권들—로써 이루어지고 있다…이러한 물건(축적된 자연물들 또는 현실적 부)을 그것의 소유자들이 사회의 장래 생산력들에 의하여 비로소 창조되어야 할 부를 취득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 이러한 사용은 폭력의 적용없이 분배의 자연법칙들에 의하여 점차로 그들로부터 박탈될 것이다. 협동조합적 노동(co-operative labour)의 도움으로 이러한 사용은 그들로부터 몇 해 안가서 박탈될 것이다”(윌리엄 톰슨 『부의 분배에 관한 원리의 연구』 런던, 1850년, 453페이지—이 책의 제1판은 1824년에 나왔다).

“사회적 사실상의 축적이 양으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인류의 생산력들과 비교하면, 아니 심지어는 단 한 세대 사람들의 불과 수년간의 보통의 소비에 비교하더라도 극히 사소한 것이라는 데 대하여 거의 고려가 돌려지고 있지 않으며 대다수 사람들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명백하지만, 그 영향은 대단히 유해롭다. 매년 소비되는 부는 그것의 사용과 함께 소멸된다. 그것이 눈 앞에 있는 것은 일순간에 지나지 않으며, 인상을 주는 것은 그것이 향락되고 소비되는 동안만이다. 그러나 부 중에서 서서히 소비될 따름인 부분인 가구, 기계, 건물은 우리의 유년기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안전에 있으며 인간 노력의, 오래 견디는 기념물이다. 사회적 부 중에서 이러한 고정적이며 오래 견디는 그리고 서서히 소비될 따름인 부분인 토지와 가공되는

원료, 가공하는 도구, 작업 중에 비바람을 피하게 하는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러한 물건들의 소유자들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의, 현실적으로 생산적인 전체 노동자들의 연년의 생산력들을—이러한 물건들은 이 노동의 부단히 반복되는 생산물들에 비하면 극히 보잘 것 없는 것일 수 있지만—지배하고 있다. 브리튼과 아일랜드의 인구는 2,000만이다. 남자, 여자 및 아동의 매인당 평균소비는 아마도 대략 20파운드 스텔링 정도이며, 도합 대략 4억 파운드 스텔링의 부가 매년 소비되는 노동생산물이다. 이 나라들에서의 축적된 자본의 총액은 12억파운드 스텔링 즉 연간 노동생산물의 3배를 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등분하면 1인당 6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소간에 정확한 이 평가액의 절대액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율이다. 이 총자본의 이자는 총인구를 현재 생활수단에서 1년중 약 2개월간 유지할 만할 것이며, 축적된 총자본(이것의 구매자가 발견될 수 있다고 하면)은 노동없이 총인구를 온 3년간 유지할 만할 것이다! 이 기간의 종말에는 그들은 가옥도 의복도 먹을 것도 없이 굶어죽든가 또는 3년 동안 그들을 유지하여 온 사람들의 노예로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년이, 건강한 한 세대의 생존기간 예컨대 40년에 대한 것과 동일한 비례관계를, 심지어는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의 현실적 부의 크기와 의외—축적된 자본—가 그 나라의 생산력에 대하여, 단 한 세대 사람들의 생산력들에 대하여 갖는다. 그것도 그 생산력들이 균등하게 안정을 보장하는 현명한 제도하에서 특히 협동조합적 노동하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불안정하며 결함이 많고 실망케 하는 고식(姑息)수단하에서 실지 절대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이다!… 그리고 보기에는 막대한 양의 이 현존 자본을—또는 오히려 이 자본량에 의하여 획득되는, 연 노동생산물에 대한 지휘 및 독점을, 그것의 현재의 강요된 분할상태에서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가증스러운 전체 기구(機構)가, 즉 불안정으로부터 오는 죄악, 범죄 및 고통이 영구화되어야 한다. 필수적인 욕망이 우선 충족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축적될 수 없으며, 그리고 인간의 기호는 도도하게 향락을 추구한다. 따라서 소여의 어느 순간에 있어서도 사회의 현실적 부의 액은 상대적으로 보잘 것 없는 것이다. 그것은 생산과 소비의 영원한 순환이다. 이 막대한 양의 생산과 소비하에서도 한줌 밖에 안되는 현실적 축적 없이는 거의 해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주의가 돌려져 온 것은 이 막대한 생산력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한줌 밖에 안 되는 이 축적에 대하여서이다. 그러나 한줌 밖에 안되는 이 축적은 몇몇 소수자들에 의하여 억류되고, 연년이 부단하게 반복되는, 대중의 노동생산물을 취득하기 위한 도

구로 전화되고 있다. 이로써 이 몇몇 소수자들에 대한 그러한 도구의 결정적 중요성이 설명된다…국민의 연 생산물의 약 3분의 1이 지금 공과(公課)라는 명목으로 생산자들로부터 탈취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등가도 주지 않는 자들 즉 생산자에 대하여 등가의 의의를 가지는 아무 것도 주지 않는 자들에 의하여 비생산적으로 소비된다…대중은 놀란 눈으로 다량의 축적을—특히 그것이 몇몇 소수자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바라본다. 그러나 매년 생산되는 다량의 생산물은 큰 강의, 영원하며 무수한 파도와 같이 물결쳐 지나가 소비라는 망각의 대해(大海) 속에 사라진다. 그런데 이 영원한 소비는 전체 인류의 모든 향락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그 생존의 조건이다. 무엇보다도 이 연 생산물의 양과 분배가 연구의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현실적 축적은 전혀 2차적인 의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의의조차 거의 전적으로, 연 생산물의 분배에 끼치는 그것의 영향 때문에 가지게 되는 것이다…현실적인 축적 및 분배는 여기서는(통슨의 저작에서는) 생산력에 관련시켜 또 종속시켜 언제나 고찰된다. 기타의 거의 모든 체계에서는 생산력이 축적과 현행 분배방식에 관련시켜 또 종속시켜 고찰되어 왔다. 이 현행 분배방식의 보존에 비한다면 전체 인류의, 부단히 반복되는 빈궁 또는 복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폭력과 기만과 우연의 결과를 영원화하는 것—이것을 사람들은 안정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러한 허위의 안정을 보존하기 위하여 인류의 모든 생산력들이 무참하게 희생되어 왔다”(동상서, 440~443페이지).

소여의 규모에서의 재생산조차 방해하는 교란들을 도외시한다면 재생산에는 다만 두 개의 정상적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한 경우에는 단순한 규모에서의 재생산이 진행된다.

다른 경우에는 잉여가치의 자본화, 축적이 진행된다.

제1절 단순재생산

단순재생산의 경우에는 연년이 또는 연도 중에 수차의 회전으로써 주기적으로 생산되고 실현되는 잉여가치는 그것의 소유자인 자본가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즉 비생산적으로 소비된다.

생산물의 가치가 일부는 잉여가치로써, 기타 부분은 생산물에 재생산되

어 있는 가변자본 플러스 소비된 불변자본에 의하여 형성된 가치부분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정은, 상품자본으로서 부단히 유통에 들어가며 역시 부단히 유통으로부터 생산적 또는 개인적 소비에 맡겨지기 위하여 즉, 생산수단 또는 소비수단으로써 복무하기 위하여 끌려나오는 총생산물의 양에도 가치에도 절대로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불변자본을 도외시한다면 이 사정은 노동자들과 자본가들 사이에 있어서의 연 생산물의 분배에 대하여서만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단순재생산하에서도 잉여가치의 일부는 생산물로서가 아니라 부단히 화폐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잉여가치는 소비를 위하여 화폐로부터 생산물로 전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잉여가치의 최초의 상품형태로부터 화폐로의 이 전화를 더 상세히 연구하여야 한다. 사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문제의 가장 단순한 형태 즉 오직 금속화폐—현실적인 등가물인 화폐—만이 유통한다고 상정한다.

단순상품 유통에 관하여 전개된 법칙들(제1부, 제3장)에 의하면 국내에 현존하는 금속화폐의 양은 상품을 유통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화폐유통의 변동—부분적으로는 유통속도의 변동에서, 부분적으로는 상품가격의 변동에서, 부분적으로는 화폐가 지불수단 또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유통수단으로서, 기능하는 비율의 차이와 변동에서 발생하는—을 위하여도 충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존하는 화폐량이 퇴장화폐와 유통하는 화폐로 분할되는 비율은 부단히 변동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화폐량은 언제나 퇴장화폐로서와 유통하는 화폐로서 현존하는 화폐의 합계와 동등하다. 이 화폐량(귀금속량)은 점차로 축적된, 사회의 퇴장화폐이다. 이 퇴장화폐의 일부가 마멸에 의하여 없어지는 한, 그 부분은 다른 모든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매년 새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일국의 연 생산물의 일부가 금, 은을 생산하는 나라의 생산물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교환됨으로써 수행된다. 그러나 이 거래의 이러한 국제적 성격은 그것의 단순한 진행을 은폐한다. 그러므로 문제를 가장 단순하고 가장 투명하게 표현하기 위하여서는 금, 은의 생산이 자국에서 진행되며 따라서 금, 은의 생산이 각국내의 사회적 총생산의 일부를 이룬다고 전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치품으로서 생산되는 금, 은을 도외시한다면 그것들의 연 생산의 최

소한은 연년의 화폐유통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화폐금속의 마멸분과 동등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또 연년이 생산되어 유통하는 상품량의 가치액이 증가한다면 금, 은의 연 생산도 증가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것은 유통하는 상품의 증가한 가치액과 그것의 유통에(또 그것에 상응하는 화폐퇴장에) 필요한 화폐량이 화폐의 유통속도의 증대에 의하여 그리고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의 확대에 의하여 즉 현실적인 화폐의 개재없는 매매의 호상 결제의 증대에 의하여 상쇄되지 않는 한에서 그렇다.

따라서 사회적 노동력의 일부 및 사회적 생산수단의 일부는 매년 금, 은의 생산에 지출되지 않으면 안된다.

금, 은의 생산을 경영하는—그것도 단순재생산을 전제로 하는 이 경우에 가정되듯이 금, 은의 연 평균마멸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연 평균소비의 한계내에서 경영할 따름인—자본가들은 그들이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바에 의한다면 조금도 자본화하지 않고 연년이 소비하는 그들의 잉여가치를 화폐형태로 직접 유통에 투입하는데, 이 화폐형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산물의 현물형태이고 기타의 생산부문들에서와 같이 생산물의 전화된 형태가 아니다.

그리고 또 노임—가변자본이 전대되는 화폐형태—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것도 역시 생산물의 판매, 그것의 화폐로의 전화에 의하여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의 현물형태가 애당초부터 화폐형태로 되어 있는 생산물에 의하여 보상된다.

마지막으로 귀금속 생산물 중에서 주기적으로 소비되는 불변자본—불변적 유동자본 및 연도내에 소비되는 불변적 고정자본—의 가치와 동등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사태는 마찬가지이다.

귀금속 생산에 투하된 자본의 순환 또는 회전을 우선 $G-W \cdots P \cdots G'$ 의 형태에서 고찰하자. $G-W$ 에서 W 는 노동력과 생산수단들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고정자본—이것의 가치의 일부만이 P 에서 소비된다—으로써도 이루어지고 있는만큼 생산물인 G' 는 노임에 투하된 가변자본 플러스 생산수단에 투하된 유동적 불변자본 플러스 마멸된 고정자본의 가치부분 플러스 잉여가치와 동등한 화폐액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만약 금의 일반적 가치가 불변인 경우에 G' 가 보다 소액이라면 소여 광산사업은 비생산적일 것이며, 또는 이러한 현상이 일반적이라면 장래에는 금의

가치는, 가치가 변하지 않는 상품들과 비교하여 증대될 것이다. 즉 상품들의 가격은 저락할 것이며 따라서 장래에는 $G-W$ 에 투하되는 화폐액이 더 적어질 것이다.

우선 $G-W \cdots P \cdots G'$ 의 출발점인 G 로서 전대되는 자본의 유동부분만을 고찰한다면 일정한 화폐액이 노동력에 대한 지불과 생산재료의 구매에 전대되어 유통에 투입된다. 그러나 이 화폐액은 이 자본의 순환에 의하여는 유통으로부터 다시 끌려나와 유통에 새로 투입되지는 않는다. 생산물은 그것의 현물형태에 있어서 이미 화폐이며 따라서 그것은 교환을 통하여 유통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화폐로 전화될 필요는 없다. 그것은 화폐자본으로 재전화되어야 할 상품자본의 형태로서가 아니라 생산자본으로 재전화되어야 할 즉 새로 노동력과 생산재료를 구매하여야 할 화폐자본으로서 생산과정으로부터 유통분야로 들어간다. 노동력과 생산수단에 소비되는 유동자본의 화폐형태는 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 자체의 현물형태에 의하여 보상되며, 따라서 그것의 가치를 화폐형태로 유통으로부터 다시 끌어냄으로써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생산되는 추가적 화폐에 의하여 보상된다.

이 유동자본은 500파운드 스텔링, 회전기간은 5주간, 노동기간은 4주간, 유통기간은 다만 1주간이라고 가정하자. 처음부터 5주간분의 화폐가 일부는 생산적 저장에 전대되지 않으면 안되며 일부는 점차 노임으로 지불되기 위하여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제6주 초에는 400파운드 스텔링이 환류하여 있으며 100파운드 스텔링이 유리되어 있다. 이것이 부단히 반복된다. 이 경우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회전의 어떤 기간동안 100파운드 스텔링이 부단히 유리된 형태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머지 400파운드 스텔링과 전혀 마찬가지로 새로 생산된 추가적 화폐로써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는 1년간 10회전이며 생산된 연 생산물은 5,000파운드 스텔링의 금이다. 유통기간은 이 경우에는 상품의 화폐로의 전화에 드는 시간으로써가 아니라 화폐의 생산요소들로의 전화에 드는 시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회전하는 기타의 매개 자본 500파운드 스텔링에 있어서는 부단히 갱신되는 화폐형태는 생산된 상품자본의 전화된 형태인데, 이 상품자본은 4주간마다 유통에 투입되고 그것의 판매에 의하여—따라서 최초에 과정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양의 화폐를 주기적으로 끌어

냄으로써—이 화폐형태를 부단히 새로 다시 취한다. 이와 반대로 이 경우에는 매 회전기간에 새로운 추가화폐량 500파운드 스텔링이 생산과정 자체로부터 유통에 투입되고 유통으로부터 생산재료와 노동력을 부단히 끌어낸다. 유통에 투입되는 이 화폐는 이 자본의 순환에 의하여 유통으로부터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새로 생산되는 금량에 의하여 증대된다.

이 유동자본의 가변부분을 고찰하고 이것을 위에서와 같이 100파운드 스텔링이라고 가정한다면 보통 상품생산에 있어서는 이 100파운드 스텔링은 1년에 10회전하는 조건하에서 부단히 노동력에 대하여 지불하는 데 충분할 것이다. 금 생산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금액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5주간마다 노동력에 대하여 지불되는 데 사용되는 100파운드 스텔링의 환류는 이 노동력의 생산물의 전화된 형태가 아니라 그것의 부단히 갱신되는 생산물 자체의 일부분인 것이다. 금 생산업자는 자기 노동자들에게 직접 그들 자신이 생산한 금의 일부분으로써 지불한다. 그러므로 이와같이 매년 노동력에 투하되며 노동자들에 의하여 유통에 투입되는 1,000파운드 스텔링은 유통에 의하여 자체의 출발점으로 복귀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고정자본에 관하여 말한다면 기업소의 창설 당시에 비교적 다액의 화폐자본의 지출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 다액의 화폐자본이 유통에 투입된다. 모든 고정자본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수년 동안에 다만 일부분씩 환류한다. 그러나 그것은 생산물인 금의 직접적인 일부로서 환류하는 것이고 생산물의 판매와 이것에 의하여 수행되는 생산물의 화폐화에 의하여 환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화폐가 유통으로부터 끌려나옴으로써가 아니라 생산물 중의 해당한 부분의 퇴적에 의하여 그것의 화폐형태를 점차 취한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회수된 화폐자본은 최초로 고정자본을 위하여 유통에 투입된 화폐액을 보상하기 위하여 유통으로부터 점차 끌려 나온 화폐액이 아니다. 그것은 추가적인 화폐량이다.

마지막으로 잉여가치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것 역시 새로운 생산물인 금의 일부분—새로운 회전기간마다 유통에 투입되며 우리의 상정에 의하면 비생산적으로 지출되어 생활수단과 사치품에 지불되는—과 동등하다.

그러나 전제에 의한다면 이 1년간의 금 생산 전체—이것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부단히 노동력과 생산재료가 끌려나오나 어떠한 화폐도 끌려

나오지 않으며 부단히 추가적인 화폐가 시장에 공급된다—는 1년 동안에 마멸된 화폐를 보상할 따름이며 따라서 비록 비율상에는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퇴장화폐와 유통중에 있는 화폐라는 두 형태로 존재하는 사회적 화폐량을 부족되지 않도록 유지할 따름이다.

상품유통의 법칙에 의한다면 화폐총량은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 플라스 퇴장화폐의 형태로 있는 화폐량과 동등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후자는 유통의 신축에 따라 증감하는 것이지만 특히 지불수단의 필요한 예비기금(펀드)의 형성에 복무한다. 지불이 호상 상쇄되지 않는 한, 상품의 가치는 화폐로써 지불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가치의 일부가 잉여가치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 즉 그 상품의 판매자에게 아무 것도 들이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생산자들이 모두 자기들의 생산수단의 자립적인 소유자들이며 따라서 유통이 직접적인 생산자 자신들 사이에서 진행된다고 하자. 만약 그들의 자금의 불변부분을 도외시한다면, 그들이 연간에 새로 창조한 가치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태와 유사하게 두 부분으로 즉 그들의 필요한 생활수단들을 보상할 따름인 한 부분 a와 그들이 일부는 사치품에 소비하며 일부는 생산의 확대에 충용하는 다른 부분 b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는 a는 가변자본을 대표하며 b는 잉여가치를 대표한다. 그러나 그러한 구분은 그들의 총생산물의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의 크기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다. 기타의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전체 유통상품량의 가치는 동일할 것이며 따라서 이에 필요한 화폐량도 동일한 것이다. 회전기간의 분할이 동등한 경우에는 그들은 동일한 화폐예비를 즉 그들의 자본중 동일한 부분을 부단히 화폐형태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정에 의한다면 그들의 생산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상품생산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품가치의 일부가 잉여가치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정은 기업경영에 필요한 화폐량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투크의 반대자 중 $G-W-G'$ 라는 형태에 매달린 한 사람이 그에게 묻는다—대체 어떻게 자본가는 그가 유통에 투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화폐를 유통으로부터 부단히 끌어낼 수 있는가라고. 잘 이해하라.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잉여가치의 창조가 아니다. 잉여가치의 창조는 유일한 비밀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자명한 일이다. 충용되는 가치액은 만약 그것이 잉여가치에 의하여 증식되지 않는다

면 자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전제에 의하면 그것은 자본이므로 잉여가치는 자명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잉여가치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잉여가치를 화폐화하기 위한 화폐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데 있다.

그러나 부르쥬아 경제학에 있어서는 잉여가치의 존재는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잉여가치의 존재가 상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또한, 유통에 투입된 상품량의 일부는 잉여가치로써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자본가가 자기의 자본과 함께 유통에 투입하지 않은 어떤 가치를 표시한다는 것, 따라서 또 자본가는 자기의 생산물로써 자기의 자본 이상의 어떤 초과분을 유통에 투입하며 이 초과분을 다시 유통으로부터 끌어낸다는 것이 상정되고 있다.

자본가가 유통에 투입하는 상품자본은 그가 노동력 플러스 생산수단으로 유통으로부터 끌어낸 생산자본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은 설명도 이해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부르쥬아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왜 자본가 A뿐만 아니라 B, C, D 등등이 자기 상품들의 교환에 의하여 자기가 최초로 전대하였으며 또 부단히 새로 전대하는 자본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유통으로부터 부단히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명백하다. A, B, C, D 등등은 그들이 생산자본의 형태로 유통으로부터 끌어내는 것보다 더 큰 상품가치를 상품자본의 형태로 유통에 부단히 투입한다. 이 조작은 자립적으로 기능하는 자본들만큼이나 다면적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 각자의 전대된 생산자본들의 가치액과 동등한 가치액을 그들 사이에서 부단히 분배하지 않으면 안되며(즉 각자는 제각기 유통으로부터 생산자본을 끌어내지 않으면 안되며), 이와 마찬가지로 또 그들은 상품가치 중 그들의 생산요소들의 가치 이상의 각자의 초과분으로서 그들이 역시 전면적으로 상품형태로 유통에 투입하는 가치액도 그들 사이에서 분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상품자본은 그것이 생산자본으로 재전화되기 전에 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잉여가치가 지출되기 전에 화폐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하기 위한 화폐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문제는 일견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투크도 또 그 외의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 지금까지 대답을 주지 않았다.

화폐자본의 형태로 전대된 500파운드 스텔링의 유동자본이 그것의 회전 기간은 어떻든 간에 사회 즉 자본가계급의 총유동자본이라고 하자. 잉여가치는 100파운드 스텔링이라고 하자. 그러면 전체 자본가계급은 부단히 500파운드 스텔링만을 유통에 투입하는데 어떻게 유통으로부터 부단히 600파운드 스텔링을 끌어낼 수 있는가?

5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자본이 생산자본으로 전화된 후 이 생산자본은 생산과정내에서 6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가치로 전화되며 그리하여 유통에는 최초로 전대된 화폐자본과 동등한 5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가치뿐만 아니라 새로 생산된 100파운드 스텔링의 잉여가치도 존재한다.

이 1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추가적 잉여가치는 상품형태로 유통에 투입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의문도 없다. 그러나 그러한 조작에 의하여서는 이 추가적 상품가치의 유통을 위한 추가적 화폐는 주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그럴듯한 둔사(遁辭)로써도 이 곤란을 회피하려고 하여서는 안 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식으로—즉 불변적 유동자본에 관하여 말한다면 분명히 모두가 그것을 동시에 투하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가 A가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고 따라서 그에 있어서는 전대된 자본이 화폐형태를 취할 때에 구매자 B에 있어서는 거꾸로, 화폐형태로 현존하는 그의 자본이 그의 생산수단들—바로 A가 생산하는—의 형태를 취한다. A가 자기의 생산된 상품자본에 다시 화폐형태를 부여하는 그 같은 행위에 의하여 B는 자기 자본에 생산적 형태를 부여하고 그것을 화폐형태로부터 생산수단 및 노동력으로 전화시킨다. 동일한 화폐액이 모든 단순한 구매 W—G에서와 마찬가지로 양면적인 과정에서 기능한다. 타방으로 A가 화폐를 다시 생산수단으로 전화시킬 때에는 C에게서 구매하며 C는 동일한 화폐로써 B에게 지불한다 등등. 이와 같은 식으로 전말이 설명될 것이다. 그러나—

유통하는 화폐량에 관하여 상품유통에서(제1부, 제3장) 세워진 모든 법칙들은 생산과정의 자본주의적 성격에 의하여 결코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화폐형태로 전대되는 사회의 유동자본이 500파운드 스텔링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것은 일방으로는 동시에 전대된 금액이라는 것, 그러나 타방으로는 이 금액은 그것이 변갈아 각이한 생산자본들의 화폐기금으

로서 복무하기 때문에 500파운드 스텔링보다 더 많은 생산자본을 운동시킨다는 것이 이미 고려에 들어 있다. 따라서 이 설명방식은 그 존재를 설명하여야 할 화폐를 이미 현존하는 것으로서 전제하고 있다.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가 A는 자본가 B가 개인적으로, 비생산적으로 소비하는 그러한 물품을 생산한다. 따라서 B의 화폐는 A의 상품자본을 화폐화하며 그리하여 동일한 화폐액이 B의 잉여가치 및 A의 유동적 불변자본의 화폐화에 복무한다고. 그러나 이 경우에는 대답을 주어야 할 문제의 해결이 더 직접적으로 상정되고 있는 것이다. 즉 B는 자기의 소득에 충당하기 위한 이 화폐를 어디로부터 얻는가? 그 자신은 자기 생산물 중의 이 잉여가치부분을 어떻게 화폐화하였는가?

그 다음으로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A가 유동적 가변자본중 무단히 자기 노동자들에게 전대하는 부분은 유통으로부터 무단히 그에게로 환류하며, 그중 일부분만이 번갈아 노임지불을 위하여 그 자신에게서 무단히 고착된다. 그러나 지출과 환류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며 그 동안에 노임으로 지불된 화폐는 개중에 잉여가치의 화폐화를 위하여도 복무할 수 있다고. 그러나 첫째로 우리는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자본가 A가 무단히 준비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되는 화폐저장량이 더 크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둘째로 노동자는 화폐를 지출하고 그것으로써 상품을 구매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한에 있어서 이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잉여가치를 화폐화한다. 따라서 가변자본의 형태로 전대되는 동일한 화폐는 그 한에 있어서 또한 잉여가치의 화폐화에 복무한다. 이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여기서는 다만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고 둔다. 전체 자본가계급과 그에 의존하고 있는 비생산적 인물들의 소비는 노동계급의 소비와 동시에 보조를 맞추어 진행된다. 따라서 노동자들에 의하여 유통에 투입되는 화폐와 동시에 자본가들에 의하여도 그들의 잉여가치를 소득으로서 지출하기 위하여 화폐가 유통에 투입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화폐는 유통으로부터 끌어내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위에서 한 설명은 그와 같이 필요한 화폐량을 감소시킬 따름이고 그것의 필요성을 제거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정자본이 처음으로 투하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다량의 화폐가 유통에 투입되는 것이며, 이 화폐는 수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그것을 유통에 투입한 자에 의하여 유통

으로부터 점차로 일부분씩만 끌려나온다. 이 금액은 잉여가치를 화폐화하기에 충분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야 한다. 5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금액(이것은 필요한 예비фон드를 위한 화폐되장도 포함한다)에는 아마도 그것을 유통에 투입한 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누구이든 그것을 고정자본으로서 충용할 가능성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그밖에도 고정자본으로서 복무하는 생산물의 구득을 위하여 지출되는 금액에 있어서는 이 상품들 속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로 지불되어 있다는 것이 이미 상정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화폐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 대답은 이미 주어져 있다. 1,000파운드 스텔링 $\times X$ 의 상품량이 유통하여야 한다면, 이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화폐량은 이 상품량의 가치 속에 잉여가치가 포함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상품량이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에 의하여는 조금도 변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화폐유통속도 등등 기타 조건들이 주어져 있다면 1,000파운드 스텔링 $\times x$ 의 상품가치를 유통시키는 데는 일정한 화폐액이 요구되는데, 이 금액은 이 상품들의 직접적 생산자에게 이 가치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또는 얼마나 적은 부분이 차례지는가 하는 사정에는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문제가 존재하는 한, 그것은 일반적인 문제 즉 일국내의 상품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문제와 일치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는 확실히 특수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듯한 외관이 생긴다. 즉 여기에서는 화폐가 유통에 투입되는 출발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본가이다. 노동자가 그의 생활수단에 대한 지불을 위하여 지출하는 화폐는 전에는 가변자본의 화폐형태로서 존재하며 따라서 또 최초에는 자본가에 의하여 노동력의 구매수단 또는 지불수단으로서 유통에 투입된다. 그밖에 자본가는 그에 있어서 최초에는 그의 불변-고정적 및 유동적-자본의 화폐형태를 이루는 화폐를 유통에 투입한다. 그는 그것을 노동수단 및 생산재료에 대한 구매수단 또는 지불수단으로서 지출한다. 그러나 이 이상으로는 자본가는 유통에 있는 화폐량의 출발점으로서 더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존재하는 것은 다만 두 개의 출발점 즉 자본가 및 노동자뿐이다. 온갖 종류의 제3자들은 어떤 봉사를 함으로써 이 양계급으로부터 화폐를 받지 않을 수 없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런 반대급부(給付)도 없이 화폐를 받는 한, 그들은 지대, 이자 등등의 형태로서의 잉여가치의 공동점유자들이다. 잉여가치가 전부 산업자본가의 호주머니에 남는 것은 아니며 산업자본가는 그것을 다른 자들과 분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정은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관계도 없다. 문제는 산업자본가가 어떻게 자기의 잉여가치를 화폐화하는가 하는 것이고 그대신에 얻은 화폐가 그후에 어떻게 분배되는가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 자본가가 잉여가치의 유일한 점유자라고 보아야 한다. 노동자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노동자는 그에 의하여 유통에 투입된 화폐의 제2차적 출발점에 불과하고 자본가가 그것의 제1차적 출발점이다. 최초의 가변자본으로서 전대된 화폐는 노동자가 그것을 생활수단에 대한 지불을 위하여 지출할 때 이미 그 둘째번 유통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 계급은 화폐유통의 유일한 출발점으로 되어 있다. 만약 그가 생산수단에 대한 지불을 위하여 400파운드 스텔링 그리고 노동력에 대한 지불에 100파운드 스텔링을 필요로 한다면 그는 유통에 500파운드 스텔링을 투입한다. 그런데 잉여가치율이 100%인 경우에 생산물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는 1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와 동등하다. 자본가계급은 부단히 유통에 500파운드 스텔링만을 투입하는데 어떻게 유통으로부터 부단히 600파운드 스텔링을 끌어낼 수 있는가? 무로부터는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다. 전체 자본가계급은 유통으로부터 전에 투입되지 않은 아무 것도 끌어낼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4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화폐액이 10회전 하는 경우에 아마도 4,0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만큼의 생산수단과 1,0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만큼의 노동을 유통시키는 데 충분하며, 나머지 100파운드 스텔링은 1,000파운드 스텔링의 잉여가치를 유통시키는 데 역시 충분하리라는 사정을 도외시한다. 화폐액과 그것에 의하여 유통되는 상품가치와의 비율은 사태에 아무런 관계도 없다. 문제는 동일하게 남아 있다. 만약 동일한 개개의 화폐들이 여러 번 유통하지 않는다면 자본으로서 5,000파운드 스텔링이 유통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며 잉여가치를 화폐화하기 위하여 1,000파운드 스텔링이 필요한 것이다. 이 후자의 화폐는 그것이 1,000파운드 스텔링이든 또는 100파운드 스텔링이든 간에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여하간에 그것은 유통에 투입된 화폐자본을 넘는 초

과분이다.

사실상 일견하여 아무리 역설(逆說)과 같이 보이더라도 자본가계급 자체가 상품들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의 실현에 복무하는 화폐를 유통에 투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단히 주의하라(notabene). 자본가계급은 그것을 전대된 화폐로서 따라서 또 자본으로서 유통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계급은 그것을 그들의 개인적 소비를 위하여 구매수단으로서 지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계급은 이 화폐유통의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이 화폐는 그들에 의하여 전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기업을 개시하는 개별적 자본가 예컨대 차지농업가를 들어보자. 제1년도에 그는 예컨대 5,0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자본을 생산수단에 대한 지불(4,000파운드 스텔링)과 노동력에 대한 지불(1,000파운드 스텔링)에 전대한다. 잉여가치율은 100%, 그가 취득하는 잉여가치는 1,000파운드 스텔링이라고 하자. 상기 5,000파운드 스텔링은 그가 화폐자본으로서 전대하는 모든 화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생활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는 연도 말까지 어떠한 화폐도 얻지 못한다. 그의 소비는 1,000파운드 스텔링에 달한다고 하자. 그는 이 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물론 말한다—자기는 자기에게 이 1,000파운드 스텔링을 제 연도에 전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러나 이 전대라는 것은—이것은 이 경우에 다만 주관적 의미밖에 가지지 않는다—그가 제1년도에 자기의 개인적 소비를 그의 노동자들의 공짜 생산으로부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주머니로부터 지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이상의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이 화폐를 자본으로서 전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이것을 지출하고 그것을 그가 소비하는 생활수단에 대한 등가물로서 지불하여 버린다. 이 가치는 그에 의하여 화폐로서 지출되고 유통에 투입되며 그곳으로부터 상품가치로서 끌려나온다. 이 상품가치를 그는 소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 상품가치와는 그 어떠한 관계도 없게 되었다. 그가 이 가치에 대하여 지불한 화폐는 유통화폐의 요소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그는 이 화폐의 가치를 생산물들로서 유통으로부터 끌어냈으며 이 가치가 존재하고 있었던 생산물들과 함께 그것들의 가치도 소멸되었다. 그것은 다 없어졌다. 그런데 연도말에는 그는 6,0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가치를 유통에 투입하고 그것을 판매한다. 이와 함께 그에게 있어서는 1) 그의 전대화폐자본 5,000파운드 스텔링, 2) 화폐화된 잉여가치 1,000파운드 스텔링이

환류한다. 그는 자본으로서 5,000파운드 스텔링을 전대하고 유통에 투입하였는데, 그는 유통으로부터 6,000파운드 스텔링을 즉 자본으로서의 5,000파운드 스텔링과 잉여가치로서의 1,000파운드 스텔링을 끌어낸다. 이 후자 1,000파운드 스텔링은 그 자신이 자본가로서가 아니라 소비자로서 유통에 투입하였으며, 전대한 것이 아니라 지출한 그 화폐로서 화폐화되어 있다. 이제 그것은 그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가치의 화폐형태로서 그에게 복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 조작이 매년 반복된다. 그러나 제2년도부터는 그가 지출하는 1,000파운드 스텔링은 언제나 그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가치의 전화된 형태, 화폐형태이다. 자본가는 그것을 매년 지출하며 그것은 또한 화폐형태이다. 자본가는 그것을 매년 지출하며 그것은 또한 매년 자본가에게로 환류한다.

만약 그의 자본이 1년간에 더 자주 회전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태에 아무런 변동도 없다. 하기는 자본가가 그의 전대화폐자본 이상으로 그의 개인적 소비를 위하여 유통에 투입하여야 할 기간의 길이와 따라서 금액의 크기에는 변동이 있지만,

이 화폐는 자본가에 의하여 자본으로서 유통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다. 하기는 잉여가치가 환류할 때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써 살 수 있다는 것은 자본가라는 성격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자본이 처음으로 환류할 때까지 자본가가 자기의 개인적 소비를 지변하기 위하여 유통에 투입하는 화폐액은 그에 의하여 생산되었고 따라서 화폐화되어야 할 잉여가치와 정확히 동등하다고 가정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개별적 자본가에 관하여서는 자의적인 가정이다. 그러나 이 가정은 전체 자본가계급에 대하여는 단순재생산의 상정하에서 정당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가정은 이 상정이 의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즉 전체 잉여가치가—그러나 이것만이—비생산적으로 소비되며 따라서 최초의 자본의 어떠한 부분도 소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위에서 상정한 바에 의하면 귀금속의 총생산(=500파운드 스텔링이라고 가정한)은 화폐의 마멸분을 보상하기에 충분할 따름이다.

금을 생산하는 자본가들은 그들의 모든 생산물을, 즉 생산물 중 불변자본 및 가변자본을 보상하는 부분이나 잉여가치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나 할 것 없이 다 금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잉여가치의

일부는 금으로써 이루어지고 있고, 유통과정내에서 비로소 금으로 전화되는 그러한 생산물로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처음부터 금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통에 투입되어 그곳으로부터 생산물을 끌어낸다. 동일한 것을 이 경우에는 노임 즉 가변자본에 대하여도, 전대된 불변자본의 보상에 대하여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자본가계급의 일부가 그들에 의하여 전대된 화폐자본보다 더 큰(잉여가치만큼) 상품가치를 유통에 투입한다면 자본가의 다른 부분은 그들이 금생산을 위하여 유통으로부터 부단히 끌어내는 상품가치보다 더 큰(잉여가치만큼) 화폐가치를 유통에 투입한다. 만약 자본가들의 일부가 유통에 집어넣는 것보다 더 많은 화폐를 부단히 유통으로부터 끌어낸다면 자본가들 중 금을 생산하는 부분은 생산수단으로서 유통으로부터 끌어내는 것보다 더 많은 화폐를 부단히 집어 넣는다.

그런데 500파운드 스텔링의 금이라는 이 생산물의 일부는 금 생산자들의 잉여가치이지만, 그러나 그 전액을 다만 상품유통에 필요한 화폐의 보상을 위하여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 중 얼마가 상품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잉여가치를 화폐화하는 것이고, 얼마가 상품가치의 다른 구성부분들을 화폐화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좋다.

금 생산을 소여의 나라로부터 다른 나라로 옮겨 놓아도 사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A국에서의 사회적 노동력 및 사회적 생산수단의 일부는 5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를 가진 생산물 예컨대 아마포로 전화되며 이것이 금을 사기 위하여 B국으로 수출된다. A국에서 그와 같이 적용된 생산자본은 그것이 금 생산에 직접 적용될 때와 전혀 마찬가지로 A국의 시장에 상품들—화폐와 구별되는—을 투입하지 않는다. A국의 이 생산물은 500파운드 스텔링의 금으로 나타나며 다만 화폐로서만 A국의 유통에 들어간다. 사회적 잉여가치 중 이 생산물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직접 화폐로서 존재하며 그리하여 A국에 있어서는 화폐형태 이외의 형태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금을 생산하는 자본가들에 있어서는 생산물의 일부만이 잉여가치를 표시하며 다른 부분은 자본보상분을 표시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금 중에서 얼마가 가변자본을 보상하며—유동적 불변자본은 제외하고—얼마가 잉여가치를 표시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유통상품의 가치에 대한 노임 및 잉여가치의 비율 여하에 달렸다. 잉여가치를 형성하는 부분은 자본가계급의 각이한 성원들 간에 분배된다. 비록

이 부분은 그들에 의하여 부단히 개인적 소비를 위하여 지출되며 새로운 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다시 입수되지만—바로 이 구매와 판매만이 일반적으로 잉여가치의 화폐화를 위하여 필요한 화폐를 자본가 자신들 사이에서 유통시킨다—그렇지만 사회적 잉여가치의 일부는, 비율은 변동한다 하더라도, 화폐형태로 자본가의 주머니 속에 있는데, 이는 마치도 노임의 일부가 적어도 1주간의 얼마 동안은 화폐형태로 노동자의 주머니 속에 머물러 있는 것과 전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금 생산물 중 최초에金を 생산하는 자본가들의 잉여가치를 이루는 부분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상술한 500파운드 스텔링의 생산물이 일반적으로 자본가들과 노동자들 간에 분배되는 비율과 그리고 유통하여야 할 상품저장이 잉여가치와 기타의 가치구성부분들로서 구성되는 비율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잉여가치 중 다른 상품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상품들과 나란히 화폐로 존재하는 부분은 연간 금 생산의 일부가 잉여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유통하는 한에서만 매년 생산되는 금의 일부로써 이루어진다. 자본가계급의 수중에 그들의 잉여가치의 화폐형태로서, 비율은 변동되더라도, 부단히 존재하는 다른 화폐부분은 매년 생산되는 금의 요소가 아니라 이전에 국내에서 축적된 화폐량의 일부이다.

우리의 상정에 의한다면 5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연간 금 생산은 바로 다만 연년이 마멸되는 화폐를 보상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500파운드 스텔링만을 안중에 두고 매년 생산되는 상품 중 이전에 축적된 화폐가 그것의 유통에 복무하는 그러한 부분을 고려 밖에 둔다면, 상품형태로 생산된 잉여가치는 이미 자체의 화폐화를 위한 화폐를 유통에서 발견하는데, 그것은 타방으로 잉여가치가 연년이 금의 형태로 생산되기 때문이다. 500파운드 스텔링의 금 생산물 중 전대된 화폐자본을 보상하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지적하여야 할 것이 있다.

상술한 것으로부터 첫째로, 자본가들에 의하여 화폐로써 지출되는 잉여가치는 그들에 의하여 화폐로써 전대되는 가변자본, 기타의 생산자본과 마찬가지로 사실상은 노동자들의, 즉 금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생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금 생산물 중 노임으로서 그들에게 전대되는 부분도, 금 생산물 중 자본주의적 금 생산자들의 잉여가치

가 직접 표시되는 부분도 새로 생산한다. 마지막으로 금 생산물 중 그것의 생산에 전대된 불변자본가치를 보상할 따름인 부분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노동자들의 연년의 노동에 의해서만 화폐형태로(일반적으로 생산물 속에) 다시 나타난다. 기업개시의 경우에는 이 부분은 최초로 자본가에 의하여 화폐—새로 생산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유통하고 있는 화폐량의 일부를 이루는—로 제공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그것이 새로운 생산물인, 추가적 금에 의하여 보상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것은 노동자의 연년의 생산물이다. 자본가측으로부터의 전대는 이 경우에도,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생산수단의 소유자도 아니며 생산 중에 다른 노동자들에 의하여 생산된 생활수단들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는 데로부터 나오는 형태로서만 나타난다.

그런데 둘째로, 5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이 연년의 보상과는 독립하여 존재하며 일부는 퇴장화폐의 형태로, 일부는 유통화폐의 형태로 있는 화폐량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에 있어서도 사정은 이 500파운드 스텔링에 있어서 연년이 그러하였던 사정과 바로 동일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최초에는 동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절의 마지막에서 다시 취급하기로 하자. 그 전에 다른 몇 가지 점들을 더 지적하기로 한다.

회전의 고찰에 있어서 이미 본 바와 같이 기타의 조건들이 불변이라면 회전기간의 크기가 변동함에 따라 생산을 동일한 규모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화폐자본량도 변동한다. 따라서 화폐유통의 신축성은 회전기간의 확대와 수축이라는 이 변동에 적응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또 기타의 조건들은 불변이나, 그중에도 노동일의 길이, 강도 및 생산능률은 불변이나, 새로 생산된 가치의, 노임 및 잉여가치로의 분할이 변동하여 전자가 증가되고 후자가 감소되거나 또는 그 거꾸로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유통화폐량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 이 변동은 유통중에 있는 화폐량의 아무런 팽창이나 수축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즉 노임이 전반적으로 제고되고 따라서 전제로 되고 있는 조건들하에서는 잉여가치율이 전반적으로 저락하며 그밖에 또 상정되고 있는 바와 같이 유통하는 상품량의 가치에 아무런

변동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고찰하여 보자. 이 경우에 물론 가변자본으로서 전대되지 않으면 안되는 화폐자본은 증대되며 따라서 이러한 기능에 복무하는 화폐량은 증대된다. 그러나 가변자본의 기능을 위하여 요구되는 화폐량이 증대되는 바로 그만큼 잉여가치가 감소되며 따라서 또 그것의 실현에 필요한 화폐량이 감소된다. 상품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화폐량의 총액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상품가치 자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품의 비용가격은 개별적 자본가에 있어서는 제고되나 그러나 상품의 사회적 생산가격은 의연 불변이다. 변동하는 것은 불변가치부분을 도외시 한다면 상품의 생산가격이 노임과 이윤으로 나뉘어지는 비율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가변적 화폐자본의 지출의 증대는(화폐가치는 물론 불변이라고 전제되어 있다). 노동자들의 수증에서 화폐자금의 양의 증대를 의미한다. 그 결과 노동자들 측으로부터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또 그 다음 결과로서 상품들의 가격이 등귀한다고, 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노임이 제고되면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상품가격을 인상한다고, 이 두 경우에 다 노임의 전반적 제고가 상품가격의 등귀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제고를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하든 저러한 방식으로 설명하든 간에 상품을 유통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양의 화폐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의견에 대한 대답. 노임 제고의 결과로 특히 필요생활수단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그보다 적은 정도로이지만 사치품에 대한 그들의 수요가 증대되거나 또는 이전에는 그들의 소비영역에 속하지 않았던 물품들에 대한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필요생활수단들에 대한 수요가 돌연히 그리고 대규모로 증대되면 그것들의 가격은 무조건적으로 일시 등귀할 것이다. 그 결과로, 사회적 자본 중 보다 더 큰 부분이 필요생활수단들의 생산에 적용될 것이며 보다 더 적은 부분이 사치품의 생산에 적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잉여가치가 감소되고 따라서 사치품에 대한 자본가들의 수요가 감소되므로 그것들의 가격이 저락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노동자들 자신이 사치품을 구매하는 한에서는 그들의 임금의 제고는 이 범위내에서는 필요생활수단들의 가격등귀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사치품 구매자들을 바꿀 따름이다. 종래보다 많은 사치품들이 노동자들의 소비로 들어가며 비교적 보다 적은 사치품들이 자본가들

의 소비에 들어간다. 그뿐이다. 약간의 동요가 있는 후 이전과 동일한 가치의 상품량이 유통한다. 일시적인 동요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종래에 취인소에서 투기업이나 또는 외국에서 적용될 곳을 찾고 있던 유희 화폐자본이 이제는 국내유통에 투입되는 결과를 가져 올 따름일 것이다.

둘째 의견에 대한 대답. 만약 자본주의적 생산자들이 임의로 자기 상품들의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면 그들은 노임의 제고가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렇게 할 것이다. 노임은 상품가격이 저락하고 있을 때는 결코 제고되지 않을 것이다. 자본가계급은 만약 그들이 일정하며, 특수한, 말하자면 국부적인 조건하에서 현재 예외로 실제하고 있는 것을 항상 그리고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할 수 있다면, 즉 노임의 온갖 제고를 이용하여 상품가격을 훨씬 더 큰 정도로 인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이윤을 착복할 수 있다면 노동조합에 결코 반대하지 않을것이다.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사치품에 대한 구매수단이 감소한 자본가들의 수요가 감소한 결과로) 감소하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사치품의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용공급의 법칙의 전혀 독창적인 적용일 것이다. 사치품에 대한 구매가 단순히 바뀌어 노동자가 자본가 대신에 등장하지 않는 한—그런데 그렇게 바뀌는 한에서는 노동자들의 수요는 필요생활수단의 가격등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노임추가액 중 그들이 사치품에 지출하는 부분을 필요생활수단들에 지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사치품 가격은 수요감소의 결과로 저락한다. 그 결과 자본은 사치품 생산으로부터 철수되는데, 그것은 사치품의 공급이 사회적 생산과정에서의 그것의 역할의 변화에 상응하는 정도로 축소될 때까지 철수된다. 이와같이 생산이 감소됨에 따라 사치품은 그것의 가치가 변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의 정상적 가격으로까지 다시 등귀한다. 이러한 축소 또는 이러한 조정(調整)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은, 생활수단의 가격이 제고되는 조건하에서는 다른 생산부문으로부터 끌려나오는 그만큼한 자본이, 수요가 충족될 때까지, 생활수단의 생산에 부단히 공급된다. 그 때에 다시 균형이 잡히는데, 전체과정의 결말로서 사회적 자본 따라서 또 화폐자본은 필요생활수단의 생산과 사치품의 생산에 변동된 비율로 분배되어 있다.

모든 이론(異論)은 자본가들과 그들의 아첨쟁이 경제학자들의 올리대는

헛소리이다.

이러한 올리대는 헛소리에 구실을 제공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세 종류가 있다.

1) 화폐유통의 일반적 법칙은 유통상품들의 가격총액이 증대되면—가격총액의 이 증대가 동일한 상품량에 대하여 발생하든 또는 증대된 상품량에 대하여 발생하든 간에—기타의 조건들이 불변인 경우에는 유통화폐량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결과가 원인과 혼동된다. 노임은 필요생활수단의 가격등귀에 따라 제고된다(비록 비례적으로 제고되는 일은 드물며 또 예외에 불과하지만) 노임의 제고는 상품가격등귀의 결과이고 원인이 아니다.

2) 노임이 부분적으로 또는 국부적으로 제고되는 경우에—즉 개별적 생산부문들에서만 제고되는 경우에—이 때문에 이 부문들의 생산물가격이 국부적으로 등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나마 많은 사정들에 의존한다. 예컨대 노임이 여기에서 비상이 낮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윤율이 비상이 높지 않았든가, 이 상품들의 시장이 가격등귀로 말미암아 협착하게 되지 않았든가(따라서 그것들의 가격등귀 때문에 그것들의 공급을 미리 축소할 필요가 없든가) 등등의 사정이 그러하다.

3) 노임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는 경우에는 생산된 상품들의 가격은 가변자본이 우세를 차지하는 산업자본들에서는 등귀하나, 그대신 불변자본 또는 고정자본이 우세를 차지하는 부문들에서는 저락한다.

단순상품유통에서(제1부, 제3장, 제2절) 해명된 바와 같이, 비록 일정한 매개 상품량의 유통과정 내부에서는 그 상품량의 화폐형태는 사라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품의 형태변화에 있어서 한 사람의 수중에서 사라지는 화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넘어가는 것이며, 따라서 우선 상품들은 전면적으로 교환 또는 대치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치는 또한 화폐의 전면적인 침전(沈澱)에 의하여 매개되며 또 수반된다.

“상품에 의한 다른 상품의 대치는 동시에 화폐상품을 제3자의 손에 붙게 한다. 유통은 부단히 화폐라는 ‘땀을 내뿜는다’”(제1부, 제3장, 제2절 a)[조선어역, 제1권, 제1분책, 158페이지].

이 동일한 사실이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자본의 일부가 부단히 화폐자본의 형태로 존재하며 또 잉여가치의 일부도 부단히 역시 화폐형태로 그것의 소유자의 수중에 있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 점은 도외시하고, 화폐의 순환 즉 출발점으로서의 화폐의 환류는—그것의 자본의 회전의 한 계기를 이루는 한에 있어서—일련의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화폐가 출발점으로부터 부단히 멀어진다는 것을 표현하는 화폐유통과는 전혀 다르며 심지어는 대립되는 현상이다³³⁾ (제1부, 제3장) [조선어 역, 제1권, 제1분책, 161페이지]. 그렇지만 회전의 신속화는 그 자체가(eo ipso)유통의 신속화를 포함한다.

우선 가변자본에 관하여 말한다면, 예컨대 5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자본이 가변자본의 형태로 연 10회 회전한다면 유통화폐량의 이 부분은 자체의 10배의 가치량=5,000파운드 스텔링을 유통시킨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것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를 연 10회 내왕한다. 노동자는 유통화폐량의 이 동일한 부분으로써 연 10회 지불을 받으며 또 지불한다. 만약 동등한 생산규모하에서 이 가변자본이 연 1회 회전한다면 5,000파운드 스텔링이 단 1회만 유통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유동자본의 불변부분이 1,000파운드 스텔링이라고 하자. 이 자본이 연 10회 회전한다면 자본가는 자기의 상품을, 따라서 또 그 상품

33). 중농주의자들은 아직 이 두 현상을 혼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화폐의 출발점으로서의 환류를, 자본유통의 본질적 형태로서, 재생산을 매개하는 유통의 형태로서 중요시한 최초의 사람들이다. “『경제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생산적 계급은 다른 계급들이 그 계급으로부터 생산물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화폐를 제공하며, 다른 계급들은 다음 해에 생산적 계급으로부터 동일한 구입을 함으로써 이 화폐를 생산적 계급에게 반환한다……따라서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은 재생산에 수반되는 지출과 지출에 수반되는 재생산의 순환, 즉 지출과 재생산의 척도로 되는 화폐에 의하여 관통되는 순환 이외의 것이 아니다”(케네 「상업…에 관한 문답」 데르 편찬, 『중농주의자』 제1부, 208, 209페이지). “자본의 이러한 부단한 전대와 환류는 화폐유통이라고 불려야 할 것을 형성하는데, 이 유용하고 다산적인 유통은 사회의 모든 노동을 활기치게 하고 국가의 체내에서의 운동과 생명을 유지하며 그리하여 극히 당연하게도 동물체내의 혈액순환과 비교되는 것이다”(튀르고 『부의 형성과 분배에 관한 고찰』 데르 편찬, 전집, 제1부, 45페이지).

가치 증의 불변적 유동부분을 연 10회 판매한다. 유통화폐량의 이 동일한 부분(=1,000파운드 스텔링)은 연 10회 그것의 소유자의 수중으로부터 다른 자본가의 수중으로 넘어간다. 이것은 한 사람의 수중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의 이 화폐의 10회의 위치변환이다. 둘째로, 자본가는 연 10회 생산수단을 구매한다. 이것도 역시 한 사람의 수중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의 화폐의 10회의 유통이다. 1000파운드 스텔링만큼 화폐액으로써 산업자본가에 의하여 10,000파운드 스텔링분의 상품이 판매되고 또 다시 10,000파운드 스텔링분의 상품이 구입된다. 1,000파운드 스텔링의 화폐의 20회의 유통에 의하여 20,000파운드 스텔링분의 상품저장이 유통된다.

마지막으로, 회전이 신속하게 되면 잉여가치를 실현하는 화폐부분도 보다 급속히 유통된다.

그런데 거꾸로, 보다 급속한 화폐유통은 보다 급속한 자본회전을, 따라서 또 보다 급속한 화폐회전을 반드시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재생산과정의 단축과 보다 급속한 갱신을 반드시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급속한 화폐유통은 동일한 화폐량으로써 보다 다량의 거래가 수행될 때마다 일어난다. 그것은 자본의 재생산기간이 동등한 경우에도 화폐유통을 위한 기술적 시설들의 변화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다. 다음에 또 화폐가 현실적 상품전환을 표현함이 없이 유통하는 거래들(취인소에서 차액을 위한 거래 등등)의 분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 타방으로 화폐유통이 전혀 없어지는 수도 있다. 예컨대 농민 자신이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차지농업가와 토지소유자간에 유통은 일어나지 않으며, 산업자본가 자신이 자본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 신용 수여자간에 유통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 나라에서의 퇴장화폐의 시초의 형성과 소수자에 의한 그것의 취득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더 상론할 필요는 없다.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것의 기초는 고용노동이며 따라서 또 노동자에 대한 화폐로써의 지불이며 일반적으로 현물지불의 화폐지불로의 전화이다—은 국내에 유통을 위하여, 그리고 유통에 의하여 조건지어지는 화폐퇴장(예비기금 등등)을 위하여 충분한 화폐량이 현존하는 곳에서 비로소

보다 넓은 범위로 그리고 보다 속 깊이 완벽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은 역사적 전제이다. 비록 처음에 충분한 퇴장화폐량이 형성되고 그 후에 자본주의적 생산이 시작되는 듯이 사태를 이해해서는 안되지만, 오히려 자본주의적 생산은 그것의 조건들의 발전과 동시에 발전하며, 이 조건들의 하나가 귀금속의 충분한 공급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6세기 이래의 귀금속의 공급증가는 자본주의적 생산발전의 역사에서 하나의 본질적인 계기를 이룬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기초 위에서의 화폐재료의 그 이상의 공급의 필요가 문제인 한에서는, 일방으로는 생산물로서의 잉여가치는 그것의 화폐화에 필요한 화폐없이 유통에 투입되며, 타방으로는 금으로서의 잉여가치는 생산물의 화폐로의, 선행하는 전화없이 유통에 투입되는 것이다.

화폐로 전화되어야 할 추가적인 상품은, 타방으로 상품으로 전화되어야 할 추가적인 금(및 은)이 교환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 자체에 의하여 유통에 투입되기 때문에 필요한 액의 화폐를 발견하는 것이다.

제2절 축적 및 확대재생산

축적이 확대된 규모에서의 재생산이라는 형태로 진행되는 한에서는, 그것이 화폐유통과 관련된 아무런 새로운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우선 증대되는 생산자본의 기능에 필요한 추가적 화폐자본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실현된 잉여가치 중 자본가에 의하여 소득의 화폐형태로서가 아니라 화폐자본으로서 유통에 투입되는 부분에 의하여 제공된다. 화폐는 이미 자본가들의 수중에 있다. 그것의 적용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이제는 추가적인 생산자본의 지출의 결과, 이 자본의 생산물로서 추가적인 상품량이 유통에 투입된다. 이 추가적 상품량과 동시에 그것의 실현에 필요한 추가적 화폐의 일부분이 유통에 투입되었다. 즉 이 상품량의 가치가 그것의 생산에 소비된 생산자본의 가치와 동등한 한에서, 이 추가적 화폐량은 바로 추가적 화폐자본으로서 전대되어 있으며 따라서 자본가의 자본의 회전에 의하여 그에게로 환류한다. 여기에서 또 다시 위에서와 동일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제 상품형태로 현존하는 추가적 잉

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추가적 화폐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일반적 대답은 또 다시 동일하다. 유통상품량의 가격총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소여 상품량의 가격이 등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유통하는 상품량이 이전에 유통하던 상품량보다 더 크며, 거기에다 더 크다는 이것이 가격의 저락에 의하여 상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보다 더 큰 상품량의 유통에 필요한 추가적 화폐는 유통화폐량의 보다 더 경제적인 이용—이것이 지불들의 상쇄 등등에 의한 것이든 또는 동일한 개개의 화폐들의 유통을 신속하게 하는 수단들에 의한 것이든 간에—에 의하여 조달되거나 또는 퇴장화폐의 형태로부터 유통화폐로의, 화폐의 전화에 의하여 조달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후자는 유희상태에 있는 화폐자본이 구매수단 또는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하는 것, 또 이미 예비폰드로서 기능하고 있는 화폐자본이 그것의 소유자에게 대해서는 예비폰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회에 대하여는 능동적으로 유통하며(부단히 대출되는 은행예금에 있어서와 같이) 따라서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정제되고 있는 주화의 예비폰드가 절약되는 것도 포함한다.

“화폐가 주화로서 부단히 유통하기 위해서는 주화는 부단히 화폐로 응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주화의 부단한 유통은 유통 내부에서 전면적으로 발생하며, 또 유통의 조건으로 되는, 주화의 예비폰드로 분량의 다소는 여하간 주화가 부단히 정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이 주화의 예비폰드의 형성, 분배, 해소 및 재형성은 부단히 교체되며, 그것의 정재(定在)는 부단히 소멸하며, 그것의 소멸은 부단히 정재한다. A. 스미드는 주화의 화폐로의 또 화폐의 주화로의 이 끊임없는 전화를 표현하기를, 매개 상품소유자는 그가 판매하는 특수한 상품과 함께 그가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일정한 액의 일반적 상품을 언제나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유통 $W-G-W$ 에서 둘째 고리인 $G-W$ 는 부단히 일련의 구매들로 분열되는데 이 구매들은 한꺼번에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상 순차로 수행되며, 그리하여 G 의 일부가 주화로써 유통하는데 다른 부분은 화폐로서 휴식한다. 화폐는 이 경우에 사실상 정지된 주화에 불과하며 그리고 유통하는 주화량의 개개의 구성부분들은 항상 번갈아 가면서 때로는 이 형태 때로는 저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유통수단의 화폐로의 이 첫 전화는 화폐유통 자체의, 다만 기술적인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칼 맑스 『정치경제학 비판』 1859년, 105, 106페이지 [조선어역, 1956년, 104~105페이지 참조])

화폐와 대립되는 주화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다른 기능들과 대립하여 단순한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화폐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만약 이 모든 수단들로도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금 생산이 수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는 결국 동일한 것으로 귀착되지만 추가적인 생산물의 일부가 귀금속을 생산하는 나라의 생산물인 금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교환된다.

유통도구로서의 금 은의 연년의 생산에 지출되는 노동력과 사회적 생산수단의 전액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 및 일반적으로 상품생산에 기초한 생산방식의 비생산적 지출의 중요 항목을 이룬다. 그 때문에 해당 액의 가능한 추가적인 생산수단 및 소비대상 즉 현실적 부가 사회적 이용으로부터 끌려나온다. 소여의 생산규모가 불변인 경우 또는 생산의 확대정도가 주어진 경우에 이 고가한 유통기구(機構)의 비용이 감소되는 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노동의 생산력은 그만큼 제고된다. 따라서 신용제도와 함께 발전하는 보조수단들이 이와 같은 효과를 갖는 한, 그 덕분에 사회적 생산과정 및 사회적 노동과정의 일대 부분이 현실적 화폐의 아무런 간섭도 없이 수행되든 또는 현실적으로 기능하는 화폐량의 기능능력이 제고되든 간에, 이 보조수단들은 자본주의적 부를 직접 증대시킨다.

현재의 범위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이(이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신용제도없이 즉 금속유통만으로써 가능할 것인가라는 어리석은 질문도 이것으로써 낙착된다. 명백히 그것은 불가능하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오히려 귀금속 생산의 범위에 의하여 제한될 것이다. 타방으로 화폐자본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유통케 하는 한에서의 신용제도의 생산력에 대한 어떠한 신비적인 표상도 가져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전개는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는 현실적 축적 즉 생산규모의 직접적인 확대가 발생하지

않고 실현된 잉여가치의 일부가 후에 생산자본으로 전화되기 위하여 장단간의 기간에 화폐폰드로서 적립되는 경우를 고찰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축적되는 화폐가 추가적인 한에서는 사태는 자명하다. 그것은金を 생산하는 나라들로부터 공급되는 여분의 금만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주의할 것은 수입되는 이 금과 교환되는 국민적 생산물은 이미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금과 교환되어 외국에 인도되어 있다.

이와 반대로 국내에 이전과 동일한 양의 화폐가 있다고 상정하면 적립된 또는 적립되고 있는 화폐는 유통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 다만 그것의 기능만이 전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유통화폐로부터, 점차 형성되는 잠재적인 화폐자본으로 전화되어 있다.

이 경우에 적립되는 화폐는 판매된 상품의 화폐형태이며 그나마 이 상품의 가치중 그 소유자에게 대하여 잉여가치를 표시하는 부분의 화폐형태이다(여기서는 신용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전제된다). 이 화폐를 적립하는 자본가는 그 한에 있어서 구매함이 없이 판매한다.

이 행정을 부분적인 것으로 본다면 아무런 설명도 필요하지 않다. 일부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생산물의 판매로부터 입수한 화폐의 일부를, 그것과 교환으로 생산물을 시장에서 끌어내지 않고 보유한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화폐를, 생산운영에 필요한, 부단히 환류하는 화폐자본을 제외하고는 전부 생산물로 전화시킨다. 잉여가치의 담당자로서 시장에 내던져진 생산물의 일부분은 생산수단으로써 또는 가변자본의 현실적 요소들인 필요생활수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것은 생산확대에 즉시 복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부 자본가들이 화폐자본을 적립하는데 다른 자본가들은 자기의 잉여가치를 전부 소비한다고 상정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일부 자본가들이 자기들의 축적을 화폐형태로서 진행하고 잠재적 화폐자본을 형성하는데 다른 자본가들은 현실적으로 축적한다고 즉 생산의 규모를 확대하며 자기들의 생산자본을 현실적으로 확대한다고 상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화폐량은 번갈아 일부 자본가들이 화폐를 적립하는데 다른 자본가들은 생산규모를 확대하거나 또 그 거꾸로인 경우에도 유통의 수요를 위하여 의연 충분하다. 그뿐만 아니라 일방에서의 화폐적립은 현금이 없이, 다만 채권의 적립만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에 있어서의 화폐자본의 부분적인 축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축적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곤란이 발생한다. 자본가계급 외에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반적이며 유일한 지배자는 우리의 상정에 의하면 노동계급 이외의 어떤 다른 계급도 없다. 노동계급이 구매하는 일체의 것은 그들의 노임액과 동등하며, 전체 자본가계급에 의하여 전대된 가변자본액과 동등하다. 이 화폐는 자본가계급에 의하여 생산물이 노동계급에게 판매됨으로써 자본가계급에게로 환류한다. 그 결과 그들의 가변자본은 다시 화폐형태를 취한다. 가변자본의 총액 즉 1년간에 전대된 가변자본이 아니라 총용된 가변자본의 총액을 100파운드 스텔링 $\times X$ 라고 하자. 이 가변자본가치가 연간에 얼마나 많은 또는 얼마나 적은 화폐로써—회전 속도 여하에 따라—전대되는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 고찰되고 있는 문제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 100파운드 스텔링 $\times X$ 의 자본으로써 자본가계급은 일정한 양의 노동력을 구매한다. 또는 일정한 수의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한다. 이것은 첫째 거래이다. 노동자들은 동일한 화폐액으로써 자본가들로부터 얼마간의 상품을 구매하며, 그리하여 100파운드 스텔링 $\times X$ 라는 화폐액은 자본가들의 수중으로 환류한다. 이것은 둘째 거래이다. 그리고 이것이 부단히 반복된다. 따라서 100파운드 스텔링 $\times X$ 라는 화폐액은 노동계급으로 하여금 생산물 중 자본가계급의 잉여가치를 표시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불변자본을 표시하는 부분을 결코 구매할 수 없게 한다. 노동자들은 100파운드 스텔 $\times X$ 로써 사회적 생산물의 가치 중 전대된 가변자본의 가치를 표시하는 부분과 동등한 부분만을 구매할 수 있다.

이 전면적인 화폐 축적이 표현하는 것이 수입된 추가적 귀금속의, 각이한 개개의 자본가들 간에서의 분배—어떠한 비율로써이든 간에—이외의 아무 것도 아닌 경우를 도외시킨다면, 그러면 어떻게 전체 자본가계급은 화폐를 축적하여야 할 것인가?

그들은 모두 그들의 생산물의 일부를 판매하고 다시 구매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일정한 화폐фон드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그들은 그들의 소비를 위한 유통수단으로서 유통에 투입하며 그리고 그중 일정한 부분은 유통으로부터 각자에게 다시 환류한다는 것은 전혀 아무런 신비도 아니다. 그러나 이 화폐фон드는 그 경우에 바로 잉여가치의 화폐화에 의한 유통фон드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잠재적 화폐자본으로서 존재하

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태를 현실에서 발생하는 그대로 고찰한다면 후일의 사용을 위하여 적립되는 잠재적 화폐자본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서 구성된다.

1) 은행예금. 그런데 은행이 현실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비교적 적은 화폐액이다. 이 경우에 화폐자본은 명목상으로만 적립된다. 현실적으로 적립되는 것은 화폐청구권인데 이것이 화폐화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언제이든 화폐화 되는 한에서는), 다만 찾아내는 화폐와 예입하는 화폐간에 균형이 있기 때문에만이다. 화폐로서 은행의 수중에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는 소액에 불과하다.

2) 국가증권. 이것은 일반적으로 자본이 아니고 국민의 연간 생산물에 대한 단순한 채권이다.

3) 주식. 이것은 사기적인 것이 아닌 한, 한 회사에 속하는 현실적인 자본에 대한 소유 명의이며 이 자본으로부터 연년이 흘러나오는 잉여가치에 대한 지도서(指圖書)이다.

이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어떠한 화폐적립도 존재하지 않으며, 일방에서 화폐자본의 적립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타방에서는 화폐의 무단한 현실적인 지출로서 나타난다. 화폐가 그 소유권자에 의하여 지출되는가 또는 그의 채무자인 다른 자에 의하여 지출되는가 하는 것은 사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 화폐퇴장 그 자체는 결코 목적이 아니며, 유통정체의 결과이든가—보통 경우에 보다 더 많은 양의 화폐가 퇴장화폐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또는 회전에 의하여 조건지어진 적립의 결과이든가 또는 마지막으로 퇴장화폐는 생산자본으로서 기능할 사명을 가진, 잠시 잠재적 형태로 있는 화폐자본의 형성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일방에서는 화폐로 실현된 잉여가치의 일부가 유통으로부터 끌려나와 퇴장화폐로서 적립된다면 동시에 잉여가치의 다른 부분은 무단히 생산자본으로 전화된다. 추가적 귀금속의, 자본가계급 사이에서의 분배를 제외하면, 화폐형태로서의 적립이 모든 지점들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일은 결코 없다.

연 생산물 중 상품형태로서의 잉여가치를 표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 생산물 중 다른 부분에 대하여 타당한 모든 것이 동일하게 타당하다. 그것의 유통을 위하여는 일정한 화폐액이 필요하다. 이 화폐액은 잉여가

치를 표시하는, 연년이 생산되는 상품량과 전혀 마찬가지로 자본가계급에 속한다. 그것은 자본가계급 자체에 의하여 처음으로 유통에 투입된다. 그것은 유통 자체에 의하여 자본가들 간에 부단히 새로 분배된다. 주화 일반의 유통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 화폐량의 일부는 부단히 변경되는 지점들에서 정체하는데 다른 부분은 부단히 유통한다. 이 적립의 일부가 화폐자본을 형성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수행되는 것인가 아닌가는 사태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한 자본가가 다른 자본가의 잉여가치, 심지어는 자본의 일부까지도 탈취하며, 그리하여 화폐자본 및 생산자본의 일방적인 축적 및 집중이 발생하는 수단으로 되는, 유통상의 모험들은 도외시되고 있다. 예컨대 자본가 A가 화폐자본으로서, 적립하는 약탈된 잉여가치의 일부분이 자본가 B의 잉여가치 중 B에게 환류하지 않는 부분일 수 있다.

자본론 제Ⅱ권(1) 백의신서 12

인쇄일 : 1989년 4월 15일

발행일 : 1989년 4월 25일

펴낸이 : 이 상 돈

펴낸곳 : 도서출판 白衣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91-12

전화 : 편집부 960-5031, 영업부 965-7187

등록 : 서울 제5-145호 (88. 6. 25.)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4,000원